

# 백서 [IV]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 9. 사법농단 관여 법관 시민사회 탄핵소추안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 간 사

2018년 10월 27일 새벽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2017년 3월 초순경 언론이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겸임해제 사건을 보도하자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1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단은 실질적인 조사는 하지도 않고 조사 시늉만 하였다.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그해 11월에 대법원은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원에서 진일보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당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진상조사위원회는 관련 자료의 입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법원은 2018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였고 그해 5월 25일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른바 대법원 3차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위 특별조사단의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상당했다. 그러나 이후의 과정은 국민들의 실망과 한탄과 우려만을 낳았다. 특별조사단이 그 조사내용을 공개하는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국민들은 대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믿었으나 대법원은 결국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민변은 2018년 5월 25일 위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는 직후에 50여 명의 회원들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를 구성하였다. T/F는 먼저 사법농단 관련 전체 사건들에 대하여 법률적인 분석과 해설을 한 '이슈리포트'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슈리포트는 언론에 배포하는 용도였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참고하기를 바랐다.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이슈리포트가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수사기관의 전언이 있었다.

사법농단 수사의 1차적인 어려움은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이었다. 수사 단초로서의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무더기로 기각되면서 통상 90%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사법농단 수사에서는 발부율이 10% 미만이었다. 10%의 영장발부율도 그나마 '사법행정왜곡' 사건에 대하여 발부된 것이고 '재판관여' 사건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발부율은 1% 정도였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약속은 영장전담판사들이 전면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형국이 되었다. 심지어 유해용 변호사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들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고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즉시 폐기처분하였고,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은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휴대폰을 파괴하거나 폐기처분하였다. 법원의 전, 현직 판사들은 한몫이 되어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폐기하고 각종 영장을 기각하면서 국민을 기만하였다.

이에 T/F에서는 민변 역사상 최초로 1인 시위를 결정하였다. 민변은 2018년 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과 동문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여 10월 31일까지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변호사들에게 1인 시위는 그리 친숙하지 않았다. 경험을 해본 변호사들도 있었지만 상당수 변호사들

은 1인 시위를 처음으로 하였다. 더욱이 그 장소가 일상 재판을 하러 다니는 법원이었으므로 마음이 불편 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음으로 양으로 이를 격려해주는 판사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많은 위로가 되었다. 민변 사상 처음으로 연인원 1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1인 시위에 동참하였다. 지부에서도 독자적으로 1인 시위를 하였다. 민변 회원들이 사법농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굳센 의지로 1인 시위를 이어가던 와중에 드디어 임종현이 구속되었다. 임종현은 원세훈 댓글공작 사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범의노조 사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사건 등 사법농단의 핵심적 지위에 있었기에 그의 구속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었다. 2019년 1월 24일 새벽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판사들은 엘리트 집단으로 통칭된다. 늦은 밤까지 서초동의 거대한 법원 건물은 불빛이 꺼질 줄을 모른다. 판사들은 그 불빛을 정의의 나침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또한 자부심을 느꼈을 터다. 1990년대 중반부터 법조비리의 대책으로 법원은 판사들과 변호사들을 포함한 일반인과 사이에 장벽을 치기 시작하였다. 변호사가 판사를 방문할 때에는 방문대장에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다음에는 허가를 받으라고 하였고 이윽고 유리문으로 막아버렸다. 유리장벽이 변호사와 판사들 사이의 비리를 막는 장치라고 한다면 판사들은 다른 방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더 지속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 상고법원의 방안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올바른 방법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실행 방법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방안만을 절대시하였고 심지어 이를 위하여 국가권력에 아부하고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사법농단의 매듭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부터 풀어야 한다. 판사들은 수사를 하는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누가 감히 누구를 수사하느냐는 반발을 하였다. 검찰이 순수하고 결점이 없어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검찰의 문제는 검찰개혁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법원은 통상 90%를 상회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보여왔다. 법원은 압수수색에 있어서 피의사실 '관련성'의 개념을, ① 압수수색시점 시점으로, ②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③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동종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④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⑤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라면,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왔다. 그것이 사후적으로 전혀 압수수색의 계기가 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다만 환부 내지 폐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오직 사법농단 사건 관련하여만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혹은 '압수대상 물건이 존재할 개연성이 없다'는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적어도 법원과 관계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건에서만은 최소한의 기본을 지켜야 했다. 법원 판결의 정당성은 헌법이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였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 판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 기초하는 것

이다.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 존립의 근거가 되는 반면 이러한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얻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다. 법원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아니하여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불가침의 독립성을 헌법이 보장하는 이유는 법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요 특징은 이들에게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재판 결과는 사법농단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예견하였던 바이다. 민변은 이러한 예견에 근거하여 특별재판부에서의 재판을 요구해왔다. 다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국면이다.

민변은 또한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였다. 2021년 2월 4일 국회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사법농단 판사들은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처분이 정직 1년에 불과해 설령 징계절차를 통해 최고 정직 1년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들이 언제든지 재판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하여는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파면을 통해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아직 피해자들의 구제까지 험난하고 기나긴 여정이 남아 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방식을 통해 사법농단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변은 혼신의 노력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결국은 법원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분들은 사법개혁의 소망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 백서가 사법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되었으면 한다.

2021. 5. 10.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변호사 천 낙 봉

# 목 차

1. T/F 구성현황 .....	백서 [ I ]
2. 사법농단 일지 .....	백서 [ I ]
3. T/F 회의 일지 .....	백서 [ I ]
4. 법원 조사보고서 .....	백서 [ I ]
5. 사법농단 관련 문건 .....	백서 [ II ]
6. 공동고발장 .....	백서 [ III ]
7. 이슈페이퍼 .....	백서 [ III ]
8. UN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 긴급청원 .....	백서 [ III ]
9. 사법농단 관여 법관 시민사회 탄핵소추안 .....	백서 [ IV ]
10. 사법농단 관련 특별법 법안 .....	백서 [ V ]
11. 사법농단의 기록 [민주변론 기고] .....	백서 [ V ]
12. 사법농단 관련 토론회 등 자료집 .....	백서 [ VI ]
13. 성명, 논평 등 .....	백서 [ VII ]
14. 사법농단 관여 법관 형사 판결문 .....	백서 [ VIII ]
15. 법관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 .....	백서 [ IX ]

# 9

## 사법농단 관여 법관 시민사회 탄핵소추안

# 사법농단 관여 법관 시민사회 탄핵소추안

## □ 개요

- 사법농단 사태에 대응하고자 시민사회가 결성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라 함)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하여 헌법적 책무를 묻는 “법관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사법농단 사태 초기부터 견지해 왔음.
- 시국회의는 내부 논의를 거쳐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것을 요구하였음.
- 구체적으로, 시국회의는 두 차례에 걸쳐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시민사회의 탄핵소추안을 작성/발표하였음.
  - 1차: 2018. 10. 30. / 대상: 권순일,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 2차: 2019. 1. 31. / 대상: 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 개별 탄핵소추안은 이하와 같음.

# 대법관 권순일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0000
----------	------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000 의원 외 00인

## 주 문

---

---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 권순일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

---

성 명 : 권순일

직 위 : 대법관

## 탄핵소추의 사유

---

---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관 권순일(이하 '피소추자'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 (헌법 제 10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만 직권남용죄 등 형법 위반 사항은, 향후 검찰의 기소 후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 소추안에는 별도로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위반 행위는 다른 피소추자들과 함께 양승태 대 법원장(2011. 9. ~ 2017. 9.)에 의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 2. ~ 2016. 2. 대법관 겸임) 등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 중 사법에 관한 본질적 요소인 재판독립의 원칙과 법관의 신분보장,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자 오로지 신뢰에 기반하여 사법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피소추자의 지위

피소추자는 1984.경 사법연수원을 수료(14기)하여, 1985.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춘천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1993.부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조사심의관으로, 1996.부터 서울고등법원, 서울 가정법원 판사로 근무하다가, 1999.부터 대구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다가, 2011. 2. 17.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2. 8. 13.자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9.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피소추자는 본 탄핵소추안 발의일 기준으로 헌법 제101조 및 법원조직법 제5조에 따른 대법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 2. 피소추자의 행위

#### 가. 강제징용 사건에 관련

- 1)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2012년 원고 승소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듬해 파기환송심을 거쳐서 다시 재상고심이 접수되었음에도 기존의 다른 재상고심 사건의 전례처럼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하지 아니한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소부에서 판결 선고로 하지 아니하면서 그렇다고 하여 전원합의체 회부도 하지 않은 채 미뤄왔다.

우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은 2013년 9월 ‘대일본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외교부 입장을 강제징용 소송에 반영하는 계획을 짰다. 해당 문건에는 “외교부 입장을 ‘서면’으로 재판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신설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2013. 12.경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공관에서 만나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를 미루는 등의 댓가로 법관의 해외파견 자리를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재판거래하였다.

또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곤란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담긴 문건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이메일·출력물로 전달함으로써 대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

이러한 재판거래와 재판개입은 그 후임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 2. ~ 2016. 2. 대법관 겸임)과 그 후임인 고영한 법원행정처장(2016. 2 ~ 2017. 5. 대법관 겸임) 시기까지 이어지면서 5년 이상 지연되었고, 그 사이 강제징용 피해자들 9명 중 7명이 고령으로 사망하였다.

2) 그런데 피소추자는 처음 강제징용사건에 관한 법원행정처 문건이 작성되던 2013년 9월경 법원행정처의 실무를 총괄하는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3년 9월경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청와대로 방문하여 만나서 강제징용 사건의 대법원 재판 지연을 논의하였다.

또한 같은 해 10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재판 지연의 댓가로 법관의 해외 파견을 요청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같은 해 12월에는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위 재판거래를 뒷전에서 매듭짓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 나. 통상임금 사건 관련

1) 2013년 5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만난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으로 부터 "한국에 8조원을 추가로 투자하려는데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줬으면 한다"는 부탁에 따라 "최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2013. 5. 26. 서울고법에서는 GM의 통상임금 소송에 관하여 '업적 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에서는 통상임금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직후 [409] '통상임금 경제적 영향 분석'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이 문건에 따르면 재계가 38조원대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고 본 데 대해서는 '유리한 기초 통계자료를 활용해 과대 계상했다'고 평가하고, 노동계가 주장한 5조 7400억 원에는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어 과소계상'한 것으로 평가했다.

게다가 2013. 12. 통상임금 사건에 관하여 전원합의체로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69]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문건에 따르면, '판결의 취지가 잘 보고, 전달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해 준 것으로 받아들임'이라고 자평하고 있다(법원의 3차 보고서 148쪽 이하).

한편 2015. 7.경 작성된 '양승태 대법원장의 박근혜 대통령 독대를 위한 현안관련 말씀자료' 문건에 따르면,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 고려한 사례 중 하나로 통상임금 사건이 제시되어 있다.

2) 그런데 피소추자는 법원행정처의 실무를 총괄하는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통상임금 사건의 대법원 공개변론이 진행되기 전날인 2013. 9. 4.

청와대를 정다주 심의관과 함께 방문하여 위와같은 통상임금 사건의 재판 진행방향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정다주 심의관에게 위와같은 통상임금 사건 관련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 등을 받았다.

### 3.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

#### 가. 관련 규정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러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은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의 내용이, 사법권의 가장 본질적인 재판업무에 관한 대원칙인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중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재판독립은 법원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내부세력 특히 사법행정권자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참조).

한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재판업무 자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법관이 사법행정권자의 지위에서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익실현의무에 기초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일선 법원의 재판에 대하

여 헌법 제103조에 따른 재판의 독립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소추자 등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당연한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 나.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는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 재판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으로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윤리감사관,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피소추자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위로는 매주 1회 개최되는 대법관회의에 참석하면서 수시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대법관)으로부터 포괄적인 지시를 받고, 아래로는 법원행정처의 실,국장회의와 부장판사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실무를 총괄하였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모든 주요 회의에 참석하고 그 중 대부분을 주재함으로써, 법원행정처 내에서 대법원장으로부터 행정처 심의관까지 상하로 연결되는 수직적 의사결정구조의 핵심간부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획조정실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등 대외기관 및 법원 내부적으로 각급 법원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하기에 피소추자는 비록 강제징용사건 재판, 통상임금 사건 재판에 관한 문건이 공보관실 등의 명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원행정처 내의 피소추자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보고받고, 이를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그 반대로 대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포괄적인 지시에 따라 그러한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소추자는 나아가 강제징용사건에 관하여는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처리 방향까지 논의하는가 하면, 심지어 법관의 해외파견 자리와 상고법원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재판거래를 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한 채 철저히 법원 조직의 이익, 특히 상고법원의 경우 고위법관의 자리 늘리기 등 사익을 추구한 것이고, 단순히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나 부적절한 정도를 뛰어넘어 구체적인 재판에 개입함으로써 재판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헌법 제10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헌법 제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등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 4. 탄핵의 정당성

### 가. 대통령 탄핵과의 차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파면결정을 선고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헌법, 법률 위반의 정도’와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달리 법관 탄핵에 대하여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경미한 범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



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004헌나1).

먼저 법관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즉 국가적 손실, 사법질서 혼란 등을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그 수가 3,000여명에 이르고, 그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숫자도 160여명에 이르며, 대법관의 경우조차도 13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설령 위 인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탄핵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공백을 동료 (대)법관이 메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이나, 재판의 공백 등 사법질서의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일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헌법, 법률위반의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 피소추자들 역시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출세가 보장된 법원행정처의 핵심 부서 등 근무를 통해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헌법상 결코 침해되서는 안될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한편 법관의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헌법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이 헌법, 법률위반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관 파면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적은 반면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형량을 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

한편 피소추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차한성,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들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이들이 법관 탄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기만료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소추자에 대하여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처분에 의하여서는 최고수위가 정직 1년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단지 법관 징계절차에 의하여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 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법농단에 관여한 피소추자는 정직처분으로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가 아니라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피소추자들은 대부분 법원행정처를 거치는 동안 이른바 판사에서, ‘사법관료’로 변모해온 이들은, 심의관 단계에서부터 발탁되어 나중에 고등부장 승진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고, 피소추자의 경우 실제로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서 곧바로 대법관으로까지 임명되기까지 한, 이른바 출세가 보장된 법관 엘리트이다.

대법관 권순일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들을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에서 시킨대

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피해자 행세를 통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 동정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대법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물며,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가 법관징계법상 최장 1년의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대법관으로서의 대법원 재판업무에 복귀한다면, 국민의 법감정과도 맞지 않는 데다가 나중에 대법원에서 대법관 권순일로부터 재판받게 되는 당사자나 대리인인 변호사들로 부터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받게 될 것이다.

## 5. 결론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오로지 고위법관들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소위 법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설마 스스로 법을 어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법관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마지막 믿을만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던 법관들에 의하여,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관 이하 고위법관들,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위배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의원 등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법관 권순일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강제징용 사건 관련 언론 기사 4건
2. 통상임금 관련 언론기사 1건
3.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3차 조사보고서) 중 통상임금 사건부분
4. 현안관련 말씀자료 문건

사회 사회일반

## 김기춘, 대법관 삼청동 비밀회동 뒤... 징용소송 장기 표류

등록 :2018-08-15 05:00 수정 :2018-08-15 09:59

징용소송 지연 모의 '3자 회동'

징용소송 상고 기각 만기 직전 만나  
박근혜청와대 재판 지연 요구가  
주심 대법관에 전달됐나 규명해야

2012년 대법서 이미 배상책임 인정  
"손쉽게 끝날 재판" 전망 뒤집혀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 앞두고  
권순일, 청와대 방문도 확인돼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왼쪽)과 권순일 전 행정처 차장. <한겨레> 자료사진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사이의 '재판 거래' 의혹이 대법원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불가역적'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2013년 12월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2014년 3월 퇴임)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휴일 오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외교부 회의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면서, 이제 검찰은 이런 요구가 대법원장이나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돼 실행됐는지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재판이 박근혜 정부 내내 늦춰지면서 5년 이상 지연돼 사실상 실현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검찰은 3자 회동 자리에 행정처장이던 차 전 대법관이 "대법원을 대표해서 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다. 외교부는 자료 보전에 굉장히 철저한 부서"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전 실장과 차 전 대법관이 만난 시점은 강제징용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을 할 수 있는 기간(대법원 접수로부터 4개월)의 만기를 목전에 둔 때였다. 법조계에선 2012년 대법원이 이미 배상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판례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재판이 쉽게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당시 회동 목적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2년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확정을 지연해주고, (2012년 판례 변경을 위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려서 판결을 번복해줄 것을 요청한 것인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3자 회동 직후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은 장기 표류하기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면 "정부가 대법원의 신중 처리를 요망한다. 재판 연기 방안을 지지한다"(2014년 11월 기획조정실) "신일철주금 사건에서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했다"(2015년 11월 사법지원실)며 청와대의 요구를 직간접으로 수용했음을 내비쳤다.

현직 대법관이 직접 대통령 비서실장의 '카운터파트'로 나섰다든 점도 '재판 거래'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행정처장은 재판 업무를 맡지 않지만 대법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들을 상시적으로 접촉한다. <한겨레>는 3자 회동과 관련해 차 전 대법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행정처는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청와대가 행정처, 혹은 징용 사건 재판부 등에 판결 파기나 전원합의체 회부 등 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2013년 9월4일 권순일(현 대법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정다주 기획조정실 심의관과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튿날 대법원에선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었다. 청와대 방문 당일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 변론 리허설에서 대법원은 노동자 쪽 대리인의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등장하는 장면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당시 권 대법관은 국제행사 관련 대통령 오찬 계획 설명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다. 홍경식 민정수석에게 관련 서류만 전달했을 뿐 다른 얘기를 나눈 바 없다"고 해명했다. 현소는 김양진 기자 soni@hani.co.kr

---

**관련기사**

징용 피해자들 "판사님이란 대통령님이란 이렇게 한 게 참말이요?"

---

**이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포토] '양승태 사법농단 핵심'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 출석 현장

임종현 "법원, 절체절명의 위기...무거운 책임감 느껴"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 출석

'재판 개입' 고법 부장판사, 2년 뒤에야 송방망이 징계

야구선수 도박사건' 재판개입 고위법관 견책 처분... 대법원 '제식구 감싸기 비판'

---

사회 사회일반

# [단독] 양승태 행정처, 소송규칙까지 고쳐 '강제징용' 재판개입 정황

등록 :2018-07-27 05:00 수정 :2018-07-27 09:31

2013년 9월 사법정책실 문건에  
"서면으로 입장 반영안 신설 노력"  
2015년 대법, 민사소송규칙 고쳐  
"국가기관, 대법 재판에 의견서 가능"  
제3자인 외교부 의견 제출 실현돼  
검찰, 법관 해외파견과 연관성 의심



2016년 1월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맨 오른쪽). 청와대사진기자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둘러싼 '양승태 대법원-외교부-청와대' 삼각커넥션 의혹이 검찰의 핵심 수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정부의 재판 관여 '통로'를 열어주려고 관련 규칙까지 일사천리로 갈아엎은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은 2013년 9월 '대일본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외교부 입장을 강제징용 소송에 반영하는 계획을 짰다. 해당 문건에는 "외교부 입장을 '서면'으로 재판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신설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는 2012년 8월 대법원이 '미쓰비시 등은 강제징용 피해자 9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이후 지속해서 불만을 제기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외교부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어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재판에 반영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런데 2015년 1월,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관련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급심이 아닌 대법원 재판에 한해 소송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의견도 들겠다고 규칙을 변경한 것인데, 대법원은 이를 '상고심 충실화'라는 이유를 붙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 초대 주일본 대사를 지낸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외교부는 법원행정처가 닦아놓은 '내규 고속도로'를 적극 활용했다.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리하던 김앤장은 2016년 10월 '대한민국 외교부'에 의견서를 요청했다. 파기환송 과정을 거쳐 대법원에 재상고된 지 3년이 지나서야 당사자도 아닌 외교부의 의견을 듣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회'를 얻은 외교부는 대법원에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 등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당시 행정처가 외교부와 긴밀히 교감하면서 재판을 미루는 대가로 법관 해외공관 파견 확대 등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012년 대법원이 한 차례 판단을 했던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사건이 다시 올라온 지 5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내린 '배상 책임' 판단을 따랐다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단 몇 개월 만에 끝났을 사안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행정처가 외교부를 '창구'로, 사실상 청와대와 교감했다고 볼 만한 대목도 있다. 2014년 3월 정다주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서, 행정처는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에 대한 집행금지 신청을 인용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을 접수한다. 또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을 교정"하는 대가로 "재외 공관 파견에 적극적 협조"한다고 계획한다. 대법원 자체조사단도 이에 대해 "사법행정권이 대법원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본안 결론을 함부로 관측하는 것은 실행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이 대법원에 발이 묶여 있던 시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7판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시 선배 연구관과 대법관 등이 (미쓰비시 사건에 대해) '한일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며 재검토도 지시했는데, 대법원이 자신이 내린 판결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그는 <한겨레>에 "당시 외교부에서 의견을 제기해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기환송 고려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파기환송을 검토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현소는 기자 soni@hani.co.kr

---

#### 이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포토] 양승태 사법농단 핵심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 출석 현장

임종현 "법원, 절체절명의 위기...무거운 책임감 느껴"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 출석

'재판 개입' 고법 부장판사, 2년 뒤에야 숨방망이 징계

'아구선수도박사건' 재판개입 고위법관 견책 처분... 대법원 '제식구 감싸기' 비판

---



사회 &gt; 법원·검찰

## 양승태 행정처, 대법에 강제징용 소송 개입문건 전달 정황

"임종헌 지시로 연구관에 문건 전달" 진술 확보 판결 방향 정해 부당 개입...곧 소환 조사 가능성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9-28 09:21 송고



©News1 구윤성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제 강점기 시절의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견이 담긴 문건을 대법원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2013년 말 대법원 민사조 총괄부장이었던 A 고법부장을 최근 소환 조사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는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

면 곤란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를 받은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A 고법부장에겐 문건을 이메일·출력물로 전달했다고 파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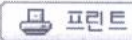
당시 A 고법부장은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의 법리 검토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개인이 아닌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판결의 방향을 정한 문건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개입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3년 10월 임 전 차장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그 해 말에는 차한성 전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건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 이들을 포함해 법원행정처 뒷선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 [단독] 검찰 "권순일 대법관, 유민봉 만나"...진술 확보



프린트



x 닫기

2018.08.21

### 【앵커멘트】

일제 강제징용 재판이 5년째 미뤄졌던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 앞서 전해 드렸죠. 그런데 현직 대법관이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만났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지난 13일 검찰은 재판거래 관련 문건을 만든 혐의로 정 모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이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수석은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로, 검찰은 두 사람이 강제징용 소송 지연 등을 논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10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재판 지연을 논의하며 해외 법관 파견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그해 12월에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과 만나 소송의 결론을 미뤄달라는 요구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의 말이 엇갈려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인 유 전 수석은 권 대법관과 만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에,

「권 대법관은 청와대에 갔다가 고등학교 선배인 유 전 수석을 복도에서 만나 인사만 나눴을 뿐이라며 재판거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재판 지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

Copyright © 매일방송. ALL RIGHTS RESERVED.



사회 > 법원·검찰

## [단독] 권순일 대법관 '통상임금' 판결 앞두고朴청와대 방문

행정처 차장 때 청와대 주요 인사 접촉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8-08-14 12:05 송고



권순일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뉴스1 ©News1 안은나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정부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청와대 출입 사실을 확인했다. 권 대법관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2013년 9월 권순일 대법관이 청와대

를 방문해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어 "청와대 출입기록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2013년 당시 법원 행정처차장이었던 권 대법관의 청와대 방문사실과 접촉 대상, 체류시간 등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대법관이 청와대를 찾은 날짜는 2013년 9월4일이다. 권 대법관의 청와대 인사 접촉 이튿날인 5일 재판거래 대상으로 의심받고 있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공개변론이 열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은 지난 5월 25일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에서) 청와대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문서파일을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특조단은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해 곧 있을 공개변론을 앞두고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2013년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 차장으로 재직, 재판거래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헌 당시 기획조정실장의 직속상관이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권 대법관이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하기 3개월 전인 2013년 5월 미국 방문길에 워싱턴에서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을 만났다.

애커슨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 8조원을 추가로 투자하려는데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말해 한국에서 '사법권 침해' 논란을 빚었다. GM 노조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이 애커슨 회장에게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18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못 받은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

### 가. 특별조사단에서 발견한 관련 문서

#### 1)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파악'[69, 391]

##### 가)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정◆◆ 심의관이 임종현 기조실장의 지시로 2013. 12. 19. 작성 및 보고함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하면서도,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급 적용을 제한시킴)이 선고된 후 청와대 등 각계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임

##### 나) 주요 내용

- 문서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I. 정치권
1. 청와대
▣ [대외적] 입장 표명 자제 (중략)
▣ [대내적]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준 것으로 평가.
● →민정 라인을 통하여 <u>판결의 취지가 잘 보고·전달되었음</u>
● <u>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봄</u>
● <u>판결 선고 결과에서도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하여 준 것으로 받아들임</u>
2. 여야 각 당 (중략)
3. 기타 (중략)
I. 재계 (중략)
II. 노동계 (중략)
III. 언론계 (중략)
IV. 기타 (중략)

#### 2) '통상임금 경제적 영향 분석'[409]

##### 가)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정◆◆ 심의관이 임종현 기조실장의 지시로 2013. 8. 22. 작성 및 보고함



- 통상임금 관련 사건 2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후 같은 해 9. 5. 변론 기일의 공개 및 생중계가 결정되자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판단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각 경제주체 주장의 적정성 등을 검토함

#### 나) 주요 내용

- 재계의 분석 결과는 과대 계상이고, 노동계의 분석 결과는 과소 계상이며 국책 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평가한 후 현실에 전액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고 효과는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고 검토함

#### 나.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대면)

- 정◆◆ 심의관
- 임종현 기조실장

#### 다. 특별조사단의 검토

- 노회찬 의원이 2018. 3. 20. 국회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위 통상임금 전합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서가 있었고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이 문서를 확인하고도 조사결과 발표에선 누락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H4에서도 발견된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파악'[391] 문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문건에는 '흡족'이라는 표현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가 대내적으로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준 것으로 평가하였다는 기재는 있음
- 임종현 기조실장, 정◆◆ 심의관의 대면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종현 기조실장이 정◆◆ 심의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청와대의 동향에 대해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이고, 임종현 기조실장은 당시 카운트파트너인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동향을 들은 것으로 짐작되나 2013년 12월은 청와대 법무비서관 교체시기로 전임자 및 후임자<sup>82)</sup> 모두와 최근 전화통화를 해 보았음에도 정확히 누구로부터 어떤 식의 표현으로 들은 것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함

82) 2013년 12월 이해진 법무비서관이 사임하고, 2014년 1월 김종필 법무비서관이 취임함

- [391] 문건의 내용과 임종헌 기조실장, 정◆◆ 심의관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임종헌 기조실장은 법무비서관 등을 통하여 민정수석실(당시 민정수석: 홍경식)에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대내적 평가를 알게 된 것으로 보임
- [409] 문건에 관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은 대면조사에서 차한성 당시 행정처 처장에게 보고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함.
- [409] 문건은 각계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어느 한 쪽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문건은 국회에 대한 관계에서 현안질의에 관한 답변에 사용할 참고자료로서 작성되었다고 보임. 다만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곧 있을 공개변론을 앞두고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391] 문건과 관련해서 비록 사후적이긴 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하여 청와대측에 별도의 설명을 하고 그 평가를 알게 되는 과정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하여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부적절한 행위임



# 연안 관련 말씀 자료

2015. 7.

기획조정실

## 1. 과거 왜곡의 광정

▣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

● ①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

∴ 아래 ①과거사 정립, ②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 ②미래지향적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 국가경제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해왔음

∴ 아래 ③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4대 부문 개혁 중 ④노동, ⑤교육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 ▣ ①과거사 정립

● 과거 정권에서의 이념·정파간 소모적 대립·논쟁의 결과, 과거사 문제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옴 ⇨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

●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면 보고서만 믿고 국가 배상을 결정해선 안 되고,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제한함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 과거사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재차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음**

☑ **대법원 2015. 4. 17. 선고 2014다234155 판결**

▶ 과거사 피해자가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

☞ 대통령 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함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님**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

●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 ⇨ **혼돈·경시되어온 국가관의 바른 정립 노력**

● **이석기 전 의원 사건**

☞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폭동과 내란을 선동한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죄로 중형을 선고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선동한 행위를 **내란선동죄로 인정함**

●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

☞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들과 학부모를 이끌고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체제 도전 행위에 제동을 걸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 이 사건 빨치산 추모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



이 아니라,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이고, 피고인이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인솔하여 이 사건 전야제에 참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행위 등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④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 경제 관련 사건의 처리 ⇨ 단순한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면밀히 고려
- 한편, 참여한 갈등·대립의 존재로 말미암아 정당한 결론이라도 이를 도출하는 과정·절차가 소홀하면 또 다른 소모적인 논쟁을 초래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대법원은 공개변론 중계방송 등을 통하여 절차적으로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모색하였음

### ● 통상임금 사건

-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단순히 포함시킬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안게 될 부담(약 38조 원으로 추산됨)을 최대한 고려하여, 노사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을 제시함
- ❖ 특히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을 통하여 그러한 결론이 최소한의 혼란 속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임

####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도 정기상여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하면서도,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급 적용을 제한시킴

### ● 키코 사건

- ❖ 금융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게 대립한 사건에서 역시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을 실시하는 등 절차적인 노력을 통하여 양측이 승복할 수 있는 결론 도출

####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

▶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사건

- ❏ 철도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라 추진된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하여 이를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 등 분쟁·갈등 상황을 종식시킴

☑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여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철도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함

▣ ④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관련

-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은 노동 부문 ⇨ 노동 부문의 선진화와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 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노력

● KTX 승무원 사건

- ❏ 공공 부문 민영화와 관련한 여러 쟁점이 관계된 사안에서 결국 한국철도공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함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 ▶ KTX 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고, 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음

● 정리해고 사건

-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함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 ▶ 약기 제조업체인 콜텍의 정리해고를 유효하다고 봄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 ▶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

● 철도노조 파업 사건



❖ 노사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하여 파업의 법적 기준을 정립함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 철도공사는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아 사측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파업을 강행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철도노조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

■ **6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관련**

● 교육 부문과 관련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건이 다수 존재함 ⇨ 역시 **4대 부문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방향을 모색함

●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민주주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의 통보처분과, 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 1심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통보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함

☑ **대법원 2015. 6. 3.자 2014무548호 결정**

▶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놓음**

[끝]

# 법관 김민수 탄핵소추안

의 안 번호	0000
-----------	------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000 의원 외 00인

## 주 문

---

---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김민수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

---

성 명 : 김민수

직 위 : 법관

## 탄핵소추의 사유

---

---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 김민수(이하 ‘피소추자’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 (헌법 제 103조), 법관의 신분보장 (헌법 제10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 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만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등 형법 위반 사항은, 향후 검찰의 기소 후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 소추안에는 별도로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위반 행위는 다른 피소추자들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2011. 9. ~ 2017. 9.)에 의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 2. ~ 2016. 2. 대법관 겸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2016. 2. ~ 2017. 5.), 임종헌(2012. 8. ~ 2015. 8. 기획조정실장, 2015. 8. ~ 2017. 3.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 중 사법에 관한 본질적 요소인 재판독립의 원칙과 법관의 신분보장,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자 오로지 신뢰에 기반하여 사법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피소추자의 지위

피소추자는 2003. 2.경 사법연수원을 수료(32기)하여, 2006. 2.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15. 2. 23.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의 직위를 겸임하게 되었고, 2016. 2. 22.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전보되면서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의 직위를 겸임하게 되었으며, 2017. 2. 20.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의 직위에 대한 겸임이 해제되었다. 이후 피소추자는 2018. 2. 26.자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18. 6.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의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고 재판 업무에서도 배제된 자로, 본 탄핵소추안 발의일 기준으로 헌법 제101조 및 법원조직법 제5조에 따른 법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 2. 피소추자의 행위

#### 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

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선고하고 그 후 다른 판결들에서도 같은 취지로 선고하였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3가합544225판결 외1건이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는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한 김OO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였다.

이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피소추자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73, 395] 문건(이 중 395번 문건은 73번문건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증거자료로는 73번 문건만 게시함. 이하 동일)을 작성하였다.

이 문건은 2015. 9. 22. 임종헌의 지시로 작성하고 보고한 문서로, 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라고 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이하 ‘3차보고서’라고 함) 제152쪽 이하].

#### **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행위 및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분석과 추천 개입추천 등에 관한 행위**

- 1)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 행정예규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2011. 8. ‘판사들로만 자발적으로’ 설립된 사법부 내의 학술모임이다.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이하 ‘인사모’라 함)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소모임으로, 2015. 7. 내지 8.경 두 차례의 예비모임을 거쳐 2015. 9.경 첫 정식 모임을 가지고 발족하였다. 인사모는 위 예비모임 당시부터 상고법원 문제를 포함하여, 합의부의 조직과 운용, 사실심 충실화,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방안, 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법부장 제도 폐지 등 사법부 내 사법 제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모임의 구성원 간 논의하고 의견

을 교환하여 왔다.

2)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모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무렵이었던 2015. 7.경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인사모를 챙겨보라’, ‘윤리감사관실의 검토도 거쳐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후 이규진은 본인 스스로 혹은 피소추자 등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박병대의 인사모에 관한 지시를 이행하였다. 이 시기 집중적으로 인사모 동향 파악이 이루어졌고, 나아가 2016. 3.경 무렵부터 법원행정처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도 아래 전문분야연구회 개편이라는 관점에서 인사모 관련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중복가입 해소 조치’의 경우 이미 최우선 방안으로 고려되어 세부 시행방안까지 검토를 마치는 등, 인사모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동향을 파악하였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를 위축시키거나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수의 행위를 하였다.

3) 이와 관련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소추자는 2016. 2. 2. 임종헌의 지시를 받아 송OO 판사 건의문을 검토하여 ‘송OO판사 건의문 검토’[191]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에게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64쪽 이하).

송OO판사가 2016. 2. 1. 코트넷 제도개선법관 토론방 게시판에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판사회에서의 선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을 게시하였다.

---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법원행정처는 2018. 6. 5. 및 2018. 7. 5. 두 차례에 걸쳐 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물적 조사 대상이 된 문건 다수를 공개하였다. 본 소추안에서 공개된 문건을 인용하는 경우, 최초 문건명 및 대괄호 안 문건 번호(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첨부 2. 기재 순번)을 병기하기로 하고, 이후에는 대괄호 안 문건 번호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이하 모두 같다.

이에 피소추자는 2016. 2. 2. 임종헌의 지시를 받아 송판사의 특징(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리더)과 건의문 게시 경과 및 이유, 건의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건의문은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으나 송판사의 관심이 ‘사법행정위원회의 활성화’보다는 ‘판사회의 활성화’에 있다고 파악하였다.

나) 피소추자는 2016. 2. 24.경 임종헌의 지시를 받아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229, 325]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60쪽 이하).

송판사의 위 건의문 게시 이후 ① 김OO 부장판사가 2016. 2. 15. 법률신문에 송판사의 주장을 소개하는 내용의 ‘판사와 사법행정’이라는 칼럼을 기고하고, ② 2015. 2. 23. 경향신문에 송판사의 주장을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③ 인사모가 2016. 2. 26.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상황을 종합해볼 때, 핵심그룹(우리법연구회 전/현 회원)의 조직적 활동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면서 피소추자는, 핵심그룹(우리법 및 인권법연구회 회원들, 1명 제외하고 우리법연구회 회원들)과 주변그룹(우리법 및 인권법연구회 회원들, 1명 제외하고 모두 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핵심그룹의 조직적 활동에 대하여 행정처의 대응방안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현재 핵심그룹은 ① 코트넷에 건의문 등 게시, ② 언론보도, ③ 토론회 개최 등의 방법을 활용 중인데, 핵심그룹의 조직적 활동으로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의의가 크게 반감될 우려가 존재하므로 치밀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소수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이 다수 일반 판사들의 호응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 핵심그룹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핵

심그룹과 주변그룹을 분류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 외에는 언급이 없었다.

다) 피소추자는 2016. 3. 7. 우리법연구회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 검토[307, 310]를 작성하여 임종헌에게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24쪽 이하).

피소추자는 2016.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우리법연구회 주최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에 대하여 정치 편향성 논란을 우려한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

위 문건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사안에서 야당 측 입장을 대변하는 발표자만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편향된 세미나라는 정부, 여당 및 보수 성향 언론의 공격이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상정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하였다. 그 중 ‘회의실 사용 불허안’을 검토하면서, “우리법연구회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아무런 제지 없이 법원 청사 내 회의실에서 개최함으로써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활동 허용 범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회의실 사용을 허가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 판사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검토하였다.

라) 피소추자는 2016. 3. 8.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16, 334, 335]을 작성하여 임종헌에게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26쪽 이하).

임종헌은 피소추자에게 개편방안의 구체적인 세부목차까지 알려주면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문건 [16], [334]는 피소추자가 지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초안을 정리하고 관련 주제별로 기조실 심의관들이 역할분담하여 추가 기재한 문건이고, 문건 [335]는 임종헌이 위 [16]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피소추자에게 송부한 문건이다.

위 문건들에는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조개편 및 인권법연구회의 과잉 성장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기재하였는데, 구체적 검토과제로는 ① 연구회 중복가입 기준 점검 등 연구회 활동에 대한 실질적 관리 강화, ② 기존 연구회 중 법관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떨어지는 연구회 폐쇄, ③ 합리적 예산지원 방안, ④ 젊은 법관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회 발굴 및 신설, ⑤ 롤모델 역할을 할 존경받고 신망 받는 선배 법관들의 각 연구회별 배치 추진 등을 제시하였고, 기조실(기획조정실) 심의관 4명의 주제별 역할 분담을 명시하였다.

마) 피소추자는 임종헌으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sup>2)</sup>’[280, 283, 286, 288, 289, 292]를 전달받았다(3차보고서 28쪽 이하).

위 문건은 [281]문건(‘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인사모 폐지 방안’ 및 ‘인권법연구회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역효과, 부작용 등을 평가하여 분석한 것으로, “인권법연구회 회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인사모의 자진해산을 권유함이 가장 적절하고 현실적인 방안이고, 연구회 정상화 또한 회장과 간사를 통한 자체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다.

바) 피소추자는 2016. 3. 28. 임종헌의 지시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327, 402, 328, 326<sup>3)</sup>]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61쪽 이하).

---

2) 임종헌이 2016. 3. 15. 직접 작성하였거나 타인이 작성한 초안을 검토하여 최종 수정하였을 것으로 보임. 작성 경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문서의 파일명이 ‘(160315)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임종헌 수정].hwp’인데, 임종헌의 평소 파일 저장 방식에 따를 경우 위 ‘[임종헌 수정]’은 임종헌이 최종 수정했음을 의미함.

위 문건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검토할 필요성과 후보자 추천 기준, 후보자 명단 등을 검토한 문건이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가 각 고등법원 별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핵심그룹이 사법행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폄하하고 있으므로 각 고등법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후보자 추천기준으로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을 전제로 ‘핵심 그룹과 유대관계’, ‘법관 사회의 상징성’, ‘오피니언 리더역할’을 제시하였다. 후보자 추천명단의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법관을 1순위로, 유력한 후보군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법관을 2순위로, 그 밖에 후보자 추천 기준 중 어느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법관을 3순위로 분류하였다. 후보자 추천 명단에 포함된 후보자를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에 어떻게 나누어 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사) 피소추자는 2016. 4. 2. 기조실 심의관들이 나누어 작성한 것을 취합하여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329, 330, 332, 403, 333]를 작성하였다(3차보고서 65쪽 이하).

위 문건은 추천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로 나누어 정리하고, ‘적색:1순위 검토, 청색:2순위 검토, 굵은 흑색:3순위 검토, 얇은 흑색:검토하지 않은 추천자’로 분류하였다.

아) 피소추자는 2016. 4. 4.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331, 401, 352(작성 중 파일)]를 작성하였다(3차보고서 62쪽 이하).

---

3) [327], [402] 문건은 본문과 후보자 추천 명단이 함께 있고, [328]문건은 본문만, [326]문건은 후보자 추천 명단만 존재함.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결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문건으로, 고등법원장에게 위 문건 [327]의 후보자 추천 기준에 따른 법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였다.

#### 다.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 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4. 6.경 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로부터 상고법원 설치를 건의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2014. 9.경 상고법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2014. 10.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상고법원 추진 필요성을 역설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14. 12.경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등 168명의 연명으로 상고법원 안을 주된 내용으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2) 상고심 제도의 개선은 사법부의 주요한 변화이므로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당시 위와 같이 법원행정처가 주도하여 추진하였던 상고법원안은 국민주권주의의 불충분한 실현, 위헌 논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법관 등 사법부 내부로부터 상고법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대두되자, 이를 견제할 목적으로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을 하기에 이르렀다.
- 3) 동향과 여론을 파악한 대상에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회원 등 평소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 추진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이 많았고, 그 외에 대법관 제청과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현안에 대하여 대내외 게시판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법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4) 이와 관련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소추자는 2015. 8. 18. 임종현의 지시로 ‘차OO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318]’을 작성하였다.

위 문건은 차판사가 2015. 8. 11. 코트넷에 게시한 ‘사실심 충실화 관련 판사 수 대폭 증원과 상고제한 추진 의견’이라는 글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차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재판준비태도, 일과 관련된 가정사, 고민하는 테마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있고, 다수의 판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상고법원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검토하는 내용이었다(3차보고서 90쪽 이하).

나) 피소추자는 2015. 9. 22. 임종현의 지시로 ‘차OO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320, 321]을 작성하였다.

차판사가 2015. 8. 11. 코트넷에 글을 게시한 후 계속해서 코트넷에 글을 게시하고, 2015. 9. 초순경 시사인에 5회 분량의 연재칼럼을 투고하자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다.

위 문건은 “① 차판사의 대학, 사법연수원 시절 활동경력에 비추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한 끈질긴 추진력을 갖고 있다(고시공부를 하던 중 학내 성폭력 관련 대자보 작성,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 동참 등), ② 공식채널을 통하여 문제 부분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판사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고 차판사가 존경하는 선배 및 친한 선후배 명단을 취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다(3차 조사결과보고서 90쪽 이하).

<p>바. 김*** 부장판사 사례에 대한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원 관례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중략)</li> <li>● [검토] 김*** 부장판사 사례의 경우에 대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 부장판사는 ①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에 명백하게 불합리한 부분(단순한 의견 차이만으로는 부족)이 존재하지 않고, ② 위 대법원 관례 선고 후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③ 해당 사건을 대법원 관례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법원 관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직무윤리 위반의 가능성 존재</li> </ul> </li> </ul> <p>3. 대응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원 관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징계 ⇒ 소극</li> <li>▣ 대법원 관례를 따를 수 없어 (중략) 직업적 양심을 우선시하기 어려운 경우 ⇒ 회피 및 재배당 이용 가능</li> <li>▣ (형소심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선정</li> <li>▣ 법관 연수 강화 ⇒ 법관들에게 관례의 구속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li> <li>▣ 한국형 선례 구속의 원칙 확립을 위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li> </ul>
--

라. 기타4) -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 의장 경선과 관련하여 출마 예정자의 프로필과 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더하여 경선 출마 경위와 지원 법관들의 세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다른 출마 예정자의 경선지원방법을 검토하여,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 선거에 개입할 전략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소추자는 2016. 3. 7.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322]을 작성하였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박OO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출마하자, 법원행정처가 박판사의 의장 경선 출마 경위, 의장으로 당선되었을 경우의 문제점 및 그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4) 피소추자는 2017. 2. 20.(인사이동 당일) 06:52~08:00까지 24,500여개의 파일을 삭제하였고 여기에는 당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암호파일 5개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음(3차보고서 16쪽). 이러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증거인멸, 공용서류무효 등 형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추후 검찰 수사 및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을 보임.

리고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정OO 판사를 적극 지원하되 선거공약 아이টে  
발굴, 지원단의 구성 등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선거 전략을 검토하였다(3차  
보고서 100쪽 이하).

### 3.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

#### 가. 관련 규정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러한 공무원의 공  
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  
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  
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  
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은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의 내용이, 사

법원의 가장 본질적인 재판업무에 관한 대원칙인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과 헌법 제106조의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중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재판독립은 법원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내부세력 특히 사법행정권자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또한 헌법 제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불리한 처분이란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 뿐 아니라 일상적인 법관 사찰, 자발적인 법관들의 연구 모임을 위축시키려는 조치 등도 포함된다.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과 헌법 제106조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참조).

한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

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재판업무 자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법관이 사법행정권자의 지위에서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익실현의무에 기초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일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 제103조에 따른 재판의 독립 원칙과 헌법 제106조의 법관의 신분보장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소추자 등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당연한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 나. 3차보고서의 판단기준

한편 3차보고서 19쪽에서는 의혹별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평가기준을 밝힌 바 있다.

“정책결정을 통하여 실행행위로 나간 경우 뿐만 아니라 문서작성행위, 그 작성지시행위, 논의 과정, 정책결정행위 등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면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훼손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행위별 평가이며 각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대법원 특조단 스스로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

침해나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위 기준인 재판의 독립 등은 헌법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결국 3차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차 조사단은 위 헌법상의 기준에 비추어 정도가 남용에 미치지 않는 것을 부적절로 평가하였다는 것인데, 부적절로 평가된 부분도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에 인적 책임을 물을 때는 남용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실조사의혹을 받아 왔던 3차 조사단조차 사법행정권의 남용 또는 부적절로 판단한 행위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등 헌법가치의 중대한 위반으로 적어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기준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다.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피소추자의 행위는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크게 (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행위 및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분석과 추천 개입추천 등에 관한 행위, (나)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등으로 나뉘는바,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 1) 피소추자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관련 행위

3차 조사단은 이와 관련하여 “최두호 심의관의 검토 방향이 직무감독권 행사가 엄격한 기준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극적 방향이고 김민수 심의관의 검토 방향고 김기영 부장판사 등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

급심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인 방향이긴 하였으나, 임종헌 차장은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에서 과거사 정립의 주요 판결로 인용한 긴급조치 관련 대법원 판결이 그 선고 후 6개월도 되기 전에 김기영 부장판사의 1심 판결에 의하여 부정되자 윤리감사관실의 최두호 심의관에게 직무감독권 행사를 검토하게 하고 그 방향이 소극적으로 제시 되었음에도 재차 기조실의 김민수 심의관에게 위법성, 징계 가부 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한 것은 재판의 결과를 두고 담당 판사에 대한 불이익을 검토한 것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의 문건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무윤리 위반의 가능성 존재”라고 기재하는 등 헌법상 재판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는 검토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임종헌과 함께 사법행정권의 남용, 즉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소추자는 위 행위 이외에도 법관의 독립과 법관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판사회의 선거 개입 전략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피소추자의 일련의 행위를 놓고 보면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2) 피소추자의 특정연구회 견제 및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후보 추천 관련 행위

이에 대해 3차 조사단은 “특정연구회의 소모임이 사법제도나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종헌 차장 등 사법행정 담당자가 장기간



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견제 내지 압박을 하기 위한 대응방안까지 마련한 것은 실행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3차보고서 48쪽).

또한 “임종헌 차장은 기조실 등을 통하여 2016. 3.경부터 특정 연구회에 대한 견제 내지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검토하였고, 결과적으로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계기로 2017. 2.경 중복가입 해소 조치가 시행되었는바, 이는 법관들의 학술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3차보고서 58쪽).

그리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등’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자가 후보자 추천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사법행정위원회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고,.. 후보자 추천 명단에 기재된 성향, 다른 법관들에 대한 영향력, 특정 연구회와의 관계 등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고, 후보자 추천 명단에 기재된 내용이 추후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위와 같은 명단을 작성하고 추천권자에게 일부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보임”이라고 판단하였다(3차보고서 72쪽).

따라서 피소추자가 법원 내 자율적이고 공식적으로 결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의 활동을 견제하고 나아가 이를 와해할 목적으로 [16], [19], [229], [280], [283], [288], [289], [292], [307], [310], [334], [335] 등의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에게 보고한 것은 그 자체로 실행행위로 나아갔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앞서 본 3차 조사단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이는 곧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등 헌법과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그 정도가 심한 것, 즉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행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3) 피소추자의 법관에 대한 성향, 동향 파악 관련 행위

이와 관련해서 3차 조사단은 “행정처는 주로 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이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동향을 파악하였다고 보이고... 특히 차성안 판사의 게시글, 기고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기고의 검직허가 필요성, 품위유지의무, 공정성 유지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재산관계 특이사항까지 검토한 것은 특정판사에 대한 뒷조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로서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할 것임”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던 차성안 판사에 대하여 [318], [320], [321]의 대응방안 검토 등의 문건을 작성하고 뒷조사가 없이는 알 수 없는 정보들까지 기재하여 임종헌에게 보고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법관의 독립, 법관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4)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가사 개별 문건에 따라 그 작성행위 하나만으로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해도, 피소추자가 임종헌 등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하여, 지속적으로 헌법상 재판의 독립, 법관의 신분보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의무, 부패방지권의

위법상 부패행위금지에 반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종합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 4. 탄핵의 정당성

##### 가. 대통령 탄핵과의 차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파면결정을 선고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헌법, 법률 위반의 정도’와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달리 법관 탄핵에 대하여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경미한 범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004헌나1).

먼저 법관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즉 국가적 손실, 사법질서 혼란 등을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그 수가 3,000여명에 이르고, 그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숫자도 160여명에 이르며, 대법관의 경우조차도 13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설령 위 인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탄핵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공백을 동료 (대)법관이 메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이나, 재판의 공백 등 사법질서의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일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헌법, 법률위반의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 피소추자들 역시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출세가 보장된 법원행정처의 핵심 부서 등 근무를 통해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헌법상 결코 침해되서는 안될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한편 법관의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헌법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이 헌법, 법률위반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관 파면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적은 반면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형량을 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

한편 피소추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이들이 법관 탄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기만료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하여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처분에 의하여서는 최고수위가 정직 1년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단지 법관 징계절차에 의하여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 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법농단에 관여한 피소추자는 정직처분으로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가 아니라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법원행정처를 거치는 동안 이른바 판사에서, ‘사법관료’로 변모해온 이들은, 심의관 단계에서부터 발탁되어 나중에 고등부장 승진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고 나아가 법원장, 대법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른바 출세가 보장된 법관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들을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에서 시킨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피해자 행세를 통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 동정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대법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물며,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가 법관징계법상 최장 1년의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재판장으로 복귀한다면, 국민의 법감정과도 맞지 않는데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법관 정다주로부터 재판받게 되는 당사자나 대리인인 변호사들로 부터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받게 될 것이다.

## 5. 결론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오로지 고위법관들의 사

익을 추구한 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소위 법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설마 스스로 법을 어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법관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마지막 믿을만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던 법관들에 의하여,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관 이하 고위법관들,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위배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의원 등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관 김민수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2.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첨부 2.  
기재 문건 중 아래 가항 내지 파항
- 가.[16] (160308) 전문분야연구회 구조개편방안(초안)
- 나.[19] (160202) 송OO판사건의문검토(김☆☆)
- 다.[73] (150922) 대법원판례정면위반하급심판결대책(대외비)[김☆☆]
- 라.[229] (160224)\_사법행정위원회\_개선\_요구에\_대한\_대응\_방안[1]
- 마.[280] (160315) 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임종헌수정]
- 바.[307] (160307) 우리법연구회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 검  
토(대외비)(암호설정)
- 사.[318] (150818) 차OO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3
- 아.[320] (150818) 차OO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3
- 자.[322] (160307)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방안
- 차.[327] (160328)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최종)
- 카.[329] (160402)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
- 타.[331] (160404)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검토+1

##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

### ● 역할분담

- 구조 개편 방안 ⇨ 박○○, 조○○, 임○○
- 취합, 정리, 보고서 초안 작성 ⇨ 박○○
- 수정 ⇨ 김○○

### 1. 검토 배경 ⇨ 박○○

#### ▣ 전문분야연구회의 현 구조가 만들어진지 15년 이상 경과

- 2000년 8월경 “전문분야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정
  - 2개 이상 연구회 중복 가입 금지 원칙
- 현 구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15년 전 당시 법관들의 전문법률분야 관심도, 연구수요, 연구성과, 활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설 연구회의 종류를 결정한 것이 현행 체제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음
  - 현행 체제는 큰 폭으로 변화한 법관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미흡
  - 현재가 ‘첨단 IT 산업’ 시대라면, 일부 커뮤니티의 연구주제는 ‘산업혁명’ 시대의 주제에 불과

#### ▣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필요성

- 연구회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음 ⇨ 구조조정 필요
- 변화하는 시대 환경 및 젊은 법관의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회 신설
  - 경제·사회와 시대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쟁 유형 발생, 젊은 법관들



의 관심도, 연구 수요 변화 및 재판실무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연구회 개설 필요

- 법관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휴면 상태의 연구회 폐쇄
- 운영 현황 점검 결과 신규 법관 가입이 미약하고, 활동 성과도 미비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 사실상 휴면 상태에 있는 연구회는 폐쇄할 필요 있음

#### ▣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주제 독점 및 과잉 성장에 대한 점검 필요

- ‘국제’, ‘인권’이라는 주제 포섭 범위의 보편성, 포괄성으로 인해 다른 연구회보다 관심 쟁점을 선점하는 현상 발생 ⇨ 사실상 새로운 모든 주제를 다루면서, 연구회 내부에 각종 소모임 설립
- 일반 법관 사회와 차별화된 자유롭고 편안한 조직 문화 ⇨ 젊은 법관들의 선호도 상승 및 가입 증가
- 이른바 핵심 그룹의 ‘거점’ 내지는 ‘활동 무대’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활용되고 있는 現實

## 2. 현황 ⇨ 박○○

#### ▣ 전문분야연구회 현황, 예산 배정

- 특히 젊은 법관 등 신규 법관 가입이 증가하는 연구회의 종류 및 그 원인 파악

## 3. 구조 개편 방안

#### ▣ 연구회 활동에 대한 실질적 관리 강화 ⇨ 박○○

- 활동 성과, 회원 현황, 결산 현황,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활동 계획, 소요 예산 검토를 통한 현황 파악 및 감독

#### ▣ 예산지원 ⇨ 박○○

- 사법행정 목표 및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성과를 내는 연구회에 차별적,

집중적으로 예산 지원

▣ 법관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떨어지는 연구회 폐쇄 ⇨ 임○○

▣ 연구회 중복 가입 기준 점검 ⇨ 임○○

▣ 젊은 법관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회 발굴 및 신설 ⇨ 조○○

● 국제 인권법연구회의 이슈 독점 현상 타개

-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국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슈를 독점하는 현상 타개

▣ 롤모델 역할을 할 존경받고 신망받는 선배 법관들의 영입 및 재배치  
⇨ 조○○

● 젊은 법관들을 이끌 수 있는 롤모델 역할을 할 리더급 선배 법관들을  
각 연구회에 분산 배치 <끝>

##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

### ● 역할분담

- 구조 개편 방안 ⇨ 박○○, 조○○, 임○○
- 취합, 정리, 보고서 초안 작성 ⇨ 박○○
- 수정 ⇨ 김○○

### 1. 검토 배경 ⇨ 박○○

#### ▣ 전문분야연구회의 현 구조가 만들어진지 15년 이상 경과

- 2000년 8월경 “전문분야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정
  - 2개 이상 연구회 중복 가입 금지 원칙
- 현 구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15년 전 당시 법관들의 전문법률분야 관심도, 연구수요, 연구성과, 활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설 연구회의 종류를 결정한 것이 현행 체제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음
  - 현행 체제는 큰 폭으로 변화한 법관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미흡
  - 현재가 ‘첨단 IT 산업’ 시대라면, 일부 커뮤니티의 연구주제는 ‘산업혁명’ 시대의 주제에 불과

#### ▣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필요성

- 연구회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음 ⇨ 구조조정 필요
- 변화하는 시대 환경 및 젊은 법관의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회 신설
  - 경제·사회와 시대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쟁 유형 발생, 젊은 법관들

의 관심도, 연구 수요 변화 및 재판실무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연구회 개설 필요

● 법관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휴면 상태의 연구회 폐쇄

- 운영 현황 점검 결과 신규 법관 가입이 미약하고, 활동 성과도 미비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 사실상 휴면 상태에 있는 연구회는 폐쇄할 필요 있음

▣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주제 독점 및 과잉 성장에 대한 점검 필요

- ‘국제’, ‘인권’이라는 주제 포섭 범위의 보편성, 포괄성으로 인해 다른 연구회보다 관심 쟁점을 선점하는 현상 발생 ⇨ 사실상 새로운 모든 주제를 다루면서, 연구회 내부에 각종 소모임 설립
- 일반 법관 사회와 차별화된 자유롭고 편안한 조직 문화 ⇨ 젊은 법관들의 선호도 상승 및 가입 증가
- 이른바 핵심 그룹의 ‘거점’ 내지는 ‘활동 무대’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활용되고 있는 現實

## 2. 현황 ⇨ 박○○

▣ 전문분야연구회 현황, 예산 배정

- 특히 젊은 법관 등 신규 법관 가입이 증가하는 연구회의 종류 및 그 원인 파악

## 3. 구조 개편 방안

▣ 연구회 활동에 대한 실질적 관리 강화 ⇨ 박○○

- 활동 성과, 회원 현황, 결산 현황,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활동 계획, 소요 예산 검토를 통한 현황 파악 및 감독

▣ 예산지원 ⇨ 박○○

- 사법행정 목표 및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성과를 내는 연구회에 차별적,

집중적으로 예산 지원

▣ 법관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떨어지는 연구회 폐쇄 ⇨ 임○○

▣ 연구회 중복 가입 기준 점검 ⇨ 임○○

▣ 젊은 법관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회 발굴 및 신설 ⇨ 조○○

● 국제 인권법연구회의 이슈 독점 현상 타개

-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국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슈를 독점하는 현상 타개

▣ 롤모델 역할을 할 존경받고 신망받는 선배 법관들의 영입 및 재배치  
⇨ 조○○

● 젊은 법관들을 이끌 수 있는 롤모델 역할을 할 리더급 선배 법관들을 각 연구회에 분산 배치 <끝>



#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2015. 9. 22.

기획조정실

## 1. 검토 배경

### ▣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와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주심 권○○ 대법관)
  -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선언
- 위 판례는 그 후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15444 판결(주심 고○○ 대법관) 등에서도 거듭 확인됨 ⇨ 확고한 판례로 정립

### ▣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1심 판결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3가합544225 판결 외 1건<sup>1)</sup>
  -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는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동일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

### ▣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등 진보 언론의 1심 판결에 대한 옹호

☑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는 위법행위...대법에 반기든 하급심(한겨레, 9. 17.)

▶ 대법원이 거듭 내놓은 판례를 하급심이 정면으로 치받으며 따르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판결은 결국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만큼 일선 판사들과 대법관들의 견해차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중략) “대법원 판결에 부응했던 하급심 재판부의 성찰과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 ▣ 판사들 사이에서 논의의 Frame이 왜곡될 우려

-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판사” v. “문제의식 있는 소신 판사”

1) 같은 날 같은 재판부(재판장 김○○ 부장판사)가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0175 판결



- 현재의 상황을 방지할 경우, 사회적으로 의견 대립이 치열한 사안에서, ① 대법원 판례를 따르는 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판사이고, ② 김○○ 부장판사와 같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사는 문제의식 있는 소신 판사라는 왜곡된 프레임(Frame)이 판사들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 존재

▣ **정책법원으로 변화하는 과정의 成長痛 ⇨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법치주의 발전에 따라 정치적·사회적으로 의견 대립이 치열한 사안이 법원에 접수되어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거쳐 사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 ⇨ “熟議的 民主主義(deliberative democracy)의 場으로서의 법원”
- ‘정치적·사회적 갈등 요소’가 강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늘어남에 따라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하급심 판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종교·인권(양심적 병역거부), 과거사(유신헌법하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등 한정된 영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하급심의 대법원 판례 위반 사례가 향후 성소수자 문제(동성혼), 노동, 경제민주화, 복지, 이주노동자난민,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차제에 “대법원 판례가 동종 사건에서 하급심 판결에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있음
- 영미법의 “선례구속의 원칙”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변용할지 여부 검토

## 2. [이론적 검토] 대법원 판례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

### 가. 쟁점

- ▣ **대법원 판례가 당해 사건이 아닌 동종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 헌법

#### ☑ 헌법 제103조 [법관의 독립]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 법률

#### ● 법원조직법

##### ▶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 ● 민사소송법

##### ▶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②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 ● 소액사건심판법

##### ▶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군사법원법

▶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할 때**
- 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사법원이 종전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할 때**

다. 국내의 논의

■ 윤○○ 前 대법관의 견해<sup>2)</sup>

● 대법원 판례의 직접적 구속력은 부정됨

-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상급법원의 판례가 하급법원을 구속한다는 원칙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고 하기 때문에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밖에 없고,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되는 것이 보통임
-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8조는 심급제도의 합리적 유지를 위하여 ‘해당 사건’에 한하여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고, 그 후의 동종의 사건에 대한 선례로서의 구속력에 관한 것은 아님

● 대법원 판례의 간접적 구속력은 인정됨

- 소액사건심판법 등의 규정(특히 소액사건심판법은 상고이유로서 제3조 2호에서 ‘대법원의 판단과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일종의 간접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음

● 대법원 판례의 법적 구속력의 근거

- ① 법적 안정, ② 평등의 요청, ③ 법관은 국가의 재판조직의 일원으로서

2) 윤○○, 판례의 기능, 민사판례연구 I, 박영사(1979), 357-369면



판례를 존중하며 사법전체와의 조화를 꾀할 책임이 있음

- 심급제도의 구조상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리더라도 당사자에게 시간과 비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 상급법원에 가서 결국 깨뜨려지고 말기 때문에 상급심의 선례는 하급심의 법관들에게 사실상 강한 구속력이 있음
- 법관은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해서 각기 아무런 관련 없이 직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통일적인 사법제도의 운영 중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법관은 사법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재판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원활하게 기능하기 어려움 ⇨ 하급심법관으로서는 판례를 따르지 않을 이유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논증할 수 없는 이상 판례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법관의 직업윤리임에 그치지 않고 법적인 의무임

■ **헌법재판소의 견해**

-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선고 2002헌마18 결정에서 대법원 판례 위반을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로 삼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에 관한 견해를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위 견해는 윤○○ 前 대법관의 앞서 본 논문 내용을 별도의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함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2헌마18 결정**

▶ 어떤 사건의 판례가 그 후 동종의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을 갖는가는 학문상 이른바 "선례의 구속력(拘束力)"이라든가 "판례의 법원성(法源性)"이라는 문제로서 논의되어 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선례구속성의 원리(doctrine of stare decisis)가 지배하여 온 영미법계국가에서는 판례법이 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반면, 대륙법계국가에서는 상급법원의 판례가 하급법원을 구속한다는 원칙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고 하기 때문에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밖에 없고 따라서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다른 대륙법계국가와 사정은 비슷하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심급제도의 합리적 유지를 위하여 당해사건에 한하여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고 그 후의 동종의 사건에 대한 선례로서의 구속력에 관한 것은 아니다.  
 ▶ 선례구속의 원칙을 일찍이 채택하고 있는 영미국가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일반적인 법원리라기보다 **사법정책의 문제**이고, 동 원칙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근거는 **법적 확실성(certainty), 안정성(stability), 그리고 예견가능성(predictability)**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심○○ ○○고법 부장판사의 견해<sup>3)</sup>

-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른 법관들의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일정한 준거로서 작용하는 힘, 즉 ‘준거력’을 갖는데, ‘사실상 구속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준거력은 그에서 벗어나려는 것 자체만으로는 위법성을 근거 지우지 못하므로 본질적으로 ‘구속력’은 아님
- 준거력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임 ⇨ 모든 국민은 법 적용기관인 사법부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
- 재판이라는 것은 국가작용의 하나이고, 국가의 의사표시로서, 법관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며, 재판을 받는 국민은 법관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재판은 본래 누가 담당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함 ⇨ 모든 법관은 자신만의 독단적인 관점이 아니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전체 사법부의 관점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근거] ①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전체’ 법원에 귀속시키고, 대법원에 최고법원성을 부여한 헌법 제101조, ②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후문(기본권보호의무를 이행할 때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③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 ④ 헌법 제103조의 양심은 법관의 지위에서 가지는 직업적·기능적 양심에 해당함

3) 심○○, 판례 변경의 의의, 민사판례연구XXXVI 박영사(2014), 930-931면



## 라. 일본의 논의

### ▣ 최고법원의 판례에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 견해의 근거<sup>4)</sup>

- 법적 안정성 또는 소송경제의 요청
- 재판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의 의사표시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사후적 통제로서 행하여지는 최고법원의 판단을 미리 예측하여야 할 법관의 직무상 의무
  - 하급심의 법관으로서 최고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같은 판단을 따를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 ⇨ 이러한 의무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구속력이라고 하여도 간접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있음
- 국가기관인 법원에 요구되는 평등의 요청<sup>5)</sup>
  - 법원에 의한 공평한 해결이 기대되어지는 경우에 법원은 동종의 사건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평등의 요청

### ▣ 구속력 있는 판례에 대한 하급심 법관의 대응<sup>6)</sup>

- 판례가 변경될 때까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견해(判例追隨說)
  - 대법원의 판례는 유일 최고의 법원이 한 판단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일하려는 움직임을 예정하고 있음.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문제에 대하여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하여도, 상급심에서는 판례에 따라 판단이 내려질 개연성이 높음. 대법원의 이러한 성질 및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고려한다면, 법관으로서 판례에 따라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4) 中野〇〇, "判例の拘束力について一考察," 「判例タイムズ」 제150호, 222면 [이〇〇, 판례의 의미와 구속력에 관한 소고, 판례실무연구IV, 박영사(2003), 250-252면에서 재인용]

5) 田中〇〇, 判例タイムズ 臨時増刊 14卷 13號(150), 755-760면 [이〇〇, 판례의 의미와 구속력에 관한 소고, 판례실무연구IV, 박영사(2003), 250-252면에서 재인용]

6) 西野〇〇, "裁判の過程," 「判例タイムズ」(1995), 340-346면 [이〇〇, 판례의 의미와 구속력에 관한 소고, 판례실무연구IV, 박영사(2003), 253-254면에서 재인용]



하지 않을 수 없음. 판례에 따르지 않을 것이 허용되는 것은, 그 이유를 충분한 설득력으로 논증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

● 判例基礎重視說이라고 부를만한 견해

- 하급심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①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명백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경우, ② 그 판례가 입각해 있는 기초사정에 그 후 큰 변동이 생기거나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판지(判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혹은 ③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판례상의 일반적인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견해

● 判例豫見說이라고 부를만한 견해

- 재판이라는 것은 국가의 작용이고, 국가의 의사표시이며, 법관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기관이라는 입장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은 본래 누가 담당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어야 함. 상소심에서 시정될 수 있다는 것은 차선의 방법이고, 본래 제1심 단계에서 모두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될 판단과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이 이상적임. 법관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 같은 판단에 구속되는 것이고, 판례는 그것을 예측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며, 판례가 직접 법관을 구속하는 것은 아님

마. 영국의 선례구속의 원칙(the doctrine of judicial precedent)<sup>7)8)</sup>

■ 내용

- 각급 법원은 서열상 상위 법원이 내린 이전의 판결에 구속되므로, 하위 법원은 동종의 사건에서 상위 법원이 내린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음

7) 또는 the principle of stare decisis

8) 제〇〇, 영국의 선례 변경, 민사판례연구XXXVI, 박영사(2014), 1179-1180면



- 항소법원의 어떤 부에서 내린 이전의 판결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을 다루는 항소법원의 법관을 구속함

■ 선례의 구속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술

● ① 구분 (Distinguishing)

- 유사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선례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하는 것 ⇨ 결국, 선례의 적용범위는 동일·유사 사건을 다루는 그 후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체화되는 결과가 됨

● ② 선례 변경 (Overruling)

- 나중에 다른 사건을 다루는 상위 법원이 하위 법원에서 생성한 이전의 선례를 변경하는 것. 같은 급의 법원은 다른 부에서 내린 선례를 변경할 수 없음. 대법원은 자신이 내린 선례를 변경할 수 있음

● ③ 선례 이론의 예외

- 선례를 무시하는 것 ⇨ 항소법원과 상급법원이 동급의 다른 부에서 생성한 선례를 무시할 때 활용하는 기법으로 매우 예외적인 사안에만 허용됨

바. 김○○ 부장판사 사례에 대한 판단

■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대법원의 판례가 하급심에 대하여 '직접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 구속력' 또는 '준거력'만 갖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한○○, 헌법학(2015), 1339면

▶ 하급심법원은 당해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설사 동일한 종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급법원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또한,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견해에 따라 판결해야 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급심법원에 의하여 파기환송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 정○○, 헌법학원론(2015), 1407면  
 ▶ 하급법원의 판례가 상급법원의 판례에 사실상 구속되는 경우가 있으나, 하급법원이 반드시 상급법원의 판례에 합치하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을 두고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고, 향후 상급심에서 시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도 인정할 수 없음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이 경우에는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직무윤리’ 위반 가능성 존재

- [원칙] 하급심 판사의 대법원 판례를 따를 의무
  - ①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 ② 법적 안정성의 요청, ③ 헌법 제103조의 양심은 법관 개인의 양심이 아닌 직업적 양심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급심 판사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전체 사법부의 관점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담함



- 소액사건심판법이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허용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할 때’를 상고이유로 삼는 것은 하급심 법관에게 ‘대법원 판례를 따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5267 판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定義的)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라고 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 [예외]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① 대법원 판례의 적용범위(射程距離)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해당 사건이 대법원 판례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거나(영미법상 선례의 구속성을 벗어나기 위한 기술 ⇨ 구분: Distinguishing), ② 대법원 판례가 입각해 있는 기반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거나, ③ 대법원 판례가 명백하게 불합리하다는 사정(단순한 의견 차이만으로는 부족)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여야 할 것임
- [검토] 김○○ 부장판사 사례의 경우에 대한 판단
  - 김○○ 부장판사는 ①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에 명백하게 불합리한 부분(단순한 의견 차이만으로는 부족)이 존재하지 않고, ② 위 대법원 판례 선고 후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③ 해당 사건을 대법원 판례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할만한 특별한 사





정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직무윤리 위반의 가능성 존재

### 3. 대응 방안

#### 가. 직무감독권 발동 여부 ⇨ 소극

##### 1) 일반론

▣ 법관의 재판 관련 행위도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무감독권 행사의 대상이 됨

- [사례] 국선변호인선정 취소결정 소급작성[감봉 4월 징계(2014년)], 법정구속 관련 고지절차 등 위반[구두경고(2007년)] 등 다수

▣ 독일, 일본, 미국의 경우도 법관의 재판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독일] 폐지된 법률을 적용한 경우, 법원조직법상 변호사에 대해 질서유지수단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음에도 소송지휘에 불응하는 변호사를 법정경위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끌어내도록 한 행위
- [일본] 집행유예 결정자이고 징역형에 처하여야 할 사건을 부주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과거 유사 유형의 실수가 2회 더 있어 계고처분을 받은 사례(1963년),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최고재판소 스스로 제정한 형사소송규칙시행규칙을 간과하여 오판을 하여 과료 처분을 받은 사례(1950년)<sup>9)</sup>
- [미국] 뉴저지주 판례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상 잘못은 원칙적으로 징계

9) 裁判所法逐條解説 中券(1969), 146쪽; 兼〇〇 외 1인 裁判法(제4판), 264쪽은 재판업무에 관한 재판관 징계원인으로 '법령 적용, 준수 상 명백하고 중대한 과오'를 들고 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것이 충분히 신중하고 능력 있는 법관을 기준으로 할 때 “명백한” 실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분명한 증거가 있으며, 아울러 법관의 잘못이 ‘터무니없는 것(무능)’이거나 ‘악의적’이거나 반복된 잘못이어서 그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를 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2) 검토 의견

### ■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징계 ⇨ 소극

- [이론적] 대법원의 판례가 하급심에 대하여 ‘직접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 구속력’ 또는 ‘준거력’만 갖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판사들의 인식] 많은 판사들이 ‘판례의 사실상 구속력’, 즉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전체 사법부의 관점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음 ⇨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하급심 판결을 선고한 판사에게 직무감독권이 행사될 경우 판사들의 심각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언론 환경] 직무감독권이 행사될 경우 한겨레, 경향 등 진보언론과 야당에서는 “법관의 독립 침해” 운운하며 법원을 공격할 것이 명백함 ⇨ 직무감독권 행사는 부작용이 매우 큰 양 날의 칼

## 나. 회피 및 재배당

### ■ 법관의 직업적 양심 ⇨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대법원 판례를 따를 의무

-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은 법관의 지위에서 가지는 직업적·기능적 양심이므로,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헌법 제19조가 정하는 자신의 개인적 양심과 헌법 제103조가 정하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적 양심을 후퇴시키고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우선시켜 재판하여야 함<sup>10)</sup>

☑ 정○○, 헌법학원론(2015), 1403면

국가의 권력작용인 재판을 함에 있어 법관에게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관이 가지는 이러한 개인으로서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재판하라는 것이 아니다. 법관이 가지는 개인적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법관 개인의 다양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동일한 성질의 사건에서까지 구구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것은 **재판으로서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 법관으로서의 직업적·기능적 양심에 따를 때, 하급심 판사는, ①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전체 사법부의 관점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담하고,<sup>11)</sup> ② 이와 같은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논증이 필요함

☐ 직업적 양심을 우선시키기 어려운 경우 ⇨ 회피 및 재배당 이용 가능

- 민사소송법 등 ⇨ 회피

▶ 제49조(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대법원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를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라고 판시하고 있음
- 당해 사건의 쟁점에 대해 하급심 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법원 판례의 적용을 거부하고, 자신의 개인적 양심을 앞세우는 경우는 “법관과 사건과

10) 정○○, 헌법학원론, 박영사(2015), 1403면

11) 심○○, 판례변경의 의의, 민사판례연구XXXVI, 박영사(2014), 931면



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라고 불 여지 있음

**☑ 대법원 2007.11.15. 자 2007마1243 결정**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 재배당

**▶ 제26조(재배당)**  
①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4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절의 절차에 준하여 **재배당**을 실시한다.  
**▶ 제14조(배당확정의 효력)**  
사건배당이 확정되어 사건배당부에 등록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4.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다. 사건 신속 처리 트랙(Fast Track) 개발

■ 필요성

- 1심에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항소심에서의 심리가 지연되면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필요가 있음

■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

- 1심에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항소심에서는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 제2조 제3호 또는 제5호)으로 선정함으로써 항소심에서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



**☑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  
**제2조(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기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은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3조 제2항 각호의 중요사건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1. 처리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2. 다수당사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사건
3.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4. 사안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5. 그 밖에 당사자의 수,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라. 법관 연수 강화 ⇨ 법관들에게 판례의 구속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 필요성

- 대법원 판례가 동종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을 구속하는지 여부, 즉 ‘판례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직접적 구속력’, ‘사실상 구속력’, ‘준거력’ 등 논의가 분분(紛紛)하고, 법관들의 이해의 정도가 높지 않음
-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으로 의견 대립이 치열한 사안에서, ① 대법원 판례를 따르는 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판사이고, ②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사는 문제의식 있는 소신 판사라는 왜곡된 프레임(Frame)이 판사들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 존재

■ 내용

- 법관연수 중 경력별연수(신임법관연수 포함), 재판장연수(초임단독, 합의, 항소재판장)에서 ① 판례의 개념, ② 판례의 사정거리, ③ 판례의 구속력, ④ 영미국가에서의 선례구속의 원칙의 한국적 변용 등을 강의



- 김○○ 부장판사 사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의 무죄판결 선고 사례 등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관들 사이의 진지한 토론 유도
  - 법관들에게 판례의 구속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개인적 양심을 앞세워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사들에게 자신의 판결이 법관연수에서 강의 및 토론 자료로 사용된다는 사실 자체로 일정한 시그널(Signal)을 줄 수 있음

마. ‘한국형 선례 구속의 원칙’ 확립을 위한 연구 ⇨ 사법정책연구원

■ 필요성

- 판례의 중요성 증가 ⇨ “대륙법계 구조 하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되고 대법원의 판례에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영미법의 선례구속의 원칙을 우리나라의 법체계 하에서 어떻게 변용하여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함
  -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선례구속의 원칙은 일반적인 법원리라기보다 사법정책의 문제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 근거는 법적 확실성(certainty), 안정성(stability), 예견가능성(predictability)이라고 설명됨<sup>12)</sup>
-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의견 대립이 치열한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하급심 판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고정 관념을 벗어나 ‘판례의 구속력’에 대한 진지한 고찰 필요

■ 내용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한국형 선례 구속의 원칙’ 확립을 위한 연구 실시  
[끝]

12)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2헌마18 결정

#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6. 2. 24.

## 기획조정실



#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2016. 2. 24.

기획조정실

## 1. 검토 배경

### 가. 사건 진행 경과

#### 1. 29.(금)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

- [발표] 송○○ 판사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
- [참석] 사○○, 이○○, 정○○, 이○○, 김○○ 부장판사, 박○○, 홍○○, 이○○, 이○○, 김○○, 이○○, 신○○, 진○○, 류○○, 홍○○ 판사
  - ※ [밑줄 표시] 우리법연구회 前, 現 회원(이하 같음)
- [내용] 발표문의 **요旨**
  - [헌법 정신] 헌법상 법관 독립의 원칙은 ‘법관의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규정 ⇨ 수직적 사법행정체계는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음
  - [법원조직법의 개정 필요성]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관료적 사법행정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은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되어야 함 ⇨ 단, 현실적으로 개정은 쉽지 않음
  - [무엇을 할 것인가?] 법원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판사회의의 활성화 및 사실상 의결기구화를 통하여 수직적, 관료적 사법행정체계를 수평적, 민주적 법원운영방식으로 바꾸어야 함 ⇨ 사법행정위원회를 판사회의의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

송○○ 판사(○○기)

▶ [특징]

-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리더

(사진)





- 인사모 등 각종 소모임을 결성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現 활동 방식은 송판사가 우리법연구회에서 구축한 활동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임

▶ [주된 관심사]

- [요약] 송○○ 판사의 주된 관심은 '사법행정위원회의 활성화'보다는 '판사회의의 활성화'에 있음 ☞ 사법행정위원회를 판사회의의 활성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임
- [목적]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 ⇨ "판사회의라는 회의체 중심의 수평적 사법행정"으로 전환
- [수단] ① 각급 법원에서의 판사회의의 활성화, ② 미국연방사법회의와 유사한 전국 단위의 전체판사회의의 결성 및 활성화

㉔ 2. 1.(월) 송○○ 판사가 코트넷의 '제도개선법관토론방' 게시판에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 게시

☑ 건의문 내용 요약

1.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에 대한 판사회의의 선출 필요
  - 위원의 2/3 또는 적어도 과반수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해야 함
2. 각 위원회를 총괄하는 전체회의를 만들어야 함
3.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판사회의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각급 법원 판사회의의 내규 개정 필요

● 법관들의 반응 (건의문의 게시 범위: 법관 限定)

- 2. 24. 01:00 현재 조회수 636, 댓글 27개
- 2015. 9. 15. 제도개선법관토론방이 개설된 이후 게시된 총 38건의 게시글 중 조회수 636회로 5위, 댓글수 27개로 2위 ☞ 조회수가 더 많은 4개의 글들은 모두 부장·배석 관계 등 합의부 운영에 관한 것임
  - [조회수] ① 801 > ② 741 > ③ 670 > ④ 665 > ⑤ 636 > ⑥ 606
  - [댓글수] ① 32 > ② 27 > ③ 22

● 분석 ⇨ '댓글 작성' 등 조직적 대응의 분위기가 감지됨

- 송판사의 게시글이 법관들의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긴 하나, 조회수에 비하여 댓글수가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임 ☞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핵심 리더인 송○○ 판사가 자신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보임

- 댓글 작성한 대부분의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고, 비회원인 일부 판사(예: 강○○ 판사)는 송판사와 같은 방 사용
- 송판사와 친분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모 판사가 전○○ 부장판사(前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게도 댓글 작성을 부탁하였다고 함

③ 2. 15.(월) 김○○ 부장판사가 법률신문에 “판사와 사법행정”이라는 제목의 칼럼 기고하여 송○○ 판사의 주장 소개

- [기고 경위] 송○○ 판사 등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임
- 김○○ 부장판사는 2015년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였음
- 송○○ 판사의 2. 1.자 코트넷 게시글이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지 않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통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법률신문 칼럼 필자인 김○○ 부장판사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임

☑ 김○○ 부장판사 칼럼 中 송판사의 주장을 소개한 부분

▶ 최근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의 주요영역에 관하여 전국 법관들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방안'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그 발표 후 코트넷의 제도개선법관토론폰방에는 이에 공감하면서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대표의 3분의 2 또는 과반수는 각급 판사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어야 한다'는 건의문이 게시되었고, 많은 판사가 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④ 2. 23.(화) 경향신문에 송○○ 판사의 주장 소개하는 기사 게재

- [게재 경위] 송○○ 판사 등이 코트넷 게시글을 경향신문에 전달한 것으로 추측됨

☑ 침묵 깬 판사들 “사법행정 참여 위원 우리가 뽑자” (경향, 2. 23.자)

22일 법원에 따르면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서울중앙지법 송○○ 판사가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판사는 이 글에서 “사법행정위원회(가칭)에 참여할 위원들을 판사회의를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라도 각 위원들의 과반수는 선출된 판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에는 다른 판사들의 지지글도 다수 올라오고 있다.

■ 5. 2. 26.(금)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 개최 예정

● “사법행정 참여·판사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토론회”

- [주제1] 판사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발표자: 김○○ ○○지법 부장판사(30기, 2014년도 ○○○○지법 단독 판사회의 의장)

- [주제2] 각급 법원 판사회의 내규 분석 및 개정안 제시

▣ 발표자: 홍○○ ○○○○지법 판사(35기, 익명카페 이사야 운영자)

- [참석 예정] 김○○, 김○○ 부장판사, 박○○, 박○○, 홍○○ 판사, 김○○ 부장판사, 이○○, 이○○, 문○○, 진○○, 류○○, 이○○ 판사 (2. 24. 03:00 현재)

나. 분석과 전망

■ 사건 경과를 볼 때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 분위기가 감지됨

● 핵심 그룹은 주로 우리법연구회 前, 現 회원이고, 주변 그룹은 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임

▶핵심 그룹
[우리법] 이○○, 김○○, 정○○, 이○○, 유○○, 김○○ 부장판사, 박○○, 박○○, 송○○, 홍○○, 이○○ 판사
[인권법] 김○○ 부장판사
▶주변 그룹
[우리법] 이○○ 판사
[인권법] 이○○, 이○○, 신○○, 이○○, 문○○, 진○○, 류○○, 홍○○ 판사

■ 조직적 활동 분위기를 추정할 수 있는 징후들

● 송○○ 판사 게시글에 대한 댓글수가 조회수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음



- 송판사와 친분이 있는 일부 판사들이 댓글 작성을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예: 전○○ 부장판사에 대한 댓글 작성 독려)
- 송판사의 게시글에서 ‘사법행정위원회’라는 법원행정처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정확한 명칭 사용
  - ‘사법행정위원회’라는 명칭은 사법행정위원회 설립 TF 내부 보고서 이외에는 언급된 적이 없음
  - 송○○ 판사가 행정처 내부 人脈 활용하여 행정처 보고서를 입수한 것으로 추측됨
- 송판사의 글이 코트넷에 게시되고 한참 지난 후 법률신문 칼럼, 경향신문 기사에 송판사의 주장이 보도됨
- 송판사의 발표문에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기재되어 있음

☐ 송○○,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 中 (코트넷 게시글 첨부파일)

“4. 2016년 판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가. 판사회의 실질화, 정례화를 위한 각급 법원 내규 개정 작업 및 직급별 판사회의 정례화
- 나. 판사회의를 통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출방식 건의 및 위원회 위원 참여다. 판사회의의 기관(의장, 간사, 운영위원) 선출방식에 있어서 직선제 도입 및 후보 참여라. 전국법관회의 창립을 위한 연구 및 기초 작업”

- 사법행정위원회 및 판사회의에 관한 인사모 토론회를 연속하여 개최
  - 1. 29.(금) 1차 토론회에 이어 2. 26.(금) 2차 토론회 개최
- 조직적 활동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 방안 확립 필요
  - 현재 핵심 그룹은 ① 코트넷에 건의문 등 게시, ② 언론보도, ③ 토론회 개최 등의 방법을 활용 중
  -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으로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의의가 크게 반감될 우려 존재 ⇨ 치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통해 소수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이 ▲다수 일반 판사들의 호응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 ▲핵심 그룹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음

## 2. 핵심 그룹 주장의 함의·파급효과 분석

### ■ 긍정적 함의·파급효과

- ①위원회 자체에 대한 事前 붐업(boom-up) 효과 기대
  - 위원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임 ⇨ 공식 발표 후에는 붐업 과정이 필요
  - 아직 출범 전이기는 하나, 현재까지는 위원회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부족함 ⇨ 각종 개선 요구는 그 자체로 적극적·긍정적인 관심을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임
- ②운영 과정에서 실질적 참여 기능 극대화 기대
  - 실제로 선정된 위원은 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것
  - 법관들 역시 위원회의 운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위원들에게 솔직하고 생생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 것

### ■ 부정적 함의·파급효과

- ①특정 소수에 의한 소통 창구 독점 우려
  - 대체로 소극적인 성향을 가진 법관들의 특성상, 스스로 출마하여 선출되는 법관들은 단순한 ‘사법행정’에 대한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
  - ‘가장 적합한 사람’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의도가 있는 사람이 선출되는 결과가 우려됨 ⇨ 나아가 특정 소수 세력이 위원회를 장악할 우려가 있음
- ②전체 법관 여론 왜곡 우려



- 일단 선출된 이후에는 일종의 대의제 기관 ⇨ 위원의 독자적인 견해도 전체 법관의 여론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특히 전체회의에서 누구나 모든 안전에 관하여 토론할 수 있게 되면 위원 하나하나의 개성이 증폭 가능 ⇨ 전체 법관 여론이 왜곡될 우려도 있음
- ③ 사법부 위기 상황 발생 시에 대립·갈등 증폭 수단화 우려
  - 위원회 구성이 왜곡되거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비대해질 경우 오히려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고 이를 증폭시키는 역기능이 우려됨
  - 특히 피드백을 강화하자는 요구는 위기 상황 시에 자칫 대립·갈등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음
- ④ 판사노조 등 법관권익옹호를 위한 세력화의 단초 제공 우려
  - 사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각종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할 측면이 바로 ‘법관권익옹호를 위한 세력화와의 연관성’임
  - 이미 송 판사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에 (방론이기는 하나) ‘판사노조’에 대한 언급이 있기도 함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어떠한 적정선’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이에는 지나치게 비활성화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활성화되는 경우도 포함함)에는 곧바로 법관권익옹호를 위한 세력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⑤ 법원공무원단체(법원노조) 활동에 간접적·부정적 영향 우려
  - 위원회 활동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활성화될 경우 법원공무원단체 활동에도 시너지 효과를 미치게 될 것임 ⇨ 노사협의회에 유사한 정책협의기구 설치·실시 요구가 강화될 우려가 있음



### 3. [총론] 대응의 전제 조건·유의점

#### ■ ① 요구 수용 시 不可逆性

- 요구의 방향이 ‘사법행정권의 하향 이양’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수용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는 없음에 유의하여야 함

#### ■ ② 한편, 요구 불수용 시에도 요구 방향대로 제도 變遷 가능성

- 위원회 출범 후 특히 까다로운 부분이 위원 인선 작업이고,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할 각급 법원 수뇌부도 이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이에 관한 마찰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속 법원 법관들에게 선택권을 사실상 위임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음
-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는 모양새에서 시작하여 결국 직접 선출도 목인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
- 출범 첫해에는 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는지 몰라도 해가 거듭될수록 누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 ③ 지나친 강경 대응 시에는 후폭풍·반작용 우려

-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확장성이 매우 강한 명분을 확보함 ⇒ 이를 강하게 거부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 우려

#### ■ ④ 반면, 현재에는 요구에 대한 관심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음

- 방식 자체가 다소 급진적이고 생경하여 ‘제안 자체’에 대한 격려와 관심이 있을 뿐 ‘요구 관철’에 대한 관심이 크지는 않음
- 과거 서울중앙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직접 선출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법원 내규 개정 과정에서는 대다수 법관들이 무관심 내지 거부감을 드러내었던 전례 참고
- 현재 이미 위원 직선제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담은 글이 게시됨



#### 4. [각론①] 대응 방안

##### 가. 가능한 대응 방안

##### ① 무시 전략

###### ▣ 내용

- 법원행정처의 구상만을 無色透明하게 설명
- 핵심 그룹 주장의 요지인 ‘위원의 2/3 또는 적어도 과반수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음

###### ☑ ‘무시 전략’에 따른 코트넷 공지문 (예시)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제5조 제1항). 위원의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심급, 권역, 직급 등 전국 법관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적정 규모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고려되었습니다. 한편,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되, 법원행정처장은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장에게 관할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법관에 대한 추천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3항).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의 수를 결정한 다음, 고등법원장이 관할 구역 내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급, 직급 및 성별 등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위원을 추천하고, 법원행정처장은 고등법원장의 추천을 존중하여 위원을 위촉하게 될 것입니다.

###### ▣ 논거

- 핵심 그룹은 어차피 소수 ⇨ 多數의 일반 판사는 판사회의를 통한 선출 주장에 별다른 관심이 없음 ⇨ 그대로 두면 핵심 그룹의 주장은 少數의 목소리로서 조용히 묻힐 것임
- 현재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는 ‘사법행정에 판사들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으로서 개혁적인 정책
- 핵심 그룹의 주장은 법원행정처의 개혁 정책을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견인하겠다는 것임 ⇨ 핵심 그룹의 주장은 그 성격상 파괴력을 갖기 어려움





▣ 신○○ 대법관 사태, 서○○ 판사 사태처럼 ‘법관의 독립 침해’, ‘연임 탈락’ 등 다수의 판사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재판, 인사, 사무분담과 관련된 주장이 아님

- 핵심 그룹의 주장에 답변할 경우 핵심 그룹의 주장을 둘러싼 논쟁이 불필요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 핵심 그룹이 설정한 의제에 법원행정처가 끌려 다니는 결과 ⇨ 사법행정위원회 출범의 취지가 크게 반감됨

### ▣ 부작용

- 핵심 그룹은 자신들의 주장을 법원행정처가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조직적 반발의 수위를 높일 수 있음
- 핵심 그룹이 조직적 반발의 수위를 높이면서 법원행정처의 ‘무시’, ‘불통’ 이미지를 강조할 경우 당초 관심이 없던 다수의 일반 판사들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되면서 핵심 그룹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큼
- 핵심 그룹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국 사례, 논거들을 계속적으로 유포할 경우 핵심 그룹이 설정한 의제와 프레임에 법원행정처가 계속 끌려 다니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 ⇨ 의제 선점 효과
- 사법행정위원회 출범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상황 ⇨ ‘판사회의를 통한 위원 선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어떻게든 언론에 설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임

### ▣ 무시 전략에 따른 때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의 코트넷 공지문 게시
- 핵심 그룹은 자신들이 무시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직적 반발의 수위를 높임 ⇨ 법원행정처의 불통 이미지 강조

#### ☑ 핵심 그룹이 사용할 수 있는 조직적 반발 수단

- 1 코트넷에 게시글 연달아 올리기



- ② **판사회의를 개최하여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판사들은 판사회의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거나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임의로 선출**
- ③ **연판장 등 공동 성명**
- ④ **경향, 한겨레 등 진보 성향 언론과의 공조**

- '법원행정처의 불통 이미지'에 공감하는 상당수의 일반 판사들이 핵심 그룹 지지
- 위기 상황 도래
-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핵심 그룹의 주장 일부 수용

## ② 일부 설명 전략

### ■ 내용

- 원칙적으로는 법원행정처의 구상을 無色透明하게 설명
- 다만, 핵심 그룹이 주장하는 '위원의 2/3 또는 적어도 과반수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을 받아들일 수 없는 논거를 우회적·간접적인 방식으로 설명

### ■ 논거

- 핵심 그룹은 어차피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목표는 ① 다수의 일반 판사들이 심리적 동요를 일으켜 핵심 그룹의 지지를 보내는 상황 방지 및 ② 부정적 언론보도의 확산 방지
- 법원행정처가 핵심 그룹의 주장에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답변을 해 줄 경우 법원행정처의 '불통', '일방통행' 이미지는 완화될 수 있음 ⇨ 핵심 그룹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더라도 다수의 일반 판사들이 핵심 그룹을 지지할 가능성 낮아짐 ⇨ 핵심 그룹의 고립화

### ■ 부작용

- '무시 전략'의 논거와 동일



- 핵심 그룹의 주장에 답변할 경우 핵심 그룹의 주장을 둘러싼 논쟁이 불필요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 핵심 그룹이 설정한 의제에 법원행정처가 끌려 다니는 결과 ⇨ 사법행정위원회 출범의 취지가 크게 반감됨

■ 일부 설명 전략에 따른 때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의 코트넷 공지문 게시
- 핵심 그룹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조직적 반발 시도
  - ① 코트넷에 게시글 연달아 올리기, ② 판사회의 개최하여 건의문 채택 또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석할 대표자 선출, ③ 진보성향 언론과의 공조
  - 법원행정처가 핵심 그룹의 주장에 우회적·간접적이거나 응답한 이상, 핵심 그룹도 연판장 등 공동 성명을 할 명분이 없음
- 다수의 일반 판사는 핵심 그룹의 주장에 무관심
  - 법원행정처의 응답과 설명이 일정 부분 논쟁은 만들 수 있지만, 법원행정처의 '친절한 이미지'가 구축됨으로써 다수의 일반 판사들이 심정적으로 핵심 그룹을 지지하게 되는 현상은 방지할 수 있음

나. 검토 의견 ⇨ ② 일부 설명 전략

■ 법원행정처의 '친절한' 이미지 구축 & '불통' 이미지 강화 방지

- 다수의 일반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불통' 이미지에 대한 반감으로 소수의 핵심 그룹에 심정적 지지를 보내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음 ⇨ 소수 핵심 그룹의 고립화 유도

■ 핵심 그룹의 문제제기를 통한 논쟁 확대는 오히려 붐업(Boom-up)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핵심 그룹의 문제제기는 과도하지 않는 한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적극적·긍정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일부 설명 전략을 취하는 한 핵심 그룹의 문제제기가 과도한 방향으로



확대되어 다수 일반 판사의 공감을 얻는 방향으로 가기는 힘들 것임

### 5. [각론②] 일부 설명 전략에 따른 '대외적 설득 논리'

#### ① 법관평의회 등 독일 사례를 원용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 공지문에 포함될 설득 논리(예시)**

▶ 사법행정권한이 행정조직인 법무부에 귀속되어 독립한 사법행정조직 체계를 갖지 못한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는 독립된 사법행정조직을 갖추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는 바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우리와 유사하게 독립된 사법행정조직을 갖추고 있는 미국 연방법원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사례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② 미국연방사법회의 같은 전국법관회의를 설치하자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 공지문에 포함될 설득 논리(예시)**

▶ 미국의 연방사법회의는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13명은 항소법원장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1명은 국제무역법원장이 맡으며, 나머지 12명은 Federal Circuit을 제외한 12개의 Circuit에서 각 Circuit별로 1명씩 선출된 지방법원 판사가 맡게 됩니다. 연혁적으로 미국의 연방사법회의는 연방항소법원장들로 구성된 회의체에 지방법원 판사들을 참여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현재 전국법원장회의가 미국의 연방사법회의와 가장 유사한 조직이므로, 전국법원장회의를 미국의 연방사법회의와 유사하게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등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개편 방안은 대법관회의와의 관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들을 초래하므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③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 공지문에 포함될 설득 논리(예시)**

▶ 미국연방법원의 경우 연방사법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심도 깊은 토론 없이 사실상 그대로 추진하는 의례적인 행사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의 모습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은 미국 연방법원의 상임위원회입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 25개 상임위원회의 약 300명에 이르는 위원들을 미국연방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고등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한편,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토론이 가능하려면 위원의 수가 적정 규모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모든 법원장에게 위원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적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권역, 심급, 직급, 성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므로, 추천권자는 고등법원장에 한정하였습니다. 실제 운용 과정에서 고등법원장은 소속 고등법원의 법관뿐만이 아니라 관내 모든 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위원을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 고등법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원 참여를 희망하는 법관들의 자원 또는 추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초기 성과 분석 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논리

☑ 공식적 명분·논리  
▶ “무엇보다도 위원회 제도의 조기 정착·연착륙을 위해서 현 시점에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실천 가능하고 효율적인 안정적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양하고 실질적인 여러 시도는 위원회의 초기 성과를 관찰·분석한 후에도 늦지 않을 것임”

- 어떠한 이념적·실질적 논리를 제시하기보다 현실론과 방법론의 측면에서 신중론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을 것임
- 실제로 대부분의 법관들 역시, 위원회 출범 자체가 사법행정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최초에는 가급적 부작용이 덜한 방법을 택하는 데에 대하여 지지할 것임

6. 향후 계획

▣ 2. 25.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 코트넷 공지문 게시

- 2. 26. 개최 예정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 전에 공지문 게시 필요

▣ 2. 26. 통합실무지원단 구성

- 구성
  - [단장]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법원문화개선위원회]
    - 최○○, 문○○ 심의관, 조○○ 기획조정심의관, 기획제2심의관
  - [재판제도발전위원회]



- 김○○(민사), 한○○(형사), 권○○(가사) 심의관
- [코트넷 전용 공간 설치]
- 임○○ 정보화심의관
- 역할
- 사법행정위원회 안건 발굴
- 사전점검 항목 추출 및 준비
- 내부 관심도 제고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끝>



---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

2016. 3. 15.

---

## 1. 문제점

- ‘인사모’ 를 중심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명백히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여 비정상적 운영을 하고 있음
-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회원들은 ① ‘인사모’ 의 활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거나(회원으로 가입은 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누가 ‘인사모’ 에 소속되어 있고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관하여 관심이 없는 소극적 성향의 부류), ② ‘인사모’ 를 중심으로한 비정상적 연구회 활동이 연구회 안에서 연구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

## 2. 대응방안

- ‘인사모’ 의 자발적 해산 방안
  - 회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인사모의 자진해산을 권유함이 가장 적절하고 현실적임 → 회장의 자진해산 권유과정에서 다수 일반회원이 인사모 활동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우려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 있음
  - 운영위원회 결의, 총회 결의 등에 의한 폐지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실현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
  - 행정처 차원의 인사모 폐지권고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책으로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함이 타당
  - ‘언론 활용을 통한 거리낌 증대로 말미암은 폐지’ 또는 ‘우리법연구회 후신 규정’ 방안은 역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하지 않음
  - ❖ 언론이 그 기회를 활용하여 ① ‘민사판례연구회’ vs ‘우리법연구회’



와 같은 이념성 논란을 재점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② 그 과정에서 이념성과 사실상 특별한 관련 없는 내부 연구회(예; ‘민사집행법연구회’ 등)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이념적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언론 framing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 있음 → 법원과 법관 전체의 신뢰 추락 가능성

## ■ 연구회 정상화 방안

- 대다수 일반 회원은 순수한 학문적 관심과 ‘국제인권’에 대한 관심에 따라 가입한 회원들임
  - 이념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고, 특히 36기 이하의 법관들은 이념적 편향성이 적고, ‘국제법’ 등에 대한 관심에 따라 연구회에 가입한 법관들이 많음
- 다만, 대다수 법관들이 연구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특정한 이념적 지향성이 있는 법관들이 연구회의 운영을 주도하는 형국
  - 따라서 ‘인사모’ 폐지 후 연구회 운영이 정상화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연구회의 회칙상 회장과 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회장과 간사를 통한 연구회 정상화 시도가 가장 바람직함
  - 현 회장 및 간사를 통하여 일반 회원의 우려, 행정처의 우려, 국제인권법 연구회 전체가 부당하게 낙인찍힐 가능성 등을 전달하고 자체적 해결 노력을 권유할 필요
- 현실적으로 연구회 활동 평가에 따른 예산의 차등지급 등의 방안은 연구회 운영의 정상화를 유도하기는 어려움
  - 예산이 적게 배정되더라도 ‘인사모’ 등의 활동을 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내부적으로 코트넷 커뮤니티를 통해 연구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공식적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으나, 어차피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는 회원들 역시 ‘인사모’ 운영과 관련 있는 핵심 회원들이므로 별다른 호





응을 얻지 못할 가능성 있음

- ⚡ 실제로 대다수 회원은 그러한 문제제기에 찬동할 것이나 평소 소극적 성향 때문에 ‘댓글’ 등을 통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임**
- ⚡ 반면에 그러한 문제제기에 **핵심 회원들만 강력 반박하는 댓글을 달 가능성 高** → 현재 상황의 고착화 내지 악화 우려

## ■ 장기적 대응방안

-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더라도 동일·유사한 문제가 국제인권법연구회든, 그 밖의 연구회든 집행부나 연구회를 주도하는 **핵심 회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시 발생할 수 있음**
- 재판에 관련된 연구회도 다룰 수 있는 주제와 쟁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언제든지 유사한 문제 발생을 상정할 수 있음
- ⚡ 예컨대, ①국제거래법연구회에서 한미FTA 관련 이슈 등을 통하여 사법행정, 외교 영역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고, ②형사법연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병역법위반 관련 이슈를 통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으며, ③젠더법연구회에서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의 성차별 문제제기 등을 할 수도 있음
- 문제의 핵심은 ‘전문분야연구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회 임원진의 구성에 법원행정처가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것임
- ⚡ 따라서 이 부분도 향후 심도 있는 검토 필요함. 다만, 위 규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최소한 법원행정처에서 커뮤니티 활동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신설 필요 ⇨ 매년 활동계획을 보고하도록 한 뒤 ‘승인’, ‘수정요구’ 등 회신
- ⚡ 학문 연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제기가 우려되나, 개인적인 학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 커뮤니티에서의 활동방안’에 관한 적절한 범위의 관리로서 국가예산을 지급하는 이상 심사권한을 보유함이**



---

상당

- 중복가입 금지원칙 적용 강화, 연구회별 회원수 제한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끝>



# 우리법연구회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 검토

2016. 3. 7.

기획조정실

## 1. 검토 배경

### ▣ 우리법연구회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 개최 예고

- [일시] 2016. 3. 19. (토) 14:30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층 중회의실
- [발표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 교수
- [주제]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 ☑ 발표자 '강○○ 교수' 프로필

- ▶ [경력] 現 ○○대 로스쿨 교수 (1965년생)
- ▶ [학력] 서울대 법학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 [관심분야] 비정규직, 임금, 근로시간, 단결권, 노동권
- ▶ [주요 활동]
  - ※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입법에 대해 批判的 입장 견지하며 활발한 대외 활동 중
  - 2015. 10. 14. 국회 환노위 소속 野黨 의원들이 "9/15 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주최한 노동법 3개 학회 공동토론회(한국노동법학회,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한국비교노동법학회)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로 발표
  - 2015. 12. 10. 한국노동법학회 발간 학회지인 노동법학을 통해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근로시간, 해고, 취업규칙의 개정론을 중심으로" 발표
  - 2015. 12. 22. 국회 환노위가 개최한 '노동관계법 공청회'에서 野黨 추천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노동법 5대 법안의 검토'에 관한 의견 진술

#### <은수미 의원이 트위터에서 소개한 강○○ 교수의 국회 환노위 공청회 발언 내역>



성남중원과더불어은수미

Follow

강성태교수, "정부의 근로시간지침은 황당하다. 이 지침은 주44시간일때 최대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그런데 주40시간이되자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4시간 더 늘려" 지침통치로 장시간 근로1위, 독일보다 4개월 더일하는 나라로 만든 정부 #은수미



성남중원과더불어은수미

Follow

강성태교수, "정부여당 비정규직법은 법률이라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시행령이 많다"(노동법공청회) 국회를 우회한 시행령과 지침독재조. 국민보기에 민망하지만 재벌보기에 당연할터이고 경총은 이조차도 부족하다고. 재벌독재를 완성할모양 #은수미



성남중원과더불어은수미

Follow

강성태교수, "현행법은 기간제로 2년하고 하루 지나 더일하면 무조건 정규직. 그런데 정부여당 법은 4년 하루가될경우 현행법과 달리 무조건 정규직조항없애고 이직수당 주고 해고시키는법. 합리적사유있으면 그조차 안줘. 법적후퇴" #은수미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외협력팀 ⇨ 회원들에게 위 세미나 안내 및 홍보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외협력팀장인 이○○ 판사(○○기)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코트넷 게시판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우리법연구회의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를 홍보하면서 참석을 권유
- 2016. 3. 6. 15:00 현재 총 16개의 댓글이 달리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댓글은 주로 대외협력팀의 출범을 축하하고, 활동을 격려하는 내용

☑ 이○○ 판사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코트넷 커뮤니티 게시글

1. 대외협력팀은 종전의 '국제협력팀'과 '기획팀 중 대외협력' 부분을 합하여 새로이 구성된 팀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국내외 인권 관련 단체 및 개인의 관심과 교류 요청이 점차 커짐에 따라 이러한 추세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응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주된 활동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 1) 국내외 국제인권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과 상시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유지 및 강화(외부에 연구회를, 외부 단체 및 행사를 연구회에, 쌍방향으로 소개함)
- 2) 연구회 국제화연수 주관 및 지원
- 3) 연구회 주최 국제행사 지원

현재 팀원은 저 포함 5명으로, 새로 생긴 팀인 만큼 젊고 활기차게 활동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외협력팀 활동에 관심 있으신 회원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2. 오늘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지침' 세미나를 안내 드립니다.

(중략) 현안에 관한 시의적절하고 흥미진진한 내용의 주제 발표가 예상됩니다. 관심 있는 회원 분들의 참석인원도 파악이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니, 참석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2016. 3. 4. (금)까지 댓글, 메일,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 2. 예상되는 문제점들

### 가. 정부, 여당 및 보수 성향 언론의 공격

#### ▣ 노동개혁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 輿野간 첨예한 대립

- 여야간 첨예한 입장 차이 ⇨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법안들은 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

- 정부, 여당은 2월 임시회 종료일(3. 10.)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는 4월 총선 전 처리는 힘든 상태 ⇨ 주요 정치 쟁점으로 지속

#### ▣ 첨예한 정치 쟁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 ⇨ 외부에 알려질 경우 정부, 여당 및 보수 언론의 공격이 우려됨

- 우리법연구회의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이 공개세미나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 비공개세미나일 것으로 추정됨

- 비공개세미나이더라도 세미나의 주제, 발표 및 토론 내용 등이 외부에 알려질 危險性은 상존

-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성향 언론의 기자들이 알게 될 경우 정부, 여당 및 보수 성향 언론사의 사법부 및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될 것임

- 특히, ① 우리법연구회가 법원 청사 내 회의실에서 위와 같은 세미나를 개최한 사실, ② 법원 내 공식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위 세미나를 소개, 홍보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의 정치적 활동을 묵인하였다거나, ▲그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할 우려가 존재함

#### ☑ [예상 가능한 보수 언론의 비판]

- ① 정치 단체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고, 소속 판사들을 징계하라.
- ② 왜 대법원은 우리법연구회의 정치적 활동을 묵인하고 있는가?



▣ [참고] 우리법연구회의 공개세미나가 언론에 보도된 사례 존재

- 우리법연구회는 2009. 10. 10. 공개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음
  - 발표: 최○○ 부장판사 (현 변호사)
  - 주제: 노동사건 심리상 몇 가지 문제점
  - 지정토론: 김○○ 부장판사(○○기), 이○○ 판사(○○기)
  - 장소: 서울고등법원 회의실
- 당시에는 공개세미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하였음 ⇨ 세미나 내용이 언론에 자세하게 보도되었고,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에서는 발표 내용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음

☑ 파업 (김○○ 논설위원, 동아일보 2009. 10. 13.자 칼럼)

- ▶ “파업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법원 내 이른바 ‘진보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10일 마련한 공개세미나에서 인천지법 최○○ 부장판사가 한 말이다. 그는 ‘노동사건 심리(審理)상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우리나라의 법해석은 1800년대 야만적인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사회인식과 역사의식의 퇴영적인 발로”라고 주장했다. (중략) 토론자로 나선 이○○ ○○지법 판사는 “발표자의 견해에 따를 경우 파업이 전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해도 노조가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반론을 폈다.
- ▶ 강성노조의 과격한 투쟁으로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외국계 기업에서 작년과 올해 일어난 34건의 분규 중 33건이 강성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일어났다. 폭력까지 동원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면 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판이다. 법관은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노사관계를 바라봐야 한다.



나.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

▣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사안에서 야당 측 입장을 대변하는 발표자만 초빙한 세미나 개최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문제됨

- 세미나 발표자인 강○○ 교수는 야당 측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15. 12. 22. ‘노동관계법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여당, 야당 추천 진술인을 골고루 초청한 것과 비교됨
  - [여당 추천 진술인] ① 이○○ 경영자총협회 상무, ② 권○○ ○○대 교수, ③ 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④ 윤○○ KDI 연구부장
  - [야당 추천 진술인] ① 강○○ ○○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② 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③ 정○○ 한국노총 본부장, ④ 이○○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 정치적으로 편향된 세미나라는 주장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음

- 逆으로, 與黨 측 입장을 대변하는 관계자(이○○ 경영자총협회 상무, 권○○ ○○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만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경우 한겨레, 경향 등 진보 성향 언론에서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지적하면서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임

☑ 법관윤리강령

제3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법관의 직무외 활동)

① 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문화 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정치적 중립)

- ①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 ② 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 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 실제로 경향신문은 2016. 2. 15.자 기사로 사법연수원이 지난 2010년 법관연수에 청와대 행정관을 강사로 초청하여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와 소통’이란 주제로 강의를 맡기려 한 것을 비판한 바 있음

☑ “법관연수에 청와대 인사 부르려 한 판사 대법의 입으로”(경향신문 2016. 2. 15.)

▶ 법관연수에 청와대 인사를 동원하려다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판사가 대법원을 대표해 발언하는 공보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오는 22일자로 조○○ 재판연구관을 대법원 공보관에 임명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조 판사는 법관연수 기획교수이던 2010년 6월, 제3차 경력 단독판사 연수에 청와대 행정관 ㄱ씨를 ‘국가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와 소통’이란 주제로 강의토록 했다. 당시 연수 대상 법관들은 공식적으로 항의를 전달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그리고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와대 강의가 있는 날의 연수를 모두 거부하겠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알려져 취재가 시작되자 사법연수원 측은 “언론사에 이 문제를 제보한 판사를 색출했으며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언론이 법원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으며, “법관들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를 홍보할 셈이냐”는 질타에 박○○ 법원행정처장이 별달리 해명하지 못했다.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5호 위반 가능성 높음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0. 3. 15. 권고의견 제5호로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 발표
  -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 쟁점 사항에 관하여 야당 측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만을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행위 ⇨ “법관이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외관이나 상황을 만드는 것” 또는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대중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권고의견 제5호 위반 가능성 높음
  -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의 위와 같은 행위는 “향후 해당 법관이 맡게 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 (2010. 3. 15. 권고의견 제5호)

▶ 법관은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또는 청렴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아가 법관은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외관이나 상황을 만들어서도 아니 됩니다(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3조, 제7조).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대중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 또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법관은 직무상 활동과 마찬가지로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위와 외관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사법의 신뢰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3. 대응 방안

#### 가. 가능한 견해들

##### ▣ [1안] 서울법원종합청사 회의실 사용 不許

- [장점①] 서울고등법원 청사관리내규 등 관련 규정 및 원칙에 충실
  - (내규) 서울고등법원 청사관리내규 상 우리법연구회는 비록 법관들로만 구성된 연구모임이더라도 법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법원 외부 연구모임이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세미나실, 회의실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
  -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민사판례연구회 등과 같은 법원 외부 학술단체도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회의실, 세미나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우리법연구회의 서울법원청사 내 세미나실, 회의실 사용 가부 ⇨ 不可

▶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세미나실,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근거 규정

- 서울고등법원 청사관리내규(이하 '내규')
- ▶ 내규에 의하면,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관리권은 서울고등법원이 보유하나, 일부 시설(예를 들어, 동관 4층 중회의실) 관리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임되어 있음
- ▶ 내규 제5조(허가기준)에 따르면, 연구 모임의 회의실 사용은 ① 연구모임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법원직원이어야 하고, ② 법원이 일부 또는 전부를 재정적 지원하는 연구모임이어야 함 ⇨ ①, ②는 "AND" 조건임
- ▶ 우리법연구회는 ① 법관들로만 구성된 학술모임(2005년경 변호사들은 모두 탈회)이지만, ② 법원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법원 외부의 연구모임임 ⇨ 내규상으로는 회의실, 세미나실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

- [장점②] 보수 언론 등의 비판에 대한 사법부의 부담 감소
  - 우리법연구회의 세미나 개최 사실이 보수 언론 등에 알려지더라도, 법원청



사 외부의 공간에서 독자적으로 개최한 행사이므로, 최소한 대법원 또는 서울고등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묵인, 방관하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있음

● [장점③]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에 대한 시그널

-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법연구회의 前, 現 회원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상황

☑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의 관계

- ▶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전, 현 회원들이 대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경향 존재
- ▶ 노동법연구회의 경우 그 주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젊은 법관들의 가입이 저조함
- ▶ 반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① 주제의 보편성('국제', '인권'), ② 연구회 내부 조직 문화의 참신성(법관 사회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편안한 조직 문화라고 함)으로 인하여 젊은 법관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우리법연구회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아무런 제지 없이 법원 청사 내 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 사실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활동 허용 범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우려 존재
- 법원 청사 내 회의실 사용 不許 ⇨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간담회 개최 등의 모임을 할 경우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음

● [단점] 법관 사회의 여론이 매우 악화될 우려 존재

- 우리법연구회는 오랜 기간 동안 서울법원종합청사의 회의실 및 세미나실을 아무런 제지 없이 계속 사용해 왔음
  -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① 20층 세미나실, ② 동관 14층 소회의실, ③ 동관 4층 중회의실 등을 사용
- 회의실 사용 불허의 이유로 내규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더라도 우리법연구회는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간섭 내지는 탄압으로 받아들일 소지 다분



☞ 우리법연구회가 회의실 사용 불허 처분을 공론화시킬 우려 존재

- 다수의 일반 판사들의 입장에서든 오랫동안 계속 사용해 오던 회의실을 갑자기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될 우려가 큼 ☞ 내규를 엄밀하게 따지기 보다는 '판사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이 법원 내 회의실도 이용하지 못하는가'라는 감정적인 호소가 다수의 일반 판사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임
- 만일 세미나 내용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회의실 사용을 불허했다고 알려질 경우에는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정당한 학문 연구 활동' 내지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발할 가능성도 큼

■ [2안] 무대응 ⇨ 서울법원종합청사 회의실 사용 허가 및 방관

- [장점] 법관사회의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논거는 [1안]의 단점 부분과 동일
- [단점] 세미나 개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보수 언론 등의 비판에 대한 사법부의 부담이 커짐

■ [3안] 법원 내 회의실 사용 등에 대한 의견 간접 전달

- [장점] 우리법연구회와 의사소통이 잘 되는 법관(예: 윤○○ 부장판사, 최○○ 심의관)을 통해 우리법연구회 임원진(회장: ○○기 문○○ 부장판사, 간사: ○○기 박○○ 판사)에게 이번 세미나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보수 언론 등의 逆風을 맞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세미나는 법원 외의 장소에서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
  - ☞ 우리법연구회의 심리적 저항감 감소
- [단점①] 우리법연구회 임원진이 위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회의실 사용 불허처분을 하는 것 이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음 ☞ 우리법연구회 임원진은 법원행정처가 우리법연구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위와 같은 간접적 의견 전달을 통하여 법원행정처가 우리법



연구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평소의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결과가 됨

- 실제로도,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문○○ 부장판사가 위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 [단점②] 비록 간접적인 의견 전달 방식을 취하더라도, 그동안의 오랜 관행과 달리 법원 외의 장소에서 세미나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자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운영진이 심리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법원 행정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조직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됨

나. 검토의견 ⇨ [2안]과 [3안]의 절충안 “회의실 사용 허가 + 우려 전달”

▣ 회의실 사용 불허가는 시기적으로 부적절

- 회의실 사용 불허가 사실이 알려질 경우 다수의 일반 법관들의 여론이 악화될 우려 존재 ⇨ 3월에 집중되어 있는 판사회의, 상반기에 출범할 사법행정위원회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
-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그룹이 판사회의 개최 및 사법행정위원회 출범과 관련하여 조직적인 반발을 할 가능성 존재
- 회의실 사용 불허가 여부는 판사회의 구성 및 사법행정위원회 출범이 완료된 뒤인 2016년 하반기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

▣ 신임 법원행정처장님께 부담이 될 우려 존재

- 처장님 취임 초기에 우리법연구회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그룹은 이번 조치를 신임 처장님 취임에 따른 정책 기조 변경(예: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인식할 가능성 존재

▣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 크지 않고, 외부에 알려질 경우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신속한 대응 가능

- 우리법연구회가 세미나 개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



는 한 세미나 발표 내용 및 토론 결과가 보수 언론에 알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외부에 알려질 경우 아래와 같은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신속 대응 가능
  - ① 법관 윤리와 법관의 학문 연구 활동의 한계에 대한 입장 발표
    -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 구체화
  - ② 법원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연구모임의 법원 청사 내 회의실, 세미나실 사용 금지

■ [2안]에 대한 보완 조치

⇒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가 진심 어린 우려 전달

- [필요성] 회의실 사용을 허가하더라도, 우리법연구회의 이번 세미나가 갖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할 필요는 있음 ☞ 법관윤리에 관한 대법원 등의 감독 조치의 일환
- [구체적인 방법]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간사인 박○○ 판사(○○기)를 불러서, 아래와 같은 진심 어린 우려를 전달

☑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가 전달할 사항

▶ [공감, 격려]

- 원래 내규상으로는 회의실 사용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법관들로 구성된 학술단체의 세미나인 점을 고려하여 회의실 사용을 허가하였음

▶ [진심 어린 우려]

- 잘 알고 있겠지만, 이번 세미나 주제는 여야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관한 것임
- 해당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작년 12월에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여당, 야당 추천 진술인을 골고루 초청하였음
- 이번 세미나의 발표자인 강○○ 교수는 국회 공청회에서 야당 추천 진술인으로 의견을 밝힌 분으로서 야당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관들로 구성된 학술단체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사안에서 야당 측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만을 불러서 세미나를 할 경우 언론에서는 우리법연



구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법연구회와 사법부를 공격할 가능성이 큼

-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경향신문에서는 최근 2. 15.자 기사에서, 사법연수원이 지난 2010년 법관연수에 청와대 행정관을 강사로 초청하여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와 소통'이란 주제로 강의를 맡기려 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음
-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법연구회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5호인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 따라서 우리법연구회가 세미나를 개최할 때,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들을 골고루 초청하여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외관을 갖출 필요가 있음

<끝>



#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2015. 8. 18.

기획조정실

## 1. 차○○ 판사 프로필

(사진)	차○○ (35기) 1977. 10. 30.	19○○ ○○ ○○고 졸업 20○○ ○○대 법학과 졸업 20○○ ○○○○지법 (정○○ 前 부장판사 우배석) 20○○ ○○○○지법 20○○ ○○지원 20○○. 8. ~ 20○○. 2. ○○ 장기해외연수(1년 6개월)
------	-------------------------------	--

- 장애인 관련 법률에 각별한 관심 ⇨ 다수 논문 집필
  -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와 친분 두터움
- ○○대학교 대학원 사회보장법 전공
- 現 국제인권법 커뮤니티 회원
- ○○ 장기해외연수(1년 6개월, ○○○○○연구소) ⇨ 방대한 양의 충실한 해외연수 보고서로 행정처에서 호평을 받았음

## 2. 사건 경과

### ▣ 8. 11. 코트넷에 글 게시

- 8. 7. Facebook에 상고법원 및 사실심 충실화 문제에 대하여 고민 중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손○○ 교수(성균관대 로스쿨)의 글 링크
  - 손○○,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 법률신문 연구논단
- 8. 11.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토론광장, 커뮤니티 등에 “사실심 충실화”



관련 판사 수 대폭 증원과 상고제한 추진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 게시

-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주요안건 게시판 중 토론마당(법관 외 직원들도 열람 가능), 민사재판커뮤니티, 국제인권법 커뮤니티

● 8. 11. 친분 있는 판사들에게 같은 글을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의견 구함

- 이메일에 대한 전체회신의 방법으로 친분 있는 판사들과 활발한 토론 중

#### ■ 8. 11.자 코트넷 게시글의 주요 내용

● 상고법원 도입의 전제로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고심의 비중이 고착되거나 악화되고, 이는 사실심 판단이 보다 자주 뒤집힐 가능성을 늘려 사실심에 대한 심리를 더욱 악화시킴

● 늦더라도 정공법으로 상고제한 제도를 추진하면서 판사 1인 당 사건부담을 대폭 줄여서 사실심을 충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 호○○ 교수, 손○○ 교수의 주장을 논거로 사용

● 현재 우리나라의 판사 1인 당 사건 수는 독일의 3~4배이나, 독일보다 사건 처리 속도는 빠름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비정상적인 판사 1인 당 사건 수를 대폭 감소시키는 것

- 법원행정처가 사실심 충실화 방안으로 제시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전문심리관제도, 특성화 법원 제도 등은 본질적 수단이 될 수 없고, 극히 일부 사건에 한정된 효과만 있을 뿐임

- 차○○ 판사 본인의 경우 독일식 집중구술심리모델을 시도하고 있으나, 거의 변론 전날에 날을 새게 되고, 야근과 주말근무가 더 늘어나고 있음

● 판사 수를 최소 1.5배, 최대 3배까지 증원해서 독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사 1인 당 사건 수를 줄이면 사실심 충실화가 가능해짐

#### ■ 판사들의 반응





- 게시글이 높은 조회 수를 보이면서 **판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주요안건 게시판 중 토론마당 ⇨ 8. 13. 기준 조회수 180
  - 민사재판커뮤니티 ⇨ 조회수 662(수정 前 글) 및 525(수정 後 글)
- 댓글을 분석해 보면 **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아래 4가지로 나뉨
  - ① 법관 수 대폭 증원에 찬성(이○○, 권○○ 부장판사, 박○○, 이○○ 판사)
  - ② 법관 대폭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법관 보조인력 대폭 증원**(사법보좌관, 상근조정위원, 재판연구원 등 비법관인력 대폭 충원, 일반 법관과 처우를 달리하는 특정분야 전담법관 확충)이 현실적인 대안임(문○○ 부장판사)
  - ③ 법관 수 대폭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판사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서 사건 적체를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심리기법을 실험해야 함 ⇨ 지나친 과로와 편법적인 재판 진행을 멈추는 실천(예: 사건 적체 집단 결의) 필요(홍○○, 오○○, 김○○ 판사)
  - ④ 조정전치주의 등 **조정활성화**를 위한 시도를 해야 함(정○○ 판사)

■ **현재까지 법원행정처의 대응**

- 8. 11. 사법지원실 이○○ 심의관이 사실심 충실화의 내용을 설명
  - 특히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으로 2019년까지 판사 정원 370명이 순차 증원될 예정임을 설명
- 이○○ 판사의 설명 글에 대해 정○○ 판사가 댓글로 아래와 같이 질문 하였으나, 아직 답변하지 않은 상태
  - “상고법원 도입으로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되면, 상고법관의 수와 연구관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로 인해 사실심의 결원이 발생하면 앞으로 예정된 법관 증원으로 결원 보충이 가능한지”

3. 차○○ 판사의 상황



■ 코트넷 글 게시 경위

- 재판 준비에 매우 철저한 성실한 성격의 소유자
  - 재판 전날은 거의 밤을 새우고, 수시로 야간 및 주말 근무
  - 사건 메모를 하다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함

☑ 8. 11.자 이메일

과로 속에 살아온 지난 날이 슬퍼서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 직전에, 메모를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작성하다가,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달려갔는데, 임종은 못 뵈었는데, 그 때 참 슬펐는데, 다시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1-2일 연속으로 날을 새다시피 하지는 않지요. 재판에 대한 기대기준을 낮추어야겠지요. 과로사 위험을 낮추려면, 한국에 만연한 과로사회에서, 판사만 주 8시간 보장받으면서 판결을 쓰는 것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실험하는 모델에서 평균 근로시간은 일 8시간이 아닌 일 10시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기타 업무에 쓰지 않은 시간을 모두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실근로로 매일 10시간을 일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사실심 충실화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독일 유학에서 복귀한 후, 독일식 집중심리를 민사재판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재의 업무량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코트넷에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임

☑ 8. 12.자 이메일

300건대 초반의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주 50-60시간의 근로와 반복적인 날샘근무로 이런 성과를 낸 것은 일반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실험한 모델은, 전국 법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사실 실패입니다. 지금의 사건 배당 수준하에서는. 그런데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서,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과도한 초과근로시간을 적정한 수준의 초과근로로 줄일까. 제가 실험한 모델은 꽃도 못 피어보고, 실험자의 체력과 건강 문제로, 다시 퇴행의 방향으로 내리막을 걷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타협을 한 판사가 저 혼자만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아니 상당히 아쉽다는 것입니다. 사건배당이 1/2로만, 아니 1/1.5 정도만 되면, 계속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까지 보완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결성 화해권고라는 묘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독일 판사보다 높은 효율로 열추 비슷한 재판과정의 투명화와 신뢰회복 기능을 가지는 집중 구술변론 모델을 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 다함께 사건적체를 감수하자는 다른 판사의 주장에 대해 “사건적체를 감수할 용기가 없다”고 답변

**☑ 8. 13.자 이메일**  
 지금 토론의 과정에서, 판사 수 증원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과로를 줄이고, 비정상적인 사건처리 관행을 버리자. 사건을 빨리 처리하자는 강박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 판사님부터 줄여 보십시오. 그러면 대법원장님을 설득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못하실 것입니다. 저도 고민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판사 한 100명이 같이 한다면 해볼만 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 **상고법원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 견지 ⇨ 법관증원 + 상고허가제**

- 상고법원이 핵심의제로 설정되면서 하급심 법관 증원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 지적

**☑ 8. 11.자 이메일**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1심 판사의 대폭 증원이 사실심 충실화의 가장 큰 과제라고, 판사들, 변호사들, 학자들의 상당수가 일치하여 이야기하지만, 상고법원안과 결합된 사실심 충실화 방안 건의문에서 단 한줄이라도 언급이 되었습니까? 부정적인 선을 넘나드는(예를 들어 칼럼의 사실상 대필작성 등) 입법로비의 치열함과 뻔뻔함을, 1심 판사 대폭 증원에 일부라도 쓸 수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고법원이 가장 우선해서 추진해야 할 지상역점 과제니까요.

- 대법원의 업무부담이 문제라면, 하급심의 업무부담도 문제라고 지적

**☑ 8. 11.자 이메일**  
 대법관 1인의 사건부담 수가 너무 많아 상고심 판단이 약화되고, 느려지고,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대법관 1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심의 판사들에게도 공통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뭐, 대법관이 가진 1건의 가치와 의미가 사실심 법관 1인이 가진 1건의 가치와 의미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혹은 없을까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대법관 1인의 사건부담 수를 줄이려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고심 사건 수를 늘리는 상고법원안은, 주객이 전도된 논의가 아닐까요? 법률심으로서 상고심 비중의 정상성이라는 면에서, 상고법원은 비정상을 더 비정상으로 만드는 안이 아닐까요?

- 현재의 과도한 업무량이 비정상적 재판, 사법불신을 낳는다고 확신

**☑ 8. 11.자 이메일**



사건이 폭주할 때, 충실화된 심리로, 사건처리를 늦추어야 했던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대응방안이었을 것입니다. 불충분한 심리로(충분과 불충분의 기준은 개인 판사의 의견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 1심 재판의 평균적 수준은 불충분입니다) 통계에 맞추어 사건처리 속도를 빠르게 유지, 혹은 더 빠르게 만드는 방향으로 달려온 것이 지금의 파국(...파국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기는 합니다)에 달한 것입니다.

- 전형적인 이론가 ⇨ 본인 스스로 상고법원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상태이고, 현재 대법원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

**☑ 8. 11.자 이메일**  
사실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만큼, 뛰어나면서,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진 엘리트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집단도 한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고법원에 사로잡힌 이 집단 지성의 획일성과 의사소통의 경직성, 검증되지 않은 주입된 논리에의 순응성 내지 자기내면화는 왜일까요? 특히 상고법원 안과 관련하여서도, 충실한 자기생각으로 고유한 사색을 행하여 답을 찾아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논리를 보여주는 판사님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 심리불속행 폐지에 대한 반감이 가장 강함

**☑ 8. 11.자 이메일**  
상고법원 도입과 심리불속행 폐지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고심 비중을 더 올리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이 전 이상합니다. 이견 상고심이 법률심이어야 한다는 명제에서 가장 먼저 도출되는 결론입니다.

- 법관 노조와 같은 법관 결사 단체의 결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8. 11.자 이메일**  
제 글에서 빠진 수많은 문제의식 중 하나는 법관 결사조직, 법관 단체의 역할론입니다. 한국도 한국 법관연합 등의 단체가(독일이나 프랑스는 법관노조도 있지만, 노조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한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겠지요?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요. 상고법원이 불가피한 논리와 비슷해졌네요. 하지만 이 부분은 진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무게를 지고 있는 문제니까요). 한국 사법부의 의사결정 구조는, 행정처로 대표되는 사법행정 관료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법관 결사 단체의 부존재로 인하여 더 왜곡된 측면이 큼니다. 거기에다가, 재판업무로 치이는 일선 판사의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 고민한 여유는 더 없고, 견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 대법원은 판사 수의 대폭 증원을 바라지 않는다고 확신

☑ 8. 13.자 이메일

▶ 대법원은 판사 수의 대폭 증원은 바라지 않고 500명의 증원을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만, 상고법원에 쏟는 에너지를 판사 수 증원에 다 쏟아 부으면 500명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증원이 가능합니다. 상고법원이 태풍의 눈처럼, 다른 중요한 이슈에 들일 노력을 먹어갑니다.

▶ 지금 엄청난 통제압박으로 판사들을 관리하고, 감사 때마다 다양한 통계분석으로, 조금이라도 사건처리율이 내려가면 압박해가는, 이 시스템의 정점에는 대법원장님이 있는데, 신속한 심리를 대법원장님이 내려놓는 결단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대법원장님은 판사 수를 늘리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풍문을 자주 들었고, 어느 한 판사님은 사건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 판사는, 늦게 까지 일하기 싫다는 판사는 법원을 나가라는 이야기를 대법원장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했는데... 제가 들은 풍문들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 아닌 듯 합니다.

■ 대법관 증원론에도 호의적인 입장 유지

- 핵심적인 주장은 ① “법관 대폭 증원을 통한 사실심 충실화”와 ② “상고허가제”이지만, ③ “대법관 대폭 증원”에도 호의적인 입장 유지 ⇨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증원론”을 동시에 추진하면 대법원 재판이 더욱 충실해 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됨 ⇨ 민변의 입장과 유사(실제로도 차○ ○ 판사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친분이 있음)

☑ 8. 13.자 이메일

▶ 대법관 증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법원만 OK하면 대법관은 금방 증원됩니다. 상고법원 반대론자들이 다 대법관 증원을 원하는데,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만 OK하면 됩니다. 50명, 100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3-4명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3~4명과 50명, 100명 사이에는 무수한 숫자들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무엇을 근거로 하신 것인지 궁금한데, 혹시 전원합의체의 문제를 이유로 한 것이라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200명(부정확할 수는 있습니다)의 법관이 있는 민, 형사 사건을 다루는 연방일반법원의 예를 부정적 예로 드는데, 과연 기능의 측면에서, 독일 연방일반법원 혹은 5개 연방법원이 만들어내는 상고심 판결들의 질("질"은 뭘로 평가할까요?)은 일부 부간의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국 대법원보다 결코 낮지 않습니다. 사실 더 높겠죠. 사회적인 존중과



신뢰도도 높고. 전합문제를 해결하는 나름의 방법론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많은 판사수의 장점을 가릴 정도는 결코 아닙니다. 스페인에 연수 다녀 온 분께, 20-40명의 스페인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방법론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 몇 개 안되는 전원합의체를 가지고 전원합의체의 어려움을 대법관 증원의 반대 논거로 드는 것은 표면적이고, 대법원은 대법관 수가 느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법원 외부의 인사들이 다수 들어올 통로가 된다는 위기의식, 그래서 법원의 독립을 해할 수 있다는 논리... 이 부분은 별도의 논쟁적인 이슈이므로 나중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합니다.

▶ 소부간의 판결의 불일치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소부 간의 불일치는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진행하는 사건의 뇌손상으로 인한 편마비에서 파생장해에 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도, 2개의 대법원 판결이 모순됨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이지, 발견되면 그 다음 사건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로 그런 모순의 가능성은 점점 더 줄입니다.

**☑ 8. 17.자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토론광장 게시글**

▶ 주변의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가들부터 설득하고 토론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전 변호사 단체 고위 임원으로서는, 사실심 충실화 논의를 전제로 한 상고법원에 찬성한 분께 전화를 드려 40여분 정도 토론을 해봤고, 사실심 판사 대폭(1.5배~3배) 증원으로 1심에서 모든, 주장, 입증을 다 심리하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증거발굴에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상고허가제 도입이 바른 방향이라는 공감을 얻었습니다. 다만 법원의 정책의지의 진정성을 문제삼으면서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해봐라. 그러면 대법원의 진심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불신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는 점도 사실대로 밝혀봅니다.

## 4. 대응 방안

### 가. [총론] 방향 설정

☐ 관망 v. 사전예방적 대응 ⇨ 사전예방적 대응 필요

- 차○○ 판사의 주장이 '상고허가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걱정할 수준은 아니므로, 당분간 관망해 보자는 주장도 존재
- 차○○ 판사의 문제의식은 '상고허가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핵심은 '상고허가제'가 아니라 '법관증원'이고 이는 서기호 의원 등이 주장하



는 ‘대법관 증원론에 기초를 둔 상고법원 반대론’과 맥락을 같이 함

☑ 서기호, '상고법원의 새로운 시작,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한겨레, 7. 29.)  
필자가 판사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법원이 일선 판사들에게 '충실한 재판보다는 신속한 재판'을 은근히 강요한다는 것이다. 판사들의 근무점수를 주는 법원장들은 사건처리 건수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일선 판사들은 사건 처리 속도와 처리 건수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심지어 판사들에게 사건처리 통계표를 회람시키는 법원장도 있었다. 소속 법원의 사건처리 속도를 잘 관리하는 법원장들은 대법관 후보로 낙점받는 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판사들에게 있어 '사건'이란 당사자들의 억울함이 절절히 묻어나는 '해소되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신속히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한다.

- 차○○ 판사가 제기하는 의문을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면, 오해에서 기인한 다소 과격한 주장을 하는 다른 판사들의 글들이 코트넷 게시판에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생각이 정리되면 글을 하나 올리겠다는 판사들 여럿 있음), 만일 언론보도가 된다면 상고법원 입법 전략에 가해지는 피해가 너무나 클 것임

☐ 지원장, 법원장의 개별 면담 v. 논리적 설득 ⇨ 논리적 설득 필요

- 차○○ 판사는 현재 상고법원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완료된 상태 ⇨ 자신의 의문을 풀어줄 논리적 답변을 원함
- 논리적 설득 논거 없이 법원장, 지원장 등을 통한 개별 면담은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많음

나. [각론] 구체적 대응방안

① [1단계] 행정처 경험 있는 부장판사를 통한 논리적 설득

- 차○○ 부장판사(○○기, ○○○○지법, 前 사법등기국장) ⇨ 차○○ 판사와 사촌관계
- 차○○ 부장판사가 차○○ 판사에게 아래의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설명
  - 현재 심리불속행결정을 할 때에도 일반 상고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건 기록을 검토하되, 결정문만 간이하게 작성하고 있을 뿐임 ⇨ 심리불속행제



도를 폐지하더라도 판결문을 작성하여 답변기능만 강화될 뿐이고, 상고심의 업무부담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님

- 차○○ 판사가 주장하는 ‘상고허가제 + 법관증원론’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경우 현재의 입법 상황에서 서기호 의원 등이 주장하는 ‘대법관 증원론’으로 연결되어 왜곡될 위험이 존재함

**☑ 차○○ 부장판사의 설득 결과 ⇨ 실패**

- ▶ 차○○ 부장판사가 지난 주말 각 2시간 정도씩 2회에 걸쳐 차○○ 판사와 통화하였으나 차○○ 판사 설득에 실패
- ▶ 차○○ 판사의 답변 요지(지난 주말: 8. 16.)
  - 상고심 기능 개선의 가장 이상적인 수단은 **상고허가제**인데, **상고법원**을 도입할 경우 **상고허가제 도입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법관 대폭 증원을 통한 업무경감**인데, **현재 대법원이 제시한 사실심 충실화 방안은 법관 대폭 증원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으므로 미봉책에 불과함**
- ▶ 답변 이후의 상황 ⇨ 차○○ 판사 8. 17. 코트넷 글 다시 게시
  - 법관 증원을 위한 판사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변호사들에 대한 판사 개개인의 설득이 필요함
  - 대법원이 마련한 사실심 충실화 계획은 상고법원안 통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함
  - 상고법원안은 상고허가제로 연결될 수 없음
  -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토론광장에서의 판사들의 토론 활성화를 위하여 차○○ 판사 본인은 당분간 글을 올리지 않겠음

**② [2단계] 법관증원론에 대한 共感을 통한 戰線 이동 필요**

“**법원행정처 v. 일반 판사**” ⇨ “**사법부 v. 법무부, 기재부, 국회**”

- 현재 차○○ 판사가 요구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법관 정원 증가에 대한 설명이 아님
  - 최대 500명의 법관 증원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독일 수준의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1.5배 ~ 3배의 법관 증원을 요구
  - 많은 판사들의 공감을 얻고 있음





- 법원행정처가 8. 11. 실시한 서울동부, 수원지법 법관들과의 간담회에서 다수의 법관들이 “상고법원 도입과 함께 하급심 법관의 업무부담도 줄여 나가겠다는 큰 틀의 정책이 같이 제시되면, 판사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음
- 대법원이 내심으로는 법관 증원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도 존재
-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법관증원론에 대해 공감을 표시할 필요 있음
  - 공감 표시만으로 판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음
  - 어차피 법관증원론은 법무부, 기재부, 국회의 반대로 실현이 쉽지 않음 ⇨ 대법원이 굳이 공감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판사들과 전선을 만들 필요 없음

**☑ 법관증원론에 공감을 표시하는 대법원의 글에 포함될 내용**

- ▶ 법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고 있다는 점을 대법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 ▶ 대법원은 그동안 법관 증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
- ▶ 법관증원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
  - 판사들은 고급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음 ⇨ **국회 입법조사관들도 알 수 있는 수준의 입법과정**에 대한 공개된 정보(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1소위 회의록)는 과감하게 판사들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회 등이 법관 증원을 심사할 때 사용하는 각종 기준(예: 접수사건 증가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있음
- ▶ 법관 증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제시해 줄 것을 요청

- 다만, 상고법원에 집중되어야 할 에너지가 법관증원론 쪽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있음

**③ [3단계] 집단적으로 사건 적체 결의하자는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이○○ 판사의 사망, 차○○ 판사의 코트넷 게시글 등으로 인하여 판사



들 사이에서는 집단적으로 사건 적체를 결의하자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음

- 법원행정처가 법관증원론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면서, 법관 증원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경우, 상당수의 판사들은 그 대안으로 법원행정처가 사건 적체를 어느 정도 수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우려 있음 ⇨ 대응 논리, 대응 방안 마련 필요함 <끝>



# 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2015. 9.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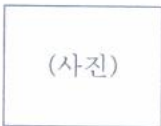
기획조정실

## 1. 검토 배경

- ▣ 차○○ 판사 진보성향 주간지인 시사인에 칼럼 투고
  - 9월 초순경 시사인에 칼럼 투고 (총 5회 분량의 연재 칼럼 중 첫 회)
  - 9. 14. ~ 9. 18. 첫 칼럼이 실린 시사인(주간지) 418호 출간
  - 9. 21. 첫 칼럼이 온라인에 게시됨

## 2. 사건 경과

- ▣ 8. 7. Facebook에 상고법원 관련 글 게시
  - Facebook에 상고법원 및 사실심 충실화에 대해 고민 중이라는 글 게시



- ▣ 8. 11. 코트넷에 글 최초 게시 ⇨ 법률신문 인터넷판 기사화
  - “사실심 충실화 관련 판사 수 대폭 증원과 상고제한 추진 의견”
- ▣ 8. 16. 차○○ 부장판사의 차○○ 판사 설득 ⇨ 실패
  - 차○○ 부장판사(○○기, ○○○○지법, 前 사법등기국장, 차○○ 판사와 사촌관계)가 차○○ 판사 설득 시도하였으나 실패

☑ 차○○ 판사의 답변 요지

- ▶ 상고심 기능 개선의 가장 이상적인 수단은 상고허가제인데, 상고법원을 도입할 경우 상고허가제 도입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법관 대폭 증원을 통한 업무경감인데, 현재 대법원이 제시한 사실심 충실화 방안은 법관 대폭 증원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으므로 미봉책에 불과함

8. 17. ~ 8. 31. 코트넷에 글 계속 게시 및 토론

- 문○○, 설○○ 부장판사 ⇨ 법관 대폭 증원론은 현실성 없다고 지적
- 차○○ 판사 ⇨ 개인적 인맥을 동원하여 기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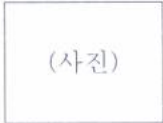
8. 31. 시사인에서 차○○ 판사의 코트넷 게시 글 요약 보도

- 제목: “현직 판사, 5분 재판을 누가 승복합니까” (시사인, 416호)
- 진보성향의 시사인 편집팀은 상고법원에 확고한 반대 입장

☑ 시사인 8. 31.자 기사 중 사진에 대한 시사인 편집팀의 설명 부분  
 ▶ 시사인 편집팀은 기사 중 사진에 대한 설명 부분에 “대법원은 상고법원이 만들어지면 대법원이 정책법원 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사실상 ‘옥상옥’, 4심 체제다. 전담 법원을 만들기보다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반대의견이 나오는 이유다.”라는 문구를 의도적으로 포함시킴

9. 18. Facebook에 시사인과 법률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

- 차○○ 판사 자신의 노력이 언론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9. 21. 시사인 온라인 판에 차○○ 판사 투고 칼럼 첫 회 게재

- 개인적 인맥을 동원하여 기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는 다짐의 실천인 것으로 보임
- 판사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다음 익명카페 “이판사판 야단법석”에 게시된 글 (9. 21.)  
 차○○ 판사님께서 언론에 내신 글입니다. 웬지 혼자서 고군분투 하시는 것 같아 죄송하네요. 생각하는 바를 추진하고자 하는 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53>



### 3. 차○○ 판사 시사인 칼럼의 내용

#### ▣ 전체적인 내용

- 민사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는 차○○ 판사의 1주일 생활을 서술
- 과중한 업무량으로 하급심의 변론(5분 변론), 증거조사, 판결문 작성이 부실해지는 상황을 묘사
- 문제가 되는 내용은 칼럼의 뒷부분에 있음

#### ▣ 차○○ 판사 칼럼 중 문제되는 내용

- 대법원은 이미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사실심 심리 관여를 많이 해왔음
- 상고법원이 법률심으로서 가진 권한을 넘어 더 충실히 사실심의 사실 판단을 깨는 월권적 행위를 해도, 사실심 판사들은 심리 강도를 높일 여유가 없음
-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사실심 충실화 대책은 상고법원 통과를 위해 국회 의원과 변호사 단체 요구로 명목상 내놓은 것으로서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임
- 판사 수 대폭 증원이 해결책이나, 상당수의 법관, 특히 고위직 법관들은 판사 수 증원이 판사의 희소성을 떨어뜨려 사회 지위를 낮출 거라고 우려해 내심 반대하기도 함

#### ☑ 차○○ 판사 9. 21.자 시사인 칼럼

“사실심인 1·2심이 사실판단 부분에서 심히 부실하니 원래 3심은 법률심이어야 하지만 사실 판단도 검토해줘야, 1·2심의 사실심 충실화가 가능하다.” 상고법원 찬성론 중에 이런 주장도 있다. 가능한 논리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판사들도 5분 재판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상시 야근, 주말 근무로 먹여 찬 상태로 일하는 판사가 많다. 상고법원이 법률심으로서 가진 권한을 넘어 더 충실히 사실심의 사실 판단을 깨는 월권적 행위를 해도, 사실심 판사들은 심리 강도를 높일 여유가 없다. 이미 대법원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으로 사실심 사실 판단 관여를 많이 했다. 하지만 사실심의 소극적 증거 채택의 심리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한국형 디스커버리(미국에서 당사자들이 주도해 서로 가진 증거자료를 현출시키는 제도) 등의 각종 사실심 충실화 대책도 결국 이 5분 재판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니 사실 대부분 판사도 별다른 감흥이 없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알 것이다. 스스로 원해서 내놓은 안도 아니고, 상고법원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과 변호사 단체 요구로 명목상 내놓은 사실심 충실화 방안이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리라는 것들. 5년, 10년에 걸쳐 판사 수를 대폭(1.5~3배) 증원해, 5분 재판을 20~30분 재판으로 만들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사실심 충실화가 가능하다. 물론 나를 포함해 법관들도, 법관 수 증원과 더불어 기존 재판 모델에 안주하지 않고, 질 높은 새로운 재판 모델의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상당수의 법관, 특히 고위직 법관들은 판사 수 증원이 판사의 희소성을 떨어뜨려 사회 지위를 낮출 거라고 우려해 내심 반대하기도 한다.

■ 칼럼 중 시사인 편집팀의 편향적인 편집 의도가 보이는 부분

- 차○○ 판사의 칼럼 앞부분의 [편집자 설명] 부분, 칼럼 중간에 실린 [사진 설명] 부분에서 시사인 편집팀의 편향적인 편집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 ‘상고법원 신설’과 ‘판사의 업무량 감소를 통한 사실심 강화’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고법원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일선 판사들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식의 구도로 몰아가고 있음

☑ 차○○ 판사 9. 21.자 시사인 칼럼 中 편집자 설명 부분

▶ [칼럼 앞부분] 판사가 말는 사건이 과중하다는 데는 다수가 동의한다. 갈리는 건 해법에서다. 대법원은 3심을 다루는 상고법원을 따로 만들자고 주장한다. 현장에서는 사실심을 강화해 항소·상고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고법원을 설치하느냐 마느냐의 양자택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모처럼 법원 개혁이 이슈가 된 만큼, 핵심 과제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재판을 제대로 받을 권리는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공익적 사안이다.

▶ [사진1 설명] 대법원은 3심을 다루는 상고법원을 따로 만들자고 하고, 현장 판사들은 사실심을 강화해 상고를 줄이자고 주장한다. 재판을 위해 입장하는 대법관들

▶ [사실2 설명] 이미 대법원은 사실심 사실 판단에 관여를 많이 해왔다. 위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 4. 분석

### ① 부적절한 행동이나,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칼럼 중 부적절한 내용 ⇨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① “상고법원이 사실심의 사실 판단을 깨는 월권적 행위를 할 가능성 존재”
- ②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사실심 충실화 대책은 상고법원 통과를 위해 국회 의원과 변호사 단체 요구로 명목상 내놓은 것”
- ③ “고위직 법관들은 판사 수 증원이 판사의 희소성을 떨어뜨려 사회 지위를 낮출 거라고 우려해 내심 반대하기도 함”

● 법관윤리강령

#### 법관윤리강령

▶ 제2조 (품위 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 ▶ 제5조 (법관의 직무외 활동)

① 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 ▶ 제7조 (정치적 중립)

①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 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

####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권고의견 제7호)

법관은 SNS 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② 차○○ 판사의 열정을 시사인 편집팀이 악용하고 있는 상황

- 진보성향 주간지 시사인의 편집팀 ⇨ 한겨레, 경향 등 진보언론 및 민변 등과 동일하게 상고법원 반대 입장

▶ 현재의 대법원을 보수화된 대법원이라고 규정  
 ▶ 상고법원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 찬성, 반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  
 ▶ 상고법원 도입은 자신들이 보수화된 대법원이라고 규정한 현재의 대법원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음 ⇨ 상고법원 반대

- 차○○ 판사의 주된 관심은 “법관 증원을 통한 하급심 충실화”이고, 상고법원 반대는 부수적인 관심사임
- 그러나 시사인 편집팀은 차○○ 판사의 글을 “상고법원 도입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일선 판사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 ⇨ 이와 같은 의도는 “편집자의 설명”이나, “사진 설명”에서 명확하게 드러남

③ 차○○ 판사의 언론 활동과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논거①] 차○○ 판사는 자신의 계속된 문제제기로 인하여 의제를 설정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

☑ 차○○ 판사가 자신의 Facebook에 쓴 댓글 (9. 19.)  
 ▶ 내가 글 올리고 나서 나는 많은 대화 중 현실성이 없다는 반론 외에 제대로 된 논박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글을 올린 후에 나온 법원 행정처 인사제도 개편안에 현재 업무 부담하에서 적정판사수에 대한 용역연구를 내년 1월에 시작한다는 내용이 보인다. 그 진정성은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의제로 만드는 데는 성공한듯 하다. 그리고 난 직접 내가 현실성있게 만드는 노력을 해 보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간다. 한 5년 10년 후에 결과를 봐야겠지. 지켜봐주면 좋을 듯. 함께 해 주면 더 좋고. 그리고 그게 맞는 방향이라면 판사라면 맞다고 말하고 그길을 가는게 나는 정도라고 본다.

- [논거②] 차○○ 판사의 대학, 사법연수원 시절 활동 경력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한 끈질긴 추진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서울대 법대 96학번인 차○○ 판사는 법대 학생회, 법대 동아리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었지만, 서울대 도서관에서 고시공부를 하던 중에도 학내 성폭력 문제 등의 사안에 대하여 장문의 대자보를 쓰면서 논쟁을 하는 활동을 함 ⇨ 非主流 활동가 성향
- 차○○ 판사는 2002년 고시공부 중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후부터 장애인 문제 개선을 위한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

**☑ 동아일보, “시각장애인 사시 합격 도운 차○○ 씨 판사 임관 (2009. 9. 22.)**

▶ 지난해 시각장애인으로는 처음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영 씨(28). 그의 아름다운 도전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차○○ 씨(32·사법시험 45회·사진)가 1일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차 씨가 시각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2년 11월. 1차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차 시험을 준비하던 그는 우연히 대학에서 열린 한 ‘장애인 영상제’를 보게 됐다. 당시 서울대는 특별전형으로 장애인 학생의 입학에 권장하고 있었지만 강의 여건이나 도로 상황 등은 여전히 불편했다. 영상제를 보고 충격을 받은 차 씨는 친구들과 함께 법대 동아리와 장애인 관련 동아리 4곳을 모아 ‘서울대 장애인권연대사업팀’을 만들었다. 그의 ‘장애인 사랑’은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2004년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해 2월 친구의 소개로 법대 후배인 최○ 씨를 만났고 함께 장애인사업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 얼마 뒤 최 씨는 결국 시력을 잃었다. ‘법조인의 꿈’조차 위태로웠던 그에게 차 씨는 ‘눈’과 ‘발’이 돼 주었다. 사법시험 원서 신청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법무부에 연락해 응시 방법을 조율했다. 최 씨가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면 이를 직원이 종이에 옮겨 적어 다른 수험생과 공평한 조건으로 채점을 받는 방식을 제안했고 받아들여진 것. 최 씨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차 씨는 사법연수원에 함께 찾아가 교수들과 최 씨의 연수원 적응을 위해 여러 방법을 마련했다.

- 2003년에는 고시생 신분으로서 이라크 전쟁 반대운동 동참

**☑ 문화일보, “반전운동 달아오른다” (2003. 3. 18.)**

고시생들도 이라크전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서울대 출신 고시생으로 이뤄진 ‘고시생 대자보를 쓰는 모임’은 지난 주부터 반전스티커 붙이기, 반전깃발 달기 등의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모임을 주도한 차○○(27·법대 대학원)씨는 “공부시간을 빼앗기지 않고도 반전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생활 속 반전운동을 생각해냈다”고 말했다.

## 5. 대응 방안



## 가. [총론] 전체적인 대응 방향

### ■ 선부른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논거①] 차○○ 판사가 시사인에 칼럼을 투고한 사실은 이미 국제인권 법연구회, 다음 익명 카페(이판사판 야단법석) 등에 공지되어 많은 판사들이 알고 있음 ⇨ 법원행정처가 선불리 개입할 경우 판사들 여론의 逆風을 맞을 우려 존재
- [논거②] 많은 법관들이 이미 법률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 등에 칼럼 투고를 하고 있음 ⇨ 문제는 칼럼 투고 자체가 아니라 칼럼의 내용인데, 차○○ 판사의 칼럼에 대해 선불리 개입할 경우 법원에 불리한 칼럼을 투고하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 존재
- [논거③] 차○○ 판사의 칼럼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법관의 품위, 공정성, 자기절제, 균형잡힌 사고”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님 ⇨ 선부른 개입을 할 경우 법관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가능

### ■ 3가지 조치 필요

- ① 문제 부분에 대한 안내, ② 예의 주시, ③ 일선 판사들의 오해 불식

## 나. [각론] 구체적 대응방안

### ① 문제 부분에 대한 공식 안내

- 비공식적 채널(차○○ 판사와 사촌관계인 차○○ 부장판사)을 통한 논리적 설득 전략은 이미 사용하였으나 실패
  - “차○○ 판사가 존경하는 선배”를 찾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효용이 크지 않음
  - 다른 비공식 채널을 계속 가동할 경우, 법원행정처가 배후에서 계속 관여



한다는 인상을 차○○ 판사에게 줄 우려 존재

● 비공식적 채널 ⇨ 공식 채널로 방향 전환 필요

- 공식채널인 ○○지원장(최○○, ○○기)이 차○○ 판사의 칼럼 투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며, 문제 부분을 안내할 필요 존재

● ○○지원장 면담 시 포함될 대화 내용

- ① 칼럼 투고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 유지해야 함
- ② 5회 연속 칼럼을 게재하고, 수당을 받을 경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검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 [주의사항] 유용한 정보를 안내한다는 태도 유지 해야 함
- ③ 칼럼 투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법관윤리강령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7호의 취지를 유념하여 “법관의 품위, 공정성, 자기절제, 균형 잡힌 사고”를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주의 사항을 격려 내지는 덕담 형식으로 전달
- ④ 시사인에서 차○○ 판사의 칼럼을 게재할 때, “편집자의 설명” 부분과 “사전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차○○ 판사의 의도와는 달리 시사인 편집팀의 시각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을 안내

② 예의 주시

- 사태의 추이를 지켜 보면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 공식채널을 통하여 문제 부분에 대한 공식 안내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판사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 존재
- 차○○ 판사가 존경하는 선배, 차○○ 판사와 친한 선·후배 명단 취합관리 필요

③ 일선 판사들의 오해 불식을 위한 노력 계속 추진

- 차○○ 판사의 글이 호응을 얻는 것은 일선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 갖



는 불만이 크기 때문임 ⇨ 일선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 대해 갖는 불만이 크지 않다면, 차○○ 판사의 글은 조용히 사라질 것임

- 법원행정처의 공식적인 개입은 “차○○ 판사”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일선 판사들의 상고법원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야 함 ⇨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법원행정처장님 명의의 코트넷 공지사항 게시 등 판사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함
- 법관 업무량 감소에 대하여 판사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제시 필요 <끝>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2016. 3. 7.

기획조정실

## 1. 검토 배경

### ▣ 박○○ 판사(31기)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마 예정

- 서울중앙지법의 내규는 직급별 판사회의 의장을 의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관례적으로 최선임자가 의장이 되어 왔음

#### ☑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서울중앙지법 내규)

##### ▶ 제9조(직급별 판사회의의 조직)

- ① 직급별 판사회의에 의장과 간사를 둔다. 부장판사 회의의 간사는 3인, 단독판사회의, 배석판사회의의 간사는 각 4인으로 한다.
- ② 직급별 판사회의의 의장은 당해 직급별 판사회의의 의결로 선출한다.

- 2014년 김○○ 판사(30기, 現 ○○지법 부장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에 출마하여 기존 관행을 깨고 투표에 의하여 최초로 의장으로 선출됨

#### ☑ 김○○ 판사 프로필

- ▶ 現 ○○지법 부장판사 (30기, 생년월일)
- ▶ 現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 소신이 강하나, 절차를 중시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
  -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과 친분이 깊은 편은 아님
- ▶ [학력] 19○○년 ○○○고, 19○○ ○○대 법학과 졸업
- ▶ [경력]
  - 20○○년 ○○지법 판사, 20○○년 ○○○지법 판사
  - 20○○년 ○○○○, 20○○년 ○○○○, 20○○년 ○○○○지법 판사
  - 20○○년 ○○○○○ 파견, 20○○년 ○○○○지법 판사

(사진)

- 2015년에도 김○○ 판사는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투표로 선출되기를 원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관례에 따라 최선임자인 장○ 판사(29기, 現



○○지법 부장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었음

- 2016년 3월 중순에 있을 단독판사회의의 경우 최선임자는 정○○ 판사(30기, 19○○년 생)이나, 박○○ 판사(31기, 19○○년생)가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의 지지를 받고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출마할 예정임

<p><b>☑ 박○○ 판사 프로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단독판사 (31기, 1966. 8. 30. 생)</li> <li>▶ 前 우리법연구회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 4. 16. 게시판에 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글 게시</li> </ul> </li> <li>▶ [학력] 19○○년 ○○고, 19○○년 ○○대 경제학과 졸업</li> <li>▶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지법 판사, 20○○년 ○○○○지법 판사</li> <li>- 20○○년 ○○지원 판사</li> <li>- 20○○년 ○○지법, 20○○년 ○○○○지법, 20○○년 ○○○○지법 판사</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사진)</div>
--	---

■ 박○○ 판사의 의장 경선 출마 경위

-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을 ‘판사회의와 같은 회의체 중심의 수평적 사법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상반기에 출범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이용하여 판사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
- 법원조직법의 개정 없이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을 바꿀 수는 없으나, 판사회의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법원장이 권한을 스스로 일정 정도 내려 놓는 관행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 박노수 판사의 경우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의 제안을 받고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가, 최근 출마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고 함

■ 박○○ 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명의의 건의문, 성명서 채택



-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면서, 단독판사회의 명의로 ① 그와 같은 주장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거나, ② 만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법원행정처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

●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 개정 시도

- 김○○ 판사가 시도하였다가 좌절한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 개정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의 사법행정라인과 대립

- ‘판사회의 중심의 수평적 사법행정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각종 사법행정적 조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음

## 2. 대응 방안

### ▣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정○○ 판사 적극 지원

- 현재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정○○ 판사(30기, 19○○년생)가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음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 판사 프로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교통산재) 판사 (30기, 19○○년생)</li> <li>▶ [학력] 19○○년 ○○고, 19○○ ○○대 공법학과 졸업</li> <li>▶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지검, 20○○년 ○○지청, 20○○년 ○○지검 검사</li> <li>- 20○○년 ○○지법, 20○○년 ○○지원, 20○○년 ○○○○지법 판사</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px; height: 80px; margin: 0 auto;">(사진)</div>
--	---

- 정○○ 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핵심 그룹의 지원을 받는 박○○ 판사의 당선을 저지할 필요 있음

### ▣ 구체적인 지원 방법

- 핵심 그룹의 주장에 무관심한 다수의 일반 판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



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선거 공약 발굴 필요

☑ 선거 공약 아이템

- ▶ 단독판사의 복지 및 실질적인 지위 향상
- ▶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라인과 단독판사 사이의 실질적인 가교 역할 수행 (반목과 대립 지양)

● 지원단의 구성

- 김○○ 기획법관, 정○○ 판사(정○○ 판사와 같은 방 사용)

▣ 선거 전략

- 단독판사회의 경선 당일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정○○ 판사를 추천하고 지지 발언을 할 판사 섭외
- 정○○ 판사를 지지할만한 단독판사들(예: 형사단독판사)이 가급적 회의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 정○○ 판사의 경우 “단순히 최선임자로서 관례에 따라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단독판사들의 복지 및 실질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려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 <끝>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2016. 3. 28.

기획조정실

## 1. 검토 배경

### ▣ 현재 각 고등법원별로 위원 추천 절차 진행 중

- 위원 추천 기간: 3. 14.(월) ~ 4. 1.(금)

### ▣ 핵심 그룹의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폼하 ⇨ 사법행정위원회가 '의례적 기구', '들러리'라는 프레임 구축 중

- 핵심 그룹 ⇨ 사법행정위원회가 실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지켜보지도 않은 채, 사법행정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폼하하면서 “의례적 기구”, “들러리”로 명명하며 부정적인 프레임 구축 중

#### ☑ 김○○ 부장판사의 3. 25.자 코트넷 게시글

- ▶ “사실 사법행정위원회가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추진하는 의례적 기구가 될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은 ... ”
- ▶ “현행과 같은 규칙 아래서는 법원행정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들러리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 ●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 경과

- 1. 29.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
  - 송○○ 판사 발표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방안에 관한 소고”
- 2. 1. 송○○ 판사가 코트넷에 1차 건의문 게시
  -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댓글 등록
- 2. 15. 김○○ 부장판사가 법률신문에 “판사와 사법행정”이라는 칼럼 기고
- 2. 23. 경향신문에 송○○ 판사의 건의문 소개하는 기사 게재



- 2. 26.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
  - ▣ 김○○ 부장판사, “판사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 홍○○ 판사, “각급 법원 판사회의 내규 분석 및 개정안 제시”
- 3. 7. 경향신문 온라인판에 사법행정위원회 비판하는 기사 게재
  - ▣ 박○○ 기자,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직접 선출 외면한 법원행정처”
- 3. 14. 김○○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2차 건의문 게시
- 3. 21. 박○○ 판사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당선
- 3. 23. 경향신문에 김○○ 부장판사의 2차 건의문 소개하는 기사 게재
- 3. 25. 김○○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공지글 다시 게시
  - ▣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박○○ 판사가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 등록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 고등법원에 대한 지원 불가피

- 사법행정위원회가 실제 구성되면, 핵심 그룹은 위원 위촉 결과를 두고 다시 문제제기를 할 것임
- 각 고등법원장이 이른바 ‘왕당파’로 불리는 법관(예: 행정처 심의관, 기획법관·공보관, 수석부 배석판사, 해외 유학 선발 경력 등을 보유한 법관) 위주로 위원 추천할 경우 ⇨ 핵심 그룹에게 공격 기회 제공하는 셈
- ① 사법행정위원회의 출범 의의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② 핵심 그룹의 공격으로 위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
- 아래와 같은 법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고등법원장에게 정보 제공함으로써 핵심 그룹의 악의적 폄하 시도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필요 있음
  - ①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가 있으면서도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
  - ② 법관 사회에서 상징성이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법관
  - ③ 정치적 색깔이 없으면서도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법관



## 2. 후보자 추천 기준

### 가. 전제조건

▣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

- 독선적이거나,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법관은 제외

### 나. 적극적 기준

▣ ①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 ⇨ 진보 성향 법관 그룹의 명단 분석

- 우리법연구회 前, 現 회원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 노동법 커뮤니티 회원

▣ ② 법관 사회 상징성 ⇨ 여성 법관 명단 분석 및 장애 가진 법관 포함

- 젠더법 커뮤니티 회원 명단
- 시각 장애를 가진 최0 판사

▣ ③ 오피니언 리더 역할 ⇨ 행정처 심의관들의 추천 취합

- 특정 그룹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소속 법원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법관 발굴

### 다. 소극적 기준

▣ 특정 보직 경력 있는 법관은 가급적 배제

- 법원행정처 심의관
- 각급 법원 기획법관·공보관, 수석부 배석판사
- 미국 등 선호 하는 지역의 유학 경력 있는 법관



### 3. 후보자 추천 명단

#### 가. 명단

▣ “별지”와 같음

▣ 추천 순위

● 1순위 ⇨ 적색으로 표시

- ①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 ②법관 사회 상징성, ③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두루 고려할 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 2순위 ⇨ 청색으로 표시

- 그 중요도가 1순위까지에 이르지 않는지만, 유리한 후보군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법관

● 3순위 ⇨ 흑색으로 표시

- 그 밖에 ①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 ②법관 사회 상징성, ③오피니언 리더 역할 중 어느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 법관

#### 나. 법원문화개선위원회

##### 1) 고등권역별/직급별 위원 배분

구분	서울고등 관내	4개 지방권 고등 관내				합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고등부장		1				1
지법부장 고법판사	2	1	1	1	1	6
고법/지법배석 단독판사	5	1	1	2	1	10
합계	7	3	2	3	2	17



## 2) 추천 후보자 배치(안)

구분	서울고등 관내	4개 지방권 고등 관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고등부장	민○○(젠더법) 여○○(젠더법)	윤○○(젠더법)			노○○(젠더법)
지법부장 고법판사	윤○○(우리법) 문○○(인기)		유○○(우리법)		
고법배석 지법배석 단독판사	김○○(우리법) 정○○(젠더법) 서○○(우리법) 황○○(인권법) 손○○(인기) 류○○(우리법) 지○○(인기)	이○○(젠더법)			

### ▣ 윤○○ ○○고등법원 부장판사(형사항소)

-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 3. 14.자 코트넷 게시글을 통하여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원회의 고등부장급 위원은 대전 관내에서 선출할 예정임을 공지한 상태  
- 고등부장급 위원은 사실상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됨
- 대전 관내 고등부장 중 “①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 ② 법관 사회 상징  
성, ③ 오피니언 리더”와 같은 요건을 갖춘 법관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

#### ☑ 대전 관내 고등부장판사 명단

- ▶ [대전고등] 허○○, 이○○, 이○○, 최○○, 유○○, 윤○○, 이○○(청주)
- ▶ [특허법원] 김○○, 김○○, 박○○, 이○○, 오○○

- 위원장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여성’ 법관인 윤○○ 부장판사가 대전 관  
내 고등부장판사 중 위원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됨  
- ‘여성’ 법관이 위원장으로 위촉될 경우 ⇨ 핵심 그룹 및 그 지원 세력이  
위원회 구성에 異議하기는 어려움  
- 다만, 윤○○ 부장판사의 경우 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경력 및 ②



상대적으로 낮은 기수(23기, 초임 고등부장판사)가 短點

- 代案으로는 ‘여성’ 고등부장판사 중 ① 민00(18기, 現 젠더법연구회 회장), ② 노00(19기, 前 우리법), ③ 여00(21기) 부장판사 고려 가능
  - 다만, 대안 택할 경우 이미 공지한 사항을 번복해야 한다는 부담 존재

■ 윤00 0000지법 부장판사(민사합의)

-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상징성 보유 ⇨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어필
- 강경한 주장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문00 0000지법 부장판사(민사합의)

- 칼럼 투고, 저서 출판, 강연 등으로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인기
  -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도 반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인물
- 위원 위촉 자체로 사법행정위원회 흥행에 도움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경력, 우리법연구회와 관련 없음
  - 강경한 주장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정00 0000법원 판사(가사단독)

- 여성 판사의 대표로서의 상징성 보유
  - 유스티티아 시습(여성 판사의 네이버 커뮤니티), 젠더법연구회 前 총무
- 정치적 성향 없음 ⇨ 온건하고, 합리적인 주장할 것으로 기대
  - 제3기 법원문화연구반 참여 경력

■ 지00 0000법원 배석판사(형사항소부)

- 특별한 대외활동 하지 않으나 평소 활발한 성격으로 모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
- 제도법관개선토론폰방에도 꾸준히 댓글 올리면서 사법행정에 많은 관심



**다. 재판제도발전위원회**

**1) 고등권역별/직급별 위원 배분**

구분	서울고등 관내	4개 지방권 고등 관내				합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고등부장	1					1
지법부장 고법판사	2	1	1	1	1	6
고법/지법배석 단독판사	5	1	1	2	1	10
합계	8	2	2	3	2	17

**2) 추천 후보자 배치(안)**

구분	서울고등 관내	4개 지방권 고등 관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고등부장	김○○(우리법)				
지법부장 고법판사	최○○(우리법) 김○○(우리법) 이○○(우리법) 정○○(우리법)		김○○(인권법)	송○○(우리법)	장○○(우리법)
고법배석 지법배석 단독판사	박○○(인기) 문○○(우리법) 윤○○(인권법) 류○○(인권법) 윤○○(우리법) 이○○(우리법)			최○(시각장애) 오○○(인권법)	차○○(우리법)

**■ 김○○ ○○고등법원 부장판사(행정항소)**

-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한 ‘상징성’ ☞ ‘진보’ 성향 법관에게 어필
  - 송○○ 판사가 믿고 따르는 선배
-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지도 교수(2004~2006)
  - 35~38기까지 진보 성향 법관에게 영향력(예: 홍○○ 판사)



-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 ㉠ 강경한 주장 정리하여 합리적 결론 도출할 것으로 기대

■ 최○○ ○○○○지법 부장판사(민사합의)

-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한 ‘상징성’ ㉠ ‘진보’ 성향 법관에게 어필
- 온건한 성향 ㉠ 강경한 주장 정리하여 합리적 결론 도출할 것으로 기대

■ 장○○ ○○○○법원 ○○지원장

- 우리법연구회 그룹의 핵심 ㉠ 송○○ 판사 등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 보유
- 前 청와대 행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기획법관
  - 전략적 사고에 능하나, 주장이 강경한 편은 아님

■ 박○○ ○○○○○○법원 판사(형사항소부)

- 정치적 성향 없고, 대외활동 하지 않음
-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 논리적으로 밝히는 오피니언 리더
  -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 신망 높음

■ 최○ ○○○○법원 판사

- 장애에도 불구하고 밝고 합리적인 성격
- 시각장애인으로서 상징성 보유 <끝>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적색 1순위, 청색 2순위, 흑색 3순위)

1	김○○	○○고등 고법부장	17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노동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으로는 보수 성향이지만,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li> <li>- 송○○ 판사가 믿고 따르는 선배</li> <li>▶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지도 교수(2004~2006)</li> <li>- 35~38기까지 진보 성향 법관에게 영향력(예: 홍○○ 판사)</li> </ul>
2	노○○	○○고법 ○○재판부	19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3	박○○	○○고등	20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4	오○○	○○○○ 수석부장	21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온건한 성향
5	이○○	○○지법 ○○지원장	22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 ○○지역법관 ○○ 지역 법관들에게 신망 두텁다고 함
6	박○○	○○지원장	22	19○○	○○○○고	○○대 법학	젠더법 인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친화적 가치관과 소탈한 성품으로 여성법관들에게 신망</li> <li>▶ 젠더법연구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몇 안 되는 남성법관임</li> </ul>
7	윤○○	○○고등 고법부장	23	19○○	○○고	○○대 법학	젠더법	▶ (-)사법정책심의관
8	고○○	○○○○	23	19○○	○○고	○○대 법학	인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여성법관들에게 신망 있음</li> <li>▶ 강한 리더십 발휘하거나 활동 범위 넓은 편은 아님</li> <li>▶ 夫 이○○ 전 부장판사</li> </ul>
9	이○○	○○○○	24	19○○	○○고	○○대 법학	젠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 법관들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소장 법관들 의사를 대변</li> <li>해 주는 젊은 스타일의 부장으로 신망 높음</li> <li>▶ 夫 이○○ 前 부장판사</li> </ul>
10	윤○○	○○○○	24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행정처 공보관</li> <li>▶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li> </ul>
11	김○○	○○○○	24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인권법 노동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사정책심의관, 재판연구관(부장판사)</li> <li>▶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li> </ul>

12	김○○	○○고등 고법판사	25	1900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민사정책심의관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13	신○○	○○고등 고법판사	25	1900	○○고	○○대 법학	젠더법	▲(-)사법연수원 정책연구교수, 夫 백○○ 재판관 ▲여성 후배들 사이에 신망 두텁고, 여성문제에 있어 진보적 성향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진보적 성향 뚜렷하지 않음
14	최○○	○○○○	25	1900	○○○○	○○대 경영	前 우리법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온건한 성향
15	문○○	○○○○	26	1900	○○고	○○대 법학	現 우리법	▲현 우리법연구회 회장, 强性
16	문○○	○○○○	26	1900	○○고	○○대 법학	인권법 젠더법	▲(-)사법정책심의관 ▲소탈하고 젊은 리더십으로 소장 법관에게 인기 많음 ▲위원 위촉 자체로 사법행정위원회 흥행에 도움
17	장○○	○○고등 고법판사	26	1900	○○고	○○대 법학	現 우리법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사법연수원 정책연구교수
18	김○○	○○고등	26	1900	○○○○	○○대 법학	現 우리법 노동법	▲승○○ 판사와 가까움 ▲(-)夫 오○○ 부장판사
19	이○○	○○지원	27	1900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진보 성향 법관들에 대한 영향력은 弱함 ▲(-)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20	이○○	○○지법	27	1900	○○고	○○대 법학	現 우리법	▲2010년 우리법연구회 명단공개 무렵 가입하여 비교적 활발 하게 활동
21	이○○	○○고등 고법판사	27	1900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인권법	▲(-)형사정책심의관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22	정○○	○○○○원	27	1900	○○○○	○○대 법학	現 우리법 인권법 젠더법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强性 ▲夫 황○○ 변호사(공감) ▲(-)전략적 사고에 능함
23	장○○	○○지원장	28	1900	○○고	○○대 물리	前 우리법	▲前 청와대 행정관 ▲(-)지원장, 인천지법 기획법관 ▲우리법 연구회 그룹의 핵심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 보유 ▲전략적 사고에 능하나, 주장이 강경한 편은 아님

24	박○○	○○지법	28	19○○	○○고	○○대 공법	現 우리법	▶ 우리법연구회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나, 온건한 편
25	권○○	○○○지법	28	19○○	○○고	○○대 물리	우리법	
26	신○○	○○지원장	29	19○○	○○사범대 ○○○고	○○대 독문	인권법 젠더법	▶ 서울대학교 참여학생회장 ▶ 젠더법 커뮤니티 학술 팀장
27	신○○	○○○○	29	19○○	○○○○고	○대 법학		▶ 출산 및 육아 관련 상징성(5자녀)
28	송○○	○○지원	29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노동법	▶ 부장된 후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평가
29	유○○	○○지법	29	19○○	○○○○고	○○대 법학	現 우리법	▶ 근평연임연구반
30	김○○	○○지법	30	19○○	○○고	○○대 행정	現 우리법	▶ 근평연임연구반, 強性
31	김○○	○○지법	30	19○○	○○○○고	○○대 법학	인권법	▶ 서○○ 판사 연임 탈락에 반발하는 글 코트넷에 게시 ▶ (-)민사판례연구회
32	박○○	○○고등	31	19○○	○○○○고	○○대 법학	우리법	▶ 前 우리법연구회 간사, 強性
33	서○○	○○○○	32	19○○		○○○ 법학	現 우리법	▶ (-)現 서울동부 기획법관, 공보관 ▶ 우산회 간사
34	곽○○	○○○○	32	19○○	○○고	○○대 경영	現 우리법	▶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나, 온건하고 조용한 편임
35	원○○	○○○○	32	19○○	○○○○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 妻 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6	정○○	○○○○	32	19○○	○○ ○○○○고	○○대 영문	인권법 젠더법	▶ 유스티티아 시습(전국 여성판사의 네이버 커뮤니티) ▶ 前 젠더법연구회 총무 ▶ 여성 판사들 사이에서 대표성 있음 ▶ 제3기 법원문화연구반
37	최○○	○○○○	32	19○○	○○ ○○○○고	○○대 법학	인권법	▶ 활발하고 합리적인 성격

38	박○○	○○○	○○○	33	19○○	○○고	○○대 법학	○○대 법학	前 우리법	▶ 정치적 성향 없고, 대외활동 하지 않음 ▶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 신망 높음 ▶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 논리적으로 밝힘 ▶ (-)前 ○○지방법원 기획법관, 스탠포드 방문과정 ▶ (-)前 ○○○법원 기획법관 ▶ 소통의 창에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의견 제출 (※) 적절한 의견 개진 방식 준수하는 운건파 ▶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경선에서 박○○ 판사 지지 ▶ 제3기 법원문화연구반
39	임○○	○○○	○○○	33	19○○	○○고	○○대 법학	○○대 법학	前 우리법	▶ 노동법연구회 부시술
40	황○○	○○○	○○○	34	19○○	○○고	○○대 법학	○○대 법학	인권법	▶ 국제인권법연구회 부시술, 기획팀 제1총무 ▶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경선에서 박○○ 판사 지지(핵심) ▶ 자유분방하고 직설적인 면은 있으나 선을 넘는 편은 아님 ▶ 동생 윤○○ 영화감독(범죄의 재구성 등)
41	문○○	○○지원	○○○	34	19○○	○○○○ ○○고	○○대 법학	○○대 법학	現 우리법 노동법	▶ 연구를 하는 등 자유분방한 성격 (※) 문화에 대한 상징성 ▶ 코트넷에 답글을 다는 등 사법행정위원회에 관심 많음
42	윤○○	○○○	○○○	34	19○○	○○○○고	○○○○○○ 대학	○○○○○○ 대학	인권법	
43	김○○	○○지원	○○○	34	19○○	○○고	○○대 법학	○○대 법학	인권법	
44	이○○	○○지원	○○○	34	19○○	○○고	○○대 법학	○○대 법학	前 우리법	
45	차○○	○○지원	○○○	35	19○○	○○고	○○대 법학	○○대 법학	前 우리법 인권법 노동법	
46	홍○○	○○○	○○○	35	19○○	○○○○ 고	○○대 법학	○○대 법학	우리법 인권법 헌터법	▶ 비밀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개설자 ▶ 우리법연구회 핵심 그룹, 強性 ▶ 夫 김○○ 판사(재판연구관)
47	최○○	○○고등	○○○	36	19○○	○○고	○○대 법학	○○대 법학	인권법	▶ 밝고 차분한 성품, 합리적
48	류○○	○○지원	○○○	36	19○○	○○고	○○대 법학	○○대 법학	인권법	▶ 인권법연구회 활동 활발하게 함 ▶ 夫 김○○ 부장판사
49	오○○	○○지원	○○○	36	19○○	○○고	○○대 법학	○○대 법학	인권법	▶ (-)민사판례연구회

50	전○○	○○지법	36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인권법 젠더법	▶(-)夫 최○○ 사법정책심의관 ▶젠더법커뮤니티 부총무
51	박○○	○○○	37	19○○	○○고	○○대 법학	現 우리법	▶우리법연구회 활동 활발하게 하나, 온건한 성격
52	박○○	○○○	37	19○○	○○○○고	○대 사회생활	인권법	▶활달하고 대외관계 폭이 넓음
53	윤○○	○○○	37	19○○	○○○○고	○○대 법학	現 우리법 인권법	▶우리법연구회 활동 활발하게 하나, 온건하고 겸손한 성격
54	이○○	○○지법	37	19○○	○○고	○○대 법학	前 우리법 인권법 젠더법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외협력팀장 ▶夫 이○○판사
55	이○○	○○○○	37	19○○	○○고	○○대 법학	인권법	▶妻 이○○ 판사
56	윤○○	○○○○	38	19○○	○○고	○○대 소비자	인권법	
57	손○○	○○지법	38	19○○	○○고	○○대		▶특별한 대외활동 하지 않지만, 소속 법원의 모임 주도
58	이○○	○○지법	38	19○○	○○고	○○대 법학		▶젊은 여성 법관들과 폭넓은 네트워크 보유
59	황○○	○○지원	39	19○○	○○고	○○대 법학	우리법	▶(-)민사판례연구회, ○○○지법 민사수석부 근무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나, 온건한 성향
60	류○○	○○지법	40	19○○	○○고	○○대 시각	우리법 인권법 젠더법	▶소신 뚜렷하고 재치 있는 스타일로 신세대 법관 정서 대변
61	황○○	○○지법	40	19○○	○○고	○○대 법학	인권법	
62	최○	○○지법	41	19○○	○○고	○○대 법학	인권법	▶장애에도 불구하고 밝고 합리적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상징성
63	지○○	○○지법	41	19○○	○○지법	○○대 법학		▶특별한 대외활동 하지 않지만, 소속 법원의 모임 주도
64	이○○	○○○○	41	19○○	○○고	○대 법학	인권법	▶적극적인 성격

##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적색: 1순위 검토, 청색: 2순위 검토, 붉은 흑색: 3순위 검토, 굵은 흑색: 검토하지 않은 추천자]

1	(사진)	이○○	법원직무지원부 (이하 열 삭제)	기(청색) (이하 삭제)	○○고 ○○대 법학	인권법 노동법	▶ 사법정책연구심의관, 공보관, 기획총괄심의관
2	(사진)	윤○○			○○고 ○○대 법학	前우리법 인권법	▶ 사법연수원 교수, ○○지법 공보관, 법원행정처 공보관 ▶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3	(사진)	김○○			○○○○고 ○○대 법학		▶ 夫 ○○○(前우리법) ○○○○지원장 ▶ 지역거점법관(○○)
4	(사진)	문○○			○○고 ○○대 법학	인권법 헌법	▶ 사법정책심의관 ▶ 소탈하고 젊은 리더십으로 소장 법관에게 인기 많음 ▶ 위원 위촉 자체로 사법행정위원회 흥행에 도움
5	(사진)	문○○			○○○○○○고 ○○○○대 법학	前우리법 인권법	▶ 경력법관(검사, 2001~2005) ▶ 지역거점법관(○○) ▶ 우리법연구회 前 회원이기는 하나, 활동을 활발하게 한 것은 아님.
6	(사진)	최○○			○○○○○○고 ○○대 종교학	인권법	▶ 경력법관(검사, 1999~2009)
7	(사진)	김○○			○○○○고 ○○대 법학	인권법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 판사 연임 탈락에 반발하는 글 코트넷에 게시 ▶ 민사판례연구회
8	(사진)	류○○			○○고 ○○대 노어노문학		

9	(사진)	정OO				OO고 영문 OO고 영문 OO고 영문	인권법 젠더법	▶유스티티아 시슬(전국 여성 법관 네이버 커뮤니티), 前젠더법연구회 총무 ▶여성 판사들 사이에서 대표성 있음 ▶제3기 법원문화연구반
10	(사진)	김OO				OO고 OO대 전기공학	노동법	
11	(사진)	권OO				OO고 경영 OO대	인권법	
12	(사진)	하OO				OO고 법학 OO대 법학		
13	(사진)	이OO				OO고 법학 OO대 법학		
14	(사진)	류OO				OO고 법학 OO대 법학		
15	(사진)	경OO				OO고 법학 OO대 법학		
16	(사진)	류OO				OO고 OO대 시각디자인	현우리법 인권법 젠더법	▶소신 뚜렷하고 재치 있는 스타일로 신세대 법관 정서 대변
17	(사진)	김OO				OO고 국사 OO대 국사		

재판제도발전위원회

[적색: 1순위 검토, 청색: 2순위 검토, 굵은 흑색: 3순위 검토, 얇은 흑색: 검토하지 않은 추천자]

1	(사진)	김○○	법원/직업/재판부 (이하 열 삭제)	기수생년 (이하 삭제)	○○고 ○○대 법학	前우리법 노동법	▶기본적으로는 보수 성향이지만,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 송○○ 판사가 믿고 따르는 선배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지도 교수(2004~2006) - 35~38기까지 진보 성향 법관에게 영향력(예: 홍○○ 판사)
2	(사진)	구○○			○○고 ○○대 법학		▶경력법관(변호사, 1998~2005) ▶지역거점법관(○○, ○○)
3	(사진)	이○			○○고 ○○대 법학		▶대법원 재판연구원 ▶지역거점법관(○○)
4	(사진)	이○○			○○고 ○○대 법학	前우리법 인권법 노동법	▶형사정책심의관 ▶활발하게 인권법 활동 ⇨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5	(사진)	장○○			○○고 ○○대 법학	前우리법	▶○○지법 기획법관, 대법원 재판연구원(지재조) ▶前 청와대 행정관, 우리법 연구회 그룹의 핵심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 보유 ▶전략적 사고에 능하나, 주장이 강경한 편은 아님
6	(사진)	조○○			○○고 ○○대 법학		
7	(사진)	유○○			○○고 ○○대 법학	現우리법 인권법 노동법	▶근평연임연구반
8	(사진)	신○○			○○고 ○○대 법학		▶2006년 ○○○ 부장판사 배석 경험
9	(사진)	박○○			○○고 ○○대 경영		▶제3기 법원문화연구반
10	(사진)	홍○○			○○○○고 ○○대 법학	現우리법 인권법	▶비밀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개설자



										▶우리법연구회 핵심 그룹, 强性 ▶夫 〇〇〇 판사(재판연구관) ▶强性이라는 평
11	(사진)	송〇〇							〇〇〇〇고 〇〇대 법학	노동법 젠더법
12	(사진)	박〇〇							〇〇〇고 〇〇대 법학	
13	(사진)	윤〇							〇〇〇고 〇〇대 법학	시아버지 〇〇〇 변호사(태평양)
14	(사진)	장〇〇							〇〇〇고 〇〇대 법학	인권법
15	(사진)	백〇〇							〇〇고 〇〇대 법학	
16	(사진)	류〇〇							〇〇고 〇〇대 사회학	인권법
17	(사진)	이〇〇							〇〇고 〇〇대 법학	법규법 인권법 노동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

2016. 4. 4.

기록조성실

## 1. 추천 과정

### ▣ 3. 14. 코트넷에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로 위원 추천 절차 안내

- 고등법원장이 권역별·직급별 배정인원에 맞추어 후보자 단수 추천
  - ⇒ 법원행정처장이 추천된 후보자 위촉
- 단수 추천으로 정책 결정한 이유
  - ① 고등법원장의 위원 후보자 복수 추천 후 법원행정처장이 선별 위촉할 경우 위원 선정을 행정처가 좌우한다는 이미지 구축될 우려
  - ② 출범 초기 단계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고등법원장의 추천권을 존중하는 외양을 보여주는 전향적인 자세 필요 ⇒ 핵심 그룹이 구축하고자 하는 ‘어용’, ‘들러리’, ‘의례적 기구’ 프레임 탈피
  - ③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는 안건의 성질상 強性 위원이 위촉되더라도 추후 설립될 다른 위원회(사법정책기획위원회, 법관윤리심의위원회)보다 위험성이 弱함 ⇒ 부작용은 안건 선정으로 통제 가능

#### ☑ “사법행정위원회 출범에 관한 안내 말씀” (3. 14.자 코트넷 공지글)

▶ 위원은 고등법원장이 관내 법관 중에서 추천한 분을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게 됩니다.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다양한 지역과 보직의 법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고등법원장이 추천할 법관의 수와 보직을 위원회별로 안배하였습니다.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고등법원장들께서는 4. 1.까지 관내 법관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기수, 성별, 해당 위원회의 소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자를 후보자로 추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추천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원 위촉절차와, 위원장 지명절차를 진행하여 위원회 구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3. 16. 각 고등법원에 위원 추천 의뢰하는 공문 발송

■ 3. 28.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 고등법원에 대한 지원

●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핵심 그룹의 악의적 폄하 시도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고등법원장에게 아래와 같은 법관에 대한 정보 제공

- ①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가 있으면서도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
  - (예)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노동법연구회 등 소속 법관
- ② 법관 사회에서 상징성이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법관
- ③ 정치적 색깔이 없으면서도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법관

고등법원장에게 추천한 법관  
 ▶ [법원문화] 윤○○, 문○○, 정○○ 등, [재판제도] 김○○, 최○○, 장○○ 등

■ 4. 1. 각 고등법원에서 위원 후보자 추천

- [1서울고법] 관내 지법에서 45명 추천받아 그 중 15명 추천
  - 관내 지법에서 서울고법에 추천할 때 위원회 특정하지 않았으나, 서울고법이 법원행정처에 추천할 때에는 위원회 특정
    - 단, 희망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
  - 관내 지법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법관은 서울고법에서 가급적 추천
- [2대전고법] 관내 지법에 배수로 추천해도 좋다고 하였으나, 관내 지법에서 대전 권역에 배정된 인원만큼만 추천해 와서, 그대로 5명 추천
  - 관내 지법 직급별 판사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음
- [3대구고법] 관내 지법에서 8명 추천받아 그 중 4명 추천
- [4부산고법] 관내 지법에서 12명 추천받아 그 중 6명 추천
  - 부산지법의 경우 직급별 판사회의 개최되었음
- [5광주고법] 관내 지법에서 7명 추천받아 그 중 4명 추천



## 2. 추천 결과

### 가. 법원문화개선위원회

번호	사진	이름	법원/직급/ 재판부 (이하 열 삭제)	기수 (생년) (이하 열 삭제)
1	(사진)	이○○		
2	(사진)	윤○○		
3	(사진)	김○○		
4	(사진)	문○○		
5	(사진)	문○○		
6	(사진)	최○○		
7	(사진)	김○○		
8	(사진)	류○○		
9	(사진)	정○○		

번호	사진	이름	법원/직급/ 재판부 (이하 열 삭제)	기수 (생년) (이하 열 삭제)
10	(사진)	김○○		
11	(사진)	권○○		
12	(사진)	하○○		
13	(사진)	이○○		
14	(사진)	류○○		
15	(사진)	경○○		
16	(사진)	류○○		
17	(사진)	김○○		



나. 재판제도발전위원회

1	(사진)	김○○	법원/직급/ 재판부 (이하 열 삭제)	기수 (생년) (이하 열 삭제)
2	(사진)	구○○		
3	(사진)	이 ○		
4	(사진)	이○○		
5	(사진)	장○○		
6	(사진)	조○○		
7	(사진)	유○○		
8	(사진)	신○○		
9	(사진)	박○○		

10	(사진)	홍○○	법원/직급/ 재판부 (이하 열 삭제)	기수 (생년) (이하 열 삭제)
11	(사진)	송○○		
12	(사진)	박○○		
13	(사진)	윤 ○		
14	(사진)	장○○		
15	(사진)	백○○		
16	(사진)	류○○		
17	(사진)	이○○		



### 3. 분석

#### 가. 법원문화개선위원회

구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고등부장		이○○(22)			
지법부장 고법판사	윤○○(24) 문○○(26)	문○○(27)	김○○(29)	김○○(25)	최○○(28)
고법/지법배석 단독판사	류○○(32) 정○○(32) 권○○(36) 류○○(39) 류○○(40)	경○○(39)	하○○(36)	이○○(36) 김○○(41)	김○○(36)

#### ■ 현황

- 지법부장 이상 7명 v. 단독판사 이하 10명
- [고법부장 1명, 지법부장급 6명] v. [단독판사급 6명, 배석판사 4명]
- 남성 10명 v. 여성 7명

#### ■ 문제점

- 36기 법관 편중 ⇨ 4명

#### 나. 재판제도발전위원회

구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고등부장	김○○(17)				
지법부장 고법판사	이○○(27) 조○○(28)	구○○(24)	유○○(29)	이○(26)	장○○(28)
고법/지법배석 단독판사	신○○(33) 박○○(34) 홍○○(35) 송○○(36) 류○○(41)	이○○(41)	윤○(38)	박○○(37) 백○○(39)	장○○(39)



■ 현황

- 부장판사 이상 7명 v. 단독판사 이하 10명
  - [고법부장 1명, 지법부장급 6명] v. [단독판사급 6명, 배석판사 4명]
- 남성 11명 v. 여성 6명

■ 문제점

- 여성 부장판사 없음
- 주류 법관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부장판사 부족
  - [진보] 이○○, 장○○, 유○○
  - [일반] 구○○, 이○, 조○○ ⇨ 구○○, 이○ 부장판사가 強性이라는 평가

다. 총평

1) 긍정적 요소 (총론에서는 성공적)

■ ① 핵심 그룹의 공세 선제적으로 차단

- 핵심 그룹 등 진보 성향 법관들의 호응을 얻을만한 법관들이 충분히 추천되었음 ⇨ 핵심 그룹은 최소한 '위원 구성 문제'에 관한한 더 이상 사법행정위원회를 폄하할 명분 없음

☑ 핵심 그룹의 호응을 얻을만한 법관들

[법원문화] 윤○○, 문○○, 김○○, 정○○, 류○○

[재판제도] 김○○, 이○○, 장○○, 유○○, 홍○○

■ ② 흥행 요소 구비 ⇨ 위원회 출범 의의 고양

- 법관 사회에서 인지도 높은 법관이 위원으로 참여 ⇨ 사법행정위원회 흥행에 도움

☑ 법관 사회에서 인지도 높은 법관

▶ 문○○, 류○○ 등



## 2) 부정적 요소 (각론에서는 일부 보완 요소 발생)

- ① **고등법원장 단수추천** ⇨ 위촉권자인 법원행정처장의 재량 부존재
  - 기수, 성별 균형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지역, 직급 균형은 반영 가능)
    - 법원문화연구회의 경우 일부 기수 편중 현상 발생 ☞ 36기 4명
  - 부적격자 배제 불가능
- ② **이른바 주류의 입장을 대변할 실력 있는 법관이 적음**
  - 특히 ‘재판제도발전위원회’의 경우가 문제됨
    - [법원문화] 이○○, 윤○○ 부장판사의 역할 기대 가능함
    - [재판제도] 김○○, 이○○ 부장판사가 어느 정도 역할할지가 관건
- ③ **특정 권역의 고등법원장이 추천한 고등부장이 사실상 곧바로 위원장이 되는 결과**
  - (예) 서울고등법원장 ⇨ 김○○ 부장판사 추천 ⇨ 법원문화개선위원장
  - (예) 대전고등법원장 ⇨ 이○○ 부장판사 추천 ⇨ 재판제도발전위원장

## 4. 개선 방안

### 가. 단기

#### 1) 특정 기수 중복 현상 해결

- **가능한 방안**
  - [1안] 위원회간 위원 교체
    - 법원문화개선위원회의 36기 4명 중 1명을 재판제도발전위원회와 교체
      - [서울고법] (법원문화) 권○○ ⇨ (재판제도) 송○○, 홍○○, 신○○
      - [대구고법] (법원문화) 하○○ ⇨ (재판제도) 윤○





- [부산고법] (법원문화) 이○○ ⇔ (재판제도) 박○○, 백○○
- [광주고법] (법원문화) 김○○ ⇔ (재판제도) 장○○

● [2안] 위원 추가 추천 요청

- 36기 위원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 대구, 부산, 광주고등법원장에게 31기, 33기, 34기, 37기, 38기 중 각 1명의 위원을 추가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
- 31기는 위원이 전혀 없음, 33, 34, 37, 38기는 재판제도에 1명만 있음

▣ 검토의견 ⇨ 위원회간 위원 교체

● 2안(위원 추가 추천 요청)의 경우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할 우려 존재

- 출범 초기 단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고등법원장의 추천권을 존중하는 의향을 보여주기 위하여 고등법원장 단수 추천으로 정책 결정한 상황
- 위원 추가 추천을 요청할 경우 법원행정처가 위원 추천에 깊게 관여한다는 오해 발생 가능

● 1안(위원회간 위원 교체)의 경우 아무런 문제 발생 소지 없음

- 서울고등 권역에서 지방법원장이 고등법원장에게 위원을 추천할 때 ‘위원회’를 특정하지 않았음 ⇨ 각 위원회는 고등법원장이 임의로 정한 것임
- 법원행정처장이 특정 기수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고등법원장이 정한 소속 위원회를 일부 수정하는 것에는 문제 발생할 소지 없음

2) 주류의 입장을 대변할 실력 있는 법관 확보

▣ 가능한 견해

● 고등법원장에게 부장판사급 위원 1명씩 추가 추천 요청

- 교체 대상 후보군
  - [재판제도] 조○○, 구○○, 이○ 부장판사
  - [법원문화] 최○○ 부장판사(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 추가 추천 후보군

- 황○○, 호○○ 부장판사, 신○○ 고법판사 등

■ 검토 의견 ⇨ 현상 유지

- 부장판사급 위원 추가 추천 요청을 할 경우 법원행정처가 고등법원장의 추천권 행사에 깊게 관여한다는 오해 발생 가능
-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의 경우 예민한 안전이 상대적으로 적음 ⇨ 부작용 발생 가능성 낮음

나. 중장기

1) 기본 방향

■ 초기 인선 과정에서 나타난 기술적 문제점 보완

- 특정 기수 편중 현상 해결 위해서는 위촉권자인 법원행정처장의 재량권 행사 불가피
- 추후 출범할 법관윤리심의위원회, 사법정책기획위원회의 경우 초기 출범한 위원회(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와 달리 예민한 안전이 많음 ⇨ 특정 성향 판사가 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 존재

■ 위원 추천 과정에서 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법원장이 직급별 판사회의 의장에게 위원 추천을 포괄 위임하는 것은 지양 ⇨ 판사회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되, 위원 추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장이 해야 함

2) 구체적 개선 방안

■ 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장에게 2배수 이상 추천

- 지방법원장이 고등법원장에게 위원을 단수로 추천할 경우, 지방법원의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법관이 그대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음

- (예) 대전고등법원의 경우 지방법원장이 고등법원장에게 단수 추천

■ 법원행정처에서 위원 후보군(Pool) 마련하여 각 고등법원과 사전 협의

- 발언력이 강한 특정 성향 법관이 위원회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피해야함 ⇨ ① 진보 성향 법관 후보군을 사전 검토하였듯, ② 이른바 주류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법관 후보군도 사전 검토하여 대항마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각 고등법원과 사전 협의

■ 고등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2배수 추천

- 각 고등법원장이 단수 추천한 결과 ① 지역, 직급 균형은 반영 가능하나, ② 기수, 성별 균형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고, 실제로도 특정 기수 편중 현상이 발생하였음 ⇨ ① 기수, 성별 안분 및 ② 대표성 확보에서 중대한 문제점 발생
- ① 기수, 성별 안분 및 ②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고등법원장으로부터 2배수 정도의 위원을 추천받아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불가피 ⇨ 추가로 출범할 법관윤리심의위원회, 사법정책기획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위와 같은 방침 적용

■ 위원회 구별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므로, 법원행정처장이 소속 위원회 변경 가능

■ 고등부장판사는 모든 권역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1명씩 추천

- 특정 권역에서 추천한 고등부장판사가 곧바로 위원장이 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 있음 ⇨ 법원행정처장의 재량권 확보 <끝>

# 법관 박상언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0000
----------	------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000 의원 외 00인

## 주 문

---

---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박상언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

---

성 명 : 박상언

직 위 : 법관

## 탄핵소추의 사유

---

---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 박상언(이하 '피소추자'라고 한다)은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 (헌법 제 103조), 법관의 신분보장 (헌법 제10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 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만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등 형법 위반 사항은, 향후 검찰의 기소 후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 소추안에는 별도로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위반 행위는 다른 피소추자들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2011. 9. ~ 2017. 9.)에 의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 2. ~ 2016. 2. 대법관 겸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2016. 2 ~ 2017. 5. 대법관 겸임), 임종현(2012. 8. ~ 2015. 8. 기획조정실장, 2015. 8. ~ 2017. 3.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 중 사법에 관한 본질적 요소인 재판독립의 원칙과 법관의 신분보장,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자, 오로지 신뢰에 기반하여 사법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피소추자의 지위

피소추자는 2003. 2.경 사법연수원을 수료(32기)하여, 2006. 2.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를 거쳐, 2014. 2.경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15. 2. 23.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의 직위를 겸임하게 되었고, 2016. 2. 22.자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로 전보되면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의 직위를 겸임하게 되었으며, 2017. 2. 20.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의 직위에 대한 겸임이 해제되었다. 이후 피소추자는 2018. 2. 26.자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18. 6.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에 회부되었고 재판 업무에서도 배제된 자로, 본 탄핵소추안 발의일 기준으로 헌법 제101조 및 법원조직법 제5조에 따른 법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 2. 피소추자의 행위

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 1)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2015. 3. 18.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하였고, 2015. 4. 6.에는 성완종 전 경남 기업 회장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완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2015. 4. 9. 예정되어 있었는데, 같은 날 위 성완종은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인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다음 날인 2015. 4. 10. 검찰은 위 성완종의 상의 주머니에서 허태열 전 비서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홍준표 경남지사, 홍문종 국회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등 8명의 이름과 금원이 적힌 종이<sup>1)</sup>가 발견되었다.
- 2) 임종헌은 위 성완종이 사망한 이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정치적 의미와 사법부에 미칠 영향 등의 분석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소추자는 2015. 4. 12.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152] 문건<sup>2)</sup>을 작성하였다[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라 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이하 ‘3차보고서’라 함) 169쪽].
- 3) 본 문건은, 성완종 리스트가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과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검토하고, 청와대와 협조 및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리스트 수사와 관련하여 기소 전까지는 적정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른 협력 방안이 없으며, 이미 계속 중인 주요 관심사건의 처리에서 청와대 측의 입장을 최대한 경청하는 스탠스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되 불필요하게 언론이나 청와대의 오해를 살 필요 없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야 하며, 관련 사건 처리 시 진의가 충분히 설명·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보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적극

1) 이 종이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언론에 회자되었다.

2)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법원행정처는 2018. 6. 5. 및 2018. 7. 5. 두 차례에 걸쳐 위 특조단의 물적 조사 대상이 된 문건 다수를 공개하였다. 본 소추안에서 공개된 문건을 인용하는 경우, 최초 문건명 및 대괄호 안 문건 번호(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첨부 2. 기재 순번)을 병기하기로 하고, 이후에는 대괄호 안 문건 번호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이하 모두 같다.

적으로 가동하여야 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4) 본 문건 중, 특조단이 3차보고서에서 ‘사법행정권의 남용 의혹’이 있다고 특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p>4. 對사법부 영향 및 대응방향 분석</p> <p>가.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한 기본적 영향 ⇨ 부정적</p> <p>▣ 국정 이슈에서 후순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부 및 BH의 관심 우선순위에서 ‘성완중 리스트’ 및 대선자금 등의 이슈에 압도될 가능성 큼</li> <li>● 상고법원 등의 이슈가 ①현재로선 <u>여론의 높은 지지를 등에 업은 것은 아니고</u>, ②국민 실생활에 당장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정치권 인식도 미흡하기 때문임</li> <li>● 급박한 정치지형하에서 합리적인 장점 설명 및 설득에도 어려움 예상 (중략)</li> </ul> <p>라. 對BH 및 對입법부 협조 및 우호관계 유지 방안</p> <p>▣ 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협조 방안 ⇨ 당분간 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소 전까지는 적정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른 협력 방안 없음</li> </ul> <p>▣ 이미 계속 중인 주요 관심사건 처리 ⇨ BH측의 입장 최대한 경청하는 스탠스로 우호적 관계 유지</p>
<p><b>☑최근 관심 판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한 판결</b></li> <li>▶ <b>VIP의 세월호 합동분향소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는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명한 판결</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권의 적절한 견제 vs. 정권과의 적정한 관계 유지’라는 틀 속에서 <u>사법부가 적정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불필요하게 언론이나 BH의 오해를 살 필요 없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야 함 ⇨ 관련 사건 처리 시 진의가 충분히 설명·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보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야 함</li> </ul> </li> <li>● <u>관심 사안의 적정한 처리 시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li> </ul> </li> </ul>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 교조 법외노조 사건, 세계일보 사장 사건 등

#### 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 1)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 행정예규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2011. 8. 설립된 사법부 내의 학술모임이다.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이하 ‘인사모’라 함)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소모임으로, 2015. 7. 내지 8.경 두 차례의 예비모임을 거쳐 2015. 9.경 첫 정식 모임을 가지고 발족하였다. 인사모는 위 예비모임 당시부터 상고법원 문제를 포함하여, 합의부의 조직과 운용, 사실심 충실화,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방안, 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법부장 제도 폐지 등 사법부 내 사법 제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여 왔다.
- 2)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모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무렵이었던 2015. 7.경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인사모를 챙겨보라’, ‘윤리감사관실의 검토도 거쳐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후 이규진은 본인 스스로 혹은 피소추자 등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박병대의 인사모에 관한 지시를 이행하였다. 나아가 2016. 3.경 무렵, 법원행정처는 임종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도 아래 전문분야연구회 개편 등을 명목으로 인사모 관련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인사모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동향을 파악하거나 인사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를 위축시키거나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수의 행위를 하였다.
- 3)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6. 12.경부터 인사모를 주축으로 하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과 법관인사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규진은 2016. 12. 24.경 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요 회원들을 통하여 공동학술대회의 발제자 및 논의 주제 등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후 이규진은 인사모 대표 등에게 학술대회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2017. 1. 3.경 실장회의 및 2017. 1. 13. 처장 주례회의에서 위 학술대회의 추진경과와 대응방안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4) 이러한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2017. 1.경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는 2017. 3. 25. 공동학술대회의 개최를 결정하였다. 이에 이규진은 2017. 1. 24. 연구회 기획팀장 이 모 판사에게 전화하여 이 모 판사 등 연구회 회원 2명의 심의관 추천을 거론하고 행정처에서 같이 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발언권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 ‘공동학술대회가 법원 내부행사로 치러지도록 하고 특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5) 이와 관련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소추자는 임종헌의 지시를 받아 인사모 2차 예비모임<sup>3)</sup>에서의 논의 결과를 정리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2] 문건을 2015. 8. 24. 작성하여 임종헌에게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23쪽).

당시 임종헌은 인사모가 상고법원 관련 끝장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피소추자에게 인사모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소추자는 본 문건을 작성하였다.

인사모 2차 예비모임의 토론 결과는 2015. 8. 19.경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수가 현행 상고제도를 유지하면서 심리불속행제

---

3) 당시 인사모 2차 예비모임의 주제는 ‘상고법원 관련 끝장 토론’이었다.

도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현재의 상고법원 논의에 회의적이었다”는 것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상고법원의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시기였으며, 2015. 5. 경 개최된 우리법연구회의 상고법원 관련 정기세미나를 계기로 행정처에서는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을 포착하고,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외부로 표출될 경우 입법 추진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본 문건은, ○ 인사모의 문제점을 ① 논의 주제가 연구회와 관련이 없어 관련 예규에 위배되는 점, ② 인적 구성 및 정치적 성향 측면에서 우리법연구회와 유사하여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법원 내·외부에 표출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소장 판사들에게 대법원의 정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점으로 분석하고, ○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검토하면서 단계적 접근방식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피소추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과 협업으로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181] 문건을 2016. 3. 25. 작성하여 임종헌에게 보고<sup>4)</sup>하였다(3차 보고서 29쪽).

본 문건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허가받은 전문분야를 이탈·무시하였고, 인사모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전반 및 최고법원 구성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시도하였으며, 일부 강경·핵심세력이 연구회 및 사법부 전체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그 대책으로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중복가입 금지규정의 규범력 강화를 통한 중복가입자 정리,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 영역 제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복가입자 정리 문제와 관련하여, 당해 방안

4) 임종헌은 위 [181] 문건을 ‘전문분야 개선 방안’과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으로 내용을 나누어 2개의 문건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소추자는 위 [181] 문건을 ①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12] 및 ②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5]로 나누어 2016. 4. 7. 각각 이를 임종헌에게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41쪽).

은 “법관들 상대로 명분이 있”고, “행정처의 정무적 의도나 특정 연구회에 대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다른 방안에 비하여 낮”으며, “‘인사모 해소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로서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위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시행에 따라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가장 큰 위축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인사모의 자연 소멸’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 또한 기재되어 있다.

본 문건과 관련하여, 임종헌은 특조단의 조사 과정에서 ‘당시 인사모가 행정처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인사모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 문건의 작성 배경과 관련하여, 당시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과 인사모 견제라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었으나, 인사모에 대한 견제에 좀 더 주안점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소추자는 2016. 5. 31. 「미디어 분야 연구회 신설 추진 전략」[309]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에게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42쪽).

본 문건은 앞서 살펴본 [181] 문건에서 제시한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방안에 대한 후속 문건으로, “특정 연구회가 법관 사회의 이슈를 독점하는 현행 연구회 판도에 단기간에 가시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9월 이전에 ‘미디어 분야 연구회’가 설립 완료되도록 행정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법관 중에서 유력한 회장 및 회원 후보군을 분석하고 권유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구회 신설 추진 전략을 기재하였다.

라) 피소추자는 2017. 1. 24.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312]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 등에게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53쪽).

본 문건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가 공동학술대회 개최일자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2017. 1. 23. 익일에 작성된 것으로, 위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기별 구체적 대응방안이 담긴 로드맵을 작성하라는 임종헌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본 문건은 인사모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 공동학술대회 대응 중심의 ‘단기 방안’과 인사모 해소 유도 및 제재 방안 중심의 ‘중기 방안’을 제시하면서, ○ 인사모 해소 방안으로서 ‘중복가입 해소 요구’는 규범 준수 요구라는 명분이 충분하고, 중복가입자 일제 해소시 인권법연구회 회원 50%가 넘는 200명 이상이 급감하여 다른 연구회에 비하여 현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분석하였다.

#### 나.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폐쇄 유도

- 1) ‘이판사판야단법석’(이하 ‘이사야’라 함)은 다음(Daum)에 개설된 카페로, 익명에 의한 사이버 공간에 판사들 사이의 소통을 목적으로 2014. 10.경 개설되었다. 이사야의 초기 회원은 약 40여명 정도였으나, 2015. 2. 기준 384명에 달하는 회원이 가입할 정도로 확장되었으며, 게시글과 댓글은 모두 익명으로만 이루어진다.
- 2) 이사야에는 업무 관련 사항, 인사연수 정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제시 뿐만 아니라 법원 인사,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상고법원 문제 등 사법부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도 다수 게재되었다. 임종헌은 위와 같이 이사야의 회원과 회원 작성 글이 늘어나던 2015. 2.경 이사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검토하면서, 피소추인을 포함한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에게 이사야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다.

3) 위 이사야 관련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소추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발령은 받았으나 아직 부임하기 이전임에도, 임종헌 등의 지시에 따라 2015. 2. 15.경,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355] 문건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당시 정다주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통해 임종헌에게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74쪽).

본 문건은 이사야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으로, ① 선배 법관이 운영진에게 신중한 운영, 위험성 있는 글의 삭제 또는 실명화를 권유하는 방안, ②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 ③ 법관 전체에 익명글 작성 관련 주의 공지를 하는 방안, ④ 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나) 피소추자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한 후인 2015. 3. 9.경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익명게시판 추가 대응방안 검토」[29]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78쪽). 나아가 피소추자는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위 [29] 문건을 업데이트하여, 2015. 4. 6.경 「이사야 익명 카페 동향 보고」 [30]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79쪽).

[29] 문건은, 이사야 카페의 가입회원 수, 방문회원 수, 전체글 수 등 활동 추이를 양적으로 분석하고,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주제의 글 수 등을 질적으로 분석하면서, 카페 운영자에 대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및 선배·동료 법관들을 통한 권고 등을 검토하고, 권고의 내용으로 카페 게시글에 대한 운영진의 선별 삭제, 일정기간 이후 일괄 삭제, 일정기간 경과시 일괄 비공개 처리 등을 검토하였다.

[30] 문건은 위 [29] 문건의 내용 중 양적/질적 분석을 최신화하면서, “카

폐 전반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 시행 시까지 신속보고 태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다) 피소추자는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2015. 8.경 「법관 익명 카페 개설자와 소속 법원장 면담 후속조치」[31] 문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82쪽).

본 문건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장과 이사야 개설자인 판사가 면담을 진행한 이후, 위 개설자 판사에게 이사야 카페에 게재할 공지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그 공지글의 초안을 기재하였다.

#### 다.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4. 6.경 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로부터 상고법원 설치를 건의받았다. 법원행정처는 2014. 9.경 상고법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2014. 10.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상고법원 추진 필요성을 역설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14. 12.경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등 168명의 연명으로 상고법원안을 주된 내용으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2) 상고심 제도의 개선은 사법부의 주요한 변화이므로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당시 위와 같이 법원행정처가 주도하여 추진하였던 상고법원안은 국민주권주의의 불충분한 실현, 위헌 논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법관 등 사법부 내부로부터 상고법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대두되자, 이를 견제할 목적으로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을 하기에 이르렀다.

3) 이와 관련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소추자는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2015. 7.경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346] 문건의 주된 내용을 작성하였다(3차보고서 96쪽).

본 문건은, 상고법원에 대한 내부 반대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그 핵심 그룹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지목하고 이들을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에 불안요소로 평가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선제적 대응 방안의 전제로 구체적인 정보 수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핵심세력과 움직임의 목적, 세 결집 진행정도 및 고려 중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서 핵심 그룹을 접촉하여 유화·설득·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나) 피소추자는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2015. 7.경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36] 문건의 일부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97쪽).

본 문건은, 상고법원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른바 ‘돌출행동’의 위험성이 높은 법관들의 상고법원 관련 반대 입장 등이 외부로 공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선제적인 설득이 필요하며, 설득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표방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위기 대응체제’를 가동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3.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



## 가. 관련 규정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러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은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의 내용이, 사법권의 가장 본질적인 재판업무에 관한 대원칙인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 원칙과 헌법 제106조의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중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재판독립은 법원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내부세력, 특히 사법행정권자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또한 헌법 제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불리한 처분이란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 뿐 아니라 일상적인 법관 사찰, 자발적인 법관들의 연구 모임을 위축시키려는 조치 등도 포함된다.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과 헌법 제106조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참조).

한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재판업무 자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법관이 사법행정권자의 지위에서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익실현의무에 기초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일선 법원의 재판에 대하

여 헌법 제103조에 따른 재판의 독립 원칙과 헌법 제106조의 법관의 신분 보장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소추자 등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당연한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 나. 3차 보고서의 판단기준

한편 3차보고서 19쪽에서는 의혹별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평가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정책결정을 통하여 실행행위로 나간 경우 뿐만 아니라 문서작성행위, 그 작성지시행위, 논의 과정, 정책결정행위 등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면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훼손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행위별 평가이며 각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특조단 스스로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 침해나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위 기준인 재판의 독립 등은 헌법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결국 3차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특조단은 위 헌법상의 기준에 비추어 정도가 남용에 미치지 않는 것을 부적절로 평가하였다는 것인데, 부적절로 평가된 부분도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에 인적 책임을 물을 때는 남용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실조사의혹을 받아 왔던 3차 조사단조차 사법행정권의 남용

또는 부적절로 판단한 행위는 적어도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등 헌법가치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기준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다.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피소추자의 행위는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②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③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폐쇄 유도, ④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등으로 나뉘는바,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 1) 피소추자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관련 행위

피소추자가 작성한 [152] 문건과 관련하여, 특조단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국면에서 이것이 상고법원의 입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관측하고 청와대와 협조 및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영장의 적정한 발부를 통한 협력’, ‘계속 중인 관련사건 처리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의 적극 가동’을 들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범외노조 사건 등의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는 것은, 그 실행 여부를 떠나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이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저버리고 청와대와 적절하지 못한 유대·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라 평가하였다.

##### 2) 피소추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행위

이에 대하여, 특조단은 “특정연구회의 소모임이 사법제도나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종헌 차장 등 사법행정 담당자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견제 내지 압박을 하기 위한 대응방안까지 마련한 것은 실행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3차보고서 48쪽).

또한 “임종헌 차장은 기조실 등을 통하여 2016. 3.경부터 특정 연구회에 대한 견제 내지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검토하였고, 결과적으로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계기로 2017. 2.경 중복가입 해소 조치가 시행되었는바, 이는 법관들의 학술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3차보고서 58쪽).

따라서 피소추자가 법원 내 공식적·자율적으로 결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의 활동을 견제하고 나아가 이를 와해할 목적으로 [2], [181], [12], [5], [309], [312] 등의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에게 보고한 것은, 특조단의 보고서에 기재되었듯이, 그 자체로 실행행위로 나아갔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련 헌법,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3) 피소추자의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폐쇄 유도 관련 행위

이에 대하여, 특조단은 “행정처 전·현직 관계자들이 이사야의 분위기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할 것을 논의하고, 마치 이사야 회원이 자발적으로 올린 것처럼 하여 그와 같은 글을 실제로 게시하며,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 이후 이사야의 동향을 파악한 일련의 행위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그 목적의 정당성이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적정하다고 할 수 없어, 법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피소추자가 작성한 [355] 문건과 관련하여, 특조단은 “이사야에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 역시 그 수단이 적정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방안을 검토한 것은 “법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 판단하였다. 또한 피소추자가 작성한 [31] 문건에서 확인되는 사항, 즉 “카페 운영자에게 게시할 공지글 초안까지 작성하여 전달”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으로서 부적절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3차보고서 87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소추자가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와 관련하여 [355], [29], [30], [31] 문건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성한 행위는 법관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 4) 피소추자의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관련 행위

이에 대하여, 특조단은 “행정처는 주로 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이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동향을 파악하였다고 보이고,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핵심 그룹이라고 분류하면서 그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사법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로 동향을 파악하거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고 전제하면서, “이와 같은 행정처의 동향 파악이나 대응방안 검토는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생각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기 위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모습이라고 보

기 어렵고, 리스크 센싱의 관점 즉, 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장애가 된다고 보이는 것은 모두 위험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는 관점에서 동향 파악이나 대응방안 검토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행정처의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에 전제된 위와 같은 인식이나 관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처의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행정처의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은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평가하였다(3차보고서 99쪽).

특히 [346] 문건에 대하여, 특조단은 “이 문건은 인사모 예비모임 제안 무렵인 2015. 7. 6.경 작성된 것으로서 이 문건에 기재된 대응 방안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는 상고법원안에 반대하는 내부 동향을 파악하여 왔다고 보이고, 인사모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그와 같은 내부 동향 파악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평가하였다(3차보고서 97쪽).

## 5) 소결

이상과 같이 피소추자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헌 등의 지시에 따라 순차 공모하여,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한 채 철저히 법원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단순히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나 부적절한 정도를 뛰어넘어 법관에 대한 사찰 등과 구체적인 재판에 개입하였다.

따라서 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헌법 제10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헌법 제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등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 4. 탄핵의 정당성

### 가. 대통령 탄핵과의 차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파면결정을 선고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헌법, 법률 위반의 정도’와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달리 법관 탄핵에 대하여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경미한 범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004헌나 1).

먼저 법관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즉 국가적 손실, 사법질서 혼란 등을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그 수가 3,000여명에 이르고, 그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숫자도 160여명에 이르며, 대법관의 경우조차도 13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설령 위 인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탄핵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공백을 동료 (대)법관이 메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이나, 재판의 공백 등 사법질서의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일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헌법, 법률위반의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 피소추자들 역시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



를 분담하였던 점, 피소추자가 침해한 대상은 헌법상 결코 침해되서는 안될 재판의 독립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한편 법관의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헌법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이 헌법, 법률위반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관 파면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적은 반면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형량을 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

한편 피소추자의 행위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이들이 법관 탄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기만료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 소추가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아무리 큰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그 징계양정의 최대는 정직 1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소추자와 같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단지 법관 징계절차에 의하여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 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법농단에 관여한 피소추자는 정직처분으로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가 아니라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현재까지 사법부 내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으로 발탁된 법관들이 ‘사법관료’로 변모하여 추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대법관 등 고위 법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왔다. 피소추자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들을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에서 시킨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피해자 행세를 통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 동정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대법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물며,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가 법관징계법상 최장 1년의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재판장으로 복귀한다면, 국민의 법감정과도 맞지 않는데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법관 정다주로부터 재판받게 되는 당사자나 대리인인 변호사들로 부터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받게 될 것이다.

## 5. 결론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오로지 고위법관들의 사익을 추구한 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소위 법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

기에 설마 스스로 법을 어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법관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마지막 믿을만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던 법관들에 의하여,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관 이하 고위법관들,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위배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의원 등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관 박상언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2.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첨부 2.  
기재 문건 중 아래 가항 내지 파항
- 가. [2] (150823)인사모대응방안(기조심의관)
- 나. [5] (160407)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인사모관련추가) [박■■■]
- 다. [12] (160407)전문분야연구회일반개편방안[박■■■]
- 라. [29] (150309)인터넷활동대응방안권고의견대비
- 마. [30] (150406)인터넷활동동향
- 바. [31] (150814)홍○○판사와법원장면담후속조치
- 사. [36] (150706)상고법원에대한사법부내부이해도심층화방안
- 아. [152] (150412)성완종리스트영향분석과대응방향검토
- 자. [181] (160325)전문분야연구회구조개편방안[박■■■]
- 차. [309] (160531)법원\_미디어\_연구회 설립방안\_로드맵
- 카. [312] (170124)인사모 관련 검토+1 [박■■■]
- 타. [355] 2078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 법관 이규진 탄핵 소추안

의안 번호	0000
----------	------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000 의원 외 00인

## 주 문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이규진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성 명 : 이규진

직 위 : 법관

##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 이규진(이하 '피소추자'라고 한다)은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 (헌법 제103조), 법관의 신분보장 (헌법 제10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헌법 제12

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배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만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등 형법 위반 사항은, 향후 검찰의 기소 후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 소추안에는 별도로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위반 행위는 다른 피소추자들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2011. 9. ~ 2017. 9.)에 의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 2. ~ 2016. 2. 대법관 겸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2016. 2 ~ 2017. 5. 대법관 겸임) 등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 중 사법에 관한 본질적 요소인 재판독립의 원칙과 법관의 신분보장,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오로지 신뢰에 기반하여 사법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이므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사법농단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무너진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실추된 사법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피소추자의 지위

피소추자는 1987. 2.경 사법연수원을 수료(18기)하여, 1989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에 임용된 이래 2005. 2.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였고, 이후 2008. 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 2.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 9.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2015. 2.부터 2017. 2월경까지 법원행정처 소속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겸임하여 근무하던 중, 2018. 6.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고 재판 업무에서도 배제된 자로, 본 탄핵소추안 발의일 기준으로 헌법 제101조 및 법원조직법 제5조에 따른 법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 2. 피소추자의 행위

#### 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에 대한 사찰 및 학술대회 개최 저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 행정예규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2011. 8. 설립된 사법부 내의 학술모임이다.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이하 ‘인사모’라 함)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소모임으로, 2015. 7. 내지 8.경 두 차례의 예비모임을 거쳐 2015. 9.경 첫 정식 모임을 가지고 발족하였다. 인사모는 위 예비모임 당시부터 상고법원 문제를 포함하여, 합의부의 조직과 운용, 사실심 충실화,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방안, 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법부장 제도 폐지 등 사법부 내 사법 제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모임의 구성원 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왔다.

1)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모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무렵이었던 2015. 7.경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던 피소추자에게 ‘인사모를 챙겨 보라’, ‘윤리감사관실의 검토도 거쳐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후 피소추자는 본인 스스로 혹은 다른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박병대의 인사모에 관한 지시를 이행하였다. 이 시기 집중적으로 인사모 동향파악이 이루어졌고, 나아가 2016. 3.경 무렵부터 법원행정처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도 아래 전문분야연구회 개편이라는 관점에서 인사모 관련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중복가입 해소 조치’의 경우 이미 최우선 방안으로 고려되어 세부 시행방안까지 검토를 마치는 등, 인사모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동향을 파악하였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를 위축시키거나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수의 행위를 하였다.

2) 피소추자는 2015. 7. 21. 인사모 제1차 예비모임, 2015. 8. 11. 인사모 제2차 예비모임, 2015. 9. 14. 제1차 정식모임 등 설립단계부터 인사모의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모임에서의 논의 사항, 발언자의 구체적인 발언내용, 전체적인 취지 및 분위기 등을 기록하여 보고서 형태로 박병대에게 제출하였다.

3) 한편 피소추자는 단순한 동향 보고에 그치지 않고 2015. 8. 19.경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사법소모임)의 방향’이라는 문건[1]<sup>1)</sup>[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라고 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이하 ‘3차 보고서’라고 함) 제21쪽 이하]을 작성하여 인사모에 대하여 “대법원과 다른 의견의 외부 표출 우려”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고 2016. 4. 7.에는 ‘인권과사법소모임(국제인권법학회) 논의 보고’라는

---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법원행정처는 2018. 6. 5. 및 2018. 7. 5. 두 차례에 걸쳐 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물적 조사 대상이 된 문건 다수를 공개하였다. 본 소추안에서 공개된 문건을 인용하는 경우, 최초 문건명 및 대괄호 안 문건 번호(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첨부 2. 기재 순번)을 병기하기로 하고, 이후에는 대괄호 안 문건 번호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이하 모두 같다.



문건[6]을 작성하여 인사모에 대하여 “커뮤니티 관리 차원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필요”하고 “추후, 인사모에 대한 공식적 경고 방안,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관리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이라고 기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사모에 대한 불이익을 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피소추자가 작성한 이러한 문서는 법원행정처 주례회의(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는 차장 및 실장들 간의 회의)의 회의자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와 같은 피소추자의 동향 보고 및 대응방안 문건에 근거하여 소추외 임종헌은 상피소추자 박상언에게 인사모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대응방안의 마련을 지시하게 되었고 박상언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법원 내 연구단체의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사모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소추외 임종헌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4) 그러던 중 2016. 12.경부터는 인사모가 주축이 되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과 법관인사제도를 주제로 하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건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피소추자는 이 과정에서도 해당 공동학술대회의 진행 상황 및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문건들을 작성하여 2017. 1. 13. 처장 주례회의에서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소추자는 2017. 1. 24. 연구회 소속이었던 이탄희 판사에게 전화하여 이탄희 판사를 포함하여 연구회 소속 법관 2인에 대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추천을 거론하면서 공동학술대회를 내부행사로만 치를 것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해당 공동학술대회 개최의 저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 **나.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관련 제소 관여**

2013. 11.경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하면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는 결정 주문에 명시하였으나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았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에서는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퇴직 통보를 하였고 해당 의원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소속 김종복 심의관은 2015. 2.경 소추외 임종헌 법원행정처장의 지시에 따라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 문건[175]를 작성하였다(3차보고서 157쪽 이하 참조). 해당 문건의 주요 내용은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원고가 되어 통합진보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을 상대로 지방의원 지위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지였다.

1) 2015. 2. 12.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부임한 피소추자는 임종헌 기조실장으로부터 [175] 문건에 2015. 6. 10. 문화일보 보도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제소 방법에서 청구이유 주장 중 1은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유사하므로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그대로 이행하여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상대 제소’[176] 문건을 작성하여 2015. 6. 12.경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전달하였다. 피소추자는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 [176] 문건이 작성된 지 3일만인 2015. 6. 15.경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제소’[174] 문건을 작성하였다. 이 문건의 파일명은 ‘(150615)통진당지역구지방의원행정소송[bh관련].hwp’이다. 제소 필요성 부분은 [176] 문건과 대동소이하고, 다만, 「 ‘통진당의 우회적 재창당’ 여부에 관심이 쏠림」, 「해당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창당 움직임을 사전에 억제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2)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분석’[76] 문건은 문00 당시 사법정책심의관이 작성하고 당시 행정처 내에서 헌법재판 관련 부분을 책임지고 있던 피소추자가 이를 수정하여 2015. 9. 15.경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되었다. 주요내용은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에 관하여 당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던 심00 부장판사가 담당재판장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용판결을 예상하고 인용판결시 예상되는 각계의 반응을 예측하며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그 대응방안의 하나로 지방언론의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 공보관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3) 피소추자는 문00 심의관에게 지시하여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여 2016. 6. 8.경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200]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였고, 피소추자는 이를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 하였다.

이 문건의 주요내용은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에 관하여 검토하면서 ‘기념비적인 법리를 선언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전합판결은 득보다 失이 많다는 의견임’, ‘헌법재판소 계속 중인 전합 판결 관련 사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선언하는 데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할 것임’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한편, 피소추자는 박병대 및 임종헌으로부터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 재판을 맡았던 방모 부장판사에게 “예정 선고기일인 9월16일은 국정감사 기간인 만큼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선고 기일을 연기해주고, 인용이든 기각이든 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현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소추자는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분석’[76] 문건과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에서 ‘사법부에게 판단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심00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게 얘기를 하여 방00 부장판사(당시 전주지법 행정2부 재판장) 얘기해보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00 총괄심의관은 방00 부장판사의 심증을 파악하여 인용될 가능성이 많음을 피소추자에게 보고하였고 이는 임종헌 차장에게도 보고되었다. 방00 부장판사는 연수원 동기인 심00 총괄심의관으

로부터 전화를 받고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 응하기로 한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먼저 얘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해당 재판부는 실제로 2015년 9월16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기일을 그해 11월25일로 연기하는 한편, 판결문에 박 전 대법관 등의 희망대로 ‘지역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은 현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내용을 적시하였다.

### 3.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

#### 가. 관련규정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러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

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은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의 내용이, 사법권의 가장 본질적인 재판업무에 관한 대원칙인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과 헌법 제106조의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중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재판독립은 법원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내부세력 특히 사법행정권자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또한 헌법 제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불리한 처분이란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 뿐 아니라 일상적인 법관 사찰, 자발적인 법관들의 연구 모임을 위축시키려는 조치 등도 포함된다.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과 헌법 제106조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참조).

한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

헌의무,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재판업무 자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법관이 사법행정권자의 지위에서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익 실현의무에 기초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일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 제103조에 따른 재판의 독립 원칙과 헌법 제106조의 법관의 신분보장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소추자 등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당연한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 나. 3차 조사단의 판단기준

한편 3차 조사결과보고서 19쪽에서는 의혹별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평가기준을 밝힌 바 있다.

“정책결정을 통하여 실행행위로 나간 경우 뿐만 아니라 문서작성행위, 그 작성지시행위, 논의 과정, 정책결정행위 등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면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훼손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행위별 평가이며 각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대법원 3차 조사단 스스로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

침해나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위 기준인 재판의 독립 등은 헌법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결국 3차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차 조사단은 위 헌법상의 기준에 비추어 정도가 남용에 미치지 않는 것을 부적절로 평가하였다는 것인데, 부적절로 평가된 부분도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에 인적 책임을 물을 때는 남용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실조사의혹을 받아 왔던 3차 조사단조차 사법행정권의 남용 또는 부적절로 판단한 행위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등 헌법가치의 중대한 위반으로 적어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기준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다.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피소추자는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직위에 있던 자로서 법원조직법 제 81조의 2에 따라 오로지, 양형위원회의 업무범위인 객관적 양형실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아래에서 보듯이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관리 등은 피소추자의 업무범위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이었다.

##### **1)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에 대한 사찰 및 학술대회 개최 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연구회의 소모임이 사법제도나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견제 내지 압박을 하기 위한 대응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한 것은 실행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민 전체의 이익위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9조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을 위반하였다. 한편 인사상의 추천을 매개로 하여 특정 학술대회의 개최를 저지하려고 한 행위는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3차 조사단은 “특정연구회의 소모임이 사법제도나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종헌 차장 등 사법행정 담당자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견제 내지 압박을 하기 위한 대응방안까지 마련한 것은 실행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3차 조사결과보고서 48쪽).

또한 “임종헌 차장은 기초실 등을 통하여 2016. 3.경부터 특정 연구회에 대한 견제 내지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검토하였고, 결과적으로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계기로 2017. 2.경 중복가입 해소 조치가 시행되었는바, 이는 법관들의 학술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3차 조사결과보고서 58쪽).

앞서 본 3차 조사단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이는 곧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등



헌법과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그 정도가 심한 것, 즉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행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2)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관련 제소 관여

피소추자 등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은 사법부가 행정부에 행정소송의 제소를 제안하는 내용으로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발상으로 그 실행여부를 떠나 정상적인 사법행정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한편, 당시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한 지위확인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직의 상실이라는 결론을 예정한 일련의 문건들을 작성하는 것 역시 재판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부적절하고 실제로 피소추자가 담당 재판부에 박병대 및 임종현의 의사를 전달한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이 정하는 재판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형법상 직권남용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분석’[76] 문건 중 3차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3차보고서 162쪽)

### 2. 판결 결과 예상

당초 ‘청구인용’이 예상되었음

● 본안에 대한 직접적 판단 예상됨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적법하게 제기

● 재판장의 잠적적 심증 확인(사법정책총괄심의관 - 연수원 동기)

● 2015. 9. 14. 오후 늦게 선고기일 변경

예상되는 ‘인용’ 이유 구성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소정의 ‘해산’에는 ‘자진해산’은 물론 ‘위헌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강제해산’도 포함됨

- 지방의원의 행정적 성격
  - 법무부 역시 통진당 해산청구 당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청구를 하지 않았음
  - 독일의 사회주의제국당 해산 판결 당시에도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위가 상실되지 않았음
- 청구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200] 문건과 관련하여 피소 추자가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고심에 대하여 사법정책심의관으로 하여금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게 한 것은 사법행정담당자로서 부적절한 것이다(3차보고서 166쪽).

한편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 재판을 맡았던 방모 부장판사에게 “예정 선고기일인 9월16일은 국정감사 기간인 만큼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선고기일을 연기해주고, 인용이든 기각이든 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현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구체적인 사건의 담당재판장에게 판결에 어떠한 취지의 판단이 들어야 한다는 요청을 하거나 정무적 판단에 기초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재판장에게 연락하고 그 과정에서 재판의 결론에 대한 심증을 파악한 것은 사법행정에 의한 재판 개입 사례로서 심각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3차보고서 166쪽).

### 3) 소결

이상과 같이 피소추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 등의 지시에 따라 순차 공모하여,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한 채 철저히 법원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단순히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나 부적절한 정도를 뛰어넘어 법관에 대한 사찰 등과 구체적인 재판에 개입하였다.

따라서 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헌법 제10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헌법 제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법원조직법 제81조의 2 등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 4. 탄핵의 정당성

##### 가. 대통령 탄핵과의 차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파면결정을 선고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헌법, 법률 위반의 정도’와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달리 법관 탄핵에 대하여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경미한 범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004헌나1).

먼저 법관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즉 국가적 손실, 사법질서 혼란 등을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그 수가 3,000여명에 이르고, 그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숫자도 160여명에 이르며, 대법관의 경우조차도 13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설령 위 인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탄핵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공백을 동료 (대)법관이 메울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나, 재판의 공백 등 사법질서의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일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헌법, 법률위반의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 피소추자들 역시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출세가 보장된 법원행정처의 핵심 부서 등 근무를 통해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헌법상 결코 침해되서는 안될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한편 법관의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헌법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헌법, 법률위반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관 파면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적은 반면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형량을 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

한편 피소추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이들이 법관 탄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기만료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하여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처분에 의하여서는 최고수위가 정직 1년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단지 법관 징계절차에 의하여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사법농단 관여 피

소추자는 정직처분으로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가 아니라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법원행정처를 거치는 동안 이른바 판사에서, ‘사법관료’로 변모해온 이들은, 심의관 단계에서부터 발탁되어 나중에 고등부장 승진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고 나아가 법원장, 대법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른바 출세가 보장된 법관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들을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에서 시킨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피해자 행세를 통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 동정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대법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물며,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가 법관징계법상 최장 1년의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재판장으로 복귀한다면, 국민의 법감정과도 맞지 않는데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피소추자로부터 재판받게 되는 당사자나 대리인인 변호사들로 부터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받게 될 것이다.

## 5. 결론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오로지 고위법관들의 사익을 추구한 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소위 법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설마 스스로 법을 어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법관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마지막 믿을만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던 법관들에 의하여,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관 이하 고위법관들,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이들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위배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의원 등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2.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첨부 2.  
기재 문건 중 아래 가항 내지 타항
- 가. [1] (150819)인사모관련[실장회의용](이규진)
  - 나. [4] (150915)인사모보고-3(이규진)
  - 다. [6] (160412)인사모이동연등[이규진]
  - 라. [7] (170112)인사모대응방안(4)[이규진]
  - 마. [13] (170206)중복가입전문분야연구회탈퇴등안내말씀[이규진]
  - 바. [14] (170210)중복가입전문분야연구회탈퇴등안내말씀[이규진]
  - 사. [76] (150915)통진당지방의원인용파장분석(문□□)수정[이규진]
  - 아. [174] (150615)통진당지역구지방의원행정소송[bh관련]
  - 자. [175] (150212)통진당지역구지방의원행정소송설명자료
  - 차. [176] (150612)통진당지역구지방의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
  - 카. [200] (160608)통진당사건전합회부관련[문□□]
  - 타. [203] (160314)이원화보도관련대응방안[이규진]



---

#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의 방향 (대외비)

---

2015. 8. 19.

국제인권법연구회

---

## 1.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분과위원회)

### 가. 연구회 설립 경과

- 2011. 6. 법관 33명이 법원행정처장께 연구회 설립허가 요청<sup>1)</sup>
- 2011. 8. ○○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임시간사),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 및 회원가입 안내' 공지
  - 발기인 대표, 김○○ ○○고법 부장판사
  - 공지된 '활동 계획'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응답
    -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 성과의 정리 및 정보의 공유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심포지엄, 외부강연 등 학술모임의 개최
  - 초기 회원들 : 김○○, 김○○, 김○○, 김○○, 김○○, 김○○, 나○○, 류○○, 박○○, 사○○, 서○○, 송○○ 안○○, 유○○, 윤○○, 이○○, 이○○, 이○○, 이○○, 정○○, 차○○, 최○○, 홍○○, 황○○ 등
- 2011. 10. 21. 창립총회
  - 선출 : 회장 김○○, 간사 겸 학술총무 이○○, 문화총무 이○○, 소모임총무 이○○
- 2012. 11. 30. 총회
  - 선출 : 회장 유임, 간사 유○○, 학술총무 김○○, 기획총무 김○○

---

1)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2조

---





## ■ 2013. 11. 22. 총회

- 선출 : 회장 김○○, 간사 김○○, 학술총무 안○○, 기획총무 신○○
- 주요 논의내용
  - 법관론, 사법부의 독립 등
  - 김○○ 부장판사의 제안으로, 소모임(분과위원회)<sup>2)</sup> 구성을 top-down 아닌 bottom-up 형식으로 구성하기로 함 ⇒ 이에 따라 2013. 11. 김○○ 부장판사가 ‘난민법 소모임’ 을, 2014. 2. 김○○ 판사가 ‘법관론 소모임’ 을, 2014. 3. 허○○ 판사가 ‘표현의 자유 소모임’ 을 각 제안
  - 2014. 1. 커뮤니티 밴드 개설

## ■ 2014. 11. 21. 총회

- 선출 : 회장 이○○,<sup>3)</sup> 간사 김○○
- 2014. 11. ‘인권편람’ 번역작업 완료 : 연구회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제4장 법관, 검사, 변호사의 독립과 공정성’
- 2014. 12.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 : 김○○, 나○○, 오○○, 이○○, 임○○, 홍○○
  - 총무(팀장) : 학술 강○○, 기획 송○○, 홍보 윤○○, 정책 이○○, 국제협력 현○○
  - 분과위원회(소모임) 위원장 : 법관론 미정, 표현의 자유 김○○, 난민법 안○○
  - 2014. 12. 이○○ 판사가 ‘소수자인권 소모임’ 을 제안

## 나. 소모임 관련

- 연구회 내 소모임은 ‘분과위원회’와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위에서 본 바와

---

2)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칙 제6조 (분과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① 연구회는 세부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간사 또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분과위원회 총무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3) 2014. 6. 김○○ 고등부장이 김○○, 성○○, 이○○ 세 고등부장에게 “연구회 내에 본인 외에는 고등부장이 한 분도 없다, 가입해서 후배들을 도와 달라.”고 제안하여 새 부장판사가 가입하였음



같이 회원 5명 이상이 모여 bottom-up 형식으로 구성됨

- 소모임 대표(분과위원장)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체적으로 대표를 선정하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이 관례임

## 2.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약칭 “인사모” )4)

### 가. 설립 및 예비모임의 경과

#### ▣ 2015. 7. 7. 박○○ 판사의 제안

#### ▣ 2015. 7. 21.자 첫 예비모임

- 이○○ 부장판사 등 12인 참석 (뒷풀이에 未詳 2인 더 참석)
- 선출 : 분과위원장(대표) 김○○, 총무 박○○, 김○○
- 주요 논의 내용 : 법관사회 내부의 소통, 사무분담, 상고법원 등

#### ▣ 2015. 8. 11.자 두 번째 예비모임

- 이○○ 부장판사 등 16인 참석
- 총무 2인 중 김○○ 부장판사가 빠지고 박○○ 판사가 제1총무로 선출됨
- 주요 논의 내용 : 상고법원5)
  - 가칭 ‘상고법원 끝장 토론회’ 로 모임 명칭 부여
  - 이○○ 부장판사가 찬성론, 이○○ 부장판사가 반대론으로 각 기조발표 후 난상토론 ⇒ 결론을 내지는 않음

### 나. 향후 일정

- 정식 첫 모임 : 2015. 9. 14. 월요일, 주제는 ‘합의부의 운용’ (재판장과 배석의 관계)
- 차후 예상 논의 주제 :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4) 주요 내용은 별첨 1, 2의 2015. 7. 21.자 및 2015. 8. 17.자 각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제도소 모임 관련 보고서 참조

5) 주요 내용은 별첨 4의 ‘인사모 1회 모임 정리’ 문건 참조



### 3. 문제점 검토

#### 가. 연구회의 성격

##### ■ 우리법연구회와의 관련성

- 발기인 대표 김○○ 부장판사 등 초기의 주요 회원들이 1988년 이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관련이 깊음<sup>6)</sup>
- 우리법연구회가 2009년 말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어 활동이 어렵게 되자 2011년 새로이 창설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참여적 · 진보적 색채

- 노동법연구회나 젠더법연구회, 변협 인권소위원회 등과의 공동세미나 활동에서 노동, 인권, 소수자 등 주로 사회적 성격이 강한 주제를 논의
- 표현의 자유(‘일베’와 명예훼손 등), 소수자 보호, 난민, 법관의 독립, 양심적 병역거부 등 소모임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주로 진보적 입장에서의 이론을 전개

##### ■ 주요 회원의 강한 유대관계

- 2015. 8. 현재 전체 회원 수는 405명에 이룸
  - 인권편람 번역본 수령과 관련하여 2015년에만 1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함
  - 다른 커뮤니티에 비하여 30기 이하의 젊은 법관 회원이 많음

6) 2010. 5. 공개된 우리법연구회 회원 60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음(괄호 안은 당시 소속)  
▽ 부장판사급 = 오○○(수원지법 성남지원) 문○○ 이○○(부산지법) 김○○(수원지법) 최○○(인천지법) 박○○(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울산지법) 사○○ 유○○ 이○○(사법연수원) ▽  
평판사 = 박○○ 권○○ 김○○ 이○○ 이○○ 홍○○(서울고법) 권○○ 조○○(부산고법) 김○○ 박○○(특허법원) 문○○ 박○○ 서○○ 윤○○ 이○○(서울중앙지법) 김○○ 최○○(서울행정법원) 마○○(서울가정법원) 이○○(서울동부지법) 곽○○(서울남부지법) 변○○(서울북부지법) 문○○(서울서부지법) 장○○(의정부지법) 박○○ 박○○(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유○○ 이○○ 임○○(수원지법) 구○○ 김○○ 서○○ 송○○(부산지법) 문○○ 위○○ 이○○(부산지법 동부지원) 김○○ 문○○ 최○○ 홍○○(창원지법) 김○○(창원지법 진주지원) 성○○(대전지법) 강○○(대전지법 홍성지원) 박○○(광주지법 목포지원) 이○○(전주지법) 박○○(전주지법 정읍지원) 김○○ 최○○ 한○○(대법원 재판연구관) 장○○(사법연수원) 정○○(헌법재판소 파견)



- 전체 회원 중 정기세미나 및 정기총회에 자주 참석하거나 커뮤니티 내 댓글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소위 '주요 회원' 수는 약 30명 정도로 파악되고, 특히 이들 중 일부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야법조인들과 'Inner Circle'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주요 회원 이외의 회원들 대부분은 국제적 시각에서 본 인권 분야의 연구 혹은 제대로 된 인권법 공부를 위해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으나, 회원들 중 진보적 성격의 일부 젊은 법관들이나 인사문제 등 대법원에 불만을 가진 일부 법관들은 사안별, 주제별로 주요 회원의 의견이나 논리에 강한 동조를 보이고 있음
- 젊은 법관들 중 유학을 다녀오거나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OHCHR), EU 내 인권 관련 기관 등 국제기구 관련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연구회 활동에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특히 같은 연구회 소속 이○○ 판사의 사망이나 박○○ 판사의 폐암 발병 등을 접한 후, 모금활동은 물론 이를 계기로 법관의 업무부담 개선, 이를 논거로 한 상고법원 설치 반대 등 대법원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 다른 연구회와 달리 임원진 및 부장판사들의 찬조금 출연, 그들 주도의 회식문화 등 고참 기수들에 대한 '선배'로서의 역할 요구가 당연시되는 등 특정 분야 연구를 위한 모임이라기보다는 私조직과 같은 인적 결합체로서의 분위기가 강함
- 요컨대, 주요 회원들과 일부 젊은 법관 회원들은 강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단결된 유대관계를 보이고 있음

## 나. 인사모의 문제점

### ▣ 윤리규정 위반은 없음

7) 주요 내용은 별첨 3의 2015. 8. 17.자 이○○ 판사 관련 보고서 참조



- 인사모 활동이 법관의 단체활동 내지 연구활동에 관한 법관윤리강령 등 윤리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함 ( ⇒ 윤리감사관실의 검토를 거침)
- 외국의 법관윤리규정(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 주석 138.)도, 법관이 법원 운영 등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관하여 외부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음

법관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외부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A judge may speak out on matters that affect the judiciary)

138. 법관이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절하게 외부에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는 그 논쟁이 법원 운영, 사법부 독립(법관의 보수와 혜택을 포함하는), 법 집행의 근본적인 측면, 또는 법관 개인의 청렴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관한 경우에도 법관은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법관이 이들 문제에 관하여 정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로비'하는 것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되고 그 문제가 법원에 사건화 되었을 때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암시하는 것으로 비추어져서도 안 된다. 나아가 법관은 그의 논평이 사법부의 공식적인 견해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때때로 사법부의 견해가 아닌 순전한 법관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법관은 법과 관련된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A judge may participate in a discussion of the law)

139. 법관은 교육적인 목적이나 법의 약점을 지적하기 위한 법 관련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법관이 법안에 대하여 논평하는 것이 유익하고 적절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위헌 여부에 관해 비공식적인 해석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견해 제시는 피하여야 한다. 보통의 경우, 법안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견해표명은 실무적 영향이나 법안의 흠결사항과 관련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쟁점은 피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법적 의견표명은 개인으로서가 아닌, 사법부 전체로서 또는 기관으로서의 노력의 결집 형태로 행하여져야 한다.

#### ■ 연구회 내 소모임 활동의 적절성 有無

- 그러나 연구회는 대법원에 소속되어 그 인적·물적·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학술연구단체인바, 인사모의 활동 내용에 비추어 연구회 활동의 일환인 소모임 활동으로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임



- 표현의 자유라든가 난민법 등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성격상 수궁할 수 있는 논제이나, 사법제도를 논의하겠다는 그 취지에 비추어 인사모는 연구회 활동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판단됨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는 연구회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8조(활동) ①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2. 사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
3.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법원 내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해당 분야에 관한 법률심포지엄의 개최

- 연구회 회칙은 연구회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8조 (활동)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2. 사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
3.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법원 내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법률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개최
5.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국제 교류
6.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 인사모는 상고법원, 재판장과 배석의 관계, 대법관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국제인권법 분야가 아닌 주제를 논의하고 있음 ⇒ 회칙 제8조 제6호의 ‘그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 대법원과 다른 의견의 외부 표출 우려

- 통상 소모임 개최 후 그 결과를 연구회 커뮤니티 내에 게시해 왔음
- 인사모는 상고법원 관련 논의 내용을 커뮤니티 내 게시판에 올릴 예정인바, 찬반양론의 각 논거를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고법원에 대한 찬반거수 결과까지 게시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 외부에서 볼 때 국제인권법 연구회 전체의 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비록 사전에 연구회 회장 및 대법원과의 상의를 거치겠다고 약속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회원(예컨대 이○○ 부장판사)이 사전 논의 없이 외부 언론에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제공하면서 연구회의 이름을 차용하는 독단적 행동을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다. 검토

### ▣ 외부로의 의견 표명 문제 ⇒ 현재까지는 통제 가능

- 현재 연구회는 물론 인사모를 포함한 소모임 활동은 90% 이상 파악되고 있음
- 주요 회원들도 문제될 소지가 있는 모임이나 활동은 자제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대부분의 활동을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로의 의견 표출은 반드시 사전에 회장 및 대법원과의 논의를 거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다만, 2015. 8. 11.자 모임 후 2015. 8. 19. 현재 게시판에의 게시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바,<sup>8)</sup>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논의 결과가 왜곡 전달되거나 다른 대다수 회원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 게시를 막기는 어려우므로, 내용의 순화를 권유하여 게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7조, 폐쇄커뮤니티의 개설에 의한 논의까지만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인사모의 경우에 갑자기 폐쇄커뮤니티를 개설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임

#### 제7조(분과 및 폐쇄 커뮤니티)

- ① 연구회는 세부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고, 회장은 각 분과마다 분과별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 ② 연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폐쇄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회는 간사 또는 분과별 간사의 허가를 받은 회원에 한하여 폐쇄 커뮤니티에 자료를 게시하거나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8) 게시판에 올릴 내용은 별첨 5의 '새로운 소모임의 구성 알림 및 경과 보고' 문건 참조



## ▣ 향후 문제점

- 앞으로 연구회 및 소모임 활동은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한 성격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60%가 넘는다고 판단됨
- 물론 現 회장의 임기 1년이 만료된 후 2016년 차기 회장으로 선출 가능한 고등부장들(김○○, 김○○ 등) 역시 연구회 및 소모임 활동에 대하여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017년 이후 이○○ 부장 등 주요 회원들이 회장으로 선출되어 대법원과의 의견 교환 없이 독자적 활동을 하게 되고, 대다수 회원들이 별다른 의식 없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법원 내 이질적 집단으로서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4. 대책

### 가. 연구회 자체 대책

#### ▣ 회장의 역할

- 연구회가 국제인권법 분야에 국한된 연구를 하는 경우 이는 격려하고 권장하여야 할 활동임
- 따라서 국제인권법 분야를 벗어난 인사모 소모임을 제외한 연구회의 다른 활동은 문제가 없음 ⇒ 아직 정식 모임을 가지 않은 인사모에 대하여는 향후 정식 활동 추이를 관망하면서 향후 몇 개월 간 통제를 하되 외부로의 의견 표출 등 움직임이 나타나면 강하게 제어를 하고, 연구회 전체에 대하여는 '연구회 활동'에 관한 회칙 규정을 근거로 국제인권법 분야가 아닌 논제에 관하여는 강하게 제어를 하여 연구회 내에서는 논의를 계속하지 못하게 제재
- 회장의 제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커뮤니티 내에서 그 문제를 공론화하여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을 것임
  - 대다수 회원들은 연구회의 원래 목적에 충실한 논제의 선택에 동의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주제에 관하여는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임





- 만약 주요 회원들이 대다수 회원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계속 논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요 회원들은 대다수 회원들로부터 고립될 것임
- 다만, 대다수 회원들이 연구회의 본래 활동 목적을 벗어난 논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문제를 공론화한 회장의 권위가 손상되어 사퇴 수순을 밟게 되겠지만, 이는 연구회를 제도권 내에 둘 수 없다는 비판의 전제가 되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 내 커뮤니티로서의 존립 근거를 상실할 것임

#### ■ 고등부장들의 역할

- 김○○, 김○○, 성○○ 등 고등부장들은 회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소모임이나 지방 모임, 뒷풀이 모임 등에 대신 참석하여 회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고 있는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함
- 고등부장들로 하여금 건전한 소모임 창설 및 적극적 활동을 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연구회 내 진보적 분위기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음

### 나. 대법원의 대책

#### ■ 제1안

- 강경 案 : 대법원이, 인사모의 논제 선택 및 활동 내용의 문제점을 내세워 공식적으로 연구회의 성격 및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에만 충실할 것을 연구회에 정식으로 요구하는 案
- 방식 : 연구회 회장과 간사에게 대법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회장이 이를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
- 장점 : 연구회의 향후 노선을 명확히 하여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단점 : 연구회의 일부 활동에 문제적 내용이 있다는 점과 무관하게, 주요 회원들과 젊은 법관들은 대법원이 커뮤니티 활동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집단 반발할 우려가 큼. 이 점이 현재 추진 중인 상고법원 반대론과 함께 이슈화 된다면 법원 안팎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많음

#### ■ 제2안



- 절충 案 : 대법원이 연구회에 대하여 인사모의 성격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커뮤니티 밖에서 논의하는 것은 몰라도 커뮤니티 내에서 논의하는 것은 不可하다는 대법원의 의견을 전달
  - 우리법연구회가 2015. 5. 정기세미나에서 상고법원 관련 토론을 하였으나, 제도권 바깥의 모임인지라 세간의 이목을 끌지 못한 선례가 있음
- 방식 : 대법원이 연구회 회장과 간사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회장이 이를 연구회 내 운영위원회 및 인사모 대표와 총무들에게 알려 연구회 밖에서 논의할 것을 설득
- 장점 : 문제 있는 소모임인 인사모 부분에만 제재를 가하여 대다수 회원들의 반발이 거의 없을 것임
- 단점 : 인사모를 중심으로 한 주요 회원들의 반발과 향후 활동의 음성화로 통제 및 관찰 범위를 벗어나게 됨

### ■ 제3안

- 유화 案 : 상고법원이라는 최대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연구회 및 인사모 소모임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외부로의 의견 표출이나 과격한 활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이를 통제하고, 상고법원 현안이 마무리된 이후에 정식으로 문제를 해결
- 장점 : 연구회의 반발이나 이의 제기가 없을 것이므로, 상고법원이라는 법원 최대의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문제 돌출을 피할 수 있음
- 단점 : 추이를 관망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 통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화약고를 지키는 셈이 될 수 있음

### ■ 結 (기타 의견)

[끝]



---

#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국제인권법연구회) 논의 보고 (대외비)

---

2016. 4. 7.

국제인권법연구회

---

## 1.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

### 가. 연구회 설립 경과

#### ▣ 2011. 10. 21. 창립총회

- 선출 : 회장 김○○, 간사 겸 학술총무 이○○, 문화총무 이○○, 소모임총무 이○○
- 2011. 8.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 및 회원가입 안내' 공지문상의 활동계획<sup>1)</sup>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응답
  -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 성과의 정리 및 정보의 공유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심포지엄, 외부강연 등 학술모임의 개최
- 초기 회원들 : 김○○, 김○○, 김○○, 김○○, 김○○, 김○○, 나○○, 류○○, 박○○, 사○○, 서○○, 송○○, 안○○, 유○○, 윤○○, 이○○, 이○○, 이○○, 이○○, 정○○, 차○○, 최○○, 홍○○, 황○○ 등

#### ▣ 2012. 11. 30. 총회

- 선출 : 회장 유임, 간사 유○○, 학술총무 김○○, 기획총무 김○○

#### ▣ 2013. 11. 22. 총회

- 선출 : 회장 김○○, 간사 김○○, 학술총무 안○○, 기획총무 신○○
- 주요 논의내용

---

1)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임시간사) 공지

---



- 법관론, 사법부의 독립 등
- 2014. 1. 커뮤니티 밴드 개설 ⇨ 연구회 활성화

#### ■ 2014. 11. 21. 총회

- 선출 : 회장 이○○, 간사 김○○
- 2014. 11. '인권편람' 번역작업 완료 : 연구회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제4장 법관, 검사, 변호사의 독립과 공정성'

#### 나. 소모임 관련

- 연구회 내 소모임은 '분과위원회'와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회원 5명 이상이 모여 bottom-up 형식으로 구성됨
- 소모임 대표(분과위원장)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체적으로 대표를 선정하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이 관례임

## 2.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 가. 설립 경과<sup>2)</sup>

#### ■ 2015. 7. 7. 박○○ 판사의 제안

#### ■ 2015. 7. 21.자 첫 예비모임

- 이○○ 부장판사 등 12~14인 참석
- 선출 : 분과위원장(대표) 김○○, 총무 박○○, 김○○
- 주요 논의 내용 : 법관사회 내부의 소통, 사무분담, 상고법원 등

#### ■ 2015. 8. 11.자 두 번째 예비모임

- 이○○ 부장판사 등 16인 참석
- 총무 2인 중 김○○ 부장판사가 빠지고 박○○ 판사가 제1총무로 선출됨
- 주요 논의 내용 : 상고법원

2) 설립과 활동은 모두 코트넷의 커뮤니티 공지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짐



- 가칭 '상고법원 끝장 토론회' 로 모임 명칭 부여
- 이○○ 부장판사가 찬성론, 이○○ 부장판사가 반대론으로 각 기조발표 후 난상토론 ⇨ 결론을 내지는 않음

#### ■ 정식 첫 모임에 앞선 회장 접촉

- 2015. 9. 9. 회장 주재 인사모 저녁식사 - 김○○(대표), 박○○(총무), 이○○(최연장자), 이○○
- 회장 발언 요지 : 인사모의 커뮤니티 外 활동 권유, 모임 결과 공지의 문제점 지적
  - 人事 등 사법제도 논의가 연구회 소모임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 인사모 결과 내용, 특히 민감한 내용의 커뮤니티 내 게시가 적절한지 여부 (소극)
  - 법관으로서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만들어 제도 개선을 꾀하자는 취지의 소모임인 '인사모'의 운영 개선 필요성 : 사법행정 책임자들의 제도 개선 및 소통의 노력
  -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체를 생각하여야 할 필요성의 강조 : 커뮤니티 지원의 증대, 국제인권 관련 해외 기관에의 파견, 국제인권 관련 회의 출장, 커뮤니티 내 인권자료실의 코트넷 상설화 등 연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
- 반응
  - 회장 발언 취지에는 공감하고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고 함
  - 일단 공지 문제는 dry하게 간단히 결과만 공지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함

### 나. 정식 모임

#### ■ 최근 활동

- 제1회 : 2015. 9. 14. '바람직한 합의부의 조직과 운용' (재판장과 배석의 관계) 중 업무적 측면 - 20여 명 참석, 새벽 2시 넘어 마쳤고, 김○○ 당시



고등부장, 이○○ 부장판사, 이○○ 판사 등이 뒤늦게 합류

- 제2회 : 2015. 10. 19. 위 주제 중 생활적 측면 - 15명 정도 참석
- 제3회 : 2015. 11. 13. '사실심 충실화' 1차 토론회
  - 발표 차○○ 판사, 지정토론 김○○, 이○○ 부장판사
  - 주제발표 : 독일의 재판제도와 그 운영에 비추어 본 대한민국 재판 현실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
- 제4회 : 2015. 12. 11. '사실심 충실화' 2차 토론회
  - 발표 : 이○○ 부장판사, 박○○ 판사
  - 주제발표 : 시행 중의 각종 재판 모델의 소개 및 논의
- 제5회 : 2016. 1. 29.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방안'
  - 2015. 12. 8.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구상을 설명한 처장님의 공지문 발표 이후 열림
  - 주요 내용 : ① 사법행정과 재판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무엇이고, 사법행정권자와 법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② 사법행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와 가장 이상적 방안은 무엇인지, ③ 사법행정에 참여할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선출" 방식은 무엇인지
- 제6회 : 2016. 2. 26. '사법행정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 송○○ 판사의 건의문에 이은 2016. 2. 19.자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정, 2016. 2. 25.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정에 대한 안내에 관한 차장님 공지문 발표 직후 열림
  - ⇨ 위원 추천권자가 고등법원장으로 한정된 점에 실망 표시
- 제7회 : 2016. 4. 8. 예정 '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법부장 제도의 향방'
  - 모임 공지문에서, 2015. 9. 2.자 처장님의 공지문 내용과 2016년 정기인사에서 이원화 제도에 균열이 생겼다는 취지의 한겨레 보도를 언급



- 법관 인사제도의 변경에 관하여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천명

### 3. 이○○ 부장과의 대화

#### 가. 경위

- 2016. 4. 3. 주말 회장에게 전화 ⇨ "제가 인사모를 책임져야 할 것 같다. 박○○이나 박○○등은 다른 업무로 바쁘고 김○○ 부장도 지방을 가서 책임자가 없다. 회장님을 만나 상의하고 싶다."
- 2016. 4. 7. 점심에 만남

#### 나. 대화 내용

##### ▣ 이○○ 부장 : 개인적 생각일 뿐이라는 전제 하에 다음을 설명함

- 사적 대화 내용이므로 중략

##### ▣ 양형실장 : 자세한 의견 제시보다는 설득에 주력

- 사법행정운영자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하여 잘못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의견은 내부에서 논의되고 소화되는 것이 맞고 그러한 논의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외부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많고 법원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이 부장이 인사모를 책임진다는 것은 인사모가 연구회는 물론 법원에 미치는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인사모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외부로 나가지 않을 경우 대다수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인사모가 연구회 내에 잔존할 경우 인사모 활동이 곧 연구회 활동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
- 행정처가 인사모를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이 연구회 본연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 설령 젊은 법관들이 혁신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 부장은 타협과 조정의 중재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 이 부장의 의견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자.

#### ▣ 이○○ 부장의 정리

- 사적 대화 내용이므로 중략

### 4. 결론

- ▣ 인사모가 연구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그러나 인사모가 연구회 내에 잔존하는 경우 커뮤니티 관리 차원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봄
- ▣ 이○○ 부장의 발언 내용을 전부 믿을 수 없으나, 선을 넘지 않겠다거나 사전 상의를 하겠다는 약속, 행정처에 대한 건의사항의 전달, 인사모에 대한 우리법연구회의 영향력 행사에 관한 의견 등에 있어서 이 부장의 진심을 두어 차례 확인하였는바, 어느 정도 선의는 갖고 있다고 판단됨
- ▣ 추후, 인사모에 대한 공식적 경고 방안,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관리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5. 기타

#### ▣ 2016. 4. 8. 인사모 관련

- 회장 이○○ / 간사 이○○, 김○○, 이○○, 김○○<sup>3)</sup>
- 참석 인원 10인 이하 - 역대 최저 수 참석
- 카톡방 개설되어 있음 - 28인

[끝]

---

3) ○○기, ○○지원 근무



---

# 인사모 대응 방안 (4)

---

## 1. 검토 배경

### ▣ 국제인권법 소모임 "인사모" ⇨ 연세대와 공동학술행사 추진

- (잠정적) 공동세미나 일자 : 2017. 3. 25. 토요일
- [세미나 주제] 대주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법관인사 이원화제도의 폐지', '고등부장 제도의 문제점',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집중'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 [발표] 연세대 이○○ 교수, 서울대 이○○ 교수, 김○○ 부장판사 등

### ▣ 국제인권법 커뮤니티 운영위원회 개최 움직임

- 2017. 1. 15. 일요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개최하여 공동세미나 추진 승인할 예정
- 2017. 1. 12. 목요일부터 운영위원들에 대한 통지 절차 개시

### ▣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인사모는 최초 설립 당시부터 국제인권법 커뮤니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소모임이었으나, 법관 사회 반발을 우려하여 현재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중임
- 국제인권법 커뮤니티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주제로 대학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경우 부정적 파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임 ⇨ 적극적 대응책 마련 필요

## 2. 공동학술행사의 문제점

### ▣ 국제인권법 커뮤니티의 설립 목적과 활동 범위에 반함

- "법관 인사제도 연구"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칙 제1조, 제8조에서 정한

“국제인권법 분야” 또는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에 포함되지 않음은 명백함

- ‘사법권 독립 → 국민 인권 보장 → 국제인권법 범위 포섭’ 논리는 비약
- 모든 커뮤니티에서 같은 방식의 논리 가능
  - (예) 법관 과중한 업무 → 법관의 건강권 위협 → 재판의 질 저하 우려  
→ 재판청구권의 충실한 보호 역행 → 의료법 커뮤니티 논의 가능

● **공동학술행사 ⇨ 커뮤니티 공식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문법률분야의 연구를 위한 법관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회의 설립허가)**

③ 제2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설립목적과 예산사정** 등을 참작하여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활동)**

①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2. 사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
3.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법원 내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해당 분야에 관한 법률심포지엄의 개최

**제10조(기타)**

각 연구회는 이 예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회를 통하여 해당 연구회의 운영 등에 관한 **회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칙**◆

**제1조(목적)**

이 연구회는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와 논문발표, 세미나, 국제교류 등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그 연구 성과를 재판실무에 반영하여 국민과 인류에게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활동)**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2. 사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
3.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법원 내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법률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개최
5.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국제 교류

### 3. [총론] 대응의 기본 방향

#### ■ ①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됨

- 문제 해결의 주체는 現 회장임 ⇨ 전임 회장이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
- 법원행정처가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회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후속 조치가 있을 것임을 암시해서는 안 됨

#### ■ ② 철저히 '단체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접근해야 함

- 어떠한 경우에도 '법관 인사문제'라는 주제를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됨 ⇨ 회장은 "판사들이 법관 인사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를 전제로 핵심 세력과 대화를 해야 함
- 문제는 ① 커뮤니티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② 커뮤니티 예산을 활용하여, ③ 외부와 연계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④ 커뮤니티 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임
  - 특히, 소모임 운영자들이 행사 목적·발표자·주제·일시·장소까지 다 정한 후 회장과 운영위원회를 '승인'의 절차적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음
  - 현재 국제인권법 커뮤니티 핵심 세력이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매우 비민주적이며 패권주의적인 처사임
    - 특정 계파 중진 모임 결의사항을 정당 최고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승인받으려는 것
    - 과거 학생/사회운동 및 진보정당에서 NL 계열이 보여주었던 비민주적이고 패권주의적인 모습과도 유사(예: 한총련, 통진당 등)
- 現 회장은 핵심 세력이 보여주는 비민주적인 모습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확인

함으로써 ‘단체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호소해야 함

#### 4. [각론] 구체적인 대응 방안

##### ■ 2017. 1. 15. 운영위원회 속행 ⇨ 사임하겠다는 뜻 시사

- ① 회장은 사전에 전혀 공식 논의를 한 적이 없어 현 상태에서는 결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① 커뮤니티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② 커뮤니티 예산을 활용하여, ③ 외부와 연계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
- ② 만일 운영위원들이 회장에게 강력하게 반발할 경우, 차분한 어조로 위와 같은 설명을 반복하면서, ④ 위와 같이 문제점이 많은 이례적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커뮤니티 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단체 운영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 같다는 설명을 추가함
- ③ 운영위원들이 계속 반발할 경우,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더 추가로 논의해 보자고 하면서 속행하자고 주장
- ④ 운영위원들이 속행하자는 주장에도 반발할 경우, 회장은 “여러분들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제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만 회장직을 사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 ⇨ 회장이 사임의 뜻을 시사하면 운영위원들이 더 이상 강경한 주장을 할 수는 없고, 속행에 동의할 것이며, 아마도 뒤풀이에서 이야기하자면서 뒤풀이 자리로 이어질 것임

##### ■ 2017. 2. 말 운영위원회 개최

- ‘소모임’ 주관 행사로 개최할 것을 주장
  - ‘커뮤니티’ 주관 행사 고수 시 ‘임시총회 소집’도 검토 가능(단,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할 필요 있음)

##### ■ 커뮤니티 주관 행사 고수 시 주요 대책

- ① 커뮤니티 명칭 사용 및 회비 지출 승인 거부

- ② 신입 회장 학술대회 불참 → 신입 회장 사임
  - 신입 회장 사임하면서 고법부장 이상 회원들도 함께 탈퇴하는 것이 적절
- ③ 예산 지원 감축(최소화) ⇨ 법원행정처의 결산 심사 및 관리 강도 강화
  - 예산 지원 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8조(활동)**

- ② 연구회 간사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1년 동안의 활동성과, 회원현황, 결산현황, 및 당해 연도의 활동계획, 소요예산을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 설립 목적 위반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방안 검토**

- 관련 규정 ⇨ ① 연구회는 폐쇄 규정 없고, 설립허가 취소 가능, ②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정국장 또는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폐쇄 가능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2조(연구회의 설립허가)**

- ③ 제2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설립목적과 예산사정 등을 참작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 ⇨ 반대해석상 설립허가 취소 가능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0조(커뮤니티의 폐쇄)**

- ④ 전산정보관리국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당해 커뮤니티 회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권한)**

- ① 운영위원회는 게시물의 이전 또는 삭제, 커뮤니티의 폐쇄, 커뮤니티 운영자 변경, 코트넷 이용권한 제한을 비롯한 코트넷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이 지침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산정보관리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커뮤니티 폐쇄, 운영자 변경 또는 커뮤니티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되더라도 바로 해당 커뮤니티가 폐쇄된다고 보기 어려움**

- 시행 타당성 검토 ⇨ 명분 약하고,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소극
  - ① 설립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 시 ⇨ 법관 사회의 강력한 반발 예상 + 취소권자인 행정처장님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부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할 필요
  - ②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는 커뮤니티 등 ⇨ 코트넷 운영위원

회에서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 조치 가능하나,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  
할 필요 (행정처의 불통·권위적·관료적 이미지 악화, 이를 경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신중 검토 필요) <끝>

## 중복가입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 말씀

존경하는 전국의 법관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이○○입니다.

중복가입된 전문분야연구회의 탈퇴와 관련한 안내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공지 글을 올립니다.

법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문분야연구회는 재판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축적함으로써 재판업무의 충실화, 효율화,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법관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2000년도에 창설되었고, 법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아래 표와 같이 15개의 연구회가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복 가입 불가	중복 가입 가능
국제거래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기업법연구회 노동법연구회, 도산법연구회, 민사집행법연구회 언론법연구회, 의료법연구회, 조세법연구회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환경법연구회 ※ 단, 현재 소속 중인 전문재판부와 관련된 전문분야연구회는 중복가입 가능	사법정보화연구회 젠더법연구회 헌법연구회 형사법연구회

전문분야연구회 가입과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의 충실을 도모하는 한편 경비 보조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연구회 창설 초기부터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에 근거하여 전문분야연구회의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도(사법정보화연구회, 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형사법연구회와 현재 소속 중인 전문재판부와 관련된 전문분야연구회는 예외) 현재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가입하신 분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번거로우시겠지만, 연구회에 복수로 가입되어 있으신 법관 여러분께서는 2017. 2. 20.까지 가장 관심 있는 분야 하나를 선택하시고 나머지 연구회에서는 탈퇴하심으로써 중복가입금지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2004년에도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는 절차가 시행된 바 있었습니다). 다만, 사법정보화연구회, 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형사법연구회와 현재 소속 중인 전문재판부와 관련된 전문분야연구회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방법에 관하여는 첨부해 드리는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20. 이후에도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규의 취지에 따라 가장 먼저 가입하셨던 연구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그 뒤에 가입하신 연구회에서는 탈퇴하시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할 계획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복가입을 금지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법부의 귀중한 자산인 전문분야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사법부 전체의 전문 역량 강화를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는 법관이라면 누구나 모든 전문분야연구회의 자료 등을 자유롭게 읽고,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이○○ 올림





---

#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

2015. 9. 15.

사법정책실

---

## 1. 개요

가. 사건 : 전주지법 2015구합407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

나. 당사자 / 재판부

- ▣ 원고 : 이현숙(통진당 소속 전라북도 의원)
- ▣ 피고 : 1. 전라북도의회회장 2. 전라북도
- ▣ 재판부 :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 부장, 주심 강○○)

다. 사건의 진행 경과

- ▣ 2015. 7. 22. 1회 변론기일 ⇨ 변론종결, 선고기일 지정, 2015. 9. 16.
- ▣ 선고기일 변경 ⇨ 2015. 11. 25.

## 2. 판결 결과 예상

- ▣ 당초 '청구인용'이 예상되었음
  - 본안에 대한 직접적 판단 예상됨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적법하게 제기
  - 재판장의 잠정적 심증 확인(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연수원 동기)
  - 2015. 9. 14. 오후 늦게 선고기일 변경
- ▣ 예상되는 '인용' 이유 구성(상세한 내용은 별지 1 참조)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소정의 '해산'에는 '자진해산'은 물론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강제해산'도 포함됨<sup>1)</sup>

---

1)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 지방의원의 행정적 성격
- 법무부 역시 통진당 해산청구 당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청구를 하지 않았음<sup>2)</sup>
- 독일의 사회주의제국당 해산 판결 당시에도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위가 상실되지 않았음

▣ 청구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기각 이유의 실시예는 별지 2 참조)

### 3. 청구인용 시 예상되는 반응 및 대처방안

#### 가. 예상되는 반응

##### ▣ 정치권

###### ● 여당

- 김진태, 김도읍 등 검사 출신 법사위원 중심으로 대법원 및 각급 법원 국정감사장에서 강한 질타 예상됨(cf. 광주고법 국감일 : 판결 선고 전날인 9. 15.)
-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청구를 하지 않은 법무부 입장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사법부 공격의 소재로 삼을 것으로 보임
- 공격의 주된 목적은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결과를 원고 청구기각 쪽으로 압박하기 위해서일 것임

###### ● 야당

- BH 공격의 소재로 삼으면서 통진당 해산결정의 부당함을 부각시키려 할 것임. 다만, 총선 정국을 앞두고 통진당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야당 입장에서는 일회성 공격 소재에 그칠 것으로 보임

##### ▣ 언론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 2) 통진당 해산청구 사건(2013헌다1)에서 정부는 2014. 1. 7.자 준비서면에서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 및 비례대표를 불문하고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본 반면, 지방의원의 경우 행정영역에 속하므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본건 원고 대리인(이○○ 변호사)은 위 준비서면을 원고에게 유리한 서증(갑 7호증)으로 제출하였음



● 조·중·동 등 주류 언론

- 지방의원 1인의 지위 상실 여부가 미치는 파급력 크지 않고, 법무부가 지방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크게 이슈화할 가능성은 낮음. 다만, 국정감사에서 해당 판결의 문제점 지적하는 여당 법사위원 발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부각시킬 가능성 있음

● 조·중·동 등 주류 언론 역시 국회의원 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것으로 보임

● 조·중·동 논조와 부합하지 않는 후속 하급심 판결이 이어질 경우 법원 비판 아이템 중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 있음

● 한겨레, 경향 등 진보 매체

- 현재 결정의 의미를 축소하기를 희망하는 진보 언론 입장에서는 좋은 소재임
- 특히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이 헌법·법령상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해 온 점에 비추어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됨

▣ 법무부·검찰

- 법무부 스스로, 지방의원의 경우 행정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에 '강제해산'이 포함된다는 해석은, 국회의원 지위확인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용 판결을 위한 논리적 선결문제이므로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임

나. 대처방안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성격상 차이, 법무부 역시 지방의원에 대해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을 청구하지 않았음을 강조

▣ 현재 결정 취지와 크게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 강조

- 현재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의미에 관하여 "정당이 스스로 해산하는 경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강제해



산 시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취지와 그 제도의 본질적 효력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 직위 상실된 통진당 국회의원 중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음. 헌재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의 법적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찾지 않았음은 분명함(즉, 제192조 제4항에서 말하는 '해산'이 '자진해산'만을 의미한다고 명시적 해석을 하지는 않았음)

- 따라서 비례대표 지방의원 소속 정당이 강제로 해산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의해 당연히 의원직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헌재 결정과 모순되는 것 아님
- **지방 언론의 몰이해·역측에 기인한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 공보관을 통한 적극적 대응 필요**
- 선고 직후 백브리핑 등을 통해 해당 기자가 사건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별지 1]

## 청구인용 판결에서 제시될 수 있는 논리(상세)

### ■ 정당해산 결정과 의원직 상실 사이에 논리적 필연성 없음

- 이 논리는 헌재가 제시한 국회의원직 상실 논거와 정반대 취지임. 즉 지방 의원의 행정적 성격을 강조한다면 위 논거를 반드시 청구인용의 논거로 삼아야 할 필요도 없음

### ■ 지방의원의 국민(지역)대표성 > 정당기속성

- 국회의원에 비해 정당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강조

### ■ 공직선거법상 해산에는 강제해산이 포함됨

- 비례대표 퇴직 여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에 강제해산도 포함된다고 설시하는 것이 필수적 ➔ 비례대표 의원의 자의적 당적 변경 방지를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공선법상 '해산'을 자진해산과 강제해산으로 나누어 볼 이유가 없음

### ■ 지방의원의 행정적 성격

- 법무부는, 지방의원은 행정적 성격을 가지므로 위헌정당 해산으로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 법무부가 원용한 독일 사회주의제국당 사건에서 연방의회의원과 주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는 영역이 아니라 '행정영역'에 속하므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았음
- 독일의 사례
  - 다만,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의원의 성격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점이 있으므로 위 논리를 그대로 원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음
  - 다만, 원고 청구를 인용함에 있어, 위 논리만을 독자적 근거로 하지 않고 다른 논리들을 보완하는 논리로 원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별지 2]

## 청구기각 판결에서 제시될 수 있는 논리(상세)

### ▣ 제1안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소정의 '해산'이 '자진해산'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방안

- 기각 이유 설시례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은 당내 노선투쟁에서 패배한 소수자를 보호하고 의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당적이 이탈·변경되는 경우까지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나아가 위 조항이 정부의 청구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정당을 강제해산하는 경우에만 소속 정당 의원의 의원직을 유지시키는 것을 당초의 입법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해산 외의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합당'이나 '제명' 모두 당해 소속 정당이 자율적으로 존속하고 임의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임에 비추어 여기서의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받아 '강제해산'되는 경우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 제2안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소정의 '해산'에 '자진해산'은 물론 '강제해산'도 포함된다고 보는 방안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에 강제해산도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여전히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불문하고 정당해산이 된 정치적 현실, 현행 법규 해석을 통해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헌법상 정당해산 시 의원직 상실 규정이 삭제된 것만으로는 입법자 의사가 변경된 것은 아님
- 정당해산심판결정이 된 마당에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및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옳지 않음

### ▣ 검토 : 제2안은 현재의 스탠스를 그대로 답습하고 논리적으로도 매끄럽지 않아 부적절함

#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제소

## 1. 제소 필요성

- ◆ 현황 : 통진당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현재가 의원직 상실결정을 하지 않았고,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각 지역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퇴직을 통보함 → 이에 지역구 지방의원(총 31명 - 별지 참조)은 현재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비 등을 지급받고, 지방의회 사무실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음
- ◆ 법리적 필요성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 이탈 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해산’은 자진해산만을 의미함.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은 통진당과 같이 소속 정당이 강제해산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는 것임 → 지역구 지방의원도 소속 정당이 강제해산되면 그 본질적 효과로서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결정이 없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당연퇴직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의정활동의 중단 및 각종 지원의 중단 조치가 필요함
- ◆ 현실적 필요성 : 아래와 같이 통진당 인사들의 정치조직이 잇따라 결성되고 있고,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진보진영 원로들이 ‘민주주의 국민행동’(민주행동)을 발족함으로써, ‘통진당의 우회적 재창당’ 여부에 관심이 쏠림 (2015. 6. 10.자 문화일보 보도) ⇒ 재창당 움직임의 사전억제가 필요함
  - 2015. 3. 31. ‘민주와 노동’ 결성 ⇨ 김○○ 전 울산동구청장 등 주축
  - 2015. 4. 29. 경남 민주행동 결성, 2015. 5. 27. 창원 민주행동 결성
  - 2015. 6. 10. 민주행동 창립총회
    - 공동대표 : 함○○(신부), 이○○(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

장), 김○○(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전 국회의원), 한○○(민주노총 위원장), 김○○(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

○ 강○○ 전 경남부지사 등 통진당 인사들도 참여

- ◆ 결론 : 해당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중단시키고 각종 지원 등을 하지 않는 한편, 재창당 움직임을 사전에 억제할 필요 ⇒ 아래의 제소방법이 적절함

## 2. 구체적인 제소 방법

- ◆ 소송의 종류 : 공법상 당사자 소송(지방의회의원지위 부존재확인소송)
- ◆ 원고 : 해당 지방자치단체(예, 경상남도 △△시)
- ◆ 피고 : 해당 지역구 지방의원
- ◆ 청구취지 : ○○○은 경상남도 △△시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청구이유

### □ 확인의 이익(본안 전 요건)

- ○○○은 현재의 정당해산결정으로 소속정당이 강제해산되면 시의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세비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시의원에게 대한 자치단체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받고 계속 요구도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법률적 지위 불안
- 시의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음

### □ 청구이유 주장 개요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 이탈시 퇴직한다는 취지의 규정)의 '해산'은 자진해산만을 의미함
- 따라서 소속 정당이 강제해산 된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현재의 별도의 의



원직 상실선고가 없어도 위 규정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퇴직함

- 지역구 지방의원도 헌법상 정당해산제도 및 방어적 민주주의의 취지, 정당 기속성 등에 있어서 비례대표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의 유추적용이 가능하므로, 현재의 별도 의원직 상실선고가 없어도 통진당 강제해산결정에 따른 위 공선법 규정의 당연한 효력으로 의원직 상실하였음

끝

별지

◆ 통진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원 31명 - 자치단체별 정리

통진당 의원명	소속 광역단체	소속 기초단체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소속 정당
노정현	부산광역시	연제구	이위준	새누리당
이대행	광주광역시	서구	임우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태진				
김은아				
배진하				
고영봉				
소재섭				
김현정				
김선미				
정진아				
이효상	울산광역시	중구	박성민	새누리당
조남애		남구	서동욱	새누리당
김만현		동구	권명호	새누리당
홍철호				
이생환				
안승찬		북구	박천동	새누리당
윤치용				
강진희		울주군	신창열	새누리당
김민식	경기도	파주시	이재홍	새누리당
안소희				
김상봉	충청북도	진천군	유영훈	새정치민주연합
유영갑	전라남도	순천시	조충훈	무소속
이복남				
백성호				
윤석현				
윤석현	경상남도	화순군	구충곤	새정치민주연합
강영희				
정영주				
김석규				
송순호				
류재수				
김주석	창원시	안상수	새누리당	
	진주시	이창희	새누리당	
	함안군	차정섭	새누리당	

#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

## 1. 제소 필요성

- ◆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의원직 상실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근거로 퇴직을 통보하였음
- ◆ 의원직 상실은 소속정당 해산의 본질적 효과로서 헌법재판소의 상실결정이 없더라도 정당해산의 당연한 결과임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구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 등을 지급받고, 지방의회 사무실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음
- ◆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중단시키고 각종 지원 등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음

## 2. 구체적인 제소 방법

- ◆ 소송의 종류 : 공법상 당사자 소송(지방의원지위 부존재확인소송)
- ◆ 원고 : 해당 지방자치단체(예, 경상남도 △△△시)
- ◆ 피고 : 해당 지역구 지방의원
- ◆ 청구취지 : 000는 경상남도 △△△시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청구이유

### 확인의 이익(본안 전 요건)

- 000는 현재의 정당해산결정으로 시의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수당을 지급을 구하고 있으며 시의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받고 또 계속 요구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법률적 지위 불안을

- 시의원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음

#### □ 청구이유 주장 1 개요

-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결정의 당연한 효과 ⇨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선고가 없었더라도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결정의 당연한 효과이므로 지역구 지방의원도 의원지위상실(현재는 법무부가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의원직 상실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상실을 선고하였을 뿐임)
- 근거 ⇨ 정당해산제도 및 방어적 민주주의의 취지, 의원의 정당 기속성,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 차원
-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이와 유사함

#### □ 청구이유 주장 2 개요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할 경우 퇴직된다는 취지의 규정)의 '해산'은 자진해산만을 의미함
- 따라서 소속 정당이 강제해산 된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위 규정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퇴직되고(현재의 별도 상실선고 불필요), 지역구 지방의원 역시 헌법상 정당해산제도 및 방어적 민주주의의 취지, 정당 기속성 등에 있어서 비례대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따라서 현재의 상실선고가 없었더라도 통진당 강제해산결정에 따른 위 공선법 규정의 당연한 효력으로 의원직 상실하였음

#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상대 제소

## 1. 제소 필요성

- ◆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현재가 의원직 상실결정하지 않았지만,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선관위가 공선법 규정을 근거로 퇴직을 통보하였음
-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을 이유로 사유로 당적 이탈 시 퇴직하지 않고, 그 밖의 사유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산’은 자진해산만을 의미하므로, 통합진보당과 같이 강제해산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는 것임.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행정직 성격이 강하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면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역시 강제해산으로 당연 퇴직
- ◆ 현재 지역구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비 등을 지급받고, 지방의회 사무실 등 각종 편의지원을 제공받고 있는데, 이는 부당함
- ◆ 통진당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정치조직이 잇따라 결성되고 있고,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진보진영 원로들이 ‘민주주의 국민행동’(민주행동) 발족 ⇨ 통진당 재창당 여부에 관심 쏠림(2015. 6. 10.자 문화일보 보도)
  - 2015. 3. 31. ‘민주와 노동’ 결성 ⇨ 김○○ 전 울산동구청장 등 주축
  - 2015. 4. 29. 경남 민주행동 결성, 2015. 5. 27. 창원민주행동 결성,
  - 2015. 6. 10. 민주행동 창립 총회
    - 공동대표 : 함○○(신부), 이○○(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전 국회의원), 한○○(민주노총 위원장), 김○○(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

○ 강○○ 전 경남부지사 등 통진당 인사들도 참여

- ◆ 해당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중단시키고 각종 지원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창당 움직임 사전 억제 필요
- ◆ 지역구 지방의원 의정활동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의 제소방법이 적절함

## 2. 구체적인 제소 방법

- ◆ 소송의 종류 : 공법상 당사자 소송(지방의원지위 부존재확인소송)
- ◆ 원고 : 해당 지방자치단체(경남 000시)
- ◆ 피고 : 해당 지역구 지방의원
- ◆ 청구취지 : 000는 경남 00시 시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청구이유

### □ 확인의 이익(본안 전 요건)

- 000는 현재의 정당해산결정으로 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여전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세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며 시의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받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법률적 지위 불안
- 시의원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음

### □ 청구이유 주장 개요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 이탈시 퇴직하고, 그 외의 사유로 당적 이탈할 경우 퇴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의 '해산'은 자진해산만을 의미함
- 따라서 소속 정당이 강제해산 된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위 규정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퇴직되고(현재의 별도 상실선고 불필요), 지역구 지방의원은

행정직 성격이 강한 점, 헌법상 정당해산제도 및 방어적 민주주의의 취지, 정당 기속성 등에 있어서 비례대표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 유추적용 가능하므로, 현재의 별도 의원직 상실선고가 없었더라도 통진당 강제해산결정에 따른 위 공선법 규정의 당연한 효력으로 의원직 상실하였음

별지

◆ 지방의원 자치단체별 정리

통진당 의원명	소속 광역단체	소속 기초단체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소속 정당			
노정현	부산광역시	연제구	이위준	새누리당			
이대행	광주광역시	서구	임우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태진							
김은아							
배진하							
고영봉							
소재섭							
김현정							
김선미							
정진아							
이효상	울산광역시	중구	박성민	새누리당			
조남애		남구	서동욱	새누리당			
김만현		동구	권명호	새누리당			
홍철호							
이생활							
안승찬		북구	박천동	새누리당			
윤치용		울주군	신창열	새누리당			
강진희							
김민식	경기도	파주시	이재홍	새누리당			
안소희	충청북도	진천군	유영훈	새정치민주연합			
김상봉	전라남도	순천시	조충훈	무소속			
유영갑							
이복남							
백성호							
윤석현	광양시	정현복	무소속				
강영희	화순군	구충곤	새정치민주연합				
정영주	경상남도	창원시	안상수	새누리당			
김석규							
송순호							
류재수							
김주석					진주시	이창희	새누리당
					함안군	차정섭	새누리당



#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 1. 확인의 이익 유무

### ▣ 확인의 이익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세비 등 이익과 직결됨

## 2. 전합 회부

### 가. 긍정적 요소

- ▣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을 보다 명징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음

### 나. 부정적 요소

#### ▣ [주문이 상고기각일 경우]

- 현재 결정과 차별성 있는 논리 구성이 쉽지 않음
  - 현재 결정 :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주된 이유로 의원직 상실결정 내림

- 위헌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취지와 그 제도의 본질적 효력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위헌정당 해산은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음
-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위헌정당해산 제도가 가지는 헌법수호의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나아가 정당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됨**
-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 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는지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하여 신분 유지의 헌법적인 정당성을 잃으므로 그 의원직은 상실되어야 한다.

- 서울고등법원 판결 : 현재 결정 취지와 사실상 동일함

- 정당이 목적이나 활동에 있어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 직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해산된 정당의 사상이나 이념을 따르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계속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이나 헌법수호의 목적 달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유지시키는 것은 헌법수호를 위하여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위헌정당을 해산하면서도 당해 정당이 위헌정당임을 알면서 이를 부인하고 끝까지 당해 정당에 남아 있는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되고, 그 정당의 위헌적인 사상이나 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는 활동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위헌정당을 해산한 목적이 무의미하게 된다.**
- 헌법과 법률이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정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결정 당시 당해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는, 현재 결정[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소속 국회의원도 직위를 상실하는 것은 맞지만, 의원직 상실 여부 판단 권한은 현재가 아닌 법원에 귀속한다는 것임

- 오직 사법부만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선언하면서 현재 결정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 제기될 수 있음
- 현재 결정과는 다른 논리로 국회의원 직위 상실된다고 설시할 경우 비판의 강도는 약화될 수 있을 것이나 논리 구성이 여의치는 않음

● ⇨ 현재 결정과 별 차이가 없는 논리 구조로 상고기각을 하면서 전합 판결을 내는 것은 전합 판결의 위상과 권위에도 부합하지 않음

#### ■ [주문이 파기환송일 경우]

- 기존에 검토한 바와 같이 본안 판단에 들어갈 경우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은 '청구인용'임
- 파기환송 주문은 대법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하여 현재와 반대의 결론

을 내렸다는 의미인바, 그 자체로 파장 예상되고 파기환송 판결의 형식이 전합 판결이라면 파장은 더욱 클 것임

- 언론의 반응 역시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대법원-헌재 간 갈등을 주제로 양비론 입장의 기사 양산 예상됨

#### 다. 검토

- ▣ 기념비적인 법리를 선언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전합 판결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견임
- ▣ 헌재 계속 중인 전합 판결 관련 사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음
- ▣ ⇨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선언하는 데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할 것임

#### 3. 기타 고려사항

- ▣ 전합 회부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될 경우 ⇨ 퇴로가 없음
  - 헌재 전합 회부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된 사건 중 일부는 소부 판결 선고로 종국되고 있음.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언론 등의 문제 제기는 없는 상태임
  - 이 사건의 경우 전합 회부 사실 자체로 다수 언론의 관심 유발할 것이고, 전합 선고를 전제로 예측 기사를 양산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사건의 산출물은 전합 판결이어야 함 [끝]

# 법관 이민걸 탄핵 소추안

의안 번호	0000
----------	------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000 의원 외 00인

## 주 문

---

---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이민걸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

---

성 명 : 이민걸

직 위 : 법관

## 탄핵소추의 사유

---

---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 이민걸(이하 '피소추자'라고 한다)은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 (헌법 제 103조), 법관의 신분보장 (헌법 제10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헌법 제 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만 직권남용죄 등 형법 위반 사항은, 향후 검찰의 기소 후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 소추안에는 별도로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위반 행위는 다른 피소추자들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2011. 9. ~ 2017. 9.)에 의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 2. ~ 2016. 2. 대법관 겸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2016. 2 ~ 2017. 5. 대법관 겸임) 등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 중 사법에 관한 본질적 요소인 재판독립의 원칙과 법관의 신분보장,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오로지 신뢰에 기반하여 사법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이므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피소추자의 지위

피소추자는 1988. 2.경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17기) 1988년 사단검찰관, 1989년 수도방위사령부 검찰관을 거쳐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된 이래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황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1999. 9.경부터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하며 2002. 2.경까지는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및 기획담당관을 겸임하였고, 2002. 5.부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파견되었으며, 2003. 2.경부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07. 2.경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총괄)을 맡았고, 다시 2008. 2.경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맡으며 2009. 2.경부터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국장을 겸임하고, 2010. 2.경부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맡으며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 기획단장을 겸임하는 등 각종 보직을 맡아 오다가, 2011. 10.경부터 2014. 2.경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실장, 2014. 2.경부터 2015. 8.경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5. 8.경부터 2017. 10.경까지는 법원행정처 기획정실 실장을 맡았으며, 2017. 11.경부터 대법원 사법연구로 보직되어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이래 2018. 6.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회부된 자로, 본 탄핵소추안 발의일 기준으로 헌법 제101조 및 법원조직법 제5조에 따른 법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 2. 피소추자의 행위

### 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이하 '인사모') 와해 조치

- 1) '인사모'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소모임으로, 상고법원이나 사법 관료화 등 사법제도를 논의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다. 인사모가 결성되자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던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인사모가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한 모임으로 보이니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이규진은 2015. 8. 19. 이들이 "법관의 업무 부담 개선, 상고법원 설치 반대 등 대법원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대법원과 다른 의견의 외부 표출 우려"를 인사모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방향' 문건[1]을 작성해 박병대 처장에게 보고했고, 주례회의에서 논의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에 관하여 '우리법연구회 노동개혁 5대 방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 검토'[307], '전문분야 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12] 등 여러 문건을 작성하였다.
- 2) 임종헌 차장은 대응 방안 검토를 지시했고, 김연학 인사총괄심의관은 2016. 3. 10.경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 방안'[281] 을 보고하였다. 해당 문건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인사모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논의들을 진행하는 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 대응방안으로 인사모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각 폐지와 정상화를 검토한 내용이다.
- 3) 보름 뒤인 2016. 3. 25.경 박상언 기획조정심의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자연적으로 와해시키는 방안으로 다른 판사 모임과 중복 가입을 금지하는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내용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임종헌 차장과 피소추자에게 보고했다(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라고만 한다) 2018. 5. 25.자 조사보고서(이하 '3차 보고서'라고만 한다))

40면 참조}.

- 4) 위 ‘로드맵’을 담은 문건이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181] 문건으로, 위 문건은 29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편이며, 표지에는 5쪽에 걸친 요약문이 첨부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에 관하여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통한 와해 조치를 검토하였으며, ‘인사모의 자연 소멸’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기획하는 것이다. 위 문건 중 ‘3차 보고서’에서 정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그림 1]과 같이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 ‘고법부장 대거 탈퇴’ 등의 조치들을 시기별로 어떻게 시행할지 구체적으로 고안한 로드맵까지 정리되어 있다(3차 보고서 29~32면).

검토 배경에 관하여(증 제5호증 1~3면 참조)

가. 전문분야연구회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점검 필요

나. 특정연구회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

▣ 외형적 급속·과잉 성장에서 드러난 전문분야연구회 운영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필요

▣ 연구회 주도 세력의 편향성 및 영향력 증대로 인한 위험성 관련 대응책 마련 필요

●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 핵심세력이 법관사회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활동하는 정황이 감지됨

다. 종합적 대책 검토 필요

▣ ①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의 시스템 점검 및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의 대응방안은 물론 ② 특정 연구회 과잉 성장 관련 위험 방지를 위한 정무적 대응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전문분야연구회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에 관하여(증 제5호증 9~11면 참조)



▣ ① 일부 연구분야 주제에 대한 법관 사회의 관심 消盡

▣ ② 중복가입 금지 규정 形骸化

● 중복 가입 현황

- 인권법연구회가 중복가입 인원수도 가장 많고(227명), 중복가입자 비중도 가장 높음(53%)

⇒ 시속 등 핵심세력에 의한 포섭활동으로 중복가입한 법관이 많은 것으로 해석됨

▣ ③ 한정된 예산 대비 연구회 다수로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이하 생략)

인권법연구회 활동에 관하여(증 제5호증 12면 참조)

● ① 허가받은 전문분야 이탈·무시

- 국제인권은 물론 통상적인 인권법의 논의 영역도 이탈하는 수준임

● ② ‘인사모’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전반 및 최고법원 구성 등에 조직적 개입 시도

- 상고법원, 사법행정위원회, 판사회의 활성화,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하여 조직적 개입 시도

● ③ 일부 강경·핵심세력에 의한 연구회 및 사법부 전체 여론 호도

- 우리법연구회의 내부결속 강화 시스템을 모방하여 일부 핵심세력을 중심으로 유대관계 형성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에 관하여(증 제5호증 16~17면 참조)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장점

▶ [법관들 상대로 명분 있음]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경우 ① 중복가입금지규정의 규범력 회복, ② 한정된 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③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법관들의 피해 방지 등의 명분 있음 ⇒ 규범 준수 및 편법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을 중시하는 법관들의 향상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음

▶ [행정처·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임]

- 중복가입금지 해소방안의 경우 커뮤니티 관리책임자인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공지 및 시행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나 저항 없음 ⇒ 그 시행방안에 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나 특정 구회에 대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다른 방안에 비하여 낮음

▶ ['인사모 해소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임]

- 행정처가 '모든 연구회는 전문분야와 무관한 소모임 활동을 정리하라'는 식으로 정공법을 택할 경우 인사모를 표적으로 한 조치임이 쉽게 드러나고 강한 반발을 초래할 우려 있음

- 중복회원 해소방안은 다소 기술적인 커뮤니티 정비방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전정국장이 현행 규정에 위배되는 중복회원 해소방안을 공지하면서 그 밖의 커뮤니티 관련 규정 역시 소개하고 이에 위반하는 활동을 자제하여 달라고 안내한다면 법관 사회 반발이나 인사모측의 반발 명분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별다른 사전 준비 작업 없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즉시 시행할 수 있음

-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를 위하여 어느 정도 유예기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공지와 동시에 직권으로 정리할 것인지 여부 정도만 결정하면 됨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시행에 따른 인권법연구회 위축 효과에 관하여(증 제5호 증 17~18면)

- 한명의 법관이 가입한 여러 연구회 중 가입일자가 가장 빠른 연구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복가입으로 탈퇴 처리할 경우, 연구회별 회원수 변동내역을 분석
- 인권법연구회(431명 → 204명)
- 도산법연구회(449 → 283명)
- 지적재산권법연구회(374 → 209명) (이하 생략)

기타 특정연구회 과잉 확장 관련 대응방안에 관하여(증 제5호증 23~26면 참조)

- ① 인사모가 연구회의 설립 취지 및 관련 규정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회장의 문제 제기
- ② 회원 가운데 법원의 '주류 중 주류'로 인식될 수 있는 경력의 선배법관들 다수 임 ⇨ 적절한 시기와 명분을 갖추어 탈퇴하도록 유도
- ③ 인권법연구회가 그 시스템 및 인적 구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사정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부각될 경우 회원들의 상당한 동요가 있을 것임 ⇨ 구체적 방법론은 추가 검토 필요

[그림 1] 인사모 관련 로드맵 예시(증 제5호증 28~29면 참조)

시기	방안 예시
4월 초	<b>전정국장 명의 공지</b> '① 커뮤니티 활동 중 특별히 중요하고 가치있는 활동에 대하여 특별 예산 지원 방안 도입 (본래 기초실장 명의 공지사항이나 한 번에 공지함이 효율적일 수 있음) ②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 예정 (일반법관들 피해 명분) ③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로 전환 (사법부 전체 역량 강화 등)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규정 설명하면서 연구회 목적과 무관한 소모임 해소 당부'
4월 중순	<b>국제인권법 회장의 문제제기</b> '인사모의 경우 연구회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데 이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구함'
4월 하순	㉠ <b>새로운 대안적 연구회</b> (ex. 엔터테인먼트법 연구회 및 사법국제화연구회) <b>발굴·신설</b> ⇨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한 이벤트 등 공지 및 활동 개시 ㉡ <b>다른 기존 연구회 활동 활성화</b> (밴드 및 지역별 모임 등)
5월 초순	인사모 소모임이 <b>존치 입장을 고수할 경우</b> ⇨ <b>고법부장 등 명망 있는 선배 법관들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대거 탈퇴</b>
5월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 다수 회원의 의견을 모아 인사모의 자연스러운 소멸 유도

- 5) 이 후로도 2016. 4. 7.경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 방안'[12], '국제인권법 연구회 관련 대응방안'[5], 2016. 5. 31.경 '미디어 분야 연구회 신설 추진 전략'[309] 등 관련 문건이 생성되었다.
- 6) 위 각 문건들의 작성 당시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였고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을 보고받기도 한 피소추자 또한 위와 같은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 7) 3차 조사보고서는 특정연구회의 소모임이 사법제도나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법행정 담당자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견제 내지 압박을 하기 위한 대응방안까지 마련한 것은 실행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3차 보고서’ 47면 참조).

#### 나. 기획조정실 실장 재직 당시 ‘인사모’,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조치

- 1) 한편 위 문건 외에도 피소추자가 기획조정실 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를 와해하려는 취지에서 수 십 건의 관련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해당 문건들은 ‘인사모’의 모임 내용을 정리하거나, 관련 게시글의 동향 파악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인터넷 카페인 ‘이판사판’의 개설자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등 법관들의 자율적인 사법행정 관련 의견 표명을 견제하고 억압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들이다.
- 2) 실제 위와 같은 문건들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①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제가 대두되었던 2016년 12월 말경 당시 인권법연구회 회장이던 이규진 상임위원을 통하여 행사 개최의 부적절성을 경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한 사실, ② 2017. 1. 23.경 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당초 계획대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의결함에 따라 행정처에서는 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견제조치를 강구하게 되었고, 실장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7. 2. 10. 처장 주례회의에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사실, ③ 그 과정에서 부장회의와 같이 일선 법관의 정서를 상대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이상 ‘3차 조사보고서’ 56면). 즉,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된 문건들은 실제 실행행위까지 이어지기도 한 것이다.
- 3) 당시 기획조정실 실장이었던 피소추자는 위와 같은 논의의 과정과 결정

에 관하여 가장 잘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관련 사안을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4) ‘3차 보고서’에 따르면 특조단은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비록 기존 예규에 따른 집행이기는 하나 그 시기와 방법, 근거, 내용과 시행 과정 등에서 시급성과 필요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해소조치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인권법연구회나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제재로 볼 만한 의심스런 정황이 많으므로, 이는 행정처가 예규의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인권법연구회 또는 공동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부당한 압박을 가한 제재조치로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사법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연구 활동을 제한하고 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한 것 또한 방안의 실현 여부를 떠나 합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여지도 높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3차 보고서 51~59면 참조).

### 3. 피소추자의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

#### 가. 관련 규정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러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은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의 내용이, 사법권의 가장 본질적인 재판업무에 관한 대원칙인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과 헌법 제106조의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중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재판독립은 법원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내부세력, 특히 사법행정권자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또한 헌법 제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불리한 처분이란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 뿐 아니라 일상적인 법관 사찰, 자발적인 법관들의 연구 모임을 위축시키려는 조치 등도 포함된다.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과 헌법 제106조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 규

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참조).

한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재판업무 자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법관이 사법행정권자의 지위에서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익실현의무에 기초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일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 제103조에 따른 재판의 독립 원칙과 헌법 제106조의 법관의 신분보장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소추자 등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당연한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 나. 3차 조사단의 판단기준

한편 3차보고서 19쪽에서는 의혹별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평가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정책결정을 통하여 실행행위로 나간 경우 뿐만 아니라 문서작성행위, 그 작성지시행위, 논의 과정, 정책결정행위 등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면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훼손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행위별 평가이며 각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특조단 스스로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 침해나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위 기준인 재판의 독립 등은 헌법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임으로, 결국 3차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특조단은 위 헌법상의 기준에 비추어 정도가 남용에 미치지 않는 것을 부적절로 평가하였다는 것인데, 부적절로 평가된 부분도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에 인적 책임을 물을 때는 남용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실조사의혹을 받아 왔던 3차 조사단조차 사법행정권의 남용 또는 부적절로 판단한 행위는 적어도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등 헌법가치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기준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다.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피소추자가 법원 내 공식적·자율적으로 결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의 활동을 견제하고 나아가 이를 와해할 목적의 여러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로드맵’까지 구체적으로 기획하여 작성된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을 보고 받은 사실, 피소추자가 기획조정실 실장으로 있는 동안 위와 유사한 내용의 문건이 다수 작성된 사실, 2017. 2.경에는 위 각 문건들에서 검토한 방안 중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처장 주례회의에서 승인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는 특정 연구회의 소모임이 사법제도나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견제 내지 압박을 하기 위한 대응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실행 여부를 떠나더라도 그 자체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특조단의 평가에 비추어 보면(3차 보고서 48면),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등 헌법가치의 중대한 위반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헌법 제10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헌법 제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등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 4. 탄핵의 정당성

##### 가. 대통령 탄핵과의 차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파면결정을 선고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헌법, 법률 위반의 정도’와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달리 법관 탄핵에 대하여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경미한 범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004헌나1 결정 참조).

먼저 법관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즉 국가적 손실, 사법질서 혼란 등을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그 수가 3,000여명에 이르고, 그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숫자도 160여명에 이르며, 대법관의 경우조차도 13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설령 위 인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탄핵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공백을 동료 (대)법관이 메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이나, 재판의 공백 등 사법질서의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일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헌법, 법률위반의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 피소추자들 역시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피소추자가 침해한 대상은 헌법상 결코 침해되서는 안될 재판의 독립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한편 법관의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헌법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헌법, 법률위반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관 파면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적은 반면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

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형량을 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

한편 피소추자의 행위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이들이 법관 탄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기만료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 소추가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아무리 큰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양정의 최대는 정직 1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소추자와 같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단지 법관 징계절차에 의하여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 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사법농단에 관여한 피소추자는 정직처분으로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가 아니라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현재까지 사법부 내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으로 발탁된 법관들이 ‘사법관료’로 변모하여 추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대법관 등 고위법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왔다. 피소추자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들을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에서 시킨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피해자 행세를 통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 동정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대법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물며,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가 법관징계법상 최장 1년의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재판장으로 복귀한다면, 국민의 법감정과도 맞지 않는데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피소추자로부터 재판받게 되는 당사자나 대리인인 변호사들로 부터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받게 될 것이다.

## 5. 결론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오로지 고위법관들의 사익을 추구한 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소위 법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설마 스스로 법을 어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법관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마지막 믿을만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던 법관들에 의하여,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관 이하 고위법관들,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위배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의원 등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관 이민걸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2.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첨부 2.  
기재 문건 중 아래 가항 내지 아항  
가. [1] (150819)인사모관련[실장회의용](이규진)  
나. [2] (150823)인사모대응방안(기조심의관)  
다. [5] (160407)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인사모관련추가)[박■■■]  
라. [12] (160407)전문분야연구회일반개편방안[박■■■]  
마. [181] (160325)전문분야연구회구조개편방안[박■■■]  
바. [281] (160310)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인사)  
사. [309] (160531)법원\_미디어\_연구회 설립방안\_로드맵  
아. [312] (170124)인사모 관련 검토+1 [박■■■]



---

#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의 방향 (대외비)

---

2015. 8. 19.

국제인권법연구회

---

## 1.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분과위원회)

### 가. 연구회 설립 경과

▣ 2011. 6. 법관 33명이 법원행정처장께 연구회 설립허가 요청<sup>1)</sup>

▣ 2011. 8. ○○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임시간사),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 및 회원가입 안내' 공지

● 발기인 대표, 김○○ ○○고법 부장판사

● 공지된 '활동 계획'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응답

-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 성과의 정리 및 정보의 공유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심포지엄, 외부강연 등 학술모임의 개최

● 초기 회원들 : 김○○, 김○○, 김○○, 김○○, 김○○, 김○○, 나○○, 류○○, 박○○, 사○○, 서○○, 송○○ 안○○, 유○○, 윤○○, 이○○, 이○○, 이○○, 이○○, 정○○, 차○○, 최○○, 홍○○, 황○○ 등

▣ 2011. 10. 21. 창립총회

● 선출 : 회장 김○○, 간사 겸 학술총무 이○○, 문화총무 이○○, 소모임총무 이○○

▣ 2012. 11. 30. 총회

● 선출 : 회장 유임, 간사 유○○, 학술총무 김○○, 기획총무 김○○

---

1)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2조

---



## ■ 2013. 11. 22. 총회

- 선출 : 회장 김○○, 간사 김○○, 학술총무 안○○, 기획총무 신○○
- 주요 논의내용
  - 법관론, 사법부의 독립 등
  - 김○○ 부장판사의 제안으로, 소모임(분과위원회)<sup>2)</sup> 구성을 top-down 아닌 bottom-up 형식으로 구성하기로 함 ⇒ 이에 따라 2013. 11. 김○○ 부장판사가 ‘난민법 소모임’ 을, 2014. 2. 김○○ 판사가 ‘법관론 소모임’ 을, 2014. 3. 허○○ 판사가 ‘표현의 자유 소모임’ 을 각 제안
  - 2014. 1. 커뮤니티 밴드 개설

## ■ 2014. 11. 21. 총회

- 선출 : 회장 이○○,<sup>3)</sup> 간사 김○○
- 2014. 11. ‘인권편람’ 번역작업 완료 : 연구회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제4장 법관, 검사, 변호사의 독립과 공정성’
- 2014. 12.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 : 김○○, 나○○, 오○○, 이○○, 임○○, 홍○○
  - 총무(팀장) : 학술 강○○, 기획 송○○, 홍보 윤○○, 정책 이○○, 국제협력 현○○
  - 분과위원회(소모임) 위원장 : 법관론 미정, 표현의 자유 김○○, 난민법 안○○
  - 2014. 12. 이○○ 판사가 ‘소수자인권 소모임’ 을 제안

## 나. 소모임 관련

- 연구회 내 소모임은 ‘분과위원회’와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위에서 본 바와

2)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칙 제6조 (분과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① 연구회는 세부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간사 또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분과위원회 총무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3) 2014. 6. 김○○ 고등부장이 김○○, 성○○, 이○○ 세 고등부장에게 “연구회 내에 본인 외에는 고등부장이 한 분도 없다, 가입해서 후배들을 도와 달라.”고 제안하여 새 부장판사가 가입하였음





같이 회원 5명 이상이 모여 bottom-up 형식으로 구성됨

- 소모임 대표(분과위원장)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체적으로 대표를 선정하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이 관례임

## 2.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약칭 “인사모” )4)

### 가. 설립 및 예비모임의 경과

#### ▣ 2015. 7. 7. 박○○ 판사의 제안

#### ▣ 2015. 7. 21.자 첫 예비모임

- 이○○ 부장판사 등 12인 참석 (뒷풀이에 未詳 2인 더 참석)
- 선출 : 분과위원장(대표) 김○○, 총무 박○○, 김○○
- 주요 논의 내용 : 법관사회 내부의 소통, 사무분담, 상고법원 등

#### ▣ 2015. 8. 11.자 두 번째 예비모임

- 이○○ 부장판사 등 16인 참석
- 총무 2인 중 김○○ 부장판사가 빠지고 박○○ 판사가 제1총무로 선출됨
- 주요 논의 내용 : 상고법원5)
  - 가칭 ‘상고법원 끝장 토론회’ 로 모임 명칭 부여
  - 이○○ 부장판사가 찬성론, 이○○ 부장판사가 반대론으로 각 기초발표 후 난상토론 ⇒ 결론을 내지는 않음

### 나. 향후 일정

- 정식 첫 모임 : 2015. 9. 14. 월요일, 주제는 ‘합의부의 운용’ (재판장과 배석의 관계)
- 차후 예상 논의 주제 :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4) 주요 내용은 별첨 1, 2의 2015. 7. 21.자 및 2015. 8. 17.자 각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제도소 모임 관련 보고서 참조

5) 주요 내용은 별첨 4의 ‘인사모 1회 모임 정리’ 문건 참조



### 3. 문제점 검토

#### 가. 연구회의 성격

##### ■ 우리법연구회와의 관련성

- 발기인 대표 김○○ 부장판사 등 초기의 주요 회원들이 1988년 이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관련이 깊음<sup>6)</sup>
- 우리법연구회가 2009년 말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어 활동이 어렵게 되자 2011년 새로이 창설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참여적 · 진보적 색채

- 노동법연구회나 젠더법연구회, 변협 인권소위원회 등과의 공동세미나 활동에서 노동, 인권, 소수자 등 주로 사회적 성격이 강한 주제를 논의
- 표현의 자유(‘일베’와 명예훼손 등), 소수자 보호, 난민, 법관의 독립, 양심적 병역거부 등 소모임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주로 진보적 입장에서의 이론을 전개

##### ■ 주요 회원의 강한 유대관계

- 2015. 8. 현재 전체 회원 수는 405명에 이룸
  - 인권편람 번역본 수령과 관련하여 2015년에만 1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함
  - 다른 커뮤니티에 비하여 30기 이하의 젊은 법관 회원이 많음

6) 2010. 5. 공개된 우리법연구회 회원 60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음(괄호 안은 당시 소속)  
▽ 부장판사급 = 오○○(수원지법 성남지원) 문○○ 이○○(부산지법) 김○○(수원지법) 최○○(인천지법) 박○○(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울산지법) 사○○ 유○○ 이○○(사법연수원) ▽  
평판사 = 박○○ 권○○ 김○○ 이○○ 이○○ 홍○○(서울고법) 권○○ 조○○(부산고법) 김○○ 박○○(특허법원) 문○○ 박○○ 서○○ 윤○○ 이○○(서울중앙지법) 김○○ 최○○(서울행정법원) 마○○(서울가정법원) 이○○(서울동부지법) 곽○○(서울남부지법) 변○○(서울북부지법) 문○○(서울서부지법) 장○○(의정부지법) 박○○ 박○○(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유○○ 이○○ 임○○(수원지법) 구○○ 김○○ 서○○ 송○○(부산지법) 문○○ 위○○ 이○○(부산지법 동부지원) 김○○ 문○○ 최○○ 홍○○(창원지법) 김○○(창원지법 진주지원) 성○○(대전지법) 강○○(대전지법 홍성지원) 박○○(광주지법 목포지원) 이○○(전주지법) 박○○(전주지법 정읍지원) 김○○ 최○○ 한○○(대법원 재판연구관) 장○○(사법연수원) 정○○(헌법재판소 파견)



- 전체 회원 중 정기세미나 및 정기총회에 자주 참석하거나 커뮤니티 내 댓글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소위 '주요 회원' 수는 약 30명 정도로 파악되고, 특히 이들 중 일부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야법조인들과 'Inner Circle'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주요 회원 이외의 회원들 대부분은 국제적 시각에서 본 인권 분야의 연구 혹은 제대로 된 인권법 공부를 위해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으나, 회원들 중 진보적 성격의 일부 젊은 법관들이나 인사문제 등 대법원에 불만을 가진 일부 법관들은 사안별, 주제별로 주요 회원의 의견이나 논리에 강한 동조를 보이고 있음
- 젊은 법관들 중 유학을 다녀오거나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OHCHR), EU 내 인권 관련 기관 등 국제기구 관련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연구회 활동에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특히 같은 연구회 소속 이○○ 판사의 사망이나 박○○ 판사의 폐암 발병 등을 접한 후, 모금활동은 물론 이를 계기로 법관의 업무부담 개선, 이를 논거로 한 상고법원 설치 반대 등 대법원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 다른 연구회와 달리 임원진 및 부장판사들의 찬조금 출연, 그들 주도의 회식문화 등 고참 기수들에 대한 '선배'로서의 역할 요구가 당연시되는 등 특정 분야 연구를 위한 모임이라기보다는 私조직과 같은 인적 결합체로서의 분위기가 강함
- 요컨대, 주요 회원들과 일부 젊은 법관 회원들은 강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단결된 유대관계를 보이고 있음

## 나. 인사모의 문제점

### ▣ 윤리규정 위반은 없음

7) 주요 내용은 별첨 3의 2015. 8. 17.자 이○○ 판사 관련 보고서 참조



- 인사모 활동이 법관의 단체활동 내지 연구활동에 관한 법관윤리강령 등 윤리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함 (⇒ 윤리감사관실의 검토를 거침)
- 외국의 법관윤리규정(벵갈로어 법관행동준칙 주석 138.)도, 법관이 법원 운영 등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관하여 외부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음

법관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외부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A judge may speak out on matters that affect the judiciary)

138. 법관이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절하게 외부에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는 그 논쟁이 법원 운영, 사법부 독립(법관의 보수와 혜택을 포함하는), 법 집행의 근본적인 측면, 또는 법관 개인의 청렴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관한 경우에도 법관은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법관이 이들 문제에 관하여 정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로비'하는 것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되고 그 문제가 법원에 사건화 되었을 때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암시하는 것으로 비추어져서도 안 된다. 나아가 법관은 그의 논평이 사법부의 공식적인 견해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때때로 사법부의 견해가 아닌 순전한 법관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법관은 법과 관련된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A judge may participate in a discussion of the law)

139. 법관은 교육적인 목적이나 법의 약점을 지적하기 위한 법 관련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법관이 법안에 대하여 논평하는 것이 유익하고 적절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위헌 여부에 관해 비공식적인 해석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견해 제시는 피하여야 한다. 보통의 경우, 법안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견해표명은 실무적 영향이나 법안의 흠결사항과 관련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쟁점은 피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법적 의견표명은 개인으로서가 아닌, 사법부 전체로서 또는 기관으로서의 노력의 결집 형태로 행하여져야 한다.

#### ▣ 연구회 내 소모임 활동의 적절성 有無

- 그러나 연구회는 대법원에 소속되어 그 인적·물적·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학술연구단체인바, 인사모의 활동 내용에 비추어 연구회 활동의 일환인 소모임 활동으로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임



- 표현의 자유라든가 난민법 등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성격상 수궁할 수 있는 논제이나, 사법제도를 논의하겠다는 그 취지에 비추어 인사모는 연구회 활동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판단됨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는 연구회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8조(활동) ①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2. 사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
3.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법원 내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해당 분야에 관한 법률심포지엄의 개최

- 연구회 회칙은 연구회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8조 (활동)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2. 사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
3.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법원 내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법률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개최
5.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국제 교류
6.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 인사모는 상고법원, 재판장과 배석의 관계, 대법관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국제인권법 분야가 아닌 주제를 논의하고 있음 ⇒ 회칙 제8조 제6호의 ‘그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 대법원과 다른 의견의 외부 표출 우려

- 통상 소모임 개최 후 그 결과를 연구회 커뮤니티 내에 게시해 왔음
- 인사모는 상고법원 관련 논의 내용을 커뮤니티 내 게시판에 올릴 예정인바, 찬반양론의 각 논거를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고법원에 대한 찬반거수 결과까지 게시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 외부에서 볼 때 국제인권법 연구회 전체의 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비록 사전에 연구회 회장 및 대법원과의 상의를 거치겠다고 약속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회원(예컨대 이○○ 부장판사)이 사전 논의 없이 외부 언론에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제공하면서 연구회의 이름을 차용하는 독단적 행동을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다. 검토

### ▣ 외부로의 의견 표명 문제 ⇒ 현재까지는 통제 가능

- 현재 연구회는 물론 인사모를 포함한 소모임 활동은 90% 이상 파악되고 있음
- 주요 회원들도 문제될 소지가 있는 모임이나 활동은 자제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대부분의 활동을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로의 의견 표출은 반드시 사전에 회장 및 대법원과의 논의를 거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다만, 2015. 8. 11.자 모임 후 2015. 8. 19. 현재 게시판에의 게시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바,<sup>8)</sup>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논의 결과가 왜곡 전달되거나 다른 대다수 회원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 게시를 막기는 어려우므로, 내용의 순화를 권유하여 게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7조, 폐쇄커뮤니티의 개설에 의한 논의까지만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인사모의 경우에 갑자기 폐쇄커뮤니티를 개설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임

#### 제7조(분과 및 폐쇄 커뮤니티)

- ① 연구회는 세부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고, 회장은 각 분과마다 분과별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 ② 연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폐쇄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회는 간사 또는 분과별 간사의 허가를 받은 회원에 한하여 폐쇄 커뮤니티에 자료를 게시하거나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8) 게시판에 올릴 내용은 별첨 5의 '새로운 소모임의 구성 알림 및 경과 보고' 문건 참조



## ▣ 향후 문제점

- 앞으로 연구회 및 소모임 활동은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한 성격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60%가 넘는다고 판단됨
- 물론 現 회장의 임기 1년이 만료된 후 2016년 차기 회장으로 선출 가능한 고등부장들(김○○, 김○○ 등) 역시 연구회 및 소모임 활동에 대하여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017년 이후 이○○ 부장 등 주요 회원들이 회장으로 선출되어 대법원과의 의견 교환 없이 독자적 활동을 하게 되고, 대다수 회원들이 별다른 의식 없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법원 내 이질적 집단으로서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4. 대책

### 가. 연구회 자체 대책

#### ▣ 회장의 역할

- 연구회가 국제인권법 분야에 국한된 연구를 하는 경우 이는 격려하고 권장하여야 할 활동임
- 따라서 국제인권법 분야를 벗어난 인사모 소모임을 제외한 연구회의 다른 활동은 문제가 없음 ⇒ 아직 정식 모임을 가지 않은 인사모에 대하여는 향후 정식 활동 추이를 관망하면서 향후 몇 개월 간 통제를 하되 외부로의 의견 표출 등 움직임이 나타나면 강하게 제어를 하고, 연구회 전체에 대하여는 '연구회 활동'에 관한 회칙 규정을 근거로 국제인권법 분야가 아닌 논제에 관하여는 강하게 제어를 하여 연구회 내에서는 논의를 계속하지 못하게 제재
- 회장의 제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커뮤니티 내에서 그 문제를 공론화하여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을 것임
  - 대다수 회원들은 연구회의 원래 목적에 충실한 논제의 선택에 동의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주제에 관하여는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임



- 만약 주요 회원들이 대다수 회원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계속 논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요 회원들은 대다수 회원들로부터 고립될 것임
- 다만, 대다수 회원들이 연구회의 본래 활동 목적을 벗어난 논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문제를 공론화한 회장의 권위가 손상되어 사퇴 수순을 밟게 되겠지만, 이는 연구회를 제도권 내에 둘 수 없다는 비판의 전제가 되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 내 커뮤니티로서의 존립 근거를 상실할 것임

#### ■ 고등부장들의 역할

- 김○○, 김○○, 성○○ 등 고등부장들은 회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소모임이나 지방 모임, 뒷풀이 모임 등에 대신 참석하여 회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고 있는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함
- 고등부장들로 하여금 건전한 소모임 창설 및 적극적 활동을 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연구회 내 진보적 분위기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음

### 나. 대법원의 대책

#### ■ 제1안

- 강경 案 : 대법원이, 인사모의 논제 선택 및 활동 내용의 문제점을 내세워 공식적으로 연구회의 성격 및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에만 충실할 것을 연구회에 정식으로 요구하는 案
- 방식 : 연구회 회장과 간사에게 대법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회장이 이를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
- 장점 : 연구회의 향후 노선을 명확히 하여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단점 : 연구회의 일부 활동에 문제적 내용이 있다는 점과 무관하게, 주요 회원들과 젊은 법관들은 대법원이 커뮤니티 활동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집단 반발할 우려가 큼. 이 점이 현재 추진 중인 상고법원 반대론과 함께 이슈화 된다면 법원 안팎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많음

#### ■ 제2안





- 절충 案 : 대법원이 연구회에 대하여 인사모의 성격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커뮤니티 밖에서 논의하는 것은 몰라도 커뮤니티 내에서 논의하는 것은 不可하다는 대법원의 의견을 전달
  - 우리법연구회가 2015. 5. 정기세미나에서 상고법원 관련 토론을 하였으나, 제도권 바깥의 모임인지라 세간의 이목을 끌지 못한 선례가 있음
- 방식 : 대법원이 연구회 회장과 간사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회장이 이를 연구회 내 운영위원회 및 인사모 대표와 총무들에게 알려 연구회 밖에서 논의할 것을 설득
- 장점 : 문제 있는 소모임인 인사모 부분에만 제재를 가하여 대다수 회원들의 반발이 거의 없을 것임
- 단점 : 인사모를 중심으로 한 주요 회원들의 반발과 향후 활동의 음성화로 통제 및 관찰 범위를 벗어나게 됨

#### ■ 제3안

- 유화 案 : 상고법원이라는 최대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연구회 및 인사모 소모임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외부로의 의견 표출이나 과격한 활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이를 통제하고, 상고법원 현안이 마무리된 이후에 정식으로 문제를 해결
- 장점 : 연구회의 반발이나 이의 제기가 없을 것이므로, 상고법원이라는 법원 최대의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문제 돌출을 피할 수 있음
- 단점 : 추이를 관망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 통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화약고를 지키는 셈이 될 수 있음

#### ■ 結 (기타 의견)

[끝]



#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 (對外秘)

2015. 8. 24.

기획조정실

## 1.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개설 및 활동 경과

### ■ 개설 및 예비모임의 경과

- 2015. 7. 7. 박○○ 판사, 개설 제안 ⇨ 7. 21. 첫 예비모임(법관사회 내부 소통 및 사무분담 등 논의) ⇨ 8. 11. 두 번째 예비모임(상고법원 끝장 토론회) ⇨ 분과위원장 김○○, 총무 박○○, 박○○ 판사 확정

### ■ 향후 활동 일정 및 예상

- 9. 14. ‘합의부의 운용’(재판장과 배석의 관계)을 주제로 정식 첫 모임 예정
- 차후 예상 논의 주제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 법관 관료화 등

## 2. 문제점

### ■ ①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에 명백히 위배됨

- 법원행정처의 예산 및 전산자원을 지원받는 연구회의 소모임으로서, 그 준립근거인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에 반하는 활동임

####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행정예규’

▶제1조, 예규는 전문법률분야 연구를 위한 법관 연구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규에서 정하는 제반 요건을 갖추었을 때 행정처장에게 설립허가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처장은 설립목적과 예산사정 등을 참작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8조, 연구회의 활동은 ‘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 ‘해당 분야에 관한 법률심포지엄의 개최’ 등으로 한다.

▶제9조, 행정처장은 ‘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의 평가자료를 참작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법원 네트워크 등 전산자원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칙'

▶ 제8조(활동)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2. 사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
3.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법원 내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법률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개최
5.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국제 교류
6.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 소모임의 논의 주제들은 '국제인권법'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연구 등과 아무런 관련 없음 ⇨ 사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연구회의 이름을 빌린 연구회 내 소모임의 형태로 활동하는 것은 예규 및 회칙에 반함

■ ②주요 구성원의 성향 등에 비추어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법원 내외부에 표출할 가능성 높음

- 인적 구성 및 정치적 성향 측면에서 우리법연구회와 유사함
- 후견 역할을 하면서 연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재조·재야 선배들의 성향상 대법원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표명의 자제를 적극 권유할 가능성도 낮음
- 국제인권법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언론 보도 가능성 높고, 연구회 회장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큼
- 개인 의견이 아닌 법관 연구회의 자체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성 큼

■ 외부로 의견을 표출하지 않더라도, 소장 판사들에게 대법원의 정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우려 큼

- 국제인권법연구회원의 강한 유대관계, 학술모임보다 사적인 인적 결합체로서의 분위기, 400명이 넘는 회원 수, 젊은 판사들의 연구회에 대한 애정 및 자부심과 적극 참여 분위기 ⇨ 소모임 활동으로 상당한 부정적 파급효과



우려

- 사망한 이○○ 판사와 폐암 투병 중인 박○○ 판사 모두 공교롭게 연구회 소속임 ⇨ 법관 업무과중 등의 문제에 대하여 심정적 결속력 강화

### 3. 대응 방안 검토

#### ■ ①사전적 대응 vs. 추이 관망 후 의견표명시 대응 ⇨ 사전적 대응 필요

- 인사모는 상고법원 등의 주요사법 현안에 대해 대법원과 상반되는 입장을 외부로 표명할 위험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에서 본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사전 대응시는 소모임의 논의주제 자체가 부적절하고 예규에도 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법제도에 대한 논의자체의 중단 적극 요구할 수 있으나, 관망 후 대응시는 '의견표명을 자제해달라'는 부탁 내지 권유에 그쳐 실효성이 적을 가능성 큼
- 의견표명 시기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인사모에서 의견을 정식으로 표명하기 전이라도 커뮤니티 게시물 등을 통해 언론보도가 될 가능성 있음

#### ■ ②우선 공론화하지 아니한 채 인사모 주도세력 상대 원만한 설득 시도

- 연구회장 또는 연구회 선배(이○○ 등)이 소모임 주도세력(제안자 박○○ 판사, 이○○ 부장판사 등)과 접촉하여 연구회 내 정식 소모임으로 부적절함을 설명 ⇨ 자발적 소모임 활동중단 또는 논의 주제를 국제인권법분야와 관련된 사항으로 변경 유도
- 해당 법관들이 압박 또는 탄압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
- 성공가능성 低 ⇨ 불응할 경우의 대응전략 수립 필요

#### ■ ③인사모 적정성 여부 공론화는 행정처가 아닌 연구회장이 주도할 필요

- 행정처가 주도하여 논의 주제 적정성 문제 제기할 경우 그 당부와 무관하게 '행정처가 연구회 활동에 개입한다'는 반발 가능성 (인사모에서 상고법원을 논의한 직후이므로 반발 시 위험성 더욱 큼)



- 연구회장이 연구회 내부에 ‘소모임의 주제가 연구회의 연구분야를 넘어선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공지
  - ① 다수 회원이 인사모의 부적절함에 동의할 경우 소모임 활동 중단 유도
  - ② 부적절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연구회 여론이 모아질 분위기인 경우 연구회장은 (아래 ④항에서 볼) ‘공식기구인 평가위원회에 소모임 활동의 예규 및 회칙 각 제8조 위반 여부 등 적정성 판단을 의뢰하자’ 고 제안하여 국면전환할 수 있음
  - 규정을 존중하는 법관들의 성향상 ①항 가능성이 더 큼 ⇨ 연구회의 자율적 자정작용으로서 바람직한 해결책이 됨
- 소모임 법관들이 다수 회원의 반대에도 연구회 내 정식 소모임의 지위를 계속 주장할 가능성은 희박함

■ ④규정상 연구회 평가기구인 “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 활용 가능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행정예규’

▶ 제9조 제1항

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를 둔다.

▶ 제9조 제4항

평가위원회는 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 “운영현황 점검 등”의 권한에 논의주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임
- 관련 규정에 근거한 위원회의 의견 개진이므로, 연구회원인 법관들 입장에서 행정처 기조실장 또는 차장 등 특정 직위의 의견으로 제시되는 경우에 비하여 (행정처가 연구회 활동에 개입한다는) 심정적 거부감이 덜 할 것임

■ ⑤활동 중단 유도 과정에서 해당 법관들 절차적으로 배려할 필요

- 공론화 이전에는 연구회장, 공론화 이후에는 평가위원회가 각 인사모 핵심 관계자와 식사 등의 사전 면담을 통해 인사모측의 진의를 확인하고, 규정상 부득이함을 안내 ⇨ 자신들이 사법행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제당했다



고 느끼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 ⑥ 자발적 활동 중단 불응시 제재 방안 및 반발 무마 방안

- 행정처는 예산 및 전산자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연구회 전체 활동에 대하여 중단하기 보다는 인사모 활동 부분에 대하여만 중단함으로써 일반 회원과 분리 전략 필요(인사모 게시글에 대하여만 열람불가 조치 등)
- 인사모에서 연구회 명칭을 계속 무단사용하는 경우에는 예규 및 법관윤리 강령 등 위반으로 징계 가능 ⇨ 단 실제 징계에는 신중할 필요
- 연구회 일반 회원에 대하여는 지원책 제공할 필요
  - 인권 관련 각종 국제기구 출장기회 제공, 연구용역 기회 제공, 연구결과 책자 발간 등에 특별예산지원 등을 통해 연구회 일반 회원과 분리
  - 인사모 입장에서 위와 같은 혜택 때문에 소모임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은 없지만, 적어도 활동 중단의 명분이 될 수는 있음

#### ■ ⑦ 활동 음성화 관련 대응방안

- 인사모 주도 법관들의 성향에 비추어 인사모 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보다는 연구회 밖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법연구회의 2015. 5. 상고법원에 관한 세미나 사례에서 보듯, 세간의 이목을 끌기 어렵고, 법원행정처의 부담이 적음
- 단 사법행정 현안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려는 욕구는 항상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있음
  - ① 현재 개별 추천 및 의사타진 방식으로 인적 구성이 되고 있는 법원문화연구반의 문호를 공개적으로 개방한 후 각급 법원 법관과 행정처 심의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원문화개선TF로 확대개편 ⇨ 인사모 안전인 ‘합의부 운용 방안’ 등도 법원문화개선TF의 주요 논의주제가 될 것이므로, 인사모 주요 인사들 TF 참여 유도 + 인사제도 등 일선 법관 주요 관심 현안 논의의 장에 일선 법관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철저적 정당성 확보하고, 공식 의견 개진 기회 제공할 필요



- 
- ②상고법원 관련 비공식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고, 간담회에 인사모 멤버들 참여 적극 권유

#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6. 4.

법원 행정처





## 〈 요약 〉

### 1.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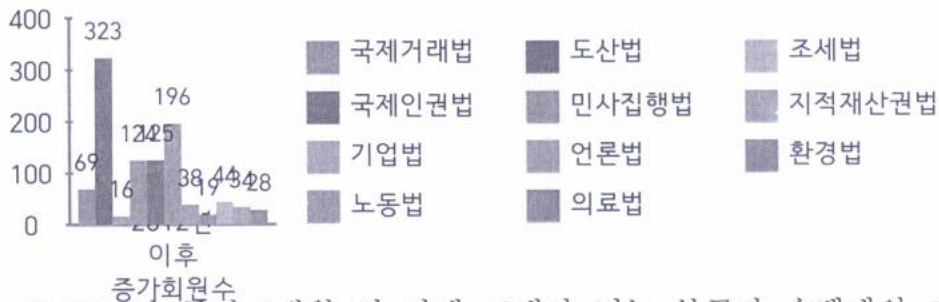
#### 가. 전문분야연구회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

- ▣ 2000년 이후 15년 이상 근본적 변화 없이 유지 ⇨ 연구분야 주제는 물론 연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 필요

#### 나. 특정 연구회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

#####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및 활동 현황

- 회원 431명으로 중복가입 허용되는 연구회를 제외한 전체 11개 연구회 중 3번째 규모 ⇨ 곧 도산법연구회를 추월 2위 등극 有力
- 2011. 8. 설립 이래 가장 압도적인 회원 증가세



- 2016년 들어 2개월 여 만에 40개가 넘는 본글과 수백개의 댓글 달림 ⇨ 다른 연구회의 전반적 침체 추세와 대비(최대 규모 민사집행법도 토론장 및 QnA 게시글이 1년간 7건 정도인 것과 대비)
- 젊은 법관들의 가입 및 활동 활발 ⇨ 사무분담과 무관한 가입이라는 점에서 젊은 법관들 참여도가 높고, 다른 연구회의 노령화와 대비
- ▣ 외형적 급속·과잉 성장과정에서 드러난 전문분야연구회 운영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필요 ⇨ 주제의 보편성으로 인한 이슈 선점 등 포함
- ▣ 연구회 주도 세력의 편향성 및 영향력 증대로 인한 대책 마련 필요



- 우리법연구회의 사실상 後身, 전문분야연구회 본질을 벗어난 활동

다. 종합대책 마련 필요 ⇨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과잉 성장 관련 위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및 정무적 대책 필요

## 2. 연혁 및 현황 분석

- 연구회 및 관련 규정 연혁 개관 ⇨ 2006년 예규개정 이후 사실상 방치

- 예산 현황 ⇨ 최근 7년 이상 1억원 수준 동결

-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수 추이 및 예산 지원 현황

- 최근 수년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가파른 성장, 두 번째는 젠더법연구회 (2015년에는 노동법연구회도 회원 수 급증)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급증 원인 분석

- ① 전문분야 주제의 보편·포괄성 및 상징성 ⇨ 난민 등 국제적 이슈가 아니라 일반적 인권 관련 전반을 취급 ⇨ '인권'의 흡입력 극대화

- ② 핵심그룹의 적극적 확장 활동 ⇨ 창립 멤버(우리법연구회 출신 다수, 정황상 설립 배경 의문)들이 여전히 활동 주도

- ③ 회장 경선 등 자유롭고 개성있는 문화 ⇨ 고등부장과 평판사가 치열하게 경선을 치르는 등 구성원들의 애착과 자부심 + 연구와 무관한 공연관람 및 친목활동으로 연구회라기보다 법관 교류 모임 성격

- ④ 사조직적 특성 유지 ⇨ 선배의 찬조금 출연 당연시되는 등 인적 결합체로서의 분위기(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핵심그룹의 문화 반영)

- ⑤ 기타 ⇨ 지역별 친목모임, 운영위원 및 팀장제 등은 우리법연구회의 시스템이 그대로 이식된 것임

## 3. 현행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가. 전문분야연구회 시스템 전반의 주요 한계



- ① 일부 연구분야 주제에 대한 법관 사회의 관심 消盡
  - 의료법·언론법·기업법 등 회원수 감소 내지 정체, 참여도 저조
- ② 중복가입 금지규정 形骸化
  - 공정한 예산지원 등 필요성에 따라 규정된 원칙임. 하지만 사실상 커뮤니티 시삽 등에 의해 제한 없이 중복가입 허용되고 있음
  -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중복가입 회원수도 단연 가장 많고(227명), 중복가입자 비율도 가장 높음(53%) ⇨ 핵심그룹의 적극적 포섭활동
- ③ 한정된 예산 대비 연구회 다수로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 예산 및 전산망 지원에 상응하는 행정처의 실질적 관리방안 모색 필요
- ④ 커뮤니티 폐쇄성 등으로 연구성과 사법부 내부 공유 미흡
  - 재판실무 활용 등에 대한 기여도 높지 않고, 사법부 전체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 미흡
- ⑤ 학계·재야·언론 등 상대 연구성과 활용 및 법원 신뢰강화 기능 미미

#### 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관련 문제점

- ① 허가 전문분야 이탈·무시 ⇨ 국제인권은 물론 통상적인 인권법 논의영역도 이탈, 정치적 숨意 포함 주제 및 연사 다수
- ② 사법행정 전반 및 최고법원 구성에 조직적 개입 시도 ⇨ 핵심세력이 2015. 7. 발족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통하여 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의 쟁점들에 조직적 관여
- ③ 일부 강경·핵심세력이 연구회, 나아가 사법부 전체 여론 주도

#### 4. 대응방안

가. 개선방안 요약 ⇨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 및 인권법연구회 인기요인별로 그에 상응하는 개선·대응책 마련



## 나.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중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방안

### ■ (법관 사회 관심 消盡 ⇨) ①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 [필요성]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이슈독점 방지, 자기개발 욕구 충족 및 합리적 여론형성의 장 마련

- 일부 특정 집단이 논의를 주도하는 인사모와 ‘이사야’ (인사제도 및 법원문화 관련 여론 주도)의 영향력이 더 확장되기 전에 합리적 여론 분출의 장 마련 필요

- [기본방향] 젊은 법관들의 관심·수요·참여 고려, ‘주제’ 못지않게 ‘주체’의 상징성 중요 ⇨ 젊은 법관들의 role model 前進 배치

- [후보 1] 사법국제화 연구회

- ① 외국어·해외사법·국외연수에 관심 있는 법관 다수, ② ‘국제’ 관련 이슈 포괄적으로 망라·포섭·유인 가능, ③ 우호적 분위기 형성시 각종 사법행정현안에 대하여 관련 자료 수집 및 지지 여론 출발점 역할 기대

- [운영진 후보군] ① 이○○ 고법판사, ② 원○○ 지법부장 등

- [후보 2] 가칭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law’ 연구회

- 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속 사법부 및 법관의 모습 관련 쟁점 전반

- ① 젊은 법관의 관심, ② 미디어 속 왜곡된 법관과 사법의 모습 바로잡는다는 명분이 공감대 형성, ③ 영화 및 방송 관련 이벤트로 관심 흡인력 극대화하여 단기간에 연구회 판도에 변화 유도 가능 등

- 세련된 명분 제시 중요

- [운영진 후보군] ① 문○○ 지법부장, ② 전○○ 고법판사 등

### ■ (중복가입 금지규정 形骸化 ⇨) ② 중복가입자 정리

- [필요성] 원칙을 준수하는 법관만 여러 손해를 보고 있고, 편법적 중복가입의 혜택을 인권법연구회가 최대 향유하고 있음



- ① 법관들 상대 중복가입자 정리 명분 있고, ②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하며, ③ 인사모 해소를 위한 유효한 우회적 압박 카드이며, ④ 사전 준비의 부담 無 등의 여러 장점 있음
- 施行時 국제인권법(431⇨204), 노동법(295⇨196) 등이 가장 위촉됨
- 중복가입자 정리과정에서 국제인권법으로 편중되는 부작용 방지 위해 고법부장급 탈퇴 등 다른 방안과 동시에 실시 필요
-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 ③ 예산 증액 및 실질 평가 시스템 구축
  - 예산동결 기간의 회원 및 성과 급증, 다른 부처 현황 등을 내세워 예산 당국 설득 ⇨ 증액에 따른 행정처의 예산분배 재량 확대로 연구 성과에 따른 실질적 차등지원 가능
  - 평가기준 구체화·실질화하고 각급법원 전문분야 지원비(6억원)도 활용
- (커뮤니티 폐쇄성 ⇨) ④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 ‘자신들만의 同質感’, ‘이너써클 활동의 은밀한 滿足感’ 등 유발 ⇨ 학술성과 공유, 사법부 전체 역량 축적에 기여 필요
  - [시행방안] ① 다른 전문분야 성과 접근성 강화, ②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물 사법부 전체 공유 등의 명분과 ③ 각종 성과물 지식광장 게재 독려 등 오해 해소 방안 동시 활용
  - [기대효과] ① 사법부 전문역량 강화 및 지식공유 활성화, ② 중복가입금지 엄격 시행에 따른 불만 해소, ③ 은밀한 논의의 만족감 내지 결속감 약화로 인적 유대 수단이 아닌 학술연구 수단으로 정립, ④ 인사모의 자유게시판化로 chilling effect 등 다양한 기대효과
- (외부 활동 미흡 ⇨) ⑤ 외부 교류 및 우군 확보 적극 지원
  - [시행방안 ①] 대형 이벤트 및 출판사업 발굴 및 지원
  - [시행방안 ②] 매년 정기 평가시 외부 활동 관련 항목 대폭 강화



- [시행방안 ③] 사법부 우호 인사 확보를 위한 방안 등

#### 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과잉 확장 관련 대응방안

##### ■ (주제의 보편타당성 ⇨) ① 허가받은 전문분야 범위로 제한

- 허가받은 '국제인권'으로 범위한정 ⇨ 단 학문의 자유 억압 등 오해 방지

##### ● [해결방안 ①] 회장의 리더십 발휘

- 전문분야연구회의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인사모 등에 대한 문제제기
- 차기 회장은 핵심세력이 전면 나설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회장 체제에서 인사모 해결필요

##### ● [해결방안 ②] 대안적 연구회 신설 또는 대안적 활동 지원

- 보편적 인권 관심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독점적 유입 방지 및 수요 흡수
- 헌법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보편적 인권 관련 대형 이벤트 발굴·지원

##### ■ (핵심그룹의 확장 시도, 자유로운 문화 및 사조직적 특성 등 ⇨) ② 핵심세력과 다수 회원간 분리 방안

- 인위적 개입은 성공 불가능함⇨자연스러운 문제제기 및 공론화 유도

- ① 인사모 문제, ② 내부 신망 높은 고법부장들 집단 탈퇴(명분 및 시기 조율), ③ 우리법연구회 관련성 등 막연한 논란 및 문제제기만으로도 상당수 법관의 외면을 받게 될 가능성 있음

##### ■ (지역별 모임 등 친목모임 활성화 ⇨) ③ 장점을 다른 연구회에 도입

##### ■ (설립 목적 위배 활동 ⇨) ④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방안 : 소극

- 명분 약하고, 득보다 실이 많음

##### ■ (행정처의 관리 강화 ⇨) ⑤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방안 : 소극



- 자율적 연구활동에 대한 탄압 논란, 행정처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부담 등이 큼

▣ 인사모 관련 로드맵 예시 (사법행정위 개회 시기 중 시행 여부 문제됨)

4월 하순	<p>◆ 전정국장 명의 공지</p> <p>'① 특별히 중요하고 가치있는 활동에 대하여 특별예산 지원 방안 도입          ②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 예정 (일반 법관들 피해 명분)          ③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로 전환 (사법부 전체 역량 강화 등)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규정 설명하면서 연구회 목적과 무관한 소모임 해소 당부'</p>
5월 초순	◆ 국제인권법 회장, 회원들 상대 인사모 관련 문제제기
5월 중순	<p>◆ 사법국제화연구회 및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연구회 신설</p> <p>◆ 다른 연구회 활동 활성화 (밴드 및 지역별 모임 등)</p>
5월 하순	◆ 인사모 소모임이 존치 입장을 고수할 경우 ⇨ 고법부장 등 대거 탈퇴
6월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 다수 회원의 의견을 모아 인사모의 자연스러운 소멸 유도



#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 검토

2018. 6. 5.

법원행정처

## 1. 검토 배경

### 가. 전문분야연구회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

- 2000년 관련 예규 제정 후 15년 이상 근본적 변화 없이 유지 ⇨ 연구분야 주제는 물론 연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 필요

### 나. 특정 연구회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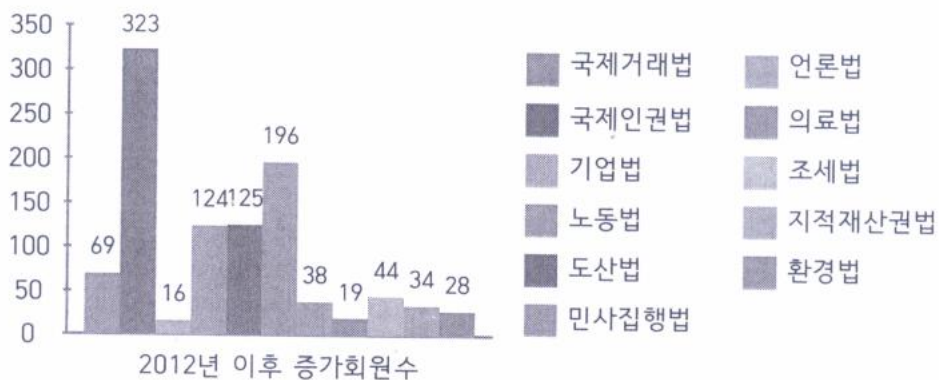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및 활동 현황

- 2016. 3. 기준 431명으로 (중복가입 허용되는 연구회를 제외한) 전체 11개 연구회 중 3번째로 큰 규모 ⇨ 곧 도산법을 제치고 2위 등극 유력

연구회	민사집행법	도산법	국제인권법	중복가입 연구회 중에서는
회원수	875명 (법관은 635명)	449명	431명	형사법(2,041명), 젠더법(691명)이 대규모임

- 2011. 8. 설립 이래 가장 현저한 회원 증가

2012년 이후 증가 회원수







- 2016. 1. 1.이후 현재까지 2개월 여만에 커뮤니티에 40여개의 본글과 수백개의 댓글 달림 ⇨ 다른 커뮤니티의 전반적 침체 추세와 대비됨
- 최대규모 전문분야연구회인 민사집행법 연구회의 커뮤니티 활동 감소 추세

년도	토론장 게시글 수	QnA 게시글 수
2010년	17개	46개
2015년	1개	6개

- **법관 전세대에 걸쳐 고른 가입 및 활동 활발**

기간	연간 가입법관	20기 이상	21~25기	26~30기	31~35기	36~40기	41기 이하
2014년	82명	5	3	16	30	22	6
2015년	132명	1	12	15	27	60	17

- 가입회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정 기수 구간에 치우치지 않고 법관 전세대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음
- 다른 전문분야연구회도 배석판사급 경력인 법관들의 가입이 다수이나, 이는 사무분담으로 해당 분야를 맡게 됨에 따라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인권법연구회는 재판사무분담과 무관하게 개인적 관심으로 인하여 가입 ⇨ 젊은 법관들의 관심이 다른 연구회에 비하여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 cf) 민사집행법 연구회 오프라인 활동(원외연수) 참여 법관의 노쇠화

년도	참여 법관 수	지법부장 이상 법관 수	법관경력 하위 10명의 평균 법관경력
2010년	55명	13명 (23.6%)	1.6년
2015년	48명	17명 (35.4%)	3.3년

▣ **외형적 급속·과잉 성장과정에서 드러난 전문분야연구회 운영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필요**

- ‘국제인권’ 주제의 보편성으로 인한 이슈 先占 및 확장, 편법적 중복 가입 방치 등 운영시스템 자체의 문제점 확인 및 보완책 마련 필요



▣ **나아가, 연구회 주도 세력의 편향성 및 영향력 증대로 인한 위험성 관련 대응책 마련 필요**

-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 핵심세력이 자신들의 법관사회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정황 감지됨
- 전문분야연구회의 본질을 벗어난 활동에 대하여 적정한 통제 방안 및 위험성 해소 방안 긴요한 시점임

**다. 종합적 대책 검토 필요**

- ▣ 특정 연구회가 특정 세력의 주도하에 과잉 성장하면서 전문분야연구의 취지에 반하는 활동을 함에 따른 다양한 위험 파생 ⇨ 위험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및 政務的 대응방안 종합 검토 필요

## 2. 연혁 및 현황 분석

▣ **연구회 및 관련 규정의 주요 연혁 개관**

- 2000. 7. 「전문분야연구회의구성및지원에관한예규」(이하 예규) 제정
- 2000. 8. 행정처장이 지정한 국제거래법연구회 등 11개 연구회로 시작
- 2006. 2. 예규 개정으로 연구회 운영상 문제점 일부 개선
  - 연구회 설립을 ‘행정처장의 분야 지정’에서 ‘법관들의 자유설립’으로 전환, 단 난립 방지 위해 행정처장이 일정한 요건 하에 설립허가 등
- 2010. 12. 예규 개정 ⇨ 활동성과 및 결산현황 보고시기 조정
- 2011. 8. 국제인권법연구회 신설 ⇨ 현행 15개 연구회 체제 정립

▣ **예산 현황**

- 2016년 예산 편성 ⇨ [210-12 복리후생비] 전문분야 실무연구회 지원비 7억 1천만 원
  - 전문분야연구회 지원비로 1억 2백만 원 배정 (나머지 6억 8백만 원은 각급 법원 재판관련 전문분야 연구활동 지원비)



- 최근 7년 이상 연구회 지원비 1억 원 선에서 동결 (2012년 무렵까지는 위 지원비가 ‘전문분야 연구활동지원’ 약 6억 원과 ‘사이버연구회 활동지원’ 약 1억 원의 2가지 항목으로 편성되었던 영향도 있음)

▣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수 추이 및 예산 지원 현황

연구회	회장	시삽	회원 수						예산지원현황(평가순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년		2015년	
									순위	배정액	순위	배정액
국제거래법	노○○	홍○○	121	121	152	162	206	221	8	550만원	7	550만원
국제인권법	이○○	김○○	11. 8. 설립		108	217	285	431	4	700만원	4	700만원
기업법	김○○	김○○	180	199	198	197	207	214	15	450만원	13	450만원
노동법	김○○	김○○	155	165	171	179	200	295	8	550만원	10	550만원
도산법	이○○	이○○	264	288	324	364	402	449	5	650만원	7	650만원
민사집행법	김○○	이 ○	560	614	679	726	773	875	2	1천만원	1	1천만원
사법정보화	허○○	박○○	300	336	355	362	380	395	8	550만원	12	550만원
언론법	고○○	남○○	88	94	102	118	127	140	12	500만원	14	500만원
의료법	이○○	노○○	236	236	272	283	294	291	12	500만원	15	500만원
젠더법	민○○	김○○	389	397	433	628	651	691	3	950만원	1	950만원
조세법	김○○	이○○	176	186	213	222	238	257	5	650만원	6	650만원
지적재산권법	이○○	이○○	319	319	340	356	358	374	5	650만원	5	650만원
헌법	장○○	김○○	165	184	199	213	220	269	12	500만원	11	500만원
형사법	임○○	이○○	235	519	825	1,294	1,683	2,041	1	1250만원	3	1250만원
환경법	배○○	이○○	182	188	217	224	236	245	8	550만원	9	550만원
회원총수 및 총지원금			2,699	3,139	3,546	4,588	5,545	6,943		1억원		1억원

※ 노란색 음영은 중복 가입 가능 연구회

※ 민사집행법 연구회는 사법보좌관 등의 준회원 포함(법관은 635명)



##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급증 원인 분석

### ● ① 전문분야 주제의 보편·포괄성 및 상징성

- “국제인권” 이 갖는 보편타당성 등이 법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옴
- 특히 “국제인권법” 으로 한정하여 설립허가를 받았음에도 일반적 인권 관련 주제 전반을 다루고 있음 ⇨ 난민 등의 국제적 주제에 한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인권” 의 흡입력 극대화

#### ☑ 주제가 갖는 흡입력이 회원 가입으로 이어진 사례

- ▶ 2015. 6. 사법연수원에서 ‘인권법과 법관’ 전문분야 연수 실시
- ▶ 법관 72명이 참가, 그 중 19명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 아니었으나,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연수에 자발적 참가 ⇨ 3일간의 연수 종료 후 전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가입

### ● ② 핵심그룹의 적극적 확장 활동

- 2011. 8.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 당시 멤버 31명이 여전히 연구회 각종 활동을 주도하고 있음

#### ☑ 국제인권법 설립 배경 관련 분석

- ▶ 2011. 8. 당시 노동법연구회가 이미 170명에 달하는 법관 회원을 두고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었음 ⇨ 그럼에도 핵심그룹이 위 노동법연구회를 더 확장하는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국제인권법연구회 개설을 신청
- ▶ 이는 핵심그룹이, (학술연구의 호기심이나 필요성이 아니라) 경직된 주제를 다루게 되고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기 쉬운 노동법 분야 연구회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보편성을 지닌 새로운 연구회 창설을 통해 활동무대를 마련하려는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
- ▶ 실제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설립 초기부터 인권과 무관한 ‘사법부의 독립 및 법관론’ 등을 주된 논의 주제로 삼아왔음(2014. 2. 법관론 소모임 개설 등)

### ● ③ 회장 경선 등 자유롭고 개성있는 문화

- 법관으로서 연구 활동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다른 전문분야 연구회(친목활동은 학술행사 또는 원외연수의 기회에 함께 이루어지는 정도)와 달리 상시적으로 연구와 무관한 공연관람 및 친목활동이 이루어지고 권장되고 있음 ⇨ 전문분야 연구회라기보다 법관 교류 모임 유사의 형태로 운영



- 회장은 단수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로 선출되는 다른 연구회와 달리 정견 발표 및 득표활동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함

**☑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자유 경쟁 선거 사례**

- ▶ 2013년 하반기에 있었던 2014년 회장 선거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현 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가 선거에서 낙선함
- ▶ 2015년 회장 선거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와 31기 단독판사(현 재판연구관) 등이 서로 출마의 변을 한 후 경쟁 선거를 치름
- ▶ 법원 내 다른 조직에서 찾기 어려운 구성원의 강한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 ⇨ 연구회에 대한 구성원들의 애착과 자부심이 남다른 수밖에 없음

**☑ 네이버 밴드의 활성화**

- ▶ 인적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모임답게 다른 연구회와 달리 네이버 밴드를 두고 있고, 회원수도 221명에 달하는 등 활발히 운영되어 실시간 번개모임 등에 활용되고 있음

**☑ 위와 같은 여러 특징에 힘입어 2015. 11. 정기총회(1박 2일)에 47명(회원 수 2배 규모인 민사집행법연구회의 원외연수 참가자수와 비슷함)이 참가하는 등 공식 모임도 활성화**

● **④ 자유로움 속 私조직적 특성 유지**

- 연구회 임원진 및 부장판사들의 찬조금 출연, 그들 주도의 회식문화 등 선배로서의 역할 요구가 당연시 되는 분위기로서 인적 결합체로서의 분위기 상당함 ⇨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핵심그룹의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⑤ 기타**

- 2015년 132명에 달하는 회원이 집중 가입 ⇨ 인권편람 번역본을 회원에게 무료배포한다는 사정이 큰 영향을 미침 (양형실장 분석)
- 연구회 소속 지역별, 법원별 (친목)모임 활성화 ⇨ 다른 연구회에는 없는 현상으로 연구회 소속 법관들 사이의 동질감 등을 드러내면서 결속을 강화하는 선순환 기능
- 위와 같은 지역별 모임 시스템, 사조직적 특성 및 회장-운영위원-팀장(기획팀장 등)-지역위 등으로 이루어진 운영진 구성체계 등을 비롯한 운영방식은 우리법연구회의 시스템을 그대로 移植한 것임



### 3. 현행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 가. 전문분야연구회 시스템 전반의 주요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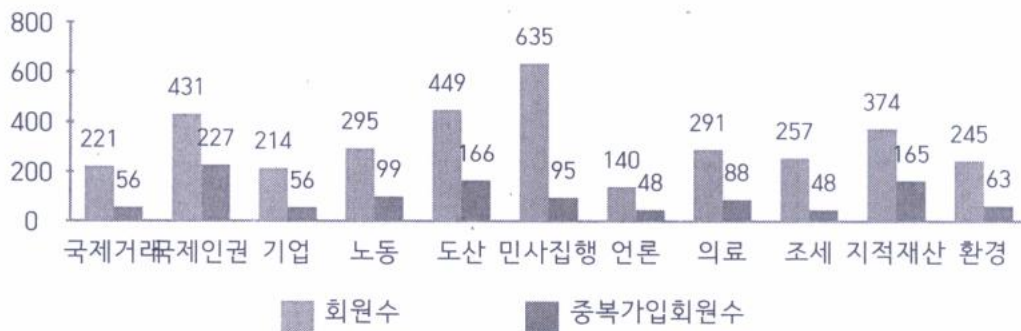
##### ▣ ① 일부 연구분야 주제에 대한 법관 사회의 관심 消盡

- 의료법연구회, 언론법연구회, 기업법연구회 등 가입자 정체 내지 감소 및 활동 저조

##### ▣ ② 중복가입 금지 규정 形骸化

- 중복가입금지 규정은 ① 회원수를 고려한 공정한 예산지원, ② 허수의 회원 증대 방지, ③ 법관별로 주된 하나의 전문분야를 집중 육성할 필요성 등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정책결정한 원칙임
- 사실상 연구회 중복가입을 막을 방법이 없고, 통제가능한 코트넷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시삽이 임의로 가입을 허가하면 중복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복 가입 현황

연구회별 중복가입회원 수



※ ① 중복가입이 허용된 연구회 제외(민사집행법은 사법보좌관 제외), ② 1명이 여러 곳에 가입된 경우 그 중 가장 먼저 가입한 학회 외에는 중복가입된 것으로 계산

-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중복가입 인원수도 가장 많고(227명), 중복가입자 비중도 가장 높음(53%) ⇨ 시습 등 핵심세력에 의한 포섭활동으로 중복가입한 법관이 많은 것으로 해석됨



■ ③ 한정된 예산 대비 연구회 다수로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 ① 1억원의 적은 예산을 15개에 달하는 연구회에 분산 배분하고(최대 1천만원, 최소 450만원), ② 제한된 범위의 형식적 평가로 행정처의 관리범위 이탈 ⇨ 연구회 활동을 자극할 인센티브로서 기대효과 미약하고, 설립 취지에 맞는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 예산 및 전산망 지원에 상응하는 법원행정처의 실질적인 관리방안 모색 필요

■ ④ 커뮤니티의 폐쇄성 등으로 연구성과 사법부 내부 공유 미흡

- 비회원은 대부분의 게시글에 접근 불가 ⇨ 연구성과 공유 차단
- 재판실무에의 활용을 위한 기여도 높지 않고, 사법부 전체의 전문성 향상에도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⑤ 학계, 재야 및 언론 등 상대 연구성과 활용을 통한 법원 신뢰 강화 기능 미미

- ① 사법부의 전문성의 외부 각인, ② 법원의 우호세력 확보, ③ 전문분야 논의 주도 및 권위 있는 문헌 발행 등 어느 측면에서도 외부 상대 사법부 위상 강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흡함

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관련 문제점

■ ① 허가받은 전문분야 이탈·무시

- 설립 당시 허가받은 연구분야

☑ 2011. 6. 제출한 설립허가 요청서상의 활동계획

- ▶ 북한인권문제의 대두와 탈북자의 증가,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재판증가, 인권문제의 재판쟁점화에 따라 이를 연구하는 전국적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필요함 ⇨ 명칭 그대로 “국제적” “인권” 이슈를 연구대상으로 함

☑ 2011. 8. 설립 및 회원가입 안내 공지문상의 활동계획

-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응답
- ▶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 성과의 정리 및 정보의 공유
-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심포지엄, 외부강연 등 학술모임의 개최



● 국제인권법연구회 2015년 정기세미나, 전문분야 연수 및 특강 개요

행사	주제	연사
1월 특강	경제민주화와 인권	정○○ 전 총리
3월 세미나	건강할 권리	김○○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5월 세미나	증세와 복지	새누리당 김○○ 의원
6월 법관연수	인권법과 법관	경향신문 이○○ 기자 등 (전○○ 대법관, 김○○ 헌법재판관)
7월 세미나	모욕죄의 남용과 한계	연구회 내 '표현의 자유' 소모임 소속 허○○, 류○○ 판사
8월 세미나	영화 빵과 장미	자유 토론
10월 특강	중동 내전과 난민 문제	경향신문 구○○ 기자
12월 학술대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한국노동법학회, 법원 노동법연구회와 공동개최

- '국제인권' 과 무관한 주제가 대부분 ⇨ 경제민주화와 인권, 증세와 복지 등은 국제인권은 물론 통상적인 인권법의 논의 영역도 이탈하는 수준임
- 정치적 함의를 포함한 주제를 자주 선정하다보니 연사로도 전·현직 정치인들이나 정치색이 있는 기자 등이 다수 참여하게 됨

▣ ② '인사모'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전반에 조직적 개입 시도

- 연구회 핵심세력이 2015. 7.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발족하여 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의 쟁점들에 대하여 인권을 핑계로 관여

☑ 인사모 발족 경과

- ▶ 2015. 7. 7. 박○○ 판사(연수원 ○○기, 우리법연구회 간사 출신, 强性)가 제안
- 2015. 7. 21. 첫 예비모임 ⇨ 대표(분과위원장) 김○○(연수원 ○○기, 우리법연구회 간사 출신, 强性), 총무 박○○, 김○○(연수원 ○○기, 우리법연구회) 판사
- 2015. 8. 11. 두 번째 예비모임 ⇨ 김○○ 판사 대신 박○○ 판사(연수원 ○○기, 우리법연구회, 박○○ 대법관 반대글 게시 활동 등)가 총무 맡음, 상고법원 끝장 토론회
- ▶ 제안 및 예비모임 당시부터 법관사회 내부 소통, 사무분담, 상고법원 등을 내세움
- ▶ 현재 인사모 카톡방에 28명 가입, 활동 중

☑ 2016. 4. 인사모 위원장 변경

- ▶ ○○지법 이○○ 부장판사로 위원장 변경
- 이○○ 부장 : 연수원 ○○기, 19○○년생으로 인사모 최연장자, 우리법연구회 소속 아님





▶ 변경의 배경 및 향후 활동 관련 입장

- 모임을 주도하던 박○○(2016. 2. ○○고등배석 발령), 박○○(2016. 3. ○○ 단독판 사회의 의장 선출), 김○○(2016. 2. ○○지법 발령) 등이 활동에 시간적 제약받는 형편
- 최연장자로서 인사모 발족 당시부터 관여해온 이○○ 부장이 자연스레 위원장 맡게 됨
- 이○○ 부장은 인권법 회장인 양형실장에게 '행정처 등과 대립각을 세울 생각은 전혀없다', '본인이 나서지 않을 경우 우리법연구회 멤버들이 인사모를 산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적절히 제지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면서 '일선의 의견을 전달하는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논의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 밝힘

● 인사모 활동 내역

일시	주제	참가 법관 등
2015. 9.	바람직한 합의부 조직과 운용(부장과 배석관계) ① 업무적 측면	20여명
2015. 10.	바람직한 합의부 조직과 운용(부장과 배석관계) ② 생활적 측면	15명
2015. 11.	사실심 충실화 1차 토론 (차○○ 판사가 독일 사례 등 발표)	지정토론 김○○, 이○○ 부장 등
2015. 12.	사실심 충실화 2차 토론 (시행된 각종 재판 모델 논의)	이○○, 박○○ 판사 발표 등
2016. 1.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방안 - 사법행정의 한계, 투명성 확보 방안, 사법행정위 선출 방식 등	
2016. 2.	사법행정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 고등법원장의 위원추천 등 비판	2016. 2. 송○○ 판사 등이 비판글 게시
2016. 4.	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법부장 제도의 향방	10명 이하 참석(역대 최소)

- 상고법원, 사법행정위원회, 판사회의 활성화 등에 관하여 조직적 개입 시도 ⇨ 향후 대법관 제청 등으로 주제 확대할 것임
- 구성원 중 1인이 코트넷에 게시글을 올리면 다른 회원들이 적극지지 댓글을 작성하는 등으로 코트넷 및 인터넷 공간 여론 주도

▣ ③ 일부 강경·핵심세력에 의한 연구회 및 사법부 전체 여론 호도

- [커뮤니티 내] 우리법연구회의 내부결속 강화 시스템을 모방하여 일부 핵심 세력을 중심으로 유대관계 형성
- [사법부 내] 회원 급증, 젊은 법관들의 이목 집중을 통해 법관사회, 특히 소장법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위상과 이미지를 얻고 있음



## 4. 대응방안

☑ 개선방안 요약 ⇨ <전문분야연구회의 전반적 문제점>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기요인>별로 그에 상응하는 개선책 마련

- ▶[전반적 문제점1] 법관 사회의 관심 소진 ⇨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 젊은 법관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중견 법관이 주도
- ▶[문제점2] 중복 가입금지 규정 형해화 ⇨ 중복가입자 일제 정리(규범력 회복)
  - 국제인권법이 가장 큰 타격 + 주제 무관 소모임 정리 등 행정처 개입 명분 제공
- ▶[문제점3] 형식적 평가 및 예산 배정 ⇨ 예산 증액 및 실질적 평가 시스템 구축
- ▶[문제점4] 커뮤니티 폐쇄성 ⇨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및 공유
  - 핵심세력 위축 및 인권법 회원들만의 이너써클 의식 희석 + 실무전문성 축적
- ▶[문제점5] 외부 상대 성과 제시 미흡 ⇨ 외부 교류 및 우군 확보 적극 지원
  - 외부 교류를 예산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음
- ▶[인권법 급증요인1] 주제의 보편타당성 ⇨ '국제'인권으로 한정 + 대안적 연구회 신설
  - 회장의 역할이 중요 + 인권 관련 수요를 대안적 연구회에서 흡수
- ▶[인권법 급증요인2, 3] 핵심그룹의 적극적 확장 시도, 자유로운 문화 및 사조직적 특성
  - ⇨ 핵심세력과 다수 회원간 분리, 부장급 이상 대거 탈퇴로 시그널
  - 사실상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점 부각 + 다수 법관들의 경계심 활용
- ▶[인권법 급증요인4] 지역별 등 친목모임 활성화 ⇨ 다른 연구회도 도입 및 활성화
  - 인권법연구회만의 특징 희석
- ▶기타 ⇨ 활동 저조 연구회 폐쇄 여부,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여부 등

### 가.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에 관한 개편방안 중 특정 연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

#### ■ ①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 ● 필요성

- 인권의 보편성을 내세운 특정 연구회가 법관 사회의 이슈를 독점하는 현상 방지
- 시의성 있고 법관들이 관심있어 하는 주제에 대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법관들의 자기개발 욕구 해소는 물론 선후배 법관들의 바람직한 소통 창구 개설, 합리적 여론 형성의 장 마련



☑ 이슈별 법관여론 주도 온라인공간 분석

- ▶ ① 사법정책관련 이슈 ⇨ 국제인권법커뮤니티 중 인사모 소모임
  - ▶ ② 법관인사 및 법원문화(부장과의 관계 등) 관련 이슈 ⇨ 다음 익명카페 이사야
  - ▶ ③ 양성평등 관련 이슈 ⇨ 젠더법커뮤니티
  - ▶ ④ 모성보호 및 생활정보 관련 이슈 ⇨ 네이버 여성 법관 카페 유스티티아
- ⇨ 일부 특정 집단이 논의를 주도하는 '인사모'와 '이사야'의 영향력이 비대해지기 전에 법관들의 합리적 여론 분출의 장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커뮤니티 신설 필요

● 발굴의 기본방향

- 다수 법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발굴
- 전문분야의 '주제' 못지 않게 이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상징성 있는 선배법관 필요 ⇨ 젊은 법관들에게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법관들을 각 연구회에 분산 배치, 합리적 여론 형성의 구심점 역할 기대

● [새로운 연구회 후보 1] 사법국제화 연구회

- 각국 및 국제재판소의 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추후 연구회 인적 구성 및 활동상황 검토하여 '각국의 사법행정' 도 연구대상으로 확대
- 각종 사법현안에 대한 해외자료 수집, 번역 및 조사, 국내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번역, 해외 소개 및 홍보 ⇨ 현행 국제규범연구반을 확대개편하는 형태
- [참가 유인] 현재 국제규범연구반의 경우 장기해외연수를 준비하거나 외국어 실력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젊은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사법국제화연구회의 경우에도 설립 초기부터 행정처가 적극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젊은 법관 상당수의 관심을 끌 수 있음
- [+]
  - ① 외국어 및 해외사법에 관심 많은 젊은 법관들 상당수 참여 가능,
  - ② 국제인권법 회원 중 '국제' 관련 분야에 관심 있어 가입하였던 법관을 유인할 수 있음,
  - ③ 포괄적인 이슈를 연구 주제로 망라 가능,
  - ④ (인적 구성과 성향이 행정처에 우호적인 경우) 각종 사법행정현안에 대하여 관련 자료 수집 및 방어논리 개발, 지지여론 확산의 출발점 역할 기대 가능
- 운영진 후보군 ⇨ ① 이○○ 고법판사, ② 원○○ 지법부장



- [새로운 연구회 후보 2] 가치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law' 연구회
  - [주된 분야] '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속 사법부 및 법관의 모습' 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및 파생되는 법적 문제, 나아가 미디어가 법관 및 재판의 현실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관련 콘텐츠의 개발방안을 각 연구
  - [+ ] 젊은 법관들의 관심을 쉽게 유도할 수 있음(엔터테인먼트법 분야는 젊은 법관들이 관심을 갖는 전문분야 중 연구회 미개설된 몇 안 되는 분야 + 예산 지원을 통한 공연 관람, 예술인과의 간담회 등도 높은 호응 예상)
  - [+ ] 미디어 속 왜곡된 법관과 사법의 모습을 바로잡는다는 필요성과 명분이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법정드라마 대본 집필 등에 관심 있는 법관들의 수가 상당함 ⇨ 자발적으로 적극적 활동 유도 가능
  - [+ ] 주요 영화사·방송사·연예기획사 방문행사 등을 통해 법관 사회 화제의 중심에 서는 등으로 단기간에 현행 연구회 판도에 가시적 변화 유도 가능
  - [+ ] 장기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법원에 대한 정확하고 우호적인 정보와 인식이 제공되기 위해서는(ex: 영화 '12 angry men' ) 위와 같은 모임 필요함
  - [- ] 명분을 세련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풍 81' , '3S 정책' 등과 같은 愚民化 정책으로 비판받으면서 행정처가 설립의 배후로 의심받을 위험 있음
  - 운영진 후보군 ⇨ ① 문○○, ② 전○○, ③ 오○○ 부장(고법판사)

## ■ 2 중복가입자 정리

### ● 필요성

- ① 편법에 의한 연구회 중복가입이 난무하는 실정 ⇨ 원칙을 준수해 1개의 연구회에만 가입한 법관이 예산지원, 전문자료 접근, 전문성 있는 법관들과의 네트워크 기회 등 여러 측면에서 손해를 입게 되는 매우 부당한 결과 발생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 ② 편법적 중복가입의 혜택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가장 크게 누리고 있음 ⇨ 연구회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개선작업(중복가입자 정리)을 명분으로 실질적으로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장점**

▶ ① [법관들 상대로 명분 있음]

- 법관들의 학술조직인 전문분야연구회의 활동 및 구성에 대하여 행정처가 관여할 경우 법관들의 자율성 침해, 학문의 자유 억압 등의 논란을 피할 수 없음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경우 ① 중복가입금지규정의 규범력 회복, ②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③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법관들의 피해 방지 등의 명분 있음 ⇒ 규범 준수 및 편법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을 중시하는 법관들의 성향상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음

▶ ② [행정처·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임]

- 수백명 가입법관의 연구회 활동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방안(활동계획 사전 승인, 사후 평가 강화, 특정 연구회에 대한 제재 등)의 경우 그 성격상 행정처장 또는 차장의 공지 내지 사전 안내가 필요할 수 있음

- 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연구회 성과 평가 위원회(위원장 기초실장)'의 '심의 강화'를 개선수단으로 삼는 경우에도 유사한 논란의 소지 있음

- 중복가입금지 해소방안의 경우 커뮤니티 관리책임자인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공지 및 시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나 저항 없음 ⇒ 그 시행방안에 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나 특정 연구회에 대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다른 방안에 비하여 낮음

▶ ③ ['인사모' 해소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임]

- '인사모'는 조속히 해소 내지 와해시킬 필요성이 큼

- 그러나, 행정처가 '모든 연구회는 전문분야와 무관한 소모임 활동을 정리하라'는 식으로 정공법을 택할 경우 인사모를 표적으로 한 조치임이 쉽게 드러나고 강한 반발을 초래할 우려 있음

- 중복회원 해소방안은 다소 기술적인 커뮤니티 정비방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전정국장이 현행 규정에 위배되는 중복회원 해소방안을 공지하면서 그 밖의 커뮤니티 관련 규정 역시 소개하고 이에 위반하는 활동을 자제하여 달라고 안내한다면 법관 사회 반발이나 인사모측의 반발 명분을 최소화할 수 있음

▶ ④ 특별한 사전 준비 작업 없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즉시 시행할 수 있음

-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를 위하여 어느 정도 유예기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공지와 동시에 직권으로 정리할 것인지 여부 정도만 결정하면 됨

● 시행에 따른 국제인권법연구회 위축 효과

- 한명의 법관이 가입한 여러 연구회 중 가입일자가 가장 빠른 연구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중복가입으로 탈퇴처리할 경우 연구회 회원 수 변동 내역



	현재 가입회원 수	중복가입 탈퇴처리 후 회원 수
국제거래법	221	165
국제인권법	431	204
기업법	214	158
노동법	295	196
도산법	449	283
민사집행법	875	780
언론법	140	92
의료법	291	203
조세법	257	209
지적재산권법	374	209
환경법	245	182

※ 청색표시는 가입회원이 90명 이상 감소하는 연구회

● **부작용 검토**

- 중복가입 연구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법관들이 다른 연구회에서 탈퇴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선택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중복가입자 정리가 오히려 소장 법관들의 인권법으로의 편중 현상 촉발할 가능성
- 중복가입 정리 외에 아래에서 검토할 ‘부장급 이상 대거 탈퇴 방안’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의 연구범위 명확화 및 인사모 해소 시도 방안’ 등과 함께 시행될 경우 법관들에게 인권법연구회가 논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줄 것이므로, 다수의 법관들이 인권법을 선택할 가능성 희박함

▣ **3 예산 증액 및 실질적 평가 시스템 구축**

- [필요성] 전문분야연구회 지원예산이 장기간 1억원으로 동결 ⇨ 15개에 달하는 연구회에 대하여 나눠먹기식 분배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평가작업이 어려움

☑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 개최**

- ▶ 2016. 6. 9. ~ 11. 사법연수원 소강당(250석 규모)에서 ‘국제 난민컨퍼런스’ 개최
- ▶ 사법연수원과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 개최



- 사법연수원의 국제교류 예산 및 국제실의 예산을 지원받아 대규모 국제행사
  - ▶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커비 전 호주 연방대법관을 비롯한 30여 명의 외국 전문가 참석 예정
  - ▶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회원 급증 가능성
  - 대규모 국제행사(언론 주목 가능성도 큼)를 통해 소장 법관들에게 인권법연구회의 장점과 위상을 각인시킬 가능성 매우 높음
  - 참석 법관들에게 사법연수원 숙소 제공(법관연수동 숙소가 금요일에 비는 것 활용)하는 것 역시 일종의 특혜이자 법관들에게 인권법연구회가 법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줄 우려 있음
  - 한정된 예산을 인권법연구회가 독점하게 됨 ⇨ '난민'은 '국제인권'의 전형적인 안건이므로 연구회의 연구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지원 제한하기도 어려움

- 예산 증액으로 법원행정처의 예산분배 재량범위가 커질수록 연구실적에 따른 실질적 차등지원이 가능해짐 ⇨ 연구회 활동에 대하여 기계적·형식적 평가가 아닌 실질적 평가여건 조성
- 예산당국 설득 방안 ⇨ 예산 동결된 기간의 연구회 수 및 가입회원 수 급증, 누적된 연구성과 등 제시 + 타부처 유사 예산 상황 확인
- 사안에 따라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활동 지원비(약 6억 원)를 활용할 필요 있음
- 기존의 헌법연구회가 법관 사회의 인권 관련 연구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대규모 행사 개최하는 경우 예산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있음
- 실질적 평가 기준 강화 ⇨ 현행 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과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필요 있음

#### ■ 4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 ● 필요성

- 커뮤니티 게시글이 대부분 회원 전용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법부 전체 차원의 전문역량 축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학술연구단체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공개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 커뮤니티 등의 경우 일부 회원의 사조직적 운영행태와 게시글 비



공개가 맞물려 회원들에게 ‘자신들만의 동질감’ 내지 ‘일반 법관들은 알지 못하는 이너씨클에서 활동한다는 은밀한 만족감’ 등을 유발하고 있음

● 시행방안

- 커뮤니티 총괄관리자인 전정국장이 언제든지 공지를 통해 시행할 수 있음
- ① ‘법관들이 자신이 가입한 커뮤니티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의 연구성과에도 손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법관님들의 전문성 강화와 자율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거나
- ② ‘사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이상 그 연구성과를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함으로써 사법부 전체의 전문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는 정도의 명분을 제시할 수 있음
- ③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반드시 지식광장에 게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압박’ 이라는 일각의 의심을 희석시키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이 부분은 전정국장이 아니라 각 법원 수석부장 등이 담당)

● [기대효과]

- ① 학술성과 공유로 사법부 전문역량 강화,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 코트넷 지식공유 활동 활성화
- ② 다른 커뮤니티에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중복가입금지 규정의 엄정한 시행에 따른 불만 내지 부작용 완화
- ③ 인권법, 노동법커뮤니티 등 인적 유대 강화의 수단으로 커뮤니티가 적극 활용되는 연구회의 경우 게시글 공개를 통해 ‘은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 내지 결속감’ 을 약화시킬 수 있음
- ④ 특히 인사모의 경우 논의가 사법부 전체에 전면 공개됨으로써 내부의 논의가 코트넷 자유게시판에서의 논의와 차별화되지 않게 됨 ⇨ ‘인사모의 자유게시판화’ 를 통해 과감하고 도발적인 논의는 위축될 가능성 있음
- ⑤ 커뮤니티 내부 논의 내용 공개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용이해짐 (심의관 등이 의심을 감수하며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할 필요 없음)





### ● 부작용 검토

- 게시글 공개시 인사모 등의 편향적 논의는 또 다른 폐쇄공간을 찾아 네이버 밴드 또는 다음 카페 등으로 도피할 가능성 큼
- 2015. 5. 우리법연구회의 상고법원 관련 세미나 사례에서 보듯 법원의 공식 연구회 내지 코트넷 커뮤니티 공간에서 논의되는 것보다는 ① 훨씬 언론의 주목을 피할 수 있고, ② 공개되어 문제되는 경우에도 ‘특정 성향 일부 법관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방어 논리 활용 가능함

### ● 폐쇄 커뮤니티와의 관계

- 폐쇄 커뮤니티 근거 규정 자체를 없앨 필요는 없음
- 인사모의 경우 폐쇄 커뮤니티로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 커뮤니티 내부에서 비판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 연구회장이 ‘인권을 위한 사법제도를 논의한다면서 일반회원의 접근을 막는 폐쇄적 밀실 논의의 부당함’을 지적함으로써 다른 일반 회원들의 지지를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5 연구회 외부 활동 강화 ⇨ 상세는 별도 보고서 참조

- [시행방안 ①] ‘대형 이벤트’ 발굴 및 지원
- [시행방안 ②] 매년 정기 평가시 외부 활동 관련 항목 대폭 강화
- [시행방안 ③] 사법부 우호 인사 확보 방안

## 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과잉 확장 관련 대응방안

### ■ 1 연구회 논의 주제를 허가받은 전문분야의 범위로 제한

#### ● 필요성

- 전문분야를 국제인권법으로 특정하여 허가받았음에도 국제적 이슈와 무관한 일반 인권론, 나아가 인권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관한 활동에 집중하는 실태를 타파할 필요
- 심지어 인사모와 같이 전문분야 연구와 무관한 논의를 전면내 내세우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음



● **유의사항**

- 이 쟁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학문의 자유 억압’, ‘사법행정에 동조하지 않는 판사들 압박’ 등과 같은 자극적인 프레임에 의한 반격 예상됨
- 최대한 유화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큼

● **[해결방안 ①] 연구회 회장의 리더십 발휘**

- 특히 인사모에 대하여는 전문분야 연구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문제제기 충분히 가능함

**☑ 반드시 현행 회장 체제에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차기 회장은 특정 성향의 핵심세력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 높음

- 최근 인권법연구회와 노동법연구회의 급성장 및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의장직 장악 시도 성공 등으로 인한 자신감, 인사모를 중심으로 한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공식 문제제기 등의 공개 행보 강화 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노동법연구회도 2015년에만 95명의 회원 급증(국제인권법과 준회원이 다수인 민사집행법을 제외하면 가장 큰 증가) ⇨ 공식적으로는 '전담재판부 법관의 가입을 독려하였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나, 핵심세력의 적극적 확장 노력으로 인한 것일 수 있음

- 대법관 임명제청시 '법원 인권법연구회장 명의 반대 성명 또는 재고 요청' 등은 언론 입장에서 휘발성과 폭발력이 매우 강한 소재가 됨 (2017년 이○○ 대법관님 후임 임명시에는 진보적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는 나름의 명분도 있을 것임)

▶ 현 회장은 사법행정라인에 있으면서도 연구회원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음

▶ 현 회장 체제하에서 인사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차기 회장 체제하에서는 내부적 논의를 통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 '행정처의 전면 개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고려해야 하는 극히 부담되는 상황 발생 우려

∴ 그 이전에 문제를 해결할 필요 있음

- 부드러운 리더십 스타일의 현 회장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개설의 초심을 강조하면서 정서적으로 설득·호소할 경우 다수의 법관이 수긍·동조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임

● **[해결방안 ②] 대안적 연구회 신설 또는 대안적 활동 지원**

- ‘국제인권’ 이슈가 아닌 일반 인권적 이슈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회도 얼마든지 학술연구 활동 가능



- 현재 국제인권법 소속 법관들 상당수는 ‘국제인권’이 아닌 보편적 인권 이슈의 관심으로 가입함 ⇨ 보편적 인권 이슈에 대한 다른 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은 국제인권법으로의 독점적 유입을 방지하고, 인권 관련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음
- 대안적 연구회 신설은 다소 어려움 예상됨 ⇨ 추가 검토 필요
- 기존 연구회 중 헌법연구회(또는 형사법, 젠더법)를 중심으로 보편적 인권에 관하여 법관 사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활동 발굴하여 지원 필요 ⇨ 특별 예산 지원 가능한 대형 이벤트 발굴할 필요 있음

#### ☑ 젠더법연구회에 대한 시각 전환 필요성

- ▶ 그간 젠더법연구회의 확장 및 발언력 강화에 대하여 조심스러워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어 왔고, 젠더법연구회에 일부 強性的 법관이 있는 것도 사실임
- ▶ 그러나 근본적으로 젠더법연구회의 위상 강화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여성 법관들의 지위 강화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불가역적인 시대의 흐름일 뿐만 아니라,
- ▶ 무엇보다, 인권법연구회의 핵심그룹 등과 같이 사법행정라인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근본적인 불신과 반감을 전제로 하는 단체의 활성화가 훨씬 더 위험하고, 젠더법연구회는 여성인권 문제와 가부장적인 잔재가 남아 있는 조직문화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뿐 사법행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을 보이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
- ▶ 물론 젠더법연구회의 경우 행정처와 의견조율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인권 분야의 대안적 연구회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젠더법연구회를 주요 후보로 고려함이 타당하고, 그 활동지원에 제약을 둘 필요는 없음

#### ☐ ② 핵심세력과 다수 법관간 분리 방안

##### ● 필요성

- 핵심그룹의 활발한 활동과 그들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 등으로 인하여 소수의 핵심그룹이 연구회 전체의 입장, 나아가 사법부 내의 ‘사법행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 ⇨ 개선 필요

##### ● 시행방안

- 인위적인 개입은 성공확률도 낮고, 강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간접적 여건 조성의 관점에서 접근 ⇨ 무리하지 않은 수준의 문제제기 내지 논란을 통해 다수 회원의 경각심 내지 우려 일으킴



- ① 인사모가 연구회의 설립 취지 및 관련 규정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회장의 문제제기.
- ② 회원 가운데 법원의 '주류 중 주류' 로 인식될 수 있는 경력의 선배법관들 다수임 ⇨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명분을 갖추어 탈퇴하도록 유도

**☑ 선배 법관들의 탈퇴를 통하여 인권법연구회가 논란의 대상이라는 인식 확산**

▶ 젊은 법관들 입장에서 탁월한 실력과 경력을 갖춘 선배법관이 다수 있어 인권법연구회의 높은 위상과 소속감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음 ⇨ 고법부장 중에서만 성○○, 이○○, 김○○, 유○○, 이○○, 이○○ 부장 등

▶ 명분 없이 일거에 탈퇴할 경우 행정처가 배후에 있다는 공격을 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적절한 명분을 갖추어 탈퇴하되, 대거 탈퇴할 필요가 있음

- 인사모에 대한 회장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인사모측이 존치주장을 고집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명분이 될 것임

▶ 종전 우리법연구회 등의 사례에서 보듯 연구회 활동에 관하여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의 확산만으로도 상당수 법관이 자연스럽게 탈퇴할 가능성이 있음

- ③ 인권법연구회가 그 시스템 및 인적 구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임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부각될 경우 상당수 회원들의 동요 있을 것임 ⇨ 구체적 방법론은 추가 검토 필요

**■ ③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장점을 다른 연구회에 도입**

● 지역별 친목 소모임, 팀장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번개 모임 활성화 등은 우리법연구회의 시스템을 상당수 모방한 것으로서 회원간 유대강화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젊은 법관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음

● ⇨ 도입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다른 연구회와 커뮤니티에서도 적극 도입·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인권법연구회만의 장점 희석 + 다른 연구회 활성화

**■ ④ 설립 목적 위반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방안 검토**

● 관련 규정 ⇨ ① 연구회는 폐쇄 규정 없고, 설립허가 취소 가능, ②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정국장 또는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폐쇄 가능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2조(연구회의 설립허가)

③ 제2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설립목적과 예산사정 등을 참작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 ⇨ 반대해석상 설립허가 취소 가능

☑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0조(커뮤니티의 폐쇄)

④ 전산정보관리국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당해 커뮤니티 회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게시물의 이전 또는 삭제, 커뮤니티의 폐쇄, 커뮤니티 운영자 변경, 코트넷 이용권한 제한을 비롯한 코트넷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이 지침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산정보관리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커뮤니티 폐쇄, 운영자 변경 또는 커뮤니티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되더라도 바로 해당 커뮤니티가 폐쇄된다고 보기 어려움

● 시행 타당성 검토 ⇨ 명분 약하고,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소극

- ① 설립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시 ⇨ 법관 사회의 강력한 반발 예상 + 취소권자인 행정처장님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부담있으므로 극히 신중할 필요(예산 제한 등을 통한 간접적 압박 검토)
- ②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는 커뮤니티 등 ⇨ 코트넷 운영위원회에서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 조치 가능하나,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할 필요 (행정처의 불통·권위적·관료적 이미지 악화, 이를 경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신중 검토 필요)

■ 5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방안 검토

- 연구회 및 커뮤니티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활동계획을 보고하게 한 뒤 승인 또는 수정요구 등 회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있음
- 검토 의견 ⇨ 소극



- 법관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에 대한 계획 승인 또는 수정요구 등은 그 자체로 조심스럽고,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 및 탄압 논란을 피할 수 없음
- 법원행정처가 그로 인한 논란을 정면으로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 부담이 크고, 수정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언론 보도 가능성도 농후함
- 행정처(결국 대법원장님, 처장님) vs 인권법연구회 또는 진보 법관세력의 대결구도가 설정될 위험성이 매우 높음

#### 다. [참고] 검토의견을 종합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및 로드맵 예시

- 인사모에 대하여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연구회의 시스템 전반 대응방안을 제외한 인사모 관련 방안을 종합함
- [선결문제] 시기적·정무적 검토 ⇨ 사법행정위원회 진행 중 연구회 관련 조치 착수 여부
  - 현재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4. 11. 선정안건 발표 4. 25. 위원들 검토기간이 5. 6.까지로 각 예정되어 있음 ⇨ 위원회 정식 회기는 5. 9.부터 13.까지 1주간
  -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 강화’로 민주적 정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축제기간에 연구회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의의를 반감시킬 우려도 있음
  - [1안] 새로운 연구회 발굴 및 개설에도 상당한 준비기간 필요하므로 사법행정위원회 종료 후 시행하는 방안
  - [2안] 인사모의 활동이 점점 강화되고 사법행정위원회 활동에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위험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대책 시행하는 방안
  - 각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는바, 이하에서는 우선 즉시 시행하는 2안을 전제로 로드맵을 예시하기로 함



시기	방안 예시
4월 하순	<p>◆ 전정국장 명의 공지            '① 커뮤니티 활동 중 특별히 중요하고 가치있는 활동에 대하여 특별예산 지원 방안 도입 (본래 기조실장 명의 공지사항이나 한번에 공지함이 효율적일 수 있음)            ②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 예정 (일반 법관들 피해 명분)            ③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로 전환 (사법부 전체 역량 강화 등)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규정 설명하면서 연구회 목적과 무관한 소모임 해소 당부'</p>
5월 초순	<p>◆ 국제인권법 회장의 문제제기            '인사모의 경우 연구회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데, 이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구함'</p>
5월 중순	<p>◆ '사법국제화 연구회' 및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로' 연구회 신설            ⇨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한 이벤트 등 공지 및 활동 개시            ◆ 다른 연구회 활동 활성화 (밴드 및 지역별 모임 등)</p>
5월 하순	<p>◆ 고법부장 등 명망 있는 선배 법관들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대거 탈퇴            - 인사모 소모임이 존치 입장을 고수할 경우</p>
6월 이후	<p>국제인권법연구회 다수 회원의 의견을 모아 인사모의 자연스러운 소멸 유도</p>

#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6. 4.

## 법원 행정처





## 〈 요 약 〉

### 1. 검토 배경

가. 전문분야연구회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점검 필요

- 2000년 관련 예규 제정 후 15년 이상 근본적 변화 없이 유지 ⇨ 법관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기에 미흡
- 연구분야 주제는 물론 연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 필요

나. 특정 연구회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

-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이 회원 수 및 활동 외형에서 폭발적 성장 ⇨ 전문분야연구회 취지에 반하는 활동, 편법 중복가입 등 다양한 문제 표출

다. 종합대책 마련 필요 ⇨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의 시스템 점검 및 개선을 통한 사법부 전문성 강화 및 신뢰도 증진 기여방안

### 2. 연혁 및 현황 분석

- 연구회 및 관련 규정 연혁 개관 ⇨ 2006년 예규개정 이후 사실상 방치
- 예산 현황 ⇨ 최근 7년 이상 1억원 수준 동결
- 최근의 개선방안 논의 : 2012. 기초실의 '전문분야연구회 운영방식 개선 검토' ⇨ 시행되지 않음
  - 설립허가규정 폐지, 운영 관련 규정 전면 삭제, 상시 예산 지원 등
-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수 추이 및 예산 지원 현황
  - 최근 수년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가파른 성장, 두 번째는 젠더법연구회 (2015년에는 노동법연구회도 회원 수 급증)

### 3. 현행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 ① 일부 연구분야 주제에 대한 법관 사회의 관심 消盡

- 의료법·언론법·기업법 등 회원수 감소·정체, 참여 저조 ⇨ 젊은 법관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 유도할 새로운 전문분야 발굴 필요

■ ② 중복가입 금지규정 形骸化

- 공정한 예산지원 등의 필요성에 따라 정한 원칙임. 하지만 사실상 커뮤니티 시삽 등에 의해 제한 없이 중복가입 허용되고 있음
-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중복가입 회원수도 단연 가장 많고(227명), 중복가입자 비율도 가장 높음(53%) ⇨ 핵심그룹의 적극적 포섭활동

■ ③ 한정된 예산 대비 연구회 다수로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 [현행배정방식] 예산의 50%만 활동성과 순위에 따라 배정
- [한계①] 1억원을 15개 연구회에 배분하는 결과 최대지원 1천만원, 최소지원 450만원으로 연구회 활동의 인센티브로서 효과 미흡
- [한계②] 제한된 범위의 형식적 평가로 행정처 관리범위 이탈
- 예산 및 전산망 지원에 상응하는 행정처의 실질적 관리방안 모색 필요

■ ④ 커뮤니티 폐쇄성 등으로 연구성과 사법부 내부 공유 미흡

- [사법부 전체] 비회원의 접근성 차단 + 지식광장에는 미게시
- [연구회 회원]도 비적극회원의 열독률 저조 ⇨ 재판실무 활용 등 기여도 높지 않고, 사법부 전체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 미흡

■ ⑤ 학계·재야·언론 등 상대 연구성과 활용 및 법원 신뢰강화 기능 미미

- 사법부 전문성 외부 각인 효과 부족, 법원 우호세력 확보 성과 미미, 성과물이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지도 아니함

■ ⑥ 허가받은 전문분야 이탈·무시

- [예1] 국제인권은 물론 통상적인 인권법 논의영역도 이탈, 정치적 함의 포함된 주제 및 연사 다수



- [예2] 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 전반 및 최고법원 구성에 개입 ⇨ 핵심세력이 2015. 7. 발족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통하여 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의 쟁점들에 조직적 관여 시도

#### 4. 구조 개편 및 대응방안

가. 개선방안 요약 ⇨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별로 그에 상응하는 개선책 마련

나.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에 관한 구조 개편 등 개선방안

##### ■ (법관 사회 관심 소진 ⇨) ①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 [필요성] 특정 연구회의 이슈 독점 방지, 자기개발 욕구 해소 및 합리적 여론형성의 장 마련
  - 일부 특정 집단이 논의를 주도하는 인사모와 '이사야' (인사제도 및 법원문화 관련 여론 주도)의 영향력이 비대해지기 전에 합리적 여론 분출의 장 마련 필요
- [기본방향] 젊은 법관들의 관심·수요·참여 고려, '주제' 못지않게 '주체'의 상징성 중요 ⇨ 젊은 법관들의 role model 前進 배치
- [후보 1] 사법국제화 연구회
  - ① 외국어·해외사법·국외연수에 관심 있는 법관 다수, ② '국제' 관련 이슈 포괄적으로 망라·포섭·유인 가능, ③ 우호적 분위기 형성시 각종 사법행정현안에 대하여 관련 자료 수집 및 지지 여론 출발점 역할 기대
  - [운영진 후보군] ① 이○○ 고법판사, ② 원○○ 지법부장 등
- [후보 2] 가칭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law' 연구회
  - 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속 사법부 및 법관의 모습 관련 쟁점 전반
  - ① 젊은 법관의 관심, ② 미디어 속 왜곡된 법관과 사법의 모습 바로잡는다는 명분이 공감대 형성, ③ 영화 및 방송 관련 이벤트로 관심 흡인력 극대화하여 단기간에 연구회 판도에 변화 유도 가능 등



- 세련된 명분 제시 중요

- [운영진 후보군] ① 문○○ 지법부장, ② 전○○ 고법판사 등

■ (중복가입 금지규정 形骸化 ⇨) ② 중복가입자 정리

- [필요성] 원칙을 준수하는 법관만 여러 손해를 보고 있고, 편법적 중복가입의 혜택을 인권법연구회가 최대 향유하고 있음
- ① 법관들 상대 중복가입자 정리 명분 있고, ②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하며, ③ 인사모 해소를 위한 유효한 우회적 압박 카드이며, ④ 사전 준비의 부담 無 등의 여러 장점 있음
- 施行時 국제인권법(431⇨204), 노동법(295⇨196) 등이 가장 위축됨
- 중복가입자 정리과정에서 국제인권법으로 편중되는 부작용 방지 위해 고법부장급 탈퇴 등 다른 방안과 동시에 실시 필요

■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 ③ 예산 증액 및 실질 평가 시스템 구축

- 예산동결 기간의 회원 및 성과 급증, 다른 부처 현황 등을 내세워 예산 당국 설득 ⇨ 증액에 따른 행정처의 예산분배 재량 확대로 연구 성과에 따른 실질적 차등지원 가능
- 평가기준 구체화·실질화하고 각급법원 전문분야 지원비(6억원)도 활용

■ (커뮤니티 폐쇄성 ⇨) ④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 '자신들만의 同質感', '이너씨클 활동의 은밀한 滿足感' 등 유발 ⇨ 학술성과 공유, 사법부 전체 역량 축적에 기여 필요
- [시행방안] ① 다른 전문분야 성과 접근성 강화, ②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물 사법부 전체 공유 등의 명분과 ③ 각종 성과물 지식광장 게재 독려 등 오해 해소 방안 동시 활용
- [기대효과] ① 사법부 전문역량 강화 및 지식공유 활성화, ② 중복 가입금지 엄격 시행에 따른 불만 해소, ③ 은밀한 논의의 만족감 내



지 결속감 약화로 인적 유대 수단이 아닌 학술연구 수단으로 정립,

④ 인사모의 자유게시판化로 chilling effect 등 다양한 기대효과

■ (외부 활동 미흡 ⇨) ⑤ 외부 교류 및 우군 확보 적극 지원

- [시행방안 ①] 대형 이벤트 및 출판사업 발굴 및 지원
- [시행방안 ②] 매년 정기 평가시 외부 활동 관련 항목 대폭 강화
- [시행방안 ③] 사법부 우호 인사 확보를 위한 방안 등

■ (일부 연구회 활동 저조 ⇨) ⑥ 설립허가 취소 방안 : 소극

- 명분 약하고, 득보다 실이 큼

■ (행정처의 관리 강화 ⇨) ⑦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방안 : 소극

- 자율적 연구활동에 대한 탄압 논란, 행정처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부담 등이 큼



#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방안 검토

2018. 6. 5.

기억조정실

## 1. 검토 배경

가.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점검 필요

▣ 2000년 관련 예규 제정 후 15년간 근본적 변화 없이 유지

- 2000년 당시 법관들의 관심도, 성과 활용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설된 후 큰 변화 없이 유지 ⇨ 특히 2006년 예규개정 이후로 사실상 방치
- 현행 체제는 법관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기에 미흡함

▣ 연구분야 주제는 물론 연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 필요

- 변화하는 시대 환경 및 젊은 법관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분야를 담당할 연구회 신설 및 지원 필요
- 휴면상태 연구회 폐쇄 여부, 중복가입 연구회 정리 여부 등 연구회 운영 시스템에 관하여도 재점검과 개선 필요

나. 특정 연구회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

▣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이 회원 수 및 활동 외형에서 폭발적 성장

- 반면 연구회 취지에 배치되는 활동, 편법적 중복가입 등 다양한 문제점 표출 ⇨ 운영시스템 자체의 문제점 확인 및 보완책 마련 필요

다. 종합적 대책 검토 필요

▣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의 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전문연구 활성화 및 적정 활동 강화를 통해 사법부 전문성 강화, 외부의 신뢰 강화, 예산 증액 등 법원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

▣ 특정 연구회 과잉 성장 관련 政務的 대응방안 ⇨ 별도 보고



## 2. 연혁 및 현황 분석

### ▣ 연구회 및 관련 규정의 연혁 개관

- 2000. 7. 「전문분야연구회의구성및지원에관한예규」(이하 예규) 제정
- 2000. 8. 행정처장이 지정한 국제거래법연구회 등 11개 연구회로 시작
  - 사법정보화 연구회를 제외한 10개 연구회에 대하여는 중복가입 불허
- 2006. 2. 예규 개정으로 연구회 운영상 문제점 일부 개선
  - 연구회 설립을 ‘행정처장의 분야 지정’에서 ‘법관들의 자유설립’으로 전환, 단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장이 일정한 요건 하에 설립허가
  - 연구회의 운영성과에 관하여 행정처장 자문하기 위한 ‘연구회 성과 평가 위원회’ 신설함으로써 예산 배정의 객관성 확보
  - 전문재판부 소속 법관의 중복가입 허용 및 사법보좌관의 준회원 제도 도입
  - 연구회별로 간사의 허가를 받은 회원에 한하여 게시·열람권을 갖는 폐쇄 커뮤니티 신설 가능
- 2006. 11. 헌법연구회 신설 (중복가입 허용)
- 2007. 12. 젠더법 연구회 신설 (중복가입 허용)
- 2010. 7. 형사법연구회 신설 (중복가입 허용)
- 2010. 12. 예규 개정
  - 주요 활동이 11월과 12월에 집중됨을 고려하여 연구회의 활동성과 및 결산현황 보고시기를 매년 12. 1.에서 1. 15.로 변경
- 2011. 8. 국제인권법연구회 신설 ⇨ 현행 15개 연구회 체제 정립

### ▣ 예산 현황

- 2016년 예산 편성 ⇨ [210-12 복리후생비] 전문분야 실무연구회 지원비 7억 1천만 원



- 전문분야연구회 지원비로 1억 2백만 원 배정 (나머지 6억 8백만 원은 각급 법원 재판관련 전문분야 연구활동 지원비)
- 최근 7년 이상 연구회 지원비 1억 원 선에서 동결 (2012년 무렵까지는 위 지원비가 ‘전문분야 연구활동지원’ 약 6억 원과 ‘사이버연구회 활동지원’ 약 1억 원의 2가지 항목으로 편성되었던 영향도 있음)

#### ■ 최근의 개선방안 논의

- 2012. 1. 기초실 ‘전문분야연구회 운영방식 개선 검토’ ⇨ 시행되지 않는 아니함

##### ☑ [주요 내용]

###### ▶ 연구회 활동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 행정처장의 설립허가규정 폐지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문분야연구회가 아니어도 전산정보국장의 허가로 개설 가능)
- 운영방식에 관한 일체의 규정 삭제(회원 자격, 가입 및 탈퇴, 임원진 구성, 총회 및 분과 등 관련 규정)
- 중복가입 금지 규정 삭제

###### ▶ 예산지원 관련 개선

- 연 1회 정기예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처장이 특정 연구회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 직권으로 상시 예산 지원 가능 (당시 사법정보화연구회가 법관의 SNS 사용기준에 관하여, 국제거래법연구회가 FTA에 관하여 각 연구 중 ⇨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주요 연구시 필요성 검토를 거쳐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활동지원비’에서 상시 지원)
-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 예산 배정 폐지 ⇨ 대다수인 중복가입회원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중복가입 전면 허용하면서 인원수 기준 삭제 (단 미중복 순수 회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만 예산지원 대상으로 함)
-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만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





▣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수 추이 및 예산 지원 현황

연구회	회장	시삽	회원 수						예산지원현황(평가순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년		2015년	
									순위	배정액	순위	배정액
국제거래법	노○○	홍○○	121	121	152	162	206	221	8	550만원	7	550만원
국제인권법	이○○	김○○	11. 8. 설립		108	217	285	431	4	700만원	4	700만원
기업법	김○○	김○○	180	199	198	197	207	214	15	450만원	13	450만원
노동법	김○○	김○○	155	165	171	179	200	295	8	550만원	10	550만원
도산법	이○○	이○○	264	288	324	364	402	449	5	650만원	7	650만원
민사집행법	김○○	이 ○	560	614	679	726	773	875	2	1천만원	1	1천만원
사법정보화	허○○	박○○	300	336	355	362	380	395	8	550만원	12	550만원
언론법	고○○	남○○	88	94	102	118	127	140	12	500만원	14	500만원
의료법	이○○	노○○	236	236	272	283	294	291	12	500만원	15	500만원
젠더법	민○○	김○○	389	397	433	628	651	691	3	950만원	1	950만원
조세법	김○○	이○○	176	186	213	222	238	257	5	650만원	6	650만원
지적재산권법	이○○	이○○	319	319	340	356	358	374	5	650만원	5	650만원
헌법	장○○	김○○	165	184	199	213	220	269	12	500만원	11	500만원
형사법	임○○	이○○	235	519	825	1,294	1,683	2,041	1	1250만원	3	1250만원
환경법	배○○	이○○	182	188	217	224	236	245	8	550만원	9	550만원
회원총수 및 총지원금			2,699	3,139	3,546	4,588	5,545	6,943		1억원		1억원

※ 노란색 음영은 중복 가입 가능 연구회

※ 민사집행법 연구회는 사법보좌관 등의 준회원 포함(법관은 635명)



### 3. 현행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 ■ ① 일부 연구분야 주제에 대한 법관 사회의 관심 消盡

- [의료법연구회]의 경우 2015년 회원수가 전년보다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의료법학회와 공동세미나를 1회 개최한 외에는 게시글이나 활동이 전혀 없었음
  - 회원의 오프라인 모임도 3년째 전혀 열리지 않고 있음
  - 서울중앙·서부·남부지법을 제외하고는 전담부 법관들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재판 자료 및 노하우 공유 기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언론법연구회]의 경우 2015년 정기총회(세미나)에 법관이 단 8명만 참석하였고, 커뮤니티 기타 대내외 활동이 침체되어 있음
- [기업법연구회]의 경우 2012, 2013년에는 회원수가 감소하는 등 최근 5년간 15명의 회원이 증가하는데 그쳤고, 현재도 커뮤니티 활동이 침체되어 있음
  - 단, 그 소모임인 법경제학모임이 정기세미나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이상의 연구회는 2015년 활동평가에서 차례로 최하위(15~13위)를 기록
- 반면 젠더법연구회, 지재법연구회 등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젊은 법관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만한 새로운 전문분야 발굴 긴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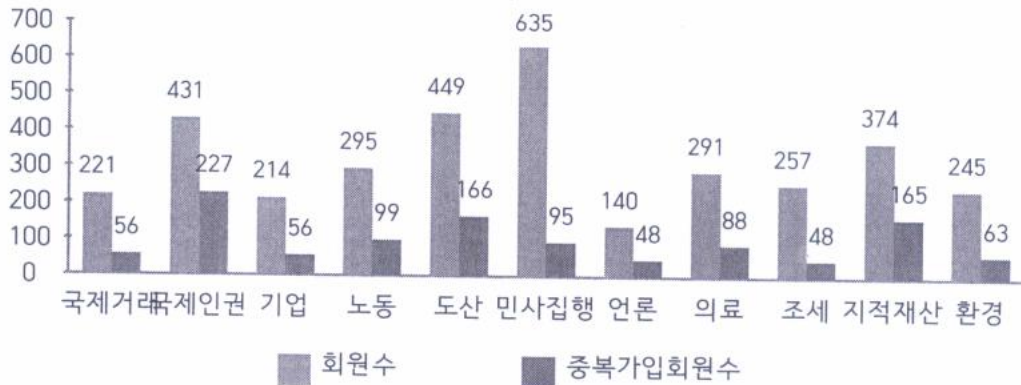
#### ■ ② 중복가입 금지 규정 形骸化

- 중복가입금지 규정은 ① 회원수를 고려한 공정한 예산지원, ② 허수의 회원 증대 방지, ③ 법관별로 주된 하나의 전문분야를 집중 육성할 필요성 등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정책결정한 원칙임
- 사실상 연구회 중복가입을 막을 방법이 없고, 통제가능한 코트넷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시삽이 임의로 가입을 허가하면 중복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복 가입 현황

연구회별 중복가입회원 수



※ ① 중복가입이 허용된 연구회 제외(민사집행법은 사법보좌관 제외), ② 1명이 여러 곳에 가입된 경우 그 중 가장 먼저 가입한 학회 외에는 중복가입된 것으로 계산

▣ ③ 한정된 예산 대비 연구회 다수로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 [현행 예산배정방식] 연 2회 지원액 배정

- 상반기 배정(예산액 50%)시는 전년도 활동성과를 평가한 순위에 따라 배정
- 하반기 배정시는 활동성과와 무관하게 예산 중 25%는 일률적으로 1/n 배정, 나머지 25%는 회원수에 따라 배정

● [한계①] 1억원의 예산을 15개의 연구회에 분산 배분

- 중복허용 연구회를 제외하면 최대지원액 1천만 원(민사집행법, 875명), 최소지원액 450만 원(기업법, 214명)으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차등 지원의 취지 미약 ⇨ 연구회 활동을 자극할 인센티브로서 기대효과 미흡

● [한계②] 제한된 범위의 형식적 평가로 행정처의 관리범위 이탈

- 예산 중 50~55%를 균등액 분할 또는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 기계적 배정
- 제한된 예산 중 45~50% 범위에서의 성과 평가(1~15위를 3개씩 5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50만원씩 차등)만으로는 실질적 평가의 동력이 부족함 ⇨ 평가위원인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도 중요 업무가 되기 어려움

● ⇨ 예산 및 전산망 지원에 상응하는 행정처의 실질적 관리방안 필요



#### ▣ 4 커뮤니티의 폐쇄성 등으로 연구성과 사법부 내부 공유 미흡

- [사법부 전체] 비회원은 대부분의 게시글을 볼 수 없음 + 일부 법관을 제외하고는 (커뮤니티 외) 지식광장에는 성과를 게시하지 아니함
- [연구회 회원] 비적극 회원의 열독률 낮은 편임 + 커뮤니티 메일링 기능을 이용하지 않은 게시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함
- ⇨ 재판실무에의 활용을 위한 기여도 높지 않고, 사법부 전체의 전문성 향상에도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 5 학계, 재야 및 언론 등 상대 연구성과 활용을 통한 법원 신뢰 강화 기능 미미

- 법원행정처가 외부 활동 강조해온 결과 대부분의 연구회에서 외부 학회와의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2014년 미 실시 연구회 : 환경법, 도산법, 기업법 (단 기업법은 외부 연사가 절반을 자처하는 심포지엄 개최)
-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음
  - ①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나아가 사법부의 전문성을 외부에 각인시키는 효과 미흡함
  - ② 권위있는 외부 학회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및 소통을 통해 법원의 우호세력을 확보하는 성과는 미미한 수준임
  - ③ 사법부 연구회의 출판물(정기, 비정기)이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물론 출판 예산의 제약 문제도 있음)

#### ▣ 6 허가받은 전문분야 이탈·무시

- 국제인권법연구회 2015년 정기세미나, 전문분야 연수 및 특강 개요

행사	주제	연사
1월 특강	경제민주화와 인권	정○○ 전 총리
3월 세미나	건강할 권리	김○○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5월 세미나	증세와 복지	새누리당 김○○ 의원



6월 법관연수	인권법과 법관	경향신문 이○○ 기자 등 (전○○ 대법관, 김○○ 헌법재판관)
7월 세미나	모욕죄의 남용과 한계	연구회 내 '표현의 자유' 소모임 소속 허○○, 류○○ 판사
8월 세미나	영화 빵과 장미	자유 토론
10월 특강	중동 내전과 난민 문제	경향신문 구○○ 기자
12월 학술대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한국노동법학회, 법원 노동법연구회와 공동개최

- '국제인권' 과 무관한 주제가 대부분 ⇨ 경제민주화와 인권, 증세와 복지 등은 국제인권은 물론 통상적인 인권법의 논의 영역도 이탈하는 수준임
- 정치적 함의를 포함한 주제를 자주 선정하다보니 연사로도 전·현직 정치인들이나 정치색이 있는 기자 등이 다수 참여하게 됨
- 인권과 전혀 무관한 '사법제도'에 관한 소모임 운영
  - 연구회 핵심세력이 2015. 7.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을 발족하여 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의 쟁점들을 인권을 명분으로 관여 시도
  - 상고법원, 사법행정위원회, 판사회의 활성화,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하여 조직적 개입 시도

#### 4. 구조 개편 및 대응방안

☑ 개선방안 요약 ⇨ <전문분야연구회의 전반적 문제점>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기요인>별로 그에 상응하는 개선책 마련

- ▶ [전반적 문제점1] 법관 사회의 관심 소진 ⇨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 젊은 법관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중견 법관이 주도
- ▶ [문제점2] 중복 가입금지 규정 형해화 ⇨ 중복가입자 일제 정리(규범력 회복)
  - 국제인권법이 가장 큰 타격 + 주제 무관 소모임 정리 등 행정처 개입 명분 제공
- ▶ [문제점3] 형식적 평가 및 예산 배정 ⇨ 예산 증액 및 실질적 평가 시스템 구축
- ▶ [문제점4] 커뮤니티 폐쇄성 ⇨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및 공유
  - 핵심세력 위축 및 인권법 회원들만의 이너써클 의식 희석 + 실무전문성 축적
- ▶ [문제점5] 외부 상대 성과 제시 미흡 ⇨ 외부 교류 및 우군 확보 적극 지원
  - 외부 교류를 예산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음
- ▶ 기타 ⇨ 활동 저조 연구회 폐쇄 여부,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여부 등



## □ 1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 ● 필요성

- 인권의 보편성 등을 내세운 특정 연구회가 **법관 사회의 이슈를 독점하는 현상 방지**
- 시의성 있고 법관들이 관심있어 하는 주제에 대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법관들의 자기개발 욕구 해소는 물론 선후배 법관들의 바람직한 소통 창구 개설, 합리적 여론 형성의 장 마련

#### ☑ 이슈별 법관여론 주도 온라인공간 분석

- ▶ ① 사법정책관련 이슈 ⇨ 국제인권법커뮤니티 중 인사모 소모임
  - ▶ ② 법관인사 및 법원문화(부장과의 관계 등) 관련 이슈 ⇨ 다음 익명카페 이사야
  - ▶ ③ 양성평등 관련 이슈 ⇨ 젠더법커뮤니티
  - ▶ ④ 모성보호 및 생활정보 관련 이슈 ⇨ 네이버 여성 법관 카페 유스티티아
- ⇨ 일부 특정 집단이 논의를 주도하는 '인사모'와 '이사야'의 영향력이 비대해지기 전에 법관들의 합리적 여론 분출의 장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커뮤니티 신설 필요

### ● 발굴의 기본방향

- 젊은 법관들의 관심 및 수요에 부합함과 동시에 **다수 법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발굴** ⇨ 젊은 법관들의 전문분야 업무능력 및 의욕 고취, 업무 외적 관심의 다변화
- 전문분야의 '주제' 못지 않게 이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상징성 있는 **선배법관 필요** ⇨ 젊은 법관들에게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법관들을 각 연구회에 분산 배치, **합리적 여론 형성의 구심점 역할 기대**

### ● [새로운 연구회 후보 1] 사법국제화 연구회

- 각국 및 국제재판소의 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추후 연구회 인적 구성 및 활동상황 검토하여 '각국의 사법행정' 도 연구대상으로 확대
- 각종 사법현안에 대한 해외자료 수집, 번역 및 조사, 국내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번역, 해외 소개 및 홍보 ⇨ 현행 국제규범연구반을 확대개편하는 형태



- [참가 유인] 현재 국제규범연구반의 경우 장기해외연수를 준비하거나 외국어 실력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젊은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사법국제화연구회의 경우에도 설립 초기부터 행정처가 적극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젊은 법관 상당수의 관심을 끌 수 있음
- [+] ① 외국어 및 해외사법에 관심 많은 젊은 법관들 상당수 참여 가능, ② 국제인권법 회원 중 ‘국제’ 관련 분야에 관심 있어 가입하였던 법관을 유인할 수 있음, ③ 포괄적인 이슈를 연구 주제로 망라 가능, ④ (인적 구성과 성향이 행정처에 우호적인 경우) 각종 사법행정현안에 대하여 관련 자료 수집 및 방어논리 개발, 지지여론 확산의 출발점 역할 기대 가능
- [-] ① 국제규범연구반 및 외국사법제도연구반과의 통폐합 내지 차별화 문제, ② 사법행정 현안이 연구대상이 되는 경우 연구 자율성 관련 오해의 소지 (‘관계 연구회’), ③ 인권법 핵심세력 등 외부 세력이 적극 참여할 가능성
- 운영진 후보군

이름	사진	소속	경력
이 ○ ○		○○고등법원 고법판사	-해외사법관련 전문성 有, 행정처와의 의견조율 가능하고, 젊은 법관들과의 소통, 교류능력 있음
원 ○ ○		○○지방법원 부장판사	-해외사법관련 전문성 有, 행정처와의 의견조율 가능하고, 젊은 법관들과 소통, 교류 가능함

- [새로운 연구회 후보 2] 가치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law’ 연구회
- [주된 분야] ‘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속 사법부 및 법관의 모습’ 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및 파생되는 법적 문제, 나아가 미디어가 법관 및 재판의 현실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관련 콘텐츠의 개발방안을 각 연구
- [+] 젊은 법관들의 관심을 쉽게 유도할 수 있음(엔터테인먼트법 분야는 젊은 법관들이 관심을 갖는 전문분야 중 연구회 미개설된 몇 안 되는 분야 + 예산 지원을 통한 공연 관람, 예술인과의 간담회 등도 높은 호응 예상)



- [+] 미디어 속 왜곡된 법관과 사법의 모습을 바로잡는다는 필요성과 명분이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법정드라마 대본 집필 등에 관심 있는 법관들의 수가 상당함 ⇨ 자발적으로 적극적 활동 유도 가능
- [+] 주요 영화사·방송사·연예기획사 방문행사 등을 통해 법관 사회 화제의 중심에 서는 등으로 단기간에 현행 연구회 판도에 가시적 변화 유도 가능
- [+] 장기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법원에 대한 정확하고 우호적인 정보와 인식이 제공되기 위해서는(ex: 영화 ‘12 angry men’) 위와 같은 모임 필요함
- [-] 명분을 세련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풍 81’, ‘3S 정책’ 등과 같은 愚民化 정책으로 비판받으면서 행정처가 설립의 배후로 의심받을 위험 있음
- [-] 콘텐츠의 지속적·전문적 창출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흥미 위주의 단기 이벤트로 받아들여질 우려 있음
- ※ 전문분야 연구회로 설립하는 것이 부담될 경우 코트넷 커뮤니티로 개설할 수 있음(국제규범연구회, 부모교육공동연구회 커뮤니티 등이 그러함)
- 운영진 후보군

이름	사진	소속	경력
문 ○○ ○		○○지법 부장판사	-젊은 법관들 사이에 인기 및 신뢰도 높음 -2011년 친한 후배법관들을 데리고 SM을 방문하고 법정드라마 시나리오 고민하는 등 관련 분야 관심 ↑ - 어느 정도는 행정처와의 합리적 가교 역할 가능
전 ○○ ○		○○고등법원 고법판사	-행정처와의 의견조율 가능하고, 젊은 법관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가 받음
오 ○○ ○		○○고등법원 고법판사	-행정처 배후 지원 등의 오해 소지 없이 커뮤니티 운영가능





## □ 2 중복가입자 정리

### ● 필요성

- ① 편법에 의한 연구회 중복가입이 난무하는 실정 ⇨ 원칙을 준수해 1개의 연구회에만 가입한 법관이 예산지원, 전문자료 접근, 전문성 있는 법관들과의 네트워크 기회 등 여러 측면에서 손해를 입게 되는 매우 부당한 결과 발생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 ② 편법적 중복가입의 혜택을 특정 연구회가 크게 누리고 있음 ⇨ 연구회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개선작업(중복가입자 정리)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특정 연구회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

####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장점

##### ▶ ① [법관들 상대로 명분 있음]

- 법관들의 학술조직인 전문분야연구회의 활동 및 구성에 대하여 행정처가 관여할 경우 법관들의 자율성 침해, 학문의 자유 억압 등의 논란을 피할 수 없음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경우 ① 중복가입금지규정의 규범력 회복, ②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③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법관들의 피해 방지 등의 명분 있음 ⇨ 규범 준수 및 편법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을 중시하는 법관들의 성향상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음

##### ▶ ② [행정처·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임]

- 수백명 가입법관의 연구회 활동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방안(활동계획 사전 승인, 사후 평가 강화, 특정 연구회에 대한 제재 등)의 경우 그 성격상 행정처장 또는 차장의 공지 내지 사전 안내가 필요할 수 있음
- 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연구회 성과 평가 위원회(위원장 기조실장)'의 '심의 강화'를 개선수단으로 삼는 경우에도 유사한 논란의 소지 있음
- 중복가입금지 해소방안의 경우 커뮤니티 관리책임자인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공지 및 시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나 저항 없음 ⇨ 그 시행방안에 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나 특정 연구회에 대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다른 방안에 비하여 낮음

##### ▶ ③ ['인사모 해소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임]

- '인사모'는 조속히 해소 내지 와해시킬 필요성이 큼
- 그러나, 행정처가 '모든 연구회는 전문분야와 무관한 소모임 활동을 정리하라'는 식으로 정공법을 택할 경우 인사모를 표적으로 한 조치임이 쉽게 드러나고 강한 반발을 초래할 우려 있음



- 중복회원 해소방안은 다소 기술적인 커뮤니티 정비방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전정국장이 현행 규정에 위배되는 중복회원 해소방안을 공지하면서 그 밖의 커뮤니티 관련 규정 역시 소개하고 이에 위반하는 활동을 자제하여 달라고 안내한다면 법관 사회 반발이나 인사모측의 반발 명분을 최소화할 수 있음**

▶ ④ **별다른 사전 준비 작업 없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즉시 시행할 수 있음**

-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를 위하여 어느 정도 유예기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공지와 동시에 직권으로 정리할 것인지 여부 정도만 결정하면 됨

### ● 시행에 따른 특정 연구회 회원 감소

- 한명의 법관이 가입한 여러 연구회 중 가입일자가 가장 빠른 연구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복가입으로 탈퇴처리할 경우 연구회 회원 수 변동 내역

	현재 가입회원 수		중복가입 탈퇴처리 후 회원 수
국제거래법	221		165
국제인권법	431		204
기업법	214		158
노동법	295		196
도산법	449	⇒	283
민사집행법	875		780
언론법	140		92
의료법	291		203
조세법	257		209
지적재산권법	374		209
환경법	245		182

※ 청색표시는 가입회원이 90명 이상 감소하는 연구회

### ● 부작용 검토

- 중복가입 연구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법관들이 다른 연구회에서 탈퇴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선택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중복가입자 정리가 오히려 소장 법관들의 인권법으로의 편중 현상 촉발할 가능성
- 중복가입 정리 외에 아래에서 검토할 ‘부장급 이상 대거 탈퇴 방안’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의 연구범위 명확화 및 인사모 해소 시도 방안’ 등과 함께 시행될 경우 법관들에게 **인권법연구회가 논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줄 것이므로, 다수의 법관들이 인권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함



### ■ ③ 예산 증액 및 실질적 평가 시스템 구축

- [필요성] 전문분야연구회 지원예산이 장기간 1억원으로 동결 ⇨ 15개에 달하는 연구회에 대하여 나눠먹기식 분배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평가작업이 어려움
  - 실질적으로도 외부 학술기관과의 공동세미나 등과 같은 외부활동은 현재의 예산 지원 수준으로는 시행하기 곤란하므로, 외부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 증액이 필요함
  - 예산 증액으로 법원행정처의 예산분배 재량범위가 커질수록 연구실적에 따른 실질적 차등지원이 가능해짐 ⇨ 연구회 활동에 대하여 기계적·형식적 평가가 아닌 실질적 평가여건 조성
- 예산증액을 위한 예산당국 설득 방안
  - 예산이 동결된 기간 동안의 연구회 수 및 가입회원 수 급증, 누적된 연구성과 등을 내세워 예산당국 설득
  - 법무부의 전문분야 연구 지원 관련 예산 등 타부처 예산 상황도 확인하여 증액의 논거로 삼을 필요 있음
- 사안에 따라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활동 지원비(약 6억 원)를 활용할 필요 있음
  - 기존의 헌법연구회가 법관 사회의 인권 관련 연구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대규모 행사 개최하는 경우 예산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있음
- 실질적 평가 기준 강화
  - 현행 평가기준표(아래 ‘외부 활동 강화’ 항목 참조)의 평가항목과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필요 있음

### ■ ④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 필요성
  - 커뮤니티 게시글이 대부분 회원 전용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법부 전체 차



원의 전문역량 축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학술연구단체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공개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인권법 커뮤니티 등의 경우 일부 회원의 사조직적 운영행태와 게시글 비공개가 맞물려 회원들에게 ‘자신들만의 동질감’ 내지 ‘일반 법관들은 알지 못하는 이너써클에서 활동한다는 은밀한 만족감’ 등을 유발하고 있음

#### ● 시행방안

- 커뮤니티 총괄관리자인 전정국장이 언제든지 공지를 통해 시행할 수 있음
- ① ‘법관들이 자신이 가입한 커뮤니티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의 연구성과에도 손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법관님들의 전문성 강화와 자율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거나
- ② ‘사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이상 그 연구성과를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함으로써 사법부 전체의 전문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는 정도의 명분을 제시할 수 있음
- ③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반드시 지식광장에 게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압박’ 이라는 일각의 의심을 희석시키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이 부분은 전정국장이 아니라 각 법원 수석부장 등이 담당)

#### ● [기대효과]

- ① 학술성과 공유로 사법부 전문역량 강화,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 코트넷 지식공유 활동 활성화
- ② 다른 커뮤니티에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중복가입금지 규정의 엄정한 시행에 따른 불만 내지 부작용 완화
- ③ 인권법커뮤니티 및 노동법커뮤니티 등 인적 유대관계 강화의 수단으로 커뮤니티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연구회의 경우 게시글 내용 공개를 통해 자신들이 ‘은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 내지 결속감’ 을 약화시켜 활동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킬 수 있음



- ④ 특히 인사모의 경우 내부논의가 사법부 전체에 전면 공개됨으로써 인사모 내부의 논의가 코트넷 자유게시판 또는 제도개선법관토론포럼에서의 논의와 차별화되지 않게 됨 ⇨ ‘인사모의 자유게시판화’를 통해 과감하고 도발적인 논의는 위축될 가능성 있음
- ⑤ 커뮤니티 내부 논의 내용 공개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용이해짐 (심의관 등이 의심을 감수하며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할 필요 없음)

#### ● 부작용 검토

- 게시글 공개시 인사모 등의 편향적 논의는 또 다른 폐쇄공간을 찾아 네이버 밴드 또는 다음 카페 등으로 도피할 가능성 큼
- 2015. 5. 우리법연구회의 상고법원 관련 세미나 사례에서 보듯 법원의 공식 연구회 내지 코트넷 커뮤니티 공간에서 논의되는 것보다는 ① 훨씬 언론의 주목을 피할 수 있고, ② 공개되어 문제되는 경우에도 ‘특정 성향 일부 법관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방어 논리 활용 가능함

#### ● 폐쇄 커뮤니티와의 관계

- 폐쇄 커뮤니티 근거 규정 자체를 없앨 필요는 없음
- 인사모의 경우 폐쇄 커뮤니티로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 커뮤니티 내부에서 비판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 연구회장이 ‘인권을 위한 사법제도를 논의한다면서 일반회원의 접근을 막는 폐쇄적 밀실 논의의 부당함’을 지적함으로써 다른 일반 회원들의 지지를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5 연구회 외부 활동 강화

#### ● 필요성

- 15년간 축적된 연구성과 및 역량을 대외 관계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 있음
- 반면 일부 연구회가 매너리즘에 빠져 새로운 주제발굴 및 연구활동이 침체된 상황에서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자극을 받을 필요도 있음
- 사법부 위상 강화 및 영향력 확대, 사법부 우군 확보와도 연결되는 과제임

#### ● [시행방안 ①] ‘대형 이벤트’ 발굴 및 지원



**☑ 필요성**

▶ 현재와 같이 고만고만한 수준의 연구활동 및 외부 공동세미나 정도로는 전문 역량 과시를 통한 사법부 위상 강화의 전기를 마련하기 어려움

▶ 해당 전문분야에서 법원 전문분야연구회의 역량이 확실히 부각될 수 있는 대형 이벤트나 대형 출판사업을 기획·실시할 필요 있음

**☑ 시행방안**

▶ **대형 이벤트**

- 특별세미나 외에도 모의재판, 국제회의(ex: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국제난민권 퍼런스), 경연대회 등 형식의 제약 없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할 필요 있음

▶ **대형 출판사업**

- 해당 분야에서 바이블로 남을 수 있는 최고수준의 서적, 실무와 학계의 논의를 집대성한 서적, 최첨단 분야에 대한 선도적 문헌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특별 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연구회 예산(1억 원)이 아닌 각급 법원 전문분야 지원예산 기타 다른 항목에서의 충실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행정처장이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별 사업별로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 있음(2012년 기초실 검토서의 '상시지원' 방안 유사 제도 도입, 단 수많은 신청이 제출될 것에 대비하여 요건, 시기 및 가용예산범 위 등에 관하여 별도 상세 검토 필요)

▶ **대법원 국제 법률 심포지엄 활용 방안**

- 매년 국제 심포지엄 예산(약 1억 7천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므로, 전년도 또는 최근 활동이 가장 우수한 연구회 또는 가장 탁월한 심포지엄 계획서를 제출한 연구회에게 해당 연도의 국제 심포지엄 준비를 맡기는 방안도 가능(행정처가 행사 실무지원을 하고, 대법원 주최 심포지엄으로서의 골격은 유지함)

● [시행방안 ②] 매년 정기 평가시 외부 활동 관련 항목 대폭 강화

- 현재 평가기준상 외부 활동에 대하여는 특별한 배점이 없음
- 커뮤니티의 내부 게시글 및 참여도에 대한 기본 배점이 65점에 달함
- 외부 단체와의 공동세미나 등의 외부행사를 공식 평가항목의 가점사항으로 명시하는 등의 개선 필요



현행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기준		배점(100)
게시물 평가	토론장 및 자료실에 게시된 글과 논문 등에 대한 평가		30
	세부기준	게시물 주제의 연구 필요성	7
		게시물 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	7
		게시물의 완성도	8
		실무와의 관련성, 실무에 대한 기여도	8
회원 참여도	게시물 및 게시자의 수, 조회수 등을 고려한 참여도 평가		30
	세부기준	게시물의 수 (절대 숫자)	10
		글을 게시한 회원 수 / 전체 회원 수	10
		게시물에 대한 조회수	10
세미나	세미나 개최여부 및 그 내용, 성과 등에 대한 평가		20
	세부기준	오프라인 세미나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	8
		세미나 구성의 적절성	5
		세미나 성과물의 수준	7
기타 (사이트운영, 예산등)	자료집 등 연구성과물 산출 여부,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 연구회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 등 기타사항 평가		20
	세부기준	코트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메뉴 구성,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의 적절성	5
		자료집 등 연구성과물의 발행 여부 및 수준	5
		내년 연구회 운영계획의 적정성	5
		전년 예산 집행의 적정성	5

● [시행방안 ③] 사법부 우호 인사 확보를 위한 방안

- 매년 각 연구회별로 연구회와 관계가 돈독하거나 연구회 활동에 특별히 기여한 학자 내지 저명인사를 1명씩 추천받아 법원행정처장 주최 만찬에 초청하고 공로패를 수여하는 방안 등(원로급 석학들로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만찬도 고려 가능)
- 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사법부와 유대관계 강화 효과

● 단, 외부 영향력 확대 방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심층 추가 분석·검토 필요

▣ ⑥ 관심 및 활동 저조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방안 검토

- 관련 규정 ⇨ ① 연구회는 폐쇄 규정 없고, 설립허가 취소 가능, ②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정국장 또는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폐쇄 가능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2조(연구회의 설립허가)

③ 제2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설립목적과 예산사정 등을 참작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 ⇨ 반대해석상 설립허가 취소 가능

**☑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0조(커뮤니티의 폐쇄)

③ 전산정보관리국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운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직권으로 커뮤니티를 폐쇄할 수 있다.

④ 전산정보관리국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당해 커뮤니티 회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게시물의 이전 또는 삭제, 커뮤니티의 폐쇄, 커뮤니티 운영자 변경, 코트넷 이용권한 제한을 비롯한 코트넷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이 지침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산정보관리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커뮤니티 폐쇄, 운영자 변경 또는 커뮤니티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되더라도 바로 해당 커뮤니티가 폐쇄된다고 보기 어려움**

● 시행 타당성 검토 ⇨ 명분 약하고,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소극

- ① 설립목적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가능 ⇨ 법관 사회의 강력한 반발 예상 + 취소권자인 행정처장님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부담있으므로 극히 신중할 필요(예산 제한 등을 통한 간접적 압박 검토)
- ② 1년 이상 활동하지 않는 커뮤니티 ⇨ 직권 폐쇄 가능하나, 사전 의견진술 과정에서 향후 적극 활동 재개 의사를 밝힐 경우 신중할 필요
- ③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는 커뮤니티 등 ⇨ 코트넷 운영위원회에서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 조치 가능하나,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할 필요 (행정처의 불통·권위적·관료적 이미지 악화, 이를 경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신중 검토 필요)





---

▣ 7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방안 검토

- 연구회 및 커뮤니티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활동계획을 보고하게 한 뒤 승인 또는 수정요구 등 회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있음
- 검토 의견 ⇨ 소극
  - 법관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에 대한 계획 승인 또는 수정요구 등은 그 자체로 조심스럽고,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 및 탄압 논란을 피할 수 없음
  - 법원행정처가 그로 인한 논란을 정면으로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 부담이 크고, 수정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언론 보도 가능성도 농후함
  - 행정처(결국 대법원장님, 처장님) vs 인권법연구회 또는 진보 법관세력의 대결구도가 설정될 위험성이 매우 높음. [끝]

#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6. 3.

법원행정처



## < 요약 >

### 1.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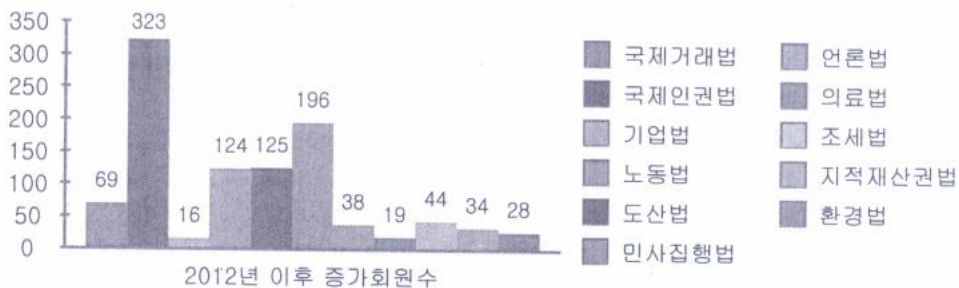
가. 전문분야연구회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점검 필요

- 2000년 이후 15년 이상 근본적 변화 없이 유지 ⇨ 법관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기에 미흡
- 연구분야 주제는 물론 연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 필요

나. 특정 연구회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

####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및 활동 현황

- 회원 431명으로 중복가입 허용되는 연구회를 제외한 전체 11개 연구회 중 3번째로 큰 규모 ⇨ 곧 도산법을 제치고 2위 등극 유력
- 2011. 8. 설립 이래 가장 압도적인 회원 증가세



- 2016년 들어 2개월 여 만에 40개가 넘는 본글과 수백개의 댓글 달림 ⇨ 다른 커뮤니티의 전반적 침체 추세와 대비(최대규모 민사집행법도 토론장 및 QnA 게시글이 1년간 7건 정도인 것과 대비)
- 법관 전세대의 가입 및 활동 활발 ⇨ 사무분담과 무관한 가입이라는 점에서 젊은 법관들 참여 높고, 다른 연구회의 노령화에도 대비
- 외형적 급속·과잉 성장과정에서 드러난 전문분야연구회 운영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필요 ⇨ 주제의 보편성으로 인한 이슈 선점 등 포함
- 연구회 주도 세력의 편향성 및 영향력 증대로 인한 대책 마련 필요
  -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전문분야연구회 본질을 벗어난 활동

다. 종합대책 마련 필요 ⇨ ①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의 시스템 점검 및 개선이라는 큰 틀의 대책 + ② 특정 연구회 과잉 성장 관련 위험방지 정무적 대책 필요

### 2. 연혁 및 현황 분석

- 연구회 및 관련 규정 연혁 개관 ⇨ 2006년 예규개정 이후 사실상 방치



- **예산 현황** ⇨ 최근 7년 이상 1억원 수준 동결
- **최근의 개선방안 논의 : 2012. 기초실의 '전문분야연구회 운영방식 개선 검토'** ⇨ 시행되지 않음
  - 설립허가규정 폐지, 운영 관련 규정 전면 삭제, 상시 예산 지원 등
-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수 추이 및 예산 지원 현황**
  - 최근 수년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가파른 성장, 두 번째는 젠더법연구회 (2015년에는 노동법연구회도 회원 수 급증)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급증 원인 분석**
  - ① 전문분야 주제의 보편·포괄성 및 상징성 ⇨ 난민 등 국제적 이슈가 아니라 일반적 인권 관련 전반을 다룸 ⇨ '인권'의 흡입력 극대화
  - ② 핵심그룹의 적극적 확장 활동 ⇨ 창립 멤버(우리법연구회 출신 다수, 정황상 설립 배경 의문)들이 여전히 활동 주도
  - ③ 회장 경선 등 자유롭고 개성있는 문화 ⇨ 고등부장과 평판사가 치열하게 경선을 치르는 등 구성원들의 애착과 자부심 + 연구와 무관한 공연관람 및 친목활동으로 연구회라기보다 법관 교류 모임 성격
  - ④ 사조직적 특성 유지 ⇨ 선배의 찬조금 출연 당연시되는 등 인적 결합체로서의 분위기(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핵심그룹의 문화 반영)
  - ⑤ 기타 ⇨ 지역별 친목모임, 운영위원 및 팀장제 등은 우리법연구회의 시스템이 그대로 이식된 것임

### 3. 현행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 ① 일부 연구분야 주제에 대한 법관 사회의 관심 消盡
  - 의료법·언론법·기업법 등 회원수 감소 내지 정체, 참여 저조 ⇨ 젊은 법관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 유도할 새로운 전문분야 발굴 필요
- ② 중복가입 금지규정 形骸化
  - 공정한 예산지원 등 필요성에 의하여 정하여진 원칙임에도 사실상 커뮤니티 시삽 등에 의해 제한 없이 중복가입 이루어지고 있음
  -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중복가입 회원수도 단연 가장 많고(227명), 중복가입자 비율도 가장 높음(53%) ⇨ 핵심그룹의 적극적 포섭활동
- ③ 한정된 예산 대비 연구회 다수로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 [현행배정방식] 예산의 50%만 활동성과 순위에 따라 배정
  - [한계①] 1억원 예산을 15개 연구회에 배분하는 결과 최대지원 1천만원, 최소지원 450만원으로 연구회 활동의 인센티브로서 효과 미흡
  - [한계②] 제한된 범위의 형식적 평가로 행정처 관리범위 이탈



- 예산 및 전산망 지원에 상응하는 행정처의 실질적 관리방안 모색 필요

▣ ④ 커뮤니티 폐쇄성 등으로 연구성과 사법부 내부 공유 미흡

- [사법부 전체] 비회원의 접근성 차단 + 지식광장에는 미게시
- [연구회 회원]도 비적극회원의 열독률 저조 ⇨ 재판실무 활용 등 기여도 높지 않고, 사법부 전체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 미흡

▣ ⑤ 학계·재야·언론 등 상대 연구성과 활용 및 법원 신뢰강화 기능 미미

- 사법부 전문성 외부 각인 효과 부족, 법원 우호세력 확보 성과 미미, 성과물이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지도 아니함

▣ ※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관련 문제점

- ① 허가받은 전문분야 이탈·무시 ⇨ 국제인권은 물론 통상적인 인권법 논의영역도 이탈, 정치적 함의 포함 주제 및 연사 다수
- ② '인사모'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전반 및 최고법원 구성에 조직적 개입 시도 ⇨ 핵심세력이 2015. 7. 발족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통하여 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의 쟁점들에 조직적 관여 시도
- ③ 일부 강경·핵심세력이 연구회, 나아가 사법부 전체 여론 호도

#### 4. 구조 개편 및 대응방안

가. 개선방안 요약 ⇨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 및 인권법연구회 인기요인별로 그에 상응하는 개선책 마련

나.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에 관한 구조 개편 등 개선방안

▣ (법관 사회 관심 소진 ⇨) ①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 [필요성] 특정 연구회의 이슈 독점 방지, 자기개발 욕구 해소 및 합리적 여론형성의 장 마련
  - 일부 특정 집단이 논의를 주도하는 인사모와 '이사야' (인사제도 및 법원문화 관련 여론 주도)의 영향력이 비대해지기 전에 합리적 여론 분출의 장 마련 필요
- [기본방향] 젊은 법관들의 관심·수요·참여 고려, '주제' 못지않게 '주체'의 상징성 중요함 ⇨ 젊은 법관들의 롤모델 전진 배치
- [후보 1] 사법국제화 연구회
  - ① 외국어·해외사법·국외연수에 관심 있는 법관 다수, ② '국제' 관련 이슈 포괄적으로 망라·포섭·유인 가능, ③ 우호적 분위기 형성시 각종 사법행정현안에 대하여 관련 자료 수집 및 지지연론 출발점 역할 기대
  - [운영진 후보군] ① 이○○ 고법판사, ② 원○○ 지법부장 등



● [후보 2] 가칭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law' 연구회

- 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속 사법부 및 법관의 모습 관련 쟁점 전반
- ① 젊은 법관의 관심, ② 미디어 속 왜곡된 법관과 사법의 모습 바로잡는다는 명분이 공감대 형성, ③ 영화 및 방송 관련 이벤트로 관심 흡인력 극대화하여 단기간에 연구회 판도에 변화 유도 가능 등
- 세련된 명분 제시 중요
- [운영진 후보군] ① 문○○ 지법부장, ② 전○○ 고법판사 등

■ (중복가입 금지규정 형해화 ⇨) ② 중복가입자 정리

- [필요성] 원칙을 준수하는 법관만 여러 손해를 보고 있고, 편법적 중복가입을 혜택을 인권법연구회가 최대 향유하고 있음
- ① 법관들 상대 중복자 정리 명분 있고, ②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하며, ③ 인사모 해소를 위해 유효한 우회적 압박 카드이며, ④ 사전 준비의 부담이 없는 등의 여러 장점 있음
- 시행하면 국제인권법(431⇨204), 노동법(295⇨196) 등이 가장 위축됨
- 중복정리과정에서 인권법으로 편중되는 부작용 막기 위해 부장급 탈퇴 등 다른 방안과 동시에 실시 필요

■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 ③ 예산 증액 및 실질 평가 시스템 구축

- 예산동결 기간의 회원 및 성과 급증, 다른 부처 현황 등을 내세워 예산 당국 설득 ⇨ 증액에 따른 행정처의 예산분배 재량 확대로 연구 성과에 따른 실질적 차등지원 가능
- 평가기준 구체화·실질화하고 각급 법원 전문분야 지원비(6억원)도 활용

■ (커뮤니티 폐쇄성 ⇨) ④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 '자신들만의 동질감', '이너씨클 활동의 은밀한 만족감' 등 유발 ⇨ 학술성과 공유 마땅, 사법부 전체 역량 축적에 기여 필요
- ① 다른 전문분야 성과 접근성 강화, ②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물 사법부 전체 공유 등의 명분과 ③ 각종 성과 지식광장 게재 독려 등 오해 해소 방안 동시 활용
- ① 사법부 전문역량 강화 및 지식공유 활성화, ② 중복가입금지 엄격 시행에 따른 불만 해소, ③ 은밀한 논의의 만족감 내지 결속감 약화로 인적 유대 수단이 아닌 학술연구 수단으로 정립, ④ 인사모의 자유게시판化로 chilling 이펙트 등 다양한 기대효과

■ (외부 활동 미흡 ⇨) ⑤ 외부 교류 및 우군 확보 적극 지원

- 축적된 역량 활용, 매너리즘 탈피, 사법부 영향력 및 위상 강화 등
- [시행방안 ①] 대형 이벤트 및 출판사업 발굴 및 지원



- [시행방안 ②] 매년 정기 평가시 외부 활동 관련 항목 대폭 강화
- [시행방안 ③] 사법부 우호 인사 확보를 위한 방안 등
- ⇨ 장기적 관점에서 심층적인 추가 검토 필요

**다. 특정 연구회 과잉 확장 관련 대응방안**

■ (주제의 보편타당성 ⇨) ① 허가받은 전문분야 범위로 제한

- 허가받은 '국제인권'으로 한정 ⇨ 단 학문의 자유 억압 등 오해 방지

● [해결방안 ①] 회장의 리더십 발휘

- 전문분야연구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모 등에 대한 문제제기
- 차기 회장은 핵심세력이 나설 것이므로, 현 회장 체제에서 인사모 해결필요

● [해결방안 ②] 대안적 연구회 신설 또는 대안적 활동 지원

- 보편적 인권 관심 국제인권법으로의 독점적 유입 방지하고 수요 흡수
- 헌법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보편적 인권 관련 대형 이벤트 발굴·지원

■ (핵심그룹의 확장 시도, 자유로운 문화 및 사조직적 특성 등 ⇨) ② 핵심세력과 다수 회원간 분리 방안

- 인위적 개입은 성공 불가하므로, 자연스러운 문제제기 및 논란 유도
- ① 인사모 문제, ② 신망 높은 고법부장들 다수 집단 탈퇴(명분 및 시기 조율), ③ 우리법연구회 관련성 등 막연한 논란 및 문제제기만으로도 상당수 법관으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임

■ (지역별 모임 등 친목모임 활성화 ⇨) ③ 장점을 다른 연구회에 도입

■ ④ 관심 및 활동 저조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방안 검토

- 명분 약하고,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소극

■ ⑤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방안 검토 ⇨ 자율적 연구활동에 대한 탄압 논란, 행정처가 논란의 정면에 서게 되는 부담 등에 비추어 소극

■ 인사모 관련 로드맵 예시 (사법행정위 개회 시기 중 시행 여부 문제됨)

4월 초	전정국장 명의 공지 '① 특별히 중요하고 가치있는 활동에 대하여 특별예산 지원 방안 도입 ②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 예정 (일반 법관들 피해 명분) ③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로 전환 (사법부 전체 역량 강화 등)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규정 설명하면서 연구회 목적과 무관한 소모임 해소 당부'
4월 중순	국제인권법 회장, 회원들 상대 인사모 관련 문제제기
4월 하순	사법국제화연구회 및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로 연구회 신설 다른 연구회 활동 활성화 (밴드 및 지역별 모임 등)
5월 초순	인사모 소모임이 존치 입장을 고수할 경우 ⇨ 고법부장 등 대거 탈퇴



---

5월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 다수 회원의 의견을 모아 인사모의 자연스러운 소멸 유도
-------	---

---





# 전문분야연구회 개선방안 검토

2018. 6. 5.

법원행정처

## 1. 검토 배경

### 가. 전문분야연구회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점검 필요

#### ▣ 2000. 7.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정 후 15년 이상 근본적 변화 없이 유지

- 2000년 당시 법관들의 관심도, 성과 활용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설된 후 큰 변화 없이 유지 ⇨ 특히 2006년 예규개정 이후로 사실상 방치
- 현행 체제는 법관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기에 미흡함
  - 2016년 현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면, 상당수 커뮤니티의 연구분야 및 시스템은 2,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것에 불과함

#### ▣ 연구분야 주제는 물론 연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 필요

- 변화하는 시대 환경 및 젊은 법관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분야를 담당할 연구회 신설 및 지원 필요
- 휴면상태 연구회 폐쇄 여부, 중복가입 연구회 정리 여부 등 연구회 운영 시스템에 관하여도 재점검과 개선 필요

### 나. 특정 연구회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

####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및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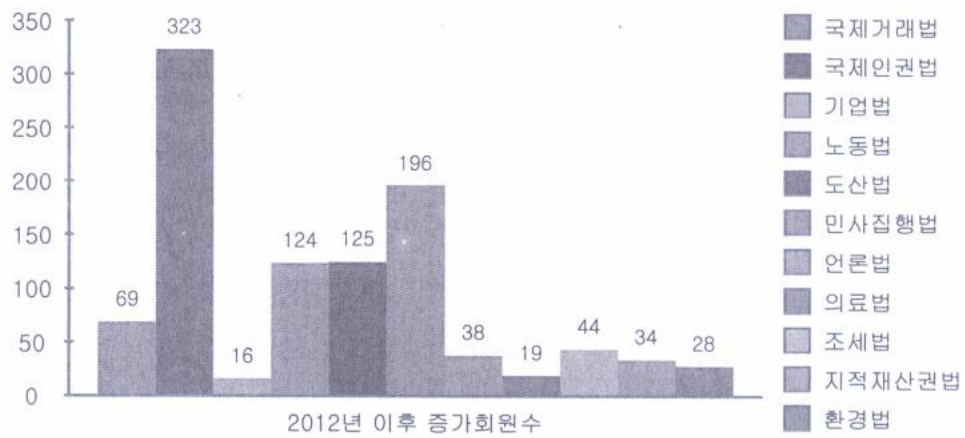
- 2016. 3. 기준 431명으로 (중복가입 허용되는 연구회를 제외한) 전체 11개 연구회 중 3번째로 큰 규모 ⇨ 곧 도산법을 제치고 2위 등극 유력



연구회	민사집행법	도산법	국제인권법	중복가입 연구회 중에서는 형사법(2,041명), 젠더법(691명)이 대규모임
회원수	875명 (법관은 635명)	449명	431명	

● 2011. 8. 설립 이래 가장 현저한 회원 증가

2012년 이후 증가 회원수



● 2016. 1. 1.이후 현재까지 2개월 여만에 커뮤니티에 40여개의 본글과 수백개의 댓글 달림 ⇨ 다른 커뮤니티의 전반적 침체 추세와 대비됨

- 최대규모 전문분야연구회인 민사집행법 연구회의 커뮤니티 활동 감소 추세

년도	토론장 게시글 수	QnA 게시글 수
2010년	17개	46개
2015년	1개	6개

● 법관 전세대에 걸쳐 고른 가입 및 활동 활발

기간	연간 가입법관	20기 이상	21~25기	26~30기	31~35기	36~40기	41기 이하
2014년	82명	5	3	16	30	22	6
2015년	132명	1	12	15	27	60	17

- 가입회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정 기수 구간에 치우치지 않고 법관 전세대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음



- 다른 전문분야연구회도 배석판사급 경력인 법관들의 가입이 다수이나, 이는 사무분담으로 해당 분야를 맡게 됨에 따라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인권법연구회는 재판사무분담과 무관하게 개인적 관심으로 인하여 가입  
 ⇨ 젊은 법관들의 관심이 다른 연구회에 비하여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 cf) 민사집행법 연구회 오프라인 활동(원외연수) 참여 법관의 노쇠화

년도	참여 법관 수	지법부장 이상 법관 수	법관경력 하위 10명의 평균 법관경력
2010년	55명	13명 (23.6%)	1.6년
2015년	48명	17명 (35.4%)	3.3년

▣ **외형적 급속·과잉 성장과정에서 드러난 전문분야연구회 운영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필요**

- ‘국제인권’ 주제의 보편성으로 인한 이슈 先占 및 확장, 편법적 중복 가입 방치 등 운영시스템 자체의 문제점 확인 및 보완책 마련 필요

▣ **나아가, 연구회 주도 세력의 편향성 및 영향력 증대로 인한 위험성 관련 대응책 마련 필요**

-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 핵심세력이 자신들의 법관사회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정황 감지됨
- 전문분야연구회의 본질을 벗어난 활동에 대하여 적정한 통제 방안 및 위험성 해소 방안 긴요한 시점임

**다. 종합적 대책 검토 필요**

- ▣ ①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의 시스템 점검 및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의 대응방안은 물론 ② 특정 연구회 과잉 성장 관련 위험 방지를 위한 政務的 대응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음
- ▣ 향후 전문분야 연구회 활성화 및 대내외 적정 활동 강화를 통해 사법부 전문성 강화, 외부 전문가들의 신뢰 강화, 예산 증액 등 법원에 기여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2. 연혁 및 현황 분석

### ▣ 연구회 및 관련 규정의 연혁 개관

- 2000. 7. 「전문분야연구회의구성및지원에관한예규」(이하 예규) 제정
- 2000. 8. 행정처장이 지정한 국제거래법연구회 등 11개 연구회로 시작
  - 사법정보화 연구회를 제외한 10개 연구회에 대하여는 중복가입 불허
- 2006. 2. 예규 개정으로 연구회 운영상 문제점 대폭 개선
  - 연구회 설립을 ‘행정처장의 분야 지정’에서 ‘법관들의 자유설립’으로 전환, 단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행정처장이 설립허가
  - 연구회의 운영성과에 관하여 행정처장 자문하기 위한 ‘연구회 성과 평가 위원회’ 신설함으로써 예산 배정의 객관성 확보
  - 전문재판부 소속 법관의 중복가입 허용 및 사법보좌관의 준회원 제도 도입
  - 연구회별로 간사의 허가를 받은 회원에 한하여 게시·열람권을 갖는 폐쇄 커뮤니티 신설 가능
- 2006. 11. 헌법연구회 신설 (중복가입 허용)
- 2007. 12. 젠더법 연구회 신설 (중복가입 허용)
- 2010. 7. 형사법연구회 신설 (중복가입 허용)
- 2010. 12. 예규 개정
  - 주요 활동이 11월과 12월에 집중됨을 고려하여 연구회의 활동성과 및 결산현황 보고시기를 매년 12. 1.에서 1. 15.로 변경
- 2011. 8. 국제인권법연구회 신설 ⇨ 현행 15개 연구회 체제 정립

### ▣ 예산 현황

- 2016년 예산 편성 ⇨ [210-12 복리후생비] 전문분야 실무연구회 지원비 7억 1천만 원



- 전문분야연구회 지원비로 1억 2백만 원 배정 (나머지 6억 8백만 원은 각급 법원 재판관련 전문분야 연구활동 지원비)
- 최근 7년 이상 연구회 지원비 1억 원 선에서 동결 (2012년 무렵까지는 위 지원비가 ‘전문분야 연구활동지원’ 약 6억 원과 ‘사이버연구회 활동지원’ 약 1억 원의 2가지 항목으로 편성되었던 영향도 있음)

#### ■ 최근의 개선방안 논의

- 2012. 1. 기초실 ‘전문분야연구회 운영방식 개선 검토’ ⇨ 시행되지 않는 아님

##### ☑ [주요 내용]

###### ▶ 연구회 활동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 행정처장의 설립허가규정 폐지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문분야연구회가 아니어도 전산정보국장의 허가로 개설 가능)
- 운영방식에 관한 일체의 규정 삭제(회원 자격, 가입 및 탈퇴, 임원진 구성, 총회 및 분과 등 관련 규정)
- 중복가입 금지 규정 삭제

###### ▶ 예산지원 관련 개선

- 연 1회 정기예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처장이 특정 연구회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 직권으로 상시 예산 지원 가능 (당시 사법정보화연구회가 법관의 SNS 사용기준에 관하여, 국제거래법연구회가 FTA에 관하여 각 연구 중 ⇨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주요 연구시 필요성 검토를 거쳐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활동지원비’에서 상시 지원)
-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 예산 배정 폐지 ⇨ 대다수인 중복가입회원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중복가입 전면 허용하면서 인원수 기준 삭제 (단 미중복 순수 회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만 예산지원 대상으로 함)
-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만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



■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수 추이 및 예산 지원 현황

연구회	회장	시삽	회원 수						예산지원현황(평가순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년		2015년	
									순위	배정액	순위	배정액
국제거래법	노○○	홍○○	121	121	152	162	206	221	8	550만원	7	550만원
국제인권법	이○○	김○○	11. 8. 설립		108	217	285	431	4	700만원	4	700만원
기업법	김○○	김○○	180	199	198	197	207	214	15	450만원	13	450만원
노동법	김○○	김○○	155	165	171	179	200	295	8	550만원	10	550만원
도산법	이○○	이○○	264	288	324	364	402	449	5	650만원	7	650만원
민사집행법	김○○	이 ○	560	614	679	726	773	875	2	1천만원	1	1천만원
사법정보화	허○○	박○○	300	336	355	362	380	395	8	550만원	12	550만원
언론법	고○○	남○○	88	94	102	118	127	140	12	500만원	14	500만원
의료법	이○○	노○○	236	236	272	283	294	291	12	500만원	15	500만원
젠더법	민○○	김○○	389	397	433	628	651	691	3	950만원	1	950만원
조세법	김○○	이○○	176	186	213	222	238	257	5	650만원	6	650만원
지적재산권법	이○○	이○○	319	319	340	356	358	374	5	650만원	5	650만원
헌법	장○○	김○○	165	184	199	213	220	269	12	500만원	11	500만원
형사법	임○○	이○○	235	519	825	1,294	1,683	2,041	1	1250만원	3	1250만원
환경법	배○○	이○○	182	188	217	224	236	245	8	550만원	9	550만원
회원총수 및 총지원금			2,699	3,139	3,546	4,588	5,545	6,943		1억원		1억원

※ 노란색 음영은 중복 가입 가능 연구회

※ 민사집행법 연구회는 사법보좌관 등의 준회원 포함(법관은 635명)



##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급증 원인 분석

### ● ① 전문분야 주제의 보편·포괄성 및 상징성

- “국제인권” 이 갖는 보편타당성 등이 법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옴
- 특히 “국제인권법” 으로 한정하여 설립허가를 받았음에도 일반적 인권 관련 주제 전반을 다루고 있음 ⇨ 난민 등의 국제적 주제에 한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인권” 의 흡입력 극대화

#### ☑ 주제가 갖는 흡입력이 회원 가입으로 이어진 사례

- ▶ 2015. 6. 사법연수원에서 ‘인권법과 법관’ 전문분야 연수 실시
- ▶ 법관 72명이 참가, 그 중 19명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 아니었으나,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연수에 자발적 참가 ⇨ 3일간의 연수 종료 후 전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가입

### ● ② 핵심그룹의 적극적 확장 활동

- 2011. 8.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 당시 멤버 31명이 여전히 연구회 각종 활동을 주도하고 있음

#### ☑ 국제인권법 설립 배경 관련 분석

- ▶ 2011. 8. 당시 노동법연구회가 이미 170명에 달하는 법관 회원을 두고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었음 ⇨ 그럼에도 핵심그룹이 위 노동법연구회를 더 확장하는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국제인권법연구회 개설을 신청
- ▶ 이는 핵심그룹이, (학술연구의 호기심이나 필요성이 아니라) 경직된 주제를 다루게 되고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기 쉬운 노동법 분야 연구회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보편성을 지닌 새로운 연구회 창설을 통해 활동무대를 마련하려는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
- ▶ 실제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설립 초기부터 인권과 무관한 ‘사법부의 독립 및 법관론’ 등을 주된 논의 주제로 삼아왔음 (2014. 2. 법관론 소모임 개설 등)

### ● ③ 회장 경선 등 자유롭고 개성있는 문화

- 법관으로서 연구 활동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다른 전문분야 연구회(친목활동은 학술행사 또는 원외연수의 기회에 함께 이루어지는 정도)와 달리 상시적으로 연구와 무관한 공연관람 및 친목활동이 이루어지고 권장되고 있음 ⇨ 전문분야 연구회라기보다 법관 교류 모임 유사의 형태로 운영



- 회장은 단수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로 선출되는 다른 연구회와 달리 정견 발표 및 득표활동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함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자유 경쟁 선거 사례

- ▶ 2013년 하반기에 있었던 2014년 회장 선거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현 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가 선거에서 낙선함
- ▶ 2015년 회장 선거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와 31기 단독판사(현 재판연구관) 등이 서로 출마의 변을 한 후 경쟁 선거를 치름
- ▶ 법원 내 다른 조직에서 찾기 어려운 구성원의 강한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 ⇨ 연구회에 대한 구성원들의 애착과 자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음

네이버 밴드의 활성화

- ▶ 인적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모임답게 다른 연구회와 달리 네이버 밴드를 두고 있고, 회원수도 221명에 달하는 등 활발히 운영되어 실시간 번개모임 등에 활용되고 있음

위와 같은 여러 특징에 힘입어 2015. 11. 정기총회(1박 2일)에 47명(회원 수 2배 규모인 민사집행법연구회의 원외연수 참가자수와 비슷함)이 참가하는 등 공식 모임도 활성화

● ④ 자유로움 속 私조직적 특성 유지

- 연구회 임원진 및 부장판사들의 찬조금 출연, 그들 주도의 회식문화 등 선배로서의 역할 요구가 당연시 되는 분위기로서 인적 결합체로서의 분위기 상당함 ⇨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핵심그룹의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⑤ 기타

- 2015년 132명에 달하는 회원이 집중 가입 ⇨ 인권편람 번역본을 회원에게 무료배포한다는 사정이 큰 영향을 미침 (양형실장 분석)
- 연구회 소속 지역별, 법원별 (친목)모임 활성화 ⇨ 다른 연구회에는 없는 현상으로 연구회 소속 법관들 사이의 동질감 등을 드러내면서 결속을 강화하는 선순환 기능
- 위와 같은 지역별 모임 시스템, 사조직적 특성 및 회장-운영위원-팀장(기획팀장 등)-지역위 등으로 이루어진 운영진 구성체계 등을 비롯한 운영방식은 우리법연구회의 시스템을 그대로 移植한 것임





### 3. 현행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 ■ ① 일부 연구분야 주제에 대한 법관 사회의 관심 消盡

- [의료법연구회]의 경우 2015년 회원수가 전년보다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의료법학회와 공동세미나를 1회 개최한 외에는 게시글이나 활동이 전혀 없었음
  - 회원의 오프라인 모임도 3년째 전혀 열리지 않고 있음
  - 서울중앙·서부·남부지법을 제외하고는 전담부 법관들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재판 자료 및 노하우 공유 기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언론법연구회]의 경우 2015년 정기총회(세미나)에 법관이 단 8명만 참석하였고, 커뮤니티 기타 대내외 활동이 침체되어 있음
- [기업법연구회]의 경우 2012, 2013년에는 회원수가 감소하는 등 최근 5년간 15명의 회원이 증가하는데 그쳤고, 현재도 커뮤니티 활동이 침체되어 있음
  - 단, 그 소모임인 법정제학모임이 정기세미나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이상의 연구회는 2015년 활동평가에서 차례로 최하위(15~13위)를 기록
- 반면 젠더법연구회, 지재법연구회 등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젊은 법관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만한 새로운 전문분야 발굴 긴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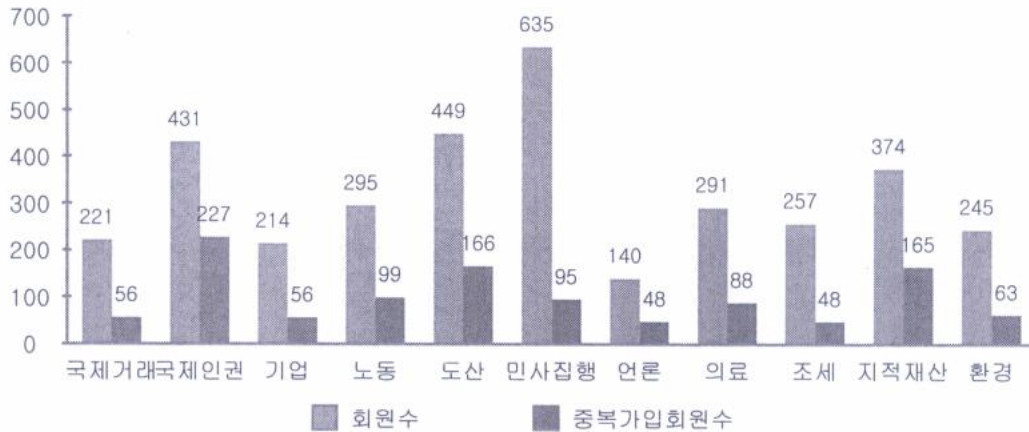
#### ■ ② 중복가입 금지 규정 形骸化

- 중복가입금지 규정은 ① 회원수를 고려한 공정한 예산지원, ② 허수의 회원 증대 방지, ③ 법관별로 주된 하나의 전문분야를 집중 육성할 필요성 등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정책결정한 원칙임
- 사실상 연구회 중복가입을 막을 방법이 없고, 통제가능한 코트넷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시삽이 임의로 가입을 허가하면 중복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복 가입 현황

연구회별 중복가입회원 수



- 중복가입이 허용된 연구회 제외(민사집행법연구회의 경우 사법보좌관 제외)
- 1명의 법관이 여러 연구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먼저 가입한 학회를 제외한 학회에 중복가입된 것으로 계산
-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중복가입 인원수도 가장 많고(227명), 중복가입자 비중도 가장 높음(53%) ⇨ 시습 등 핵심세력에 의한 포섭활동으로 중복가입한 법관이 많은 것으로 해석됨

▣ ③ 한정된 예산 대비 연구회 다수로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 [현행 예산배정방식] 연 2회 지원액 배정

- 상반기 배정(예산액 50%)시는 전년도 활동성과를 평가한 순위에 따라 배정
- 하반기 배정시는 활동성과와 무관하게 예산 중 25%는 일률적으로 1/n 배정, 나머지 25%는 회원수에 따라 배정

● [한계①] 1억원의 예산을 15개의 연구회에 분산 배분

- 중복허용 연구회를 제외하면 최대지원액 1천만 원(민사집행법, 875명), 최소지원액 450만 원(기업법, 214명)으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차등 지원의 취지 미약 ⇨ 연구회 활동을 자극할 인센티브로서 기대효과 미흡

● [한계②] 제한된 범위의 형식적 평가로 행정처의 관리범위 이탈



- 예산 중 50~55%를 회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한 기계적 배정
- 제한된 예산 중 45~50% 범위에서의 성과 평가(1~15위를 3개씩 5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50만원씩 차등)만으로는 실질적 평가의 동력이 부족함 ⇨ 평가위원인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도 중요 업무가 되기 어려움
- ⇨ 예산 및 전산망 지원에 상응하는 법원행정처의 실질적인 관리방안 모색 필요

#### ■ 4 커뮤니티의 폐쇄성 등으로 연구성과 사법부 내부 공유 미흡

- [사법부 전체] 비회원은 대부분의 게시글을 볼 수 없음 + 일부 법관을 제외하고는 (커뮤니티 외) 지식광장에는 성과를 게시하지 않음
- [연구회 회원] 비적극 회원의 열독률 낮은 편임 + 커뮤니티 메일링 기능을 이용하지 않은 게시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함
- ⇨ 재판실무에의 활용을 위한 기여도 높지 않고, 사법부 전체의 전문성 향상에도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 5 학계, 재야 및 언론 등 상대 연구성과 활용을 통한 법원 신뢰 강화 기능 미미

- 법원행정처가 외부 활동 강조해온 결과 대부분의 연구회에서 외부 학회와의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2014년 미 실시 연구회 : 환경법, 도산법, 기업법 (단 기업법은 외부 연사가 절반을 자치하는 심포지엄 개최)
-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음
- ①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나아가 사법부의 전문성을 외부에 각인시키는 효과 미흡함
- ② 권위있는 외부 학회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및 소통을 통해 법원의 우호세력을 확보하는 성과는 미미한 수준임
- ③ 사법부 연구회의 출판물(정기, 비정기)이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물론 출판 예산의 제약 문제도 있음)



▣ ※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관련 문제점

● ① 허가받은 전문분야 이탈·무시

- 2015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정기세미나, 법관전문분야 연수 및 특강 개요

행사	주제	연사
1월 특강	경제민주화와 인권	정○○ 전 총리
3월 세미나	건강할 권리	김○○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5월 세미나	증세와 복지	새누리당 김○○ 의원
6월 법관연수	인권법과 법관	경향신문 이○○ 기자 등 (전○○ 대법관, 김○○ 헌법재판관)
7월 세미나	모욕죄의 남용과 한계	연구회 내 '표현의 자유' 소모임 소속 허○○, 류○○ 판사
8월 세미나	영화 빵과 장미	자유 토론
10월 특강	중동 내전과 난민 문제	경향신문 구○○ 기자
12월 학술대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한국노동법학회, 법원 노동법연구회와 공동개최

- '국제인권' 과 무관한 주제가 대부분 ⇨ 경제민주화와 인권, 증세와 복지 등은 국제인권은 물론 통상적인 인권법의 논의 영역도 이탈하는 수준임

- 정치적 함의를 포함한 주제를 자주 선정하다보니 연사로도 전·현직 정치인들이나 정치색이 있는 기자 등이 다수 참여하게 됨

● ② '인사모'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전반 및 최고법원 구성 등에 조직적 개입 시도

- 연구회 핵심세력이 2015. 7.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을 발족하여 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의 쟁점들을 인권을 핑계로 관여 시도

- 상고법원, 사법행정위원회, 판사회의 활성화,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하여 조직적 개입 시도

● ③ 일부 강경·핵심세력에 의한 연구회 및 사법부 전체 여론 호도

- [커뮤니티 내] 우리법연구회의 내부결속 강화 시스템을 모방하여 일부 핵심 세력을 중심으로 유대관계 형성

- [사법부 내] 회원 급증 및 젊은 법관들의 이목 집중 등을 통하여 법관 사회, 특히 소장 법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위상과 이미지를 얻고 있음



## 4. 구조 개편 및 대응방안

☑ 개선방안 요약 ⇨ <전문분야연구회의 전반적 문제점>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기요인>별로 그에 상응하는 개선책 마련

- ▶ [전반적 문제점1] 법관 사회의 관심 소진 ⇨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 젊은 법관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중견 법관이 주도
- ▶ [문제점2] 중복 가입금지 규정 형해화 ⇨ 중복가입자 일제 정리(규범력 회복)
  - 국제인권법이 가장 큰 타격 + 주제 무관 소모임 정리 등 행정처 개입 명분 제공
- ▶ [문제점3] 형식적 평가 및 예산 배정 ⇨ 예산 증액 및 실질적 평가 시스템 구축
- ▶ [문제점4] 커뮤니티 폐쇄성 ⇨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및 공유
  - 핵심세력 위축 및 인권법 회원들만의 이너써클 의식 희석 + 실무전문성 축적
- ▶ [문제점5] 외부 상대 성과 제시 미흡 ⇨ 외부 교류 및 우군 확보 적극 지원
  - 외부 교류를 예산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음
- ▶ [인권법 급증요인1] 주제의 보편타당성 ⇨ '국제'인권으로 한정 + 대안적 연구회 신설
  - 회장의 역할이 중요 + 인권 관련 수요를 대안적 연구회에서 흡수
- ▶ [인권법 급증요인2, 3] 핵심그룹의 적극적 확장 시도, 자유로운 문화 및 사조직적 특성  
⇨ 핵심세력과 다수 회원간 분리, 부장급 이상 대거 탈퇴로 시그널
  - 사실상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점 부각 + 다수 법관들의 경계심 활용
- ▶ [인권법 급증요인4] 지역별 등 친목모임 활성화 ⇨ 다른 연구회도 도입 및 활성화
  - 인권법연구회만의 특징 희석
- ▶ 기타 ⇨ 활동 저조 연구회 폐쇄 여부,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여부 등

### 가.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에 관한 구조 개편 등 개선방안

#### ■ ①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 ● 필요성

- 인권의 보편성을 내세운 특정 연구회가 법관 사회의 이슈를 독점하는 현상 방지
- 시의성 있고 법관들이 관심있어 하는 주제에 대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법관들의 자기개발 욕구 해소는 물론 선후배 법관들의 바람직한 소통 창구 개설, 합리적 여론 형성의 장 마련



☑ 이슈별 법관여론 주도 온라인공간 분석

- ▶ ① 사법정책관련 이슈 ⇨ 국제인권법커뮤니티 중 인사모 소모임
  - ▶ ② 법관인사 및 법원문화(부장과의 관계 등) 관련 이슈 ⇨ 다음 익명카페 이사야
  - ▶ ③ 양성평등 관련 이슈 ⇨ 젠더법커뮤니티
  - ▶ ④ 모성보호 및 생활정보 관련 이슈 ⇨ 네이버 여성 법관 카페 유스티티아
- ⇨ 일부 특정 집단이 논의를 주도하는 '인사모'와 '이사야'의 영향력이 비대해지기 전에 법관들의 합리적 여론 분출의 장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커뮤니티 신설 필요

● 발굴의 기본방향

- 젊은 법관들의 관심 및 수요에 부합함과 동시에 다수 법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발굴 ⇨ 젊은 법관들의 전문분야 업무능력 및 의욕 고취, 업무 외적 관심의 다변화
- 전문분야의 '주제' 못지 않게 이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상징성 있는 선배법관 필요 ⇨ 젊은 법관들에게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법관들을 각 연구회에 분산 배치, 합리적 여론 형성의 구심점 역할 기대

● [새로운 연구회 후보 1] 사법국제화 연구회

- 각국 및 국제재판소의 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추후 연구회 인적 구성 및 활동상황 검토하여 '각국의 사법행정' 도 연구대상으로 확대
- 각종 사법현안에 대한 해외자료 수집, 번역 및 조사, 국내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번역, 해외 소개 및 홍보 ⇨ 현행 국제규범연구반을 확대개편하는 형태
- [참가 유인] 현재 국제규범연구반의 경우 장기해외연수를 준비하거나 외국어 실력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젊은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사법국제화연구회의 경우에도 설립 초기부터 행정처가 적극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젊은 법관 상당수의 관심을 끌 수 있음
- [+]
  - ① 외국어 및 해외사법에 관심 많은 젊은 법관들 상당수 참여 가능,
  - ② 국제인권법 회원 중 '국제' 관련 분야에 관심 있어 가입하였던 법관을 유인할 수 있음,
  - ③ 포괄적인 이슈를 연구 주제로 망라 가능,
  - ④ (인적 구성과 성향이 행정처에 우호적인 경우) 각종 사법행정현안에 대하여 관련 자료 수집 및 방어논리 개발, 지지여론 확산의 출발점 역할 기대 가능



- [-] ① 국제규범연구반 및 외국사법제도연구반과의 통폐합 내지 차별화 문제, ② 사법행정 현안이 주된 연구대상이 되는 경우 연구 자율성 관련 오해의 소지(‘관계 연구회’ 등)가 있음, ③ 인권법 핵심세력 등 외부 세력이 적극 참여·관여할 가능성 있음
- 운영진 후보군

이름	사진	소속	경력
이 ○ ○		○○고등법원 고법판사	-해외사법관련 전문성 有, 행정처와의 의견조율 가능하고, 젊은 법관들과의 소통, 교류능력 있음
원 ○ ○		○○지방법원 부장판사	-해외사법관련 전문성 有, 행정처와의 의견조율 가능하고, 젊은 법관들과 소통, 교류 가능함

● [새로운 연구회 후보 2] 가칭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law’ 연구회

- [주된 분야] ‘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속 사법부 및 법관의 모습’ 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및 파생되는 법적 문제, 나아가 미디어가 법관 및 재판의 현실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관련 콘텐츠의 개발방안을 각 연구
- [+] 젊은 법관들의 관심을 쉽게 유도할 수 있음(엔터테인먼트법 분야는 젊은 법관들이 관심을 갖는 전문분야 중 연구회 미개설된 몇 안 되는 분야 + 예산 지원을 통한 공연 관람, 예술인과의 간담회 등도 높은 호응 예상)
- [+] 미디어 속 왜곡된 법관과 사법의 모습을 바로잡는다는 필요성과 명분이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법정드라마 대본 집필 등에 관심 있는 법관들의 수가 상당함 ⇨ 자발적으로 적극적 활동 유도 가능
- [+] 주요 영화사·방송사·연예기획사 방문행사 등을 통해 법관 사회 화제의 중심에 서는 등으로 단기간에 현행 연구회 판도에 가시적 변화 유도 가능
- [+] 장기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법원에 대한 정확하고 우호적인 정보와 인식이 제공되기 위해서는(ex: 영화 ‘12 angry men’) 위와 같은 모임 필요함



- [-] 명분을 세련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풍 81’, ‘3S 정책’ 등과 같은 愚民化 정책으로 비판받으면서 행정처가 설립의 배후로 의심받을 위험 있음
- [-] 콘텐츠의 지속적·전문적 창출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흥미 위주의 단기 이벤트로 받아들여질 우려 있음
- ※ 전문분야 연구회로 설립하는 것이 부담될 경우 코트넷 커뮤니티로 개설할 수 있음(국제규범연구회, 부모교육공동연구회 커뮤니티 등이 그러함)
- 운영진 후보군

이름	사진	소속	경력
문 ○ ○		○○지법 부장판사	-젊은 법관들 사이에 인기 및 신뢰도 높음 -2011년 친한 후배법관들을 데리고 SM을 방문하고 법정드라마 시나리오 고민하는 등 관련 분야 관심 ↑ - 어느 정도는 행정처와의 합리적 가교 역할 가능
전 ○ ○		○○고등법원 고법판사	-행정처와의 의견조율 가능하고, 젊은 법관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가 받음
오 ○ ○		○○고등법원 고법판사	-행정처 배후 지원 등의 오해 소지 없이 커뮤니티 운영가능

## ■ ② 중복가입자 정리

### ● 필요성

- ① 편법에 의한 연구회 중복가입이 난무하는 실정 ⇨ 원칙을 준수해 1개의 연구회에만 가입한 법관이 예산지원, 전문자료 접근, 전문성 있는 법관들과의 네트워크 기회 등 여러 측면에서 손해를 입게 되는 매우 부당한 결과 발생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 ② 편법적 중복가입의 혜택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가장 크게 누리고 있음 ⇨ 연구회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개선작업(중복가입자 정리)을 명분으로 실질적으로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장점**

▶ ① [법관들 상대로 명분 있음]

- 법관들의 학술조직인 전문분야연구회의 활동 및 구성에 대하여 행정처가 관여할 경우 법관들의 자율성 침해, 학문의 자유 억압 등의 논란을 피할 수 없음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경우 ① 중복가입금지규정의 규범력 회복, ②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③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법관들의 피해 방지 등의 명분 있음 ⇨ 규범 준수 및 편법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을 중시하는 법관들의 성향상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음

▶ ② [행정처·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임]

- 수백명 가입법관의 연구회 활동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방안(활동계획 사전 승인, 사후 평가 강화, 특정 연구회에 대한 제재 등)의 경우 그 성격상 행정처장 또는 차장의 공지 내지 사전 안내가 필요할 수 있음

- 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연구회 성과 평가 위원회(위원장 기조실장)'의 '심의 강화'를 개선수단으로 삼는 경우에도 유사한 논란의 소지 있음

- 중복가입금지 해소방안의 경우 커뮤니티 관리책임자인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공지 및 시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나 저항 없음 ⇨ 그 시행방안에 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나 특정 연구회에 대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다른 방안에 비하여 낮음

▶ ③ ['인사모 해소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임]

- '인사모'는 조속히 해소 내지 와해시킬 필요성이 큼

- 그러나, 행정처가 '모든 연구회는 전문분야와 무관한 소모임 활동을 정리하라'는 식으로 정공법을 택할 경우 인사모를 표적으로 한 조치임이 쉽게 드러나고 강한 반발을 초래할 우려 있음

- 중복회원 해소방안은 다소 기술적인 커뮤니티 정비방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전정국장이 현행 규정에 위배되는 중복회원 해소방안을 공지하면서 그 밖의 커뮤니티 관련 규정 역시 소개하고 이에 위반하는 활동을 자제하여 달라고 안내한다면 법관 사회 반발이나 인사모측의 반발 명분을 최소화할 수 있음

▶ ④ 별다른 사전 준비 작업 없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즉시 시행할 수 있음

-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를 위하여 어느 정도 유예기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공지와 동시에 직권으로 정리할 것인지 여부 정도만 결정하면 됨

● 시행에 따른 국제인권법연구회 위축 효과

- 한명의 법관이 가입한 여러 연구회 중 가입일자가 가장 빠른 연구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중복가입으로 탈퇴처리할 경우 연구회 회원 수 변동 내역



	현재 가입회원 수		중복가입 탈퇴처리 후 회원 수
국제거래법	221		165
국제인권법	431		204
기업법	214		158
노동법	295		196
도산법	449		283
민사집행법	875	→	780
언론법	140		92
의료법	291		203
조세법	257		209
지적재산권법	374		209
환경법	245		182

※ 청색표시는 가입회원이 90명 이상 감소하는 연구회

● 부작용 검토

- 중복가입 연구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법관들이 다른 연구회에서 탈퇴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선택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중복가입자 정리가 오히려 소장 법관들의 인권법으로의 편중 현상 촉발할 가능성
- 중복가입 정리 외에 아래에서 검토할 ‘부장급 이상 대거 탈퇴 방안’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의 연구범위 명확화 및 인사모 해소 시도 방안’ 등과 함께 시행될 경우 법관들에게 인권법연구회가 논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줄 것이므로, 다수의 법관들이 인권법을 선택할 가능성 희박함

■ ③ 예산 증액 및 실질적 평가 시스템 구축

- [필요성] 전문분야연구회 지원예산이 장기간 1억원으로 동결 ⇨ 15개에 달하는 연구회에 대하여 나눠먹기식 분배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평가작업이 어려움
- 실질적으로도 외부 학술기관과의 공동세미나 등과 같은 외부활동은 현재의 예산 지원 수준으로는 시행하기 곤란하므로, 외부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 증액이 필요함



**☑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 개최**

- ▶ 2016. 6. 9. ~ 11. 사법연수원 소강당(250석 규모)에서 '국제 난민컨퍼런스' 개최
- ▶ 사법연수원과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 개최
  - 사법연수원의 국제교류 예산 및 국제실의 예산을 지원받아 대규모 국제행사
- ▶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인 ○○○○ 전 호주 연방대법관을 비롯한 30여명의 외국 전문가 참석 예정
- ▶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회원 급증 가능성
  - 대규모 국제행사(언론 주목 가능성도 큼)를 통해 소장 법관들에게 인권법연구회의 장점과 위상을 각인시킬 가능성 매우 높음
  - 참석 법관들에게 사법연수원 숙소 제공(법관연수동 숙소가 금요일에 비는 것 활용)하는 것 역시 일종의 특혜이자 법관들에게 인권법연구회가 법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줄 우려 있음
  - 한정된 예산을 인권법연구회가 독점하게 됨 ⇨ '난민'은 '국제인권'의 전형적인 안전이므로 연구회의 연구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지원 제한하기도 어려움

- 예산 증액으로 법원행정처의 예산분배 재량범위가 커질수록 연구실적에 따른 실질적 차등지원이 가능해짐 ⇨ 연구회 활동에 대하여 기계적·형식적 평가가 아닌 실질적 평가여건 조성

● 예산증액을 위한 예산당국 설득 방안

- 예산이 동결된 기간 동안의 연구회 수 및 가입회원 수 급증, 누적된 연구성과 등을 내세워 예산당국 설득
- 법무부의 전문분야 연구 지원 관련 예산 등 타부처 예산 상황도 확인하여 증액의 논거로 삼을 필요 있음

● 사안에 따라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활동 지원비(약 6억 원)를 활용할 필요 있음

- 기존의 헌법연구회가 법관 사회의 인권 관련 연구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대규모 행사 개최하는 경우 예산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있음

● 실질적 평가 기준 강화

- 현행 평가기준표(아래 '외부 활동 강화' 항목 참조)의 평가항목과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필요 있음



#### ▣ 4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 ● 필요성

- 커뮤니티 게시글이 대부분 회원 전용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법부 전체 차원의 전문역량 축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학술연구단체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공개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 커뮤니티 등의 경우 일부 회원의 사조직적 운영행태와 게시글 비공개가 맞물려 회원들에게 ‘자신들만의 동질감’ 내지 ‘일반 법관들은 알지 못하는 이너써클에서 활동한다는 은밀한 만족감’ 등을 유발하고 있음

##### ● 시행방안

- 커뮤니티 총괄관리자인 전정국장이 언제든지 공지를 통해 시행할 수 있음
- ① ‘법관들이 자신이 가입한 커뮤니티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의 연구성과에도 손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법관님들의 전문성 강화와 자율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거나
- ② ‘사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이상 그 연구성과를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함으로써 사법부 전체의 전문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는 정도의 명분을 제시할 수 있음
- ③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반드시 지식광장에 게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압박’ 이라는 일각의 의심을 희석시키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이 부분은 전정국장이 아니라 각 법원 수석부장 등이 담당)

##### ● [기대효과]

- ① 학술성과 공유로 사법부 전문역량 강화,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 코트넷 지식공유 활동 활성화
- ② 다른 커뮤니티에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중복가입금지 규정의 엄정한 시행에 따른 불만 내지 부작용 완화
- ③ 인권법커뮤니티 및 노동법커뮤니티 등 인적 유대관계 강화의 수단으로 커뮤니티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연구회의 경우 게시글 내용 공개를 통해



자신들이 ‘은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 내지 결속감’ 을 약화시켜 활동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킬 수 있음

- ④ 특히 인사모의 경우 내부논의가 사법부 전체에 전면 공개됨으로써 인사모 내부의 논의가 코트넷 자유게시판 또는 제도개선법관토론방에서의 논의와 차별화되지 않게 됨 ⇨ ‘인사모의 자유게시판화’ 를 통해 과감하고 도발적인 논의는 위축될 가능성 있음
- ⑤ 커뮤니티 내부 논의 내용 공개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용이해짐 (심의관 등이 의심을 감수하며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할 필요 없음)

#### ● 부작용 검토

- 게시글 공개시 인사모 등의 편향적 논의는 또 다른 폐쇄공간을 찾아 네이버 밴드 또는 다음 카페 등으로 도피할 가능성 큼
- 2015. 5. 우리법연구회의 상고법원 관련 세미나 사례에서 보듯 법원의 공식 연구회 내지 코트넷 커뮤니티 공간에서 논의되는 것보다는 ① 훨씬 언론의 주목을 피할 수 있고, ② 공개되어 문제되는 경우에도 ‘특정 성향 일부 법관의 의견’ 에 불과하다는 방어 논리 활용 가능함

#### ● 폐쇄 커뮤니티와의 관계

- 폐쇄 커뮤니티 근거 규정 자체를 없앨 필요는 없음
- 인사모의 경우 폐쇄 커뮤니티로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 커뮤니티 내부에서 비판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 연구회장이 ‘인권을 위한 사법제도를 논의한다면서 일반회원의 접근을 막는 폐쇄적 밀실 논의의 부당함’ 을 지적함으로써 다른 일반 회원들의 지지를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5 연구회 외부 활동 강화

#### ● 필요성

- 15년간 축적된 연구성과 및 역량을 대외 관계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 있음
- 반면 일부 연구회가 매너리즘에 빠져 새로운 주제발굴 및 연구활동이 침체된 상황에서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자극을 받을 필요도 있음
- 사법부 위상 강화 및 영향력 확대, 사법부 우군 확보와도 연결되는 과제임



● [시행방안 ①] '대형 이벤트' 발굴 및 지원

☑ 필요성

- ▶ 현재와 같이 고만고만한 수준의 연구활동 및 외부 공동세미나 정도로는 전문 역량 과시를 통한 사법부 위상 강화의 전기를 마련하기 어려움
- ▶ 해당 전문분야에서 법원 전문분야연구회의 역량이 확실히 부각될 수 있는 대형 이벤트나 대형 출판사업을 기획·실시할 필요 있음

☑ 시행방안

▶ 대형 이벤트

- 특별세미나 외에도 모의재판, 국제회의(ex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국제난민컨퍼런스), 경연대회 등 형식의 제약 없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할 필요 있음

▶ 대형 출판사업

- 해당 분야에서 바이블로 남을 수 있는 최고수준의 서적, 실무와 학계의 논의를 집대성한 서적, 최첨단 분야에 대한 선도적 문헌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특별 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연구회 예산(1억 원)이 아닌 각급 법원 전문분야 지원예산 기타 다른 항목에서의 충실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행정처장이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별 사업별로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 있음(2012년 기조실 검토서의 '상시지원' 방안 유사 제도 도입, 단 수많은 신청이 제출될 것에 대비하여 요건, 시기 및 가용예산범위 등에 관하여 별도 상세 검토 필요)

▶ 대법원 국제 법률 심포지엄 활용 방안

- 매년 국제 심포지엄 예산(약 1억 7천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므로, 전년도 또는 최근 활동이 가장 우수한 연구회 또는 가장 탁월한 심포지엄 계획서를 제출한 연구회에게 해당 연도의 국제 심포지엄 준비를 맡기는 방안도 가능(행정처가 행사 실무지원을 하고, 대법원 주최 심포지엄으로서의 골격은 유지함)

● [시행방안 ②] 매년 정기 평가시 외부 활동 관련 항목 대폭 강화

- 현재 평가기준상 외부 활동에 대하여는 특별한 배점이 없음
- 커뮤니티의 내부 게시글 및 참여도에 대한 기본 배점이 65점에 달함
- 외부 단체와의 공동세미나 등의 외부행사를 공식 평가항목의 가점사항으로 명시하는 등의 개선 필요



현행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기준	배점(100)	
게시물 평가	토론회 및 자료실에 게시된 글과 논문 등에 대한 평가		
	세부기준	게시물 주제의 연구 필요성	7
		게시물 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	7
		게시물의 완성도	8
		실무와의 관련성, 실무에 대한 기여도	8
회원 참여도	게시물 및 게시자의 수, 조회수 등을 고려한 참여도 평가		
	세부기준	게시물의 수 (절대 숫자)	10
		글을 게시한 회원 수 / 전체 회원 수	10
		게시물에 대한 조회수	10
세미나	세미나 개최여부 및 그 내용, 성과 등에 대한 평가		
	세부기준	오프라인 세미나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	8
		세미나 구성의 적절성	5
		세미나 성과물의 수준	7
기타 (사이트운영, 예산 등)	자료집 등 연구성과물 산출 여부,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 연구회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 등 기타사항 평가		
	세부기준	코트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메뉴 구성,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의 적절성	5
		자료집 등 연구성과물의 발행 여부 및 수준	5
		내년 연구회 운영계획의 적정성	5
		전년 예산 집행의 적정성	5

● [시행방안 ③] 사법부 우호 인사 확보를 위한 방안

- 매년 각 연구회별로 연구회와 관계가 돈독하거나 연구회 활동에 특별히 기여한 학자 내지 저명인사를 1명씩 추천받아 법원행정처장 주최 만찬에 초청하고 공로패를 수여하는 방안 등(원로급 석학들로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만찬도 고려 가능)
- 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사법부와 유대관계 강화 효과

● 단, 외부 영향력 확대 방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심층 추가 분석·검토 필요

나. 특정 연구회 과잉 확장 관련 대응방안

▣ ① 연구회 논의 주제를 허가받은 전문분야의 범위로 제한

● 필요성

- 전문분야를 국제인권법으로 특정하여 허가받았음에도 국제적 이슈와 무관한 일반 인권론, 나아가 인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관한 활동에 집중하는 실태를 타파할 필요

- 심지어 인사모와 같이 전문분야 연구와 무관한 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음

● **유의사항**

- 이 쟁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학문의 자유 억압’, ‘사법행정예 동조하지 않는 판사들 압박’ 등과 같은 자극적인 프레임에 의한 반격 예상됨
- 최대한 유화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큼

● **[해결방안 ①] 연구회 회장의 리더십 발휘**

- 특히 인사모에 대하여는 전문분야 연구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문제제기 충분히 가능함

**☑ 반드시 현행 회장 체제에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차기 회장은 특정 성향의 핵심세력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 높음

- 최근 인권법연구회와 노동법연구회의 급성장 및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의장직 장악 시도 성공 등으로 인한 자신감, 인사모를 중심으로 한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공식 문제제기 등의 공개 행보 강화 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노동법연구회도 2015년에만 95명의 회원 급증(국제인권법과 준회원이 다수인 민사집행법을 제외하면 가장 큰 증가) ⇨ 공식적으로는 ‘전담재판부 법관의 가입을 독려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나, 핵심세력의 적극적 확장 노력으로 인한 것일 수 있음

- 대법관 임명제청시 ‘법원 인권법연구회장 명의 반대 성명 또는 재고 요청’ 등은 언론 입장에서 휘발성과 폭발력이 매우 강한 소재가 됨 (2017년 이○○ 대법관님 후임 임명시에는 진보적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는 나름의 명분도 있을 것임)

▶ 현 회장은 사법행정라인에 있으면서도 연구회원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음

▶ 현 회장 체제하에서 인사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차기 회장 체제하에서는 내부적 논의를 통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 ‘행정처의 전면 개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고려해야 하는 극히 부담되는 상황 발생 우려

∴ 그 이전에 문제를 해결할 필요 있음

- 부드러운 리더십 스타일의 현 회장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개설의 초심을 강조하면서 정서적으로 설득·호소할 경우 다수의 법관이 수긍·동조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임





● [해결방안 ②] 대안적 연구회 신설 또는 대안적 활동 지원

- ‘국제인권’ 이슈가 아닌 일반 인권적 이슈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회도 얼마든지 학술연구 활동 가능
- 현재 국제인권법 소속 법관들 상당수는 ‘국제인권’ 이 아닌 보편적 인권 이슈의 관심으로 가입함 ⇨ 보편적 인권 이슈에 대한 다른 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은 국제인권법으로의 독점적 유입을 방지하고, 인권 관련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음
- 대안적 연구회 신설은 다소 어려움 예상됨 ⇨ 추가 검토 필요
- 기존 연구회 중 헌법연구회(또는 형사법, 젠더법)를 중심으로 보편적 인권에 관하여 법관 사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활동 발굴하여 지원 필요 ⇨ 특별 예산 지원 가능한 대형 이벤트 발굴할 필요 있음

☑ 젠더법연구회에 대한 시각 전환 필요성

- ▶ 그간 젠더법연구회의 확장 및 발언력 강화에 대하여 조심스러워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어 왔고, 젠더법연구회에 일부 強性的 법관이 있는 것도 사실임
- ▶ 그러나 근본적으로 젠더법연구회의 위상 강화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여성 법관들의 지위 강화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불가역적인 시대의 흐름일 뿐만 아니라,
- ▶ 무엇보다, 인권법연구회의 핵심그룹 등과 같이 사법행정라인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근본적인 불신과 반감을 전제로 하는 단체의 활성화가 훨씬 더 위험하고, 젠더법연구회는 여성인권 문제와 가부장적인 잔재가 남아 있는 조직문화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뿐 사법행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을 보이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
- ▶ 물론 젠더법연구회의 경우 행정처와 의견조율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인권 분야의 대안적 연구회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젠더법연구회를 주요 후보로 고려함이 타당하고, 그 활동지원에 제약을 둘 필요는 없음

■ 2 핵심세력과 다수 법관간 분리 방안

● 필요성

- 핵심그룹의 활발한 활동과 그들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 등으로 인하여 소수의 핵심그룹이 연구회 전체의 입장, 나아가 사법부 내의 ‘사법행정에 대한 문제제기’ 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 ⇨ 개선 필요



● 시행방안

- 인위적인 개입은 성공확률도 낮고, 강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간접적 여건 조성의 관점에서 접근 ⇨ 무리하지 않은 수준의 문제제기 내지 논란을 통해 다수 회원의 경각심 내지 우려 일으킴
- ① 인사모가 연구회의 설립 취지 및 관련 규정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회장의 문제제기
- ② 회원 가운데 법원의 ‘주류 중 주류’ 로 인식될 수 있는 경력의 선배법관들 다수임 ⇨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명분을 갖추어 탈퇴하도록 유도

☑ 선배 법관들의 탈퇴를 통하여 인권법연구회가 논란의 대상이라는 인식 확산

- ▶ 젊은 법관들 입장에서 탁월한 실력과 경력을 갖춘 선배법관이 다수 있어 인권법연구회의 높은 위상과 소속감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음 ⇨ 고법부장 중에서만 성○○, 이○○, 김○○, 유○○, 이○○, 이○○ 부장 등
- ▶ 명분 없이 일거에 탈퇴할 경우 행정처가 배후에 있다는 공격을 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적절한 명분을 갖추어 탈퇴하되, 대거 탈퇴할 필요가 있음 ⇨ 인사모에 대한 회장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인사모측이 존치주장을 고집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명분이 될 것임
- ▶ 종전 우리법연구회 등의 사례에서 보듯 연구회 활동에 관하여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의 확산만으로도 상당수 법관이 자연스럽게 탈퇴할 가능성이 있음

- ③ 인권법연구회가 그 시스템 및 인적 구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사정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부각될 경우 회원들의 상당한 동요 있을 것임 ⇨ 구체적 방법론은 추가 검토 필요

■ ③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장점을 다른 연구회에 도입

- 지역별 친목 소모임, 팀장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번개 모임 활성화 등은 우리법연구회의 시스템을 상당수 모방한 것으로서 회원간 유대강화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젊은 법관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음
- ⇨ 도입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다른 연구회와 커뮤니티에서도 적극 도입·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인권법연구회만의 장점 희석 + 다른 연구회 활성화



#### ▣ 4 관심 및 활동 저조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방안 검토

- 관련 규정 ⇨ ① 연구회는 폐쇄 규정 없고, 설립허가 취소 가능, ②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장국장 또는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폐쇄 가능

#####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2조(연구회의 설립허가)

③ 제2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설립목적과 예산사정 등을 참작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 ⇨ 반대해석상 설립허가 취소 가능

##### ☑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0조(커뮤니티의 폐쇄)

③ 전산정보관리국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운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직권으로 커뮤니티를 폐쇄할 수 있다.

④ 전산정보관리국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당해 커뮤니티 회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게시물의 이전 또는 삭제, 커뮤니티의 폐쇄, 커뮤니티 운영자 변경, 코트넷 이용권한 제한을 비롯한 코트넷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이 지침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산정보관리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커뮤니티 폐쇄, 운영자 변경 또는 커뮤니티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되더라도 바로 해당 커뮤니티가 폐쇄된다고 보기 어려움

- 시행 타당성 검토 ⇨ 명분 약하고,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소극

- ① 설립목적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가능 ⇨ 법관 사회의 강력한 반발 예상 + 취소권자인 행정처장님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부담있으므로 극히 신중할 필요(예산 제한 등을 통한 간접적 압박 검토)

- ② 1년 이상 활동하지 않는 커뮤니티 ⇨ 직권 폐쇄 가능하나, 사전 의견진술 과정에서 향후 적극 활동 재개 의사를 밝힐 경우 신중할 필요



- ③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는 커뮤니티 등 ⇨ **코트넷 운영위원회**에서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 조치 가능하나,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할 필요 (행정처의 불통·권위적·관료적 이미지 악화, 이를 경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신중 검토 필요)

#### ■ [5]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방안 검토

- 연구회 및 커뮤니티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활동계획을 보고하게 한 뒤 승인 또는 수정요구 등 회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있음
- 검토 의견 ⇨ 소극
  - 법관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에 대한 계획 승인 또는 수정요구 등은 그 자체로 조심스럽고,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 및 탄압 논란을 피할 수 없음
  - 법원행정처가 그로 인한 논란을 정면으로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 부담이 크고, 수정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언론 보도 가능성도 농후함
  - 행정처(결국 대법원장님, 처장님) vs 인권법연구회 또는 진보 법관세력의 대결구도가 설정될 위험성이 매우 높음

#### ■ [참고] 검토의견을 종합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및 로드맵 예시

- 인사모에 대하여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하지만, 연구회의 시스템 전반 대응방안을 제외한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함
- [선결문제] 시기적·정무적 검토 ⇨ 사법행정위원회 진행 중 연구회 관련 조치 착수 여부
  - 현재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4. 11. 안건 제출기간 4. 20. 선정안건 발표 4. 25. 위원들 검토기간이 5. 6.까지로 각 예정되어 있음 ⇨ 위원회 정식 회기는 5. 9.부터 13일까지 1주간
  -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 강화' 로 민주적 정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축제기간에 연구회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사



**법행정위원회의 출범의의를 반감시킬 우려도 있음**

- ①새로운 연구회 발굴 및 개설에도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사법행정위원회 종료 후 실시 방안 vs. ②인사모의 활동이 점점 강화되고 사법행정위원회 활동과정에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종료 전 조기 실시 방안
- 이하에서는 우선 조기 실시 방안을 전제로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함

시기	방안 예시
4월 초	<p><b>전정국장 명의 공지</b></p> <p>'① 커뮤니티 활동 중 특별히 중요하고 가치있는 활동에 대하여 특별예산 지원 방안 도입 (본래 기조실장 명의 공지사항이나 한 번에 공지함이 효율적일 수 있음)</p> <p>②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 예정 (일반법관들 피해 명분)</p> <p>③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로 전환 (사법부 전체 역량 강화 등)</p> <p>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규정 설명하면서 연구회 목적과 무관한 소모임 해소 당부'</p>
4월 중순	<p><b>국제인권법 회장의 문제제기</b></p> <p>'인사모의 경우 연구회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데, 이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구함'</p>
4월 하순	<p>①새로운 대안적 연구회(ex. 엔터테인먼트법 연구회 및 사법국제화연구회) 발굴·신설 ⇨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한 이벤트 등 공지 및 활동 개시</p> <p>②다른 기존 연구회 활동 활성화 (밴드 및 지역별 모임 등)</p>
5월 초순	<p>인사모 소모임이 존치 입장을 고수할 경우⇨ 고법부장 등 명망 있는 선배 법관들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대거 탈퇴</p>
5월 이후	<p>국제인권법연구회 다수 회원의 의견을 모아 인사모의 자연스러운 소멸 유도</p>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2016. 03. 10.

인사총괄심의관실

## I. 연구회 개요

■ 2011. 8. 31. 창립

○ 초대 회장 김○○ ○○지방법원장(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 지난 민○○ 대법관 후임 제청 과정에서 김○○ 부장이 대법관 후보로 천거

※ 김○○ 부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원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신○○ 대법관 사태 때 전국 법관 최초로 사퇴를 주장하는 글을 코트넷에 게시하였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요 멤버임 ⇨ 개인 명의로 천거하였으나, 실질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그룹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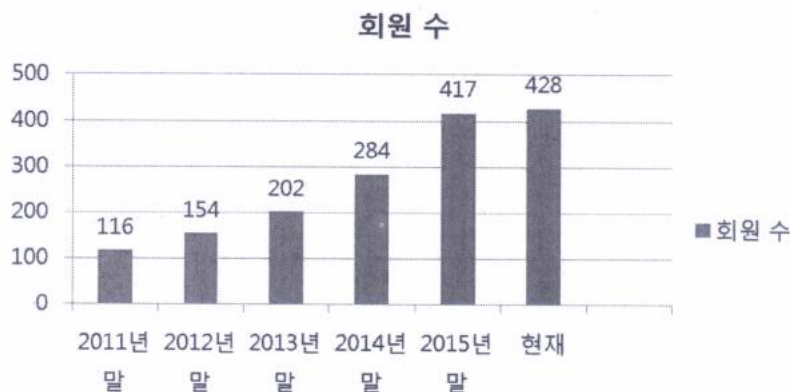
○ 현 회장은 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2011. 10. 21. 회칙 제정 (주요 내용은 첨부1 참조)

■ 2016. 3. 8. 현재 회원 수 428명

○ 법원장 1명, 고법부장 11명, 지법부장 115명, 평판사 301명

○ 연도별 회원 수 증가 추이 ⇨ 13년 말 대비 2년 만에 2배 이상 급성장



- 회원수가 15개 전문분야연구회 중 2012년 14위에서 2015년 5위(중복가입 가능한 연구회 제외하면 3위)로 급상승

○ 연도별 가입인원

기간	가입인원	20기 이상	21~25기	26~30기	31~35기	36~40기	41기 이하
2011년 (창립)	115명	3	7	41	50	14	
2012년	38명	0	2	8	8	16	4
2013년	48명	0	3	7	17	20	1
2014년	82명	5	3	16	30	22	6
2015년	132명	1	12	15	27	60	17
2016년	11명	0	1	3	2	4	1

- 2014년부터 가입인원 급증 추세 ☞ 인맥을 활용한 다단계식 회원 유치 방식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5년에 36~40기의 젊은 판사들의 대거 가입 주목됨

○ 평판사 기수별 분포

	31기	32기	33기	34기	35기	36기	37기	38기	39기	40기	41기	42기	43기	계
회원 수	37	34	23	20	22	27	30	31	26	22	22	6	1	301
기수 현원	152	169	166	148	146	149	164	163	154	131	137	32	9	1,720
비율	24%	20%	13%	13%	15%	18%	18%	19%	16%	16%	16%	18%	11%	17%

- 평판사 현원 대비 17%로서 점유율 높은 편
- 31기의 경우 24%로서 4명 중 1명꼴
- 임관 후 만 2년 된 42기의 비율이 18%로 높은 점 눈에 띄

■ 핵심 그룹 (추정)

- 간부진,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창립멤버 등이 핵심 그룹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 (첨부2 참조) ☞ 주로 우리법연구회 회원 또는 운동권 경력 있는 법관들임

## II. 문제상황

### 1. 비정상적 운영 (전문분야 이탈 ⇨ 사법행정 개입)

- 국제인권법과 무관한 사법행정 논의들을 '인권법' 명목 하에 진행
  - 인사모의 상고법원, 합의부 운용 등 논의가 대표적 사례
  - 핵심 회원인 송○○ 판사가 2016. 2. 코트넷에 게시한 '판사회의 활성화' 관련 문건은 인사모 논의 결과물로 알려짐
- 외연 확대로 추동력 및 자신감 확보됨에 따라 이탈 가속화
  - 연구회가 사법부 내 대표적인 연구회로 자리 잡자 박○○ 판사의 제안으로 2015. 7. 핵심 회원들이 주축이 된 인사모 발족하여 인권법과 무관한 사법제도 논의 시작 ⇨ 사법행정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냄
    - 2015. 8. 상고법원 도입에 관하여 논의 후 투표 결과 다수가 회의적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경과보고 형식으로 연구회 게시판에 게시
    - 대법원이 사법행정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자 송○○ 판사가 2016. 2. 판사회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취지의 글을 코트넷에 게시 ⇨ 인사모 연구결과물로 추정
- 이○○ 대법관 후임 제청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가능성 높음
  - 인사모에서 2015. 10. 대법관 후보 추천절차에 대해 논의하려다 연기
  - 연구회 회원인 문○○ 부장, 박○○ 판사(인사모 총무) 등은 이전에도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코트넷에 공개적으로 글을 게시한 바 있음
  - 핵심 그룹에서 김○○ 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천거하거나 측면에서 지지할 가능성 농후함

### 2. 법관 사회 내 과도한 영향력 확대

- 주제의 시의성 + 탈권위 + 인맥 활용 포섭 ⇨ 젊은 법관들에게 어필
  - 창립된 지 불과 4년 만에 회원 수 400명이 넘는 대형 연구회로 성장
- 핵심 그룹에 한정된 사고가 법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



- 사법부 관료화 비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판사회의 활성화 등
- 인사모를 연구회 내 소모임으로 발족한 것은 치밀한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

### 3. 소수 주장의 지지기반 작시 효과

- 핵심 그룹 주장이 연구회 이름 또는 다수 법관 지지로 포장될 가능성
- 송○○ 판사의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게시물 및 댓글이 대표적 사례
  - 송○○ 판사의 게시물에 다수 법관이 지지 댓글 ⇨ 일부 언론 보도
  - 실상 댓글 다수는 이미 견해를 같이 한 핵심 회원들의 것으로 파악
    - 당시 인사모 핵심 회원 13명 중 11명이 댓글 게시 (송○○ 판사 포함 시 12명)
    - 댓글 28개 중 22개가 연구회 회원이 게시한 것

### 4. 위기상황 조래 위험성

- 돌출행동으로 보수언론의 '법원 때리기' 유발 우려
  - 2015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최○○ 부장(운영위원), 황○○ 판사는 모두 연구회 회원임
  - 대법원 판례를 정면에서 비판하며 긴급조치 배상판결을 내린 김○○ 부장은 연구회 핵심 회원이고, 마○○ 부장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음
  - 연구회 대외협력팀장인 이○○ 판사는 최근 연구회 게시판을 통해 2016. 3. 19. 개최 예정인 우리법연구회의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에 대해 안내 및 홍보함

### 5. 법원 내 사조직 형성 우려

- 끈끈한 유대관계를 기초로 서로 끌어주는 법원 내 사조직 형성 우려
- 폐쇄적 성격의 사적 모임 활성화로 비회원 법관들의 소외감 증대

### III. 접근방향

#### 1. 근본원인 : 핵심 회원의 연구회 주도

- 성향과 목표를 공유하는 핵심 회원들이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연구회를 창설한 것으로 추정
- 이들 핵심 회원들이 연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논의주제와 과정을 지배하며, 우리법연구회, 운동권 활동 경험 등을 접목하여 조직적으로 의견을 확대하고 다양한 경로(코트넷, 판사회의 등)로 목표달성 위해 노력

#### 2. 해결책 : 주도권 회수 ⇨ 인사모 폐지 + 연구회 정상화

##### 가. 인사모 : 폐지 vs 관리 vs 방치 ⇨ 폐지

- 인사모는 문제상황의 집약체이자 핵심
  - 인사모 결성(2015. 7.) 전까지 연구회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상황은 발생×
  - 최근의 일련의 돌출행동은 대부분 인사모 회원들이 주도 ⇨ 컨트롤타워 역할 의심됨
- 인사모 활동은 국제인권법 연구와 무관 ⇨ 근거 없고 부적절
  - 회장(이○○ 실장)도 인사모 면담 시 이를 지적 (2015. 9. 14.)
  - 비핵심 회원 및 법관 다수도, 인사모 주장의 당부와는 별개로, 인사모가 연구회의 분과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은 공감할 것
- 인사모를 커뮤니티 안에 둘 경우 득보다 실이 큼
  - 공식 커뮤니티 게시판의 게시만으로도 언론 보도 가능성 높고, 이 경우 '법원의 공식 커뮤니티에서 논의되었다'는 관점에서 보도될 가능성 있음
  - 인사모 폐지 후 커뮤니티 밖에서 동일 취지로 주장하더라도, 일부 법관들의 개별적 돌출행동으로 인식되어 행정처의 부담 적고 파급력도 낮을 것
  - 인사모의 문제제기가 연구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비

핵심 판사들 일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커뮤니티 안에 있다고 해서 활동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기대x
- 커뮤니티 안에 있는 경우 게시판을 통해 활동내역의 일부 확인 가능  
but 어차피 공개 범위는 재량에 달려 있어 실질적 의미는 크지 않을 것

## 나. 연구회 : 폐지 vs 관리 vs 방치 ⇨ 관리

- 인권법 분야에 대한 순수한 학술적 연구는 적정하고 필요
- 회원 다수는 인권법에 대한 관심 또는 선배 추천으로 가입하였을 뿐
- 연구회를 폐지할 마땅한 명분도 없음 ⇨ 무리한 폐지 시 오히려 동정여론 및 행정처에 대한 반감만 확산될 가능성
- 적정하게 관리하여 정상화시키는 것이 해결책으로 판단

# IV. 구체적 방안

## 1. 인사모 폐지 방안

- 이○○ 대법관 후임 제청절차 시작 전에 폐지 필요
- 인사모만의 선별적 폐지보다는 연구회 전반 및 분과 재편 차원에서 접근
  - 인사모만 폐지 시도 시 반발 우려 大 ⇨ 계기와 명분 필요

### 가. 명분

- [명분①] 행정처 차원에서 법원 커뮤니티의 전반적 개편 계획 공지
  - 전문성 강화 위해 연구회 세분화
  - 연구회별로 부적절(전문분야 이탈), 중복, 비활동 분과 등 재정비
  - 연구회별 개편 계획을 평가하여 예산의 차등 지급 등 실시
- [명분②] 다수 회원들의 의견 수렴 결과임을 표방
  - 인사모의 부적절성이 다수 회원들의 의사임을 표방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내

세우는 핵심 회원들 입장에서 거부할 명분 적을 것

- 사전에 회장 주도로 비핵심 다수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볼 필요 있음

■ [명분③] 언론의 공격 가능성 활용

-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인사모에 대해 취재 중(특히 우리법연구회와의 관련성)으로, 연구회와 법원 전체의 위기상황 초래 가능성 언급
- 보수언론에서 경향신문의 2016. 2. 22.자 '침묵 깬 판사들, 사법행정 참여 위원 우리가 뽑자' 기사의 취재원 판사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부각
  - 실제로도 위 기사는 인사모 회원이 기사 내용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됨
  - 경향신문 인터넷 2016. 3. 6.자 [기자메모]"사법행정 참여 법관 직접 선출 외면한 법원행정처" 기사 내용도 마찬가지로 추정됨

<참고 : 언론 활용 방안>

- 보수 성향 언론사에 아래 취지의 정보를 제공하여 인사모 비판기사를 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 우리법연구회 핵심 멤버들이 주축
  - 최근의 긴급조치, 병역법위반 등 일련의 튀는 판결 주도
- 일종의 '제살 도려내기'로서 가장 극단적인 방법임
- 명분의 제공 측면에서는 최선이나 법원 전체가 비난받을 우려 ⇨ 신중한 접근 필요

나. 폐지 방식

■ [1안] 자발적 해산

- 최선책 but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음
- 성공 여부는 명분의 설득력과 회장의 리더십에 달려 있음
- 사전에 비핵심 회원들 다수의 수렴된 의견이 확인된다면 적잖이 주효할 것
- 김○○ 법원장을 통한 자제 당부도 검토 가능 ⇨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의 잡음을 염두에 두고 전술적으로 자제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2안] 운영위원회 결의로 폐지

- 핵심 회원들이 운영위원회를 장악한 현 역학구도 하에서 기대 어려움

- 현 운영위원 임기 종료 후 **운영위원 다수를 확보**(아래 주요 의사결정 라인 확보 방안 참조)한 뒤 시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합당

↳ 다만 이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인사모 폐지가 지연되는 문제 있음

#### ■ [3안] 총회 결의로 폐지

- 인사모가 연구회 분과로서 어울리지 않음은 다수 법관의 공감 가능
- 다만 존치로 결의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감 대폭 증가
- 총회 결의 시에는 **비핵심 회원들의 적극 참가 유도 필요** (전자투표 활용 등)

#### ■ [4안] 행정처 폐지권고 및 회장 수용

- 일반적 관리권한의 발동으로 커뮤니티의 목적 외 활동에 대해 규제
- 다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함이 상당

#### ■ [검토] 1차로 자발적 해산 시도 + 2차로 운영위원회 장악 후 폐지

- 1차로 회장의 자발적 해산 권유
  - 사법행정은 인권법 연구와 무관함 지적 + 사법행정위원회 등을 통한 참여 권유
- 해산 불응 시 2차로, ① 회장은 인권법 연구와 무관한 활동의 자제를 당부하고, ② 이후 운영위원 교체 시점에 운영위원 다수를 확보한 뒤, ③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인사모를 폐지
- 어떤 경우든 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

## 2. 연구회 정상화 방안

### 가. 연구회 내 주요 의사결정 라인 확보

■ 회칙 상 주요 의사결정은 회장, 운영위원회, 총회에서 결정

■ 핵심은 의사소통 원활한 **고법부장이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임

- 핵심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되는 경우 연구회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 ↳ 직권 폐지 등 최후수단 불가피
- 정치력·지도력 있고 고집과 강단 있는 분일 것

- 부장심의관 이상의 행정처 경력은 없는 편이 좋을 것
  - 행정처의 연구회 접수 시도라는 반발 가능성 있음
  - 동시에 그와 반대로 연구회가 행정처의 지원을 받는다는 오정보 제공 우려도 있음
  - 참고로 만일 연구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법부장의 회장 선임이 제지된다면 연구회의 위상 하락 효과도 기대 가능(다만 핵심 회원 또는 그 동조 회원 중에 고법부장 이상 있는 것으로 보여 실제 가능 여부는 예측 어려움)

■ 운영위원 과반을 평균적 성향의 판사로 구성

- 운영위원은 회장이 간사·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명(회칙 5조 2항)
- 반발 적도록 평균적 성향으로 인정받는 판사들을 과반수 임명
- 동시에 운영위원 1~2명은 의사소통 가능한 법관 진입

■ 운영위원 과반 확보 전까지는 현 체제 용인 불가피

- 운영위원 과반 확보 전 재판 시도 시 후임 회장 선임 과정에서 곤란 발생

■ 그 외 의사소통 가능한 지법부장 및 평판사들의 가입 및 활동 지원

나. 부정적 성격 부여 ⇨ 비핵심 그룹의 이탈 유도

■ 비공식 경로로 '문제 있다'는 지적 계속 ⇨ 법관 사회 내 거리낌 확산

■ 가장 확실한 성격 규정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정의하는 것

- 기존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비판은, 사법부의 이념화, 정치화를 초래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소위 '튀는 판결'을 주도한다는 비판 ⇨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라는 사실 자체로 판결에 대한 신뢰 추락 가능
- 연구회가 대법관 제청 등 민감한 주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

■ 법원장, 수석부장, 일부 법관 등 통해서 일선 법관들에게 우려 전달

■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앞선 언론 활용 방안이나 신중한 접근 필요

다. 연구회의 주제 및 구조의 간소화

- '국제인권법'은 지나치게 광범위 ⇨ 구체적이고 협소한 아젠다로 대체
  - 주제가 좁을수록 활동영역 축소 ⇨ 난민, 인권조약 등으로 한정
  - 법원 커뮤니티 재편 과정에서 축소를 권고하고, 제외된 소주제 일부는 타연구회로 이관
- 연구회 구성이 지극히 조직적·전략적 ⇨ 회장, 간사, 운영위원으로 간소화
  - 현 구성은 운동권 조직을 연상케 하는 전략적, 전술적 구조로 보임
  - 회장 등 간부진 23명, 보조인력 33명, 합계 56명으로 대규모 집행부 운영
  - 회장, 운영위원, 간사, 총무(팀장), 분과위원회, 편집위원회, 지역위원회의 7개 단위로 구분되고, 총무(팀장)는 학술, 기획, 홍보, 정책, 대외협력으로, 분과는 법관론, 독서모임, 인산회, 난민, 표현자유, 소수자, 문화예술, 인사모로, 지역위원회는 광주전남, 대전, 부산, 서울중앙, 서울남부, 인천, 수원으로 세분화

## 라. 경쟁 연구회 활성화

- 탈권위적 운영, 소규모 분과를 통한 상시 모임 강화 등 인권법연구회의 장점 벤치마킹
- 인권법연구회의 주제 일부를 이관받는 한편, 참신한 주제들 발굴
- 고법부장 이상 법관들, 현직 행정처 실장, 부장심의관, 부장연구관, 기타 선발성 인사 경력 있는 법관들의 대거 배치 및 적극 활동 ⇨ 젊은 법관들의 관심 유도
- 커뮤니티 예산 지원 ⇨ 뒤풀이, 1박 2일 행사 등 활성화
- 인사모 폐지, 부정적 성격 규정과 함께 진행 시 효과 배가 기대

## 마. 법원 커뮤니티 재편

- 모든 전문분야연구회의 활동을 공개로 전환
  - 근거 : ① 비공개 이유 없음 ② 일선 법관들의 자료검색 등 접근 필요 ③ 연구회 활동이 활성화될수록 비회원인 법관들의 소외감 증대

- 연구회 활동이 공개되면 연구회 본연의 전문분야와 무관한 이슈를 연구회의 틀 안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기대
- 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예규 9조)가 아래 커뮤니티 활동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연구회들의 목적 외 활동 유무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 ■ 커뮤니티 활동의 관리 강화

- 연구회 운영성과의 평가항목으로 '활동의 목적 적합성' 항목을 추가
  - 인사모와 같이 연구회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은 감점사유가 될 것
- 매년 운영성과 평가를 엄격히 하고 그에 따라 예산 차등 집행
  - 인권법연구회의 2015년 예산배정 순위는 15개 연구회들 중 4위로 높은 수준
  - 인사모 등 존치 시 예산배정 대폭 감소할 것 ⇨ 세미나, 뒤풀이, 학술대회 등 제약

#### ■ 중복가입 금지원칙 적용 강화

- 전문분야연구회를 재판실무연구회와 비재판연구회로 구분
  - 비재판연구회는 중복가입을 원천 금지하고, 재판실무연구회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무분담 담당시기에만 중복가입을 허용하되 사무분담 변경되면 즉시 탈퇴 처리
- 경쟁 연구회 육성, 부정적 성격 규정이 선이행된 이후에 중복가입 금지를 강화하여 인권법연구회 탈퇴를 유도
  - 성급한 중복가입 금지 강화는 인권법연구회로의 집중도만 높일 수 있음
- 현 전산 시스템 상으로는 중복가입이 금지되는 연구회의 경우도 시습만 승인하면 중복가입 가능 ⇨ 전산적인 개선 필요

#### ■ 연구회별 회원수 제한은 도입 유보

- 전문분야연구회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법관별로 연찬을 희망하는 분야의 연구회에 가입하는 것임 ⇨ 회원수 제한으로 가입 불가능은 공감 얻기 어려움

### 바. 핵심 회원에 불이익 부과

- 인사모 등 핵심 회원에게 선발성 인사, 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 부과 ⇨ 법관 사회 내 거리낌 증가



- ▣ 다만 간접적 방법이고 우수자원 활용에 제약 초래 ⇨ 개별적이고 신중한 접근 필요

## 첨부1. 예규 및 회칙 규정 일부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 제3조 (회원)

- ② 법관은 2개 이상의 연구회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그 예외가 되는 연구회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재판부 소속 법관은 관련 연구회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 (임원)

- 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 ④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 제6조 (총회)

- ① 연구회는 연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총회에서는 회장의 선출 및 결산보고 기타 연구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칙

#### 제1조 (목적)

이 연구회는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와 논문발표, 세미나, 국제교류 등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그 연구성과를 재판실무에 반영하여 국민과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총회)

- ② 회원 20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이 소집하지 않는 경우 간사 또는 운영위원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 ③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의 개정
  - 2. 회장, 간사의 선출
  - 3. 결산보고
  -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 (임원)

- ① 연구회는 회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고, 필요할 경우 5인 이내의 총무, 6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회장과 간사는 총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총무와 운영위원은 간사 또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④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간사와 총무 및 운영위원은 연구회

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 ① 연구회는 주요 안건의 결정을 위하여 회장, 분과위원장, 편집위원장, 간사, 총무,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의 요구로 소집되며, 총회에서 위임한 사안, 기타 총회의 결사항 이외의 안건을 결정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16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구성(2016. 3. 1.기준)

			업무	무리미	비고
회장	이규진	18			
운영위원 (6) 가나다순	이	16	연구회 운영 방안 제시, 논의		
	고	23			
	최	28			
	박	30			
	방	33			
진	39				
간사	정	27			
총무(팀장) (5) 가나다순	나	32	학술	이 (34), (35), 유 (39), 강 (41), 최 (41), 박 (42), 박 (43)	팀장에게 팀 구성 자율성 보장
	김	32	기획	윤 (34), 김 (36), 박 (37), 이 (37), 홍 (38), 공 (40), 조 (40), 김 (37)	
	진	36	홍보	윤 (38), 문 (37), 김 (42), 김 (40)	
	이	31	정책	김 (30), 송 (38), 하 (38)	
	이	37	대외협력	정 (39), 김 (42), 서 (39), 이 (41)	
분과위원회 (소모임) 위원장 무순	강	35	법판문	오 (39)	○분과위원회의 수는 제한 없음 ○5인 이상 구성, 신고 시 승인 ○위원장, 무리미는 자체 협의 결정
	강	35	독서모임	박 (39)	
	임	25	인산회	오 (39)	
	안	34	난민	하 (38)	
	김	32	표현의 자유	류 (40)	
	김	25	소수자 인권	윤 (38)	
	강	35	문화예술	여 (42)	
김	30	인사모	박 (31)		
편집위원회 위원장	박	36	재판자료집 발간	임 (32)	○위원장, 편집위원은 운영위 거쳐 임명 ○위원장에게 구성 및 운영 자율권 보장
지역위원회 (지역분과위) 위원장 무순	송	24	광주전남	공 (40)	○지역위원회의 수는 제한 없음 ○5인 이상 구성, 신고 시 승인 ○위원장, 무리미는 자체 협의 결정
			대전	조 (40)	
	김	29	부산	김 (37)	
			서울중앙	○매뉴얼모임: ○접심모임:	
		서울남부			

## 2. 인사모 회원

### 가. 최초 주도

순번	법관	기수	소속	비고
1	김○○	24기	서울중앙	·인사모 총무(사퇴) ·우리법연구회 회원
2	이○○	26기	서울동부	·인사모 최연장자(좌장격)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 ·우리법연구회 동조
3	이○○	27기	수원	
4	이○○	27기	서울고	·우리법연구회 회원
5	정○○	27기	연수원	·우리법연구회 회원
6	김○○	30기	광주	·인사모 분과위원장 ·우리법연구회 회원
7	김○○	30기	대구	
8	김○○	30기	전주	·연구회 창립 주도 ·우리법연구회 동조
9	박○○	31기	서울중앙	·인사모 총무 ·15.04.16. 코트넷에 박○○ 대법관 후보자 사퇴 요구 게시 ·우리법연구회 회원
10	박○○	31기	서울고	·인사모 결성 최초 제안 ·우리법연구회 회원
11	신○○	31기	서울중앙	
12	이○○	31기	대법원	
13	송○○	34기	서울중앙	·16.02.01. 코트넷에 법관의 사법행 정참여 제도화 건의문 게시 ·우리법연구회 회원

나. 후속 가입

순번	법관	기수	소속	비고
1	김○○	25기	인천	·14.12.15. '횡성한우' 판결 비판으로 정직 2월 ·14.09. 원세훈 무죄판결에 대한 비판글 게시
2	이○○	32기	서울중앙	·사법행정 책임자들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는 2015년 평정 기재
3	류○○	40기	춘천	·15.05.17. 박○○ 판사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사퇴 요구 게시글에 대한 지지글 게시

다. 동조그룹(추정)

순번	법관	기수	소속	비고
1	사○○	23기	서울중앙	·16.02.22. 의원면직 ·우리법연구회 회원
2	문○○	37기	서울중앙	
3	홍○○	38기	서울중앙	

라. 창립회원

순번	법관	기수	가입일	현 소속	비고
1	김○○	14	2011-08-31	대구	
2	김○○	15	2011-08-31	춘천	우리법연구회 회원
3	김○○	22	2011-08-31	서울중앙	우리법연구회 회원
4	김○○	24	2011-08-31	서울중앙	우리법연구회 회원
5	문○○	26	2011-08-31	서울남부	우리법연구회 회원
6	이○○	26	2011-08-31	서울동부	우리법연구회 동조
7	이○○	26	2011-08-31	서울동부	
8	이○○	26	2011-08-31	수원	우리법연구회 회원
9	이○○	27	2011-08-31	서울고등	우리법연구회 회원
10	김○○	28	2011-08-31	대전	
11	선○○	28	2011-08-31	수원	
12	박○○	28	2011-08-31	수원	우리법연구회 회원
13	허○○	28	2011-08-31	의정부	
14	최○○	28	2011-08-31	인천	
15	이○○	29	2011-08-31	광주	
16	최○○	29	2011-08-31	서울가정	
17	신○○	29	2011-08-31	청주	
18	이○○	30	2011-08-31	대법원	
19	김○○	30	2011-08-31	부산가정	
20	한○○	30	2011-08-31	부산	
21	김○○	30	2011-08-31	전주	우리법연구회 동조
22	김○○	31	2011-08-31	대전가정	
23	강○○	31	2011-08-31	서울중앙	우리법연구회 회원
24	이○○	31	2011-08-31	서울중앙	
25	박○○	32	2011-08-31	대구가정	
26	이○○	32	2011-08-31	서울중앙	
27	정○○	33	2011-08-31	서울남부	우리법연구회 회원
28	김○○	33	2011-08-31	서울중앙	
29	서○○	35	2011-08-31	춘천	
30	전○○	36	2011-08-31	수원	우리법연구회 회원
31	남○○	39	2011-08-31	전주	



# 미디어 분야 연구회 신설 추진 전략

2018. 6. 5.

기획조정실

## 1.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 연구회 신설 필요

### ■ 신설 필요성

- 현행 전문분야연구회 주제 중 상당수는 법관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에 미흡 ⇨ 변화하는 시대 환경 및 젊은 법관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분야를 담당할 연구회 신설 필요
-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에서 법원, 재판 및 법관이 왜곡되어 묘사되는 경우 많음 ⇨ 사법불신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므로, 바람직한 법원의 모습을 미디어에 효과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한 집단적 노력 필요

☑ 안정기 단계에 있는 선진국들은 사법질서 및 법관에 대한 고도의 신뢰 또는 사법정의의 승리를 주제로 하는 명작, 대작 수준의 드라마 및 영화가 꾸준히 생산되고 있음

- ▶ ① 미국 영화 <일급살인(Murder in the first)> 1995년작, 교도소에서의 간접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실화를 바탕으로 함)을 통해 미국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드라마틱하고 통쾌하게 보여주는 대작, 큰 흥행 및 평단의 극찬
- ▶ ② 미국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12 angry men)> 1957년작, 명백한 유죄처럼 보이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통해 사법절차 및 판단결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를 드러냄, 고전 명작의 반열
- ▶ ③ 일본 드라마 <저지 2~섬의 재판관 분투기> 2007년작, 대도시 오사카에서 근무하다가 섬으로 발령난 후 다양한 재판활동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을 통해 법관으로서 보람을 찾는 내용의 NHK 드라마, 흥행 성공
- ▶ ④ 일본 드라마 <리걸 하이> 2012년작, 변호사가 주인공이지만 변호사의 입 및 재판과정을 통해 사법의 본질, 사법정의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설득력있는 정보 및 감동 전달, 흥행 대성공, 시즌 2 제작
- ▶ 특히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 정의를 강조하는 미국의 경우 단순히 “친근하고 믿을 수 있는 법원”의 수준을 넘어 가장 고귀한 가치인 정의를 정면으로 선언하는 내용의 영화 및 드라마가 다수이고, 대중의 지지도 얻고 있음 ⇨ 사법신뢰의 주요 원천





- 특정 분야 연구회가 인권의 보편성을 비롯한 광범위한 활동범위 및 인적 네트워크를 내세워 **법관 사회 이슈를 독점하는 현상** 방지할 필요 ⇨ **대안으로서 법관 사회 이슈화될 수 있는 주제**의 연구회 필요

#### ■ 최근의 법원행정처 주요 추진 경과

- 사법정책실, 2013년경 법원 소재 드라마 집중 추진
  - 유명 제작사인 <김○○ 프로덕션>과 매우 구체적인 제작계획 및 시나리오가 확정되는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나 법원이 거액의 금원을 교부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흐지부지됨
- 사법정책실, 2016년 드라마 관련 조인
  - tvN 드라마 ‘기억’ ⇨ 현직 법관의 배우자인 배우 박○○가 드라마 주인공으로서 판사 역할 담당

## 2. 설립 관련 기본 착안사항

#### ■ 연구분야의 특성상 설립 초반에 자리잡지 못할 경우 존재감이 희박한 연구회가 될 위험성 있음

- 법관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적극 활용할 필요 있음
  - 미디어에 비취진 법원 및 법관의 모습에 관하여는 **법관들의 관심 매우 큼**
  - 엔터테인먼트법 분야는 젊은 법관들이 관심을 갖는 전문분야 중 **연구회 미개설된 몇 안 되는 분야임**
  - 적절한 예산 및 인적 네트워크가 지원될 경우 문화행사 관람 및 참여, 예술인 또는 대중적 스타와의 간담회 등으로 높은 호응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를 어렵지 않게 개최할 수 있음
- (흥미 위주 요소 외에) **명분 공유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필요함**
  - 미디어 속 왜곡된 법관과 사법의 모습을 바로잡는다는 필요성과 명분은 법관사회는 물론 법원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음
  - 대본 집필 관여 작업 등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자가 필수적임



- 이상의 관심과 명분,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단기 성과 이벤트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영화사·방송사·연예기획사 방문 등을 통해 법관 사회 화제의 중심에 서는 등으로 단기간에 현행 연구회 판도에 가시적 변화를 유도하고 조기에 안착시킬 필요성 있음

#### ▣ 단, '흥미 위주 단기 이벤트성 모임'으로 변질되는 것은 피해야 함

- 비판 우려

- 명분을 세련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풍 81', '3S 정책' 등과 같은 愚民化 정책으로 비판받으면서 설립의 배후 및 배경이 의심받을 위험 있음
- 콘텐츠의 지속적·전문적 창출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흥미 위주의 단기 이벤트로 받아들여질 우려 있음

#### ▣ 전문분야 연구회로서의 본질 이탈 방지

- 미디어 속 사법부의 모습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및 파생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기초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엔터테인먼트법' 관련하여서는 이미 다양한 학술 논의가 있고, 외국의 이론 및 실무를 소개할 것도 많으므로, 학술적 콘텐츠를 지속 공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임

#### ▣ ⇨ 결국 열의를 갖고 연구회 설립 및 활동을 주도할 인적 구성이 중요함

### 3. 설립 준비 법관 관련 검토

#### ▣ 부장판사급

- 회장(고법부장급)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지법부장급이 중요함
- 종전에 검토된 문○○, 전○○, 오○○ 부장판사 등이 여전히 가장 유효한 후보군
- 성악활동, 대외활동 등을 이유로 추가 추천된 일부 후보군 있으나 인지도 및 추진력 등의 면에서 적절치 아니함



- ⇨ ① 전국적 인지도, ② 젊은 법관 선호도, ③ 미디어 등 주제 관련 열의(2011년 후배 법관들을 데리고 연례기획사 방문경력 등), ④ 업무 추진력, ⑤ 성과도출 가능성(기존 미디어와의 네트워크 포함) 등 모든 면을 고려할 때 문○○ 부장판사 외의 대안을 찾기 어려움

☑ 문○○ 부장 관련 추가 우려사항 검토

- ▶ ① 행정처의 통제를 벗어날 우려 ⇨ 단기적으로 가능성 낮으므로 문제되지 않음
  - 법관 사회 화제성 선점, 법원 관련 우호적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등 행정처가 희망하는 단기적인 연구회 설립 및 활동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문 부장이 위 목적을 벗어난 결과를 추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사법행정권 입장에서 희망하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내지 목적이 한정되어 있는 사안과는 구별됨
  - 문 부장판사가 '행정처가 원하는 정답대로만'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근 문부장의 성향(자신의 출판, 집필, 익명카페 활동 등에 대한 대법원 및 행정처의 평가에 관심이 상당함)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처와 전면 대립할 가능성도 낮은 편임
- ▶ ② 연구회에 대한 행정처의 '지원 내지 설립 권유'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과시할 우려 ⇨ 가능성은 있으나, 크게 오해되거나 문제될 사항은 아님
  - 미디어 연구회가 특정 연구회에 대한 견제 성격을 띠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움
  - 사법정책실 및 홍보심의관실 등에서 지속 추진해온 아이টে임 ⇨ 문부장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
  - 특히 최근 정○○ 사태로 국민의 법원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설령 행정처가 법원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문분야연구회 설립을 권하였다든 것이 알려지더라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이해될 뿐 특정 연구회측으로부터 오해를 살 가능성은 희박함
  - 문○○ 부장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행정처에서 예산 및 인력을 적극 지원한다는 사실은 어차피 비밀로 유지하기 어려운 내용임 ⇨ 앞에서 본 명분 및 법관들의 관심도를 전면에 내세워 정면 돌파하여도 문제될 가능성 높지 않음
- ▶ 종합 검토의견
  - 문○○ 부장 관련 우려되는 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고, 신설 연구회 안착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됨

■ 권유 방안

- 기획조정실이 전면에 나설 경우 政務的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법정책실 및 홍보심의관실에서 우선 권유



- 국민에게 사법부(법관)의 참모습을 알린다는 명분, 본인의 전문성과 명성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본인의 작가로서의 위상과 연결성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설득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문○○ 부장은 최근에도 유사한 활동을 스스로 한 적이 있음

#### ☑ '미스 함무라비' 연재

- ▶ 열혈 초임 여성 판사를 주인공으로 한 본격 법정 소설
- ▶ 한겨레에 2015. 5.부터 2016. 3.까지 10개월간 18회에 걸쳐 연재
- ▶ 독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법관 사회 내밀한 모습을 다소 과장되게 묘사하였다는 문제점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법관사회의 고민과 재판절차 및 결과의 보편 타당성을 드러내고자 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음

- 그 후 문부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박○○, 조○○ 심의관 등이 추가로 권유 및 응원 의사를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

#### ☐ 평판사급 추진 법관 후보군 관련

- 아래 예시 외에도 재능과 관심, 열의를 가진 법관들 다수임
  - 김○○ 판사(○○기, ○○지원) ⇨ 연극배우 경력, 2006년 제23회 강원연극제 최우수연기상, 언론보도 다수
  - 김○○ 판사(○○기, ○○지법) ⇨ 연극배우 경력, 연수원 입소 미루고 연극무대, 여성잡지 등 보도
  - 윤○○ 판사(○○기, ○○지법) ⇨ 대형 상업영화 제작 감독인 윤○○ 감독의 누나로서 법원 관련 시나리오 작성 등에도 관심
- 단, 추가 구성원 포섭과정은 원칙적으로 문○○ 부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문부장의 책임감, 몰입도 강화로 긍정적 효과 예상
  - 문○○ 부장이 위와 같은 젊은 법관 후보군들과 어차피 자체적으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 설립 추진 세력의 인적 구성까지 행정처가 관여하려 할 경우 문○○ 부장이 반발하거나 연구회에 흥미를 잃게 될 가능성이 상당함



#### ▣ 법원공무원 참여 방안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회 회장은 법원공무원을 준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음
- 홍보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전문성 및 재능이 있는 공무원도 참여시킬 필요 있음 ⇨ 최근 법관과 법원공무원간 심리적 거리감 확대로 인한 이원화 조직의 문제점 완화 방안으로도 작동할 수 있음
- 문○○ 부장 등의 성향상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4. 기존 설립 경과에 비춰 본 예상 일정

#### ▣ 일정을 제시하거나 적극 권유하지 아니함이 바람직함

- 전문분야 연구회로서의 특징 및 시기적으로 급박한 아이템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필요
- 미디어 연구회 신설 추진 법관들에게도 일정을 제시하거나 강권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행정처가 적절히 조력함이 타당
- 행정처로서는 연구회 설립의 원만하고 신속한 허가, 종전 다른 연구회 설립 지원 경험 등을 설명하여 자연스럽게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 기존 설립 관련 일정 등 참고사항

- 2000년 전문분야연구회 최초 도입(당시 11개 연구회 설립) 이후에 추가로 설립된 연구회
  - 2006년 헌법연구회, 2007년 젠더법 연구회, 2010년 형사법연구회

##### ☑ [1] 국제인권법 연구회 신설 경과

###### ▶ 2011. 6. 30. 기획1심의관 메일로 설립 허가 요청 제출

- 당시 법관 33명이 가입 희망하는 것으로 자체 조사되었다면서 신청
- 중복가입 인원을 제외하면 설립 요건인 30명에 미달되었으나, 발기인들의 반발로 '설립허가 적정성 先 회신 후 설립 인원 요건 등 구비 여부 정식 검토'하는 방안 채택

###### ▶ 2011. 8. 설립허가 및 개설 공지, 커뮤니티 구축



☑ [2] 젠더법 연구회 신설 ⇨ 기존 여성법 커뮤니티의 발전적 해체라는 특징으로 인해 사전 설립 준비 작업이 특별히 필요하지 아니하였음

- ▶ 2007. 12. 31. 행정처장의 설립허가 - 회원 93명
- ▶ 2008. 1. 11. 여성법커뮤니티 임원회의
- ▶ 2008. 1. 15. 코트넷에 설립허가 및 개설 공지, 커뮤니티 구축

- 자체적으로 30명의 가입 동의를 받은 후 신청하면 즉시 허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이 상당 ⇨ 연구분야 및 추진세력의 흡입력에 비추어 30인 요건 구비에 아무런 어려움 없을 것임
  - 문○○ 부장판사가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위원이나, 이미 1차 회의는 종료되었고, 9월 임시회의까지는 상당한 시간 여유가 있으므로, 그 전에 추진하는 데 무리 없음
- 9월 이전에 설립 완료되도록 행정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 있음

▣ 로드맵(예시)

시기	시행 방안	주무 부서
6월 초	사법정책실 등 연구회 연관 부서에서 문○○ 부장판사에 설립 권유 (소극적 반응일 경우 친분 관계 통하여 자연스럽게 설득)	정책실 (기조실 및 공보관실 측면 지원)
6월 중순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 부장 : 30인 요건 구비 위한 구성원 포섭</li> <li>◆ 업무지원 부서 : 설립 직후 시행할 아이템 사전 검토 및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행사 관람 및 참여, 예술인 또는 대중적 스타와의 간담회, 주요 영화사·방송사·연예기획사 방문 등 <u>다소 자극적이더라도 단기적 임팩트 있는 아이템</u> 준비 필요</li> </ul> </li> </ul>	
7월 중순경	설립 허가 신청	
7월 하순경	설립허가 및 개설 코트넷 공지	
8월	설립 직후 홍보 및 이목 집중 아이템 시행	
9월 이후	드라마 등 중기 과제 관련 활동 착수 엔터테인먼트 분야 학술 활동 착수	



#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

2018. 6. 5.

## 1. 검토배경

### ▣ 국제인권법연구회 명의 '법관인사제도' 학술대회 개최 의결

- 1. 24.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결과
  - 1. 15.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수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
  - 1. 19.까지 예정되어 있던 인권법연구회 '연내 행사주제 및 일정' 에 관한 의견수렴기간 종료 후 개최함으로써 '의견수렴결과 이의 없다' 는 명분 확보
  - 참석대상자 12명 중 11명 참석 ⇨ 회장의 반대에도 나머지 10명 전원이 개최 의견 固守
- 3. 25.(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와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예정

### ▣ 인사모가 기획 중인 세부 주제

- ① 대법원 구성의 문제점
- ② 법관인사 이원화의 방향
- ③ 법관의 전보 및 사무분담 (+ 김○○ 부장이 사법부 예산 관련 연구 중)

### ▣ 사법부 독립 및 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성 ⇨ 대응 로드맵 마련 필요

- 법관 사회 내부의 건전한 논의가 아니라, 외부 기관과의 공동행사를 고집 ⇨ 결국 일부 언론 및 정치 세력을 활용한 공론화 시도 예상
- 탄핵심판, 조기 대선, 후임 대법원장 청문회 등 격동의 시기를 앞두고 있음 ⇨ 관련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둘 필요성이 큼



## 2. 대응방향 및 착안사항

- ① 인사제도 관련 논의 자체를 억압한다는 비판의 빌미를 주면 안됨
  - '전문분야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립 목적 및 범위에 반함에도 연구회 명의로 외부와 연계된 행사를 하는 것'의 부당성 부각 필요
    - 인사제도를 논의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거나 자제하라는 것이 아님,
  - 행정처가 인사제도 관련 논의 자체를 탄압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그와 같이 법관 사회에 알려지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함
    - 인사 이슈 관련 세미나가 개최되는 경우보다 오히려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과 비판 수위가 더 높아질 위험이 있음
- ② 설득·대응의 주타깃은 인사모 주도 법관이 아닌 인권법 일반 회원
  - 인사모 주도세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반 회원인 법관 간 분리를 1차 공략지점으로 삼아야 함 ⇨ 일반 법관을 설득할 논리 개발 필요
    - 인사모 주도 법관들에 대한 설득은 어차피 불가능에 가까움
    - 사법행정 관련 민감한 주제일수록 연구회 일반 법관들과 인사모 주도 세력간 유대감은 의외로 미약할 가능성 있음 ⇨ 약한 연결고리 해체 가능
  - 사법부 연구회 공식활동이 아닌 일부 세력의 고립된 활동은 파급력이 현저히 감소됨 ⇨ '특정 성향 일부 법관의 의견'으로 방어 가능
    - 인사모와 인적구성이 유사한 우리법연구회가 2015. 5. 상고법원 관련 세미나 개최하였으나, 세간의 이목을 끌지 못하였고 행정처의 부담도 거의 없었음
- ③ 인사제도 세미나 관련 대책과 인사모 관련 대책 모두 검토 필요
  - 부적절한 세미나 개최 자체의 방지가 우선적 과제
  - 인사모가 유사한 인적구성과 유사한 방향성으로 계속 활동하는 한 동일한 위험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음
    - 인사모의 구성 및 활동방향 자체에 관한 강·溫 대응방안 마련 필요함





■ 4 어느 정도의 파열음은 불가피함 ⇨ 오히려 내부 파열음을 통해 인사모 주도세력을 고립시킬 수 있도록 파열음을 용인할 필요

- 행정처가 직접 나서거나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
- 결국 인권법 소속 일반 법관과 인사모 사이에 심리적 거리감, 경계감을 형성함으로써 인사모 활동을 위축시켜야 함 ⇨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파열음 내지 불편한 분위기 형성 불가피
  - 파열음은 논리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서 각 촉발시켜야 함

### 3. 구체적 대응방안

#### 가. [단기 방안] 인사제도 관련 외부 공동 세미나 대응 중심

■ [파열음 1] 논리적 측면의 문제제기

- 설립 허가받은 활동 범위를 전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문제제기 가능

☑ 2011. 6. 제출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허가 요청서>상의 활동계획

▶ 북한인권문제의 대두와 탈북자의 증가,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재판증가, 인권문제의 재판쟁점화에 따라 이를 연구하는 전국적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필요함 ⇨ 명칭 그대로 “국제적” “인권” 이슈를 연구대상으로 함

☑ 2011. 8. 설립 및 회원가입 안내 공지문상의 활동계획

-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응답
- ▶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 성과의 정리 및 정보의 공유
-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심포지엄, 외부강연 등 학술모임의 개최

- 법관 상대 설득 논리

- 인사제도 세미나라는 특정 이벤트가 아니라 인사모의 활동 전반에 대한 규정 준수 필요성 문제제기 및 설득
- ①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②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연구회가 해당 전문분야를 넘어서는 활동을 하는 것은 규정에 반함
- 규정 준수 여부를 중시하는 법관들의 성향상 어느 정도 설득력 있음



- 인사모는 법관 인사제도 논의가 국제인권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
  - 법관 인사제도 → 사법의 독립, 양질의 재판, 법치주의와 연관 → 국민의 인권 보호와 연관된다는 논리

● 대안 제시 필요

- ① 인사제도 관련 연구회를 신설하거나, 적어도 연구회가 아닌 ② 인사모 자체 명의로 개최할 수 있음 ⇨ 연구회 전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대안 가능
-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인사제도를 논의할 수 있는 다른 여러 방법 있음 ⇨ 굳이 규정에 반하여 국제인권법연구회 명의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의문이고, 규정에 따라 연구회를 운영할 책무가 있는 회장으로서는 문제제기 불가피

● ※ 문제제기의 주체

- 현 회장이 제기함이 가장 자연스럽게 효과적임
- 현 회장 입장에서는 공론화가 부담될 수 있음 ⇨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동조 탈퇴할 선배 법관 등 지원군의 사전 확보가 필요할 수 있음
- 현 회장이 문제제기 전면에서 나서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일 경우 대안적 역할을 할 법관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김○○ 법원장 중재 가능성 ⇨ 소극

-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자 인사모 주도 세력에 막강한 영향력 ⇨ 조기 대선으로 정권교체될 경우 6월경 후임 대법관 제청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우 높을 것임
- 이러한 경우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잡음 및 부담 등을 감안하여 민감한 주제 관련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언론의 주목받는 것을 회피하는 입장을 택할 수도 있으나,
- 김○○ 법원장은 오히려 위 세미나를 지지하고 있음 ⇨ 진보 성향 후배 법관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수 있음 + 위 세미나 관련 중재 역할 기대 난망

● [법관들 반응 예상] 논리적으로 인사모 주장이 박약함을 이해하면서도 심정적으로는 인사제도 세미나 개최 불발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음

- 특히 인사모측에서 ‘학문, 토론의 자유 억압’,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탄압’ 등과 같은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반격할 수 있음
- 문제제기, 공론화 과정에서 공격적이지 않고, 논리적이면서 조심스러운 방식이 요구됨 + 아래 정서적 파열음 촉발 방안과 병행 시도되어야 함



● 일반 법관 회원들의 반응에 따른 후속조치

- ① 다수 회원이 인사제도 세미나 개최의 부적절함에 동의할 경우 ⇨ 세미나 개최 백지화 및 인사모 활동 위축
- ② 부적절하지 않다고 연구회 여론이 모아질 경우 ⇨ 회장은 ‘회장 직위 정상수행 불가’ 를 이유로 회장직 사퇴 (이 경우 아래 파열음 ②항에 따른 추가 조치 계속 시행)
- ③ 부적절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갈 분위기인 경우 회장의 대응카드 ⇨ 아래에서 검토하는 ‘전문분야연구회 활동 공식 평가기구에 이 세미나의 적정성 판단을 의뢰하자’ 고 제안하여 국면전환할 여지 있음

**☑ 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 활용 방안 검토 ⇨ 신중**

▶ 근거규정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행정예규’ 제9조

- ① 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를 둔다.

- ④ 평가위원회는 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 위 ②항의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자료” 작성 권한에 연구회 활동 범위 내지 논의 주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위원회 활용 방식

- 회장이 ‘법관 인사제도 관련 외부공동세미나 개최(나아가 인사모 활동 자체)가 위 예규에 따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립목적 및 연구회 회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유권해석 의뢰하자’고 제안하여 국면 전환

- 공식 규정에 근거한 공식 위원회의 회신 내지 의견 개진이므로, 연구회 회원들 입장에서 행정처가 연구회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음

▶ 활용 여부 검토

- 법리적으로는 목적 범위를 넘어섬이 명백한 유권해석 및 회신으로서 사후적으로 문제될 내용의 회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면돌파 차원에서(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일반 법관들에게 인사모 활동의 규정 위반에 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는 측면에서) 위 평가위원회를 활용할 여지도 있으나,

- 법원행정처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고, 인사제도 세미나 저지 시도의 배후에 행정처가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움

- 정책결정의 영역이나,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파열음 2] 정서적 측면의 문제제기 ⇨ 특정 연구회의 후신, 정치적 목적 하에 전문분야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이용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는 안되고, 일반 회원들이 위와 같은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법연구회 등과의 구체적 연관성이 아니라, 무언가 ‘문제 있고, 논란 있는 연구회’ 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법관들의 동요 예상
    - 현재는 사법부 내 ‘주류 중의 주류’ 로 인식될 수 있는 법관들이 다수 회원으로 포진 ⇨ 젊은 법관들이 인권법연구회 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
  - [PROCESS] ① 규정에 반하는 활동으로 논란 있는 연구회 → ② 주류 성향 선배 법관들의 대거 탈퇴 → ③ 다수의 법관들이 인사모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 내지 경각심 형성
  - ① 규정에 반하는 활동으로 인한 논란 촉발
    - 앞서 본 바와 같이 현 회장의 의지 및 설득력이 관건임
  - ② 선배 법관들의 대거 탈퇴
    - 현 회장의 사퇴 및 탈퇴가 전제되어야 명분 및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고법부장(성○○, 이○○, 김○○, 유○○, 김○○, 이○○, 이○○ 부장 등 12명), 심의관 출신 지법부장(윤○○, 함○○, 오○○, 김○○, 전○○ 등)이 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한 지지 차원에서 명분을 내세워 탈퇴
    - 일거에 탈퇴할 경우 행정처가 배후에 있다는 공격을 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적절한 명분을 갖추어 분산 탈퇴하되, 다수가 탈퇴할 필요가 있음
  - ③ 다수 법관들의 심리적 거리감 및 주저감 형성
    - 종전 우리법연구회 등의 사례에서 보듯 연구회 활동 관련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의 확산만으로도 상당수 법관이 자연스럽게 탈퇴할 가능성 있음
    - 인권법연구회가 그 시스템 및 인적 구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음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부각될 경우 더 큰 동요 예상됨



▶ 이○○ 부장판사(○○기)의 발언 음미

- 사적 대화 내용이므로 중략

▶ 이○○ 부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아니나, 이번 세미나 관련하여 개최 저지 역할을 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충격 완화책 ①] 주제 선별 후 개최

● 인사모가 준비 중인 위 3가지 주제 중 상대적으로 수용가능한 주제로 논의가 한정되도록 하는 방안

- 인사제도 세미나 개최를 더 이상 막기 어려운 경우의 플랜 B임

● 법관인사 이원화, 법관의 전보 및 사무분담 ⇨ 수용 불가

- 법관 사회에서 폭발력이 큰 이슈이고, 현 대법원장님 및 차기 대법원장님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이슈임

- 사법부 내부의 법관 인사제도에 대하여까지 외부 세력의 목소리가 개입하게 되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됨

- 부득이한 경우 법관인사 이원화 문제를 기존에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고법부장 승진제도 타당성” 주제로 바꿔 논의하는 정도는 수용 여지

● 대법원 구성 다양화 ⇨ 상대적으로 수용 가능

- 정치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온 이슈 ⇨ ① 새로운 주제 아니고, ② 법관들 호응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③ 인사모 활동에 특정 성향 정치권의 이미지가 오버랩될 것임

- 특히 법관 내부에서는 대법원 구성 다양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인사모와 일반 법관 사회와 분리 효과도 있을 수 있음

- 외부에 ‘법관 사회 내부에서도 다양화 필요성 제기’ 라는 명분을 주는 등 어느 정도의 타격 예상됨 ⇨ 세미나 개최를 막지 못하는 이상 불가피함

■ [충격 완화책 ②] 개최 시기 조율

● 인사모가 추진 중인 3월(3. 25.) 개최가 상대적으로 안전함

- 현재 3월 탄핵결정 및 5월 조기대선 유력 ⇨ 탄핵결정과 대선정국 이슈가 다른 논의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3월에 개최해야 주목도를 낮출 수 있음



- 3월 개최 시 준비기간 부족으로 깊이 있는 논의 및 행사 구성도 어려울 것임
- 인사모 일부가 제안한 6월 연기방안은 오히려 위험함
  - ① 조기 대선으로 인해 법원 관련 공약이 대선 직후에 심층검토될 가능성 있음 ⇨ 대통령 취임 직후인 6월에 민감한 주제로 개최할 경우 신임 대통령의 사법 개혁 드라이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있음
  - ② 특히 야권 후보 대선 승리 시 ‘법관 사회 내부의 문제제기’를 명분으로 내세워 사법부 인사시스템 및 관행에 정권 차원에서 개입 시도할 우려
  - ③ 후임 대법원장 논의가 본격화될 시점 ⇨ 사법부 내외에서 퇴임을 앞둔 대법원장님을 구시대·수구적 이미지로 규정짓고 차별화 시도할 위험성
  - ※ MB정권 초기 이○○ 대법원장님 관련 굴욕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

■ [충격 완화책 ③] 최후 고려 수단 ⇨ 인사제도 논의 위원회 발족

- 사법행정위원회 산하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또는 별도의 인사제도 논의 위원회를 통하여 제도권 내에서 인사제도 논의의 장 제공
  - 2016년 상반기 사법행정위원회의 선제적 출범으로 인사모의 비판적 논의가 상당 기간 위축되었던 선례
- 최후의 수단이므로, 인사모의 세미나가 사법부 내외에서 크게 주목 받고 정치권 등의 압박이 가시화되는 경우에 고려함이 상당함
  - 급진적인 논의결과가 도출될 경우 대법원장님의 8월 정기인사 시나 차기 대법원장님 인사권 행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법원문화개선위 발족시 유사한 우려 있었으나, 원만히 마무리한 노하우 있음 ⇨ 위원회의 경우 의제 설정권이 행정처에 있는 한 극단적 사태를 예방할 여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사제도의 민감성에 비추어 낙관하기 어려움
- 위원회 발족 시 합리적인 논의를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 검토 필요
  - ① 각급 법원에서 법원장 등 사법행정라인 주도하에 1차 의견수렴 절차 (여과 기능), ② 전국 위원회도 위원을 다수로 하는 등 선명성을 앞세운 일부 전해가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정밀한 검토 필요함



### 나. [중기 방안] 인사모 해소 유도 및 제재 방안 중심

■ ① 모든 전문분야연구회(커뮤니티) 상대로 규범 준수 요구 ⇨ ① 중복가입 해소 + ② 연구범위 준수 관행 정착시 인권법연구회가 가장 큰 타격

- 모든 연구회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모든 연구회를 상대로 준수 요구
  -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 특정 단체에 대해서만 시정 요구 또는 규정 준수 요구를 할 경우 강한 반발 예상
  - 특정 법관들에 대한 압박 논란을 피하고 규정 미준수에 본능적 거부감이 있는 법관들의 통상적인 성향을 활용

#### ● ① 중복 가입 해소 요구

근거규정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3조(회원)

② 법관은 2개 이상의 연구회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그 예외가 되는 연구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재판부 소속 법관은 관련 연구회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다.

중복가입 금지의 취지

▶ 각 연구회에 예산 지원 시 가입회원수 등이 고려되는 점, 전문자료에 대한 접근 기회 및 전문성 있는 동료 법관들과의 네트워크 기회를 법관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명목상 가입이나 무분별한 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일 것임

법관들 상대 중복가입 해소의 명분 충분함

▶ 위와 같은 중복금지 규정의 취지 존중될 필요 있음

▶ 현실적으로 중복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법관들의 경우에만 해외방문, 회식 및 연수비 지원 등에서 실제 피해를 보고 있음

- 중복가입자 일제 해소 시 국제인권법커뮤니티 회원 중 50%가 넘는 200명 이상 급감 ⇨ 다른 커뮤니티에 비하여 현저한 타격

#### ● ② 전문분야 연구범위 준수 요구

근거규정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2조(연구회의 설립허가)

③ 제2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설립목적과 예산사정 등을 참작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 ⇨ 반대해석상 설립목적 위배시 설립허가 취소 가능



▶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0조(커뮤니티의 폐쇄)

④ 전산정보관리국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당해 커뮤니티 회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경우 연구회의 코트넷 커뮤니티 폐쇄 가능

☑ 법관들 상대 목적 범위 준수 요구 명분 있음

▶ 예산 및 전산 자원을 지원받고 있고, 설립목적을 고려하여 설립허가된 연구회가 설립목적의 범위를 준수함은 당연 ⇨ 정당한 규범임에도 부당하게 훼손된 규정의 규범력을 회복할 필요성

▶ 규정을 준수 중인 절대 다수 연구회와의 형평성

- 인사모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연구회 자체가 국제인권과 무관한 경제 민주화, 중세와 복지 등의 주제를 세미나에서 다뤄 음
- 위와 같이 규정상 연구회 설립취소, 커뮤니티 폐쇄가 가능하나, 실제 시행하는 것은 부작용(행정처가 논란의 중심 등)이 훨씬 크므로 신중할 필요

● 규정 준수 요구 방안의 장점

▶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관들 상대로 규범력 회복 등의 명분 충분함

-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법관들의 피해 방지 등의 명분 충분함 ⇨ 규범 준수 및 편법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을 중시하는 법관들의 성향상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음

- 법관들의 학술조직인 전문분야연구회의 활동 및 구성에 대하여 행정처가 관여하는 데 대한 일각의 비판 및 논란을 우회할 수 있음

▶ ② 행정처·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임

- 특히 중복가입금지 해소 요구는 다소 기술적인 개선 사항이므로, 커뮤니티 관리책임자인 전산정보국장 명의 공지로 충분 ⇨ 그 공지의 기회에 목적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 자제 권유도 함께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정책결정 사항이라기 보다는 기존 규정 준수 및 집행 관련 문제로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그 시행에 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나 특정 연구회를 표적으로 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다른 방안에 비하여 낮음

- 인사모측의 반발 명분도 크지 않음

- 중복가입 관행 전면 해소로 인하여 일부 법관들이 커뮤니티 전문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 있음 ⇨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방안과 함께 시행 가능

☑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방안 분석





▶ 명분 제시 가능

- ① '법관들이 자신이 가입한 커뮤니티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의 연구성과에도 손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법관들의 전문성 강화와 자율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② '사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이상 그 연구성과를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함으로써 사법부 전체의 전문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명분 제시할 수 있음

▶ 오해 소지 차단 가능

-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반드시 지식광장에 게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압박'이라는 일각의 의심을 희석시키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 지식광장 게재 독려는 각 법원 수석부장 등이 담당 가능

▶ 기대효과

- ① 학술성과 공유로 사법부 전문역량 강화,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 코트넷 지식공유 활동 활성화

- ② 다른 커뮤니티에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중복가입 금지 규정의 엄정한 시행에 따른 불만 내지 부작용 완화

- ③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인적 유대 강화의 수단으로 커뮤니티가 적극 활용되는 연구회의 경우 게시글 공개를 통해 '은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 내지 이너 써클(Inner Circle)에 대한 소속·결속감'을 약화시킬 수 있음

- ④ 특히 인사모의 경우 논의가 사법부 전체에 전면 공개됨으로써 내부의 논의가 코트넷 자유게시판에서의 논의와 차별화되지 않게 됨 ⇨ '인사모의 자유게시판화'를 통해 과감하고 도발적인 논의는 위축될 가능성도 있음

- ⑤ 커뮤니티 내부 논의 내용 공개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용이해짐 (심의관 등이 의심을 감수하며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할 필요 없음)

■ ② 규정 위반 연구회에 대한 예산 등 지원 삭감 및 해외 출장 제한

● ① 2017년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대폭 증액(7억원 → 14억원)으로 예산 및 전산 편의 지원에 따른 실질적인 관리·평가 시스템 재정립 예정

- 국제인권법연구회 뿐만 아니라, 목적 외 활동 금지를 비롯한 여러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모든 연구회에 대하여 예산 관련 불이익 부과

-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경우 상당한 불이익 예상

● ② 전산 지원 제한



- 연구회 전체 활동에 대하여 제재하기 보다는 인사모 게시글에 대하여만 열람제한 조치 등으로 일반 회원과 분리 제재 가능
- ③ 인사모 활동 지속할 경우 전문분야 국제화연수 혜택도 박탈 가능
- 인사모로 인해 국제인권법 일반 회원 법관들이 가시적인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어 인사모측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임
- 극단적으로는 규정 위반 활동에 대하여 징계 여부 검토 가능하나, 위험성이 너무 큼

■ ③ **보편적 인권 관련 사법부 내 다른 조직에서 대형 행사 주도**

- **인권 이슈의 독점 해소**
  - 보편적 인권 관련 이슈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회도 얼마든지 학술연구 활동 가능
  - 현재 국제인권법 소속 법관들 상당수는 ‘국제인권’ 이 아닌 보편적 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으로 가입 ⇨ 보편적 인권 이슈 관련 다른 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은 국제인권법연구회로의 독점적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
- **인사모 활동에 대한 자성 목소리 유도**
  -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자신들이 인권 관련 사법부 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임하고 있음
  - 사법부 내 다른 기구(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국제인권법의 전형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슈에 관하여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 사법행정 관련 문제제기에 매몰되어 정작 국제인권 관련 이슈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법 내부 자성 목소리 유도 가능
  - ex) 탈북민, 외국인 노동자, 아시아인권재판소 등 관련 대형 행사(특별 예산 지원 가능) 및 언론 보도

#### 4. 로드맵(안)

시기	방안 예시
1월 하순	◆ 인권법 회장 등이 회원 상대 공식 문제제기



	<p>‘인사제도 외부학술행사는 국제인권법의 전문분야 연구범위와 무관함에도 연구회 공식 행사로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으로서 부당하고, 인권법연구회 명의를 아니라 인사모 명의로 행사 개최 가능한데, 이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지지 의사 밝힐 우군 필요함</li> </ul>
2월 초순	<p>◆ 회원인 일반 법관들이 인사모 의견에 동조할 경우 ⇨ 연구 주제 한정하는 방안 관련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주제로 심도 깊은 세미나 개최</li> <li>- 사법부 예산 관련 논의도 상정 가능</li> </ul>
2월 중순	<p>◆ (이하 협의 불발시) 회장등 사퇴 및 탈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배 법관들 회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차원에서 동반 탈퇴</li> <li>- 법관들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의 활동에 심리적 거리감 발생</li> </ul>
인사이동 후 3월 초순	<p>◆ 전정국장 명의 전문분야커뮤니티 운영 관련 안내 말씀 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가입 금지 규정 형해화로 선량한 법관들이 피해받고 있으므로, 모든 커뮤니티 및 회원들은 3월 중순까지 자율적으로 해소해주시기 바람</li> <li>- 커뮤니티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해주시기 바람</li> <li>- 중복가입 금지로 인한 학술정보 접근 제한 해소 등을 위하여 커뮤니티의 모든 게시글은 커뮤니티 회원이 아닌 법관에게도 공개됨</li> </ul> <p>◆ 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사법정책연구원 등의 인권 관련 대형 행사 검토 및 준비 착수</p>
3월 중순	<p>◆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반 회원들 동요 및 탈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배법관들 대거 탈퇴 및 중복가입 금지 해소 조치 등의 영향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꺼리는 분위기 형성</li> </ul>
3월 하순	<p>◆ 법관 인사제도 관련 연세대 법전원과의 공동학술대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모 등 강성 세력 중심 개최, 고립화 분위기 조성</li> </ul>
5월	<p>◆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배정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예산 삭감 등 지원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모에 대한 자연스러운 활동 중지 여론 조성</li> </ul> <p>◆ 대안적 인권 대형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관련 법관들의 관심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아닌 다른 연구회 등으로 이동</li> </ul>

# 법관 정다주 탄핵 소추안

의안 번호	0000
----------	------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000 의원 외 00인

## 주 문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추자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성 명 : 정다주

직 위 : 법 관

##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소추자(이하 '피소추자'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헌법 제103조), 법관의 신분보장(헌법 제10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헌법 제12

조, 제27조) 조항 등을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 등을 위반하였다.

(직권남용죄 등 형법 위반 사항은, 향후 검찰의 기소 후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금번 소추안에는 별도로 포함하지 아니함)

이러한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위반 행위는 다른 피소추자들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2011. 9. ~ 2017. 9.)에 의하여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2011. 10. ~ 2014. 2. 대법관 겸임),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 2. ~ 2016. 2. 대법관 겸임), 임종헌(2012. 8. ~ 2015. 8. 기획조정실장, 2015. 8. ~ 2017. 3.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 중 사법에 관한 본질적 요소인 재판독립의 원칙과 법관의 신분보장,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오로지 신뢰에 기반하여 사법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이므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사법농단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무너진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실추된 사법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피소추자의 지위

피소추자는 2002. 2.경 사법연수원을 수료(31기)하여, 2005. 2.까지 육군법무관을 지냈고 2005. 4.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13. 2.경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전보되면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의 직위를 겸임하게 되었다. 2015. 2. 자로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전보되면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의 직위에 대한 겸임이 해제되었다.

이후 피소추자는 2017. 2. 자로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18. 6.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고 재판 업무에서도 배제된 자로, 본 탄핵소추안 발의일 기준으로 헌법 제101조 및 법원조직법 제5조에 따른 법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 2. 피소추자의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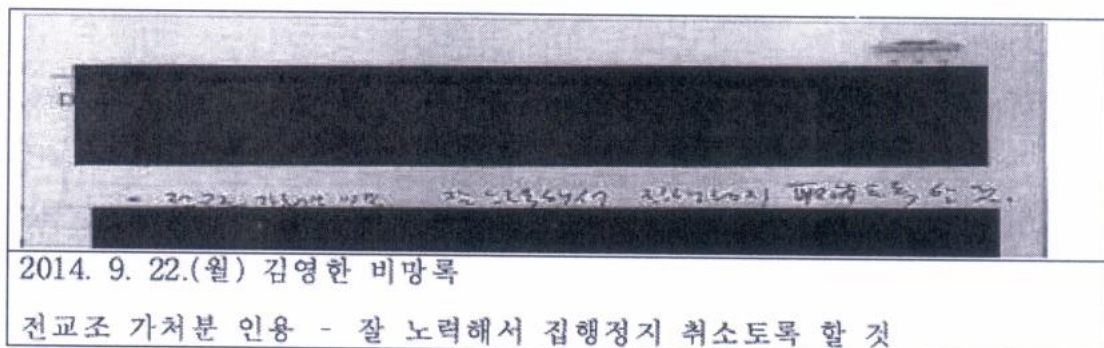
#### 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 거래 의혹

1) 전교조에 적대적이던 박근혜 정권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 10. 24. 전교조에 대하여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이라고 통보하였다(이하 '법외노조통보처분'). 전교조는 같은 날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쟁송이 시작되었는데, 크게 ①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사건, ② 그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효력정지 사건(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임시처분을 구하는 소송), ③ 재판의 전제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2014. 6. 14. 시작해서 2015. 1. 9 끝나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이하 '김영한 업무수첩'이라고 한다)을 보면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1심 본안 판결 선고 이전부터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었다. 그런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라고 함)에 의하여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들에 따르면, 사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매개로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특조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이하 '3차보고서'라고 함) 166쪽 이하].

김영한 업무수첩에는 2014. 9. 19. 항소심 단계에서 전교조의 효력정지신청이 인용된 후 “전교조 관련 대처 ① 즉시항고 인용, ② 현재결정 - 합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즉시항고'란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현재결정'이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의미한다.

이 시기부터 청와대는 법외노조사건 재판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4. 9. 22.자 김영한 업무수첩에는 “전교조 가처분 인용 - 잘 노력해서 집행정지 취소토록 할 것”이라는 문구가 발견된다(이후 실제 고용노동부장관의 재항고는 2015. 6. 2. 대법원에서 인용되었다).



법원행정처는 김영한의 업무수첩에 '집행정지 취소토록 할 것'이라고 기록된 2014. 9. 22.부터 대법원의 효력정지 파기환송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2015.

6. 2.) 법외노조 효력정지 사건에 관한 문건을 집중적으로 생산해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피소추자가 2014. 12. 13. 작성·보고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151<sup>1)</sup>] 문건과 2015. 2. 8. 작성·보고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58] 문건, 2015. 3. 12. 작성·보고한 「국무총리 대국민담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방향 검토」 [204, 205, 295, 296]<sup>2)</sup> 문건이다. 피소추자는 위 문건들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재항고사건을 청와대와 협의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파기환송결정 이후에는 위 대법원 결정을 사법부가 정부 운영에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로 내세운 「과거 왜곡의 광정」[70],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71]를 작성·보고하였다(3차보고서 166쪽 이하).

4) 위와 관련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소추자는 2014. 12. 3.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151]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① 서울고등법원의 효력정지 인용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검토하고 대법원의 추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항고 인용 여부와 시점 등에 따른 득실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서울고등법원의 효력정지 인용 결정 후의 청와대 입장을 분석하면서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법원의 각종 중점 추진 사업에 견제·방해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② 재항고 기각과 인용의 경우에 관한 각 득실을 분석하였는데, 재항고 기각은 양측(청와대 및 대법원)에 모두 손해가 될 것이고, 재항고 인용은 양측에 모두 이득인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법원행정처는 2018. 6. 5. 및 2018. 7. 5. 두 차례에 걸쳐 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물적 조사 대상이 된 문건 다수를 공개하였다. 본 소추안에서 공개된 문건을 인용하는 경우, 최초 문건명 및 대괄호 안 문건 번호(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첨부 2. 기재 순번)을 병기하기로 하고, 이후에는 대괄호 안 문건 번호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이하 모두 같다.

2) [204], [205], [295], [296] 중복된 것임



		BH	대법원
재항고 기각 결정 시	전교조	- 최대 현안 ⇨ 상당한 손해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상고법원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 최대 현안 ⇨ 상당한 손해
재항고 인용 결정 시	전교조	- 최대 현안 ⇨ 상당한 이득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상고법원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 최대 현안 ⇨ 상당한 이득

③ 결정 시점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 일 이전을 가장 극적인 시점으로 판단하였다.

④ 대법원 결정에 따른 반발세력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였는데, 특히 수사·재판 중인 의원의 수가 '야당 34 대 여당 5'여서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강한 비판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진보 성향 언론 역시 관심이 분산되어 거센 비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⑤ 본안사건 담당 판사의 인사교체시점과 결부시켜 본안사건의 결정시점에 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본안사건의 결론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던 해당 재판장(민00 수석부장판사) 교체도 염려에 두었다.

⑥ 효력정지 인용결정이 본안사건의 판단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였다. 문건에서는 본안의 결론은 해당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도출하되, 판결에 이르게 될 경우에도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설령 대법원의 잠정적 결론과 다른 방향의 결론이 본안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의 심증이 집행정지 사건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공개된 이상 청와대 등의 동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본안사건의 인용 여부에 따른 파장까지 분석하였다.

⑦ 재항고 인용결정의 대가로 협조요청 사항, 즉 청와대가 대법원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요청할 만한

사항(상고법원 입법 추진 협조,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 협조, 재외공관 법관 판결 협조, 한정위헌 결정 관련 협조, 법관 정원 증원 추진 협조)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151] 문건의 내용과 같이 법외노조 사건 본안 2심에서 전교조 패소하였는데, 종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했던 민00 재판장이 황00 재판장으로 교체된 후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재판장 교체와 본안 사건의 결정 시점도 [151] 문건의 내용과 일치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소추자가 작성한 내용은 그대로 실행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피소추자는 원세훈 사건 선고 하루 전인 2015. 2. 8.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58]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위 문건에서 피소추자는, 항소심에서 원세훈 사건이 파기되고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되는 경우의 청와대, 여권에 대한 대응 방안 중의 하나로 청와대 관심사건의 사법 현안 신속처리를 제시하였다. 법외노조 사건은 청와대가 지금까지도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만일 대법원의 결론이 재항고 인용 결정이라면 최대한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하였을 경우 사법부에 대한 불만 완화 효과와 함께 원세훈 사건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는 암시 제공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청와대의 관심사건인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재항고심의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청와대와의 협상 카드로 제시하였다.

다) 피소추자는 2015.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전보되어 재판을 담당하는 일선 판사로 복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업무에 전념하지 아니한 채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거점법관’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건을 작성, 보고하였다.

2015. 3. 15. 「국무총리 대국민담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204, 205, 295, 296] 를 작성·보고하였다.

2015. 3. 12.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였는데,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사정을 강화할 경우 등에 있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요 사건 처리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관심 사안의 신속 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언급하였다.

라) 피소추자는 2015. 7. 27.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로 「과거 왜곡의 광정」 [70] 와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71] 를 작성·보고하였다.

위 문건은 사법부가 그 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모아놓고 있는데,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파기환송결정은 당시 정부의 교육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한 대법원의 대표적인 성과로 적시되어 있다.

이 점에서, 피소추자가 작성한 문건의 내용은, 그대로 실행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나. 원세훈 사건 재판부 거래 의혹

1)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큰

타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청와대는 본 재판의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특별조사단에서 공개한 관련 문건을 보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1심부터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3차보고서 112쪽 이하,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2018. 1. 22.자 조사보고서(이하 '추가조사보고서'라고 함) 33쪽 이하].

2) 위 원세훈 사건 관련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소추자는 2015. 2. 9.로 예정된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선고 하루 앞둔 2015. 2. 8. 임종헌의 지시로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58]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피소추자는 위 문건에서 ① 원세훈 사건 항소심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연수원 기수, 출신대학 및 출신고등학교와 재판부의 성향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② 청와대를 비롯하여 여권, 야권의 최근 정세, 언론기관, 사법부 내부의 분위기를 분석하면서 원세훈 제1심 사건 판결 선고 당시의 반응과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른 청와대, 야권, 언론, 사법부 내부의 예상 시나리오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③ 항소가 기각될 경우 기존 불만 세력의 불만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법부 내부에 불만과 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코트넷 게시판 등의 사찰을 계획하고 법관 정기 인사를 통해 사법부 내부의 불만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이상 기류 발생 시에는 각급 법원장 등을 통하여 여론 수습 조치”라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법원장을 통하여 법관들을 단속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했다. 또한 ④ 항소심 파기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의 경우에 청와대, 여권 대응을 중심으로 “신뢰 관계 유지,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실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1. 우선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미칠 악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
--------------------------------------

- 상고법원안에 직접 미칠 부정적 영향[상고법원 법관 구성과 상고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시
  - 제시 가능한 안 -> 상고법원 법관 보임 시 국회 동의 또는 인사청문회 절차 실시.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확대[정치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은 반드시 대법원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함], 대법원 사건 심사·특별 상고 등의 과정에 법무부장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
2.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관심 사법 현안 신속 처리
- 전교조 집행정지 인용 결정 후 청와대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후문 -> 비정사적 형태로 규정하고 '비정상적 정상화' 필요한 것으로 입장 정리
- (중간 생략)
- 만일 대법원의 결론이 재항고 인용 결정이라면 최대한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법부에 대한 불만 완화 효과 + 원세훈 사건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는 암시 제공 효과
3. 본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조속한 시점에 선고
- 상고심을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여 만일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조속히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불만·오해 기간 최소화
4.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비공식적 라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입장 전달
-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에 법무비서관실 등 적당한 비공식적 라인을 통하여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설득 절차를 거침
  - 특히 위 1, 2, 3 조치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간접적으로 미리 안내하는 방법을 검토 가능함

나) 피소추자는 원세훈 항소심 선고 그 다음 날인 2015. 2. 10.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59, 360]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에게 보고하였다.

① 위 [59] 문건에서, 청와대는 선고 전 '항소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했고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하여 "우회적·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고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을 알렸다고 보고했다. 위 내용이 민정 라인을 통해서 보고된 것으로 나온다.

② 그리고 판결 선고 후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하고, 법원행정처가 법무비서관을 통하여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나온다.

위 [50] 문건은, 법원행정처가 항소심 판결이 기각되기를 기대하였고 법원행정처와 민정라인 사이에 원세훈 재판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원세훈 사건은 소부 소속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음에도 우병우의 희망대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고, 5개월 만에 전원일치로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피소추자는 2015. 3. 15. 「국무총리 대국민담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204, 205, 295, 296] 문건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함께 원세훈 사건도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으로 보았다.

#### 다.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

1) 대법원은 2012년 이른바 「금아리무진 사건(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행정예규를 통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해석을 고수했고 재계는 이러한 행정해석을 근거로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배제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3. 5. GM사의 댄 대커슨 회장과 면담한 이후 통상임금은 한국 경제가 갖는 문제이므로 확실히 풀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sup>3)</sup>.

3) 연합뉴스, ‘청 “미GM, 통상임금 해결 전제 80억불 투자 재확인”’, 2013. 5. 9.

2) 특조단은 3차보고서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하여 3건의 문서를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2건을 공개하였다. '통상임금 판결'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대법원 2012다89399호, 원고 승소 판결에 의해 피고 회사가 상고, 2012. 10. 10. 상고)」을 의미한다. 위 사건은 2013. 8.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2013. 12. 18. 선고되었는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바꾸지는 못하였지만,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노사합의로 이미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과거분에 대한 소급 적용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원고 패소 취지로 항소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첫 번째 문건은 2017. 9. 5. 공개변론이 있기 2주 전 (2017. 8. 22.)에 작성한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이고 두 번째 문건은 판결 선고 하루 후(2017. 12. 19.) 작성한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파악」 [69, 3914]에 관한 것이다(3차보고서 148쪽 이하).

3) 위 통상임금 사건 관련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소추자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공개변론(2013. 9. 5.)을 앞두고 2013. 8. 22.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시 경제적 영향 분석」 [409] 문건을 작성, 보고하였다. 위 문건에서 피소추자는, ① 기업이 부담해야 할 노동비용에 미치는 영향; ② 기타 고용, 분배, 임금 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③ 사법부의 판단에 경제적 파급효과 고려 여부 등에 관해 '재계'와 '노동계', 그리고 '국책연구소'의 의견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나) 피소추자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13. 12. 19.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로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

4) [69]와 [391]이 중복된 것임

동향 파악」 [69, 391] 문건을 작성 및 보고 하였다.

피소추자는 [69, 391] 문건에서 판결에 대한 청와대, 여야 각 당, 재계, 노동계, 언론계, 온라인으로 나누어 동향을 분석 정리하였는데, 특히 청와대의 동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 [대외적] 입장 표명 자제

☑ "여야, 판결 존중하지만...온도차, 청, 말 아껴"(뉴데일리 보도 내용)

▶ "...한편 이번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던 청와대는 이날 특별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동향을 파악하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 [대내적]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준 것으로 평가

- ① 민정 라인을 통하여 판결의 취지가 잘 보고·전달되었음
- ②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봄
- ③ 판결 선고 결과에서도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하여 준 것으로 받아들임

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1) 2017. 2.부터 시작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는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해 재판거래, 재판개입 의혹으로 확산되었고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그 한복판에는 상고법원이 자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문건들을 작성하였다.

2) 이와 관련된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피소추자는 2015.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전보되어 재판을 담당하는 일선 판사로 복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재판업무에 복귀한 뒤에서 계속하여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거점법관’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건을 작성, 보고하였다.

가) 피소추자는 2015. 3. 15. 임종헌 기획조정실장 지시로 「국무총리 대국민담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204, 205, 295, 296] 문건들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167쪽 이하).

위 문건들은 2015. 3. 12. 이완구 총리가 ‘부정부패와 전면전’을 선언하는 대 국민담화 발표를 하였는데 이후 사법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한 것이었다. 특히 문제되는 부분으로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이라고 적시하여 재판을 통해 청와대와 거래를 하여야함을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상고법원의 입법추진을 위하여

피소추자는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로 2015. 7. 27. [70] 문건, 2015. 7. 31. [71] 문건을 각 작성하여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171쪽 이하).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하여 청와대 설득방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피소추자가 위 [70], [71] 문건을 작성했다. 시진국 심의관은 2015. 7. 28. [70] 문건의 내용이 포함된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을 작성·보고하였다.

피소추자는 [70] 문건에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다고 하면서, 법원 판결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보고하였다.

- ①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
- 아래 ①과거사 정립, ②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 ② 미래지향적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 국가경제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해왔음
- 아래 ③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4대 부문 개혁 중 ④노동, ⑤교육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① 과거사 정립과 관련해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긴급조치 사건 판결을,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관련해서는 이석기 전 의원 사건, 전교조 교사 국가보안법 사건을, ③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와 관련해서는 통상임금 사건, 키코 사건, 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사건을, ④ 노동부문 관련해서는 KTX 승무원 사건, 정리해고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을, ⑤ 교육 부문 관련해서는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집행정지 사건을 소개하였다.

[71] 문건은 [70] 문건 작성 이후에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것인데, 원세훈 사건, 밀양송전탑 사건, 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건,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발레오만도 사건)을 추가했다. 그런데 발레오만도 사건은 그 당시 선고도 되지 않았다.

**마.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폐쇄 유도**

1) '이판사판야단법석'(이하 '이사야'라 함)은 다음(Daum)에 개설된 카페로서

익명에 의한 사이버 공간에 판사들 사이의 소통을 목적으로 2014. 10.경 개설되었다. 이사야에는 업무 관련 사항, 인사연수 정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제시뿐만 아니라 법원 인사,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상고법원 문제 등 사법부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도 다수 게재되었다. 임종헌은 이사야의 회원과 회원 작성 글이 늘어나던 2015. 2.경 이사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검토하면서, 피소추인을 포함한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에게 이사야와 관련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다. 법원행정처는 이사야에 상고법원 설치 등 사법정책 현안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글이 많이 게시된다는 이유로 폐쇄 유도 방안까지 검토하였다.

2) 위 이사야 관련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소추자는 박상언 법관이 2015. 2. 15.경 작성한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355] 문건을 임종헌에게 보고하였다(3차보고서 74쪽).

본 문건은 이사야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으로, ① 선배 법관이 운영진에게 신중한 운영, 위험성 있는 글의 삭제 또는 실명화를 권유하는 방안, ②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 ③ 법관 전체에 익명글 작성 관련 주의 공지를 하는 방안, ④ 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나) 법원행정처는 이사야에 대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검토했는데, 피소추자는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2015. 2. 26.경 「이사야... 우리가 스스로 지켜봐요...」 [26] 문건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이는 2015. 2.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전보되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겸임이 해제된 이후의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임종헌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소위 거점법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문건을 작

성한 것이다.

본 문건은 이사야에 게시할 글 초안으로서 민감한 글은 일정 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 하자(이른바 ‘평 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피소추자는 2015. 2. 27.과 2015. 3. 1. 자신이 배우자인 김모 판사의 아이디어(김모 판사는 2015. 2. 3. 이사야 가입신청) 이사야 게시판에 접속하여 민감한 글은 일정 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하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글에 대한 반응과 이사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 보고하였다.

다) 피소추자는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2015. 3.경 [26] 문건 기재 게시글 초안을 이사야에 게시한 이후 카페의 동향을 분석한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27, 28]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피소추자는 [27] 문건에서, 위 게시글 초안을 이사야에 게시한 이후 그 조회수를 체크하고 취지에 공감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라며 카페의 동향을 분석하고 추후의 논의·논쟁의 추이를 관찰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심지어 게시글 열람 추이를 지켜보며 ‘통상적으로 평일 낮 시간에도 접속이 상당히 빈번함’이라고 보고함으로써 판사들의 게시판 접속시간까지 파악하려고 했다.

[28] 문건은 [27] 문건의 후속 보고 문서로, 위 게시글 초안 게시 이후 카페 동향을 분석하고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편, 제안 글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될 것으로 보임</li><li>● 적극적 목표 ⇨ 민감한 글에 대한 자진 삭제 문화 정착</li><li>● 소극적 목표 ⇨ 게시 글의 유출 가능성에 관하여 자각하고 지나치게 민감한 사안에 대한 무분별한 글 작성 자제 분위기 조성</li></ul> |
|---|

## 바.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1) 법원조직법 제9조의2는 “사법행정에 대한 자문기관”으로서 “판사회의”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마련된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14조에서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내부판사회의를 둘 수 있으며, 내부판사회의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하기에 판사회의의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선거 개입을 진행한다면 이는 자문기구인 판사회의의 운영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의 공식자문기구인 판사회의의 활성화를 방해함으로써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통해 조직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임종헌은 2015년과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개입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활동 및 단독판사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2016년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박상옥 대법관 임명 제청에 반대 의견을 ‘코트넷’에 올린 박노수 판사가 출마한다는 소식을 사전에 탐지하고, 위 박노수 판사의 과거 이력, 경선출마의 경위, 지지 법관들의 세부 동향까지 파악하 그 대응 전략으로 다른 경선 참여 판사의 의장 경선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문건들을 심의관들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다.

3)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관련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피소추자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박노수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관하여 선거 결과를 분

석하고, 전망과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2016. 3. 24.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관련 현안검토」 [192, 279, 290]<sup>5)</sup> 문건을 작성·보고하였다(3차보고서 103쪽 이하).

그런데 피소추자는 2015. 2.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전보되어, 이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겸임이 해제된 한참 이후의 시점이었다.

① “결과분석”에 있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인원 분포(민사단독 87인, 형사단독 22인, 파산단독 22인)와 표를 분석한 뒤 “표면적인 투표 결과보다 여론은 더 좋지 아니한 상황으로 추측”, “제한된 상황과 정보하에 형성된 여론이고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린 결과일 수 있으므로 향후 개선의 여지는 매우 큼”이라고 하여 박노수 판사의 ‘우호세력’이 아닌 판사들이 다수 지지를 보낸 것을 ‘여론이 더 좋지 아니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우호세력’이 아닌 판사들이 박노수 판사의 지지기반이 되지 않도록 포섭하는 것을 ‘개선’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② “전망” 부분에서는, 박노수 판사가 단독판사 의장 직선의 연례화, 사법행정 위원회 구성·운영에 영향력 행사, 사무분담내규 개정 건의 추진을 목표로 삼을 것으로 보고 각 목표 별 전망이 기재되어 있다.

③ “단독판사 의장 직선의 연례화”에 관해서는, “사법행정 당국에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서, 2015년 단독판사 의장 직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서울중앙지법 기획 라인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후보를 내는 것조차 실패하였음”이라고 평가하여 2015년 단독판사 의장 선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 라인이 개입한 점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서술하고 있다. 나아가 위 문건은 2015년과 달리 의장 직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의장 직선 체제가 상시화되고 당연시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 “판사회의 실질화를 통하여 법관들이 쉽게 세력화될 우려가 있음”이라고 판단하면서, 판사회의의

5) [192], [279], [290] 문건 중복된 것임

역량 강화·장악이 사법행정위원회 역량 강화·장악으로 이어지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세력·조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판사회의의 실질화에 반대하고자 판사회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④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운영에 영향력 행사” 목표에 관해서는, 인권법 커뮤니티에서 판사회의의 실질화·정례화, 판사회의를 통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출방식 건의 및 위원회 위원 참여, 판사회의의 기관(의장, 간사, 운영위원) 선출방식에 있어서 직선제 도입 및 후보 참여, 전국법관회의 창립을 위한 연구 및 기초 작업을 2016년 판사들이 해야 할 일로서 논의한 것을 인용하며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운영에 영향력 행사”가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로 예상”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미 공지된 사법행정위원회의 추진 일정에 따르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요소로 삼아야 함”이라고 기재하여, 판사회의가 중심이 된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 후보자 추천과 안건 제출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대응방안”에 관하여는, “전체 기조”를 “박노수 판사에게 불필요한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을 각종 판단의 최우선적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함”,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은 의장 직선제의 상시화를 초래할 수 있음”이라고 하여,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의 실질화를 견제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요 목표별로도 “구체적 대응” 방안이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사무분담내규 개정 건의 추진”에 관해서는, “중요 대응 논리를 사전에 오피니언 리더 법관들에게 주시시키고 판사들에게 충분히 전파하여 신중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사전에 여론 조성 활동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음. 선거와 달리 ‘사전선거운동’의 부담이 없음. 2014년에 이미 이슈화된 바 있어서 사전에 문제 제기와 논의를 하는 것이 어색하지도 아니함”, “의장 선출의 경우와 달리 보이콧 등의 방식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준비한다면 의장 선거 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임”이라고 하여, 법원행정처가 매우 적극적

으로 판사회의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점이 드러난다.([192] 문건)

### 3.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

#### 가. 관련규정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러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은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의 내용이, 사법권의 가장 본질적인 재판업무에 관한 대원칙인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과



헌법 제106조의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중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재판독립은 법원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내부세력 특히 사법행정권자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또한 헌법 제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불리한 처분이란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 뿐 아니라 일상적인 법관 사찰, 자발적인 법관들의 연구 모임을 위축시키려는 조치 등도 포함된다.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과 헌법 제106조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참조).

한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재판업무 자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

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법관이 사법행정권자의 지위에서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익실현의무에 기초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일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 제103조에 따른 재판의 독립 원칙과 헌법 제106조의 법관의 신분보장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소추자 등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당연한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 나. 3차보고서 판단기준

한편 3차보고서 19쪽에서는 의혹별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평가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정책결정을 통하여 실행행위로 나간 경우 뿐만 아니라 문서작성행위, 그 작성지시행위, 논의 과정, 정책결정행위 등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면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훼손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행위별 평가이며 각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특별조사단 스스로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 침해나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위 기준인 재판의 독립 등은 헌법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결국 3차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차 조사단은 위 헌법상의 기준에 비추어 정도가 남용에 미치지 않는 것을 부적절로 평가하였다는 것인데, 부적절로 평가된 부분도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에 인적 책임을 물을 때는 남용과 같

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실조사의혹을 받아 왔던 3차 조사단조차 사법행정권의 남용 또는 부적절로 판단한 행위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등 헌법가치의 중대한 위반으로 적어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기준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 다.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 1)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관련 행위

피소추인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보고한 것은 그 실행 여부를 떠나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이 재판의 독립을 저버리고 청와대와 적절하지 못한 유대·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피소추인은 본안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설령 대법원의 잠정적 결론과 다른 방향의 결론이 보안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의 심증이 집행정지 사건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공개된 이상 BH 등의 동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임”이라고 하여, 아직 선고도 나지 않은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의 판결 결과를 미리 내리고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재판독립의 원칙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특별조사단도 피소추자가 작성한 [151] 문건에 대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에 관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피소추자는 재항고인용 여부와 재판 시점에 관하여 청와대의 입장을 분석한 후 상고법원의 입법 추진 등을 위하여는 재항고를 인용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고

그 결정시기는 통진당 위헌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하여야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이 문건은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재항고인용의 결론이 있게 되면 후에 대법원의 본안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결론이 유지될 것으로 함부로 관측하고 있는바 이러한 검토는 실행 여부를 떠나 검토 그 자체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청와대와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하여 [151], [58], [204, 205, 295, 296], [70], [71] 등의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에게 보고한 것은 그 실행 여부를 떠나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며, 특별조사단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이는 곧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등 헌법과 법률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 2) 원세훈 사건 재판부 거래 의혹 관련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재판예규 제1306호)」는 사법행정지원이 필요하거나 사법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각급 법원의 보고책임자가 법원행정처에 접수 및 종국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예규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및 전·현직 법원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등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등을 필요적 보고 대상사건으로 규정하면서(제3조 제1항), 사안의 내용과 국민적 관심도 등에 비추어 신문과 TV 등 언론매체에 보도된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중요사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위 예규에 따라서 법원행정처가 판결이 내용과 파장, 여론 등을 검토, 분석하여 평가하고 내부보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 전후로 청와대와 원세훈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청와대에 편향적인 입장을 설명하고, 상고심을 신속히 진행하여

불만이나 오해의 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보고한 것은 재판독립의 원칙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추가조사위원회도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청와대와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판결 선고 전에 청와대의 요청으로 담당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하여 알려주려 했다는 정황, 항소심 판결 전후에 청와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청와대에 상세히 설명했다는 내용과 청와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원세훈 사건을 상고법원 도입과 청와대와의 협상을 위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위 [58], [59, 360]<sup>6)</sup> 문건을 작성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 3)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 관련 행위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따라서 진행 중에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하여 사건 내용을 조사하고 결과에 대한 영향을 예상·분석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의 권한 밖의 행위이자 직권 남용이며,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 특별조사단도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곧 있을 공개변론을 앞두고 위 [409] 문건을 작성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

6) [59], [360] 중복된 것임

한편, 3차보고서에 따르면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이 피소추자에게 청와대의 동향을 설명하고, 피소추자가 [69, 391]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결 결과에 대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소통이 비정상적이고 법원행정처 권한 밖의 업무로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도, 청와대의 동향을 작성하여 보고한 행위도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헌법 제10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기본권(헌법 제12조, 제27조)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넘어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보고서 [409] 문건을 작성하고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내용의 보고서[69, 391] 문건을 작성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 4)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관련 행위

피소추인은 정부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원세훈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함으로써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았다. 재판의 처리 방향과 시기도 법원행정처가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피소추인이 작성한 [70], [71], [204, 205, 295, 296] 문건은 실행 여부를 떠나 검토 그 자체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으로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

#### 5) 인터넷 카페 동향 파악 및 의장선거 개입 관련 행위

인터넷 카페 동향 파악과 관련하여 특별조사단은 “이사야에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은 그 수단이 적정하다고 할 수 없음. 위와 같은 방안들을 검토한 것은 법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할 것임, 나아가 행정처 전·현직 관계자들이 이사야의 분위기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할 것을 논의하고, 마치 이사야 회원이 자발적으로 올린 것처럼 하여 그와 같은 글을 실제로 게시하며,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 이후 이사야의 동향을 파악한 일련의 행위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적정하다고 할 수 없어, 법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3차보고서 87쪽).

한편, 피소추자는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판사회의의 역할을 부정하고 판사회의의 실질화를 막고 형해화 시킨다는 위법한 목적으로 선거 이후 새로 선출된 의장 및 집행부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사법행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단독판사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및 표명 자체를 어렵게 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법관들을 견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판사회의를 형해화하기 위하여 [355], [26], [27, 28], [192, 279, 290] 문건을 작성하고 부인을 통해 이사야에 글을 올려 동향을 파악한 행위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법관의 독립, 법관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 6) 소 결

이상과 같이 피소추자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헌 등의 지시에 따라 순차 공모

하여,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한 채 철저히 법원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단순히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나 부적절한 정도를 뛰어넘어 법관에 대한 사찰 등과 구체적인 재판에 개입하였다.

따라서 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헌법 제10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헌법 제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등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 4. 탄핵의 정당성

##### 가. 대통령 탄핵과의 차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파면결정을 선고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헌법, 법률 위반의 정도’와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달리 법관 탄핵에 대하여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경미한 범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004헌나1).

먼저 법관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즉 국가적 손실, 사법질서 혼란 등을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그 수가 3,000여명에 이르고, 그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숫자도 160여명에 이르며, 대법관의 경우조차도 13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설령 위 인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탄핵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공백을 동료 법관이 메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이나, 재판의 공백 등 사법질서의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일 것 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헌법, 법률위반의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 피소추자들 역시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출세가 보장된 법원행정처의 핵심 부서 등 근무를 통해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헌법상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될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한편 법관의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헌법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헌법, 법률위반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관 파면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적은 반면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형량을 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

한편 피소추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차한성,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나 임종헌 기획조정실장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이들이 법관 탄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기만료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소추자에 대하여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처

분에 의하여서는 최고수위가 정직 1년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단지 법관 징계절차에 의하여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 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사법농단에 관여한 피소추자는 정직처분으로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가 아니라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피소추자들은 대부분 법원행정처를 거치는 동안 이른바 판사에서, '사법관료'로 변모해온 이들로서 심의관 단계에서부터 발탁되어 나중에 고등부장 승진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고 나아가 법원장, 대법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른바 출세가 보장된 법관 엘리트들이다. 피소추자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현 기획조정실장(법원행정처장)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들을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에서 시킨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피해자 행세를 통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 동정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대법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물며,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가 법관징계법상 최장 1년의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재판장으로 복귀한다면, 국민의 법감정과도 맞지 않는 데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법관 정다주로부터 재판받게 되는 당사자나 대리인인 변호사들로 부터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받게 될 것이다.

## 5. 결 론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오로지 고위법관들의 사익을 추구한 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소위 법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설마 스스로 법을 어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법관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마지막 믿을만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던 법관들에 의하여,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관 이하 고위법관들,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위배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의원 등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관 정다주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2018. 1. 22.자 조사보고서
2.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3.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첨부2. 기재 문건 중 아래 가.항 내지 파.항
  - 가. [26] (150226) 이사야... 우리가 스스로 지켜봐요...
  - 나. [27] (150302)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 다. [28] (150303)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2
  - 라. [58] (150208)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 마. [59] (150210)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바. [69] (131219)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파악
  - 사. [70] (150727) 과거 왜곡의 광정(2015. 7. 27.)
  - 아. [71] (150731)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 자. [151] (141203)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 차. [192] (160324)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관련 현안검토
  - 카. [295] (150315) 국무총리 대국민담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방향 검토」
  - 타. [355] (150215)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 파. [409] (130822)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시 경제적 영향 분석

# 조사보고서

2018. 1. 22.

추가조사위원회

# 목 차

I. 추가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1
II. 인사모 및 공동학술대회	5
1. 인사모 관련	5
2. 공동학술대회 관련	8
3. 조사 결과	13
III. 판사회의 및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14
1. 배경	14
2. 조사 경과	15
3.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15
4.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17
5.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18
IV.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	22
1. 개요	22
2. 관련 문서	23
3.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23
4.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보고	25
5.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27
6.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28
7. 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29
8. 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30
9. 박○○ 판사에 대한 동향 파악	31
10. 조사 결과	32

<b>V. 특정사건 담당재판부 등의 동향 파악</b> .....	33
1. 문서 정보 .....	33
2. 주요 내용 .....	33
3. 검토 .....	34
<b>VI. 종합의견</b> .....	35

#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 I. 추가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 1. 추가조사위원회의 구성

- 대법원장은 2017. 11. 3.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조사를 결정하였고, 같은 달 13. 위원회 형태로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민중기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를 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명함
- 위원장은 2017. 11. 15. 성지용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최한돈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최은주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안희길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형률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구태희 교수(사법연수원)를 위원으로 위촉함
- 위원회는 2017. 11. 17. 17:00 서울고등법원 제14층 소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의 대강과 활동계획을 정하였고, 같은 달 20. 사법연수원에서 활동을 시작함

### 2. 조사의 목적과 원칙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관한 의혹의 해소
- 물적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인적 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
- 사법부 구성원의 자존감과 명예에 흠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
- 가능하면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와 참여 하에 조사를 진행

### 3. 조사의 기간과 장소

- 조사기간  
2017. 11. 20. ~ 2018. 1. 22.
- 조사장소  
사법연수원 사무실, 제4세미나실(컴퓨터 분석실), 5층 중회의실 등



#### 4. 조사의 대상과 범위

- 조사의 물적 대상 :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임효량 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의 HDD와 SSD(저장매체)
- 조사의 시적 범위 :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2011. 11.경부터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2017. 4.경까지
- 2017. 11. 23.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조사대상인 HDD, SSD에 대한 보존조치(복제장비를 이용한 하드카피)를 요청하였고, 같은 달 27. 공문으로 재차 요청함
-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2017. 11. 29. 21:00~24:00경 HDD 3개와 SSD 3개(임종현 전 차장 사용 HDD, SSD를 제외한 나머지 저장매체)에 대하여 보존조치를 취함
- 2017. 12. 1. 11:00~12:00경 임종현 전 차장이 사용하던 HDD와 SSD는 이를 분리하여 봉인함(보존조치 없이 법원행정처가 보관함)
- 2017. 12. 22. 법원행정처에 임종현 전 차장 HDD 및 SSD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법원행정처는 협조가 어렵다고 답변함
- 2018. 1. 8. 공문을 통하여 재차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12. '추가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음'이라고 회신함
- 임종현 전 차장이 사용하던 저장매체를 제외한 나머지만 조사하였음

#### 5. 기술자문위원의 선임

- 2017. 11. 23. 물적 조사에 필요한 기술적 부분의 자문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상진 교수, 서울서부지방법원 남현 판사와 인천지방법원 오현석 판사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함
- 기술자문위원은 기술적인 자문만 하였고,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추출된 파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음

## 6. 컴퓨터 사용자 등의 조사 동의 내지 참여 여부

- 위원회는 활동개시 이후 한 달여간 조사대상 컴퓨터와 관련한 당사자들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하였으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2017. 11. 30. 공문으로 물적 조사에 대한 참관을 요청하였다가, 같은 해 12. 7. 참관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음
- 위원회는 조사대상과 방법을 한정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조사과정의 참여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물적 조사로 사적 정보가 누설되거나 비밀이 침해될 개연성이 거의 없으며, 이러한 조사에 당사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2017. 12. 26. 물적 조사를 개시함. 관련 당사자들에게 조사예정일 2~3일 전에 조사일정을 통보하고 참여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참여를 요청하거나 실제 참여한 당사자는 없었음

## 7. 조사의 방법과 문서파일의 선별

- 조사대상 및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한 검색어<sup>1)</sup>가 한개 이상 포함된 파일을 기술적으로 추출함<sup>2)</sup>
- 추출된 파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별함
  - 법원행정처(인사·감찰부서 제외)가 법관의 성향, 동향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보관한 문서
  - 위 문서 가운데 관련 자료 수집의 경위, 문서 작성의 동기와 목적,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법관의 연구 활동과 판사회의 등예의 개입 및 재판에의 직·간접적인 관여 등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서
  - 다만 법관의 인사, 내부 보고와 기관 사이의 협조, 여론에 대한 대응 등 사법행정상의 필요와 합목적성이 인정되는 문서는 제외함

## 8.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의 처리






- 물적 조사로 추출된 파일 중 암호가 설정된 파일(정상파일<sup>3)</sup>)에서 약 460개,

1) 성향, 동향,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의 이름 등

2) SSD는 저장매체의 특성으로 인한 기술적 이유로 복구율이 현저히 낮았음

유실파일<sup>4)</sup>에서 약 300개가 발견됨)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못함

- 특히 암호가 설정된 정상파일 중 아래의 5개 파일은 제목 자체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기술적 제약과 보안유지의 어려움, 협조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

 84748_(170124)인사모 관련 검토+1 [박 ]].hwp	2017-02-06 오전 12:34
 86250_(160408)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hwp	2016-04-11 오후 10:20
 86311_(160315) 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 [임종현수정].hwp	2016-04-15 오후 2:23
 86312_(160310)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인사).hwp	2016-04-15 오후 2:24
 95483_(160407)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hwp	2017-01-12 오후 2:40

## 9. 보안유지 조치

- 위원회는 조사대상 파일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의 협조를 받아 다음의 보안유지 조치를 취함
- 사법연수원 건물의 구조와 동선을 고려하여 사람의 왕래가 가장 적은 곳을 조사 장소로 선정하고,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문의 열쇠는 위원이 항상 휴대하면서 관리함
- 조사에 소요되는 장비 일체(조사용 고사양 컴퓨터 4대, 인터넷용 일반 컴퓨터 1대, 모니터 9대, 프린터 1대, ENCASE 1개)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지원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만 조사를 진행함
- 조사에 참여하는 장비운용자 등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위원이 추출된 문서를 선별하는 동안에는 가급적 퇴실하도록 하며, 조사장소에 출입하는 사람 모두(위원 포함)에 대하여 휴대전화, USB 등의 장비를 일체 지참하지 못하도록 함
- 조사장소에 장비 운용자가 있는 동안에는 위원회의 위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실무관이 함께 재실함
- 조사에 사용하는 컴퓨터는 일체 망에 연결하지 않음. 단, 필요한 경우에는

3)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파일로 원 파일명의 확인이 가능함

4) 삭제되었던 것을 복구한 파일로 원 파일명의 확인이 불가능함

전산정보관리국 실무관이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장비(속칭 '에그')를 이용하여서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함(실제 인터넷에 접속한 적이 없음)

- 조사장소에 CCTV를 2대 설치하여 조사장면을 24시간 녹화함
- 조사대상에서 추출된 파일 등은 원칙적으로 조사장소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고, 일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단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실 내에서 관리하는 '문서목록' 내지 '파일목록'에 기재한 후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고, 열람을 마친 이후에는 다시 조사장소로 반입하여 파쇄 내지 삭제하도록 함

## 10. 인적 조사

- 선별한 문서의 작성 경위와 보고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7명에 대한 인적 조사(대면방식)를 실시하였음

## II. 인사모<sup>5)</sup> 및 공동학술대회

### 1. 인사모 관련

#### 가. 인사모 동향 파악의 경위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던 이규진 상임위원<sup>6)</sup>은 2015. 7. 7. 코트넷 국제인권법연구회 게시판에 인사모 제안 글이 게시되기 이전에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으로부터 '연구회 내 소모임에서 사법제도, 법관인사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는데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한 모임으로 보이니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

#### 나. 2015년 인사모 활동내용 파악 보고

- 이규진 상임위원은 그 무렵부터 인사모 모임에 참석한 일부 회원들로부터 논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으로 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아래와

5)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의 약칭임

6) 이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편의상 '이규진 상임위원'이라 함

같이 일련의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보고함

- 보고서에는 참석자와 논의 주제, 논의 결과 등 코트넷 게시판에 일반적으로 게시되는 내용을 넘어서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특히 특정 주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한 법관과 발언 내용)과 취지, 모임 분위기와 토론 경과, 참석자들의 반응, 뒤풀이에 합류한 법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간략하게 기재되었음

1) 2015. 7. 21. 첫 예비모임 관련 보고('사법제도소모임 관련 보고'7))

- 참석자 12인의 이름(현재 소속법원, 연수원 기수 표시)
- 구체적 논의 내용(논의된 내용 전반, 주요 논의대상 등)
- 그 중 상고법원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으로 지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중립적 의견이 다수였고, 이○○ 부장만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였다고 함. 박○○ 판사 역시 신중한 입장의 의견을 밝혔다고 함.  
추후 연구를 계속하지는 의견으로 귀결된 것으로 보임』
- 『외부로의 의견 표출에 관하여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함. 커뮤니티 회장과 의견 조율, 대법원에의 의견 전달 및 의견 교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제시되었고, 그에 관하여 찬성이나 반대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함』
-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논의의 부적절 문제’ 와 ‘상고법원 등 현안에 관하여 다른 의견의 외부 표출 문제’ 8)에 관한 검토의견  
『향후 논의의 수준이나 범위가 상향되거나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추후 상황을 체크해 나가면서 막을 수 있는 문제로 보임. 모임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임』  
『관심을 갖고 추후 모임활동을 주시한다면 상고법원에 관하여 대법원과 다른 의견의 외부 표출문제는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2) 2015. 8. 11. 두 번째 예비모임 관련 보고('사법제도소모임 관련 보고(2)')

- 참석자 16인의 이름(현재 소속법원, 연수원 기수 표시)  
『부장판사 참석자가 늘었음. 총무인 박○○ 판사가 개별적으로 이메일에 의한 연락을 취하여 모임을 주도하였음』

7) 해당 문건의 명칭. 문건 자체에서 굵은선 처리나 밑줄 표시가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표시하고 사람 이름은 비실명 처리함. 이하 같음

8) 실장회의 및 처장 주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점임

■ 상고법원 논의 내용

『이○○ 부장판사가 찬성론 입장, 이○○ 부장판사가 반대론 입장의 기초발표를 하고, 결론을 내지 않은 채 각 입장의 논거에 관하여 상호 토론이 이어졌다고 함』

『이○○ 부장판사는 문건을 작성하여 와서 심도 있는 비판을 하였고 회원들에게 이를 공개하지는 않은 채 구두로 발표만 하였는바, 추후 어딘가에 발표하려는 생각으로 보였다고 함』

『외부로의 의견표출 문제에 관하여는 신중론이 우세하였으나, 최소한 인권법 커뮤니티 내에 당일 논의된 내용을 올리는 문제에 관하여는 다수가 찬성의사를 표하였다고 함. 박○○ 판사가 당일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2015. 8. 21. 이전까지 참석 회원들에게 회람하기로 하였고, 커뮤니티에 올리는 문제에 관하여는 회람 이후 의견을 다시 모으기로 하였다 함』

3) 2015. 9. 14. 정식 첫 모임 관련 보고['인권과 사법제도소모임 관련(3)']

- 2015. 9. 9. 인사모 주요 회원들과의 저녁자리 참석자, 회장 발언 요지, 참석자들의 반응
- 2015. 9. 14. 정식 첫 모임 주제 발표자 4명의 이름(소속 법원, 연수원 기수)
- 참가법관들 중 배석판사들과 부장판사들의 의견
-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수 명의 법관이 뒤풀이에 함유한 사실 및 해당 법관들의 이름

다. 2016년 인사모 활동내용 파악 보고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5. 11. 20.로 예정된 국제인권법연구회 총회에 앞서 2015. 11. 10. 커뮤니티 게시판에 회장선거 불출마의사를 공지하였으나, 법원행정처(실장회의 및 처장 주례회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지 인사모에 대한 창구 역할 내지 협조 차원에서 회장 연임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규진 상임위원은 총회 이틀 전 회장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번복함. 결선투표 결과 이규진 상임위원이 다시 회장에 당선됨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6년에도 인사모 모임 중 민감한 주제를 다룬 논의와 그 결과 등을 파악하였는데, 특히 2016. 4. 8. 제7회 모임(논제: 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법부장 제도의 향방) 이후 그 모임에 참석한 법관을 통해 강경발언을 한 법관과 발언내용 및 특정 법관의 역할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였고, 그 무렵 인사모 카톡방이 개설되어 있음도 확인하여 보고함

## 2. 공동학술대회 관련

가. 진상조사 당시 제출된 대책문건 (1), (2)

-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이규진 상임위원은 진상조사보고서에 언급된 '대책문건 (1), (2)'를 제시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하는 공동학술대회에 관한 대책을 '대책문건 (1), (2)'와 같이 2회에 걸쳐서 자신이 실장회의와 처장 주례회의에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대책문건 (1), (2)'외에도 5개의 공동학술대회 대책문건이 추가로 발견됨. 위 추가 문건들은 대부분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되어 기획조정실장과 임종현 전 차장에게 보고된 다음 실장회의와 처장 주례회의에서 논의됨[대책문건 (1), (2) 역시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된 내용을 이규진 상임위원이 전체적으로 수정한 후 실장회의에 제시하여 논의 또는 보고한 것으로 확인됨]
- 이규진 상임위원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법원행정처 실장들과 조사에 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자신이 최종적으로 수정하여 보고한 '대책문건 (1), (2)'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된 나머지 추가 대책문건들의 존재 및 논의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함으로써, 결국 '위 대책문건 (1), (2)'가 작성·논의된 이후에도 법원행정처가 여러 차례 공동학술대회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한 사실 및 논의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음
- 이는 이규진 상임위원이 이탄희 판사에게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취지의 실언을 하는 바람에 이번 사태가 야기된 것에 따른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내부 분위기가 강하였고, 이규진 상임위원은 그러한 법원행정처 내부의 분위기와 요청 때문에 위와 같이 대처한 것으로 보임

나. 추가 확인된 5개 대책문건

- 추가 확인된 5개 공동학술대회 대책문건은 대부분 임종현 전 차장의 지시로 기획조정실 심의관들과 다른 실의 심의관이 회의의 기초자료로 작성하여 기

획조정실장과 임종현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위 각 문건들이 실제로 실장회의 또는 처장 주례회의에 제시되어 보고 및 논의됨

- 위 각 문건에 의하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 개최가 확정(2017. 1. 23.) 되기 이전에는 주로 회장의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문제제기, 연구회 명의로 행사 고수할 경우 회장의 학술대회 불참과 사임, 예산 지원 감축 등의 대책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됨
-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의 개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기존 논의를 포함한 단기방안(공동학술대회 대응 중심)과 중기방안(인사모 해소 유도 및 제재 방안 중심)이 로드맵(p12, 13 참조)으로 제시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동학술대회 주제 한정 등의 협의 불발시 회장 등 사퇴 및 탈퇴, 중복가입 해소 조치 등이 포함되었으며, 나아가 이로 인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반 회원들의 동요 및 탈퇴, 공동학술대회의 고립화 분위기 조성, 대안적 인권 대형 행사 개최로 인권 관련 법관들의 관심을 다른 연구회로 유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됨

다. 5개 대책문건의 주요 내용

1) 2017. 1. 12.자 인사모 대응 방안

-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인사모는 최초 설립 당시부터 **국제인권법 커뮤니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소모임**이었으나, **법관 사회 반발을 우려하여 현재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중임**
  - **국제인권법 커뮤니티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주제로 대학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경우** 부정적 파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임 ⇨ 적극적 대응책 마련 필요
- [총론] 대응의 기본방향
  -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됨
    - 문제 해결의 주체는 **現 회장**임 ⇨ 전임 회장이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
    - **법원행정처가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회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후속 조치가 있을 것임을 암시**해서는 안 됨
  - 철저하게 '단체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접근해야 함



- 현 회장은 핵심 세력이 보여주는 **비민주적인 모습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을 확보해야 한다고 호소**해야 함
- [각론 구체적인 대응 방안]
  - 2017. 1. 15. 운영위원회 속행 ⇨ 사임하겠다는 뜻 시사
    - 회장은 “① 커뮤니티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② 커뮤니티 예산을 활용하여, ③ 외부와 연계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설명
    - 만일 운영위원들이 회장에게 강력하게 반발할 경우, 처분한 어조로 위와 같은 설명을 반복하면서 ④ 위와 같이 문제점이 많은 아례적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커뮤니티 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단체 운영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 같다는 설명을 추가함
    - 운영위원들이 계속 반발할 경우,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더 추기로 논의해 보자고 하면서 속행하자고 주장**
    - 운영위원들이 속행하지는 주장에도 반발할 경우, 회장은 “여러분들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제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만 회장직을 사임하는 것이 좋겠다” 고 설명 ⇨ 회장이 사임의 뜻을 시사하면 운영위원들이 더 이상 강경한 주장을 할 수는 없고 **속행에 동의할 것이며, 아마도 뒤풀이에서 이야기하자면서 뒤풀이 자리로 이어질 것임**
  - 2017. 2. 말 운영위원회 개최
    - **소모임' 주관 행사로 개최할 것을 주장**, '커뮤니티' 주관 행사 고수 시 '임시총회 소집' 도 검토 가능(단,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할 필요 있음)
- 커뮤니티 주관 행사 고수 시 주요 대책
  - ① 커뮤니티 명칭 사용 및 회비 지출 승인 거부
  - ② 신임 회장 학술대회 불참 → 신임 회장 사임
    - **신임 회장 사임**하면서 **고법부장 이상 회원들도 함께 탈퇴**하는 것이 적절
  - ③ 예산 지원 감축(최소화)

2) 2017. 1. 16.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경과

- 운영위원의 주요 발언 내용 정리
  - 회장: 커뮤니티 명의 사용한 외부행사 반대, 추가 논의 위한 운영위원회의 속행, 공동세미나의 연기 주장
  - 나머지 운영위원들의 의견
- 절차적 문제와 대화연기 의견에 대하여 가장 강경하게 반대한 법관의 이름
- 회의 결과

- 연구회 명의로의 행사 고수할 경우 강경인(연구회 명칭 사용 및 회비 지출 승인 거부 등과 유화인연구회 자체 학술행사로 개최하는 안을 제시) 및 각 안의 문제점

3) 2017. 1. 23.경 인사모 대응 방안

- 국제인권법연구회 온라인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당일 연구회 회장이 주장해야 할 내용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강행될 경우의 대책이 기재되어 있음(위 2017. 1. 12.자 대응 방안과 내용이 대동소이함)

4) 2017. 1. 말경 인사모 관련 대응 방안

- 2017. 1. 23. 운영위원회에서 2017. 3. 25. 공동학술대회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연계하여 개최하기로 의결된 후 작성됨

■ 공동학술대회는 사법부 독립 및 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성 있으므로 **대응 로드맵 마련 필요**

■ 구체적 대응 방안

■ 단기방안: 공동학술대회 관련 대응 중심

- 법관 상대 설득 논리

예규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연구회가 해당 전문분야를 넘어서는 활동을 하는 것은 규정에 반한다는 취지의 문제제기

- **다수 학원이 인사제도 세미나 개최의 부적절함에 동의할 경우** ⇨ 세미나 개최 백지화 및 인사모 활동 위축

- **부적절하지 않다**고 연구회 여론이 모아질 경우 ⇨ **‘회장 직위 정상수행 불가’** 를 이유로 **회장직 사퇴**(고법부장, 심의관 출신 지법부장이 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한 지지 차원에서 명분을 내세워 탈퇴) ⇨ 다수 법관들의 심리적 거리감 및 주저감 형성

■ 중기방안: 인사모 해소 유도 및 제재 방안 중심

① **모든 전문분야연구회 상대로 규범 준수 요구 → 중복가입해소 + 연구 범위 준수 관행 정착시 인권법연구회가 가장 큰 타격**(중복가입자 일제 해소 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중 **50%가 넘는 200명 이상 급감** → 다른 연구회에 비하여 현저한 타격)

② 규정 위반 연구회에 대한 예산 등 지원 삭감 및 해외 출장 제한

③ 보편적 인권 관련 사법부 내 다른 조직에서 대형 행사 주도

현재 국제인권법 소속 법관들 상당수는 ‘국제인권’ 이 아닌 **보편적 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으로 가입** ⇨ **보편적 인권 이슈 관련 다른 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은 국제인권법연구회로의 독립적 유입을 방지**하는 가능

- 인사모 활동에 대한 자성 목소리 유도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자신들이 인권 관련 사법부 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임하고 있음. 사법부 내 다른 기구(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사법정책연구원 등)가 국제인권법의 전형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슈에 관하여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 **사법행정 관련 문제제기에 매몰되어 정작 국제인권 관련 이슈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법 내부 자성 목소리 유도 가능

- 로드맵(안): 아래 표

시기	방안 예시
1월 하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법 회장 등이 회원 상대 공식 문제제기 '인사제도 외부학술행사는 국제인권법의 전문분야 연구범위와 무관함에도 연구회 공식 행사로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으로서 부당하고, 인권법 연구회 명의로가 아니라 인사모 명의로 행사 개최 가능한데, 이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구함'</li> <li>- 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지지 의사 밝힐 우군 필요함</li> </ul>
2월 초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인 일반 법관들이 인사모 의견에 동조할 경우 ⇨ 연구 주제 한정하는 방안 관련 협의</li> <li>-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주제로 심도 깊은 세미나 개최</li> <li>- 사법부 예산 관련 논의도 상정 가능</li> </ul>
2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하 협의 불발시) 회장등 사퇴 및 탈퇴</li> <li>- 선배 법관들 회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차원에서 동반 탈퇴</li> <li>- 법관들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의 활동에 심리적 거리감 발생</li> </ul>
인사이동 후 3월 초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정국장 명의 전문분야커뮤니티 운영 관련 안내 말씀 공지</li> <li>- 중복가입 금지 규정 형해화로 선량한 법관들이 피해받고 있으므로, 모든 커뮤니티 및 회원들은 3월 중순까지 자율적으로 해소해주시기 바람</li> <li>- 커뮤니티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해주시기 바람</li> <li>- 중복가입 금지로 인한 학술정보 접근 제한 해소 등을 위하여 커뮤니티의 모든 게시글은 커뮤니티 회원이 아닌 법관에게도 공개됨</li> <li>◆ 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사법정책연구원 등의 인권 관련 대형 행사 검토 및 준비 착수</li> </ul>
3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반 회원들 동요 및 탈퇴</li> <li>- 선배법관들 대거 탈퇴 및 중복가입 금지 해소 조치 등의 영향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꺼리는 분위기 형성</li> </ul>

3월 하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관 인사제도 관련 연세대 법전원과의 공동학술대회 개최</li> <li>- 인사모 등 강성 세력 중심 개최, 고립화 분위기 조성</li> </ul>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배정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예산 삭감 등 지원 제한</li> <li>- 인사모에 대한 자연스러운 활동 중지 여론 조성</li> <li>◆ 대안적 인권 대형 행사</li> <li>- 인권 관련 법관들의 관심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아닌 다른 연구회 등으로 이동</li> </ul>

### 3. 조사 결과

- 이규진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던 2015년과 2016년에 인사모 회원들의 모임 및 활동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문건들이 확인되었음. 위 문건들에는 인사모 모임에서 특정 주제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과 결과를 포함해서, 발언자들의 구체적인 발언내용과 취지, 모임의 분위기와 토론 경과, 참석자들의 반응, 뒤풀이 상황 등에 이르기까지 모임에 참여한 법관들의 동향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
- 이규진 상임위원의 인사모 활동내역 보고는 인사모 설립 당시인 2015. 7.경의 예비 모임부터 2015. 9.의 정식 첫 모임 때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2016년에는 정기적인 보고가 거의 없다가 2016. 말경에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무렵부터 다시 법원행정처에서 인사모 및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이 긴밀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문건으로 이규진 상임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제출한 '대책문건 (1), (2)' 외에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이 작성한 5개의 추가 대책문건이 확인되었음. 위 추가 대책문건들은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주로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 의해 회의자료로 작성되었고, 실제로 위 문건들은 실장회의와 처장 주례회의 등에 제시되어 위 문건들에 기재된 대응방안이 논의된 점에 비추어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견제 논의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주도한 것으로 보임
- 법원행정처의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초기 대응은 주로 공동학술대회를 연구회 내부행사로 축소시키고 외부 발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었

으나, 공동학술대회 개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로는 기획조정실에서 마련한 '공동학술대회 대응을 중심으로 한 단기 방안'과 '인사모 해소 유도 및 제재를 중심으로 한 중기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중기 대응 방안 중 일부인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실행되었음. 그 이외의 중기 대응 방안으로 국제인권법 연구회 예산 삭감 등 지원 제한, 다른 전문분야연구회 등의 인권 관련 대형 행사 개최로 인사모를 고립시키거나 견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sup>9)</sup>

### III. 판사회의 및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 1. 배경

- 우리법연구회는 2015. 5.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여 상고법원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압도적이었음을 발표함. 이에 법원행정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연구회 탈퇴 후에도 교류를 지속하면서 상고법원 반대 논의의 주축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세 걸집 방지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검토함<sup>10)</sup>
- 인사모도 2015. 7. 21. 예비모임에서 상고법원 논의를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방안 등 사법제도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자, 법원행정처는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법원행정처는 2015. 8.부터 2015. 10.까지 각급 법원 법관들로부터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 및 소통기구로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직전인 2016. 1. 29. 인사모 모임에서 송○○ 판사가 수직적, 관료적 사법행정체계를 수평적, 민주적 법원운영방식으로 바꾸기 위하여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판사를 판사회의에서 선출할 필요가 있다는

9) 대책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의 전 심의관들은 위와 같은 로드맵 등에 관하여 상부의 지시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이고, 중복가입 해소 조치 이외에는 대부분의 대책이 비현실적이거나 부작용이 큰 방법이었어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거나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주장하였음. 하지만 법관들의 특정 커뮤니티 및 연구 모임에 관하여 이러한 내용의 부정적인 대책과 견제 방안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논의된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임

10)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기획조정실

취지의 발표를 함

- 법원행정처는 이를 판사회의를 통한 사법행정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보고,<sup>11)</sup>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핵심 그룹의 악의적 폄하 시도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위원 추천권자인 고등법원장에게 추천 희망 법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함<sup>12)</sup>

## 2. 조사 경과

- 판사회의 및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법관들의 동향 내지 성향 등을 파악한 내용이 포함된 3개의 문건이 확인됨
- ①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은 송○○ 판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 방안 문건이고, ②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은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개입하려고 한 정황이 나타난 문건이며, ③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는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문건임
- 문건들은 모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성하였고, 작성된 이후에 기획조정실장 및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됨
- 보고서에서는 조사대상 및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의 내용을 가급적 충실하게 공개하기로 함

## 3.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 가. 문건의 작성

- 2016. 2. 24.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작성하였음

### 나. 주요 내용

- 송○○ 판사가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를 발표한 2016. 1.

11) 판사회의의 순기능 제고방안 (운영 측면 검토), 2016. 3. 14. 기획제2심의관실

12)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 2016. 4. 4. 기획조정실

29. 인사모 모임에 참석한 법관들을 기재하고, 그 중 우리법연구회 前·現 회원을 밑줄로 구분함

- 발표문의 요지, 송○○ 판사의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경력, 사법행정에 대한 주된 관심사 등을 사진을 첨부하여 기재함
- 송○○ 판사가 2016. 2. 1. 발표문에 기초하여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평'에 게시한 건의문 내용 및 그에 대한 법관들의 반응 등을 분석함
- 2016. 2. 26. 개최 예정인 인사모 모임 주제 및 참석예정자가 기재되어 있음
- 사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관하여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하면서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을 분류하였는데, 핵심 그룹으로 우리법연구회의 부장판사 6명, 평판사 5명,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부장판사 1명의 이름이 기재되었고, 주변 그룹으로는 우리법연구회의 판사 1명,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판사 9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
-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다만 핵심 그룹은 주로 우리법연구회 전, 현 회원이고, 주변 그룹은 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들이라는 취지가 기재됨
-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치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통해 소수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이 다수 일반 판사들의 호응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 핵심 그룹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제시됨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음

#### 다. 검토 결과

- 문건은 송○○ 판사를 비롯한 일선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에 대한 주장을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핵심 그룹 법관들의 판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문건에는 발표문 작성 및 발표자인 송○○ 판사의 구체적인 특징(두 연구회

의 핵심 리더, 활동방식)과 주된 관심사(판사회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으로 분류된 법관들의 이름이 특별한 분류기준과 내용도 없이 나열식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러한 내용들에 의하면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평소 동향이나 사법정책 관련 주장들은 법원행정처의 특별한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어 온 것으로 보임

-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및 그 대상자의 범위가 불분명한 '핵심 그룹'이라는 용어에 관해서 법원행정처의 일부 전 심의관들은 인적 조사 시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중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회원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 4.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 가. 문건의 작성

-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2016. 3. 7. 작성하였음

##### 나. 주요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박○○ 판사가 2016. 3. 중순에 있을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출마하자, 법원행정처가 박○○ 판사의 의장 경선 출마 경위, 박○○ 판사가 의장으로 당선되었을 경우의 문제점 및 그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건임
- 박○○ 판사의 학력과 경력을 게시한 프로필을 기재하면서 2015. 4. 16. 게시판에 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글을 게시한 경력을 기재하고 있고, 전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서 2016년에 출범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이용하여 판사 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그룹의 요청으로 의장 경선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
- 박○○ 판사가 의장으로 당선될 경우의 문제점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면서 단독판사회의 명의로 건의문, 성명서를 채택하거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등



의 사법행정라인과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 대응 방안으로는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 판사를 적극 지원하되, 그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선거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함<sup>13)</sup>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음

#### 다. 검토 결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 판사는 2016. 3. 18. 출마의 변<sup>14)</sup>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에게 코트넷 메일로 전송하였고, 그 3일 후 직급별 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출마하였음<sup>15)</sup>
-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원의 판사회의 의장 경선과 관련하여 출마 예정자의 프로필과 경력 등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선을 넘어 경선 출마의 경위와 지원 법관들의 세부 동향까지 파악하고, 그 대응전략으로 다른 판사의 의장 경선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은 대응 방안의 실행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로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임

### 5.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 가. 문건의 작성

-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2016. 3. 28. 작성하였음

#### 나. 주요 내용

- 검토 배경과 관련하여 "핵심 그룹의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폄하  
↳ 사법행정위원회가 '의례적 기구', '들러리'라는 프레임 구축 중"이라고 하

13) 문건에 지원단 중 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정○○ 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등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출마자인 ○○○ 판사와 의장 경선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음

14) 출마의 변은 ① 과거 수행했던 최선임 단독(또는 배석) 판사의 경력을 살려 모순된 제도나 관행 개선에 앞장서겠다, ②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기수별, 업무별로 골고루 잘 안배하여 간사를 선임하겠다, ③ 난치병 판사에 대한 모금운동 및 질병휴직 중 판사에 대한 연구법관 선정에 관한 내규 검토 경험을 살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앞장서 돕겠다는 취지임

15) 이와 관련하여, ○○○ 판사는 3차례에 걸쳐 추가조사위원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마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고, 법원행정처의 사주를 받아 박○○ 판사의 낙선을 위해 대항마로 나선 것이 아닌데, 법원행정처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향을 받아 경선에 출마한 것으로 오해를 받는다면 본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는 상황이기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보내 왔음

면서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 경과를 기재함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고등법원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함

- 사법행정위원회가 실제 구성되면, **핵심 그룹은 위원 위촉 결과**를 두고 다시 문제제기를 할 것임
- 각 고등법원장이 이른바 '왕당파' 로 불리는 법관(예: 행정처 심의관, 기획법관·공보관, 수석부 배석판사, 해외 유학 선발 경력 등을 보유한 법관) 위주로 위원 추천할 경우 ⇨ **핵심 그룹에게 공격 기회** 제공하는 셈
  - ① 사법행정위원회의 **출범 의의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② **핵심 그룹의 공격으로 위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
- 아래와 같은 법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고등법원장에게 정보 제공함으로써 핵심 그룹의 악의적 폄하 시도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필요 있음
  - ①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가 있으면서도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
  - ② **법관 사회에서 상징성**이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법관
  - ③ 정치적 색깔이 없으면서도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법관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고등법원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함

- 후보자 추천 기준과 관련하여, 전제조건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으로 하되, '독선적이거나,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법관은 제외'하고, 적극적 기준으로 '핵심 그룹과 유대관계'가 있고, 여성이나 장애 법관 등 '법관 사회의 상징성'이 있으며,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관을, 소극적 기준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특정 보직 경력이 있는 법관을 제시하고 있음
- 후보자 추천 명단과 관련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법관은 1순위에 적색으로, 1순위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유력한 후보군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법관은 2순위에 청색으로, 3순위는 흑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중 10명의 법관들에 대한 개별 추천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중요한 내용으로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영향력이 있어 강경한 주장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고, 추천 명단에도 '기본적으로는 보수 성향이지만,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송○○ 판사가 믿고 따르는 선배',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전략적 사고에 능하나, 주

장이 강한 편은 아님',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경선에서 박○○ 판사 지지', '비밀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개설자, 우리법연구회 핵심 그룹, 強性' 등의 기재가 되어 있음

- 세부 내용 및 추천 명단은 【별지 3】 기재와 같음

#### 다. 이후의 경과

- 기획조정실은 2016. 4. 4.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 추천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핵심 그룹 등 진보 성향 법관들의 호응을 얻을만한 법관들이 충분히 추천되어 핵심 그룹은 최소한 '위원 구성 문제'에 관한 한 더 이상 사법행정위원회를 폄하할 명분이 없다고 적시됨
- 다만, 재판제도발전위원회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원문화 개선위원회 특정 법관 1명(사유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에 대한 교체 여부를 검토함

##### ■ 문제점

- 여성 부장판사 없음
- 주류 법관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부장판사 부족
- [진보] 이○○, 장○○, 유○○
- [일반] 구○○, 이○, 조○○ ☞ 구○○, 이○ 부장판사가 強性이라는 평가

- 검토 의견으로, 부장판사급 위원 추가 추천 요청의 경우 법원행정처가 고등 법원장의 추천권 행사에 깊게 관여하였다는 오해 발생 가능성이 있고, 법원 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는 예민한 안건이 상대적으로 적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현상유지'가 제시됨
- 다만, 예민한 안건이 많은 추후 출범할 법관윤리심의위원회, 사법정책기획 위원회의 경우 특정 성향 판사의 위원회 좌지우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진보 성향 법관 후보군을 사전 검토하였듯, 이른바 주류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법관 후보군도 사전 검토하여 대항마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각 고등법원과 사전 협의'하는 방안이 제시됨

- 한편,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단은 2016. 4. 8. '사법행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사법행정위원회에 특정 성향의 법관이 상당수 참여한 반면 다수 법관의 의사를 대변할 법관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므로, 신중히 안건을 결정·회부하더라도 실제 의견 수렴 및 회의 과정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예상되는 모든 의견, 주장들을 정리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회의의 논의방향, 결론 등이 수용 불가능 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위원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바꾸는 노력을 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 라. 검토 결과

- 추천 명단 등에 기재되어 있는 ① 보수나 진보, 온건 및 강성 여부 등의 정치적 성향, ② 특정 성향의 다른 법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③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 ④ 가족관계 등의 사유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그 판단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 문건 및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 법관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분류한 특히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내용은 자칫 부정적인 이미지의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도 부적절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법원 내에서 다른 위원회 등이 구성되거나 법관들의 여론 및 동향 파악의 필요가 생길 때마다 아무런 비판 없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정보가 그대로 누적되어 관리될 위험성이 있음<sup>16)</sup>
-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을 여러 가지 경력과 성향 및 활동내용 등에 기초하여 특정한 그룹 또는 유형으로 분류한 다음,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과정에서 일정한 경력을 가진 일부 법관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른 그룹과 유형에 속한 법관들은 원천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안배하는 내용으로 후보자

16) 실제로 2016. 4. 12. 통합실무지원단에서 작성한 사법행정위원회 요구사항에 관한 보고에 첨부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명단에 기존 추천 명단에 없던 법관들에 대하여 경력, 성향, 가족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추가됨

검토를 하고 관련 정보를 추천권자인 각 고등법원장에게 제공함은 추천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 후보자 검토 내용은 이른바 진보적 성향을 가진 법관도 많이 추천되도록 하여 균형 있는 위원회가 구성된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건하거나 보수적 성향의 법관들이나 "주류 법관"<sup>17)</sup>들을 추천하고, 검토 문건에서 이른바 '強性'으로 평가된 법관들을 배제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다분하게 나타남

#### IV.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

##### 1. 개요

-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하여 평소 다수 법관들에 대한 여러 동향과 여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나타난 문건들이 상당수 발견되었음
-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제도와 사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법원행정처가 그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의견과 동향 등을 파악하거나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임
- 다만, 법관들의 의견과 동향을 파악하거나 법관 여론 수렴을 위한 정보 수집은, ① 사법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② 그 방법과 절차도 가능한 한 공개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③ 정보의 수집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④ 수집한 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어서는 안 됨
- 물적 조사를 통해 확인한 문건들 중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건들만을 골랐고, 가급적 문건의 전부를 공개함

17)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 표현을 그대로 인용함

## 2. 관련 문서

- 가.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본문 게시)
- 나.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보고 【별지 4】
- 다.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별지 4-1】
- 라.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 대응 방안 【별지 5】
- 마.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별지 6】
- 바. 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별지 6-1】
- 사. 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별지 7】
- 아.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정례화 필요성 검토 (본문 게시)

## 3.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 가. 문건의 작성 및 배경

- 위 문건은 기획조정실이 2016. 8. 24. 작성하였음
- 정운호 사태 등 전·현직 부장판사 관련 사건이 발생하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고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법원장에 의한 사법행정권한 행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방안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작성되었음

### 나. 주요 내용

- 주기적 점검 대상으로 법관의 업무영역뿐만 아니라 언행 등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점검이 필요함을 지적함. 법관의 사건처리 관련 점검 사항 이외에 법관의 언행 관련 점검 사항으로 법정 내 막말 여부와 함께, 법관의 부적절/비윤리적 법원 조직 내부 및 외부 행동을 제시함
- 공식/비공식적 방법을 망라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므로 가용한 공식적 방법 이외에도 비공식적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정보를 수집하도록 함. 다만,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

지가 필요함을 적시함

- 법원장, 기획법관 등의 공식라인을 통한 정보수집 방안 이외에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수집으로, ① 신뢰할 수 있는 거점법관(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을 통한 해당 법원의 동향 주기적 파악, ② SNS, 게시판 리서치를 통한 정보수집 등이 제시됨
- SNS, 게시판 리서치를 통한 정보수집 대상으로 ① 법관들이 가입한 카페 '이판사판'의 익명게시판, ② 여성법관들이 가입한 카페 '유스티티아', ③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법관 관련 공개된 SNS(가령 facebook) 등이 적시됨<sup>18)</sup>
-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앞부분 생략)

#### 4. 점검 및 조치 시스템 구축

##### 가. 착안 사항

###### ■ 정보 수집에서 개선사항 피드백까지 시스템화

- “정보수집 ⇨ 점검사항 추출 ⇨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 ⇨ 법원장에게 통지 등 대책 시행 ⇨ 개선사항 피드백” 의 단계별 시스템화

###### ■ 공식/비공식의 정보 수집 + 공식적 점검의 외관

- 공식/비공식 방법을 망라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 필요

- 공식적 정보수집이 주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
- **가용한 비공식적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함

- 「공식적」 점검의 외관 필요

- 비공식적 정보수집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지 필요
- 대외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점검이 진행된다는 외관 필요함

##### 나. 정보 수집

###### 1) 공식라인을 통한 정보수집

###### ■ 법원장으로부터 분기별 ‘각급 법원 특이사항’ 서면보고 수령

(이하 생략)

###### ■ 기획법관을 통한 정기적/비정기적 보고 수령

(이하 생략)

18) 문제 법관 관련 공개 SNS 점검에는 당사자 본인의 SNS 점검과 함께, 부장판사인 경우 그 배석판사나 참여관, 실무관의 SNS 점검 등이 제시됨

▣ **고충처리법관 제도를 통한 고충 보고 수령**

(이하 생략)

▣ **소통의 창을 통한 정보 수집**

(이하 생략)

2)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수집**

▣ **거점법관을 통한 정보 수집**

- **신뢰할 수 있는 거점법관**(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을 통한 해당 법원의 동향 주기적 파악

▣ **특이통계 추출 전산 시스템 개발을 통한 조기 경보체제 구축**

(이하 생략)

▣ **SNS, 게시판 리서치를 통한 정보수집**

- 법관들 대상으로 한 **익명게시판(이판사판)** 점검
- 여성법관들이 가입한 '**유스티티아**' 의 동향 주기적 점검
-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법관 관련 공개된 SNS(기령 facebook)** 점검
  - 당사자 **본인**의 SNS 점검
  - 부장판사인 경우 그 **배석판사나 참여관, 실무관**의 SNS 점검

(이하 생략)

4.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보고

가. 문건 개요

- 위 문건은 기획조정실이 2015. 2. 14. 작성한 것으로, 기획제1심의관 사용 컴퓨터 저장매체 중 '○○○'19) 폴더의 하위 폴더인 '각종 보고서'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던 정상 파일임<sup>20)</sup>
- 위 문건을 작성한 당시 기획조정실 ○○○ 심의관은, 기조실장의 지시에 따라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보고되지 않은 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가 인사이동시 삭제한 파일이므로 정식 보고서라고 볼 수 없고, 당시 기획조정실로 인사발령이 난 상태로 아직 부임 전이던 ○○○ 판사가 기조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5. 2. 15.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문건이 기조실장에게 보고되었다고 진술함. 실제

19) ○○○은 당시 기획조정실에 근무한 심의관 이름임

20) 자세한 내용은 【별지 4-1】 참조



보고된 것이라고 진술한 문건은 위 문건과 대응방안에서 차이가 있는데, ① 선배 법관이 운영진에게 신중한 운영, 위험성 있는 글의 삭제 또는 실명화를 권유하는 방안, ②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 ③ 법관 전체의 익명글 작성 관련 주의 공지하는 방안, ④ 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법관 전체의 익명글 작성 관련 주의 공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장기과제로 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함

-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는 '여성 판사 네이버 카페'<sup>21)</sup>의 회원이었던 몇몇 여성 판사들이 익명에 의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소통 등을 목적으로 2014. 10. 24. 개설함

#### 나. 정보수집 방법

-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로그인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하여 관련 게시물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거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여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임<sup>22)</sup>

#### 다. 주요 내용

- 위 카페의 개설경위와 카페 운영자, 회원 현황, 회원, 구성, 회원 가입절차, 카페에서의 의사소통 방법 및 주요 게시판 개요 등이 정리되어 있고, 이어 문제 소지 있는 주요 게시물 및 댓글이 소개되어 있음
- 상고법원 설치, 원○○ 형사사건 선고,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쌍용차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법원 인사 등의 이슈에 관한 법관들의 게시물 및 그에 대한 댓글이 문제 소지 있는 주요 게시물 및 댓글로 적시됨

21) 익명에 의한 글 게시 기능이 없음

22) 위 문건의 대응방안에는 카페의 자진폐쇄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미 확보한 아이디, 비밀번호로 회원을 가장하여 활동 중단에 대한 글을 올려 카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음. 앞서 본 기획조정실의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7)'이라는 문건에 의하면, 인사모 관련 대응 중 중복가입 관행 전면 해소가 이루어질 경우를 전제로 커뮤니티 게시물 전면 공개 방안이 실시되면 심의관 등이 의심을 감수하면서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커뮤니티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

- 대처방안으로, 언론 등으로부터 비판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사법부 현안 등에 관한 잘못된 정보 확산을 억지하는 차원에서, 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카페의 자발적 폐쇄를 유도하고, ② 법관윤리강령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후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득 및 업포용 카드로 활용하는 내용이 제시됨<sup>23)</sup>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4】 기재와 같음

## 5.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 가. 문건의 작성 및 배경

- 위 문건은 기획조정실이 2015. 7. 6. 작성하였음
- 상고법원안에 대한 내부 반대 움직임이 있고, 그 핵심 그룹은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로, 이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 및 정상적인 사법행정 시행에 불안요소가 되므로 선제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나. 주요 내용

- 반대 법관들이 세 결집을 통해 집단적 목소리를 내거나 단체행동을 할 경우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 논의를 주도하는 법관들은 성향상 단체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가능성 있다고 기재함
-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① 핵심 세력, ② 움직임의 목적, ③ 세 결집 진행정도 및 고려 중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재야인사나 민

23) 그 외 네이버 여성 법관 전용 카페 '유스티티아'에 대해서도 익명게시판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온 것으로 보임. 기획조정실이 2016. 7. 작성한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정례화 필요 검토'라는 문건에서 '유스티티아' 익명 게시글을 통해 확인한 법관 사회 여론 동향을 정리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네이버 여성 법관 전용 카페 유스티티아 게시글(2016. 5.)**

▶ '요즘 이습투자사기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보면, 참 답답하다. 법원이 재판이 가해자와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피해자에게는 최소한의 구제만을 해준다는 또는 그마저도 안해준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자신있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다는 자괴감이 든다'

(이하 생략)

▶ 육아·생활정보, 인사 정보의 교환이 중심이 된 위 카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이 게시되고, 댓글이 달리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었음

변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법관들의 자체적 움직임인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함

- 대응 방안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핵심 그룹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서고,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반대 의견을 가진 핵심 그룹을 참석하게 하여 입장 변화를 도모하며, 설득이 어려운 경우 압박책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함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5】 기재와 같음

## 6.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 가. 문건 개요

- 위 문건은 기획조정실이 2015. 8. 18. 작성하였음
- 차○○ 판사가 2015. 8. 11. 법원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토론광장, 민사재판 커뮤니티, 국제인권법커뮤니티 등에 '사실심 충실화 관련 판사 수 대폭 증원과 상고제한 추진 의견'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친분 있는 판사들에게 같은 글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의견을 구했는데, 상고법원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보이는 위 게시글이 높은 조회수를 보이면서 판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법원행정처가 그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임

### 나. 주요 내용

- 차○○ 판사의 코트넷 글 게시 경위와 게시글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 댓글의 분석, 상고허가제 등 차○○ 판사 주장 내용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차례로 정리함
- 차○○ 판사가 주장하는 상고허가제와 법관증원론이 공론화되는 경우 대법관 증원론으로 연결될 것이 우려되고, 차○○ 판사의 주장 및 이에 동조하는 법관들의 글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상고법원 입법전략에 피해가 클 것이라고 판단함
- 차○○ 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재판 준비태도, 일과 관련된 가정사, 고민하는 테마의 내용, 독일 유학 복귀 후의 동향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차○○ 판사의 주장은 코트넷 게시글 외에도 차○○ 판사가 다수의 판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sup>24)</sup>의 내용을 통해 정리되어 있음
- 차○○ 판사의 동향과 스타일 등에 관련된 부분은 '방대한 양의 충실한 해외연수 보고서', '재판 준비에 매우 철저한 성격의 소유자' 등 대체로 긍정적인 내용임
- '사전예방적 대응 필요', '행정처 경험 있는 부장판사를 통한 논리적 설득 필요', '차○○ 판사의 법관증원론에 대한 공감 표시 및 법관증원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설명'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됨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6】 기재와 같음

## 7. 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 가. 문건 개요

- 위 문건은 기획조정실이 2015. 9. 22. 작성하였음
- 차○○ 판사는 2015. 8. 11.부터 코트넷에 게시글을 계속 게시하고 판사들과 토론을 하였음. 한편 주간지 시사인은 2015. 8. 31. 차○○ 판사의 코트넷 게시글을 요약 보도하였고, 차○○ 판사는 2015. 9. 21. 시사인 온라인판에 판사 투고 칼럼 첫 회를 게재함
- 이에 법원행정처가 차○○ 판사의 언론 활동과 문제제기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임

### 나. 주요 내용

- 차○○ 판사 시사인 칼럼 중 문제되는 내용으로, 대법원의 월권적인 사실심 심리 관여, 법원행정처 사실심 충실화 대책의 비현실성, 고위직 법관들의 법관 수 증원에 대한 반대 언급 등을 지적함
- 차○○ 판사의 언론활동에 대하여는,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차○○ 판사의 언론활동과 문제제기는 계속

24) 이메일은 차○○ 판사가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포함된 다수의 판사들과 전체 메일의 형태로 주고받은 것이 인적 조사에서 확인됨

될 것이라 보인다'고 분석함

- 차○○ 판사가 본인의 facebook에 쓴 댓글 내용, 차○○ 판사가 2002년 고시공부 중 시각장애인의 사시합격을 도운 내용이 실린 동아일보 기사, 2003년 이라크 전쟁 반대운동에 동참한 내용이 게시된 문화일보 기사 등이 차○○ 판사의 끈질긴 추진력, 비주류 활동가 성향의 근거 등으로 소개됨
- 여론의 역풍을 우려를 고려하여 선부른 개입은 자제하되, 공식적인 채널로 문제 부분에 대한 안내, 사태의 추이 예의 주시<sup>25)</sup>, 일선 판사들의 오해 불식을 위한 노력 계속 추진 등이 제시됨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6-1】 기재와 같음

## 8. 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 가. 문건 개요

- 위 문건은 기획조정실이 2015. 1 ~ 2월경 작성하였음
- 송○○ 판사가 2009. 3.부터 2015. 1. 15.까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6개 글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함

### 나. 주요 내용

- 송○○의 프로필(문건에 기재된 프로필 첨부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과 함께 성향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기재함
- 송○○ 판사에 대해서는 ① 사법제도 및 인사시스템 등에 관심이 있고, ② 정세판단에 밝은 전략가형이며, ③ 법원 집행부에 대한 불신 및 의혹이 있고, ④ 선동가,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이 있다는 평가가 기재됨
- 문건에 적시된 송○○ 판사의 게시글은 '사법부를 흔드는 두 가지 손(촛불 재판 의혹 규명 촉구)', '정기인사에 앞서 법원장님들께 올리는 글' 이외에 최○○ 부장판사의 FTA 강행처리 비판 글 게시 이유 윤리위 회부에 대한 비판,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한 의견(3건) 등임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7】 기재와 같음

25) 차○○ 판사가 존경하는 선배, 친한 선후배 명단에 대한 취합, 관리의 필요성도 제시됨

## 9. 박○○ 판사에 대한 동향 파악

### 가. 문건 개요

- 기획조정실이 2016. 7.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정례화 필요성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하였음
- 당시의 여러 가지 대내외 상황에 비추어 법관 사회 내부 여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을 전제로 2016년에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실시방안에 대한 검토 등이 문건 작성의 배경으로 제시됨

### 나. 관련 내용

- 당시의 대법관 제청결과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정리함. 그 중 '박○○ 판사가 단독판사들과의 식사자리 등에서 위 주제에 관하여 일체 언급이 없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박○○ 판사의 학생운동 경력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측면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추진 중인 좋은 재판연구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는 등, 박○○ 판사가 선출을 통해 취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이어서 법관 여론 주도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박○○ 판사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나타남
-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 법관 사회 여론 동향 및 간담회 필요성

##### 가. 최근 법관 사회 주요 이슈

▣ **대법관 제청 관련** ⇨ **비판적 법관들도 공개 반발은 어려운 상황**

▣ **선출을 통해 취임함으로써 법관 여론 주도 명분을 가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박○○ 판사)의 경우** ⇨ **표면적으로 언급 없음**

▶ 최근 서울중앙 단독판사들과의 식사자리 등에서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 없었음 ⇨ 자신이 추진 중인 '좋은 재판 연구회' 활동에 집중

- ※박 판사의 경우 학생운동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초임지가 서울중앙임에도 재판연구관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마시 슬로건인 좋은 재판, 행복한 판사 관련 활동에 집중할 것' 이라는 평 있음

- 그 외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박○○ 판사 동향 파악」이라는 문건이 파일 형태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위 문건은 삭제된 상태로 복구되지 않았음

## 10. 조사 결과

-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 등에 관한 비공식적인 정보수집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작성의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이라는 문건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법원사찰', '재판개입'의 비판을 받을 우려가 크므로 극히 자제되어야 함
-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사법행정 목적의 달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 보완 등을 이유로 가능한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임
- 심의관 출신 등의 이른바 '거점법관'을 통하여 해당 법원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코트넷 게시판뿐만 아니라 법관들의 익명카페, facebook 등의 SNS에서까지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을 파악해 왔으며, 나아가 익명카페 등에 상고법원 설치 등 사법정책 현안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글이 많이 게시된다는 이유로 익명카페 자진 폐쇄의 유도 방안까지 검토함
- 동향과 여론을 파악한 대상에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회원 등 평소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 추진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이 많았고, 그 외에 대법관 제청과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현안에 대하여 대내외 게시판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법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 사법정책 현안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은, 의견의 적극적 수렴과 사법정책에의 건설적인 반영 등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비판 여론에 대한 이른바 '선제적인 대응'으로 설득과 통제, 규제와 압박 수단의 검토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해당 정보수집의 목적과 의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문제됨

- 우리법연구회, 인사모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프로필 등 일반적인 신상정보 이외에도 성향과 스타일, 과거 연구회 활동이력, 코트넷의 비판적 게시글 이력, 최근 동향 등이 민감한 개인정보와 함께 수집되어 여러 문건에서 신중한 고려 없이 사용되었고,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 등 법관들의 성향을 부정적이고 단정적으로 규정한 용어 역시 합리적인 기준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V. 특정사건 담당재판부 등의 동향 파악

### - '원○○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1. 문서 정보

- 위 문건은 기획재1심의관 사용 컴퓨터 저장매체 중 '2014년 ○○○' 폴더의 하위 폴더인 '기조실'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었던 정상 파일임<sup>26)</sup>
- 위 문건은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동향과 성향을 파악하여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력한 주요 키워드 중 '김동진'<sup>27)</sup>, '동향'이라는 키워드로 추출되었음
- 위 문건은 원○○ 외 2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정원법위반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sup>28)</sup>)의 선고일 다음날인 2015. 2. 10. 작성되었음

#### 2. 주요 내용

- 피고인 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서 특정 외부기관(BH), 여야 각 당, 언론, 법원 내부의 동향과 반응을 파악하여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임
-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담당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한 경위와 내용, 위 판결 선고 이후에 외부의 여론 동향과 더불어 법원 내·외부의 인터

26) 위 폴더 명 '2014년 ○○○'에 기재된 ○○○ 당시 심의관은 위 문건을 작성한 바 없고, 본 적도 없으며, 위 문건의 양식은 행정처가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라고 진술함

27)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임

28)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전의 2심임



넷 공간에서 판사들이 위 판결의 평가 내지 감상을 게시한 글과 댓글의 내용이 기재됨

-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는, 외부기관(BH)의 문의에 대해 우회적·간접적으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렸고,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외부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기재가 있음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8】 기재와 같음

### 3. 검토

-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재판예규 제1306호)'는 사법행정지원이 필요하거나 사법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각급 법원의 보고책임자가 접수 및 종국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sup>29)</sup> 보고된 중요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가 판결의 내용과 파장, 상소심 전망, 판결에 대한 대내외 여론 등을 검토, 분석하여 평가하고 내부 보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 업무의 일환으로 보임
- 그러나 위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원○○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 후에 걸쳐 특정 외부기관과 사이에 특정 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위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는 외부기관의 문의에 따라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하여 알려주려 했다는 정황,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외부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내용이 담겨 있는바, 이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음

29) 위 예규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및 전·현직 법원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등이 피고인인 형사 사건 등을 필요적 보고 대상사건으로 규정하면서(제3조 제1항), 사안의 내용과 국민적 관심도 등에 비추어 신문과 TV 등 언론매체에 보도된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중요사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조 제2항)

## VI. 종합의견

### 1. 경과

- 위원회는 활동개시와 함께 조사대상 컴퓨터를 특정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관련 당사자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였음
- 공용 컴퓨터에서 사법행정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개인적인 문서와 이메일 제외)가 조사의 대상이고, 문제된 시기에 작성된 문서를 현안과 관련한 키워드로 검색하여 해당 문서만을 선별하며, 조사 과정에 관련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다면, 관련 당사자의 사적 정보가 누설되거나 비밀이 침해될 개연성이 거의 없고, 이러한 문서의 열람에 당사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조사에 착수하였음
- 문건에 나타난 대응방안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실행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등은 위원회의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문건과 관련된 인적 조사는 해당 문건 작성자, 작성 경위와 보고 관계 등을 확인하는 선에서 이루어졌음

### 2. 문서 선별과 판단

- 법관이 사법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사법행정 담당자가 법관들에 관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이념적 성향, 인적 관계와 행적 등을 분석·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러한 문서는 그 대응 방안이 실현되었는지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그러한 경위와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음
- 위원회는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작성한 문서 가운데 정보 수집의 절차와 수단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내용이 사법행정상 필요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서를 보고서에 담았음

### 3. 조사 결과

#### 가. 인사모 및 공동학술대회와 관련하여

-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에 대한 동향파악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사법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연구 활동을 제한하고 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한 것 또한 방안의 실현 여부를 떠나 합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나. 판사회의 경선과 관련하여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출마한 법관의 인적 사항과 세부 동향을 파악하고 다른 판사의 선출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마련한 것은 대응 방안의 실행이나 성공 여부를 떠나 사법행정권의 판사회의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음

#### 다. 사법행정위원회와 관련하여

- 특정 연구회 회원인지, 이들과의 친소관계, 정치적 성향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핵심그룹과 주변그룹, 진보와 보수, 강성과 온건 등으로 법관을 분류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명단을 작성한 부분은 그 분류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정 집단의 법관 내지 특정한 가치관을 지닌 법관을 특별히 취급하거나 배제의 요소로 이용할 여지가 있음

#### 라.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과 관련하여

- 사법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의 활동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작성하여 보고한 문건들로서 인사나 검찰부서의 필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 볼 여지가 있음. 그 내용 가운데 내부 게시판, 법관들의 익명카페, 페이스북 등의 SNS 및 행정처에 호의적인 법관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을 파악하고 익명카페의 자진폐쇄 유도방안까지 검토한 것은 수단

과 방법의 면에서 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특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핵심그룹으로 분류하여 그 활동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념적 성향과 행태적 특성까지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도 법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볼 수 있음

마. 특정사건 담당재판부의 동향 파악과 관련하여

- 법원행정처가 외부기관과 사이에 특정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외부기관의 문의를 따라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하여 알려주려 했다는 부분은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음

제목: 이사야...우리가 스스로 지켜봐요...

## 1. 새뱃돈 사건

네이버에 소위 중산층 이상 사는 엄마들이 정말 거리낌 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시판이 있어요. 남의 눈, 귀 의식하지 않고 쇼핑, 육아, 시월드 문제에 관해 노골적인 수다를 나누는데, 특히 그 정보력이 엄청나서 중독성이 대단하답니다.

근데 그런 노골적인 수다가 가능한 원동력은 바로 엄격한 회원제 비공개 카페라는 점이에요. 기존 회원의 초대와 시삽의 승인을 통해서만 게시판 접근이 가능한데, 흠... 우리랑 많이 닮았죠? 암튼 그런 공간 속에서 맘들은 남편 욕, 시어머니 욕도 후련하게들 쏟아내는 표현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설 연휴에 맘들을 발각 뒤집어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기사를 보신 판사님들도 계실 텐데요. 카페 게시판에 어떤 맘이 올린 속풀이 글이 '새뱃돈 차액 돌려달라는 시댁 형님'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된 거예요. (<http://issueviewer.tistory.com/449>)

게시판은 발각 뒤집혔죠. 아니, 우리끼리 속풀자고 한 얘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떡하냐...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집 사람들은 알 텐데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되냐... 대체 누구냐, 색출해서 쫓아내자 등등... 하지만 유출 경로는 추측만 난무할 뿐이었어요. 사실 유출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저도 기사화되었으니 옮기는 거지만, 맘만 먹으면 우리 카페에 그 글을 퍼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맘들은 '핑'을 해요. 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 2. 법복 입은 가면무도회

탐 크루즈가 나온 '아이스 와이드 셋'이란 영화 아시죠? 유명한 가면무도회 장면이 있어요. 좀 야한!... 저는 요새 그 이미지가 종종 떠올라요. 우린 이 카페에서 가면무도회를 즐기고 있는 거죠. 서로 누구인지 모르는 채 속이야기를 편히 풀어놓죠.

근데 최근의 이 모 부장님 상황을 보면서 전 그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즐기는 무도회는 아이스 와이드 셋에서처럼 밀폐된 저택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우린 뺨 뚫린 들판에서 또는 대로 옆 공원에서, 가면은 썼으되 법복을 입고 우리 신분은 노출시킨 채라는 것을...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는 타이틀을 단 게시판 아래에서는 우리는 판사로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당장 보세요. 조선일보 기자가 저희 게시판 주위를 킁킁거리고 있어요. 우린 이 공간이 밀폐된 방음시설이라고 믿었지만, 실상은 유리박스 같은 곳이에요. 인터넷에서 '익명'이란 건, 사실 ISP들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면 심한 표현일까요? 여기 들어올 때 로그인 안 하셨어요? 요새 '로그인 유지' 기능 때문에 점점 무감각해져요. 심지어 기자들이 '귀대기'까지 시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전관예우가 어떨고, 이 모 부장님이 어떨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려고요.

유스티티아도 있지 않냐구요? 거긴 달라요. 거긴 실명을 걸고 활동해요. 그래서 책임감이 남다르죠. 소곤소곤 기능이 있어봤자, 여차피 서로 실명을 걸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나온 이야기는 일부 익명글이라도 '다함께 책임'이란 생각이 있어요. 거기선 최소한 동료였던 이○○ 전 부장님 호칭을 '이 사무장'으로 하니 마니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올 거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러려고 익명인 걸까요?

같은 이야기인데, 우린 가면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사단이 나도 다치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법복을 입고 있으니까 '판사'는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럼 여기 모인 우리들 때문에 또 우리 동료, 선후배들이 팬시리 욕을 먹고, 그럼 그 분들은 우리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할 거예요. 밥조에서 시침 똑 떼고 있으면 그만이겠지만, 그냥 그래도 될까요?

우리가 탄 뗏목은 그냥 뗏목이 아니고, 사실은, 사실은요. '판사호'라고 버젓이 쓰여진 뗏목이에요. 그건 기자들이 이미 알고 세상이 아는 일이 되어있어요. 그냥 뗏목 갈아타고 말 일일까요?

### 3. '소 잃으면 외양간 버리자' 대신에 우리도 평?

지난번에 민감 정보에 관해서 우리 카페가 내린 결론은 '우리 양식을 믿자,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게시판을 달자'였어요. 고상한 결론이긴 했지만 달리 표현하면 '소 잃으면 외양간 버리자'뿐이에요. 고칠 수도 없고 버려야 한다니요. 너무 아쉽지 않나요? 그래서 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언급한 맘들 카페에선 '평'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연엔찌라시 올리고 나서 주로 하던 건데, 이제는 보편화되었어요. 뭐냐면 좀 민감한 글은 글을 올리면서 올리는 사람이 '이 글은 몇 분 후에 평합니다'라고 예고해요. 그럼 그 한정된 시간동안만 다양한 댓글, 의견을 주고받고, 약속된 시간이 되면 글쓴이가 글을 자삭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욕, 19금 이야기, 연엔스캔들 이야기도 그래서 가능해요.

우리도 스스로 보기에 '판사가 이러이러한 글을 올렸다'라고 기사가 난다면 뭐하다 싶은 글은 평하기로 하는 게 어떨까요. 꼭 이 게시판에 우리 생각들을 축적시켜 놓을 필욘 없잖아요. 나중에 추억삼아 볼 일도 없고.

글구 운영진도 스스로 평하지 않는 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주세요. 전 제가 이 공간의 일원으로 멍하니 있다가 팬시리 동료들한테 미안해지는 상황은 싫습니다.

다들 한 번 생각해주세요. 이런 글 '운영건의' 게시판이 맞지만, 거긴 아무도 안 들여다볼 거 같고, 우리 카페 유지하려면 지금처럼은 어려울 거 같아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 거 같아요. T.T



##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 1. 개요

#### ▣ 2015. 2. 27., 3. 1.의 2회에 걸쳐 게시판 운영에 관한 제안 글 게시

- 민감 사안 글은 단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할 것을 제안

- 현재 조회 수

- 전체 회원 수 388명
- 2015. 2. 27. 게시 글 ⇨ 조회 수 291회
- 2015. 3. 1. 게시 글 ⇨ 조회 수 162회

#### ▣ 제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임

- 취지에 공감하는 내용이 대부분임
- 구체적 내용은 아래에 첨부

### 2. 구체적 반응

#### ▣ 2015. 2. 27. 제안 글에 대한 반응

- 댓글 1 ⇨ 관심 표명[15.02.27. 08:26]
  - 문체에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다음 글 꼭 이어서 써주세요~^^
- 댓글 2 ⇨ 공감[15.02.27. 14:27]
  - 글 쓴 분의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켜준다는....
- 댓글 3 ⇨ 공감[15.02.27. 19:16]
  - 법관들이라 이 정도는 지킬 소양이 있을 거 같아요.
- 댓글 4 ⇨ 공감[15.02.28. 05:52]
  - 아 저도 이 사건 알아요. 보면서 이사야 떠올린 것도 똑같네요. 정보의 축



적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유로운 분위기 유지를 위해서는 떠가기 금지 복사 금지 평 활용 등이 적극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 ■ 2015. 3. 1. 제안 글에 대한 반응

##### ● 댓글 1 ⇨ 공감[15.03.01. 03:52]

- 좋은 고민 글 감사합니다. 원글님의 이사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네요. 저도 유사시 외양간 버리기가 불가피하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소중한 공간을 지킬 수 있는 대책 강구에 머리를 굴리게 되는군요.
- 유스랑 다르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일단 유스는 사직해도 회원 자격이 유지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만, 실명 활동으로 이미 친분이 있는 터라 그런 것 같아요. 한편 평 문화는 유스에도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평할 권리는 당연한 글쓴이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설령 댓글이 달려 있어도 말입니다. 다만 운영진에게 평 권한을 주는 것은, 운영진이나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하네요.
- 운영진에게 삭제, 검열 권한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이사에 운영진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을 듯합니다만.
- 반대로 글을 삭제할 '의무'가 운영진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 회원들이 댓글로 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다면 그때 운영진이 최종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 원글님께서 급한 대로 평문화부터 제안하신 것 같고, 저도 당장 다른 수는 안 떠오르는데, 다른 아이디어도 궁금합니다.
- 아무래도 남성 회원들이 기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익명이기까지 한 이곳이 유스보다 좀 더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걱정은, 제 근거 없는 편견의 발로이기를 바랍니다...

##### ● 댓글 2 ⇨ 공감[15.03.01. 11:33]

- 글 쓰신 분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유스는 사직 시 회원 등급이 조정





되어서 일부 게시판 글은 접근이 불가능해진다고 해요.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보다 아이들 키우는 얘기, 아주머니 얘기가 많으니 감사하게도 외부의 관심이 덜하겠지만요.

● 댓글 3 ⇨ 관심 표명[15.03.01. 21:34]

- 유스티티아는 뭔가요?;;;

● 댓글 4 ⇨ 공감[15.03.02. 00:44]

-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여기에 쓰시는 글들 모두 기자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별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코트넷에 쓴 게시물들이 왜 등록되자마자 바로 언론 보도가 되겠나요. 언론인을 가족으로 둔 법원 직원, 법관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카페의 존재도, 이 카페에 올려진 글들도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을 것이고, 다만 그 취재 과정의 윤리성에 관한 비난 가능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도되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댓글 5 ⇨ 공감[15.03.02. 07:33]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사들의 양식을 밀자..라는 건 지나치게 나이브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 3. 향후 계획

▣ **오늘과 내일 중으로 본격적인 게시 글 열람이 이루어질 것임**

- 통상적으로 평일 낮 시간에도 접속이 상당히 빈번함

▣ **좀 더 구체적인 논의 내지 논쟁이 있을 것임 ⇨ 추이를 예의 주시하여야 함**

- 논의·논쟁의 방향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임. 끝.



제목: 이사야...우리가 스스로 지켜봐요...

1. 새뱃돈 사건 ⇨ 2015. 2. 27. 게시 글

네이버에 소위 중산층 이상 사는 엄마들이 정말 거리낌 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시판이 있어요. 남의 눈, 귀 의식하지 않고 쇼핑, 육아, 시월드 문제에 관해 노골적인 수다를 나누는데, 특히 그 정보력이 엄청나서 중독성이 대단하답니다.

근데 그런 노골적인 수다가 가능한 원동력은 바로 엄격한 회원제 비공개 카페라는 점이에요. 기존 회원의 초대와 시삽의 승인을 통해서만 게시판 접근이 가능한데, 흠... 우리랑 많이 닮았죠? 암튼 그런 공간 속에서 맘들은 남편 욕, 시어머니 욕도 후련하게들 쏟아내는 표현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설 연휴에 맘들을 발각 뒤집어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기사를 보신 판사님들도 계실 텐데요. 카페 게시판에 어떤 맘이 올린 속풀이 글이 '새뱃돈 차액 돌려달라는 시덕 형님'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된 거예요. (<http://issueviewer.tistory.com/449>)

게시판은 발각 뒤집혔죠. 아니, 우리끼리 속풀자고 한 얘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떡하냐...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집 사람들은 알 텐데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되냐... 대체 누구냐, 색출해서 쫓아내자 등등... 하지만 유출 경로는 추측만 난무할 뿐이었어요. 사실 유출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저도 기사화되었으니 옮기는 거지만, 맘만 먹으면 우리 카페에 그 글을 퍼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맘들은 '핑'을 해요. 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2. 법복 입은 가면무도회 ⇨ 2015. 3. 1. 게시 글

탐 크루즈가 나온 '아이즈 와이드 셋'이란 영화 아시죠? 유명한 가면무도회 장면이 있어요. 좀 야한!... 저는 요새 그 이미지가 종종 떠올라요. 우린 이 카페에서 가면무도회를 즐기고 있는 거죠. 서로 누구인지 모르는 채 속이야기를 편히 풀어놓죠.

근데 최근의 이 모 부장님 상황을 보면서 전 그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즐기는 무도회는 아이즈 와이드 셋에서처럼 밀폐된 저택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우린 뺨 뚫린 들판에서 또는 대로 옆 공원에서, 가면은 썼으되 법복을 입고 우리 신분은 노출시킨 채라는 것을...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는 타이틀을 단 게시판 아래에서는 우리는 판사로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당장 보세요. 조선일보 기자가 저희 게시판 주위를 쿵쿵거리고 있어요. 우린 이 공간이 밀폐된 방음시설이라고 믿었지만, 실상은 유리박스 같은 곳이에요. 인터넷에서 '익명'이란 건, 사실 ISP들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면 심한 표현일까요? 여기 들어올 때 로그인 안 하셨어요? 요샌 '로그인 유지' 기능 때문에 점점 무감각해져요. 심지어 기자들이 '귀대기'까지 시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전관예우가 어떻고, 이 모 부장님이 어떻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려고요.

유스티티아도 있지 않냐구요? 거긴 달라요. 거긴 실명을 걸고 활동해요. 그래서 책임감이 남다르죠. 소곤소곤 기능이 있어봤자, 어차피 서로 실명을 걸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나온 이야기는 일부 익명글이라도 '다함께 책임'이란 생각이 있어요. 거기선 최소한 동료였던 이○○ 전 부장님 호칭을 '이 사무장'으로 하니 마니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올 거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러려고 익명인 걸까요?

같은 이야기인데, 우린 가면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사단이 나도 다치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법복을 입고 있으니까 '판사'는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럼 여기 모인 우리들 때문에 또 우리 동



료, 선후배들이 팬시리 욕을 먹고, 그럼 그 분들은 우리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할 거예요. 밥조에서 시침 딱 떼고 있으면 그만이겠지만, 그냥 그래도 될까요?

우리가 탄 뗏목은 그냥 뗏목이 아니고, 사실은, 사실은요, '판사호'라고 버젓이 쓰여진 뗏목이에요. 그건 기자들이 이미 알고 세상이 아는 일이 되어있어요. 그냥 뗏목 갈아타고 말 일일까요?

### 3. '소 잃으면 외양간 버리자' 대신에 우리도 평? ⇨ 2015. 3. 1. 게시 글

지난번에 민감 정보에 관해서 우리 카페가 내린 결론은 '우리 양식을 믿자,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게시판을 닫자'였어요. 고상한 결론이긴 했지만 달리 표현하면 '소 잃으면 외양간 버리자'뿐이에요. 고칠 수도 없고 버려야 한다니요. 너무 아쉽지 않나요? 그래서 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언급한 맘들 카페에선 '평'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연연찌라시 올리고 나서 주로 하던 건데, 이제는 보편화되었어요. 뭐냐면 좀 민감한 글은 글을 올리면서 올리는 사람이 '이 글은 몇 분 후에 평합니다'라고 예고해요. 그럼 그 한정된 시간동안만 다양한 댓글, 의견을 주고받고, 약속된 시간이 되면 글쓴이가 글을 자삭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욕, 19급 이야기, 연연스캔들 이야기도 그래서 가능해요.

우리도 스스로 보기에 '판사가 이러이러한 글을 올렸다'라고 기사가 난다면 뭐하다 싶은 글은 평하기로 하는 게 어떨까요. 꼭 이 게시판에 우리 생각들을 축적시켜 놓을 필은 없잖아요. 나중에 추억삼아 볼 일도 없고.

글구 운영진도 스스로 평하지 않는 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주세요. 전 제가 이 공간의 일원으로 멍하니 있다가 팬시리 동료들한테 미안해지는 상황은 싫습니다.

다들 한 번 생각해주세요. 이런 글 '운영건의' 게시판이 맞지만, 거긴 아무도 안 들여다볼 거 같고, 우리 카페 유지하려면 지금처럼은 어려울 거 같아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거 같아요. T.T



##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 1. 개요

- 2015. 2. 27., 3. 1.의 2회에 걸쳐 게시판 운영에 관한 제안 글 게시
  - 민감 사안 글은 단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할 것을 제안
  - 현재 조회 수[3. 3. 07:00 기준]
    - 전체 회원 수 388명
    - 2015. 2. 27. 게시 글 ⇨ 조회 수 317회
    - 2015. 3. 1. 게시 글 ⇨ 조회 수 282회
- 제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임
  - 취지에 공감하는 내용이 대부분임
- 자진 삭제를 예정한 게시 글이 게재되기 시작함
  - 회원들에게 제안이 이미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임

### 2. 구체적 반응

- 2015. 2. 27. 제안 글에 대한 반응
  - 댓글 1 ⇨ 관심 표명[15.02.27. 08:26]
    - 문체에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다음 글 꼭 이어서 써주세요^^
  - 댓글 2 ⇨ 공감[15.02.27. 14:27]
    - 글 쓴 분의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켜준다는....
  - 댓글 3 ⇨ 공감[15.02.27. 19:16]
    - 법관들이라 이 정도는 지킬 소양이 있을 거 같아요.
  - 댓글 4 ⇨ 공감[15.02.28. 05:52]



- 아 저도 이 사건 알아요. 보면서 이사야 떠올린 것도 똑같네요. 정보의 축적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유로운 분위기 유지를 위해서는 짜가기 금지 복사 금지 평 활용 등이 적극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 ■ 2015. 3. 1. 제안 글에 대한 반응

#### ● 댓글 1 ⇨ 공감[15.03.01. 03:52]

- 좋은 고민 글 감사합니다. 원글님의 이사야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네요. 저도 유사시 외양간 버리기가 불가피하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소중한 공간을 지킬 수 있는 대책 강구에 머리를 굴리게 되는군요.
- 유스랑 다르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일단 유스는 사직해도 회원 자격이 유지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만, 실명 활동으로 이미 친분이 있는 터라 그런 것 같아요. 한편 평 문화는 유스에도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평할 권리는 당연한 글쓴이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설령 댓글이 달려 있어도 말입니다. 다만 운영진에게 평 권한을 주는 것은, 운영진이나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하네요.
- 운영진에게 삭제, 검열 권한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이사야 운영진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을 듯합니다만.
- 반대로 글을 삭제할 '의무'가 운영진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 회원들이 댓글로 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다면 그때 운영진이 최종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 원글님께서 급한 대로 평문화부터 제안하신 것 같고, 저도 당장 다른 수는 안 떠오르는데, 다른 아이디어도 궁금합니다.
- 아무래도 남성 회원들이 기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익명이기까지 한 이곳이 유스보다 좀 더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걱정은, 제 근거 없는 편견의 발로이기를 바랍니다...

#### ● 댓글 2 ⇨ 공감[15.03.01. 11:33]



- 글 쓰신 분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유스는 사직 시 회원 등급이 조정되어서 일부 게시판 글은 접근이 불가능해진다고 해요.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보다 아이들 키우는 얘기, 아주머니 얘기가 많으니 감사하게도 외부의 관심이 덜하겠지만요.

● 댓글 3 ⇨ 관심 표명[15.03.01. 21:34]

- 유스티티아는 뭔가요?;;;

● 댓글 4 ⇨ 공감[15.03.02. 00:44]

-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여기에 쓰시는 글들 모두 기자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별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코트넷에 쓴 게시물이 왜 등록되자마자 바로 언론 보도가 되겠나요. 언론인을 가족으로 둔 법원 직원, 법관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카페의 존재도, 이 카페에 올려진 글들도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을 것이고, 다만 그 취재 과정의 윤리성에 관한 비난 가능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도되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댓글 5 ⇨ 공감[15.03.02. 07:33]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사들의 양식을 믿자..라는 건 지나치게 나이브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 자진 삭제를 예정한 게시 글 [2015.03.02. 14:10]

● 제목

- 도대체 언제부터

● 본문

- 합의부 부장이 기록 안 보는 게 당연한 게 되었나?

- (조만간 평 예정)

● 댓글 1 [15.03.02. 14:46]

- 평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요?^^아울러 심심한 위로를...



● 댓글 2 [15.03.02. 15:56]

- 평 안 해도 될까요? 혹시 유출되어 판사들 근무태만 취지로 언론에 보도 될까요.

● 댓글 3 [15.03.02. 15:37]

- 경력상향재판부가 들어서면서, 배석들 중 고참 배석들이 많아지면서, 기대치가 높아지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부장님들이 기록을 안 보시는 건 그분들 스스로도 마땅한 변명거리가 없을 거 같아요.

● 댓글 4 [15.03.02. 16:02]

- 진행까지 저보고 챙기라니 제가 고등배석인지 지방배석인지 헷갈립니다. 그럴 거면 결론도 제 맘대로 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싫으시다네요.

### 3. 향후 계획

- ▣ **오늘 중으로 게시 글에 대한 열람과 구체적인 논의·논쟁이 이어질 것임** ⇨ 추이를 예의 주시하여야 함

- 논의·논쟁의 방향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임

- ▣ **한편, 제안 글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될 것으로 보임**

- 적극적 목표 ⇨ 민감한 글에 대한 자진 삭제 문화 정착

- 소극적 목표 ⇨ 게시 글의 유출 가능성에 관하여 자각하고 지나치게 민감한 사안에 대한 무분별한 글 작성 자제 분위기 조성. 끝.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 1. 검토 배경

- 2. 9.(월) 14:00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선고 예정
  - 2014. 9. 11. 1심 판결 선고 ⇨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무죄, 국정원법 위반 부분 유죄
    - 재판장 이○○ 부장판사: 연수원 21기, ○○대, 서울 ○○고
  - 쌍방 항소 ⇨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호로 항소심 계속 중
    - 재판장 김○○ 부장판사: 연수원 20기, ○○대, 대전 ○○고
    - 주심 김○○ 판사: 연수원 24기, ○○대, 광주 ○○고
    - ※ 해당 재판부는 최근 나꼼수 김○○·주○○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 선고
- 선고 결과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과 대응 방향 수립 필요
  - 대내외적으로 각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마련

### 2. 최근 정세 분석

#### 가. BH·여권

- 국정 난맥상 계속 ⇨ 지지율 하락, 조기 레임덕 가능성 제기
  -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증세 논란 등으로 국정 난맥상 계속
    - 문건 유출·비선 국정 개입 논란 ⇨ 민정수석 교체 등 인적 쇄신 단행하였으나, 국무총리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하여 또다시 이상 기류 발생
    - 연말정산·건강보험 개혁 논란 ⇨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제공
    - 경제·통일 골든타임 선언 ⇨ 난국 타개를 위해 정치적 논의는 자제·기피
  - 신임 원내대표 선출 ⇨ 朴心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레임덕 우려
    - BH와 새누리당 사이에 당·청 관계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신경전



---

---

- **2. 13.께 소폭 개각과 BH 정무 특보단 인선 예정**

- 해양수산부장관에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 허남식 前 부산시장, 통일부장관에 권영세 주중 대사 등 거론
- 김기춘 비서실장의 퇴진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 ⇨ 마땅한 후임을 찾지 못함, 인적 쇄신 마무리되면 퇴진할 것이라는 전망 여전히

- **원세훈 1심 판결 당시 반응 ⇨ 환영·안도**

- BH ⇨ 비공식적으로 사법부에게 감사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후문
- 새누리당 ⇨ 큰 짐을 덜었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 야당에 역공
  - 공식 논평 ⇨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야당의 실패한 대선 개입 정치 공작이었음이 명백해졌다...대선 불복으로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우롱한 새정치연합은 이제라도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나. 야권

- **새정치연합 신임 당 대표 선출 ⇨ 혼탁·과열로 분열 양상**

- 문재인 신임 당 대표 당선 ⇨ 對 BH 공세 강화
  - 수락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 선포”
- 한편, 막판 ‘룰 변경’ 논란 등 계파간 대결 분위기로 후유증 우려
  - 박지원 후보 ⇨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 문재인 대표와 박 후보의 득표율 45% vs. 42% ⇨ 격차가 3% 불과하여 후유증도 극대화
  - 봉합을 위한 시간, 설 연휴 등으로 한동안 활발한 활동은 어려울 듯

- **원세훈 1심 판결 당시 반응 ⇨ 비판**

- 새정치연합 ⇨ 거세게 비판
  - 공식 논평 ⇨ “재판부는 정치 개입은 맞는데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모욕했다...헌정 질서 교란행위에 면죄부를 준 수치스러운 판결”

---

## 다. 언론기관

- **진보 언론** ⇨ **대법원에 비판적 논조 유지**
  - 특히 대법관 청문회를 앞두고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결사항전 분위기
- **보수 언론** ⇨ **그다지 우호적인 분위기 아님**
  -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대한 싸늘한 분위기
  - 최근 최○○ 판사 사건 등으로 인하여 **비판적 논조** 계속
- **원세훈 1심 판결 당시 반응** ⇨ **진영 논리에 따라 엇갈림**
  - 진보·중도 언론 ⇨ 판결의 논리에 의문 제기
    - 특히 최근 1심 재판장이었던 이○○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임 된 것에 대하여 비판적 보도 ⇨ 한국일보, 로이슈, 아시아경제 등
  - 보수 언론 ⇨ 결과적으로 정국 혼란 불러온 검찰 비판

## 라. 사법부 내부

-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예의 주시**
  - 선고 다음날인 2. 10. 전후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가 최대 관심사
  - 박○○ 대법관 후보자의 전력 논란으로 인한 내부 불만 축적 중
    - 대법관 후보자가 역사적 사건에 연루되어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 ⇨ 청문회 과정에서 상황 전개에 따라 공개적 표출 가능성
- **원세훈 1심 판결 당시 반응** ⇨ **강한 내부 논란 발생**
  - 김○○ 부장판사 ⇨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표명하여 논란 촉발
    - 판결에 대한 여론 관심 증폭 + 법관 사회의 분열에 선정적 관심마저 집중
    - 이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하지만, 의외로 적지 않은 수의 법관들이 김○○ 부장판사의 게시물에 대하여 심정적 동조를 보내었음

---

### 3.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

#### 가. If 항소기각 판결[1심 결론 유지] ⇨ 파장 최소화

- BH·여권 ⇨ 외부적으로 덩덤한 반응, 내부적으로 안도 예상
  - 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이므로 큰 관심 표명하지 않을 가능성
    - 상고심 결론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야권 ⇨ 비판 태도 유지 내지 덩덤한 반응
  - 1심 판결 선고 시와 마찬가지로 비판하는 입장 표명할 것
    - 다만, 전당대회 바로 다음날이므로 그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언론 ⇨ 1심 판결 당시 분위기 유지
  - 1심의 결론이 유지된 것이므로 큰 기사거리로 취급하지 않을 가능성
    - 다만, 1심 판결 당시의 상당한 논란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는 다루어질 듯
- 사법부 내부 ⇨ 큰 갈등이 촉발되지는 않겠으나 기존 불만 세력의 불만은 심화 가능성
  -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1심 판결 당시와 같은 논란·갈등 양상이 재발되지는 않을 것임
    - 게다가 금주 내 법관 정기 인사가 이루어지면 관심은 크게 분산·약화될 수 밖에 없음
  - 하지만, 1심 판결 당시 불만을 가졌거나 그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을 가졌던 구성원들은 불만이 더욱 응축·심화될 가능성 있음
    - 박○○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한 불만과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표출 여부가 결정될 것임
    - 다만, 김○○ 부장판사 징계로 인한 교육 효과에 따라 실제로 불만 표출에 나서는 데에는 상당히 조심·자제할 것으로 보임

---

---

나. If 파기·공직선거법 유죄 판결[1심 결론 반복] ⇨ 상당한 파장

■ BH·여권 ⇨ 극심한 곤경에 처함

- 정권의 정당성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됨
  - 이미 최근 지지층의 지속적 이탈로 사실상 “지지율 제로” 상태에 도달했다고 보아야 함 ⇨ “현재 남아있는 20% 후반 정도 비율의 지지는 박정희 향수와 경제 개발 세대의 자부심에 의한 것 불과”[안○○ 명예교수, 2. 4. MBC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신동호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 내용]
  -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 탄생 과정의 정당성 자체마저 의심 ⇨ 박 대통령이 기댈 수 있는 권위는 전무한 상태 초래
  - 게다가 야권은 전당대회를 통해 확보한 새로운 당 대표 체제의 선명성·언론 주목도[이른바 컨벤션 효과]와 최근 BH·여권의 곤란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 명절 기간 동안 지지 기반을 확장·확보하기[이른바 차례상 효과] 위하여 전력투구할 것임[이미 ‘전면전 선포’] ⇨ 유례없는 강공 비판을 감당해야 하는 큰 부담
- 국면 전환 조치의 방향이 사법부를 향하게 될 가능성 큼
  - [시나리오①: 직접적·적극적 조치] 전면적 사법개혁 시도
    - 적극적 가능성 ⇨ 최근 발생한 최○○ 판사 사건, 대구 유 모 판사 사건 등으로 인하여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 국민·언론 여론 존재, 전교조 집행정지 사건 등을 통하여 사법부에 대한 BH의 불만은 이미 상당히 누적된 상황
    - 소극적 가능성 ⇨ 올해를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선언하는 등 경제 올인 정책 예정, 최 모 판사 사건 등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만으로 갑작스레 사법개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소 뜬금없음, 사법부에 대한 보복성 개혁이라는 비판 우려
  - [시나리오②: 간접적·소극적 조치] 중점 추진 사법정책 반대, 사법부 예산 편성 비협조
    - 적극적 가능성 ⇨ 특히 대법원의 중점 추진 사법정책인 상고법원안의 경우

---

---

설치 시 김○○ 부장판사와 같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상고법원 법관의 중추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연상 작용을 일으켜 극도의 불신을 받게 될 것임. 사법부에 대한 불만 제기 시 예산 편성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BH의 전통적인 사법부 견제 방법이었음

- 소극적 가능성 ⇨ 간접적·소극적 보복 조치에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다만, 여론의 주목을 피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조절할 가능성은 있음

#### ■ 야권 ⇨ BH·여권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 예상

- 정권을 향한 총력 비판에 나설 것임
  - 특히 문재인 후보가 당 대표에 선출될 경우 '지난 대선의 직접 피해자'로서 '정당한 보상, 원상복구'의 이미지·명분을 구축하려 할 것임 ⇨ 직접적으로 대선 불복 운동을 떠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차기 대선 승리의 역사적 개연성·정당성을 국민의 뇌리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
  - 게다가 야권에 유리한 결론은 향후 대법원 판결 시까지 허락된 한시적 상황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임 ⇨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劇的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임
- 사법부에 대하여는 다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

#### ■ 언론 ⇨ 진영 막론하고 사법부 비판 예상

- 보수 언론 ⇨ 판결 결론에 관한 불만을 정면으로 표출할 것
  - 김○○ 부장판사를 징계한 것을 들먹이며 항소심 판결을 자가당착·모순적인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 있음
- 진보 언론 ⇨ 판결 결론에 대해서는 환영할 수 있으나, 김○○ 부장판사 징계의 문제점을 제기할 가능성이 큼
  -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한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것임

#### ■ 사법부 내부 ⇨ 큰 갈등 촉발 가능성

- 상당한 내부 갈등 발생할 것임

- 김○○ 부장판사 징계 당시에도 수면 하에서 법관들 사이에 상당한 논란·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판결 결론이 뒤집히면 과연 김○○ 부장판사의 견해 표명이 비난 가능성 높은 것이었는지, 징계 수위가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필연적일 것임
-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이○○ 부장판사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을 놓고서도 의혹을 제기한 바 있음 ⇨ 법원노조로부터 이에 관한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1심 판결에 대한 불만 또는 최근 대법관 후보자 논란에 대한 불만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음
- 1심 판결에 동조하지 못하던 세력은 항소심 판결을 통하여 회복·치유되었다고 생각할 것임 ⇨ 공식적 문제 제기 등 행동에 나설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 있음

#### 4. 대응 방향

가. If 항소기각 판결[1심 결론 유지] ⇨ 사법부 내부 분위기 결속 중심

- BH·여권 ⇨ 별다른 조치 불필요
- 야권 ⇨ 별다른 조치 불필요
  - 비판적 입장이 그리 강하지도, 오래 가지도 않을 것임
- 사법부 내부 ⇨ 불만·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예의 주시 필요
  - 코트넷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비판적 게시 글 작성·등록 여부 지속적 확인
  - 특히 코트넷운영위원회 간사[정보화심의관]는 당분간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 큼 ⇨ 문제 있는 글이 게시될 경우 즉시 임시조치 여부를 검토·집행하여 파장을 최소화하여야 함
  - 법관 정기 인사는 최대한 조속한 시점에 실시할 필요 있음

- 정기 인사 발령 시 새로운 임지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 등으로 인하여 법관들의 관심이 크게 분산될 수밖에 없음
- 금주 주말부터는 사실상 설 연휴 기간에 진입 ⇨ 그 전까지 4~5일이 분수령이 될 듯함
- 이상 기류 발생 시에는 각급 법원장 등을 통하여 여론 수습 조치
-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로 각급 법원장에게 협조 메일 발송

나. If 파기·공직선거법 유죄 판결[1심 결론 반복] ⇨ BH·여권 대응 중심

■ BH·여권 ⇨ 신뢰 관계 유지·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실시

- ①우선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미칠 악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
  - 상고법원안에 직접 미칠 부정적 영향[상고법원 법관 구성과 상고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시
  - 제시 가능한 안 ⇨ 상고법원 법관 보임 시 국회 동의 또는 인사청문회 절차 실시,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확대[정치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은 반드시 대법원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함], 대법원 사건 심사·특별 상고 등의 과정에 법무부장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
- ②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관심 사법 현안 신속 처리
  - 전교조 집행정지 인용 결정 후 BH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후문 ⇨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한 것으로 입장 정리
  - 지금까지도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만일 대법원의 결론이 재항고 인용 결정이라면 최대한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법부에 대한 불만 완화 효과 + 원세훈 사건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는 암시 제공 효과
- ③본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조속한 시점에 선고
  - 상고심을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여 만일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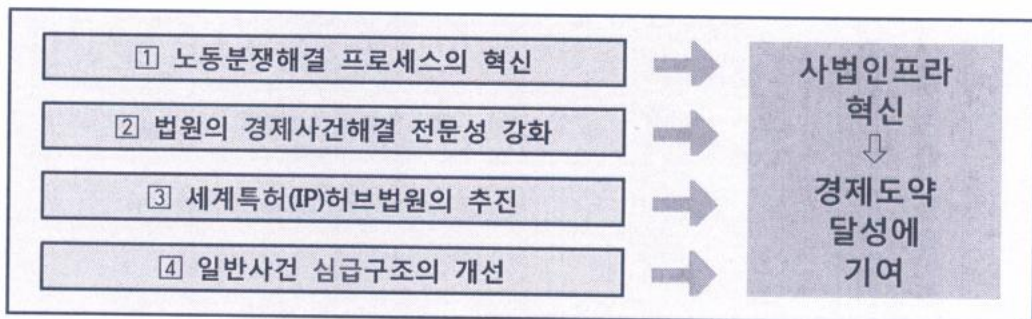
는 최대한 조속히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불만·오해 기간 최소화

● ④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비공식적 라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입장 전달

-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에 법무비서관실 등 적당한 비공식적 라인을 통하여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설득 절차를 거침
- 특히 위 ①, ②, ③ 조치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간접적으로 미리 안내하는 방법을 검토 가능함

● ⑤전면적 사법개혁 논의가 진행되면 '경제도약을 위한 사법인프라 혁신플랜' 논의로 국면·논의 방향 전환을 노력

- 우선 지금은 전면적 사법개혁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최대한 설득
- 사법부 변화에 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면 경제 회복에 사법부가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임을 건의 ⇨ BH가 주도하여 정권의 성과·업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국면 전환 시도



■ 야권 ⇨ 별다른 조치 불필요

■ 사법부 내부 ⇨ 앞서 항소기각 시의 대책 + 김○○ 징계·이○○ 승진 관련 논란 대비

- 앞서 항소기각 시의 대책은 이 경우에도 유효함
  - 코트넷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비판적 게시 글 작성·등록 여부 지속적 확인
  - 법관 정기 인사는 최대한 조속한 시점에 발표할 필요 있음
  - 이상 기류 발생 시에는 각급 법원장 등을 통하여 여론 수습 조치



- 
- 나아가 이 경우에는 김○○ 부장판사의 징계와 이○○ 부장판사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에 대한 불만·논란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대비가 필요함
  -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조치에 대한 논란 ⇨ 김 부장판사가 해당 사안 [원세훈 사건] 자체에 대하여 취한 정치적 견해·입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법관이 현재 계속 중인 다른 법관의 담당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데 [법관 윤리 문제]에 대한 것임 ⇨ 이상 기류 발생 시 각급 법원장 등을 통하여 개별 법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가 전달·설명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 이○○ 부장판사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에 대한 논란 ⇨ 직접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음, 오히려 논쟁을 불필요하게 촉발·확대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식 있는 법관이라면 법원의 인사가 그러한 취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임 [끝]

##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1. BH

- 판결 선고 전 동향 ⇨ 촉각을 곤두세움
  - BH의 최대 관심 현안 ⇨ 선고 전 '항소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
  - 법원행정처 ⇨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재판 결과에 관하여서는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을 알림
    - 위와 같은 내용 그대로 민정 라인을 통하여 보고됨
- 판결 선고 후 동향 ⇨ 내부적으로 크게 당황, 외부적으로는 침묵 속에 이완구 청문회 주력
  - 전반적 분위기 ⇨ 크게 당황하며 앞으로 전개될 정국 상황에 관하여 불안해하는 상황
    -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
    - 이에 대하여 곽○○ 법무비서관 ⇨ 전원합의체 회부는 오히려 판결 선고 지연을 불러올 가능성 있음을 피력
  - 법원행정처 ⇨ 법무비서관을 통하여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함
  - 법무비서관 ⇨ 법원행정처 입장을 BH 내부에 잘 전달하기로 함, 그리고 향후 내부 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기로 함
  - 아직 "대응" 방향에 관하여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기본적으로 '판결 자체에 대한 대응 방법'이 마땅한 것이 없다는 것이 민정 라인의 답답한 입장인 것임
- 단적으로, 유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검찰을 채근할 수도 있겠으나, 무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 변호사를 채근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것
- 게다가 민정 라인은 오늘 당장 닥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더욱 급한 현안임
- 일단 법무비서관실로서는 청문회 전후로 이 사안에 대한 민정수석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 2. 여야 각 당

### ■ 새누리당 ⇨ 유감

- 김○○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 “매우 유감스러운 일...국정원은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게 심기일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 ■ 새정치연합 ⇨ 사필귀정

- 문재인 대표 ⇨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확인된 것...남북 대화록 불법유출 악용 등과 함께 종합해 보면 국가기관의 전 방위적 대선 개입이 이뤄진 것...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
- 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사필귀정...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판결...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박근혜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
- 새정치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 ⇨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을 확인해 준 판결...‘재판 결과를 보자’ 하던 박 대통령은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

---

### 3. 언론 동향① [선고 직후~다음날 오전]

○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팩트 전달에 그침

- 다른 현안이 많고, 280쪽이 넘는 판결문에 대한 분석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으로 보임

#### 가. 보수 성향 언론

##### ■ 조선일보 ⇨ 침묵

- 총 27건의 인터넷 기사 게재 ⇨ 기사 수 자체는 많은 편
- 그러나 주요 일간지 중 유일하게 관련 사실을 내지 않음
  - 조선일보가 실은 3편의 사실 ⇨ '대통령, 정치권·복지·증세' 논의 타박할 때 인가, '문 대표, 거친 말 앞세우면서 '국민통합' 이룰 수 있겠나', '넥슨·엔씨, 세계시장 팽개치고 안에서 진흙탕 싸움만 해서야' 등
  - 판결 내용에 대한 보도, 여야 정치권의 반응, 법정 안팎 스케치, 원 전 원장과 변호인의 판결에 대한 입장 등 관련 '팩트'를 건조하게 전달했을 뿐임
- 유일하게 판결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엿볼 수 있는 기사 ⇨ 5면 하단 '검찰 안에서도 선거법 적용 논란...최종 판단은 대법 몫'
  - 그간 선거법 위반 적용을 둘러싼 채 전 총장과 황교안 장관의 갈등, 또 검찰 내부 갈등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뒤 "상고가 확정된 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 ■ 중앙일보 ⇨ 신중한 가운데 '국정원'으로 비판의 화살을 돌림

- 총 6개 인터넷 기사 게재
- '1,2심 엇갈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사건'이란 제목의 사실 ⇨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국정원도 과거 스스로 권위를 훼손해 불신을 자초한 점을 인정하고 과감한 개혁 작업을 벌여야 할 것"

---

---

■ **동아일보** ⇨ 좀 더 강하게 국정원 개혁 촉구

- 총 10개 인터넷 기사 게재
-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국정원 어두운 과거와 절연하라’는 제목의 사설 ⇨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 2심의 법리 판단이 달라진 만큼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이고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된 2심 판결에 대해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은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

나. 진보 성향 언론

■ **한겨레** ⇨ VIP 정면 비판

- 총 10개 인터넷 기사 게재
- ‘박 대통령의 정통성에 의문 던진 ‘원세훈 판결’이란 제목의 사설 ⇨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약칭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원세훈 전 원장의 범행 동기나 배경, 박근혜 후보 쪽의 인지 여부 등 더 확인돼야 할 대목이 여럿 남아 있다. 박 대통령도 이런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본다”

■ **경향** ⇨ VIP 정면 비판

- 총 28개 인터넷 기사 게재
-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청와대가 답할 때다’라는 제목의 사설 ⇨ “박 대통령이 불법 대선개입의 ‘수혜자’임이 드러난 이상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을 반대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물러나야 마땅하다.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지했는지등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

---

## 다. 방송·인터넷 언론

### ■ KBS, MBC, SBS, YTN

-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1, 2심 판단 근거 소개·분석하는 기사 위주
  - 최근 무죄를 확정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 언급
  - 김용판 사건 축소 의혹, 채동욱 사퇴, 수사팀 항명 파동 등을 다시 소개

### ■ JTBC

- 기사 게재 총 9개 ⇨ 판단 근거 소개·분석에 초점, **여야의 반응** 소개
  - 그동안의 검찰 수사 과정 상세히 설명하며 수사 외압과 논란에 대해 조명,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기사

### ■ TV조선, 채널A

- 분량이 다른 방송매체에 비해 적은 편 ⇨ 항소심 결과 위주로 전달, 기사 게재 수 TV조선 5개, 채널A 4개

### ■ 뉴시스

- 총 26개 기사 게재
- 기사 대부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 설명, 여야의 주장과 모습 많이 다뤄, 김○○ 부장판사에 대한 과거 판결과 인물 조명

### ■ 뉴스1

- 판결 결과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 위주의 중립적인 보도
  - 여야의 주장과 모습, 참여연대, 새사회연대 등 시민단체의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주장 게재, 선거법 유죄판결에 대한 검찰의 분위기 게재

### ■ 노컷뉴스, 오마이뉴스

- 노컷뉴스 ⇨ 현 정부의 정통성에 대해 언급
  - 야당의 주장(박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해)을 통해 정통성에 대한 시비
- 오마이뉴스 ⇨ 판결 결과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 위주로 보도

---

---

#### 4. 언론 동향② [다음날 오후~2015. 2. 11.현재]

○ 판결에 대한 분석 기사가 보도되고 있음

- 1, 2심 판결에 대한 비교·분석, 향후 미칠 영향에 관한 분석

##### 가. 보수 성향 언론

- 조선일보 ⇨ 원세훈 '선거 개입' 지시했나...1심 "확인 안 돼" 2심 "궁극적 책임" / '원세훈 선거법 위반', 대선 결과엔 영향 없어
  - "같은 사실 두고 1심은 엄격하게, 2심은 폭넓게 해석...1심은 '힙쓸리지 말라'는 지시...'선거운동 말라'고 판단...2심은 '직원들 활동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는 취지로 봐"
  - "1심서 배제한 트윗 수십만 건...2심에선 증거로 추가 채택"
  - "지난 2012년 대선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중앙일보 ⇨ '트위터 계정' 첨부 파일 증거능력 쟁점
  -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가능성도..."

##### 나. 진보 성향 언론

- 한겨레 ⇨ 원세훈 유죄, 1심에서 배제한 증거가 '결정적 증거'
  - "국정원 트위터팀 김 아무개 이메일 첨부 파일 2개 증거 채택하자 '선거 개입' 실제 분명해져"
  - "트위터 활동 내역·팀원 계정 목록...당사자 부인에도 '통상문서'로 판단"
- 경향 ⇨ 대법원이 '유죄' 확정하면 대선 결과 영향 있을까
  - "지난 대선에 대한 법적 다툼은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하지만 시효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3년 1월 초 한 모 씨 등이 제기한 '18대 대선 무효 확인 소송'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은 "전산운영프로그램인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수개표가 누락됐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5. 사법부 내부

### ■ 소장 법관

- 특히 1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고민하던 법관들은 항소심 판결 내용에 수긍하는 입장이 많음

○ 아래 내용은 최근 개설된 Daum 판사 카페에 익명으로 올라온 게시 글들임

- 결국 실형 3년이군요^^
- 오오!!!
- 징역 3년 법정구속...속이 시~원하다!!
- 실형 나왔네요!
- 간만에 속이 확 풀리는 소식이네요.
- 꼭 내가 형사피해자이고 가해자한테 실형 선고된 것 같은 기분예요.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요 : 이걸 애교섞인 과장임^^
-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우울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게 다 잊혀지고 막 기분이 좋아져요!
-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 이처럼 당연한 말을...
- 박수를 보냅니다.
- 김○○ 부장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 저도 김○○ 부장님의 글이 생각났어요.
- (두리번) 선배님~ 이러면 어느 것이 "튀는 판결" 인가요... 종래 관념으로는 1심인 것 같은데, 워분들 눈치를 보면 항소심일 것 같기도 하구... 나는 이 것(판사) 하나 뿐인데... "요즘 젊은 판사들의" 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에 비추어 두 분의 나이를 비교해야 하는지... 아... 어렵다. 휘리릭~
- '튀는 판결'이라는 워딩 자체가 편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파동에 관한 pd수첩 보도관련 무죄판결에 대해서도 튀는 판결이라고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죠. 상급심에서 결론이 유지되었는데도요
- 판사님들 의견이 같네요. 법조도 같네요
- 이게 상고심에서 깨지지 않길 기도합니다
- 저도 상고심에서 깨지지 않길 기도합니다
- \*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규범이 헌법적 의미 등에 대한 고려 필요성 : 위 금지규범이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관여에 따른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한 국민의 강력한 규제 의사가 반영되어 입법된 것임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공직선거법의 의미



및 그 적용 요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위 규정이 입법된 목적 및 공직선거법이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헌법규정의 정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문제와 정답은 "헌법"이었던 듯 !!

- 아~ **판사답다...**

-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판결과를 전해들은 뒤 "뭐 저런 판사가 다 있나?"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어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 어제 재경지역 검찰 동기들과 송별회식하면서 들은 얘기와는 좀 다르군요 ㅎㅎ

↳ 그런 검사도 있겠쥬. ㅎㅎㅎㅎ 그렇지만 안그런 검사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 "고위 관계자"들 얘기쥬...검사장 이상이거나 검사장 승진을 바라보는 사람들 마인드는 좀 다른 듯...

### ■ 코트넷 자유게시판

- 판결 선고 기사를 전제한 글과 '판사 김○○'의 제목으로 재판장을 두둔하는 글이 게시되었음

- 각 글에 댓글이 10개 이상 달렸으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음

## 6. 향후 대응 방향

### ■ 판결 결과 분석 필요

- 항소심 판결과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 ⇨ 신속 처리 추진
- 기록 접수 전이라도 특히 법률상 오류 여부 면밀히 검토 ⇨ 공직선거법 제 270조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3개월] 최대한 준수하여 신속 처리

#### ◆ 상고심의 쟁점 예상

##### ■ 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일 듯

-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너무나도 구체적인
-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항소심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단순히 '전제 법리'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비판
  - 법리 문제를 떠나, 항소심 판결의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구체적임

##### ■ 이른바 '선거 트윗'과 '정치 트윗'의 구별 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선거무효소송**

■ **소 제기 기간 도과 ⇨ 新訴 제기는 불가능**

- 공직선거법 222조 ⇨ 대선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후보자·정당), 선거 일로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

■ **다만, 이미 제기된 '제18대 대선무효확인소송' ⇨ 영향 미칠 수 있음**

- 대법원 2013수18호 사건
- 원고 측에서 이미 원 전 원장 사건 관련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했음

■ **향후 정무적 대응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계속하여 수세적 입장을 취하는 방안 vs. 수세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면 전환을 꾀하는 방향
  -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 ⇨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짤 수도 있음
  -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 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 ⇨ 다만, 역풍 가능성이 극히 우려되므로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끝]



#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2018. 6. 5.

기획조정실

## I. 정치권

### 1. 청와대

#### ▣ [대외적] 입장 표명 자제

☑ “여야, 판결 존중하지만...온도차, 청, 말 아껴”(뉴데일리 보도 내용)

▶ “...한편 이번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던 청와대는 이날 특별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동향을 파악하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 ▣ [대내적]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준 것으로 평가

- ① 민정 라인을 통하여 판결의 취지가 잘 보고·전달되었음
- ②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봄
- ③ 판결 선고 결과에서도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하여 준 것으로 받아들임

### 2. 여야 각 당

#### 가. 개요

- ▣ 원칙적으로 ‘판결 존중’ 입장 최우선 표명
- ▣ 각론에 있어서 ‘온도차’
  - 새누리당은 환영, 민주당은 다소 우려



## 나. 새누리당

### ■ 대변인실 공식 논평

- ① 판결 존중
- ② 노사 현장에서 판결의 취지를 잘 반영해 통상임금 범위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노사 분쟁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
- ③ 통상임금의 소급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 상태를 고려한 탄력적인 해석을 제시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평가

### ■ 소속 의원 반응

<p><input checked="" type="checkbox"/> <b>김성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근로자 임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판결</li><li>▶ 재계 부담 가중 우려</li></ul> <p><input checked="" type="checkbox"/> <b>이종훈 의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번 판결은 노사 자율 영역을 상당부분 인정했지만 한편으론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을 남겼다.</li><li>▶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li></ul> <p><input checked="" type="checkbox"/> <b>이완영 의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법원이 매우 충실하게 검토했다. 입법 개정이 필요없다.</li><li>▶ 소급해서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산업 현장의 노사분규를 크게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논평</li></ul>
--

## 다. 민주당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논평

- ① 판결 존중
- ②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당연한 결과
- ③ 다만,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추가 임금 청구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
- ④ 혼란과 분쟁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

### ■ 소속 의원 반응

<p><input checked="" type="checkbox"/> <b>홍영표 의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법원 판결은 논란 소지 있다.</li></ul>
--



-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수당, 격려금, 인센티브, 복리후생비 일부(비고정) 등에 대해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하겠다.
- ▶ 판결에 모든 복리후생이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 ▶ 입법 논의과정에서 각 사안별로 다양한 사례를 종합할 계획

### 3. 기타

#### ■ 정의당

-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 기업에 **사실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크게 아쉬움

####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 노사 간 의견을 균형 있게 조율하고, 기업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노사가 현명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II. 재계

### 1. 개요

#### ■ 아래와 같은 대외적·공식적 반응을 내놓으면서 각자의 셈법에 몰두

- ① 임금 추가 부담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표현
- ② 다만, 신의칙에 의한 소급 청구가 제한되는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해 다행스러움을 표시하기도 함

### 2. 경제인단체별 입장

#### ■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 25년간 행정해석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판결이기 때문에 **우려**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그 게 깨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

#### ■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 노동비용이 급증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우려
-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 ■ 중소기업중앙회

- 정부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

#### ■ 기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인건비 부담 증가가 유동성 악화로 이어져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지는 중견기업이 속출할 것
- 한국경제연구원: 투자가 위축될 것에 관한 우려를 표명

### 3. 개별 기업별 입장

#### ■ 대기업

- 상대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
  - 이미 상당수 기업은 연봉제로 전환
  -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상여금 많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은 큰 영향 예상
- 연봉제로 전환한 삼성 그룹 계열사들은 작은 영향 예상

#### ■ 중소기업

- 대기업보다 당혹해하는 분위기
  - 인력을 뽑기가 쉽지 않아 야근과 잔업이 많을 수밖에 없어 인건비 부담이 더 큼
  - 대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시킬 것 걱정

#### ■ 자동차업계

- 잔업이나 휴일 근로가 많아 인건비 상승에 부담



- 현대자동차: 인건비 증가 폭이 1조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
- 한국GM: 본사의 향후 행보가 문제이고 한국 철수설이 불거질까 우려

#### ■ 제조업계

- 인건비 부담이 많은 제조업계가 가장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

#### ■ 기타

- 증권업계: 국내 증시에 부담 커질 것
- 식품업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평가함

### III. 노동계

#### 1. 개요

- ①정기상여금이 포함되었다는 원칙을 상당히 중시하며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
- ②과거 부분 청구를 배제할 여지를 둔 것에 대하여는 우려

#### 2. 한국노총

- ①대체로 환영
- ②복리후생비 부분이 제외된 것은 유감이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의구심을 제기
  - 과거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임금 이분설로 되돌아 간 것

#### 3. 민주노총

- ①대체로 환영
  - 당연한 판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
  -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



을 즉각 폐기해야 하고, 포괄역산제·변칙적 연봉제 등 또 다른 왜곡된 임금 체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함

■ ②신의칙 적용 여지를 둔 것은 불만

-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 입법취지에 반하는 매우 부당한 판결

## IV. 언론계

### 1. 개요

■ 각 언론사들은 대체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은 포함”을 헤드라인으로 하고, 다소 중립적인 사실 보도가 주류임

- 판결에 관한 “한 줄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판결 선고 직후에는 보수 성향 언론과 진보 성향 언론을 막론하고 대체로 노동계 손을 들어주었다라고 평가하는 언론사가 많았음

■ 시간이 지나면서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판결로 평가하는 언론사가 늘어남

- “내 봉급은 얼마나 늘어나나?”라는 식의 다소 수월한 방식의 향후 전망성 보도가 많아짐

### 2. 보수 성향 언론

■ 균형감 있는 판결 또는 노동계에 유리한 판결로 평가

■ 조선일보

- [사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반영해 임금 체계 개편 서두르라”

-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재계와 노동계의 가장 큰 현안인 통상임금 문제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고 균형을 맞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동아일보





- [사설] “통상임금 대법 판결, 후유증 줄일 법 정비 서둘러야”
  - “...재계와 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算入)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앞으로 기업 부담은 커지게 됐다...정부와 국회는 노사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 방안을 시급히 고민해야 한다...”

### 3. 진보 성향 언론

- 노동계에 유리한 판결로 보아 환영하는 경향이 강하면서도, 예외 인정에 대하여 우려
- 경향신문
  - [사설] “통상임금 판결 노동정책 전환 계기 삼아야”
    - “...통상임금에 대한 이번 판결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치를 사법부가 법적으로 판단한 것일 뿐이다...”
- 한겨레
  - [사설] “통상임금 대법 판결, 장시간·저임 노동 해소 계기 되길”
    -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앞으로 분쟁의 소지를 없앤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그를 근거로 추가임금은 사실상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지나치게 기업 쪽만 배려한 인상이 짙다...”

## V. 기타

- 온라인 동향
  - 판결 선고 직후에 “대법원 판결이 노동계 손을 들어주었다”라는 트윗들이 많이 유포되었고, 그것이 이후에도 온라인 여론을 지배하였음

☑ 한겨레/[속보] 대법원이 “통상임금서 상여금을 제외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twitter



- ☑ JTBC 뉴스/[속보] 대법 "1개월 넘어도 정기성 인정되면 통상임금" twitter 2시간전39
- ☑ 오마이뉴스/"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노동계 손 들어준 대법원 <http://t.co/Y7hdVSMYhY> twitter
- ☑ YTN/[속보] 대법원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판단 = 대법 "통상임금서 상여금 제외 노사 합의 무효"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 아니다" twitter

- 끝.



# 현안 관련 말씀 자료

2015. 7.

기억조성실

## 1. 과거 왜곡의 광정

▣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

- ①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

∴ 아래 ①과거사 정립, ②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 ②미래지향적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 국가경제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해왔음

∴ 아래 ③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4대 부문 개혁 중 ④노동, ⑤교육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 ▣ ①과거사 정립

- 과거 정권에서의 이념·정파간 소모적 대립·논쟁의 결과, 과거사 문제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옴 ⇨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

-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면 보고서만 믿고 국가 배상을 결정해선 안 되고,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제한함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 ▶ 과거사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재차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음**

☑ **대법원 2015. 4. 17. 선고 2014다234155 판결**

- ▶ 과거사 피해자가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긴급조치 사건**

- ∴ 대통령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함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 ▶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님**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 ▶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

-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 ⇨ **혼돈·정시되어온 국가관의 바른 정립 노력**

● **이석기 전 의원 사건**

- ∴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폭동과 내란을 선동한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죄로 중형을 선고**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 ▶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선동한 행위를 **내란선동죄로 인정함**

●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

- ∴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들과 학부모를 이끌고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체제 도전 행위에 제동을 걸**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 ▶ 이 사건 빨치산 추모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



이 아니라,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이고, 피고인이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인솔하여 이 사건 전야제에 참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행위 등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③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 경제 관련 사건의 처리 ⇨ 단순한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면밀히 고려
- 한편, 참여한 갈등·대립의 존재로 말미암아 정당한 결론이라도 이를 도출하는 과정·절차가 소홀하면 또 다른 소모적인 논쟁을 초래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대법원은 공개변론 중계방송 등을 통하여 절차적으로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모색하였음

● 통상임금 사건

-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단순히 포함시킬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안게 될 부담(약 38조 원으로 추산됨)을 최대한 고려하여, 노사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을 제시함
- ⋮ 특히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을 통하여 그러한 결론이 최소한의 혼란 속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임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도 정기상여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하면서도,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급 적용을 제한시킴

● 키코 사건

- ⋮ 금융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게 대립한 사건에서 역시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을 실시하는 등 절차적인 노력을 통하여 양측이 승복할 수 있는 결론 도출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

▶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사건

- ∴ 철도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라 추진된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하여 이를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 등 분쟁·갈등 상황을 종식시킴

☑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여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철도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함

▣ ④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관련

-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은 노동 부문 ⇨ 노동 부문의 선진화와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 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노력

● KTX 승무원 사건

- ∴ 공공 부문 민영화와 관련한 여러 쟁점이 관계된 사안에서 결국 한국철도공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함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 ▶ KTX 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고, 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음

● 정리해고 사건

-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함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 ▶ 악기 제조업체인 콜텍의 정리해고를 유효하다고 봄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 ▶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

● 철도노조 파업 사건



☞ 노사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하여 파업의 법적 기준을 정립함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 철도공사는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아 사측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파업을 강행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철도노조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

■ **6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관련**

● 교육 부문과 관련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건이 다수 존재함 ⇨ 역시 **4대 부문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방향을 모색함

●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민주주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의 통보처분과, 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 1심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통보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함

☑ **대법원 2015. 6. 3.자 2014무548호 결정**

▶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놓음**

[끝]

##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

- ①과거사 정립

-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면 보고서만 믿고 국가 배상을 결정해선 안 되고,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제한함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 ▶ 과거사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재차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음

☑ 대법원 2015. 4. 17. 선고 2014다234155 판결

- ▶ 과거사 피해자가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음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1622, 2015. 1. 22. 선고 2012다304365 판결 (광주항쟁 손해배상청구 사건)

- ▶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위자료를 포함한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함

- 대통령긴급조치 사건

- 대통령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함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 ▶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님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 ▶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 ▣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

### ● 이석기 전 의원 사건

-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폭동과 내란을 선동한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죄로 중형을 선고

####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선동한 행위를 내란선동죄로 인정함

### ● 원세훈 사건

-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유죄 인정 부분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 ▶원심에서 공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 증거로 채택한 일부 디지털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위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함

### ●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

-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들과 학부모를 이끌고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체제 도전 행위에 제동을 걸

####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 ▶이 사건 빨치산 추모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이고, 피고인이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인솔하여 이 사건 전야제에 참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행위 등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밀양 송전탑 사건

- 고압송전선 및 송전탑 위치 문제를 두고 밀양 주민과 한국전력 사이의 대립과 농성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던 상황 ⇨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인용결정,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기각결

정으로 갈등의 확산 방지와 분쟁 종식에 기여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 10. 9.자 결정문 이유 中**

▶ “송전선로 공사는 **공익사업으로서, 국가 전체 전력 수급계획에** 근거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것이고,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할 경우 변전소의 과부하와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한다**”

● **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건**

-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정부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선언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판결**

▶ 어느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중략)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중략)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등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전국가적 재난상황의 조기 극복 방안 제시**

- 미국 9·11 테러 관련 VCF(Victims Compensation Fund)에 의한 보상 제도 벤치마킹 ⇨ 법관 등이 참여하는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한 신속하고 종교적인 배상 및 보상 방안 국회에 제시
- 사법부 제시 법률안이 그대로 반영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③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 **통상임금 사건**

-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단순히 포함시킬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안게 될 부담(약 38조 원으로 추산됨)을 최대한 고려하여, 노사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을 제시함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도 정기상여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하면서도,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급 적용을 제한시킴

● **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 사건**

- ∴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할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하급심 판결의 대체적인 입장임(대법원 계속 중인 2012다115991 사건의 원심 등 다수)

- ∴ 그럼에도, ①중복할증 시 기업의 막대한 추가 부담(약 8조원 + 향후 매년 약 2조원)을 고려하고, ②노사정의 자율적 타협을 존중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결과 도출시까지 대법원 판결 선고를 잠정 보류하고 있음

### ● 키코 사건

- 금융기관과 기업이 침해하게 대립한 사건에서 양측이 승복할 수 있는 결론 도출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

▶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사건

- 철도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라 추진된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하여 이를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 등 분쟁·갈등 상황을 종식시킴

☑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경로하여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철도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함

## ■ **④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관련**

### ● KTX 승무원 사건

- ∴ 공공 부문 민영화와 관련한 여러 쟁점이 관계된 사안에서 결국 한국철도공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함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 KTX 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고, 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음

### ● 정리해고 사건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이고 유연한 기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함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 악기 제조업체인 **콜텍**의 정리해고를 유효하다고 봄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

● **철도노조 파업 사건**

- 노사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하여 파업의 법적 기준을 정립함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 **철도공사**는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아 사측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파업을 강행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철도노조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사건 ⇨ 유효 여부에 따라 향후 노동조합의 운영방식 전반에 큰 파급력 예상(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유지 여부, 사용자가 새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기존 노조 재산의 귀속 등)

**☑ 대법원 2012다96120 사건**

▶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금속노조의 산하조직)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피고)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자,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 임원 및 조합원으로서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조직형태 변경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 ⇨ **2015. 5. 28. 공개변론 실시, 추후 대법원 선고 예정임**

■ **⑤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관련**

●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민주주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의 통보처분과, 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 1심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통보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함

☑ 대법원 2015. 6. 3.자 2014무548호 결정

- ▶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놓음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 1. 검토 배경

- 9. 19. 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 6. 19. 서울행정법원 본안(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1심 판결 선고 ⇨ 전교조 패소
  - 6. 23. 전교조 항소 ⇨ 7. 10.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 7. 22.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재항고 사건 현재 대법원 계류 중
  - 9. 30. 고용노동부장관 재항고 ⇨ 대법원 2014무548호로 접수
- 재항고 사건 진행 방향 예측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 등이 필요
  - 재항고 인용 여부와 시점 등에 따른 득실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 2. 결정 내용 ⇨ 재항고 인용 여부

#### 가. BH 입장 분석

- 인용 결정 후 BH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후문
  -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 ⇨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한 것으로 입장 정리
-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과 함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함
- 만일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측
  - 대법원의 각종 중점 추진 사업(ex.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에 대한 견제·방해가 예상됨

## 나. 대법원 입장 분석

### ■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지는 않고 있음

- 분명 중요 사건이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이기는 하나, 사법부 입장에서 최대 현안으로 보는 것은 아님 ⇨ 많은 사건 중 하나(one of them)에 불과함

### ■ 현재 대법원의 최대 현안은 상고법원 입법 추진 ⇨ 이에 대한 BH를 비롯한 각계의 협조·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특히 BH 주요 보좌 라인의 親검찰·법무부 성향으로 인하여 BH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법무부의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 다. [검토] 재항고 인용 결정 ⇨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임

		BH	대법원
재항고 기각 결정 시	전교조	- 최대 현안 ⇨ 상당한 손해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상고법원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 최대 현안 ⇨ 상당한 손해
재항고 인용 결정 시	전교조	- 최대 현안 ⇨ 상당한 이득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상고법원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 최대 현안 ⇨ 상당한 이득

### ■ 재항고 기각은 양측에 모두 손해가 될 것이고, 재항고 인용은 양측에 모두 이득이 될 것임

- 재항고 인용의 경우 양측에 손실은 크지 않을 것임
  - BH ⇨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지원하는 데에 별다른 손해·출혈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 아님
  - 대법원 ⇨ 전교조 사건 선고로 인하여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것 아님

---

### 3. 결정 시점

#### 가. 고려 사항

##### ■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에 관한 분석 필요

- 결정 시점에 따라 劇的 效果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임
- BH는 대법원과 헌재라는 두 사법최고기관이 어려운 국정 현안에 얼마나 조력·협력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 기관을 평가할 것임 ⇨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시점을 찾을 필요가 있음
  - 평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부정적 반대급부가 주어질 것임

##### ■ 주요 사법 현안의 처리 일정 최우선적 고려

- 특히 함께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헌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과 상관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음  
⇨ 그러나 연내 선고 가능성 높음
  - 다만, 12. 11.~14.경에 강○○ 재판관의 해외 방문 일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직전 또는 직후의 목요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12. 18.(목) 또는 다소 이례적이지만 12. 10.(수)이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당사자에게 선고기일 통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데, 선고기일 얼마 전에 통지를 하는지에 관하여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함 ⇨ 일단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확인해주기로 하였고, 여타 비공식적인 확인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본 사안과 관련 사건인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결정 시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 
-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결정 시점보다 늦어질 경우 효과 반감 우려

■ 기타 주요 정치 일정 고려

- [BH] 현재 사자방 국조,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컨트롤하기 힘든 현안들이 줄지은 상태 + 게다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 국정 난맥상이 노출 ⇨ 시간이 갈수록 긴장감·예민함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국면
- [국회] 12월 중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개최 예상되나, 국회의장 해외 순방 일정 등으로 인하여 원포인트에 그칠 전망 ⇨ 의원들의 현안에 대한 관심·결집력 등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임
- 세월호 사건으로 미루어놓았던 해외 시찰, 연말연시와 내년 초 전당대회(야당의 경우) 등을 대비한 지역구 관리 등 ⇨ 12월에 서울에 머무는 의원 자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법무부·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에 대한 VIP의 철저 수사 방침에 따라 분주한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임
- 기타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임
- [상고법원 관련 법안] 빠르면 금주 후반, 늦으면 내주 중에 발의될 것으로 예상됨

나. 예측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

- 최우선 고려 요소인 현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 이전과 이후를 대상으로 분석함
- ①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은 12월 중순[12. 10.(수) 또는 12. 18.(목)]일 가능성이 높고, ②그 결론은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제함
- [[I]안]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
- 아직 현재의 선고 이전이므로 대법원의 긍정적 이미지가 독자적으로

---

---

부각될 수 있음

- 단,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일수록 주목도도 높아지는 것임[High Risk, High Return] ⇨ 지나치게 빠른 시점에 결정하는 것은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다만, 이후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에 가리어 긍정적 효과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하지만 逆으로 결정에 불만을 가지는 측의 반발도 통진당 선고와 함께 가라앉을 가능성이 큼 ⇨ 오히려 통진당 선고에 임박한 직전 시점으로 결정 시점을 잡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결론이 됨
- 또한 국회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12월을 넘어서지 않는 시점에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야당의 조직적인 반발을 피할 수 있는 적기이기도 함

■ [[2안]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후에 결정

- 만일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 결과가 BH·법무부의 기대와 달리 기각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 이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더욱 극적 효과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음 ⇨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음
- 현재 현재 수뇌부는 검찰 출신, 특히 이른바 ‘공안 검사’ 출신임 ⇨ 박○○ 소장, 안○○ 재판관
- BH·법무부와 상당한 교감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는, 사건의 무게·중요도 등을 고려하면,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 이후에는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 결정이 그다지 주목받기 어려움
- 또한 국회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12월 이후에는 이전에 비하여 야당의 조직적인 반발 가능성이 높아짐
- 게다가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현재가 교원노조법에 대한 합헌 결정

---

---

을 서둘러 선고할 수 있음 ⇨ 그 선고 이후에는 아무런 주목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오히려 현재의 결정에 대법원이 기속되는 듯한 매우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할 수 있음

다. [검토]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 ⇨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선고 시점을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비공식 채널을 가동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 있음

#### 4. 후속 조치

##### 가. 반발 세력 무마

###### ■ 야당 의원 반발

- 재향고 기각 시에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과성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12월에는 해외 시찰·지역구 관리 등으로 서울에 있는 의원 자체가 적을 것 ⇨ 사안에 대한 대처력·응집력이 대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사정 정국이 진행 중이므로 대법원에 대하여 강한 비판에 나설 의지도 부족할 것임
- 현재 수사·재판 중인 의원 수 '야당 34 대 여당 5' ⇨ 결국 야당 의원들에게 최후의 의지 대상은 대법원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 진보 성향 언론 비판

- 다소 비판·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현안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 관심이 분산되어 지속적이고 거센 비판은 없을 것으로 보임
- 국민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직접적으로 BH를 겨냥하는 현안들이 많음 ⇨ '십상시', '문건 유출'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결정 내용에 그리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 없을 것임

---

---

## 나. 본안 사건 처리

### ■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어차피 1심 선고도 8개월가량 소요되었음
  - 2013. 10. 24. 접수 ⇨ 2014. 6. 19. 선고
  - 곧 법원 정기 인사 시기도 다가옴 ⇨ 해당 재판장(민○○ 수석부장판사) 교체(법원장 발령) 가능성 높음
- 긍정적 이미지를 최대한 지속시킬 수 있음

### ■ 결론은 해당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도출하면 될 것으로 보임

- 재판장이 교체될 경우 본안에 관한 화해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도 가능 ⇨ 사회적 이슈화된 문제의 대승적 해결 시도 이미지 과시
  - '전교조는 문제가 된 해직 노조원 9명을 배제하는 조치를 통하여 법내 노조로서 요건을 충족한 후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와 같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조정안 제시
- 만일 결국 판결에 이르게 될 경우에도 재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
  - 결정문에 결정 이유가 기재되는 경우 더욱 그러할 것임
- 설령 대법원의 잠정적 결론과 다른 방향의 결론이 본안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의 심증이 집행정지 사건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공개된 이상 BH 등의 동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오히려 대법원에 의한 하급심 판결 교정 기능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다. 협조 요청 사항

- BH가 대법원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경

---

---

우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요청할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적극 협조 ⇨ 법무부의 반대 무마
-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 적극 협조 ⇨ 내년 초 예정
- 재외 공관 법관 파견에 적극 협조 ⇨ 외교부의 긍정적·전향적 태도 유도
- 한정위헌결정 관련 적극 협조 ⇨ 헌재와 의견 대립 시 협조 요청
- 법관 정원 증원 추진에 적극 협조 ⇨ 약 30명의 추가 증원 등에 국회·기재부의 적극 협조 유도 [끝]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관련 현안 검토

## 1. 검토 배경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직선으로 선출됨
  - 박○○ 판사(연수원 31기, 파산부 근무)
-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상반기에 출범 예정인 사법행정위원회와 시너지 효과 있을 수 있음
- 향후 발생할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의 기본 방향을 결정할 필요 있음
  - 2014년 김○○ 판사의 의장 재직 당시보다 훨씬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됨 ⇒ 진지한 대응 방향 검토 필요

## 2. 현황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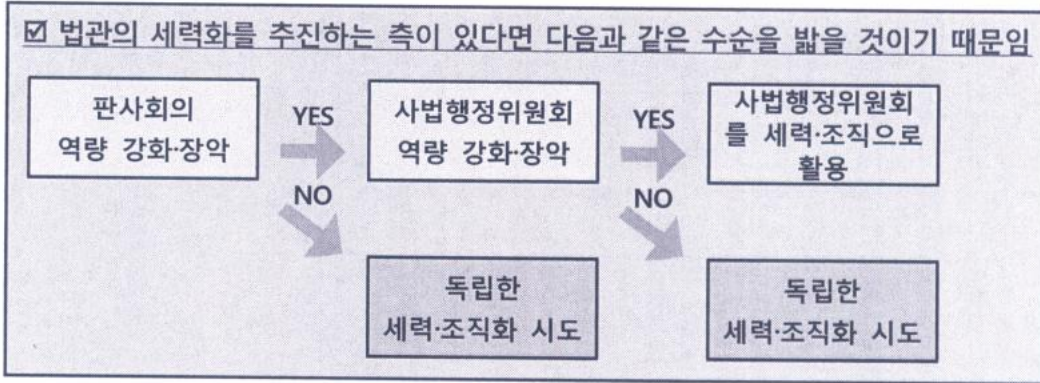
- 선거 결과
  - 재적 133인
  - 출석·투표 102인(투표율 76.7%)
  - 박○○ ⇨ 65표(득표율 63.7%), 정○○ ⇨ 35표(34.3%), 무효 ⇨ 2표
- 결과 분석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인원 분포
    - 민사단독 87인, 형사단독 22인, 파산단독 22인
  - 고려 사항
    - 박○○ 측 우호 세력
      - 파산단독(현원 23인) ⇨ 현재 박○○ 판사가 파산단독임

- 
- 신청단독(현원 8인) ⇨ 주요 우호 인사들이 다수 포진
  - 정○○ 측 우호 세력
    - 민사재정단독(현원 6인) ⇨ 현재 정○○ 판사가 민사재정단독임
    - 형사단독(22인) ⇨ 행정처 심의관 출신 법관 등 주요 우호 인사들이 다수 포진
  - 분석
    - 우호 세력은 전체 투표율보다 다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을 것임
      - 박○○ ⇨ 약 21표 예상
      - 정○○ ⇨ 약 19표 예상
    - 따라서 나머지 득표는 대부분 민사단독으로부터 이루어졌을 것임
      - 박○○ ⇨ 약 44표 예상(73.3%)
      - 정○○ ⇨ 약 16표 예상(26.7%)
    - 또한 우호 세력의 투표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 기존에 형성된 생각 등에 따라 사전에 그 향방이 결정되어 있었을 것 ⇨ 결국 중앙지법 단독판사 그룹의 여론의 현재 위치는 위에서 본 나머지 득표 상황을 참고하여야 함
      - [착안점①] 표면적인 투표 결과보다 여론은 더 좋지 아니한 상황으로 추측
      - [착안점②] 제한된 상황과 정보하에 형성된 여론이고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린 결과일 수 있으므로 향후 개선의 여지는 매우 큼

### 3. 전망

- 향후 박○○ 판사는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①단독판사 의장 직선의 연례화
    - ②사법행정위원회 구성·운영에 영향력 행사
    - ③사무분담내규 개정 건의 추진
  - ①단독판사 의장 직선의 연례화
-

- 어쩌면 박○○ 판사는 당면 현안(위 ②,③의 목표)에 더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사법행정 당국에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이 지점임
  - 2014년 김○○ 판사의 의장 당선 후 2015년에는 단독판사 의장 직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서울중앙지법 기획 라인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후보를 내는 것조차 실패하였음
  - 2014년의 의장 직선은 단발성·일회성 해프닝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었음 ⇨ 그러나 올해의 의장 직선으로 말미암아 이제 향후 전국 법원의 단독판사 의장 직선이 당연시될 가능성이 열렸음
- 결국 좀 더 거시적·장기적 안목에서 보았을 때 당장 올해 박○○ 판사가 당면 현안에 관하여 어떠한 성과를 내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체제가 상시화되고 당연시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임
  - 판사회의 실질화를 통하여 법관들이 쉽게 세력화될 우려가 있음



- 이를 위하여 박○○ 판사는 일단 법관들의 관심이 많은 각종 소형 이슈에 집중할 것임
  - 2014년 김○○ 판사 당시에 4월에는 자기소개서 제출 문제를, 7월에는 통계 회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음 ⇨ 법관들의 상당한 호응을 유도
  - 그밖에도 단독판사 밥조에 순회적으로 참석하여 교류하는 등 의장으로서 친분과 친밀도를 높이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적극적인 시도가 있을 것임

■ ②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운영에 영향력 행사



- 당초에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로 예상되었던 목적임

**☑ 인권법 커뮤니티에서 논의된 '법관의 사법행정참여방안에 관한 소고' 말미 부분**

▶ "4. 2016년 판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 판사회의 실질화, 정례화를 위한 각급 법원 내규 개정 작업 및 직급별 판사회의 정례화

나. 판사회의를 통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출방식 건의 및 위원회 위원 참여

다. 판사회의의 기관 (의장, 간사, 운영위원) 선출방식에 있어서 직선제 도입 및 후보 참여

라. 전국법관회의 창립을 위한 연구 및 기초 작업"

- **위원 후보자 추천과 안건 제출 등에 영향력 행사를 시도할 것임**
  - 사법행정위원회의 공식적 추진 일정 ⇨ 4. 1.까지 위원 추천, 4. 12.까지 안건 제안, 5월 중순경 회의 개최
  - [착안점] 이미 공지된 일정에 따르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아닐 것 ⇨ 유리한 요소로 삼아야 함

■ **③사무분담내규 개정 건의 추진**

- **법관들의 희망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
  - 특히 법관들이 보임을 꺼리고 있는 형사단독에 희망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임
- **2014년 김○○ 판사의 의장 재직 당시에도 추진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좌절되었음**
  -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투표 방식도 난해하여 의사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투표 결과 부결됨

**4. 대응 방향**

---

---

## 가. 전체 기초

### ■ 적절한 긴장감 유지가 필수적임

- 박○○ 판사에게 불필요한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을 각종 판단의 최우선적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함
-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은 의장 직선제의 상시화를 초래할 수 있음

## 나. 구체적 대응

### ■ ① '단독판사 의장 직선의 연례화'에 대한 대응

####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각종 소형 이슈 사전 제거

- 자기소개서 제출, 통계 회람 등 박○○ 판사가 법관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존재감을 축적할 수 있는 이슈를 사전 제거 필요 ⇨ 서울중앙지법 수뇌부의 사전 양해·이해를 전제로 함
- 위와 같은 사법행정상 조치를 통한 得보다 전체적으로 보아 법원 운영에 失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 있음 ⇨ '小貪大失'을 豫防

####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 라인의 적극적 활동

- 기획법관의 단독판사 애로사항 청취, 적극적 해결 등 역할 先占 ⇨ 서울중앙지법 기획 라인의 협조 필요

#### ● 불필요한 존재감 부여에 항시 유의

- 각종 행사에서 단독판사 의장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는 등 이미지 제고의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은 지양할 필요 ⇨ 단독판사 의장직이 법관들 사이에 다소간이라도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내년 이후도 고려)
- 법원장 또는 수석부장판사의 단독판사 의장 면담, 회식 등도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공식적·비공식적 조력·지원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 요함

### ■ ②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운영에 영향력 행사'에 대한 대응

- 촉박한 일정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 
- 
-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위원 추천을 위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위원 추천에 대한 단독판사 회의 차원의 건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유연하게 대응
  - 과감하게 無視하는 것부터 受諾하는 것까지 모두 가능
  - 실제 추천된 인사의 면면을 보고 판단

■ [3] '사무분담내규 개정 건의 추진'에 대한 대응

- 충분히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9월 정기 회의에서 제기할 것으로 보이므로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  
⇒ 사전에 다각적인 정지 작업이 가능
  - 법원행정처 차원의 원칙과 대응 논리 마련 필요 ⇒ 현재 기초실과 인 사실이 공동 검토 중
    - 전국 법원으로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법리적·정책적인 해석 과 결단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임
    - 결정된 정책 판단 내용을 각급 법원이 사전에 공유하여야 함
  - 미리 법관 사회에 여론 조성 활동이 필요함
    - 중요 대응 논리를 사전에 오피니언 리더 법관들에게 주지시키고 판사들에게 충분히 전파하여 신중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사전에 여론 조성 활동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음 ⇒ 선거와 달리 '사전 선거운동'의 부담이 없음, 2014년에 이미 이슈화된 바 있어서 사전에 문제 제기와 논의를 하는 것이 어색하지도 아니함
    - 의장 선출의 경우와 달리 보이콧 등의 방식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준비한다면 의장 선거 시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임(끝)
- 
-



# 국무총리 대국민담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2018. 6. 5.

기획조정실

## 1. 검토 배경

### ▣ 3. 12. 이완구 총리 대국민담화 발표 ⇨ '부정부패와 전면전' 선언

#### ☑ 주요 내용

▶ "저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 내겠습니다."

### ▣ 정국에 상당한 파장 ⇨ 의미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 있음

- 향후 BH와 여권의 움직임과 정국의 향방을 평가할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

### ▣ 특히 사법부에 미칠 영향을 예측 ⇨ 대응 방향 검토 필요성이 큼

- 주요 사법정책 추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향 마련 ⇨ 적극적·소극적 대응 방향 모색

## 2. 일반적 의미 분석

### 가. 배경

### ▣ 최근 상황 ⇨ 집권 1~2년차에 가시적인 성과·업적을 거의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지지율 하락세 계속

- 불안감·절박감 ⇨ 가시적 성과를 쌓기 위한 '골든타임' 선언
  -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 ⇨ '4대 부문 구조개혁' 선정
- 하지만 국정 난맥상은 계속



- 이완구 총리 지명 과정에서의 혼선, 담뱃값 인상 논란, 연말정산 후폭풍

## 나. 정치적 함의

### ▣ 조기 레임덕 방지를 위한 '집권 3년차 어젠다'

- 최근 BH는 역대 정권의 경험에 따라 조기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집권 3년차 어젠다'를 모색해왔음

#### ☑ 역대 정권의 조기 레임덕 방지를 위한 '집권 3년차 어젠다' 선포 사례

- ▶문민정부 ⇨ 역사바로세우기 운동 ▶국민의정부 ⇨ 남북정상회담 추진
- ▶참여정부 ⇨ 대연정 제안 ▶MB정부 ⇨ 4대강 사업 강행 선언

- 하지만 확기적인 아이탬은 찾지 못하였고, 대신 그 역할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된 '4대 부문 구조개혁' 이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음 ⇨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어젠다로서 '부정부패와 전면전' 아이탬을 택한 것

### ▣ 또한 '집권 3년차 기업 수사'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 역대 정권은 집권 3년차에 지지율 하락을 막고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대형 기업 수사를 벌여왔음

#### ☑ 역대 정권의 '집권 3년차 국면 전환용 대형 기업 수사' 사례

- ▶참여정부 ⇨ 론스타 주가조작 수사[2005. 10.]
  - 이후 현대차 비자금 수사[2006년],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2007년]으로 이어짐
- ▶MB정부 ⇨ 씨엔그룹 수사[2010. 10.]
  - 이후 부산저축은행 수사[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수사[2012년]으로 이어짐

- 기업 수사는 정권 입장에서 불리할 것이 없음 ⇨ 부정부패 척결이란 대의 명분이 있을 뿐 아니라 비자금 유입 경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경고 신호를 주기 때문

- '이명재 민정특보-우병우 민정수석' 으로 이어지는 청와대 '민정 라인 열' 이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수사를 기획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음 ⇨ 수사를 맡은 조○○ ○○○○지검 특수○부장은 직전 대검 ○○○○ 수사지휘과장으로서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장' 으로 불리기도 함



## 다. 타겟[target]과 지향점

### ■ 대국민담화에서 거시한 '고질적 부정부패'의 예 ⇨ 중요한 시사점

#### ☑ 대국민담화 주요 내용

▶ "최근 ①방위 사업과 관련한 불량 장비·무기 납품, 수뢰 등의 비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②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 투자 등은 어려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③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비리는 경제 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개인의 사익을 위한 ④공적 문서 유출은 우리의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일탈 행위입니다."

### ■ ①'방위 사업·해외 자원 개발' 언급 ⇨ 당정청 관계 주도권 탈환 선언

- MB 정권의 失政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이른바 '사자방'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음 ⇨ 일부 언론에서는 MB를 최종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선정적인 분석도 있으나, 그보다는 非朴계에 당권을 내준 데에 대한 반격을 선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적임

- 친이계 인사들에 대한 경고·압박 메시지 전달 목적으로 보임

- 한편, 직전 정권의 실정 사례를 들추어내어 현 정권의 도덕적 선명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강함 ⇨ 다가오는 총선 대비용 포석

### ■ ②'대기업' 언급 ⇨ 경제 활성화에 재벌의 적극적 협조·동참 주문

- 재계가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 요청을 묵살할 경우 검찰의 칼날이 언제든 재벌 오너에게 향할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

-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OO가 실형을 선고 받음 ⇨ 현재 재계는 司正 국면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임

- 담화 발표 당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경제5단체장을 만나 청년 고용, 임금 인상, 투자 활성화 등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뜻을 전달하기도 함

### ■ ③'공적 문서 유출' 언급 ⇨ 레임덕 최소화를 위한 공직 기강 확립 선언

- 공직 기강 해이는 엄단할 것임을 공직 사회에 경고한 것임



## 라. 결과 전망

### ▣ [단기적 전망] 한동안 상당히 가시적인 활동과 이를 통한 일시적 성과를 거둘 것

- 당장 대국민담화 다음날인 3. 13. ⇨ 포스코건설 압수수색
- 비박계, 재계, 공직 사회 등을 압박하는 카드로서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기 위하여 상당한 액션·퍼포먼스를 취하려 할 것임
  - 추가적인 대기업 수사에 나서거나 비리 공직자에 대한 적발·엄단 조치를 취할 가능성 높음

### ▣ [중·장기적 전망] 하지만 결국 한시적인 정치적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

-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한 사안들은 대부분 이미 결론이 도출된 사안 들임
  - 방산 비리·해외 자원 개발 ⇨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마무리될 가능성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 사실상 이미 종결된 사안
- 대기업의 비자금 문제가 시작·진행될 수 있으나 역시 한계 있음
  - 재계를 압박하여 경제 활성화에 협력시키는 데에도 한계 있음 ⇨ 대기업에 대한 장기간의 무리한 수사는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역효과
-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총선 준비 정국으로 접어들 것이 확실시
  - 총선에 임박한 시점에 각종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현 정권 인사에게 예기치 못한 불똥이 될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 요소가 큼 ⇨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무리한 수사는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역대 정권의 '집권 3년차 어젠다' 내지 '국면 전환용 대형 기업 수사'의 효과  
⇨ 역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음

▶ 참여정부 ⇨ 4·30, 10·26 재보선 여당 참패

▶ MB정부 ⇨ 6·2 지방선거 여당 참패



### 3. 對사법부 영향 예측

#### 가. 직접적 영향 ⇨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사법부도 공직 사회의 일부임 ⇨ '사정 태풍'의 영향권 내에 들어선 것임 [착안점①]

- 레임덕 방지를 위한 공직 기강 확립은 전체 공직 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에는 사법부도 예외라고 할 수 없음

▣ 하지만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대상이 된 것일 뿐임 ⇨ 위험성·가능성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음

- 레임덕 방지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행정부 산하 공무원이 기강 확립의 최우선 대상일 수밖에 없음 ⇨ 아직까지 사법부는 상대적 후순위임

#### 나. 간접적 영향 ⇨ 다양하고 포괄적일 것으로 예상

▣ ① 검찰·법무부의 득세 계속 ⇨ 사법부의 영향력 상대적 약화 우려

☑ "이완구 담화 하루만에 황교안, 檢에 '부정부패 척결' 지침"

▶ "황 장관은 이날 검찰에 '부정부패 사범 단속 강화 지시'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아울러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국가 혁신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15. 3. 13.자 아시아경제]

- 지난해 세월호 사건 수사의 교훈 ⇨ 초반에는 다소 무리해보였지만 속전속결·총력전式의 수사를 통해 검찰·법무부는 BH의 신임을 획득하였음
- '부정부패와 전면전' 국면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정권의 신뢰를 확보하려 나설 것임 ⇨ 그리고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가능성 높음





- 물론 그 과정에서는 다소 시행착오를 겪거나 무리수를 둬으로써 일시적으로 비난 자초·이미지 실추를 겪을 수 있음(ex. 유OO 검거 지연·실패 등 ⇨ [착안점②]) ⇨ 하지만 ‘구속 내지 기소’ 를 성공의 지표로 삼는 검찰 기핵수사의 특성상 일정 정도 이상의 성과는 확보할 것임

**☑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례**

- ▶ 다소 무리한 듯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였으나, 보수적인 여론의 압박을 활용하여 헌재로부터 압도적인 차이의 정당해산 결정을 받아냄 ⇨ 결국 법무부와 헌재 모두에 대한 BH의 전폭적 지지·신뢰로 이어졌음

**☑ 최근 헌재의 긍정적 이미지 축적·제고 현황**

- ▶ [對BH]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 정권으로부터 ‘체제·정권 유지의 협조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는 긍정적 이미지 획득
- ▶ [對국민] 간통죄 위헌 결정 ⇨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를 통하여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으로 말미암은 수구적·보수적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국민으로부터 ‘기본권 수호자, 개혁적·진보적 판단자’라는 긍정적 이미지 획득

**■ ② 무리한 수사·기소로 인한 후폭풍 ⇨ 부담스러운 사건 처리에 대한 법원 부담 발생·가중 ⇨ [착안점③]**

- 성과를 내기 위한 검찰의 수사·기소는 무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 여부, 본안에서의 유·무죄 판단 등에서 법원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임
- 특히 민감한 사안의 경우 BH·언론 등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법원의 결정이 그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전 방위적인 비판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

**☑ [사실] ‘벤츠 여검사’ 무죄 국민 상식과 거리 멀다.**

- ▶ “대법원의 벤츠 여검사 무죄 판결은 공교롭게도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에 대한 무관용을 선언한 날 나왔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손발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대법원이 판단하는 부정부패의 기준은 국민 일반의 상식, 정서와는 사뭇 동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검찰이 부정부패를 적발해도 법원이 과연 국민이 수긍할 만한 수준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2015. 3. 14.자 서울신문]



## 4. 대응 방향 검토

### 가. 소극적 측면

#### ■ [착안점①] 사정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지 않도록 내부 구성원에 대한 자체적 단속 강화

- 강도 높은 사정 국면에서 자칫 사법부 구성원의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 사법 개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위기 점검·관리 태세를 강화하여야 함
- 가까운 과거에도 국가적인 위기 상황 또는 사정 정국에서 내부 구성원에 대한 단속을 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이 초래된 사례 있음 ⇨ 미온적인 대처로는 위기를 예방할 수 없다는 교훈

#### ☑ 작년 세월호 사고 직후 공직자의 처신과 관련한 위기 사례 발생

- ▶ 사건 발생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였음 ⇨ 하지만 만일 조기 진화에 실패하였다면 어떠한 결과를 불러왔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위기 상황이었음
- ▶ 당시에 사례 발생 이전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아 공직자로서 처신에 주의할 것을 미리 내부 구성원에게 안내·공지한 터였음

- ① 곧 개최될 전국수석부장회의, 전국사무국장회의 등에서 최근 정국과 관련하여 내부 구성원들이 긴장감을 유지하여야 함을 강조·전파할 필요가 있음 ⇨ ② 이후 전체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에 관하여 안내·공지하여야 함
- CJ계서도 각종 말씀을 통하여 이를 강조하실 필요가 있음 ⇨ ‘부정부패와 전면전’에 직접적으로 동조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기존의 철학, 즉 사법 신뢰 회복·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러한 취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녹여 말씀하실 필요가 있음

### 나. 적극적 측면

#### ■ [착안점②] 상고법원안 입법 등 주요 사법정책 추진 시기를 면밀



## 하게 조율하여야 함

- '부정부패와 전면전'을 통하여 다소나마 **BH와 여권이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은 상고법원안 입법 등 주요 사법정책 추진에 유리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아야 함**
  - 특히 검찰·법무부의 득세로 사법부가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임
- 하지만 이와 같은 **司正 국면은 항상 '양날의 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특히 검찰·법무부가 실책을 저지르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 이므로 타이밍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함
  - 아래에서 언급하는 주요 사건의 처리 시기와의 연관시킬 필요도 있음

## ▣ [착안점③] 주요 사건 처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검찰권 적절한 견제 vs. 정권과의 적절한 관계 유지'라는 틀 속에서 사법부가 적절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
  - 특히 불필요하게 언론이나 BH의 오해를 살 필요 없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야 함 ⇨ 관련 사건 처리 시 진의가 충분히 설명·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보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야 함
- 관심 사안의 신속 처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끝]



#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 1. 검토 배경

- 최근 이 모 부장판사의 인터넷 익명 댓글이 공개되어 파장
- 유사 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검토 필요
  - 현직 법관들로만 구성되고, 모든 글을 익명으로만 올리게 되어 있는 인터넷 카페(모임)가 활발히 활동 중임
  - 위 익명게시판의 내용이 유출, 공개될 경우 내용에 따라 이 모 부장판사 사건과 유사한 파장 예상됨
  - 수백 명의 법관이 활동 중이어서 이 모 부장판사 사건처럼 '특정 개인의 일탈행위'라는 논리로 방어할 수 없고, 해당 글이 법관 조직 전체의 인식과 언행을 드러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치명적 위협성
- ①먼저 위 익명 인터넷 카페의 현황과 게시글의 전반적 성향을 살펴본 후, ②政務的인 관점에서 몇 가지 대응방안을 검토함

## 2. 카페 현황

- 명칭 : '이판사판야단법석'
  -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위치(<http://cafe.daum.net/leeprosapro>)
- 개설 일자 및 운영진
  - 2014. 10. 24. 개설
  - 개설자는 ○○지법 ○○○ 판사(35기, 남편은 32기 ○○○ 판사)로 알려져 있음
  - 현재 카페지기(최고 운영자) 역시 개설자인 ○○○ 판사로 알려져 있고, 추가로 7명의 판사가 운영자로 등록되어 있음



## ■ 가입자 수 및 활동 정도

### ● 2015. 2. 15. 기준 총 가입 법관 384명

- 실명과 코트넷 메일을 통해 현직 법관임을 확인한 후 정회원 자격 부여
- 기존 법관회원이 다른 법관을 회원으로 초대하는 기능을 통해 회원수 급증
- 개설 3개월만에 가입 법관이 300명을 넘고, 매주 가입 법관이 30명 이상 증가할 정도로 급증세에 있다가 2월 들어 1주당 10여 명 선으로 증가세 다소 둔화. 이 모 부장판사 사태 이후 가입자 증가 미미함

### ● 매주 250명 안팎의 법관이 위 사이트를 방문하고, 매주 300건 안팎의 게시글(댓글 포함, 댓글 제외한 본글은 매주 30건 정도)이 올라 올 정도로 활발히 활동 중

- 원세훈 판결, 상고법원, 대법관 제청 등 주요 사법부 이슈에는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림
- 인터넷 아이디는 물론 닉네임, IP주소 등도 전혀 표시되지 않는 완전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글 작성자를 알 수 없음은 물론 동일한 사람이 작성한 글인지 여부도 확인 불가능함

### ● 1일 방문수가 1000건 이상으로 집계될 정도로 1일 수차례 방문하는 적극 활동 법관이 상당수로 보임 (대부분의 글이 근무시간 중 작성)

## ■ 게시판 구성

- 정의의 플랫폼(사법부 관련 의견 개진) / 업무Q&A / 인사연수정보 / 책창고 / 세상 보기(사회 전반 의견 개진) / 도와주세요 / 잡수다 / 카페 운영 관련건의 게시판으로 구성됨
- 도서 소개하는 책창고 게시판 제외한 모든 게시판이 비교적 활성화

## 3. 게시글 분석

- 법원 내부의 내밀한 정서나 인식을 언급하는 내용이 많아 유출, 공개시 위험성 큼



☑ 실제 게시글

- 전관예우에 관한 30여개의 댓글 중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많은 판사가 법원에 근무 중', '주변 부장님 심지어 단독 중에 있다', '부장이 대놓고 봐줘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불가능한 결론이 나왔다'는 취지의 댓글이 상당수 (전문은 별지 첨부)
- 원세훈 사건 1심 재판장의 고등부장 발령에 관한 50여개의 댓글 중 '이 ○○ 부장의 승진 사례가 다른 법관들의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위 법관들이 대법관 승진을 위해 여당, 야당의 눈치를 보며 미담사례로 소개될 판결을 일부러 만들어 내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
- 신○○ 대법관님 퇴임 관련 기사에 대한 50여개의 댓글 중 '개전의 정이 없다', '퇴임 후 대통령에 의해 정무직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댓글
- 최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에 관하여 '대법원이 이제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는 글
- 합의과정에서 부장과 견해가 다른 경우 대응방법에 관한 20여개의 댓글

▣ 사회 및 사법부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드러내는 내용도 매우 많음

- 소장 판사가 대부분이어서 사법부 정책이나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도 상당수 있으나, 표현과 수위는 대체로 정제되어 있음

▣ 다만, 현재까지 저급한 '표현'이나 인신공격성 내용은 눈에 띄지 않고, 나름 건전한 수준의 표현과 자정력을 유지하고 있음

▣ 게시글 유출 가능성 관련 카페 내부 논의

- 지난 달 카페 회원인 법관이 전관예우 관련 글을 언급하면서 '외부 유출시 문제소지가 큰 게시글에 대해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
  - 토론이 이루어졌으나, 다수 회원이 '동료법관을 믿자, 문제되면 그 때 폐쇄하자'는 정도의 입장을 보임
  - 운영자도 '동료법관의 글의 내용까지 관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공지함
- 최근 이 모 부장판사 댓글 공개 사건 이후



- 위 카페의 익명 댓글도 위험한 것 아니냐는 염려의 글이 몇 개 달렸고, 유출경위 등에 관하여 가입자의 관심이 크나, 추가 논의는 없는 상황임

## 4. 대응방안 검토

### ▣ 기본 고려사항

- 위 카페의 존재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함
  - 언론에서 취재에 나설 경우 게시글이 유출될 가능성 큼
- 가입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가입 법관에 의한 유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외부 유출에 대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내가 알릴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심지어 좀 알려지면 어쩌라는 생각이다. 자체정화로 안되는 문제가 공론화되어 이참에 사법부 독립 및 신뢰회복이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느냐’ 는 위험한 태도를 드러낸 글도 있었음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출되서 문제되면 그 때 카페를 폐쇄하자’ 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가입자가 상당수 있음
  - 퇴직하는 법관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공지되어 있으나, 퇴직하면서 관련 글을 출력하거나 저장하여둘 가능성도 있음
- 이 모 부장판사 사건으로 카페 가입 법관들이 게시글 유출에 대한 우려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활용할 필요 있음
  - 현재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적기에 마련되어야 함
- 특정 카페의 활동에 대한 개입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억압으로 비춰질 우려가 큼
  - 반발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우선시되어야 함

### ▣ 참고사항 : 국내외 관련 가이드라인 검토

- Senior Presiding Judge for England and Wales(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관할하는 항소법원장 격)가 2012년 제정한 법관을 위한 인터넷



##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규정

- ‘익명으로 블로그 등 인터넷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신상정보가 밝혀지지 않는다고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이유를 들어 ‘법관은 인터넷에 글을 게시함에 있어 자신이 법관임을 밝혀서는 아니되고, 법관임이 밝혀질 경우 법관의 공정성과 사법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의사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인터넷 사용 가이드라인이 익명 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함
- 위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 규정에 반하는 기존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
- 위 규정은 영국에서 일부 법관과 언론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함
- 위 규정을 포함하여 외국의 유사 사례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 및 연구 필요함 (국내에서는 공직자 또는 법관의 인터넷 익명 활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1. 11. 29.자 권고의견**

-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도 요구되므로, SNS 사용시 신상정보와 게시물 공개범위 설정 및 게시물 관리 등에 신중하여야 한다.
-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견표명시 자기절제와 품위유지에 유의하고,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 미칠 우려가 있는 외관을 회피하여야 한다
- SNS사용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공감하였으나, 아직 미제정

### ● **공직자 SNS 사용원칙과 요령**

-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 7.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
- 공론화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 기밀을 유지할 것, 정책 및 업무와의 일치성을 고려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 **[대응방안①] 선배 법관이 운영진에게 권유하는 방안 ⇨ 효과 미약**

- **[개요]** 공식 사법행정라인이 아닌 카페 운영진 소속법원의 선배, 동





료 법관 등이 게시글 유출가능성과 위험성을 경고하고, 신중한 운영, 위험성 있는 글의 삭제 또는 실명화 등을 권유하는 방안

● 장점 : 사법행정권자가 직접 개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반발이나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운영진 입장 변화시 일거에 문제 해결 가능

● 한계 및 위험성

- 운영자가 이미 지난 달 ‘외부 유출에 대비하자’ 는 내부 제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운영진의 성향상 입장 변화 가능성 희박
- 그간의 글에 나타난 운영진의 성향상 사법행정권자가 아닌 단순한 선배 법관의 권유 내지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반발할 가능성 있고, ‘가입 법관 다수의 제안 내지 동의’ 라는 명분이 없는 한 운영진 주도로 종전 운영방식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대응방안②]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

⇒ 실현 가능성 미미

● [개요] 소장 판사가 운영 및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위 카페에 신중함을 갖춘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하여 게시글 유출가능성 및 위험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내부 변화 시도

● 장점 : 내부 구성원 설득을 통해 자연스러운 변화 가능함

● 한계 및 위험성

- 실제 카페에 가입해 문제제기를 하는 역할을 맡을 선배 법관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소요됨
- 위 카페가 선배 법관에 의해 주도된다고 느낄 경우 운영진이 소장 판사를 위한 또 다른 익명 카페를 새로 개설할 가능성도 있음

■ [대응방안③] 법관 전체에 익명글 작성 관련 주의 공지를 하는 방안

⇒ 추가 검토 필요



- **[개요]** 법원장이나 수석부장 등이 위 카페를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 채 최근 이 모 부장판사 사태와 관련하여 법관은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더라도 극히 신중하여야 한다거나 근무시간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함을 공지함으로써 현재 카페 가입자들로 하여금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함
  - 카페를 언급할 경우 오히려 법관 사회의 관심을 불러 가입자가 급증하거나 외부에서 카페의 존재를 인지하여 취재를 시도할 위험 있음
- **장점**
  - 이 모 부장판사 사태로 인해 카페 가입 법관 스스로 느끼고 있는 염려를 활용할 수 있음
  -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특정 카페의 활동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아니한 채 카페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 위 익명 카페 뿐만 아니라 다른 포털사이트에 운영 중인 여성법관 카페 등 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도 신중함이 더해질 수 있음
- **한계 및 위험성**
  - 익명 활동의 자제 및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의 메일만으로 위 카페의 활동이 현저히 신중해지거나 위축되지 않는 수 있어 효과 크지 않을 가능성
  - 신중해진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종래의 활동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어서 일시적인 억제책에 불과함
  - 카페를 언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익명 카페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다소 민감한 사안이어서 각급 법원 공지메일의 ‘워딩’에 따라 예상치 못한 반발 가능성도 있음
- **[대응방안4] 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 장기 과제로 계속 검토**
- **[개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SNS 사용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



---

인 제정 필요성 공감하고도 아직 제정하지 못한 가이드라인을 익명 활동을 포함하여 제정

- 장점 : 충분한 검토 후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명확한 해결책 제시
- 한계 및 위험성

- 위 카페 게시글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방안은 될 수 없고,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의 도화선이 될 우려가 있음

■ **종합검토 : 3안을 중심으로 정무적인 측면까지 다각도로 고려하여 대응방안 추가 검토 필요**

- 2. 14. 이 모 부장판사 사표 수리 후 법관 조직의 여론 동향, 언론의 논조 및 위 카페의 변화 추이를 계속 관찰
- 위 특정 익명 카페에 대한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법관의 인터넷상 익명 및 실명 활동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대응전략의 일환으로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외국에서 공직자 또는 법관의 인터넷 익명 활동에 대한 규제 내지 가이드라인에 관한 심도 있는 추가 연구조사 필요.
- 장기과제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검토 필요. 끝.



전관예우 (세상보기 게시판) 조회수 559 작성일시 2015. 1. 29. 09:57

요즘 저한테 쫓힌 단어입니다.

인사철을 앞두고 개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가 작년에 개업하여 얼마 벌었다는 소문도 들리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전관예우가 뭐 얼마나 있겠어. 있어봤자 결론을 바꾸겠어? 세간의 오해 아니겠어? 라는 정도로만 치부했는데요.

항상 제가 빠지는 함정이지요, 남들도 나와 같을 것이라는..... 이해관계에 대한 상상력 부족에서 오는.

위 생각들은 여전히 유효하긴 합니다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절차상의 편의보다도 또한 공정한 재판에는 맞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느끼는 것은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많은 판사님들이 법원에 계시기 때문에 저 문제가 내부적으로도 예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래의 수혜자들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의 단초는, 법원을 나가신 분들이 돈을 왜 그렇게 많이 벌까? 왜 형사사건에 풀릴까? 였던 거 같습니다. 그것도 개업하고 1, 2년 안에 특히나...

전관은 왜 돈을 많이 벌까요?

물론 전관의 메리트를 그야말로 전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로서 발휘한다면 상관 없겠지만요.

익명이라고 하니 이런 글도 올려봅니다.

댓글 30개

15.01.29. 10:22 저도 요즘 이 생각 많이 했는데. 뉘신지 모르오나 찌찌뽕입니다. ㅎㅎ 법원이 전관예우의 문제를 직시하고 직면하지 않는 이상 신뢰는 공염불이라 생각합니다.

15.01.29. 10:24 형사사건 피고인과 그 가족은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이고, 그래서 판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판사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사실 비난하기 어려운 인지상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그러한 기대는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러한 기대에 기대어 사건을 수입하는 전관변호사들이겠지요.

↳ 15.01.30. 16:25 예전에 비슷한 문제의식의 글과 함께 많은 댓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원글 작성자가 어떠한 이유로 원글을 삭제하면서 댓글까지 다 없어진 것 같네요...ㅠㅠ



- 15.01.29. 10:38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많은 판사님들이 법원에 계시기 때문에” 라고 하셨는데, 법원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실제 느끼시는 때가 많으신가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둔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외관상으로는 이런 것을 한번도 느낀 적이 없는데요.... 혹은 어떤 판사님이 전관변호사에게 다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판사님이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싶은데요..
- ↳ 15.01.29. 14:05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아래 댓글처럼 야박하게 굴 수 없다며 풀어주는 상황에서 나중에 자신이 나갔을 때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느껴지던데요.
- 15.01.29. 10:30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있음을 외관상 티내는 판사가 있을까요?^^
- ↳ 15.01.30. 17:42 재댓글분 저랑 배석 같이 하신 분인 것 같다는ㅋㅋ 좌배님이랑 저랑 부장님께 엄청 저항했으나 일부는 막지 못했음을 반성합니다.TT
- 15.01.29. 10:38 첫번 째 댓글에 공감합니다. 한창 법원의 신뢰회복을 논의할 때, 저는 한번은 법원 정문에 “우리 법원에 전관예우는 없습니다.”라는 플란카드를 만들어서 걸면 어떨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입 밖에 내지 않아 우스꽝스러움은 면했어요.
- ↳ 15.02.02. 13:29 죄송합니다만, '플래카드'가 맞습니다.
- 15.01.29. 10:54 “그래도 000인데 면증 세워줘야 하지 않겠어요..조금만 (1심 형량) 낮출 수 없을까요?” 어떤 형사항소부장님의 솔직한 토토가 배석들 사이에서 회자된 적이 있었죠. 법원의 엄결성을 믿고 싶어했던 그 당시 순진한 저로서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 ↳ 15.01.29. 15:30 저는 지방에 근무할때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지방이라 아직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및 서울을 거쳐서 이동했는데도 빈도는 물론 훨씬 적지만, 완전히 없지는 않더라구요(직접 경험만 한정된 건 아니구요, 어느 부장님이 그랬다더라 이렇게 간접으로 들은 경험까지 합해서요....) 처음에 받은 큰 충격이 슬슬 잊혀지고 무더지는 제 자신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 15.01.29. 10:55 지방이라 그런지 동기 변호사들이 언제 형단하냐고 대놓고 물어보더라구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세일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 ↳ 15.01.30. 17:55 그런 이해관계가 포함된 인간관계면 일찌감치 단절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너무 매정한가... 죄송
- 15.01.29. 11:12 윗윗 댓글과 같은경우 꽤나있는 것으로 전해듣고, 저도 충격 받았습니다.
- 15.01.29. 11:16 부정적인 예는 댓글에 많이 나왔으니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법원 내에서도 유능하다는 평판이 자자했던 전관변호사님을 민/형에서 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분의 사건 수임방식이나 지인인 판사들에 대한 영향력 여부는 모르겠으



나, 완벽한 논리체계를 갖춘 민사 준비서면(그 자체로 판결문같은 완결성), 치고 빠질 때를 아는 형사 의견서 내용과 공판준비태도, 재판부와 상대변호사 또는 검사를 향해 정중히 예의를 갖추면서도 사건의 핵심파악과 논리적 공방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시니까 사건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더군요. 전관예우라는 색안경이 이런 실력있는 전관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ㄴ 15.01.29. 11:21 아무래도 법원 출신 변호사가 재판 준비와 진행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굳이 특정비교는 삼가겠지만, 차이가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ㄴ 15.01.29. 11:37 이길 사건을 골라서 말아서 승소율이 높을 수도 있어요 일단 사건이 몰릴테고 판사의 감으로 이길 만한 것만 골라 맡는다는 거죠

ㄴ 15.01.29. 12:30 이길 사건을 골라서 맡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선호”로 인한 부수적 효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소장과 준비서면을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변론도 깔끔하게 하고, 특히 증인신문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만의 느낌인가 모르겠습니다.

ㄴ 15.01.29. 15:31 반면 놀라울 정도로 무례한 변호사님이 있어서 검색해봤는데 고위 법관 출신인 경우도 좀 있지 않나요? 전 사실 몇번 경험했는데...--;

15.01.29. 11:42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돈이죠

15.01.29. 15:29 저는 전관예우란 없다고 믿고 있고, 저 스스로 전관예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사건 진행해 왔으며(다행히 배석일 때 부장님도 그런 분이 없었음),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제가 너무 순진한건가요? 물론 법원에 계셨던 분들이 주장을 잘 하시고 진행도 잘하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ㄴ 15.01.29. 17:08 제가 전에 딱 그랬거든요. 나와 내 주위가 그러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무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그 존재자체에 무지했어요. 저를 탓하는 것이니 오해 마세요.

15.01.29. 15:48 전관변호사님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젊은 단독 판사가 젤 무섭다고 이야기하고요. 예전에 한번 고등부장님 출신 변호사님이 '소정의변론'을 하고싶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몰랐던 우리부장님 안된다고 매몰차게 했다가, 나중에 그분이 누군지 알게된 후 '우리랑 같이 계셨던 분인데..'하시며 허용하시더라고요. 그게, 법원에 남은 사람에게는 '평판'의 문제로 압박 내지 작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15.01.29. 15:52 반면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나요? 전관이고 재판장과 잘 아는 사이면서도 소정의 변론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들. 특히 법원 재직 중에도 전관예우나 소정의변론에 대해 비판적이셨던 분들인데, 가끔 그런 분들이 전화하지 않으면, 혹시 내가 잘못해서, 내 인간성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닌지.... 걱정 했는데, 원래 그분들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이처럼 사직한 이후에도 법원



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싶네요.

15.01.29. 18:01 나와 내 주위(특히 배석판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그렇다고 믿었던 건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부장님을 비롯해서 단독판사들도 몇번 경험했습니다. 부장님들이 내놓고 봐줘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전관변호사님들은 사건 하나 잘 만나면 억 단위로 돈을 벌지요. 우리의 앞은 상상은 초월하는 듯해요. 돈이 그렇게 걸려 있는데 소정의 변론이 두려울까요? 아예 안 될 사건을 들이미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 될만한 사건, 애매한 경계선 상의 사건이고, 그런 사건에서 전관임을 이용해서 무조건 된다고 선입하고, 또 실제로 되게 만드는 거죠 뭐.

15.01.30. 02:15 제 주위 얘기를 듣건대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원인 중 상당 부분은 소위 말하는 사무장들, 사건브로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전관예우나 판사와의 관계를 들먹여 사건수임료를 올리고 자기가 먹을 파이의 크기를 뺏겨갑니다. 실제 전관예우라 하는 것은 옆회사 출신은 엄청 많고, 우리회사도 가끔 들려오는 얘기로는 - 거의 **불가능한 결론이 나왔다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대부분은 아닐거라 생각하는데, 부인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있는가봅니다

↳ 15.02.03. 09:24 맞습니다. 다만 전관들도 최소한 알면서 묵인하거나 한마디씩 거드시겠지요.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공정하고 떠들어도 한번 그 시장을 겪어본 사람(국민)들이 법원이나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는 기여하는 것 같아요.

15.01.30. 09:36 저도 꽤나 순진했나 봅니다. 씩씩하네요. 그래도 순진한 사람들은 모를 정도고 위에서 나온 얘기 정도라면 법관의 권한에 비추어 볼 때 놀라울 정도로 청렴한 것 아닌가 하고 위안해 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깨끗한 조직이 아닐까요...

15.01.30. 14:59 주변에 다른 사람이 전관을 예우하더라-보다, 적어도 나는 그러한 의심을 받지 않게 재판을 하자-는 의지가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 대법관님께서 대법관 되시기 전에 사석에서, 판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인간관계 단절을 감수하셨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판사의 길과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사람의 길을 따로 있고, 판사의 길을 선택한 이상 그 길만 걸어야 한다고 하셔서 깊이 감명을 받았더랬습니다.

↳ 15.01.30. 15:01 - 다만, 법원에서 '예우'를 하지 않음에도, 사람들의 기대로 인한 사건쏠림-유리한 사건 수임-좋은 결과, 브로커 또는 변호사의 거짓말(판사와 친해서, 전관이라서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선전하는 식), 또는 경험과 실력에 따라 전관변호사님들이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등의 현실과 그로 인한 국민의 '오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응이 필요하겠지만요.

#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시 경제적 영향 분석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8. 6. 5.

## 기획조정실





## < 요약 >

### 1. 검토 배경

- 통상임금 관련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공개 변론·생중계 결정
- 경제적 영향을 놓고 각 경제주체가 논란을 거듭함

### 2. 기업이 부담해야 할 노동비용에 미치는 영향

#### 가. 각 경제주체의 주장

- 재계: “38조 5,509억 원”
- 노동계: “5조 7,456억 원”
- 국책 연구소: “14조 6,000억 원~21조 9,000억 원”

#### 나. 검토

- 편차가 심한 1차적 원인 ⇨ 산출한 노동비용의 명목이 다름
  - 재계: 장래의 노동비용 포함, 간접 노동비용 포함
  - 노동계: 기왕의 직접 노동비용에 국한
  - 하지만 같은 명목의 노동비용을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심함
- 재계의 분석 결과 ⇨ 과대 계상임
  - 비판①: 모든 근로자의 근속 연수가 3년 이상이라고 가정
  - 비판②: 5인 미만 근무 사업장 근로자들도 모두 포함
  - 비판③: 유리한 기초 통계자료를 활용
- 노동계의 분석 결과 ⇨ 과소 계상임
  - 비판①: 계산 방식에 오류
  - 비판②: 간접 노동비용과 장래의 노동비용을 고려하지 않음
- 국책 연구소의 분석 결과 ⇨ 비교적 객관적임
- 현실에 전액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고, 효과는 상당히 축소될 것



- 변수①: 개인 근로자의 소극적 대응 가능성
- 변수②: 노사 타협·조정 가능성
- 변수③: 기업의 적극적 노동비용 절감 가능성
- 실제 효과를 1/5 수준(4조 원)으로 추산하는 견해도 있음

### 3. 기타 고용, 분배, 임금 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 가. 고용 파급 효과

- ▣ 재계: “37만 2,000개~41만 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
- ▣ 노동계: “연장근로 시간이 줄고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것”
- ▣ 검토: 모두 일방적 효과만을 내세우고 있고, 쉽게 예측하기 어려움

#### 나.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

- ▣ 노동소득분배율 개선 효과
- ▣ 임금의 양극화 심화
- ▣ 최저임금의 사실상 감소 효과

#### 다. 임금 체계에 미치는 영향

- ▣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체계 단순화
- ▣ 포괄임금제로 전환 촉진
- ▣ 상여금 체계의 변화

### 4. 토론: 사법부의 판단에 경제적 파급효과의 고려 여부

- ▣ 재계: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
  - “공평성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 노동계: “전혀 고려되지 말아야 한다”
  - “추가 노동비용은 지난 3년 동안의 체불임금일 뿐임”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시 경제적 영향 분석

2018. 6. 5.

기획조정심의관(鄭)

## I. 검토 배경

- ▣ 이른바 ‘금아리무진 사건’ 판결 선고 후 통상임금의 범위가 사회적 쟁점화 ⇨ 대법원, 올해 8월에 2건의 통상임금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 5.(목) 변론 기일의 공개·생중계 결정
- ▣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판단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놓고 각 경제 주체가 논란을 거듭함 ⇨ 주장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 있음

## II. 기업이 부담해야 할 노동비용에 미치는 영향

### 가. 재계(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 결과<sup>1)</sup>

- ▣ “지난 3년간 직간접 노동비용 + 향후 1년간 직간접 노동비용 = 38조 5,509억 원”
- 지난 3년간 직간접 노동비용 29조 6,846억 원 + 향후 1년간 직간접 노동비용 8조 8,663억 원

◆ 계산 근거			
구분			추가 부담액
1년치 발생 비용[①]	통상임금 연동 수당	초과근로수당	5조 8,849억 원
		연차유급휴가수당	9,982억 원
		변동 상여금	7,585억 원
	간접 노동비용	퇴직금	5,997억 원
		사회보험료	6,190억 원
		임금채권 보장 부담금	61억 원
	소계		

1) 경총 경제조사본부,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 시 경제적 영향 분석', 경영계(2013. 5.) 참조.



3년치 소급분[②]	24조 8,000억 원
퇴직급여 총당금 증가액[③]	4조 8,846억 원
관결 후 즉시 발생 비용[②+③]	29조 6,846억 원
관결 후(1. 1. 판결 기준) 당해 발생 비용[①+②+③]	38조 5,509억 원

## 나. 노동계(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분석 결과<sup>2)</sup>

### ▣ “지난 3년간 직접 노동비용 = 5조 7,456억 원”

- 지난 3년간 직접 노동비용 = 근로자 1인당 월간 직접 노동비용 × 통상임금 청구 소송 당사자인 근로자 수 × 36개월
- 근로자 1인당 월간 직접 노동비용: 최대 3만 8,553원

◆ 계산 근거				
▶ 2012년 기준 농업 제외 전체 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317만 원의 구성 내역				
구분	정액 급여 (기본급·정기적 수당 등)	초과 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특별 급여 (고정 상여금 등)	합계
금액	247만 원	18만 1,000원,	52만 7,000원	317만 원
▶ 고정 상여금 등이 포함된 특별 급여는 정액 급여의 21.3%에 불과 ⇨ 특별 급여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초과 급여의 추가 액은 원래의 초과 급여의 21.3%를 초과할 수 없음				
▶ ∴ 1인당 월간 추가 직접 노동비용의 상한액은 3만 8,553원(= 원래의 초과 급여액 18만 1,000원 × 21.3%)				

- 통상임금 청구 소송 당사자인 근로자 수: 414만 명

◆ 계산 근거			
▶ 2012년 기준 임금 근로자 전체 1,770만 명의 구성 내역			
구분	주 40시간 초과 근로자(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하므로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초과 급여 지급 대상)	주 40시간 이하 근로자	합계
인원	575만 명(32.5%)	1,195만 명(67.5%)	1,770만 명
▶ 주 40시간 초과 근로자 575만 명의 구성 내역			
구분	5인 이상 근무 사업장 근로자(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5인 미만 근무 사업장 근로자	합계
인원	414만 명(72%) ⇨ 통상임금 청구 소송 당사자	161만 명(28%)	575만 명

2) ‘재계 “38조” vs 노동계 “5조”…통상임금 추가 비용 진실은?’, 한겨레(2013. 5. 20.자) 참조.



- 지난 3년간 직접 노동비용: 5조 7,456억 원 [= (3만 8,553원 × 414만 명) × 36개월]

#### 다. 국책 연구소(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sup>3)</sup>

- ▣ “지난 3년간 직간접 노동비용 + 향후 1년간 직간접 노동비용 = 14조 6,000억 원~21조 9,000억 원”
-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과 기타 수당을 포함할 경우 ⇨ 21조 9,000억 원

◆ 계산 근거

	전체 노동비용	직접 노동비용		간접 노동비용	
		초과 급여	연차수당	퇴직급여충당금	사회보험료
향후 1년	6조 1,182억 원	4조 70억 원	1조 1,699억 원	4,314억 원	5,099억 원
지난 3년	15조 8,279억 원	8조 9,846억 원	2조 5,757억 원	3조 1,265억 원	1조 1,411억 원
합계	21조 9,461억 원	12조 9,916억 원	3조 7,456억 원	3조 5,579억 원	1조 6,510억 원

-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만을 포함할 경우 ⇨ 14조 6,000억 원

◆ 계산 근거

	전체 노동비용	직접 노동비용		간접 노동비용	
		초과 급여	연차수당	퇴직급여충당금	사회보험료
향후 1년	4조 551억 원	2조 6,614억 원	7,696억 원	2,859억 원	3,382억 원
지난 3년	10조 5,492억 원	5조 9,910억 원	1조 7,051억 원	2조 928억 원	7,602억 원
합계	14조 6,042억 원	8조 6,523억 원	2조 4,747억 원	2조 3,788억 원	1조 984억 원

#### 라. 검토

##### 1) 각 분석 결과의 전체적 비교

###### ▣ 서로 편차가 심함

- 특히 재계와 노동계의 분석 결과는 그 차이가 6.8배에 달함

3) 정○○(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노동비용 변화’, 노동리뷰(2013. 8.) 참조.



(단위: 조 원)

		전체 노동비용	직접 노동비용			간접 노동비용	
			초과 급여	연차수당	변동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사회보험료
재계	향후 1년	8.8	5.9	1.0	0.8	0.6	0.6
	지난 3년	29.7	17.7	3.0	2.3	4.9	1.8
	합계	38.5	23.6	4	3.1	5.5	2.4
노동계	향후 1년	-	-	-	-	-	-
	지난 3년	-	5.7	-	-	-	-
	합계	5.7	5.7	-	-	-	-
국책 연구소	향후 1년	4.1~6.1	2.7~4.0	0.8~1.2	-	0.3~0.4	0.3~0.5
	지난 3년	10.5~15.8	6.0~9.0	1.7~2.6	-	2.1~3.1	0.8~1.1
	합계	14.6~21.9	8.7~13.0	2.5~3.8	-	2.4~3.5	1.1~1.6

■ **편차 발생의 1차적 원인** ⇨ 산출한 노동비용의 명목이 다름

- **재계:** 장래의 노동비용 포함, 간접 노동비용 포함
  - “지난 3년간 직간접 노동비용 + 향후 1년간 직간접 노동비용 = 38조 5,509억 원”
- **노동계:** 기왕의 직접 노동비용에 국한
  - “지난 3년간 직접 노동비용 = 5조 7,456억 원”
- 하지만 문제는, 이를 감안하여 같은 명목의 노동비용을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심하다는 것임
  - “지난 3년간 직접 노동비용” 만 추출하여 비교할 경우에도 ⇨ 재계 17조 7,000억 원 ⇨ 노동계 5조 7,000억 원 ⇨ 국책 연구소 6조 원~9조 원

2) 각 분석 결과에 대한 개별적 검토

■ **재계의 분석 결과** ⇨ 과대 계상임

- **비판①:** 모든 근로자의 근속 연수가 3년 이상이라는 가정은 비현실적임
  - 근속 연수가 3년에 못 미치는 근로자의 수도 상당함
- **비판②:**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근무 사업장 근로자들도 모두 포함시키고 똑같이



### 노동비용이 증가한다고 가정한 것도 역시 비현실적임

- 2012년 기준 전체 근로자 12,447,000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099,000명 ⇨ 25%에 달함
- **비판③: 결과값이 크게 나오는 데에 유리한 기초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결과를 부풀림**
  - 추가 노동비용이 발생하는 노동자의 수 산정에 2010년 통계 수치(1,334만 명)를 사용 ⇨ 한국노동연구원은 2012년 통계 수치(1,244만 명)를 사용
  - 고정 상여금 산정에도 2008년 통계 수치를 사용 ⇨ 한국노동연구원은 2012년 통계 수치를 사용

### ▣ 노동계의 분석 결과 ⇨ 과소 계상임

- **비판①: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음(보고자 사건)**
  - 근로자 1인당 월간 직접 노동비용을 전체 근로자 평균값을 사용하여 계산한 후, 이 값에 통상임금 청구 소송 당사자인 근로자 수를 곱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그와 같이 계산할 경우 노동비용의 1인당 단가는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평균값인데, 이에 일부 근로자 수만을 곱하게 되므로 실제보다 과소평가됨

#### ◆ 사안의 단순화를 통한 노동계의 계산 방식 오류 설명

☞ 10명의 근로자 중 5명의 근로자만이 초과근로를 하고 초과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각각 4만 원씩(전체 합계 20만 원)의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사안을 단순화할 경우

⇨ 노동계의 계산 방식은 “10명의 근로자 전체가 평균 2만 원의 초과근로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5명이므로, 10만 원만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식임(실제로는 5명이 4만원씩 2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함)

- **비판②: 간접 노동비용과 장래의 노동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일부 노동비용만을 고려한 것**
  - 경제적 영향의 전체 모습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간접 노동비용과 장래의 노동비용도 고려하여야 함

### ▣ 국책 연구소(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 ⇨ 비교적 객관적임(보



### 고자 사건)

- 내용 자체로 큰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며, 최신의 통계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보임
- 결과에 있어서도 과대 계상된 재계의 분석 결과와 과소 계상된 노동계의 분석 결과의 중간 범위에 위치함
- 기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나누어 결과를 산출함 ⇨ 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해당 급여의 명목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고려함

### 3) 각 분석 결과의 전반적인 실현 가능성 검토

- ▣ **설령 분석 결과가 적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에 전액 반영되지는 않을 것임** ⇨ 파급효과는 상당히 축소된 형태로 나타날 것임<sup>4)</sup>
- 위 분석 결과들은 계산의 편의 등의 이유로 ‘다른 조건에 변함이 없다(ceteris paribus)’라는 가정 아래 계산된 것들이나,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기왕 노동비용에 관한 변수①: 개인 근로자의 소극적 대응 가능성
  - 개인 근로자, 그리고 조직력이 약한 노동조합에 속한 근로자는 상당한 시간과 소송비용을 감당하여야 하는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기왕 노동비용에 관한 변수②: 노사 타협·조정 가능성
  - 어느 정도 조직력을 갖춘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측과 타협 내지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사측에서도 이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노동비용보다 다소 작은 금액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음

4) 김○○(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통상임금 산정 방식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과 대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13. 6.) 참조.





- 장래 노동비용에 관한 변수: 기업의 적극적 노동비용 절감 가능성
  - 기업은 장래의 노동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를 줄이고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의 대응을 강구할 것이고, 실제로 일정 부분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임
- 극단적으로는 실제로 반영될 효과를 국책 연구소 추정치의 1/5 수준(4조 원) 정도로 추산하기도 함<sup>5)</sup>(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견해: 친노동계 성향의 연구기관임)
  -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 파견’ 사건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등 대기업은 종래의 관행을 고치지 않고 있는 것 등을 사례로 들면서, 판결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근거로 들

### III. 기타 고용, 분배, 임금 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 가. 고용 파급 효과

##### 1)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

- 재계: “추가 노동비용 38조 5,509억 원으로 말미암아 37만 2,000개~41만 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sup>6)</sup>
  - 37만 2,000개~41만 8,000개의 일자리 감소는 전체 고용률을 1% 하락시키는 규모임
  - 또한 매년 발생하는 향후 추가비용 8조 8,663억 원은 해마다 8만 5,000개~9만 6,000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규모임
- 성균관대 교수 조○○: “4개 산업(철강, 전자, 자동차, 조선)의 경우 2만 7,446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있음”<sup>7)</sup>
  - 수출 감소로 인한 직간접 고용 감소 효과가 1만 7,631명, 수입 증대

5) (주 4) 참조.

6) (주 1) 참조.

7) 조○○(성균관대학교 교수), ‘통상임금 판례 변화가 실물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법경제학회 발표문(2013. 6.) 참조.



에 따른 직간접 고용 감소 효과가 254명, 투자 감축에 따른 직간접 고용 감소 효과가 9,561명에 이룸

## 2)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

■ 노동계: “대기업의 장시간 노동 유인이 줄면 연장근로 시간이 줄고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것”<sup>8)</sup>

- 기업은 연장근로를 줄이고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등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대응 방식을 강구할 것 ⇨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고용이 창출될 수밖에 없음

	탈법적 초과근로			초과근로 일소 시 변화	
	수(천 명)	비율(%)	초과근로 시간 합계 (천 시간)	추가 고용 (천 명)	근로시간 (시간)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3,799	21.8	36,014	693	주 41.5
주 48시간 초과 근로자	5,393	31.0	54,946	1,145	주 40.4

## 3) 검토

■ 양측 주장 모두 복합적인 경제현상을 종합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방적 효과만을 내세우고 있음

- 재계의 주장: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 노동비용 상승 ⇨ 일자리 감소”라는 단순하고 일방적인 프로세스만 제시
- 노동계의 주장: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 노동비용 상승 ⇨ 비용 절감을 위한 연장근로 제한 ⇨ 일자리 증대”라는 단순하고 일방적인 프로세스만 제시

■ 하지만 정(正)의 효과와 부(負)의 효과가 복잡다단하게 충돌하는 문제이므로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움

8) (주 4) 참조.



## 나.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

### ■ 노동소득분배율 개선 효과

- 만약 국책 연구소(한국노동연구원) 추정대로 향후 1년 동안 피용자 보수 총액이 6조 1,182억 원 증가하고 기업·재산 소득이 그만큼 감소한다면 노동소득분배율은 0.7% 개선됨
- 2012년 노동소득분배율 59.7%(피용자 보수 총액 582조 1,340억 원, 기업·재산 소득 386조 4,300억 원,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 ⇨ 60.4%

### ■ 임금의 양극화 심화

- 대기업·정규직 사업장 근로자 ⇨ 임금 수준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큼
- 소기업·비정규직 사업장 근로자 ⇨ ①통상임금 청구 소송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음, ②대기업·정규직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로 인하여 그들의 추가 노동비용이 전가되어 임금 삭감 내지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 최저임금의 사실상 감소 효과

- 최저임금 산정 시 상여금을 포함시키면 한계선상에 있는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임금이 현재보다 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예] 현재 월 기본급 105만 원에 분기별로 상여금을 따로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101만 원 선인 최저임금이 내년에 5~6% 인상되어 106만 원이 되더라도 사업주는 기본급을 올려주지 않아도 됨 ⇨ ∵ 기본급 105만 원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계산하면 인상된 최저임금을 이미 넘어서게 되기 때문임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5. 20. 기자회견 시 발언 ⇨ “통상임금의 범위를 새롭게 정하는 것은 통상임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최저임금과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 다. 임금 체계에 미치는 영향

### ■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체계 단순화



-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고정 상여금을 늘릴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임
- 종래 우리 임금 체계는 기본급 비중이 낮고 각종 수당이 많으며 상여금 비중이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 ⇒ 통상임금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 근본 원인 중의 하나임

◆ 그동안 왜곡된 임금 체계로 인하여 발생하여온 모순 현상: 0.5배 가산 지급되어야 하는 초과근로수당이 소정 근로시간의 수당보다 작음

▶ 2012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근로자는 매달 소정 근로시간(167.2시간) 근로로 300만 원(정액 급여+특별 급여)을 받고, 초과근로시간(12.8시간) 근로로 18만 원(초과 급여)을 받았음 ⇒ 시간 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소정 근로시간 시급은 1만 8,000원이고, 초과근로시간 시급은 1만 4,000원임 ⇒ 초과근로시간 시급이 소정 근로시간 시급보다 1.5배 많은 것이 아니라 0.8배밖에 되지 않았던 것임

#### ■ 포괄임금제로 전환 촉진

- 상여금과 통상임금 문제를 아예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괄임금제로 임금 체계를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 상여금 체계의 변화

- 비고과 연공형 정기 상여는 줄어들고 성과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는 수당과 상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 IV. 토론: 사법부의 판단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

### 가. 재계: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

#### ■ “공평성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과도하게 법문의 논리에만 얽매일 경우 경제 사회의 거시적 흐름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음

### 나. 노동계: “전혀 고려되지 말아야 한다”



---

▣ “추가 노동비용은 지난 3년 동안의 체불임금일 뿐임”

- 재계가 산출한 38조 원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새로운 비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당연히 받았어야 할 체불임금이고, 이 돈으로 인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고용과 투자를 촉진시키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투자 내지 촉매제가 될 수 있음. 끝.

# 법관 김종복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0000
----------	------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000 의원 외 00인

## 주 문

---

---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김종복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

---

성 명 : 김종복

직 위 : 법관

## 탄핵소추의 사유

---

---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 김종복(이하 '피소추자'라고 한다)은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헌법 제 10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27조) 조항 등을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 등을 위반하였다.

(다만 직권남용죄 등 형법 위반 사항은, 향후 검찰의 기소가 있을 경우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 소추안에는 별도로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위반 행위는 다른 피소추자들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2011. 9. ~ 2017. 9.)에 의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 2. ~ 2016. 2. 대법관 겸임),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이는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무 및 청렴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오로지 신뢰에 기반하여 사법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피소추자의 지위

피소추자는 2002. 2.경 사법연수원을 수료(31기)하여, 2002. 2.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등을 거쳐, 2011. 2.경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13. 2.경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의 직위를 겸임하게 되었다. 이후 피소추자는 2015.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전보되었다가, 201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로 전보된 이래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 본 탄핵소추안 발의일 기준으로 헌법 제101조 및 법원조직법 제5조에 따른 법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 2. 피소추자의 행위

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개입 및 제소 기획(2018. 11. 14.자 임종헌 공소장 112-139쪽)

1)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강형주는 2014. 12. 19.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결정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 이후 의원직이 상실된 통진당 소속 前 국회의원들과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퇴직된 통진당 소속 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위 의원직 상실 결정과 퇴직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이하 '통진당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향후 제기될 위 소송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사법



심사할 수 있는 ‘호기’라는 판단 하에,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던 GS칼텍스 사건 등에 대한 재판소원과 관련하여 재판취소 결정 방지를 위한 압박카드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 2) 이에 따라 임종헌 등은 이진만 양형실장을 팀장으로, 피소추자를 간사로 하는 통진당 행정소송 대응 TFT(이하 ‘통진당 TF’라 함)를 구성한 후, 통진당 TF로 하여금 통진당 해산결정으로 인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학관계, 통진당 해산을 둘러싼 국민 여론 및 정치적 지형, 2014. 12. 19. 발의된 상고법원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유불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법부에 가장 유리한 통진당 행정소송의 결론 및 그에 부합하는 판결 이유의 구성, 선고 시기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검토 결과를 통진당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전달하여 이를 관철시키기로 하였다.
- 3) 그리하여 이진만은 피소추자 등 팀원들로 하여금 관련 법령, 해외 사례, 학계의 태도, 언론보도 동향, 통진당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각 법원 기획법관 등으로부터 송부받은 소장과 첨부서류 등 소송자료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통진당 TF에서는 2015. 1. 7.경 ‘현 상황이 법원에 미칠 영향은 유불리가 공존하므로 위 소송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법률상 권한 없는 결정이므로 현행 헌법과 법률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더 크며, 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이나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사법부에 위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이유 설시 필요, 이하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방법’이라 함)’하는 내용의 2015. 1. 7.자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작성한 후 임종헌, 강형주, 박병대, 양승태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문건의 내용과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방법’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해당 재판의 심리, 결론, 판결이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4) 이와 관련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임종헌은 2015. 2.경 이진만 양형실장에게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이진만은 그 무렵 피소추자에게 위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소추자는 2015. 2. 12.자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 보고서[75]<sup>1)</sup> 및 2015. 2. 12.자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제소’[175]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진만에게 보고하였고, 같은 보고서를 이진만의 지시에 따라 임종헌에게 재차 보고하였다.

나) 피소추자가 작성한 위 문건에는,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장이 지역구 지방의원 상대로 의원직위 부존재 확인 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의원직 상실을 소송으로 확인하는 방안이 있고, 보수적 색채가 강하고 여당이 단체장인 지역(울산, 경남) 중 진보진영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남 지역 한 곳에서 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는 내용 및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

---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라 함)은 2018. 5. 25. 조사보고서(이하 ‘3차보고서’라 함)를 발표하였으며, 법원행정처는 2018. 6. 5. 및 2018. 7. 5. 두 차례에 걸쳐 위 특조단의 물적 조사 대상이 된 문건 다수를 공개하였다. 본 소추안에서 공개된 문건을 인용하는 경우, 최초 문건명 및 대괄호 안 문건 번호(3차보고서 첨부 2. 기재 순번)을 병기하기로 하고, 이후에는 대괄호 안 문건 번호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이하 모두 같다.

실을 위한 구체적인 제소방법(원고, 피고,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을 검토' 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위 문건들과 관련하여, 특조단이 3차보고서에서 '사법행정권의 남용 의혹' 이 있다고 특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3차보고서 164-165쪽).

- [75], [175] 문건은 비례대표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의 행정소송에서 의원들이 패소할 경우 지역구 지방의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할 경우 지역구 지방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한 후 의원직 유지에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는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해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행정소송을 행정처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방안으로 검토하고 그 소제기 후보지역까지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제소방법을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까지 제시하고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문건들임
- 이 문건들은 비례대표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이 모두 지위를 상실하게 될 때 남는 지역구 지방의원도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 법원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적정한 검토사유로는 수궁하기 어려움. 파일명이나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임종헌 기초실장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이 있고, 재판소원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위상과 관련한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중요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사법부 위상의 제고를 도모하면서도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는 통진당의 재창당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청와대 측에 제시함으로써 청와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지위부존재확인소송이 실제로 제기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행정소송 제소 관여 문건들이 청와대에 전달되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전달이나 실행 여부를 떠나서 행정처 고위 간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개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75] 문건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는 행위로 삼권분립

의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 할 것임.

나. 대한변호사협회 압박방안 검토 및 실행(2018. 11. 14.자 임종헌 공소장 180-185쪽)

1)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함) 및 대한변협 회장 위철환, 하창우는 대법원이 추진하는 다수의 사법정책에 반대해 왔고, 특히 하창우 회장은 상고법원 TF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고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신고 등을 반려했으며, 2014. 8. 25.경 대한변협이 주최한 변호사대회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는바, 이로 인해 임종헌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하였다.

2) 이에 임종헌은 양승태, 박병대 등과 함께 대한변협 및 회장 위철환, 하창우를 압박하는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법부에 우호적인 의견을 개진하게 하거나, 최소한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3) 이와 관련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14. 8. 25.경 개최된 변호사대회에서 대한변협이 대법관 증원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자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가 격분한 양승태 등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들이 임종헌에게 대한변협에 대한 적극적인 압박 수단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임종헌은 같은 날 피소추자에게 '대법원장이 참석한 변호사대회에서 대한변협 이 공개적으로 대법관 증원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비신사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대한변협을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소추자는 그 무렵 2014. 8. 25.자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대한변협을 압박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한 후 임종헌에게 보고하였다.

피소추자가 작성한 위 문건에는 대한변협에 대한 압박방안으로 '대한변협 법률구조 예산 지원(공탁지원금 5억 원) 중단, 대한변협신문 광고 게재 중단, 대법원 각종 외부 교류 행사시 대한변협 초청 중단, 대한변협 초청행사 전면 불참, 변호사 평가제도 전면도입 검토' 등의 내용과 대한변협 회장 위철환 개인에 대한 압박방안으로 '사법부 주관 각종 행사에 대한변협 회장 초청 중단, 선거 당시 회장 공약사항에 대한 반대 또는 비협조'를 검토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임종헌은 2015. 1.경 대한변협 신임 협회장인 하창우가 후보 공약사항이었던 대법관 증원 및 상고법원 도입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대한변협을 압박할 방안들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소추자에게 대한변협 신임 회장 대응 및 압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소추자는 그 무렵 2015. 1. 23.자 '대한변협 신임 회장 대응 및 압박 방안' 문건을 작성하여 대한변협을 압박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한 후 임종헌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문건에는 '법조인접 직역 소송대리권 부여 논의 제기 및 검토 등 법조인접단체 활용 방안, 변호사평가제도 추진 방안,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 변호사 단체 접점을 다양화 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3.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

#### 가. 판단기준

- 1) 관련 규정 :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헌법 제 103조), 법관의 신분보장(헌법 제10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헌법 제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러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은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의 내용이, 사법권의 가장 본질적인 재판업무에 관한 대원칙인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중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재판독립은 법원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내부세력, 특히 사법행정권자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또한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헌바1 결정 참조).

한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재판업무 자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법관이 사법행정권자의 지위에서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익실현의무에 기초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일선 법원의 재판에 대하

여 헌법 제103조에 따른 재판의 독립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소추자 등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당연한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 2) 특조단의 판단기준

한편 3차보고서 19쪽에서는 의혹별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평가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정책결정을 통하여 실행행위로 나간 경우 뿐만 아니라 문서작성행위, 그 작성지시행위, 논의 과정, 정책결정행위 등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면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훼손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행위별 평가이며 각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특조단 스스로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 침해나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위 기준인 재판의 독립 등은 헌법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결국 3차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특조단은 위 헌법상의 기준에 비추어 정도가 남용에 미치지 않는 것을 부적절로 평가하였다는 것인데, 부적절로 평가된 부분도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에 인적 책임을 물을 때는 남용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실조사의혹을 받아 왔던 특조단조차 사법행정권의 남용 또는



부적절로 판단한 행위는 적어도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등 헌법가치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

### 3)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기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 11. 19.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으로서 법관 탄핵 소추절차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의결함으로써, 법관탄핵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

한편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서 원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 등은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사건 처리에 관하여 동료나 선배 법관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의 조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등과 비교하여) 법원의 위상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나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절대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어떠한 선의의 의도나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상 범죄 행위로 포섭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밖에 없으므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법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스스로 제시한 이러한 법관 탄핵의 판단기준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헌법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3차 조사보고서 판단기준과 함께 특히 임종헌 공소장에 제시된 행위

태양의 중대한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4)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가) 피소추자가 통진당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 기재에 따르면, 은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해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행정소송을 행정처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방안으로 검토하고 그 소제기 후보지역까지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제소방법을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각종 사법정책 추진에 있어 청와대의 협조를 얻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정치적 사안에서 사법부가 먼저 일방 당사자의 제소를 유도한 뒤 특정한 의도에 맞춰 재판의 결론을 내리자는 계획을 구상하고, 나아가 실행을 위해 특정 소제기 후보지역까지 검토한 것으로, 삼권분립의 원칙 및 법관의 재판상 독립 등을 명백히 침해하는 내용이었다. 앞서 살펴본 특조단의 평가 기준에 따르면 이는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등을 규정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피소추자의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피소추자는 공직자의 공익실현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 및 이를 구체화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또한 위반한 것이다.

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여(변호사법 제1조 제1항)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변호사법 제2조)한다. 대한변협은 독립된 법률전문직인 변호사들의 법정가입단체로서, 입법·사법·행정 각 부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감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사명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

에 해당한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피소추자가 대한변협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 기재에 의하면, 대한변협이 당시 대법원의 사법정책에 관한 입장에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변협을 압박하고 그 입장을 변경시키거나 적어도 대법원의 의지에 반하는 견해를 표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을 실행하려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공익실현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 및 이를 구체화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또한 위반한 것이다.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가사 개별 문건에 따라 그 작성행위 하나만으로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해도, 피소추자가 임종헌 등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하여, 지속적으로 헌법상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의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금지에 반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종합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 4. 탄핵의 정당성

### 가. 대통령 탄핵과의 차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파면결정을 선고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헌법, 법률 위반의 정도’와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달리 법관 탄핵에 대하여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경미한 범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004헌나 1).

먼저 법관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즉 국가적 손실, 사법질서 혼란 등을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그 수가 3,000여명에 이르고, 그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숫자도 160여명에 이르며, 대법관의 경우조차도 13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설령 위 인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탄핵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공백을 동료 법관이 메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이나, 재판의 공백 등 사법질서의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중대한 범 위반일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헌법, 법률위반의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 피소추자들 역시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피소추자가 침해한 대상은 헌법상 결코 침해되서는 안될 재판의 독립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한편 법관의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헌법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이 헌법, 법률위반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관 파면으

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적은 반면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형량을 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

#### 나.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

한편 피소추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이들이 법관 탄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기만료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하여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처분에 의하여서는 최고수위가 정직 1년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단지 법관 징계절차에 의하여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 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법농단에 관여한 피소추자는 정직처분으로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가 아니라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법원행정처를 거치는 동안 이른바 판사에서, ‘사법관료’로 변모해온 이들은, 심의관 단계에서부터 발탁되어 나중에 고등부장 승진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고 나아가 법원장, 대법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른바 출세가 보장된 법관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들을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에서 시킨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피해자 행세를 통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 동정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대법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물며,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로 하여금 재판장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법감정 과도 맞지 않는데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피소추자로부터 재판받게 되는 당사자나 대리인 변호사들로부터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받게 될 것이다.

## 5. 결론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오로지 고위법관들의 사익을 추구한 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소위 법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설마 스스로 법을 어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법관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마지막 믿을만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던 법관들에 의하여,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관 이하 고위법관들,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위배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의원 등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관 김종복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2. 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 법관 나상훈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0000
----------	------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000 의원 외 00인

## 주 문

---

---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나상훈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

---

성 명 : 나상훈

직 위 : 법 관

## 탄핵소추의 사유

---

---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 나상훈(이하 '피소추자'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권력분립 원칙 (헌법 제1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 (헌법 제103조), 법관의 신분보장 (헌법 제10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만 직권남용죄 등은, 향후 피소추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을 경우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 소추안에는 별도로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위반 행위는 다른 피소추자들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2011. 9. ~ 2017. 9.)에 의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 2. ~ 2016. 2. 대법관 겸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2016. 2. ~ 2017. 5.), 임종헌(2012. 8. ~ 2015. 8. 기획조정실장, 2015. 8. ~ 2017. 3.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이는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무 및 청렴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오로지 신뢰에 기반하여 사법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피소추자의 지위

피소추자는 2002. 2.경 사법연수원을 수료(31기)하여, 2005. 2.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13. 2.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의 직위를 겸임하게 되었고, 2014. 2.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에서 기획제1심의관의 직위를 겸임하게 되었으며, 2015. 2. 서울서부지방법원 기획법관으로 전보되면서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의 직위에 대한 겸임이 해제되었다. 이후 피소추자는 201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로, 본 탄핵소추안 발의일 기준으로 헌법 제101조 및 법원조직법 제5조에 따른 법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 2. 피소추자의 행위

가.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 사찰(2018.11.14.자 임종헌 공소장 161-163면)

- 1) 임종헌 및 양승태, 박병대는 수원지방법원 소속이던 송승용 판사가 2015. 1. 15. 경 코트넷 게시판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추천에 대하여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추천 결과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부합하는 것인지 냉철한 자성과 반추가 필요하다’며 ‘대법관 후보 제청을 위해 법원 안팎의 여론을 다시 수렴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자, 인사상 불이익 등을 검토할 의도로 송승용 판사의

기존 자유게시판 게시글을 분석하고, 송승용 판사의 성향 및 동향자료를 수집하기로 계획하였다.

2) 임종현은 2015. 1. 15.경 기획조정실 심의관이었던 피소추자에게 ‘송승용 판사가 코트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이 있는데 송승용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 등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송승용 판사가 재직 기간 중 사법행정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코트넷에 게시한 글에 대하여 분석한 후 최대한 빨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3) 이와 관련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위 임종현의 지시에 따라 피소추자는 2011. 2.~2013. 2.까지 송승용 판사의 대학 동창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함께 근무하여 송승용 판사를 알고 있던 당시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에게 송승용 판사의 성향 등을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송승용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현에게 보고하였고, 임종현은 이를 양승태 등에게 보고하였다.

나) 그런데, 그 문건에는 송승용 판사에 대해 ‘전체 사법제도 및 인사시스템에 관심이 많다, 정세판단에 밝은 전략가형으로 속칭 낄 때 안 낄 때 판단이 밝아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침묵, 배후 기획, 정리, 분석, 전략 수립 등에 밝고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었다가 이목이 집중되자 탈퇴하였고, 법원 집행부에 대한 불신 및 의혹이 많고, 수원지법 내 사무 분담 편성 시 사무분담 하나하나에도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선동가, 아웃사이드 비평가 기질이 있어 이슈 발생 시 주변 법관들을 선동하는 기질이 다분하다’는 취지의 송승용 판사의 성향 및 최근 근무지에서의 동향을 파악한 내용과 2009. 3.경부터 2015. 1. 15. 사이에 송승용 판사가 촛불재판 의혹 규명을 촉구하거나 김

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 등으로 코트넷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글 6개를 정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하는 사찰을 한 것으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법관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다) 이로써 피소추자는 2015. 1. 15. 임종헌의 지시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송승용 판사의 성향 및 동향을 파악하고, 송승용 판사가 작성한 코트넷 게시글을 분석하는 등 법관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사찰을 이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 나. 대한변협 등을 압박하기 위한 시행방안 검토 및 실행(2018.11.14.자 임종헌 공소장 180-182면)

- 1) 대한변협 및 대한변협 회장 위철환, 하창우는 다수의 사법정책에 반대해 왔고, 특히 하창우 회장은 상고법원 TF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고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신고 등을 반려했으며, 2014. 8. 25.경 대한변협이 주최한 변호사대회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임종헌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하였다.
- 2) 이에 임종헌은 양승태, 박병대 등과 함께 대한변협 및 회장 위철환, 하창우를 압박하는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법부에 우호적인 의견을 개진하게 하거나, 최소한 사법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3) 임종헌은 2014. 8. 26. 기획조정실 심의관이었던 피소추자에게 김종복 심의관이 작성한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보고’ 문건을 건네주며, 기획조정실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되, 추진 가능한 압박방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4) 이와 관련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소추자는 2014. 9. 1.자 ‘대한변협 압박 방안 관련’ 문건을 작성하여 대한변협을 압박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한 후 임종헌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문건에는 대한변협 압박방안으로 ‘변호사평가제 도입 추진 의사를 피력하면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변호사평가제 도입 TFT 구성, 대한변협신문 광고게재 중단, 법률구조재단 공탁지원금(5억 원) 규모 축소, 형사사건 국선전담변호인 비율 대폭 증대 추진 의사 피력, 각종 교류행사 중단’을 검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로써 피소추자는 임종헌의 지시로 대한변협 및 협회장을 압박하는 방안 관련 문건을 작성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보고하였다.

**다.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정보 수집**  
(2018.11.14.자 임종헌 공소장 198-200면)

1) 임종헌은 2016. 9.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이태종으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검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의 금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고영한, 양승태에게 이를 순차로 보고하였다.

2) 이에 임종헌 등은 2015. 1.경 현직 판사 구속 사건, 2016. 4.경 정운호 계

이트 사건에 이어 법원이 지휘 감독하는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의 조직적인 비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사법정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여 검찰의 수사가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로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기로 계획하였다.

3) 임종헌은 2016. 9. 12.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이태종으로부터 검찰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 대한 2차 계좌추적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보고받고, 이태종 법원장, 서울서부지방법원 기획법관이었던 피소추자에게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 특히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로의 수사 확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4) 나아가 2016. 10. 18.경 이태종과 피소추자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외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등 서울 관내 법원 집행관사무소로 수사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검찰의 수사 확대를 방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을 통해 2016. 10. 20.경 각급 법원 사무국장들에게 위와 같은 검찰의 수사상황을 전파하여 검찰 수사에 주의 대비하도록 하였다.

5) 이와 관련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소추자는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이태종과 함께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조미옥, 박민우,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영삼, 총무과장 윤문택, 형사과장 김재선을 통해 ‘서울 서부지방법원 전체 집행관 및 사무원 명의의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발부 범위를 제한하려는 영장전담판사의 노력으로 기각’되었고, ‘제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 보관업체 등 특정 업체를 거론’하고 있어 ‘다른 법원 집행관사무소도 동일

한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 등 수사 진행 및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2016. 10. 18.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5개의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에게 송부하였다.

나) 피소추자는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 라.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2018.11.14.자 임종헌 공소장 200-202면)

- 1) 임종헌과 양승태, 고영한은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위신 추락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법원 비위 사건의 수사 확대 저지 등 파장 최소화를 위해서는 물론, 대법원장 및 사법부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도 법원 비위 사건, 정 재계 주요 인사 연루 비리 사건 등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 및 방향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이에 임종헌 등은 언론 대응 등을 위해 법원과 관련된 '중요 사건 및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각급 법원 기획법관·공보관에게 중요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예규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 및 방향 등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수집하여 보고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여 강조하기로 계획하였다.
- 3)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수사 정보는 유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특히 그러한 정보가 영장 심사 종국 판단 전에 유출될 경우에는 수사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커서, 법원행정처는 '중요사건 접수와 종국보고' 예규에 따라 신병에 관한 사건의 경우는 종국된 때에 한하여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해 종국 결과만 보고받을 수 있고, 영장청구서 등을 통해 수사진 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헌은 2016. 9. 1.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정운호 게이트’ 관련 금품수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자,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 및 방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6. 9. 1.경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박상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관 신재환에게 위 구속영장청구서의 사본을 송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신재환은 2016. 9. 2.경 영장전담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종국 판단 이전임에도 위 영장청구서 사본을 입수하여 박상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박상언은 이를 다시 임종헌에게 보고하였다.

5) 임종헌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목적으로 각급 법원 형사공보관 등에게 위 예규를 위반하여 영장정보를 즉시 보고할 것을 지시하여, 그들로부터 2016. 7. 8.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10개의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보고받은 후, 이를 수시로 고영한, 양승태에게 보고하였다.

6) 이와 관련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소추자는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 및 방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수사 확대 저지 등 파장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영장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영장청구서 등을 입수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관 신재환과 함께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입수하여 송부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 3.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

#### 가. 관련 규정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러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은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의 내용이,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의 당연한 기본원칙인 권력분립 원칙, 사법권의 가장 본질적인 재판업무에 관한 대원칙인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과 헌법 제106조의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중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재판독립은 법원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내부세력 특히 사법행정권자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또한 헌법 제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불리한 처분이란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 뿐 아니라 일상적인 법관 사찰, 자발적인 법관들의 연구 모임을 위축시키려는 조치 등도 포함된다.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과 헌법 제106조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참조).

한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재판업무 자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법관이 사법행정권자의 지위에서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서

는, 공익실현의무에 기초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일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 제103조에 따른 재판의 독립 원칙과 헌법 제106조의 법관의 신분 보장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소추자 등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당연한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는 한편 제1조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구체화 된다(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1,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238, 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등).

따라서 권력분립제도는 우리 헌법질서의 중요한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은 3권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 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 제1조에서 파생되는 권력분립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 나. 3차보고서의 판단기준

한편 3차보고서 19쪽에서는 의혹별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평가기준을 밝힌 바 있다.

“정책결정을 통하여 실행행위로 나간 경우 뿐만 아니라 문서작성행위, 그 작성지시행위, 논의 과정, 정책결정행위 등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면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

관의 기본권을 침해·훼손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행위별 평가이며 각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대법원 특조단 스스로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 침해나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위 기준인 재판의 독립 등은 헌법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결국 3차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차 조사단은 위 헌법상의 기준에 비추어 정도가 남용에 미치지 않는 것을 부적절로 평가하였다는 것인데, 부적절로 평가된 부분도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에 인적 책임을 물을 때는 남용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실조사의혹을 받아 왔던 3차 조사단조차 사법행정권의 남용 또는 부적절로 판단한 행위는 적어도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등 헌법가치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기준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기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 11. 19.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으로서 법관 탄핵 소추절차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의결함으로써, 법관탄핵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

한편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서 원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 등은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사건 처리에 관하여 동료나 선배 법관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의 조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등과 비교하여) 법원의 위상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나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절대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어떠한 선의의 의도나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상 범죄 행위로 포섭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 밖에 없으므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법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스스로 제시한 이러한 법관 탄핵의 판단기준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헌법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3차 조사보고서 판단기준과 함께 특히 임종헌 공소장에 제시된 행위태양의 중대한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라.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피소추자의 행위는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크게 1)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 사찰, 2) 대한변협 등을 압박하기 위한 시행방안 검토 , 3)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정보 수집, 4) 영장 청구서 사본 유출 등으로 나뉘는바,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 1) 피소추자의 법관에 대한 성향, 동향 파악 관련 행위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와 유사한 사안(법관 김민수의 차성안 판사 사찰)에 대해서 3차 조사단은 “행정처는 주로 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이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동향을 파악하였다고 보이고... 특히 차성안 판사의 게시글, 기고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기고의 검직허가 필요성, 품위유지의무, 공정성 유지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재산관계 특이사항까지 검토한 것은 특정판사에 대한 뒷조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로서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할 것임”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행정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시했던 송승용 판사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 등을 검토할 의도로 송승용 판사의 기존 자유게시판 게시글을 분석하고, 송승용 판사의 성향 및 동향자료를 수집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법관의 독립, 법관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 대한변협 등을 압박하기 위한 시행방안 검토

피소추자가 정보를 수집한 행위와 이를 통해 작성한 문건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한 법원행정처

가 대한변협 등을 압박하기 위한 시행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그 실행여부를 떠나 정상적인 사법행정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한 채 철저히 법원 조직의 이익 등 사익을 추구한 것이고, 단순히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앞서 본 3차 조사단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기준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정보 수집 및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행위

이러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상 삼권분립원칙과 법률에 위배된다.

오늘날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권력분립원칙, 삼권분립원칙의 본질은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사법·행정을 분리하고,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정보를 수집하고 영장청구서 사본을 유출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특히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669 판결)이므로, 피소추자의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정보 수집 및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는 중대·명백한 행위이다.

또한 피소추자는 2015. 2. 서울서부지방법원 기획법관으로 전보되면서 기획재1심의관의 직위에 대한 겸임이 해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의 지시에 따라 소위 거점법관 역할을 하였고, 법원조직법 제52조에 의하면 기획법관으로서 본안재판에 관한 사항은 업무분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기한 바와 같이 자신의 고유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정보를 수집하고 영장청구서 사본을 유출한 행위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앞서 본 3차 조사단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기준에 따르면 이는 곧 삼권분립원칙, 공무상 비밀누설 등 헌법과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그 정도가 심한 것, 즉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행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5)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가사 개별 문건에 따라 그 작성행위 하나만으로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해도, 피소추자

가 임종헌 등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하여, 지속적으로 헌법상 재판의 독립, 법관의 신분보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의무, 부패방지권의 위법상 부패행위금지에 반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종합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 4. 탄핵의 정당성

##### 가. 대통령 탄핵과의 차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파면결정을 선고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헌법, 법률 위반의 정도’와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달리 법관 탄핵에 대하여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경미한 범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004헌나1).

먼저 법관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즉 국가적 손실, 사법질서 혼란 등을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그 수가 3,000여명에 이르고, 그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숫자도 160여명에 이르며, 대법관의 경우조차도 13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설령 위 인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탄핵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공백을 동료 법관이 메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이나, 재판의 공백 등 사법질서의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일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헌법, 법률위반의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관 1인의 개인적 비

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 피소추자들 역시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출세가 보장된 법원행정처의 핵심 부서 등 근무를 통해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헌법상 결코 침해되서는 안될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한편 법관의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헌법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이 헌법, 법률위반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관 파면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적은 반면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형량을 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

한편 피소추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이들이 법관 탄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기만료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하여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처분에 의하여서는 최고수위가 정직 1년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단지 법관 징계절차에 의하여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 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법농단에 관여한 피소추자는 정직처분으로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가 아

나라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법원행정처를 거치는 동안 이른바 판사에서, ‘사법관료’로 변모해온 이들은, 심의관 단계에서부터 발탁되어 나중에 고등부장 승진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고 나아가 법원장, 대법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른바 출세가 보장된 법관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현 차장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들을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에서 시킨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피해자 행세를 통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 동정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대법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물며,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로 하여금 재판장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법감정 과도 맞지 않는데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피소추자로부터 재판받게 되는 당사자나 대리인 변호사들로부터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받게 될 것이다.

## 5. 결 론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오로지 고위법관들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소위 법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설마 스스로 법을 어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법관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마지막 믿을만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던 법관들에 의하여,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관 이하 고위법관들,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위배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의원 등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관 나상훈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2. 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 법관 문성호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0000
----------	------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000 의원 외 00인

## 주 문

---

---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문성호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

---

성 명 : 문성호

직 위 : 법관

## 탄핵소추의 사유

---

---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 문성호(이하 '피소추자'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 (헌법 제 10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만 직권남용죄 등 형법 위반 사항은, 향후 피소추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을 경우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 소추안에는 별도로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위반 행위는 다른 피소추자들과 함께 양승태 대 법원장(2011. 9. ~ 2017. 9.)에 의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 2. ~ 2016. 2. 대법관 겸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2016. 2. ~ 2017. 5.), 임종헌(2012. 8. ~ 2015. 8. 기획조정실장, 2015. 8. ~ 2017. 3.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이는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무 및 청렴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오로지 신뢰에 기반하여 사법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피소추자의 지위

피소추자는 2004. 2.경 사법연수원을 수료(33기)하여, 2004. 2.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거쳐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15. 2. 경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의 직위를 겸임하게 되었다. 이후 피소추자는 2018. 6.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고, 2018. 12. 19.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사건 전원 합의체 회부 검토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피소추자는 본 탄핵소추안 발의일 기준으로 헌법 제101조 및 법원조직법 제5조에 따른 법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 2. 피소추자의 행위

#### 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행위

1)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2018.11.14.자 임종헌 공소장 108-112면)

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4. 10. 헌법재판소에 2011가합17886(2012카기 70001) 재직기간 확인 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하여 ‘한정

위헌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문을 접수하였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이라고 한다) 정당해산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강화되고 동시에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위상은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다양한 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일선 법원이 직접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한 것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법원이 스스로 변형 결정의 일종인 한정위헌을 인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어 크게 우려하였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과 담당 재판부를 설득하여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판에 개입하여 그 결정을 변경하기로 논의하였다.

나) 이규진은 피소추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실장회의 논의결과를 전달하면서 ‘대법원장님의 최종 결심을 받아야 하니 보고서를 작성하되, 1안 직권취소, 2안 경정, 3안 방기로 하고 1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적절히 구성해 보라, 그리고 직권취소를 하게 되면 원결정문과 직권취소결정문을 아무도 봐서는 안 되니 결정문 검색 시스템에서도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다) 이와 관련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피소추자는 위 이규진의 지시에 따라 2015. 4. 12. 경 해당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와 원 결정문 및 직권취소결정문이 결정문 검색 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할 전산상 조치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대책’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이규진에게 보고하였다.

(2) 해당 문건은 이미 종결된 일선 법원의 재판(결정)에 개입하여 재판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이처럼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결론의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해당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 2)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항소심 대응 문건 작성 및 법원행정처 입장 전달을 통한 재판개입(2018.11.14.자 임종헌 공소장 123-127면)

가)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반정우)는 2015. 11. 12.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1심 사건(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320)에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결정에 대해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해당 판결은 법원행정처가 2015. 1. 7. 자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통해 정리한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방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었다.

나) 위 판결 선고 직후 피소추자는 위 판결을 비판하고 항소심 대응계획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다) 이와 관련된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피소추자는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 자료를 전달하는 등 항소심 재판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15. 11. 12. 자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행정 11. 12. 선고)’ 문건을 작성하여 이규진에게 보고하였고, 이규진은 박병대, 임종헌, 이민걸 등이 참석한 처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이를 보고하였다.

(2) 해당 문건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항소심 처리 방향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3) 이후 2016. 2. 경 법관 인사이동으로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의 구성이 변경되자 이민걸은 항소심 재판장 이동원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배석판사 이인석은 피소추인에게 연락하여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물어보고 검토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문건에 기재된 대로 재판의 개입이 이루어졌다.

### 3)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를 통한 재판개입 (2018.11.14.자 임종헌 공소장 133-134면)

가) 통진당 국회의원 이석기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2015.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었고, 이석기 등의 상고로 2016. 5. 12.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었다. (대법원 2016두39856) 그러자 임종헌은 양승태, 고영한과 함께 2016. 5. 경 이규진에게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은 사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선언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위 선언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할지 아니면 소부에서 할지 검토한 다음, 해당 검토 내용과 함께 이 상고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 차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및 선임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나) 이규진은 2016. 6. 초순경 피소추자에게 ‘위 선언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할지 아니면 소부에서 할지 검토하고,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소의 이익이 있다는 논리를 검토해 작성하라’는 취지로 지시

하였다.

다) 이와 관련된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피소추자는 위 지시에 따라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세비 등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확인의 이익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과 함께 전원합의체 회부의 긍정적·부정적 요소에 대한 검토 및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선언하는 데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하고, 전합 회부 사실이 외부에 공표될 경우 다수 언론의 관심을 유발하는 등으로 인해 전합 판결 외에 퇴로가 없을 수 있으니 전합 회부 사실 자체에 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2016. 6. 8. 자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을 작성하여 이규진에게 보고하였고, 이규진은 이를 임종헌 등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2) 해당 문건은 재판이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소송 요건을 검토한 것으로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었다. 또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각호가 정한 사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 위상 강화를 위한 목적 하에 특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검토한 것으로, 상고심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며 더 나아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 **4)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 방안 검토를 통한 재판개입 (2018.11.14.자 임종헌 공소장 138 - 139면)**

가) 임종헌은 통진당 재창당 움직임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사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을 제소하게 한 다음 의원직을 박탈하

는 판결을 선고한다'는 방안을 청와대 측에 제시하여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활용하고,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임종헌은 2015. 6. 경 이규진에게 '기존에 작성된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상대 제소 방안 문건을 업데이트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이규진은 그 무렵 피소추자에게 2015. 2. 12.자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 보고서를 수정·보완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이와 관련된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피소추자는 위 지시에 따라 해당 문건 파일에 2015. 6. 10.자 문화일보 보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제소방법에서 청구이유 주장 1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2015. 6. 12. 자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상대제소'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규진에게 보고하였고, 이규진은 이를 임종헌에게 보고하였다.

(2) 해당 문건의 내용은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각종 정책 추진에 있어 청와대의 협조를 얻을 목적으로 사법부가 일방 당사자의 제소를 유도한 뒤 특정 의도에 맞춘대로 재판의 결론을 내리자는 계획을 구상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소 제기 후보지역까지 검토한 것으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 등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5)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예상 판결 결과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선고결과 관련 보고서 작성을 통한 재판개입 (2018.11.14.자 임종헌 공소장 116-120면)**

가)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원지위확인소송(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에 대하여 2015. 7. 22. 경 변론을 종결하고 2015. 9. 16.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해당 재판부로부터 ‘본안 판단을 검토하고 있고 인용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취지의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 심경은 재판부에 ‘판결 이유에 정당해산 결정으로 인한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심경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을 보고받은 이규진은 판결 선고 전 피소추자에게 위 내용을 정리하고 판결 선고에 따른 파장 등을 분석하고 고 지시하였다.

다) 또한 이규진은 위 전주지방법원이 2015. 11. 25.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방법’에 따른 판결을 선고하자 피소추인에게 위 판결 선고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라) 이와 관련된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피소추자는 위 이규진의 지시에 따라 2015. 9. 15. 경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호 사건 재판부가 청구를 인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청구인용에 따른 예상 파장 및 언론 대응 방안 등을 기재한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을 작성하여 이규진에게 보고하였고, 이규진은 이를 임종헌, 박병대, 양승태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다.

(2) 해당 문건은 위법한 방법으로 파악한 재판부의 예상 판결 결과를 보고하고 그에 따른 파장 및 언론대응방안 등을 정무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해당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3) 또한 피소추자는 위 지시에 따라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을 선언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헌법재판소의 월권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하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320)과 정반대의 취지로서 향후 법관을 상대로 한 헌법 교육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2015. 11. 25. 자 ‘통진당 지방 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전주지법 11. 25. 선고)’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위 문건은 이규진, 임종현, 박병대, 양승태에게 순차 보고되었다.

(4) 해당 문건은 특정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판결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권력분립 원칙’ 및 정무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보고한 것으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 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2018.11.14.자 임종현 공소장 97-101면)

1) 임종현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2013. 11. 경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2014. 7. 경 GS칼텍스 관련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법원 재판의 위헌 여부에 대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인용 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그 위상이 강화됨으로써 향후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양산하고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원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였다.

2) 이에 따라 임종현은 양승태, 박병대 등과 함께 법원행정처 내부에 팀을 구성하여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대법원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방안을 검토하게 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최희준 부장판사를 이용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토론 및 보고, 헌법재판관의 평의 내용, 헌법재판소 사건 및 정책에 대한 동향 등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기로 계획하였다.

3)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은 이규진은 2015. 3. 중순경부터 지속적으로 최희준에게 헌법재판소 내부 비공개 문건 등을 입수하여 당시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피소추자에게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

4) 이와 관련된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소추자는 최희준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과 헌법재판소 추진 정책에 관한 비공개 정보와 자료를 전달받았는데, 이는 대법원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목적으로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것이었다.

나) 또한 피소추자는 이규진의 지시에 따라 입수한 자료를 기초로 2016. 7. 26. 자 ‘개헌을 포함한 사법부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한 현재 입장’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하였는데, 해당 문건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 및 논거를 정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3.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

#### 가. 관련 규정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러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은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의 내용이, 사법권의 가장 본질적인 재판업무에 관한 대원칙인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중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재판독립은 법원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내부세력 특히 사법행정권자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참조).

한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재판업무 자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법관이 사법행정권자의 지위에서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익실현의무에 기초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일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 제103조에 따른 재판의 독립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소추자 등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당연한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는 한편 제1조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구체화 된다(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1,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238, 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등). 따라서 권력분립제도는 우리 헌법질서의 중요한 일부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는 법원을 비롯한 다른 헌법기관으로부터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나. 3차보고서의 판단기준

한편 3차보고서 19쪽에서는 의혹별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평가기준을 밝힌 바 있다.

“정책결정을 통하여 실행행위로 나간 경우 뿐만 아니라 문서작성행위, 그 작성지시행위, 논의 과정, 정책결정행위 등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면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훼손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행위별 평가이며 각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대법원 특조단 스스로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 침해나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위 기준인 재판의 독립 등은 헌법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결국 3차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차 조사단은 위 헌법상의 기준에 비추어 정도가 남용에 미치지 않는 것을 부적절로 평가하였다는 것인데, 부적절로 평가된 부분도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에 인적 책임

을 물을 때는 남용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실조사의혹을 받아 왔던 3차 조사단조차 사법행정권의 남용 또는 부적절로 판단한 행위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등 헌법가치의 중대한 위반으로 적어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기준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기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 11. 19.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으로서 법관 탄핵 소추절차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의결함으로써, 법관탄핵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

한편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서 원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 등은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사건 처리에 관하여 동료나 선배 법관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의 조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등과 비교하여) 법원의 위상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나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절대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어떠한 선의의 의도나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상 범죄 행위로 포섭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밖에 없으므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법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스스로 제시한 이러한 법관 탄핵의 판단기준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헌법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3차 조사보고서 판단기준과 함께 특히 임종헌 공소장에 제시된 행위태양의 중대한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라.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피소추자의 행위는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크게 1)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행위와 2)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의 내부 정보 수집으로 나누는바,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 **1)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행위**

가) 피소추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5. 4. 10.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결정문이 검색 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할 방법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이는 이미 종결된 재판(결정)의 변경을 검토한 것으로 헌법상 재판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이며 그 자체로 사법행정권의 남용, 즉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소추자는 또한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 위상 강화를 위하

여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처리 방향을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였다. 이는 전국법관회의와 안동지원판사회의 제안서 원문이 말하는 ‘(헌법재판소 등과 비교하여) 법원의 위상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서, ‘어떠한 선의의 의도나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피소추자는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였다. 3차 조사단은 해당 문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고심에 대하여 사법정책심의관으로 하여금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게 한 것은 부적절한 것임. 행정처의 행정작용과 대법원의 재판작용은 엄격히 분리되어야만 재판작용이 독립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처의 위와 같은 관여는 전원합의체 회부 권한을 가지는 담당 소부 소속 대법관의 재판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큼(조사보고서 166쪽)’이라고 보았다. 피소추자의 문건 작성 행위는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작용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라) 피소추자는 김종복이 작성한 2015. 2. 12. 자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 [75] 보고서를 수정·보완하였다. 3차 조사단은 2015. 2. 12. 자 문건에 대하여 ‘그 전달이나 실행 여부를 떠나서 행정처 고위 간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개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75] 문건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는 행위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 할 것임’이라고 평가하였다. 피소추자는 [75] 문건에 2015. 6. 10. 자 신문기사 보도 내용을 추가하

고 청구이유를 수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큰 틀에서 동일한 내용의 2015. 6. 12. 자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한 행위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협하며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마) 피소추자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에 대하여 미리 파악한 재판부의 심증과 예상되는 판결에 따른 파장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3차 조사단은 이와 관련하여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구체적인 사건의 담당재판장에게 판결에 어떠한 취지의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는 요청을 하거나 정무적 판단에 기초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재판장에게 연락하고 그 과정에서 재판의 결론에 대한 심증을 파악한 것은 사법행정에 의한 재판개입사례로서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임’(조사보고서 165쪽)이라고 보았다. 피소추자가 작성한 문건은 이와 같이 부적절한 재판개입행위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작성 행위 또한 심각한 사법행정권의 남용, 즉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피소추자가 작성한 위 문건이 유출되자 법원행정처는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소송에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노출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헌법재판소가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처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거짓해명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소추자는 ‘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라는 해명자료를 작성하여, ‘해당 문건에 적힌 내용은 법원행정처의 공식적 의견이 아닌 주무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고, 주무 심의관이 작성한 후 법원행정처 내부 지휘라인에 보고한 바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과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에게 배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당 문건은 이규진이 작성한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기재된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



단방법'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었던 바, '주무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였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재판개입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허위의 해명자료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에 나아간 바, 이 또한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중대히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2)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의 내부 정보 및 동향 수집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목적으로 파견 법관 최희준으로부터 헌법재판소 내부 비공개 정보와 자료를 전달받고, 이를 기초로 하여 문건을 작성하였다. 최희준이 제공한 정보 중에는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정보로 규정된 '서면심리와 평의'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던 바, 피소추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를 구성하는 행위를 통해 수집된 위법한 정보를 누설받아 대법원 조직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앞서 실시된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또한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도 위배된다. 오늘날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권력분립원칙의 본질은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사법·행정을 분리하고,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부의 다른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기밀을 전달받은 피소추자의 행위는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 3)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가사 개별 문건에 따라 그 작성행위 하나만으로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해도, 피소추자가 임종헌 등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하여, 지속적으로 헌법상 재판의 독립,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의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금지에 반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종합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 4. 탄핵의 정당성

##### 가. 대통령 탄핵과의 차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파면결정을 선고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헌법, 법률 위반의 정도’와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달리 법관 탄핵에 대하여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경미한 범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004헌나1).

먼저 법관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즉 국가적 손실, 사법질서 혼란 등을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그 수가 3,000여명에 이르고, 그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숫자도 160여명에 이르며, 대법관의 경우조차도 13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설령 위 인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탄핵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공백을 동료 법관이 메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이나, 재판의 공백 등 사법질서의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일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헌법, 법률위반의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 피소추자들 역시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출세가 보장된 법원행정처의 핵심 부서 등 근무를 통해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헌법상 결코 침해되서는 안될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한편 법관의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헌법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이 헌법, 법률위반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관 파면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적은 반면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형량을 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

한편 피소추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이들이 법관 탄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기만료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하여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처

분에 의하여서는 최고수위가 정직 1년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단지 법관 징계절차에 의하여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 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법농단에 관여한 피소추자는 정직처분으로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가 아니라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법원행정처를 거치는 동안 이른바 판사에서, ‘사법관료’로 변모해온 이들은, 심의관 단계에서부터 발탁되어 나중에 고등부장 승진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고 나아가 법원장, 대법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른바 출세가 보장된 법관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들을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에서 시킨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피해자 행세를 통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 동정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대법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물며,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로 하여금 재판장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법감정과도 맞지 않는데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피소추자로부터 재판받게 되는 당사자나 대리인 변호사들로부터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받게 될 것이다.

## 5. 결론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오로지 고위법관들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소위 법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설마 스스로 법을 어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법관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마지막 믿을만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던 법관들에 의하여,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관 이하 고위법관들,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위배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의원 등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관 문성호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2.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첨부 문건 중 아래 가항 내지 다항
  - 가. [200] (160608) 통진당사건전합회부관련[문□□]
  - 나. [75] (150212)통진당지역구지방의원대책내부용
  - 다. [76] (150915)통진당지방의원인용파장분석(문□□) 수정(이규진)
3. 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 법관 시진국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0000
----------	------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000 의원 외 00인

## 주 문

---

---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시진국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

---

성 명 : 시진국

직 위 : 법 관

## 탄핵소추의 사유

---

---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 시진국(이하 '피소추자'라고 한다)은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 (헌법 제 10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만 직권남용죄 등 형법 위반 사항은, 향후 피소추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을 경우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 소추안에는 별도로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위반 행위는 다른 피소추자들과 함께 양승태 대 법원장(2011. 9. ~ 2017. 9.)에 의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 2. ~ 2016. 2. 대법관 겸임), 임종현(2012. 8. ~ 2015. 8. 기획조정실장, 2015. 8. ~ 2017. 3.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이는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무 및 청렴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오로지 신뢰에 기반하여 사법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 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피소추자의 지위

피소추자는 2003. 1.경 사법연수원을 수료(32기)하여, 2003. 2.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14. 2. 법원행정처 기획 제2심의관의 직위를 겸임하게 되었고, 2015. 2. 법원행정처 기획 제2심의관에서 기획 제1심의관의 직위를 겸임하게 되었으며, 2016. 2.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의 직위에 대한 겸임이 해제되었다. 피소추자는 2019. 1. 현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본 탄핵소추안 발의일 기준으로 헌법 제101조 및 법원조직법 제5조에 따른 법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 2. 피소추자의 행위

#### 가.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임종헌 공소장 33쪽 내지 34쪽)

- 1) 2014. 11.경 당시 법원행정차장이었던 임종헌은 피소추자에게 2013. 12. 1.자 외교부 작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의 함의와 국가적 부담'보고서와 2014. 11. 3.자 사법지원실 작성 '일제 식민지 시대 관련 과거사 사건 계류현황' 보고서를 건네주면서, '이 보고서를 요약·반영하여 일제 강제동원 관련 손해 배상청구 소송 현황 및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진행경과,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 우리나라 외교부의 입장, 배상판결 확정시 예상되는 국가적 부담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향후 전개 방향에 대

해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소추자는 2014. 11. 10.경 위 외교부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관련보고'라는 제목의 기획조정실 명의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에게 보고하였다.

2) 그 문건에는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에 대한 입장', '배상판결 확정 시 예상되는 국가적 부담(외교부 견해)', '대법원 계류사건에서의 향후 전개 방향 예측' 등을 검토한 내용이 있고, 특히 '대법원 계류사건에서의 향후 전개 방향 예측'부분 에는 5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재상고기각', '대법원 소부에서 새로운 쟁점에 대해 판단하고 환송', '대법원에서 조정이나 화해 시도', '대법원이 사법자제론에 기한 판단', '전원합의체에서 판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바, 이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국가적 부담이 된다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외교부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절차 및 결론을 검토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고, 재상고심 재판의 절차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3) 이로써 피소추자는 박병대 및 임종헌의 지시를 받아, 그 직권을 남용하여 진행 중인 상고심 재판과 관련한 청와대 및 외교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법관의 재외 공관 파견 등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대법원 재판부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절차 진행, 처리 시기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 나.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임종헌 공소장 41쪽 내지 44쪽)

1) 임종헌은 2015. 12. 31.경 기획조정실 심의관이던 피소추자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하여 심리불속행 여부,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등 검토 사례를 언급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 사건 청구권은 주권 면제, 통치행위론, 한일

위안부 합의, 소멸 시효 등으로 인해 인정될 수 없는 것 아니냐, 소멸시효를 인정한 2012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소부(小部) 판결로서 문제가 있다. 청와대 및 외교부와의 관계는 국제사법공조뿐만 아니라 법관의 해외공관 및 국제기구 파견 등 대법원이 추진하는 현안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중요하므로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의 소각하 내지 청구기각의 논거,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등을 강구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등의 외교부 입장을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보고서에도 반영시킬 목적으로 피소추자가 2014. 11.경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시나리오를 검토한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관련보고' 보고서를 조인영의 이메일로 송부하고, 국제심의원 김창모가 2015. 10. 19.경 외교부로부터 받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외교부 의견서 초안을 조인영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 2) 이로써 피소추자는 임종현의 지시를 받아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기획조정실 심의관 조인영에게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 추진 현안에 대해 청와대 및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검토를 하도록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조인영으로 하여금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임종현 공소장 63쪽 내지 70쪽)**

- 1) 2014. 4. 16.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정치권 및 여론의 비판과 공분이 고조되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4. 8. 3.경 카토 타쓰야 前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일본 산케이신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자, 자

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8. 6.경 카토 타쓰야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청와대에서도 8. 7. '카토 타쓰야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엄정대처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는 카토 타쓰야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sup>1)</sup>(이하 '카토 타쓰야 사건')이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자, 현직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피해자이고 전 국민적 관심사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이 핵심 쟁점이므로 재판 결과가 국정에 미칠 정치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중요사건으로 관리하였다.

2)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위상 강화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카토 타쓰야 사건의 재판에 청와대의 입장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청와대에 적극 협조하기로 계획하였다<sup>2)</sup>.

3) 임종헌은 2015. 3. 하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임성근에게 카토 타쓰야 사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계획을 전달하며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진행하다가 카토 타쓰야가 게재한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달라. 법원행정처에서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이미 밝혀졌다고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임성근은 그 무렵 재판장 이동근에게 그러한 요청 사항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임종헌은 2015. 11. 중순경 임성근으로부터 '이동근이 판결이유 및 선고 시 구술 내용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수긍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무죄 판결 선고에 대한 정치권 등 외부의

1)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172', 피고인 '카토 타쓰야', 죄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으로, 공소사실 요지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던 피고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여객선 침몰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희와 함께 있었다'는 허위의 기사를 일본 산케이신문에 게재하여 보도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임

2) 피고인이 2015. 3.경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등을 통하여 위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분위기와 요청사항 등을 확인하던 중, 비서관장 ○○○가 '카토 타쓰야가 신청한 출국정지 기간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항고심 결정이 2015. 4. 15.까지 연장되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2015. 2. 13. 1심에서 기각되어 카토 타쓰야의 항고로 항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으나 특별한 쟁점이 없어 신속히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위 사건은 2015. 4. 15.까지 항고심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실제로 ○○○ 비서관실의 요청대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 ○○○, 서울고등법원 기획법관 함윤식 등을 통해 위 항고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였음

불만에 대응할 목적으로, 11. 16.경 피소추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무죄 판결의 주된 이유와 명예훼손의 법리를 정리한 설명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4) 이에 따라 피소추자는 그 무렵 사법지원실 소속 심의관에게 연락하여 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요약한 자료를 전달받고, 그 자료와 피고인이 임성근을 통해 이동근 재판장으로부터 받은 '예상 선고결과 및 판결 이유' 등이 기재된 자료를 토대로 '카토 타쓰야 前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설명자료'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청와대, 국회 등 대외기관 관계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위 설명자료는 판결 선고일 이전에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허위인 사실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선고가 예상'된다는 점,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무분별한 보도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질책이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는 바, 대외기관 대응에 활용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절차와 결론을 미리 확인하고 그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5) 피소추자는 그 직권을 남용하여 카토 타쓰야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선고 결과와 판결이유 등이 기재된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자료를 작성하였다.

#### 라.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사건(임종헌 공소장 152쪽 내지 155쪽)

1) 임종헌, 양승태, 박병대는 인터넷 카페 등에 법관들이 익명으로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법원 내부적으로도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상고법원 도입 등 각종 사법정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였고, 마침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불만사항이 다수 포함 되어 있는 ‘이판사판 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이하 ‘이사야 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사야 카페의 활동을 저지하고 종국적으로는 카페를 와해시킴으로써 법관들이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저지하고 게시된 의견이 대내외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막기로 계획하였다.

2) 임종현은 2015. 2.경 피소추자에게 ‘익명게시판 카페에서 활동 하고 있는 법관 및 게시글의 동향을 파악하고, 게시글의 외부 공개를 막고 카페를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소추자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임종현이 지시한 이사야 카페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2015. 2. 14.자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문건에는 자발적으로 이사야 카페에 가입한 판사들의 게시글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그 중에서 ‘상고법원 설치’, ‘원세훈 형사사건 선고’, ‘박상옥 대 법관 후보자 임명제 청’, ‘쌍용차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관련 카페글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 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이러한 이사야 카페에 대한 구체적 대처 방안으로 ‘카페 폐쇄 등 유도’, ‘회원으로 가장하여 카페 내 활동 중단에 대한 글 게시’, ‘운영자의 자진 카페 폐쇄 유도’, ‘소속 법원장이나 믿을 만한 선배 여성 법관 등을 통해 홍예연 판사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우려 의사 전달’ 등의 ‘자발적 조치’와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 및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5호, 제7호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최후의 설득 및 엄포용 카드로 활용하는 ‘강제적 조치’ 등을 검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3) 이로써 피소추자는 그 직권을 남용하여 이사야 카페의 활동을 저지하고 종국적으로는 카페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카페에 가입한 판사 신분의 회원들의 게시글에 대한 분석 및 부정적 평가와 함께 카페 폐쇄 유도 등 구체적 대처방안을 수립하는 등 법관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 3.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

#### 가. 관련 규정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러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은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의 내용이, 사법권의 가장 본질적인 재판업무에 관한 대원칙인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재판독립은 법원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내부세력

특히 사법행정권자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참조).

한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재판업무 자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법관이 사법행정권자의 지위에서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익실현의무에 기초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일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 제103조에 따른 재판의 독립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소추자 등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당연한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 나. 3차보고서의 판단기준



한편 3차보고서 19쪽에서는 의혹별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평가기준을 밝힌 바 있다.

“정책결정을 통하여 실행행위로 나간 경우 뿐만 아니라 문서작성행위, 그 작성지시행위, 논의 과정, 정책결정행위 등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면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훼손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행위별 평가이며 각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대법원 특조단 스스로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 침해나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위 기준인 재판의 독립 등은 헌법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결국 3차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차 조사단은 위 헌법상의 기준에 비추어 정도가 남용에 미치지 않는 것을 부적절로 평가하였다는 것인데, 부적절로 평가된 부분도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에 인적 책임을 물을 때는 남용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실조사 의혹을 받아 왔던 3차 조사단조차 사법행정권의 남용 또는 부적절로 판단한 행위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등 헌법가치의 중대한 위반으로 적어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기준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구

체적으로 살펴본다.

#### 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기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 11. 19.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으로서 법관 탄핵 소추절차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의결함으로써, 법관탄핵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

한편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서 원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 등은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사건 처리에 관하여 동료나 선배 법관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의 조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등과 비교하여) 법원의 위상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나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절대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선의의 의도나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상 범죄 행위로 포섭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밖에 없으므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법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스스로 제시한 이러한 법관 탄핵의 판단기준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헌법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법

원의 3차 조사보고서 판단기준과 함께 특히 임종헌 공소장에 제시된 행위 태양의 중대한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라.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피소추자의 행위는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크게 1)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2)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관련, 3)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관련, 4)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사건 관련, 5)대한변협 등을 압박하기 위한 시행방안 검토 등으로 나뉘는바,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 1)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행위

피소추자는 박병대 및 임종헌의 지시를 받아, 그 직권을 남용하여 진행 중인 상고심 재판과 관련한 청와대 및 외교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등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대법원 재판부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절차 진행, 처리 시기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고심 재판 진행에 대해 검토하게 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행정처의 행정작용과 대법원의 재판작용은 엄격히 분리되어야만 재판작용이 독립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처의 위와 같은 관여는 대법관의 재판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피소추자의 문건 작성 행위는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작용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 2)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관련 행위

피소추자는 임종현의 지시를 받아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기획조정실 심의관 조인영에게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 추진 현안에 대해 청와대 및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검토를 하도록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조인영으로 하여금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 또한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보고서 작성행위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고심 재판 진행에 대해 검토하게 한 것으로 부적절한 것이다. 행정처의 행정작용과 대법원의 재판작용은 엄격히 분리되어야만 재판작용이 독립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처의 위와 같은 관여는 담당 대법관의 재판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피소추자의 문건 작성 행위는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작용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 3)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관련 행위

피소추자는 그 직권을 남용하여 카토 타쓰야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선고 결과와 판결이유 등이 기재된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자료를 작성하였다. 피소추자가 작성한 문건은 부적절한 재판 개입행위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작성 행위 또한 심각한 사법행정권의 남용, 즉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 4)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사건 관련 행위

피소추자는 그 직권을 남용하여 이사야 카페의 활동을 저지하고 종국적으로는 카페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카페에 가입한 판사 신분의 회원들의 게시글에 대한 분석 및 부정적 평가와 함께 카페 폐쇄 유도 등 구체적 대처방안을 수립하는 등 법관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이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동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관의 독립, 법관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5)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가사 개별 문건에 따라 그 작성행위 하나만으로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해도, 피소추자가 임종헌 등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하여, 지속적으로 헌법상 재판의 독립, 법관의 신분보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의무에 반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종합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 4. 탄핵의 정당성

### 가. 대통령 탄핵과의 차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파면결정을 선고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헌법, 법률 위반의 정도’와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달리 법관 탄핵에 대하여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004헌나1).

먼저 법관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즉 국가적 손실, 사법질서 혼란 등을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그 수가 3,000여명에 이르고, 그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숫자도 160여명에 이르며, 대법관의 경우조차도 13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설령 위 인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탄핵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공백을 동료 법관이 메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이나, 재판의 공백 등 사법질서의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일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헌법, 법률위반의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 피소추자들 역시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출세가 보장된 법원행정처의 핵심 부서 등 근무를 통해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헌법상 결코 침해되서는 안될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한편 법관의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헌법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헌법, 법률위반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관 파면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적은 반면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형량을 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 53조 제1항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

한편 피소추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이들이 법관 탄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기만료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하여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처분에 의하여서는 최고수위가 정직 1년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단지 법관 징계절차에 의하여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 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사법농단에 관여한 피소추자는 정직처분으로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가 아니라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법원행정처를 거치는 동안 이른바 판사에서, ‘사법관료’로 변모해온 이들은, 심의관 단계에서부터 발탁되어 나중에 고등부장 승진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고 나아가 법원장, 대법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른바 출세가 보장된 법관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들을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에서 시킨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피해자 행세를 통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 동정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대법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물며,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로 하여금 재판장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법감정 과도 맞지 않는데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피소추자로부터 재판받게 되는 당사자나 대리인 변호사들로부터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받게 될 것이다.

## 5. 결론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오로지 고위법관들의 사익을 추구한 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소위 법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설마 스스로 법을 어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법관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마지막 믿을만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던 법관들에 의하여,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관 이하 고위법관들,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



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위배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의원 등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관 시진국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2. 임종헌 공소장

# 법관 신광렬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0000
----------	------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000 의원 외 00인

## 주 문

---

---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신광렬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

---

성 명 : 신광렬

직 위 : 법 관

## 탄핵소추의 사유

---

---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 신광렬(이하 '피소추자'라고 한다)은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권력분립원칙 (헌법 제1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 (헌법 제103조), 법관의 신분보장 (헌법 제10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제29조 3항, 4항, 제26조 등 법률을 위반하였고,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무상기밀누설죄 등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위반 행위는 다른 피소추자들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2011. 9. ~ 2017. 9.)에 의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 2. ~ 2016. 2. 대법관 겸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2016. 2. ~ 2017. 5.), 임종헌 (2012. 8. ~ 2015. 8. 기획조정실장, 2015. 8. ~ 2017. 3.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이는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무 및 청렴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오로지 신뢰에 기반하여 사법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피소추자의 지위

피소추자는 1990. 사법연수원을 수료(19기)하여, 1993.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제1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6. 2.부터 2018. 2.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였고, 2018.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어 2019. 1. 현재까지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본 탄핵소추안 발의일 기준으로 헌법 제101조 및 법원조직법 제5조에 따른 법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 2. 피소추자의 행위

가.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축소를 위한 영장 수사 정보 수집  
(2018.11.14.자 임종헌 공소장 192~195면)

1) 임종헌(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당시 대법원장), 고영한(당시 법원행정처장)은 2016. 4.경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유정과 현직 부장판사 김수천 등이 소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15. 1.경 현직 판사 구속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문상배의 비위사실이 언제 외부에 알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의 비리까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상고법원 도입 등 정책들이 표류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임종헌 등은 원칙대로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확인한 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법원에 접수된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에서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수사기밀을 실시간으로 입수하여 검찰수사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에 활용하기로 계획하였다.

2) 임종헌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소추자(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에게 ‘법원 내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 마련에 필요하니, 법원에 접수된 영장과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 상황 및 방향 등을 확인하여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소추자는 다시 영장전담 판사 조의연, 성창호 등에게 영장 재판 과정에 지득한 수사 정보를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소추자는 2016. 5. 3.경부터 9. 9.경까지 정운호 게이트 관련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위 영장전담 판사들로부터 최유정 변호사 등의 청탁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관련자들의 법관 비위에 대한 진술, 그들의 통신자료 및 법관 접촉 내역, 금품수수 경위 내역 등 수사 정보를 입수한 후, 다음 [표 1]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내용들을 정리한 문건 파일 9개 및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임종헌에게 송부하고, 임종헌은 이를 수시로 고영한, 양승태에게 보고하였다.

[표 1] 피소추자가 임종헌에게 송부한 영장 수사 정보(임종헌 공소장 범죄일람표3)

순번	작성일자	문건(파일)명	내용	영장판사 (영장종류)
1	2016. 5. 3.	(160503)○○○체포등사 건 사실관계[○○○]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검찰수사 진행 경 과 및 향후 수사 예정사항 등 기재	○○○ (압수수색, 체포, 통신)
2	2016. 5. 10.	(160510)○○○사건 [○○○]	○○○의 사건수입 경위 및 향후 수사 예정사항 등 기재	○○○ (압수수색,

				체포, 계좌)
3	2016. 5. 12.	(160512)○○○사건기록 검토 [○○○]	○○○에 대한 범죄사실 개요,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및 관련사건 진행경과 등 기재	○○○ (압수수색, 계좌)
4	2016. 5. 17.	(160517)서울중앙형사 [○○○]	계좌추적영장 발부 등 검찰수사 진행 경 과,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 기재	○○○ (압수수색, 계좌)
5	2016. 5. 18.	(160518)서울중앙형사 (○○○)	구속기간 연장 결정, 압수수색 진행경과 및 압수물 내역 등 기재	○○○ (구속연장 허가)
6	2016. 5. 25.	(160525)○○○(1)	○○○의 진술 내용, 향후 수사 예정사항 등 기재	○○○ (계좌)
7	2016. 8. 10.	수사보고서(피의자 ○○○에 대한 압수수색, 금융계좌추적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필요 보고)	○○○ 부장판사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각종 소명자료 및 향후 수사 예정사항 등 기재	○○○ (압수수색, 계좌)
8	2016. 8. 23.	(160823)○○○부장 [○○○]	○○○ 부장판사 입건사실 및 금품수수 경위, 관계자의 진술 등 기재	○○○ (압수수색, 계좌)
9	2016. 9. 3.	○○○ 부장 사건 일자별 정리요약	○○○ 부장판사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일자별 사건정리 내역, 그에 대한 구속영 장 청구 및 발부사실 등 기재	○○○ (구속)
10	2016. 9. 9.	(160909)○○○부장구속 기간 연장[○○○]	○○○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결정, 관계자들의 진술 등 기재	○○○ (구속연장 허가)

3) 피소추자는 위와 같이 형사수석 부장판사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영장전담판사로 하여금 재판 중 지득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정보를 누설하게 하고, 이를 다시 임종현 등 법원행정처에 누설하였다.

나.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축소를 위한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 전달 지시(2018.11.14.자 임종헌 공소장 195~196면)

1) 임종헌과 양승태, 고영한은 위와 같이 피소추자를 통하여 전달받은 수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검찰 수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일부 법관들의 비위 혐의가 점차 구체화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재판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영장재판에 개입함으로써 검찰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로 계획하였다.

2) 임종헌은 2016. 6. 22.경 피소추자에게 김현보로부터 받은 감사 목적과 무관하게 불법 수집한 김수천 부장판사 등 현직 부장판사 7명<sup>1)</sup>의 가족관계와 생년월일이 기재된 문건을 전달하며 영장전담판사들에게 ‘검찰이 법관 수사 확대를 위하여 김수천 부장 등 가족에 대한 통신 또는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비하여 이 자료를 참고하여 영장 청구 대상에 의혹의 대상인 위 법관들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살피고 통상의 영장 심사보다 엄격히 심사하라’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소추자는 그 지시에 따라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위 문건과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전달하였다.

3) 피소추자는 위와 같이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위 법관들의 가족관계 정보를 파악한 문건과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내용의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전달하여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다.

다.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에 관한 검찰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 대응방안 검토 지시(2018.11.14.자 임종헌 공소장 196~198면)

1) 김수천, 최규일, 임동규, 김성수, 박종택, 성수제, 장일혁



1) 임종헌과 양승태, 고영한은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발굴 활용하여 법관 비리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한편, ‘정운호 게이트’ 사건 처리에 관여한 검찰 수뇌부를 압박하여 법원 내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로 계획하였다.

2) 임종헌은 2016. 5.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소추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심준보, 윤리감사관 김현보, 공보관 조병구, 기획조정실 심의관 김민수, 사법정책실 심의관 최누림 등에게 정운호 상습도박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발굴 활용하여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 확대를 저지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소추자는 2016. 8. 17.경 당시까지의 수사 상황 및 향후 전망을 분석 정리하여 임종헌에게 보고하였고, 임종헌은 이를 토대로 피소추자 및 임성근(前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과 함께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 확대 중단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무혐의 처리와 관련된 검찰 지휘부의 의혹을 찾아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동시에 향후 검찰 특수수사의 영장 심사와 본안 판단에서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으로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였다.

### 3.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

#### 가. 관련 규정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러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의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는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의 당연한 기본원칙인 권력분립 원칙, 사법권의 가장 본질적인 재판업무에 관한 대원칙인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중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재판독립은 법원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내부세력 특히 사법행정권자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참조).

한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의 당연한 기본원칙인 권력분립, 3권분립원칙,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재판업무 자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법관이 사법행정권자의 지위에서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익실현의무에 기초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일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 제103조에 따른 재판의 독립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법관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 해당 법관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지시나 요청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위법한 지시에는 불응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원조직법 제29조 3항, 4항, 제26조는 수석부장의 경우 법원장

을 보좌하여 해당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한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석부장의 법원장을 보좌하는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1조, 권력분립원칙,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 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는 한편 제1조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구체화 된다(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1,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238, 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등).

따라서 권력분립제도는 우리 헌법질서의 중요한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은 3권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 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 제1조에서 파생되는 권력분립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 나. 3차보고서의 판단기준

한편 3차보고서 19쪽에서는 의혹별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평가기준을 밝힌 바 있다.

“정책결정을 통하여 실행행위로 나간 경우 뿐만 아니라 문서작성행위, 그 작성지시행위, 논의 과정, 정책결정행위 등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면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훼손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행위별 평가이며 각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대법원 특조단 스스로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 침해나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위 기준인 재판의 독립 등은 헌법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결국 3차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차 조사단은 위 헌법상의 기준에 비추어 정도가 남용에 미치지 않는 것을 부적절로 평가하였다는 것인데, 부적절로 평가된 부분도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에 인적 책임을 물을 때는 남용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실조사의혹을 받아 왔던 3차 조사단조차 사법행정권의 남용 또는 부적절로 판단한 행위는 적어도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등 헌법가치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기준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기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 11. 19.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으로서 법관 탄핵 소추절차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의결함으로써, 법관탄핵

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

한편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서 원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 등은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사건 처리에 관하여 동료나 선배 법관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의 조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등과 비교하여) 법원의 위상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나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절대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선의의 의도나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상 범죄 행위로 포섭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밖에 없으므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법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스스로 제시한 이러한 법관 탄핵의 판단기준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헌법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3차 조사보고서 판단기준과 함께 특히 임종헌 공소장에 제시된 행위태양의 중대한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라.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는 과

정에 지득한 수사 정보는 영장재판의 심리에 관한 자료임과 동시에 수사기밀로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 또한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예규에 따라 신병에 관한 사건의 경우 사건 종결시 그 결과만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해 보고받을 뿐이므로, 영장청구서나 수사기록으로부터 위 예규의 범위를 넘어 수사진행 상황, 확보된 진술 등 증거관계,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협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동 죄에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669 판결).

피소추자는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영장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2. 가항), ‘통상의 영장 심사보다 엄격히 심사하라’는, 그 자체로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어긴 가이드라인을 영장전담판사에게 전달하고(2. 나항), 임종헌과 함께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찰에 수사 확대 중단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2. 다항) 법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서슴지 않고 수사와 재판의 공정을 침해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건 담당 판사 이외의 제3자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지득하여 임종헌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 공무상 비밀누설죄까지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이다. 오늘날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권력분립 원칙의 본질은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사법·행정을 분리하고,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분립원칙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가 법관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하여 영장전담판사가 지득한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이를 부패 법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자료로 삼는다는 것은 공정한 수사과 재판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완전히 허물어트린 것이다. 나아가 그 성격상 사법부가 가진 권한을 남용하여 행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자 한 것으로 위헌적인 행위임이 명백하다.

또한 이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항, 제7조의 위반에 해당하고, 헌법이 천명한 3권분립의 원칙, 재판의 독립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적인 행위이다.

특히 피소추자는 위법하게 영장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고, 위법한 가이드라인을 후배 법관에게 전달하였으며, 직접 법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는 3차 보고서가 밝힌 평가기준상 ‘실행행위로 나아간 경우’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한 행위’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 마. 소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피소추자가 임종헌 등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하여, 지속적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재판의 독립,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의무에 반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종합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 4. 탄핵의 정당성

##### 가. 대통령 탄핵과의 차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파면결정을 선고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헌법, 법률 위반의 정도’와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달리 법관 탄핵에 대하여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경미한 범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004헌나1).

먼저 법관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즉 국가적 손실, 사법질서 혼란 등을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그 수가 3,000여 명에 이르고, 그중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숫자도 160여 명에 이르며, 대법관의 경우조차도 13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설령 위 인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탄핵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공백을 동료 (대)법관이 메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나, 재판의 공백 등 사법질서의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중대

한 법 위반일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헌법, 법률위반의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 피소추자들 역시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출세가 보장된 일선 법원의 사법행정라인인 수석부장에 임명되어 중책을 맡아서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헌법상 결코 침해해서는 안될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한편 법관의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헌법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헌법, 법률위반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관 파면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적은 반면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형량을 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

한편 피소추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의 지시에 따른 것인 데다, 이들이 법관 탄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기만료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하여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처분에 의하여서는 최고수위가 정직 1년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단지 법관 징계절차에 의하여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 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사법농단에 관여한 피소추자는 정직처분으로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가 아니라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피소추자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심각한 비위행위를 하였음에도 징계에도 회부되지 아니한바, 사법부의 자정능력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이른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서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사법관료’로 변모해온 피소추자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단계에서부터 발탁되거나 일선 법원의 사법행정라인인 수석부장에 임명되어 중책을 맡게 됨으로써 나중에 법원장을 거쳐, 대법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이른바 출세가 보장된 법관 엘리트이다.

이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들을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에서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피해자 행세를 통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 동정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대법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물며,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럼

에도 피소추자로 하여금 재판장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법감정 과도 맞지 않는 데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피소추자로부터 재판받게 되는 당사자나 대리인 변호사들로부터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받게 될 것이다.

## 5. 결론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오로지 고위법관들의 사익을 추구한 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소위 법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설마 스스로 법을 어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법관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마지막 믿을만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던 법관들에 의하여,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관 이하 고위법관들,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위배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의원 등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관 신광렬  
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2. 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 법관 윤성원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0000
----------	------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000 의원 외 00인

## 주 문

---

---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윤성원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

---

성 명 : 윤성원

직 위 : 법관

## 탄핵소추의 사유

---

---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 윤성원(이하 '피소추자'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 (헌법 제 10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국민위원회’이라 한다) 제7조,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만 직권남용죄 등 형법 위반 사항은, 향후 피소추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을 경우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 소추안에는 별도로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위반 행위는 다른 피소추자들과 함께 양승태 대 법원장(2011. 9. ~ 2017. 9.)에 의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 2. ~ 2016. 2. 대법관 겸임), 임종현(2012. 8. ~ 2015. 8. 기획조정실장, 2015. 8. ~ 2017. 3.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이는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무 및 청렴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오로지 신뢰에 기반하여 사법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 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피소추자의 지위

피소추자는 1988. 2.경 사법연수원을 수료(17기)하여, 1988. 2.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겸임), 서울고등법원 판사(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겸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연구법관,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겸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겸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14. 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의 직위를 겸임하게 되어 2016. 2. 직위에 대한 겸임이 해제되었다. 2018. 2.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전보되어 본 탄핵소추안 발의일 기준으로 헌법 제101조 및 법원조직법 제5조에 따른 법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 2. 피소추자의 행위

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행위 -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 개입 (2018. 11. 14.자 임종현 공소장 139-145면)

1) 2014. 12. 19.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진당(이하 '통진당'이라고 함)에 대하여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하였고, 대한민국은 통진당 중앙당 및 각 시 도당을 관할하는 법원에 통진당 보유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2014.

12. 22. 청와대 법무비서관 김종필은 민정수석비서관 김영한의 ‘법원의 의견을 받아보라’는 지시에 따라 임종헌에게 ‘통진당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자료를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임종헌은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차장 강형주, 피소추자 등과 협의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로부터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정리하고 일선 법원의 담당 판사들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소추자는 위 가압류 사건의 신청인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청이 선관위이고 이인복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인 점을 이용, 이인복 대법관에게 부탁하여 중앙선관위 법제국 해석 과장 박세진 변호사로부터 위 가압류 사건 관련 선관위의 내부 검토자료 및 전체 사건현황 자료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내부검토작업과 일선 법원 담당판사들에게 검토의견을 전달하는데 활용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소추자는 2014. 12. 22.경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 전지원을 통해, 심의관 최우진에게 ‘대법원 재판연구관 3명으로부터 통진당 예금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이 가능한 방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받아 정리한 후 그 자료를 통진당 가압류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최우진은 통진당 가압류 사건 쟁점을 대법원 재판연구관 3명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후, 관련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징수위탁은 유효한 집행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처분에 의할 수밖에 없고 국고귀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도당이 당사자능력과 적격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는 견해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국가의 해산정당에 대한 권리는 특정물에 대한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그 보전처분은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통진당 예금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사

건에 관한 검토' 자료를 작성하였다.

통진당 예금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의 경우 민사상 보전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 시도당의 독립된 결사체를 인정하고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이 시도당에도 미친다고 볼 것인지 여부와 당사자능력 또는 적격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해산된 정당의 청산절차가 예정되어있고 정당사무관리규칙상 잔여재산 신고 및 납부기한을 2월로 정하고 있는데 해산 즉시 보전처분을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및 존재한다면 그 형태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되거나 논의된 전례가 없었고 참고할 수 있는 판결례 등도 없었으며 각 쟁점 관련 예상되는 상반된 견해들도 각각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특정한 결론이 가장 적합하다는 식의 판단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 일부 사건 담당 법관들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진당 예금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을 인용할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인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전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일률적으로 특정 방향의 검토의견을 통진당 가압류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들에게 전달할 경우, 실제로 법원행정처의 검토의견이 맞다는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담당 법관들은 검토의견을 반박하거나 그와 다르게 법리 등을 구성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법원행정처에서 전달한 검토의견을 따르게 되는 등 재판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나아가 담당 법관들은 청와대가 법원행정처에 검토자료를 요청했다거나 신청인의 소송수행청인 중앙선관위 측에 위 검토 자료가 전달될 것이라는 점도 전혀 알지 못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헌은 2014. 12. 23.경 최우진이 취합·정리한 '통진당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한 검토' 자료를 보고받고

사건 담당 법관들에게 전달할 것을 승인하였고, 피소추자와 전지원은 최우진에게 검토자료의 양식을 법원행정처 내부 보고 양식이 아닌 출처 및 작성자를 알 수 없는 다른 양식으로 변경하여 일선 법원 사건 담당 법관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최우진은 2014. 12. 23.경 중앙선관위로부터 송부 받은 전체 통진당 가압류 사건 현황자료, 전국 법관 배치표를 참고하여 전국 16개 법원 담당 법관들에게 전화하여 ‘일선 법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재판연구관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의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정리하였다’, ‘정상적인 사법지원 차원에서 참고자료를 전달하려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그 보전처분은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정리된 ‘통진당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에 관한 검토’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다) 피소추자는 여기에 가처분 신청취지 등을 추가한 자료를 대법관이자 중앙선관위원장인 이인복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이인복은 이를 중앙선관위 소속 박세진 변호사에게 전달하였다. 그 무렵 전지원도 박세진 변호사에게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여 각급 선관위에서 일률적으로 통진당 예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도록 종용, 2014. 12. 24.경 각급 선관위는 추가로 통진당 예금 채권에 대해 일괄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각급 관할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를 모두 인용하였다.

3) 이상과 같이 피소추자는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어 상고법원 도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법지원실 심의관 최우진에게 ‘통진당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한 검토’ 자료 전달을 통하여 통진당 가압류 사건 담당 법관들의 법률해석과 직업적 양심에 영향을 미쳐 해당 보전처분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재판 개입 (2018. 11. 14.자 임종헌 공소장 56-64면)

1) 임종헌과 양승태, 박병대를 비롯한 사법부 수뇌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중대성과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인식하고, 1심 재판 당시부터 심의관들로 하여금 재정신청,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1심 공판진행 상황, 1심 판결 분석 및 항소심 전망 등을 검토하게 하는 등 재판 경과와 그에 따른 사법부 대응책을 논의하고, 청와대 측에 관련 정보를 교환하였다.

임종헌은 2015. 2. 경 청와대 측에서 법무비서관을 통해 항소기각 판결을 기대하며 항소심 선고 전망을 물어오자,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심과는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워 법원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유지하고, 이런 상황을 박병대, 양승태에게 보고했다. 사법부 수뇌부는 법원행정처 심의관들로 하여금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른 상황별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게 하여 항소심 선고 이후의 상황과 관련한 청와대 대응책을 마련하고, 사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로 계획했다.

2) 임종헌은 2015. 2. 7. 경 정다주에게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라. 특히 공선법 유죄 선고되면 청와대와 여권 상고 법원 입법 추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되, 사법부를 위해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지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다주는 2015. 2. 8. 경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에게 보고하고, 임종헌은 이를 박병대, 양승태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에 원세훈 사건

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는 암시를 제공하고, 청와대의 불만 및 오해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은 등 특정 재판의 절차 및 처리 방향을 청와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검토하였다.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세훈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자(2015. 2. 9.) 청와대 측은 법무비서관등을 통해 큰 불만을 표시하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임종헌에게 전달하였다. 임종헌을 비롯한 사법부 수뇌부는 상고심 재판 예상쟁점을 분석하고 각계의 동향을 파악·분석하여 향후 재판을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계획했다.

3) 이와 관련하여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임종헌은 상고심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조속히 선고하여 청와대의 불만 및 오해 기간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의 정치적 파급력과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을 신속히 파악하여 상고심 재판부 및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9. 사법지원실 심의관 박성준에게 '1심 및 항소심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해 상고심 재판에서 예상되는 핵심 쟁점 및 그에 대한 의견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박성준은 2015. 2. 9. 자 '국정원 선거개입(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 피소추자(사법지원실장), 김정만(대법원장 비서실장)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다. 피소추자는 위 문건을 직접 양승태에게 대면 보고했다.

### 3.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

#### 가. 관련 규정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러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은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의 내용이, 사법권의 가장 본질적인 재판업무에 관한 대원칙인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재판독립은 법원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내부세력

특히 사법행정권자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참조).

한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재판업무 자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법관이 사법행정권자의 지위에서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익실현의무에 기초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일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 제103조에 따른 재판의 독립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소추자 등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당연한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 나. 3차보고서의 판단기준



한편 3차보고서 19쪽에서는 의혹별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평가기준을 밝힌 바 있다.

“정책결정을 통하여 실행행위로 나간 경우 뿐만 아니라 문서작성행위, 그 작성지시행위, 논의 과정, 정책결정행위 등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면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훼손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행위별 평가이며 각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대법원 특조단 스스로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 침해나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위 기준인 재판의 독립 등은 헌법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결국 3차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차 조사단은 위 헌법상의 기준에 비추어 정도가 남용에 미치지 않는 것을 부적절로 평가하였다는 것인데, 부적절로 평가된 부분도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에 인적 책임을 물을 때는 남용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실조사의혹을 받아 왔던 3차 조사단조차 사법행정권의 남용 또는 부적절로 판단한 행위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등 헌법가치의 중대한 위반으로 적어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기준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구

체적으로 살펴본다.

#### 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기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 11. 19.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으로서 법관 탄핵 소추절차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의결함으로써, 법관탄핵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

한편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서 원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 등은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사건 처리에 관하여 동료나 선배 법관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의 조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등과 비교하여) 법원의 위상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나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절대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어떠한 선의의 의도나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상 범죄 행위로 포섭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 밖에 없으므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법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스스로 제시한 이러한 법관 탄핵의 판단기준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헌법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3차 조사보고서 판단기준과 함께 특히 임종헌 공소장에 제시된 행위태양의 중대한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라.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피소추자의 행위는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크게 (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행위, (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행위 등으로 나뉘는바,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 1) 피소추자의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관련 행위

피소추자는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어 상고법원 도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등의 목적으로 ‘통진당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한 검토’ 자료를 전달하여 통진당 가압류 사건 담당 법관들의 법률해석과 직업적 양심에 영향을 미쳐 해당 보전처분 재판에 개입하였다. 당시 피소추자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서 법원행정처가 일정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개별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 특히 전례가 없는 사건이므로 각 사건 담당 법관들에게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2) 피소추자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관련 행위

피소추자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재판의 동향을 살피고, 상고심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조속히 선고하여 청와대의 불만 및 오해 기간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의 정치적 파급력과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을 파악한 보고서를 직접 양승태에게 보고하였다.

이는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닌, 당해 사건의 정치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한 행위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법관의 독립, 법관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3)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피소추자는 법원행정처의 사법지원실장의 지위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중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한 권한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하여 임종현 등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하여 지속적으로 헌법상 재판의 독립, 법관의 신분보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의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금지에 반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종합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 4. 탄핵의 정당성

### 가. 대통령 탄핵과의 차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파면결정을 선고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헌법, 법률 위반의 정도’와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달리 법관 탄핵에 대하여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경미한 범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004헌나1).

먼저 법관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즉 국가적 손실, 사법질서 혼란 등을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그 수가 3,000여명에 이르고, 그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숫자도 160여명에 이르며, 대법관의 경우조차도 13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설령 위 인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탄핵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공백을 동료 법관이 메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이나, 재판의 공백 등 사법질서의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일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헌법, 법률위반의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 피소추자들 역시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출세가 보장된 법원행정처의 핵심 부서 등 근무를 통해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헌법상 결코 침해되서는 안될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한편 법관의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헌법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헌법, 법률위반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관 파면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적은 반면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형량을 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

한편 피소추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이들이 법관 탄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기만료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하여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처분에 의하여서는 최고수위가 정직 1년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단지 법관 징계절차에 의하여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 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법농단에 관여한 피소추자는 정직처분으로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가 아니라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법원행정처를 거치는 동안 이른바 판사에서, '사법관료'로 변모해온 이들은, 심의관 단계에서부터 발탁되어 나중에 고등부장 승진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고 나아가 법원장, 대법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른바 출세가 보장된

법관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들을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에서 시킨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피해자 행세를 통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 동정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대법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물며,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로 하여금 재판장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법감정 과도 맞지 않는데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피소추자로부터 재판받게 되는 당사자나 대리인인 변호사들로 부터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받게 될 것이다.

## 5. 결론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오로지 고위법관들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소위 법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설마 스스로 법을 어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법관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마지막 믿을만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던 법관들에 의하여,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관 이하 고위법관들,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위배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의원 등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관 윤성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2. 2018. 11. 14.자 임종헌 공소장

# 법관 이진만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0000
----------	------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000 의원 외 00인

## 주 문

---

---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이진만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

---

성 명 : 이진만

직 위 : 법 관

## 탄핵소추의 사유

---

---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 이진만(이하 '피소추자'라고 한다)은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 (헌법

제10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제81조의2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만 직권남용죄 등 형법 위반 사항은, 향후 검찰의 피소추자에 대한 기소가 있을 경우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 소추안에는 별도로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위반 행위는 다른 피소추자들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2011. 9. ~ 2017. 9.)에 의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 2. ~ 2016. 2. 대법관 겸임), 임종헌(2012. 8. ~ 2015. 8. 기획조정실장, 2015. 8. ~ 2017. 3.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이는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무 및 청렴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오로지 신뢰에 기반하여 사법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피소추자의 지위

피소추자는 1989년경 사법연수원 제18기를 수료하고,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흥성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심의관(총괄),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총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던 중, 2013. 2.부터 2015. 2.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임하였고, 2016. 2.부터 2018. 2.까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직대를 거쳐 2018. 2.부터 현재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본 탄핵소추안 발의일 기준으로 헌법 제101조 및 법원조직법 제5조에 따른 법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 2. 피소추자의 행위

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개입을 목적으로 한 TFT의 팀장으로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 작성 및 보고(임종헌 공소장 112~114면)

1) 임종헌(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양승태(당시 대법원장), 박병대(당시 법원행정처장), 강형주(당시 법원행정처 차장)는 2014. 12. 19.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결정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 이후 의원직이 상실된 통합진보당 소속 前 국회의원

들과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퇴직된 통합진보당 소속 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위 의원직 상실 결정과 퇴직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이하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향후 제기될 위 소송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사법 심사할 수 있는 '호기'라는 판단 하에,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던 GS칼텍스 사건 등에 대한 재판소원과 관련하여 재판취소 결정 방지를 위한 압박카드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2) 이에 따라 임종헌 등은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피소추인을 팀장으로, 사법정책실 심의관 김종복을 간사로 하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대응 TFT(이하 '통합진보당 TF'라 함)를 구성한 후, 위 TF로 하여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인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학관계, 통 진당 해산을 둘러싼 국민 여론 및 정치적 지형, 2014. 12. 19. 발의된 상고법원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유 불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법부에 가장 유리한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의 결론 및 그에 부합하는 판결 이유의 구성, 선고 시기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검토 결과를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전달하여 이를 관철시키기로 하였다.

3) 그리하여 피소추자는 김종복 등 팀원들로 하여금 관련 법령, 해외 사례, 학계의 태도, 언론보도 동향,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각 법원 기획법관 등으로부터 송부받은 소장과 첨부서류 등 소송자료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통합진보당 TF에서는 2015. 1. 7.경 '현 상황이 법원에 미칠 영향은 유 불리가 공존하므로 위 소송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법률상 권한 없는 결정이므로 현행 헌법과 법률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더 크며, 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이나 인용결정

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사법부에 위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이유 설시 필요, 이하 ‘법원행정 처가 수립한 판단방법’이라 함)하는 내용의 2015. 1. 7.자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작성한 후 임종헌, 강형주, 박병대, 양승태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다.

4) 그런데, 위 문건의 내용과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방법’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해당 재판의 심리, 결론, 판결이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 **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 방안 검토(임종헌 공소장 137~138면)**

1) 임종헌은 통합진보당 재창당 움직임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사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을 제소하게 한 다음 의원직을 박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는 방안을 청와대 측에 제시하여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구 지방의원직 상실 여부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함으로써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기로 계획하였다.

2) 임종헌은 2015. 2.경 피소추자에게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게 대한 제소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소추자는 그 무렵 사법정책실 심의관 김종복에게 위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김종복은 2015. 2. 12.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 보고서 및 2015. 2. 12.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제소’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소추자에게 보고하였고, 피소추자는 김종복으로 하여금 임종헌에게 위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문건들에는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장이 지역구 지방의원 상대로 의원직위 부존재 확인 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의원직 상실을 소송으로 확인하는 방안이 있고, 보수적 색채가 강하고 여당이 단체장인 지역(울산, 경남) 중 진보진영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남 지역 한 곳에서 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는 내용 및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위한 구체적인 제소방법(원고, 피고,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을 검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각종 사법정책 추진에 있어 청와대의 협조를 얻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정치적 사안에서 사법부가 먼저 일방 당사자의 제소를 유도한 뒤 특정한 의도에 맞춰 재판의 결론을 내리자는 계획을 구상하고, 나아가 실행을 위해 특정 소제기 후보지역까지 검토한 것으로, 삼권분립의 원칙 및 법관의 재판상 독립 등을 명백히 침해하는 내용이었다.

3) 이로써 피소추자는 임종헌과 함께, 그 직권을 남용하여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의 협상 수단을 마련하고,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법원의 위상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법정책실 심의관 김종복에게 위와 같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김종복으로 하여금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직을 상실시키기 위한 방안 및 청구취지 청구이유, 소제기 후보지역까지 기재된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3.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

#### 가. 관련 규정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러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은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의 내용이, 사법권의 가장 본질적인 재판업무에 관한 대원칙인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재판독립은 법원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내부세력



특히 사법행정권자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참조).

한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재판업무 자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법관이 사법행정권자의 지위에서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익실현의무에 기초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일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 제103조에 따른 재판의 독립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법관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 해당 법관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지시나 요청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위법한 지시에는 불응하여야 한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에 따라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직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권한 행사는 양형위원회의 업무범위인 객관적 양형실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 나. 3차보고서의 판단기준

한편 3차보고서 19쪽에서는 의혹별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평가기준을 밝힌 바 있다.

“정책결정을 통하여 실행행위로 나간 경우 뿐만 아니라 문서작성행위, 그 작성지시행위, 논의 과정, 정책결정행위 등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면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훼손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행위별 평가이며 각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대법원 특조단 스스로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 침해나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위 기준인 재판의 독립 등은 헌법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결국 3차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차 조사단은 위 헌법상의 기준에 비추어 정도가 남용에 미치지 않는 것을 부적절로 평가하였다는 것인데, 부적절로 평가된 부분도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에 인적 책임을 물을 때는 남용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실조사의혹을 받아 왔던 3차 조사단조차 사법행정권의 남용 또는 부적절로 판단한 행위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등 헌법가치의 중대한 위반으로 적어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기준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기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 11. 19.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으로서 법관 탄핵 소추절차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의결함으로써, 법관탄핵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

한편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서 원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 등은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사건 처리에 관하여 동료나 선배 법관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의 조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등과 비교

하여) 법원의 위상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나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절대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선의의 의도나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상 범죄 행위로 포섭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밖에 없으므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법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스스로 제시한 이러한 법관 탄핵의 판단기준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헌법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3차 조사보고서 판단기준과 함께 특히 임종헌 공소장에 제시된 행위태양의 중대한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라.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1) 피소추자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을 통해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던 GS칼텍스 사건 등에 대한 재판소원과 관련하여 재판취소 결정 방지를 위한 압박카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획된 통합진보당 TF의 장으로서 법관 김종복 등 팀원들로 하여금 2015. 1. 7.자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작성케한 뒤 임종헌, 강형주, 박병대, 양승태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는데(2. 가항), 위 문건의 내용과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방법'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해당 재판의 심리, 결론, 판결이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특조단의 평가 기준에 따르면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등을 규정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피소추자의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피소추자는 공직자의 공익실현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 및 이를 구체화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또한 위반한 것이다.

2) 피소추자는 ‘사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을 제소하게 한 다음 의원직을 박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는 방안을 청와대 측에 제시하여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관 김종복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소송 쟁점, 방안에 관하여 자세히 검토하게 하여, 임종헌과 함께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2. 나항). 위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문건을 보면,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해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행정소송을 행정처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방안으로 검토하고 그 소제기 후보지역까지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제소방법을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까지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각종 사법정책 추진에 있어 청와대의 협조를 얻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정치적 사안에서 사법부가 먼저 일방 당사자의 제소를 유도한 뒤 특정한 의도에 맞춰 재판의 결론을 내리자는 계획을 구상하고, 나아가 실행을 위해 특정 소제기 후보지역까지 검토한 것으로, 삼권분립의 원칙 및 법관의 재판상 독립 등을 명백히 침해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특조단의 평가 기준에 따르면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등을 규정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피소추자의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피소추자는 공직자의 공익실현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 및 이를 구체화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또한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소추자는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직위에 있던 자로서 법원 조직법 제81조의 2에 따라 오로지, 양형위원회의 업무범위인 객관적 양형 실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아래에서 보듯이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관리 등은 피소추자의 업무범위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이었다.

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가사 개별 문건에 따라 그 작성행위 하나만으로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해도, 피소추자가 임종헌 등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하여, 지속적으로 헌법상 재판의 독립, 법관의 신분보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의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금지에 반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종합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 4. 탄핵의 정당성

### 가. 대통령 탄핵과의 차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파면결정을 선고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헌법, 법률 위반의 정도’와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달리 법관 탄핵에 대하여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경미한 범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004헌나 1).

먼저 법관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즉 국가적 손실, 사법질서 혼란 등을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그 수가 3,000여명에 이르고, 그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숫자도 160여명에 이르며, 대법관의 경우조차도 13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설령 위 인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탄핵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공백을 동료 (대)법관이 메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이나, 재판의 공백 등 사법질서의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일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헌법, 법률위반의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 피소추자들 역시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출세가 보장된 법원행정처의 핵심 부서 등 근무를 통해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헌법상 결코 침해되서는 안될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한편 법관의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헌법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헌법, 법률위반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관 파면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적은 반면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형량을 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

한편 피소추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이들이 법관 탄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기만료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하여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처분에 의하여서는 최고수위가 정직 1년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단지 법관 징계절차에 의하여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 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법농단에 관여한 피소추자는 정직처분으로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가 아니라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피소추자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심각한 비위행위를 하였음에도 징계에도 회부되지 아니한바, 사법부의 자정능력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피소추자를 비롯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은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고등부장 등 법원 내부 주요 요직을 거치며 나아가 법원장, 대법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른바 출세가 보장된 법관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2. 나항 비위행위에 관하여 검찰은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에서 피소추



자가 임종헌과 “함께”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하여, 공범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들을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에서 시킨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피해자 행세를 통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 동정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대법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물며,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로 하여금 재판장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법감정과도 맞지 않는데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피소추자로부터 재판받게 되는 당사자나 대리인 변호사들로부터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받게 될 것이다.

## 5. 결론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오로지 고위법관들의 사익을 추구한 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소위 법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설마 스스로 법을 어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법관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마지막 믿을만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던 법관들에 의하여,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관 이하 고위법관들,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위배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의원 등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관 이진만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2. 위 1. 기재 조사보고서 인용 문건
  - [74] (150107) 통진당행정소송검토보고(정책실)
  - [75] (150212) 통진당지역구지방의원대책내부용
  
3. 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0000
----------	------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000 의원 외 00인

## 주 문

---

---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임성근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

---

성 명 : 임성근

직 위 : 법관

## 탄핵소추의 사유

---

---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 임성근(이하 '피소추자'라고 한다)은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 (헌법 제10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제29조 제3항, 제4항 및 제26조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만 직권남용죄 등 형법 위반 사항은, 향후 피소추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을 경우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므로, 이 소추안에는 별도로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위반 행위는 다른 피소추자들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2011. 9. ~ 2017. 9.)에 의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 2. ~ 2016. 2. 대법관 겸임), 임종헌(2012. 8. ~ 2015. 8. 기획조정실장, 2015. 8. ~ 2017. 3.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이는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무 및 청렴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오로지 신뢰에 기반하여 사법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피소추자의 지위

피소추자는 1988. 2.경 사법연수원을 수료(17기)하여 1991. 2.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부산지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창원지법 거창지원 합천군/함양군법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1. 2. 서울고법 부장판사 및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임하다가 2013. 2.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겸임에서 해임되었고, 2014. 2.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한 후 2016. 2.부터 현재까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으로, 본 탄핵소추안 발의일 기준으로 헌법 제101조 및 법원조직법 제5조에 따른 법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 2. 피소추자의 행위

#### 가.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2018. 11. 14.자 임종헌 공소장 64-20면 )

1) 2014. 4. 16.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정치권 및 여론의 비판과 공분이 고조되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4. 8. 3.경 카토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일본 산케이신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자,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8. 6.경 카토 타쓰야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청와대에서도 8. 7. ‘카토 타쓰야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엄정대처 의지를 표명하였다.

2)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는 카토 타쓰야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172’, 이하 ‘카토 타쓰야 사건’)이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자, 현직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피해자이고 전 국민적 관심사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이 핵심 쟁점이므로 재판 결과가 국정에 미칠 정치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중요사건으로 관리하였다.

3)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는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이 대내외적인 반대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와대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2014. 9.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항고심 효력정지 결정, 2015. 2.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항소심의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 유죄판결 등으로 청와대 내에서 사법부가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판이 대두되고, 2014. 12. 하순경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아지자, 사법부의 위상 강화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카토 타쓰야 사건의 재판에 청와대의 입장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청와대에 적극 협조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이와 관련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피소추자는 판결 선고 전, 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중간판결적 판단’을 하게 하라는 임종헌의 요구를 재판장 이동근에게 전달, 지시하였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 임종헌은 2015. 3. 하순경 피소추자에게 카토 타쓰야 사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계획을 전달하며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진행하다가 카토 타쓰야의 기사가 허위임을 확인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달라. 법원행정처도 대통령의 행적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재판과정에서 이미 밝혀졌다고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소추자는 그 무렵 재판장 이동근에게 그러한 요청사항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에 이동근은 2015. 3. 30. 이 사건 4회 공판기일 법정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 정운회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을 모처에서 만났다고 하는 피고인이 기재한 소문의 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되었다고 본다'는 취지로 고지하고, 검사와 변호인에게 향후 '공공의 이익과 비방목적 유무'에 변론을 집중하도록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였다.

**2) 피소추자는 판결이유 및 선고 시 구체적 구술내용과 관련한 임종헌의 지시를 이동근에게 전달하고 이동근의 재판 내용에 개입하였다.**

이후에도 피소추자는 임종헌에게 이 사건 재판진행경과 등 수시로 보고하였다. 그러던 중 피소추자는 2015. 10. 하순경 임종헌으로부터 '재판부가 어떤 판결 선고하는지, 어떤 내용을 판결이유로 실시할 예정인지 알아봐달라'는 요구를 받아 2015. 11. 초순경 '무죄선고가 불가피하고 재판장이 법리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에 임종헌은 피소추자에게 '① 무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판결이유에 반드시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실시하고, ② 명예훼손이 인정되나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점을 밝히고, ③ 판결 선고 말미에 카토 타쓰야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달라'는 취지를 재판장 이동근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5. 12.경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에 피소추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외



교부에서 카토 타쓰야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가 제출될 것이니 재판장이 판결 선고시에 그 내용을 고지해달라'고 재요구하였다.

이에 피소추자는 2015. 11.경 이동근에게 카토 타쓰야의 판결문 외에 '전체적인 판결이유 요약, 카토 타쓰야의 행위에 대한 평가'등을 판결 선고 말미에 고지하고, 그 고지내용에 대해 사전에 자신에게 검토를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피소추자는 2015. 11. 11.경 이동근으로부터 판결 선고 말미에 고지할 내용이 기재된 구술본 초안을 전달받아 확인한 결과, 무죄판결 이유가 '피해자 박근혜는 공인이어서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 정윤희는 명예훼손은 성립하나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자, 구술본 초안을 수정하여 전달함으로써 임종헌의 요구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로 마음먹고, 11. 17.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해서 명예훼손죄를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하면 청와대 측에서 서운해 할 것'이라는 이유를 부기하면서 구술본 초안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적 존재인 이상,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함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그 수정본을 이메일로 이동근에게 전달하였다.

피소추자는 11. 18. 다시 이동근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판결 이유와 관련하여 '결론 부분에서 기사가 허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시'하고,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나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소추자는 2015. 11.중순경 임종헌에게 '이동근이 판결이유 및 선고시 구술내용에 대한 법원행정처 요청을 수긍했다'는 취지를 보고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판결 선고 직전인 2015. 12. 중순경 '외교부에서 카토 타쓰야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으니 판결 선고를 하기 전에 그러한 취지를 언급해달라'는 임종헌의 요구사항을 다시 이동근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이동근은 종래 ‘피해자 박근혜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방목적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판결이유를 ‘피해자 박근혜에 대하여 명예훼손은 성립하나 비방의 목적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변경하고, 2015. 12. 17. 선고기일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먼저 ‘대한민국 외교부의 카토 타쓰야에 대한 선처요청’을 언급하였다.

그 다음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일 뿐이고, 카토 타쓰야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행동까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까지 부연설명하면서 무죄 선고 대상인 카토 타쓰야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질책하는 한편, 판결 선고가 길어짐에 따라 착석을 요청하는 그로 하여금 기립한 상태에서 3시간 동안 판결 선고를 듣게 하였다.

### 3.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

#### 가. 관련 규정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러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

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은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의 내용이, 사법권의 가장 본질적인 재판업무에 관한 대원칙인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중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재판독립은 법원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내부세력 특히 사법행정권자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참조).

한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

현의무,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의 당연한 기본원칙인 권력분립, 3권분립원칙,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재판업무 자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법관이 사법행정권자의 지위에서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익실현의무에 기초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일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 제103조에 따른 재판의 독립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법관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 해당 법관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지시나 요청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위법한 지시에는 불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29조 3항, 4항, 제26조는 수석부장의 경우 법원장을 보좌하여 해당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한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석부장의 법원장을 보좌하는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1조, 권력분립원칙,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 나. 3차보고서의 판단기준

한편 3차보고서 19쪽에서는 의혹별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평가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정책결정을 통하여 실행행위로 나간 경우 뿐만 아니라 문서작성행위, 그

작성지시행위, 논의 과정, 정책결정행위 등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면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훼손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행위별 평  
가이며 각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  
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대법원 특조단 스스로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 침  
해나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위 기준인 재판의 독립 등은 헌법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므로, 결국 3차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헌법을 중대  
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차 조사단은 위 헌법상의 기준에 비  
추어 정도가 남용에 미치지 않는 것을 부적절로 평가하였다는 것인데, 부적절  
로 평가된 부분도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에 인적 책임을 물을 때는 남  
용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실조사의혹을 받아 왔던 3차 조사단조차 사법행정권의 남용  
또는 부적절로 판단한 행위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등 헌법가치의 중대한  
위반으로 적어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기준을 주요  
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

#### 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기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 11. 19.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으  
로서 법관 탄핵 소추절차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의결함으로써, 법관탄핵의 판

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

한편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서 원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 등은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사건 처리에 관하여 동료나 선배 법관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의 조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등과 비교하여) 법원의 위상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나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절대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어떠한 선의의 의도나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상 범죄 행위로 포섭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밖에 없으므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법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스스로 제시한 이러한 법관 탄핵의 판단 기준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헌법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3차 조사보고서 판단기준과 함께 특히 임종헌 공소장에 제시된 행위태양의 중대한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의 기준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라.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 1) ‘카토 타쓰야 사건’ 에 대한 재판 개입 행위

피소추자는 카토 타쓰야 사건과 관련하여 임종현으로부터 청와대에 유리한 중간판결적 판단을 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그대로 당해 사건의 재판장 이동근에게 전달하고 지시하여 이동근이 그와 같은 취지의 중간판결을 하면서 검사와 변호인에게 향후 ‘공공의 이익과 비방목적 유무’에 변론을 집중하도록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수시로 파악하여 임종현에게 보고하였고, 특히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유와 판결 선고시 재판장이 고지할 구체적인 구술내용에 대하여 임종현의 지시를 받아 이동근에게 전달하는 한편 이동근으로부터 받은 판결이유 및 구술내용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재차 이동근에게 전달, 지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위 전국법관회의의 의결사항 기준에 따를 때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거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의견의 제시를 넘어 판결 선고 및 구술 내용까지 스스로 수정하는 등 특정 재판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 2) 헌법 및 법률 위반의 내용

피소추자는 수석부장판사로서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및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함에도,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와 아무런 관계없는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지시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연결고리 또는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함으로써 법이 명시한 권한을 넘어 일선 재판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또한 대

통령이 피해자인 당해 사건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와대의 입장과 요구에 부합한다는 점을 능히 알고 있었음에도 '법원의 위상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 또는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등을 염두에 두고서 청와대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게 담당 재판장에게 지시한 것이다.

이로써 피소추자는 법원 특조단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고 전국법관회의에서 절대 금지한 '법원의 위상 제고 및 행정부와의 협조관계 유지'라는 특정 이익을 위하여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이 정한 법관의 재판상 독립 원칙 등을 중대하고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정한 직무수행의무, 공직자윤리법 상의 부정한 특혜금지의무,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부패행위금지 및 품위손상금지의무 등 피소추자의 직무수행원칙들과 관련한 법률들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 4. 탄핵의 정당성

### 가. 대통령 탄핵과의 차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파면결정을 선고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헌법, 법률 위반의 정도'와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달리 법관 탄핵에 대하여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경미한 범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004헌나1).

먼저 법관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즉 국가적 손실, 사법질서 혼란 등



을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그 수가 3,000여명에 이르고, 그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숫자도 160여명에 이르며, 대법관의 경우조차도 13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설령 위 인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탄핵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공백을 동료 법관이 메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이나, 재판의 공백 등 사법질서의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일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헌법, 법률위반의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 피소추자들 역시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출세가 보장된 일선 법원의 사법행정라인인 수석부장으로서의 근무를 통해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헌법상 결코 침해되서는 안될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한편 법관의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헌법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이 헌법, 법률위반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관 파면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적은 반면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형량을 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

한편 피소추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이들이 법관 탄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기만료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하여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처분에 의하여서는 최고수위가 정직 1년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단지 법관 징계절차에 의하여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 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법농단에 관여한 피소추자는 정직처분으로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가 아니라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이른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서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사법관료’로 변모해온 피소추자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단계에서부터 발탁되거나 일선 법원의 사법행정라인인 수석부장에 임명되어 중책을 맡게 됨으로써 나중에 법원장을 거쳐, 대법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이른바 출세가 보장된 법관 엘리트이다.

이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들을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에서 시킨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피해자 행세를 통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 동정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대법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물

며,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로 하여금 재판장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법감정 과도 맞지 않는데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피소추자로부터 재판받게 되는 당사자나 대리인 변호사들로부터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받게 될 것이다.

## 5. 결론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오로지 고위법관들의 사익을 추구한 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소위 법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설마 스스로 법을 어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법관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마지막 믿을만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던 법관들에 의하여,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관 이하 고위법관들, 법원 행정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위배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의원 등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관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2. 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 법관 조한창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0000
----------	------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000 의원 외 00인

## 주 문

---

---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조한창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

---

성 명 : 조한창

직 위 : 법관

## 탄핵소추의 사유

---

---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 조한창(이하 '피소추자'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 (헌법 제10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제29조 3항, 4항, 제26조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만 직권남용죄 등 형법 위반 사항은, 향후 피소추자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가 있을 경우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므로, 이 소추안에는 별도로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위반 행위는 다른 피소추자들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2011. 9. ~ 2017. 9.)에 의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 2. ~ 2016. 2. 대법관 겸임), 임종헌(2012. 8. ~ 2015. 8. 기획조정실장, 2015. 8. ~ 2017. 3.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이는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무 및 청렴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오로지 신뢰에 기반하여 사법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피소추자의 지위

피소추자는 1989. 2.경 사법연수원을 수료(18기)하여, 1992. 2.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부산지법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전보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이후 피소추자는 2016. 2.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로, 본 탄핵소추안 발의일 기준으로 헌법 제101조 및 법원조직법 제5조에 따른 법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 2. 피소추자의 행위 -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행위

가.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sup>1)</sup>재판 개입(2018. 11. 14.자 임종헌 공소장 115쪽)

#### (1) 경위

임종헌, 양승태, 박병대, 강형주는 2014. 12. 19.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결정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 이후 의원직이 상실된 통진당 소속 前 국회의원들과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퇴직된 통진당 소속 前 비례대

---

1)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320호



표 지방의회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위 의원직 상실 결정과 퇴직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이하 '통진당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향후 제기될 위 소송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사법심사할 수 있는 '호기'라는 판단 하에,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던 GS칼텍스 사건 등에 대한 재판소원과 관련하여 재판취소 결정의 방지를 위한 압박카드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임종헌 등은 이진만 양형실장을 팀장으로, 사법정책실 심의관 김종복을 간사로 하는 통진당 행정소송 대응 TFT(이하 '통진당 TF'라 함)를 구성한 후, 통진당 TF로 하여금 통진당 해산결정으로 인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학관계, 통진당 해산을 둘러싼 국민 여론 및 정치적 지형, 2014. 12. 19. 발의된 상고법원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유불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법부에 가장 유리한 통진당 행정소송의 결론 및 그에 부합하는 판결 이유의 구성, 선고 시기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검토 결과를 통진당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전달하여 이를 관철시키기로 하였다.

## (2) 재판개입

피소추자는 2015. 5. 26.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스시효' 일식집에서 만난 이규진으로부터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위 사건에 관한 판단방법'이 담겨있는 2015. 1. 7.자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전달받으면서 "헌재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니 각하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을 줄테니 그 내용을 파악해서 법리를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피소추자는 이러한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2015. 7.경 위 사건 재판장 반정우에게 "각하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잘 검토해 보라"고 말하면서 이규진으로부터 받은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방법'의 취지를 전달하였다.

나.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 재판개입(2019. 1. 15.자 임종헌 추가공소장 6, 7쪽)

(1) 2015. 3.경 재판 개입

피소추자는 2015. 3. 27.경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코트넷 사건 검색 등을 통해 위 사건의 변론기일이 2015. 1. 22.경 추정된 사실 등을 확인한 다음, '서기호 의원 사건이 추정된 이유를 담당 재판부에 확인해 보고 소송을 신속히 종결하도록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소추자는 곧바로 담당 재판장인 박연욱에게 연락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서기호 의원 사건을 추정한 이유를 알고 싶어하며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요구한다'는 취지를 전달하였고, 박연욱으로부터 '재항고 중이어서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추정하였는데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고 양쪽에서 더 다투는 것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종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소추자는 이와 같이 박연욱에게 소송을 신속하게 종결하라는 임종헌의 요구를 전달하고, 박연욱으로부터 확인한 이 사건 소송 재판부의 진행계획을 그 무렵 임종헌에게 보고하였다.

(2) 2015. 5.경 재판 개입

피소추자는 2015. 5. 29.경 임종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코트넷 사건 검색 등을 통해 서기호 의원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2015. 5. 22.경 기각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재항고가 기각되었으니 사건을 바로 진행하여 소송을 신속하게 종결하도록 재판부에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소추자는 2015. 6. 1.경 박연욱에게 연락하여 '재항고가 종결되었으므로 즉시 기일을 지정하고 소송을 신속하게 종결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그때까지 재항고 종결 사실을 알지 못했던 박연욱은 그 즉시 사건을 검색하여

재항고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한 후 차회 변론기일을 2015. 7. 2.로 지정하여 원고, 피고 측에 변론기일을 통지하였다.

피소추자는 2015. 6. 3.경 이 사건 소송의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을 확인한 후 임종헌에게 변론기일이 지정된 사실과 재판부의 변론종결 계획을 보고하였고, 박연욱은 2015. 7. 2. 변론기일에 이 사건 소송의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5. 8. 13. 14:00경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 3.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

#### 가. 관련 규정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러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은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의 내용이, 사법권의 가장 본질적인 재판업무에 관한 대원칙인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중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재판독립은 법원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내부세력 특히 사법행정권자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참조).

한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재판업무 자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법관이 사법행정권자의 지위에서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익실현의무에 기초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일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

법 제103조에 따른 재판의 독립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법관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 해당 법관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지시나 요청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위법한 지시에는 불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29조 3항, 4항, 제26조는 수석부장의 경우 법원장을 보좌하여 해당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한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석부장의 법원장을 보좌하는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1조, 권력분립원칙,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 나. 3차보고서의 판단기준

한편 3차보고서 19쪽에서는 의혹별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평가 기준을 밝힌바 있다.

“정책결정을 통하여 실행행위로 나간 경우 뿐만 아니라 문서작성행위, 그 작성지시행위, 논의 과정, 정책결정행위 등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면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훼손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행위별 평가이며 각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대법원 특조단 스스로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 침해나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위 기준인 재판의 독립 등은 헌법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결국 3차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차 조사단은 위 헌법상의 기준에 비추어 정도가 남용에 미치지 않는 것을 부적절로 평가하였다는 것인데, 부적절로 평가된 부분도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에 인적 책임을 물을 때는 남용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실조사의혹을 받아 왔던 3차 조사단조차 사법행정권의 남용 또는 부적절로 판단한 행위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등 헌법가치의 중대한 위반으로 적어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기준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기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 11. 19.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으로서 법관 탄핵 소추절차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의결함으로써, 법관탄핵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

한편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서 원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 등은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사건 처리에 관하여 동료나 선배 법관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의 조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등과 비교하여) 법원의 위상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나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절대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어떠한 선의의 의도나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상 범죄 행위로 포섭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밖에 없으므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법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스스로 제시한 이러한 법관 탄핵의 판단 기준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헌법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3차 조사보고서 판단기준과 함께 특히 임종헌 공소장과 추가 공소장에 제시된 행위태양의 중대한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라.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피소추자의 행위는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

즉 위 사건 재판들에 대하여, 피소추자는 수석부장으로서의 법원장을 보좌하는 사법행정업무 권한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는 내용의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초실장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헌법상 재판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 자체로 사법행정권의 남용, 즉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소추자는 수석부장으로서,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및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함에도,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와 아무런 관계없는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지시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연결고리 또는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함으로써 법이 명시한 권한을 넘어 일선 재판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이로써 피소추자는 법원 특조단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고 전국법관회의에서 절대 금지한 ‘법원의 위상 제고 및 행정부와의 협조관계 유지’라는 특정 이익을 위하여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이 정한 법관의 재판상 독립 원칙 등을 중대하고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정한 직무수행의무, 공직자윤리법 상의 부정한 특혜금지의무,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부패행위금지 및 품위손상금지의무 등 피소추자의 직무수행원칙들과 관련한 법률들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 4. 탄핵의 정당성

### 가. 대통령 탄핵과의 차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파면결정을 선고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헌법, 법률 위반의 정도’와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달리 법관 탄핵에 대하여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경미한 범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004헌나1).



먼저 법관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즉 국가적 손실, 사법질서 혼란 등을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그 수가 3,000여명에 이르고, 그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숫자도 160여명에 이르며, 대법관의 경우조차도 13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설령 위 인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탄핵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공백을 동료 법관이 메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이나, 재판의 공백 등 사법질서의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일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헌법, 법률위반의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 피소추자들 역시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출세가 보장된 일선 법원의 사법행정라인인 수석부장으로서의 근무를 통해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헌법상 결코 침해되서는 안될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한편 법관의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헌법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이 헌법, 법률위반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관 파면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적은 반면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형량을 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

한편 피소추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이들이 법관 탄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기만료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하여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처분에 의하여서는 최고수위가 정직 1년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단지 법관 징계절차에 의하여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 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법농단에 관여한 피소추자는 정직처분으로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가 아니라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이른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서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사법관료’로 변모해온 피소추자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단계에서부터 발탁되거나 일선 법원의 사법행정라인인 수석부장에 임명되어 중책을 맡게 됨으로써 나중에 법원장을 거쳐, 대법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이른바 출세가 보장된 법관 엘리트이다.

이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들을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에서 시킨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피해자 행세를 통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 동정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대법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

는 공무원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물며,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로 하여금 재판장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법감정 과도 맞지 않는데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피소추자로부터 재판받게 되는 당사자나 대리인 변호사들로부터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받게 될 것이다.

## 5. 결론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오로지 고위법관들의 사익을 추구한 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소위 법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설마 스스로 법을 어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법관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마지막 믿을만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던 법관들에 의하여,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관 이하 고위법관들,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

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위배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의원 등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관 조한창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2. 2018. 11. 14.자 임종헌 공소장
3. 2019. 1. 15.자 임종헌 추가 공소장

# 법관 최희준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0000
----------	------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000 의원 외 00인

## 주 문

---

---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최희준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

---

성 명 : 최희준

직 위 : 법관

## 탄핵소추의 사유

---

---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 최희준(이하 '피소추자'라고 한다)은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민주공화국 규정(헌법 제1조)에서 파생되는 권력분립의 원칙,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7조), 재판독립의 원칙 (헌법 제103조)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형법 제127조,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 법원조직법 제50조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위반 행위는 다른 피소추자들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2011. 9. ~ 2017. 9.)에 의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 2. ~ 2016. 2. 대법관 겸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2016. 2. ~ 2017. 5.), 임종헌 (2012. 8. ~ 2015. 8. 기획조정실장, 2015. 8. ~ 2017. 3.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이는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무 및 청렴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오로지 신뢰에 기반하여 사법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피소추자의 지위

피소추자는 2002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등을 거쳐 2015. 2.부터 2018. 2.까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으로 근무한 후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 중인 자이다.

## 2. 피소추자의 행위

가. 양형실장 이규진의 헌법재판소 관련 정보 유출 지시(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96면)

2015. 3. 중순경 당시 양형실장이었던 이규진은 피소추인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게 파견법관들에 대한 인사평정권이 법원행정처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파견 법관들이 법원과 관련된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모두 최희준 부장에게 바로 전달 해 달라’고 말하고, 피소추인에게 ‘법원과 관련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내부 평의 등 정보가 확인되면 바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피소추인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 진행경과, 비공개 평의 내용, 헌법재판관과 재판연구관들의 사건에 대한 의견, 토론내용 및 사건 보고서 등의 정보와 헌법재판소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의 추진 상황, 헌법재판관들의 내부 동향 및 관련 비공개 내부 문건 등을 입수하여 자신이나 자신을 보좌하여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정책실 심의관 문성호에게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다.



## 나. 헌법재판소 진행 사건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유출

1) 2015. 7.~9.경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97면)

피소추인은 위와 같은 이규진의 지시에 따라 2015. 3. 중순경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 중 법원과의 관계에서 민감한 사건들의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 재판연구원 토론과 사건보고서의 내용 및 기타 헌법재판관들의 내부 동향을 파악하던 중, 2015. 7. 1.경부터 이규진에게 민주화운동보상법 위헌심판제청사건 등의 주심 재판관, 쟁점, 재판관 평의 일정 등의 진행경과를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다수 사건의 진행상황과 내부 동향 및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들이 작성하여 헌법재판관들에게 보고한 사건보고서 등을 보고 전달하였고, 특히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8건(관습법 헌법소원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관련 사건, 현대 자동차 비정규 노조 업무방해 사건, 제주대학교 공무원 사건, GS칼텍스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형사소송 성공보수 무효 사건, 긴급조치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배당 상태, 재판연구원들의 토론 결과 및 보고 내용, 평의 회부 여부, 평의 결과, 선고 예상 시점 등이 포함된 정보와 자료를 이규진에게 보고하였다.

2). 2015. 10.경 헌법재판소의 한일협정 관련 헌법소원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98면)

피소추인은 2015. 10. 5.경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임종헌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심리 중인 한일협정 관련 사건들의 진행경과와 담당연구원들이 작성하여 헌법재판관에게 보고한 내부 사건보고서 등 자료를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연구원들만 직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접근권한이 있는 내부망 자료실에 접속 하여 연구관보고서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①박세영 헌법재판소연구관이 작성한 2012헌마939사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위헌확인)의 사전심사보고서, ②김형연 연구관이 작성한 2014헌마888사건(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의 사전심사보고서, ③노희범 연구관이 작성한 2009헌바317사건(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의 연구보고서, ④노희범 연구관이 작성한 2011헌바55사건(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a)호 등 위헌소원)의 연구보고서를 확보한 후 이를 임종헌과 이규진에게 각각 이메일로 송부하고, 위 2011헌바55 사건의 당시 담당연구관인 이황희로부터 파악한 청구인 승소가능성에 대한 예상 의견을 포함한 각 사건들의 진행경과와 예상결과를 함께 보고하였다.

3). 2016. 2.경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99면)

피소추인은 이규진에게 헌법재판소 심리 중인 사건의 진행상황을 계속하여 보고하였고, 특히 위와 같이 2015. 9. 15.에 보고서로 정리한 내용보다 한 층 심화된 사건경과를 확인한 후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10건(관습법 헌법소원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 자 보상 관련 사건,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조 업무방해 사건, 제주대학교 공무원 사건, GS칼텍스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공무원의제규정 관련 시행령 사건,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사건, 형사소송 성공보수 무효 사건, 긴급조치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건 경과, 주임연구관 재배정, 평의 결과(한정위헌 의견을 취한 재판관 수 및 각 재판관들의 견해 포함), 한정위헌 결정의 예상 등 정보와

사건보고서 등 자료를 이규진에게 보고하였다.

4). 2016. 11.~2017. 3.경 탄핵심판사건 진행상황 등 정보 및 자료 수집 (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99면)

임종헌은 2016. 11. 중순경 국회에서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규진에게 ‘탄핵 관련한 현재의 동향과 자료를 잘 확인하고, 탄핵심판 절차 관련 자료도 잘 받아두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규진은 그 무렵부터 피소추인에게 탄핵심판사건의 내부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소추인은 2016. 11. 22.경 이규진에게 ‘헌법재판소 정책심의관인 이황희 연구관이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절차가 우선적으로 준용될 것이라고 의견제시를 하였고, 김정원 선임연구관은 탄핵심판은 순수한 형사재판이 아니고 제3의 징계 재판처럼 운용되어야 하므로 절차진행과정에서 절차법 준용 등에 관한 개별 쟁점이 생길 때마다 재판부가 결정으로 선언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2017. 1. 25.경 이규진에게 ‘오늘 변론기일에는 피청구인 증인 신청에 대한 채택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인데, 문형표 등 4명만 추가 채택할 예정이고, 이것은 헌법재판관들의 격론 끝에 결정된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하고, 같은 날 ‘김정원 선임연구관은 인용 의견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전원일치면 좋은데 반대의견이 나올까봐 걱정”이라고 말하였으며 안창호 재판관은 “인용하더라도 국격이 걸린 문제이므로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경까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재판연구관 들의 동향을 계속하여 보고하고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탄핵심판 사건의 기록 중 주요 부분(의견서, 준비서면, 답변서, 입증계획, 서증제출서, 사실조회 공문 및 회신, 사전 제출된 증인신문사항, 반대신문사항 및 ‘고영태 녹취록’ 등 증거서류 등)을 파일로 모두 전달하였다.

#### 5) 소결

이와 같이 피소추인은 위 1) 내지 4)항 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별지목록 (1)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자료 유출 내역(사건 정보)’ 기재와 같이 헌법재판소 심리 중인 사건의 평의결과 등 내부 진행 정보와 사전심사보고서, 쟁점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사건보고서 및 개별 사건의 기록에 첨부된 청구서, 의견서, 답변서, 참고서면 등 자료 총 193건을 이규진, 임종헌 등에게 전달하였다.

#### 다. 헌법재판소가 추진하는 정책 및 동향 자료의 수집 및 유출

1) 2016. 7.경 헌법재판소의 정책 및 동향 수집(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101면)

피소추인은 2016. 7. 15.경 이규진의 지시에 따라 당시 논의되던 개헌,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추진 정책 관련 정보가 담긴 다수의 헌법재판소의 비공개 내부 자료들[헌법개정에 대비한 헌법재판소 대응전략(2008. 6.) 등]을 헌법재판소 내부전산망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규진에게 전달하였다.

2) 2016. 9.경 헌법재판소장 관련 동향 수집(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101면)

피소추인은 2016. 9. 2.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주재 ‘연구관 부장 및 팀장 회의’에 참석하여 차기 헌법재판소장 및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장의 비공개 발언을 청취한 후, 같은 날 이규진에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차기 헌법재판소장 문제와 관련하여 “나는 연임할 생각이 없다. 연임 제의가 오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연임 때문에 소장이 임명권자를 의식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 국제행사 여럿을 유치하고 국제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 등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재판관들도 오해

하는 것 같아 평의에서도 이런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공개적으로 해명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므로 외부에 밝힐 일은 아니다”라고 발언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3) 2016. 9.~10.경 헌법재판소의 정책 및 동향 수집(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102면)

피소추인은 2016. 9. 23.경 이춘석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헌법재판소장 임기 등에 관련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는 헌법재판소의 내부 동향을 파악한 다음, 2016. 10. 10.경 이규진에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김용헌 사무처장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김정원 정책실장은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차기 헌법재판소장과 관련하여 박한철 소장은 강일원 재판관을 지지하고 있고 최근 평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특정 재판관에게 면박을 주었으며, 강일원 재판관은 박한철 소장의 연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등의 현재 내부 상황을 보고하였다.

4) 헌법재판소의 정책 및 동향 129건 수집(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103면)

피소추인은 위 1) 내지 3)항을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목록 (2)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자료 유출 내역(사건 외 동향)’ 기재와 같이 헌법재판소 업무현황 및 업무계획 등이 담긴 주요업무계획, 월례회의, 실국장회의 등 내부 자료, 헌법재판소장 주재 내부 비공개 회의 내용 등 헌법재판소가 추진하는 정책 및 내부 동향에 대한 자료와 정보 총 129건을 이규진, 임종헌 등에게 전달하였다.

### 3.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

## 가. 관련 규정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러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는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50조는 업무의 성실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할 때 허가되는 것이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의하면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파견근무 중인 자는 업무의 성질상 자신의 원 소속 기관인 법원의 업무지시를 받을 수 없고 파견된 헌법재판소장의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만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는 한편 제1조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구체화 된다(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 1,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238, 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 113 등). 따라서 권력분립제도는 우리 헌법질서의 중요한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는 법원을 비롯한 다른 헌법기관으로부터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나. 3차보고서의 판단기준

한편 3차보고서 19쪽에서는 의혹별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평가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정책결정을 통하여 실행행위로 나간 경우 뿐만 아니라 문서작성행위, 그 작성지시행위, 논의 과정, 정책결정행위 등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면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훼손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행위별 평가이며 각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대법원 특조단 스스로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 침해나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위 기준인 재판의 독립 등은 헌법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결국 3차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차 조사단은 위 헌법상의 기준에 비추어 정도가 남용에 미치지 않는 것을 부적절로 평가하였다는 것인데, 부적절로 평가된 부분도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에 인적 책임을 물을 때는 남용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실조사의혹을 받아 왔던 3차 조사단조차 사법행정권의 남용 또는 부적절로 판단한 행위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등 헌법가치의 중대한 위반으로 적어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기준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기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 11. 19.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으로서 법관 탄핵 소추절차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의결함으로써, 법관탄핵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



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

한편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서 원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 등은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사건 처리에 관하여 동료나 선배 법관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의 조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등과 비교하여) 법원의 위상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나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절대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어떠한 선의의 의도나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상 범죄 행위로 포섭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밖에 없으므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법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스스로 제시한 이러한 법관 탄핵의 판단 기준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헌법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3차 조사보고서 판단기준과 함께 특히 임종헌 공소장에 제시된 행위태양의 중대한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의 기준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라.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피소추자가 이규진, 임종헌 등에게 전달한 정보는 헌법재판소법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평의 내용에 해당하거나 비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진 발언 또는 비공개 전산망에서 다운로드 받은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모두 직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이규진, 임종헌 등에게 전달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

특히 이규진은 피소추자에게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의 유출을 지시하면서 “파견법관”의 인사평가권이 법원에 있음“을 상기시킨 바 있다. 즉, 피소추자가 위와 같이 이규진의 지시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유출할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유리한 인사평가라는 개인적 목적이 강한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정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규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파견 공무원이 파견기관의 장이 아닌 원 소속 기관의 업무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임종헌, 이규진 등이 피소추자에게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유출하라고 지시한 배경에는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한 결정을 양산하여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려한다는 우려,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는 우려 등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유출하여 이를 법원행정처에 근무하고 있는 임종헌 등에게 전달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탈하려는 의도로서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종헌은 상고법원 도입 및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등을 위해 당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검토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던 중, 헌법재판소에도 ‘한일협정’과 관련된 헌법소원사건 등이 심리 중인 사실을 알고 이들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연구관 보고서 등 헌법재판소 내부 자료를 확보하여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대응에 참고하기로 마음먹고 피소추인에게 관련 지시를 하였던 것이다(공소

장 98면).

즉, 임종헌이 피소추인에게 헌법재판소 진행 사건의 자료 유출을 지시한 것은 대법원에 진행 중이던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는 헌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재판 독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탄핵의 정당성

### 가. 대통령 탄핵과의 차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파면결정을 선고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헌법, 법률 위반의 정도’와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달리 법관 탄핵에 대하여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경미한 범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004헌나1).

먼저 법관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즉 국가적 손실, 사법질서 혼란 등을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그 수가 3,000여명에 이르고, 그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숫자도 160여명에 이르며, 대법관의 경우조차도 13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설령 위 인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탄핵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공백을 동료 법관이 메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이나, 재판의 공백 등 사법질서의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일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헌법, 법률위반의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 피소추자들 역시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출세가 보장된 법원행정처의 핵심 부서 등 근무를 통해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헌법상 결코 침해되서는 안될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한편 법관의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헌법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이 헌법, 법률위반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관 파면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적은 반면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형량을 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

한편 피소추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이들이 법관 탄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기만료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하여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처분에 의하여서는 최고수위가 정직 1년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단지 법관 징계절차에 의하여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 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법농단에 관여한 피소추자는 정직처분으로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가 아니라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법원행정처를 거치는 동안 이른바 판사에서, ‘사법관료’로 변모해온 이들은, 심의관 단계에서부터 발탁되어 나중에 고등부장 승진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고 나아가 법원장, 대법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른바 출세가 보장된 법관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현 차장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들을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에서 시킨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피해자 행세를 통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 동정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대법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물며,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로 하여금 재판장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법감정 과도 맞지 않는데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피소추자로부터 재판받게 되는 당사자나 대리인 변호사들로부터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받게 될 것이다.

## 5. 결론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오로지 고위법관들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소위 법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설마 스스로 법을 어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법관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마지막 믿을만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던 법관들에 의하여,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관 이하 고위법관들,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위배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의원 등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관 최희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별지 목록 (1)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자료 유출 내역(사건 정보)’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	2015. 7. 1.	문성호	헌재 내부 정보	2013헌바359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 등 헌재 심리중인 사건 11건에 대한 청구인, 청구 취지, 배당현황, 주심재판관, 일정 등 사건 정보
2	2015. 7. 6.	이규진	시행령 위헌확인 사건	2012헌마8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1 위헌확인 등 시행령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10건에 대한 주심재판관 및 보고일이 기재되어 있는 문건
3	〃	〃	시행령 위헌 사건	2013헌마403, 450 시행령 사건에 대한 주심재판관, 정쟁, 관련사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건
4	2015. 7. 9.	○○○	헌재 내부 정보	2012헌바15, 182, 2015헌바73 병역법 위헌소원 사건의 변론 진행 중 ○○○, ○○○ 등 헌법재판관들과 청구인측 참고인 한인섭 교수 사이의 한정위헌 관련 질의 및 응답 내용
5	2015. 8. 31.	〃	2015. 8. 11.자, 2015헌마 784 사전심사보고서	2015헌마784 형사성공보수 사건에 대해 이동욱 ○○○이 작성한 전원재판부 회부 의견의 사전 심사보고서
6	〃	○○○ ○○○	2014. 7. 29.자, 2015헌마 732 사전심사보고서	2015헌마732 긴급조치 사건(백기완 사건 선례)에 대해 ○○○ ○○○이 작성한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의견의 사전심사보고서
7	〃	〃	헌재 내부 정보	긴급조치(백기완) 사건 관련 청구취지, 주심재판관의 전원재판부 회부 가능성 등 사건 정보
8	2015. 9. 15.	○○○	헌재 내부 정보	관습법 사건의 ○○○ 보고의견(각하의견) 및 업무방해 사건의 재판관 의견(○○○ 합헌의견) 등 사건 정보
9	2015. 9. 19.	〃	헌재 내부 정보	○○○ 재판관으로부터 들은 시행령 사건 관련 정보, 제주대 공무원사건 및 조세감면규제법 사건에 대한 헌재 동향, 헌재소장의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명시 입법 추진 등 사건 정보
10	〃	〃	2015. 1. 7.자, 2014헌마760, 2014헌마763 연구보고서	2014헌마760 등 제주대 공무원 사건에 대해 ○○○,○○○, ○○○ ○○○이 작성한 ‘재심기각결정 취소 인용’ 의견의 연구보고서
11	〃	〃	2013. 1. 5.자, 2013헌마242, 2013헌마497 연구보고서	2013헌마242 등 조세감면규제법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재심청구 기각판결 및 원행정 처분의 취소 인용’ 의견의 연구보고서
12	2015. 10. 1.	○○○ ○○○	헌재 내부 정보	2014헌바456, 2014헌바457 대법원 규칙 사건에 대한 ○○○ 재판관의 의견, 추가보고서 작성 지시, 추가 검토팀 운영, 향후 일정 등 사건 정보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3	2015. 10. 1.	○○○ ○○○	2015. 6. 30.자, 2014헌마456, 2014헌마457 연구보고서	2014헌마456 등 대법원 규칙 사건에 대해 공동3부 ○○○ ○○○이 작성한 ‘법률조항 합헌, 규칙조항 각하’ 의견의 연구보고서
14	〃	〃	2015. 8. 25.자, 2014헌마456, 2014헌마457 추가보고서	2014헌마456 등 대법원 규칙 사건에 대해 공동3부 ○○○ ○○○이 작성한 추가보고서
15	2015. 10. 4.	○○○	소위 한일협정 관련 사건들	2009헌바317, 2010헌가74, 2011헌바55, 2012헌마 939, 2014헌마888 한일협정 사건 관련 개요, 담당 ○○○의 연구보고서 결과, 선고 일정 등 사건 정보 가 포함된 문건
16	2015. 10. 5.	〃	2011. 12. 12.자, 2011헌바 55 연구보고서	2011헌바55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 ○○ ○이 작성한 ‘한일협정조항-각하, 법조항-합헌’ 의 견의 연구보고서
17	〃	〃	2011. 11. 14.자, 2009헌바317, 2010헌가74 연구보고서	2009헌바317, 2010헌가74(병합)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18	〃	〃	2014. 11. 24.자, 2014헌마 888 사전심사보고서	2014헌마888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전원재판부 회부’ 의견의 사전심사보고서
19	〃	〃	2012. 12. 7.자, 2012헌마 939 사전심사보고서	2012헌마939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전원재판부 회부’ 의견의 사전심사보고서
20	〃	○○○	소위 한일협정 관련 사건들	2009헌바317, 2010헌가74, 2011헌바55, 2012헌마 939, 2014헌마888 한일협정 사건 관련 개요, 담당 ○○○의 연구보고서 결과, 선고 일정 등 사건 정보 가 포함된 문건
21	〃	〃	2011. 12. 12.자, 2011헌바 55 연구보고서	2011헌바55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 ○○ ○이 작성한 ‘한일협정조항-각하, 법조항-합헌’ 의견 의 연구보고서
22	〃	〃	2011. 11. 14.자, 2009헌바317, 2010헌가74 연구보고서	2009헌바317, 2010헌가74(병합)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23	〃	〃	2014. 11. 24.자, 2014헌마 888 사전심사보고서	2014헌마888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전원재판부 회부’ 의견의 사전심사보고서
24	〃	〃	2012. 12. 7.자, 2012헌마 939 사전심사보고서	2012헌마939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전원 재판부 회부’ 의견의 사전심사보고서
25	〃	〃	현재 내부 정보	한일협정사건 관련 현재 담당 ○○○으로부터 들은 판시 내용 등 사건 정보
26	2015. 10. 16.	○○○	소송절차에 관한 대법원 규 칙의 위임방식과 규정형태	대법원규칙 사건과 관련 ○○○ 판사(현재 파견 중) 가 작성한 ‘소송절차에 관한 대법원 규칙의 위임방 식과 규정형태에 대한 토론 자료
27	2015. 10. 30.	○○○	2015. 9. 2014헌바148 등 7건 연구보고서	2014헌바148 등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에 대해 공동2 부 ○○○ ○○○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보 고서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28	2015. 10. 30.	○○○	2015. 6. 2013헌바396, 2014헌바394 연구보고서	2013헌바396 등 관습법 사건에 대해 공동2부 ○○○ ○○○이 작성한 ‘각하’ 의견의 연구보고서
29	〃	〃	2015. 10. 2014헌바180 등 11건 연구보고서	2014헌바180 등 민주화보상법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30	2015. 11. 1.	〃	2014. 6. 19.자, 2012헌바66 연구보고서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공동1부 ○○○ ○○○이 작성한 ‘일부 소극, 일부 한정위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31	〃	〃	2009. 12. 21.자, 2009헌바168 연구보고서	2009헌바168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 ○○ ○보가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32	〃	〃	2012헌바66 추가보고서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 ○○ ○이 작성한 추가보고서
33	〃	〃	2015. 5. 12.자, 2012헌바66 추가보고서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서경미 ○○ ○이 작성한 추가보고서
34	2015. 11. 3.	〃	1998. 5. 97헌바23 연구보고서	97헌바23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35	〃	〃	2005. 3. 3.자, 2003헌바91 연구보고서	2003헌바91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 ○○ ○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36	2015. 11. 10.	〃	2015. 11. 9.자, 2012헌바66 쟁점보고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기각’ 의견의 쟁점보고서
37	2015. 12. 4.	○○○ ○○○	현재 내부 정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관련 평의 내용(추정하기 포함), 업무방해 사건 관련 보고 및 추가검토 지시 등 사건 진행 경과
38	〃	〃	2015. 12. 4.자, 2012헌바66 쟁점보고서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 ○○ ○이 ○○○ 재판관의 지시로 작성한 쟁점보고서
39	〃	〃	2015. 12. 4.자, 2012헌바66 쟁점보고서(수정)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 ○○○이 ○○○ 재판관의 지시로 작성한 쟁점보고서 수정본
40	〃	〃	2015. 11. 30.자, 2012헌바66 쟁점보고Ⅱ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정의행위개념 등 추가 쟁점보고서
41	2015. 12. 22.	○○○	2015. 12. 2012헌바66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법무부 의견서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현재에 제출한 ‘합헌’ 결정을 구하는 의견서
42	〃	〃	2012. 4. 2012헌바66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주지검 검사 의견서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의 대리인 전주지검 검사가 현재에 제출한 ‘청구 기각’ 결정을 구하는 의견서
43	〃	〃	2015. 7. 8.자, 업무방해에 대한 한정위헌론 검토 보고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김성주 ○○○(파견 검사)이 ○○○ 재판관의 지시로 작성한 업무방해에 대한 한정위헌론 검토 보고서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44	2015. 12. 22.	○○○	2013. 4. 22.자,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회신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현재에 의견 회신한 공문(의견없음으로 회신)
45	2016. 1. 18.	〃	현재 내부 정보	민주화보상법 사건, 소멸시효 사건의 합헌의견 보고 완료 사실, 긴급조치위반 손해배상사건 배정 현황(공동 1부 배정) 등 사건 정보
46	2016. 2. 1.	○○○ ○○○	2016. 1. 2012헌바66 쟁점 보고서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 재판 관의 지시로 ○○○ 판사가 작성한 쟁점보고서
47	2016. 2. 11.	〃	2016. 2. 11. 보고(파일명)	제주대 공무원 사건(2014헌마763), 조세감면규제법 사건(2013헌마496 등 3건), 형사성공보수 사건(2015 헌마784), 시행령 사건(2013헌마403, 450), 긴급조치 사건(2015헌마861 등 다수)의 진행 상황 등 현재 심리 사건 정보
48	〃	〃	2014. 8. 27.자, 2013헌마 496 연구보고서	2013헌마496 조세감면규제법 사건에 대해 관원석 ○○○이 작성한 ‘법원의 재판 및 원행정처분 취소’ 의견의 연구보고서
49	2016. 2. 21.	○○○	2015헌라1 국회선진화법 사건 관련 문건	2015헌라1 국회선진화법 사건(주심 ○○○ 재판관)에 대해 ○○○ 재판관이 다른 재판관 설득용으로 작성한 평의 자료
50	2016. 2. 22.	〃	2015. 1. 30.자, 2015헌라1 청구서	2015헌라1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국회선진화법 사건)의 청구서
51	〃	〃	2015. 7. 21. 접수, 2015헌라1 권한쟁의사건 답변서	2015헌라1 국회선진화법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 국회의장 대리인의 답변서
52	〃	〃	2016. 1. 26. 접수, 2015헌라1 권한쟁의사건 변론 요지서	2015헌라1 국회선진화법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 국회의장 대리인의 변론요지서
53	〃	〃	2015. 7. 16.자,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의견서	2015헌라1 국회선진화법 사건에 대한 기획재정 위원장 정희수의 의견서
54	2016. 2. 24.	〃	2016. 2. 17.자, 2014헌바 180 등 쟁점보고서 - 생활 지원금의 성격 관련	2014헌바180 등 민주화보상법 사건 관련 ○○○ 재판관의 지시로 유경민 ○○○이 작성한 쟁점 보고서
55	2016. 3. 11.	〃	현재 내부 정보	2015헌바382 사건 관련 2015. 12. 담당○○○에게 배정되어 사전심사 중이라는 내용 등 사건정보
56	2016. 3. 16.	이규진 문성호	현재 내부 정보	대법원규칙 사건에 대한 강일원 재판관의 의견, 시행령 사건에 대한 이진성 재판관의 의견 등 현재 심리 사건에 대한 정보
57	〃	〃	현재 내부 정보	대법원규칙 사건에 대한 강일원 재판관의 추가 의견 등 사건 정보
58	〃	○○○	현재 내부 정보	2014헌바456, 457 대법원규칙 사건, 2013헌바403 시행령 사건에 대한 서기석 재판관의 의견 등 사건 정보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59	2016. 3. 17.	○○○ ○○○	현재 내부 정보	2013헌바370 등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합헌으로 평의종결 되었다는 평의 결과, 2014헌바456, 457 대법원규칙 사건에 대한 주심인 ○○○ 재판관 등 재판관들의 의견
60	2016. 3. 29.	〃	2016. 3. 28.자,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마25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접수일, 주심재판관, 사건 요약 내용 등 기재
61	〃	〃	2016. 3. 29.자,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마263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사건에 대한 접수일, 주심재판관, 사건 요약 내용 등 기재
62	〃	〃	현재 내부 정보	2015헌마9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 검토 의견, 평의 통과, ○○○ 재판관의 재검토 지시 등 사건 정보
63	〃	〃	2009. 3. 18.자, 2007헌마589 관련 메모보고	2007헌마589 사건에 대해 ○○○ ○○○이 ○○○ 재판관의 지시에 따라 평의 자료로 작성한 ‘전면 위헌의견’의 보고서
64	〃	〃	2015. 7. 13.자, 2015헌마182 연구보고서	2015헌마18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기각(법률 조항), 각하(헌재결정)’ 의견 연구보고서
65	〃	〃	1996. 8. 1996헌마172 보고서	1996헌마17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에 대한 ○○○ ○○○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보고서
66	〃	〃	2008. 12. 17.자, 2007헌마589 연구보고서	2007헌마589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대법원 판결 부분 각하, 나머지 부분 기각’ 의견의 연구보고서
67	〃	〃	2016. 3. 2015헌마940 연구 보고서	2015헌마9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기각(법률 조항), 각하(나머지 부분)’ 의견의 연구보고서
68	2016. 3. 30.	〃	현재 내부 정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2015헌마940)에 대한 ○○○ 재판관, 담당 ○○○ ○○○의 견해 등 사건 정보
69	〃	〃	2014. 3. 21.자, 2012헌마641 연구보고서	2012헌마64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기각(법률조항), 각하(판결취소)’ 의견의 연구보고서
70	2016. 4. 4.	〃	현재 내부 정보	대법원규칙 사건들에 대한 선고 일정, 결정문 초고 내용, 김창중, 조용호, 서기석, 강일원 재판관 들의 견해, 업무방해 사건 등 현재 심리 사건에 대해 강일원 재판관이 최희준에게 얘기한 다른 재판관들의 견해, 현재 심리 중인 2013헌마403 시행령 사건과 관련하여 김창중 재판관으로부터 들은 김창중 재판관 의견, 평의일정, 사건 진행 상황 등 현재 심리 사건에 대한 정보
71	〃	〃	2016. 4. 28.자, 2013헌바396, 2014헌바394 결정문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관습법 사건에 대한 합헌 결정문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72	2016. 4. 4.	○○○ ○○○	2015. 9. 9.자, 2013헌바 370 등 연구보고서	2013헌바370 등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 지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 보고서
73	〃	〃	2014. 9. 2013헌마403 연구 보고서	2013헌마403 특가법 시행령 제3조 위헌 확인 사건과 관련 ○○○ 재판관의 검토 지시로 직접성 요건에 대해 검토한 ○○○ ○○○ 작성의 연구보고서
74	〃	〃	2015. 6. 29.자, 2013헌마 403 연구보고서	2013헌마403 특가법 시행령 제3조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 ○○○이 ‘기각’ 의견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
75	〃	〃	2014. 9. 2013헌마450 연구 보고서	2013헌마450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 등 위헌 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 ○○○이 작성한 ‘각하(법률조항), 기각(시행규칙조항)’ 의견의 연구보고서
76	2016. 4. 6.	〃	2016. 4. 6.자,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마287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 확인 사건의 청구인, 접수일, 사건요약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
77	2016. 5. 10.	○○○	현재 내부 정보	2015헌마236 등 4건의 김영란법 사건에 대한 접수 일자, 주심재판관, 쟁점, 청구인 목록, 대리인 등 현재 심리 사건 정보
78	2016. 5. 11.	○○○ ○○○	2016. 5. 11.자,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마364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사건의 청구인, 접수일, 사건요약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
79	2016. 5. 13.	○○○	2015. 11. 26.자, 2015헌마 236 등 사건 연구보고서 (병합)	2015헌마236 등 4건의 김영란법 사건에 대해 김현영 ○○○이 작성한 ‘기각 또는 인용’ 의견 및 ‘병합’ 의견 연구보고서
80	2016. 5. 20.	○○○ ○○○	2016. 5. 16.자,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마383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의 청구인, 접수일, 사건요약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
81	〃	〃	2016. 5. 18.자,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마388 통신자료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사건의 청구인, 접수일, 사건요약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
82	2016. 6. 7.	○○○	현재 내부 정보	군형법 사건에 대한 재판관 심증
83	〃	〃	2014. 5. 23.자, 2012헌바 258 연구보고서	2012헌바258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 ○○○보가 작성한 ‘위헌’ 의견 연구보고서
84	〃	〃	2014. 9. 1.자, 2012헌바 258 쟁점보고	2012헌바258 군형법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 재판관의 검토 지시로 ○○○ ○○○이 작성한 쟁점보고서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85	2016. 6. 7.	○○○	2012헌마258 사건의 ‘쟁점별 위헌성 및 주문’에 관한 보고	2012헌마258 군형법 위헌소원 사건이 죄형법정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
86	〃	〃	2015. 11. 27.자, 2012헌마258 추가보고서	2012헌마258 군형법 사건의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하여 ○○○ ○○○이 작성한 추가보고서
87	2016. 6. 9.	○○○ ○○○	현재 내부 정보	2013헌마403 시행령 사건은 ‘평의결과 - 5(직접성 부정 각하 : ○○○, ○○○, ○○○, ○○○, ○○○) : 4(직접성 궁정 분안심사 기각 : ○○○, ○○○, ○○○, ○○○)’로 각하 선고될 예정이라는 사건 정보, 2013헌마450 시행령 사건이 6/23 평의에 넣어 6월말 함께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건 정보 등
88	〃	〃	2016. 5. 31.자,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마44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건의 청구인, 접수인, 사건요약 정보 등 기재된 보고서
89	〃	〃	2016. 6. 3.자, 2013헌마450 연구보고서(수정)	2013헌마450 시행령 사건(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 등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이 작성한 ‘각하’ 의견 연구보고서
90	〃	〃	2012. 9. 4.자, 2012헌마182 연구보고서	2012헌마182 형사소송법 제211조(범죄의 실행중인 자 부분)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이 작성한 ‘기각 또는 각하’ 의견 연구보고서
91	〃	〃	2014. 9. 2013헌마403 직접성 요건 검토보고서	2013헌마403 시행령 사건에 대해 ○○○ ○○○이 ○○○ 재판관의 검토 지시에 따라 검토한 보고서
92	〃	〃	2015. 6. 29.자, 2013헌마403 연구보고서	2013헌마403 특가법 시행령 제3조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 ○○○이 ‘기각’ 의견으로 작성한 연구 보고서
93	〃	〃	2012헌마182 추가보고서	2012헌마182 형사소송법 제211조(범죄의 실행중인 자 부분)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 재판관의 지시에 의해 ‘형법조항에 대한 직접성 요건 인정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추가보고서
94	〃	〃	파일명 : 명령규칙 형벌조항 직접성 부정판시(○○○)	명령, 규칙 형벌조항의 직접성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직접성 부정판시
95	2016. 7. 7.	〃	현재 내부 정보	긴급조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토론 내용 등 사건 정보
96	〃	〃	2015헌마861 연구보고서	2015헌마861 긴급조치 사건에 대해 공동1부 이황희, ○○○ ○○○이 작성한 ‘각하(대법원판결)/기각(심판대상조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의견 의 연구보고서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97	2016. 7. 15.	○○○	2015. 6. 1.자,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행정형벌 조항의 심판대상 확정 문제	시행령 사건 관련 ○○○ ○○○이 작성한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행정형벌조항의 심판대상 확정 문제’에 대한 보고서
98	〃	〃	2013. 6. 19.자, 법령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연구 - 선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선례 분석을 통한 법령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에 대해 ○○○, 우관제, 오영신, 성왕, ○○○ ○○○이 작성한 보고서
99	〃	〃	2016. 6. 13.자, 구두보고 ○○○ ○○○	시행령 사건 관련 직접성의 예외에 대한 임성희 팀장○○○, ○○○, ○○○, ○○○ ○○○ 토의 내용에 대한 구두보고 내용 정리 보고서
100	〃	〃	2016. 6. 10.자, 2013헌마 403 쟁점보고	2013헌마403 시행령 사건과 관련하여 ○○○ ○○○이 ○○○ 재판관의 검토 지시에 의해 작성한 직접성의 예외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쟁점보고서
101	〃	〃	2016. 6. 14.자, 2013헌마 403 쟁점보고	2013헌마403 시행령 사건과 관련하여 형벌조항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에 대한 쟁점보고서
102	〃	〃	1996. 2. 1994헌마213 연구 보고서	1994헌마21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일부 각하, 일부 기각’ 의견의 연구보고서
103	2016. 7. 20.	○○○	현재 내부 정보	2012헌바258 균형법 제92조의5(추행죄) 위헌소원 사건의 주심재판관 등 정보와 ○○○ 소장, ○○○, ○○○, ○○○ 재판관 등이 합헌의견이라는 사건 정보
104	〃	〃	현재 내부 정보	계간 관련 균형법 사건(군내 동성간 성추행사건)의 최종 보고서 쟁점 및 보고 내용, 추가 보고 쟁점, 합헌진 쟁점에 관하여 위헌론에서 처리방안으로 검토된 내용 등 사건 정보
105	〃	〃	현재 내부 정보	2016. 7. 20.자 이메일로 보고한 계간 관련 균형법 사건과 관련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는 소극적으로 보고되었다는 사건 정보
106	2016. 7. 22.	〃	현재 내부 정보	2015헌바331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의 주심, 청구인, 대리인, 쟁점 및 결론, 토론결과, 발제자와 토론자 대부분이 합헌 의견이라는 내용 등 사건 정보
107	〃	○○○ ○○○	현재 내부 정보	2016헌라1, 4, 6 사건에 대한 주심, ○○○ 배정 현황 등 사건 정보
108	〃	〃	2016. 4. 25.자, 2015헌라3 연구보고서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공동3부 류지현 ○○○이 작성한 ‘각하’ 의견 연구보고서
109	2016. 7. 28.	○○○	2012헌바258 균형법 제92조의 5 위헌소원 사건 결정문 초고	2012헌바258 균형법 제92조의 5 위헌소원 사건 결정문 초고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10	2016. 7. 28.	○○○	2015헌마236, 412, 673(병합) 결정문 초고	2015헌마236, 412, 67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사건(김영란법 사건)의 결정문 초고
111	〃	○○○	2012헌바258 균형법 제92조의 5 위헌소원 사건 결정문 초고	2012헌바258 균형법 제92조의 5 위헌소원 사건 결정문 초고
112	〃	〃	2015헌마236, 412, 673(병합) 결정문 초고	2015헌마236, 412, 67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사건(김영란법 사건)의 결정문 초고
113	2016. 7. 28.	○○○ ○○○	현재 내부 정보	균형법사건 관련 재판관들의 의견(동성간의 수행은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등 사건 정보
114	〃	〃	현재 내부 정보	균형법사건 관련 ○○○ 재판관의 의견, ○○○이 ○○○ 재판관에게 전달한 사항 등 사건 정보
115	2016. 7. 29.	〃	현재 내부 정보	2013헌마713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이 전원부 심리 중이라는 사실과 보고○○○이 작성한 보고 내용의 개요, 의견 등 사건 정보
116	〃	〃	현재 내부 정보	2016헌라7 사건과 관련사건인 2015헌라6, 2016 헌라3 사건 등의 변론 예정, ○○○ 주심재판관의 각하 결정 견해, 담당 ○○○의 처리 일정 관련 내용 등 사건 정보
117	〃	〃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 쟁의 사건의 청구인, 피청구인, 접수인, 사건요약 내용 등 기재된 보고서
118	2016. 8. 17.	〃	현재 내부 정보	매립지 등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토론시 지성수 부장○○○의 발언 내용 등 사건 정보
119	2016. 9. 19.	○○○	현재 내부 정보	김정원 선임부장으로부터 들은 제주대 공무원 사건 관련 김정원 부장의 출구전략에 관한 보고서 관련 내용과 이에 대한 재판관의 반응 등 사건 정보
120	〃	〃	위헌결정의 효력과 제심절차의 관계 - 한정위헌 결정을 중심으로	2014헌마760, 763 제주대 공무원 사건에 대해 이진성 재판관의 지시로 김정원 선임부장연구관이 작성한 '위헌결정의 효력과 제심절차의 관계(한정 위헌결정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121	〃	〃	제주대 공무원 사건 관련 보고서 일부(JPG파일 2개)	제주대 공무원 사건 관련 출구전략 관련 보고서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22	2016. 9. 30.	○○○ ○○○	이 사건 규칙조항의 직접성 인정 여부에 관한 추가 보고서	2013헌마403 등 시행령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규칙조항의 직접성 인정 여부에 관한 추가보고서
123	〃	〃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의 주요 내용	2016헌마8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청와대의 KBS보도 개입 관련)에 대한 청구인, 피청구인, 접수인, 사건요약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
124	〃	〃	2016. 9. 30.자, 2013헌마 450 쟁점보고서	2013헌마450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인정 여부 (소극) 관점에서 작성한 쟁점보고서
125	〃	〃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의 주요 내용	2016헌라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김재수 동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처리 관련)에 대한 청구인, 피청구인, 접수인, 사건요약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
126	〃	〃	현재 내부 정보	2013헌마450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서기석 재판관의 견해 등 사건정보
127	2016. 10. 4.	〃	2016. 10. 4.자, 2013헌마 403 쟁점보고	2013헌마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 부장 ○○○이 작성한 쟁점보고서
128	2016. 10. 7.	〃	현재 내부 정보	2013헌마450, 2013헌마403 시행령 사건에 관한 평의내용 등 사건 정보
129	〃	〃	2016. 9. 26. 접수, 2015헌라 3 변론요지서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의 대리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
130	2016. 10. 10.	〃	현재 계류중인 주요사건 현황	2011헌바118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진정입법부작위위헌 등 총 37건의 사건번호, 사건명, 추심채판관, 접수일, 주체어 등이 기재된 사건 현황 보고서
131	2016. 10. 13.	〃	현재 내부 정보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 진행 경과 및 재판관별 주요 질문과 답변 내용 등 사건 정보
132	2016. 10. 17.	○○○ ○○○	현재 내부 정보	백남기 부검영장 사건에 대한 박한철 소장의 의견 등 사건 정보
133	〃	〃	2016. 10. 13. 접수, 2016 헌마891 청구서	2016헌마891 백남기 부검영장 사건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서
134	〃	〃	현재 내부 정보	백남기 부검영장 사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강일원 재판관의 의견 등 사건 정보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35	2016. 10. 17.	○○○ ○○○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마891 압수수색검증영장 위헌확인 사건 (백남기 사건)의 청구인, 피청구인, 접수인, 사건 요약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
136	2016. 10. 18.	〃	현재 내부 정보	2016헌가10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선고 예정일, 선고 결과, 결정문 주문 등 사건 정보
137	〃	〃	현재 내부 정보	2013헌마450 시행령 사건에 대한 주문(수산자원 관리법 제18조는 각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기각 - 전원일치) 등 사건 정보
138	2016. 10. 19.	〃	현재 내부 정보	백남기 부검영장 사건과 관련하여 강일원 재판관 의견 및 평의일정 등 사건 정보
139	2016. 10. 26.	○○○	사건요약	2015헌라3, 2016헌라1, 2016헌라4 매립지 사건의 개요, 청구 이유 등이 기재된 요약보고서
140	〃	〃	2016. 2. 16.자, 답변서	2016헌라1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 부안군의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답변서
141	〃	〃	2016. 8. 17.자, 답변서	2016헌라6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답변서
142	2016. 11. 1.	〃	현재 내부 정보	병역법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제주대 남정만 사건 등의 평의 일정, 병역법 사건 관련 ○○○ 재판관의 의견, 제주대 남정만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입장이 ○○○, ○○○ 재판관의 의견이라는 내용 등 다수의 사건 정보
143	〃	〃	2013. 10. 2012헌가17 등 연구보고서	2012헌가17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등에 대해 이영광 ○○○이 작성한 '각하(제2국민역 편입조항), 각하 또는 합헌(병역종류조항), 합헌(처벌조항)' 의견의 연구보고서
144	〃	〃	2015. 3. 20.자, 2011헌바 118 등 추가보고서	2011헌바118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에 대해 공동1부 서경미 ○○○이 '심판대상 정리 및 추가서면 내용 요약, 입법례 조사보완' 하여 작성한 추가보고서
145	〃	〃	2015. 8. 11.자, 2011헌바 118 등 추가보고서	2011헌바118 등 사건에 대해 ○○○ 재판관의 지시로 황지섭 ○○○이 '병역종류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작성한 추가보고서
146	〃	〃	JPG 파일 3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 중 이유에서 효력범위를 제한한 경우'에 대한 보고서
147	2016. 11. 10.	〃	현재 내부 정보	2015헌가28 변론 경과 및 선고 일정 등 사건 정보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48	2016. 11. 10.	○○○	2016. 10. 28.자, 2015가합28 참고인 의견서	2015가합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 제청 사건에 대해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성용 교수가 작성한 참고인 의견서
149	〃	〃	2016. 11. 7. 접수, 2015헌가28 준비서면	2015헌가28 사건에 대해 이해관계인 경찰청장의 대리인 정부법무공단에서 작성한 준비서면
150	〃	〃	2016. 10. 19. 접수, 2015가합28 변론요지서	2015가합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변론요지서
151	2016. 11. 22.	〃	현재 내부 정보	2013헌마403 시행령 사건에 대한 ○○○ 재판관의 심증(각하 의견), 평의 결과 등 사건 정보
152	〃	〃	현재 내부 정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의 형사소송법 전문 법칙 적용 여부 등에 대한 현재 내부 동향
153	〃	〃	탄핵사건심리절차 참고자료 - 2004헌나1관련	2004헌나1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된 '탄핵사건 심리절차 선례참고'라는 자료
154	2016. 11. 28.	○○○	2013헌마403 결정문(초고)	2013헌마403 특가법 시행령 사건의 결정문 초고
155	2016. 12. 14.	○○○	현재 내부 정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 재판관의 증인신문 절차 관련 지시사항, 형소법 준용범위에 관한 내부 회의 예정 등 사건 정보
156	2016. 12. 16.	〃	2016. 12. 16. 접수, 변호인 선임신고서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변호인선임 신고서
157	〃	〃	2016. 12. 16.자, 이의신청서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작성한 이의신청서
158	2016. 12. 22.	〃	현재 내부 정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관련 2016. 12. 22. 14:00 진행된 제1회 변론준비기일 진행 내용 등 사건 정보
159	〃	〃	2016. 12. 19. 접수, 2016헌나1 준비절차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들의 변호인이 작성한 준비절차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서
160	〃	〃	2016. 12. 20.자, 준비절차기일 출석 요구 공문	2016헌나1 사건 관련 청구인 대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에게 보내는 출석 요구 공문
161	〃	〃	2016. 12. 20.자, 준비절차기일 통지 공문	2016헌나1 사건 관련 대통령,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등에게 보내는 준비절차기일 통지 공문
162	〃	〃	2016. 12. 21. 접수, 담당 변호사 지정서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담당변호사 지정서
163	〃	〃	2016. 12. 21.자,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	2016헌나1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
164	〃	〃	2016. 12. 21. 접수, 소송 위임장	2016헌나1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소송위임장(법무 법인 에이치스)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65	2016. 12. 22.	○○○	2016. 12. 21.자, 변호인선임 신청서	2016헌나1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변호인 선임신청 고서(변호사 이상용)
166	〃	〃	2016. 12. 21. 접수, 소송 위임장	2016헌나1 사건 관련 소송위임장(법무법인 율진)
167	〃	〃	2016. 12. 21. 접수,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 수행자(추가)선임서 등	2016헌나1 사건 관련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제출 대통령 탄핵사건 수행자(추가)선임서 등
168	〃	〃	2016. 12. 21.자,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	2016헌나1 사건 관련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
169	〃	〃	2016. 12. 21.자, 준비서면	2016헌나1 사건 관련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170	〃	〃	2016. 12. 21. 접수, 입증계획	2016헌나1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입증계획
171	〃	〃	2016. 12. 22. 접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2016. 12. 7.자 제346회 국회(정기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의록)
172	〃	〃	2016. 12. 22. 접수, 월간조선 등 사본	2016헌나1 사건 관련 강제49호증~1로 제출된 자료
173	〃	〃	2016. 12. 22.자, 서증제출서	2016헌나1 사건 관련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서증제출서
174	2017. 1. 23.	〃	현재 내부 정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관련 증인신문 일정 등 사건 정보
175	〃	〃	2017. 1. 23.자, 준비서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관련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헌법을 위배한 권력적 사실행위의 관점)
176	〃	〃	2017. 1. 19.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 공문	2016헌나1 사건 관련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송부한 사실조회 회보 공문(미르 재단 출연 관련 증빙자료 등)
177	〃	〃	2017. 1. 23. 접수, 증인 차은택에 대한 피청구인신문사항	2016헌나1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증인 차은택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178	〃	〃	2017. 1. 20.자, 증인(류상영) 소제탐지촉탁 결과 회신 공문	2016헌나1 사건 관련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제출한 증인(류상영) 소제탐지촉탁 결과 회신 공문
179	〃	〃	2017. 1. 20.자, 증인(○○○) 소제탐지촉탁 결과 회신 공문	2016헌나1 사건 관련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제출한 증인(○○○) 소제탐지촉탁 결과 회신 공문
180	〃	〃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변론기일 녹취서	2016헌나1 사건의 변론기일 녹취서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81	2017. 1. 25.	○○○	현재 내부 정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관련 추가 증인신청, 최종 선고 예정일 등 사건 정보
182	〃	〃	현재 내부 정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의 증인신문 기일 지정 내용, 선임부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인용여부 및 선 고기일 등 사건 정보
183	〃	〃	2017. 1. 25. 접수, 증인 유진룡에 대한 신문사항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관련 증인 유진룡에 대한 신문사항(청구인 제출)
184	〃	〃	2017. 1. 25. 접수, 증인 ○○○에 대한 신문사항 및 증인 류상영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2016헌나1 사건 관련 증인 ○○○에 대한 신문 사항 및 증인 류상영에 대한 반대신문사항(청구인 제출)
185	〃	〃	2017. 1. 25. 접수, 준비서면 - 차은택 증언 관련	2016헌나1 사건 관련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차은택 증언 관련 준비서면
186	〃	〃	2017. 1. 25. 접수, 준비서면 - 피청구인의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	2016헌나1 사건 관련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피청구인의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 관련 준비서면
187	〃	〃	2017. 1. 25. 접수, 증인 유진룡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2016헌나1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증인 유진룡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188	〃	〃	2017. 1. 20.자, 사실조회 공문	롯데면세점에서 제출한 사실조회 회보 공문(전경 련으로부터 미르 출연 요구 있었는지 여부 등)
189	〃	〃	2017. 1. 20.자,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관련한 2016. 1. 11.자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	GS. EPS에서 제출한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관련한 2016. 1. 11.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재단법인 미르와 관련된 출연 요구가 전경경제인연합회로부터 있었는지 여부)
190	〃	〃	2017. 1. 24. 접수, 사실조회 회신 공문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 공문(재단법인 케이스포츠와 관련된 출연 요구가 전경련으로부터 있었는지 여부)
191	〃	〃	현재 내부 정보	변론기일에서 증인 채택여부, 재판관들의 추가 증인 채택 정보 등 사건 정보
192	2017. 2. 16.	〃	2017. 2. 8.자,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신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관련 현재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회신 공문 (2016. 11. 7. 류상영 임의제출 녹취파일의 녹취록)
193	〃	〃	2017. 2. 10.자, 문서송부 촉탁에 관한 회신	2016헌나1 사건 관련 현재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회신 공문(류상영이 임의제출한 ○○○ 컴퓨터 내 녹취파일 일체)

## 별지 목록 (2)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자료 유출 내역(사건 외 동향)’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	2015. 11. 24.	○○○	지정토론문(○○○)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문(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의 지정토론문)
2	〃	〃	지정토론문(○○○)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문(○○○의 지정토론문)
3	〃	〃	지정토론문(○○○ ○○○)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문(책임○○○ ○○○의 지정토론문)
4	2015. 11. 26.	○○○ ○○○ ○○○	2015. 11. 26.자, 오늘자 서울신문 보도 관련 검토	통진당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관련 전주 지법 판결 내용을 법원행정처에서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서울신문 의혹 보도에 대해 ○○○이 법원행정처의 입장 등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하여 현재소장에게 보고한 보고서
5	2016. 3. 9.	○○○	2016. 2. 1.자, 백송 포럼 자료	2016. 2. 1.자 헌법재판소 주요 행사 및 업무현황, 전월 회의 조치결과, 토의안건 등 기재
6	〃	〃	2016. 3. 7.자, 백송 포럼 자료	2016. 3. 7.자 헌법재판소 주요 행사 및 업무현황, 전월 회의 조치결과, 토의안건 등 기재
7	2016. 3. 22.	○○○	현재 내부 정보	2016. 3. 18.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에서의 ○○○ 현재소장의 발언 배경 등 현재 내부 동향
8	〃	〃	2016.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작성한 주요업무 추진방향, 역점 추진 사업 등 2016년도 현재 주요 업무 계획 등 기재
9	〃	〃	2016. 1. 1월 월례회의자료 (헌법재판연구원)	2016. 1. 헌법재판연구원 월례회의자료로 각 팀별 전월 실적 및 현월 추진계획 등 기재
10	〃	〃	2016. 2. 2월 월례회의자료 (헌법재판연구원)	2016. 2. 헌법재판연구원 월례회의자료로 각 팀별 전월 실적 및 현월 추진계획 등 기재
11	〃	〃	2016. 3. 3월 월례회의자료 (헌법재판연구원)	2016. 3. 헌법재판연구원 월례회의자료로 각 팀별 전월 실적 및 현월 추진계획 등 기재
12	〃	〃	2016. 1. 2월 실국장회의 자료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 2. 각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 등 기재
13	〃	〃	2016. 3. 4.자, 3월 실국장 회의 자료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 3. 각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 등 기재
14	〃	〃	2016. 2. 1.자, 2월 백송 포럼 자료	2016. 2. 헌법재판소 주요 행사 및 업무현황, 전월 회의 조치결과, 토의안건 등 기재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5	2016. 3. 22.	○○○	2016. 3. 7.자, 3월 백송 포럼 자료	2016. 3. 헌법재판소 주요 행사 및 업무현황, 전월 회의 조치결과, 토의안건 등 기재
16	2016. 4. 1.	○○○ ○○○	2016. 4. 1.자, 2016년 4월 백송 포럼 자료	2016. 4. 헌법재판소 주요 행사 및 업무현황, 전월 회의 조치결과, 토의안건 등 기재
17	〃	〃	2016. 3. 30.자, 4월 실국장 회의 자료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 4. 각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 등 기재
18	〃	〃	2016. 4. 2016년 4월 월례 회의자료(헌법재판연구원)	2016. 4. 헌법재판연구원 월례회의자료로 각 팀별 전월 실적 및 현월 추진계획 등 기재
19	2016. 5. 2.	〃	2016. 4. 25.자, 5월 실국장 회의 자료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 5. 각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 등 기재
20	〃	〃	2016. 5. 2016년 5월 월례 회의자료(헌법재판연구원)	2016. 5. 헌법재판연구원 월례회의자료로 각 팀별 전월 실적 및 현월 추진계획 등 기재
21	2016. 5. 9.	〃	2016. 5. 2.자, 2016년 5월 백송 포럼 자료	2016. 5. 헌법재판소 주요 행사 및 업무현황, 토의안건, 2017년도 예산 신규사업 목록 등 기재
22	2016. 6. 9.	〃	2016. 6. 7.자, 6월 실국장 회의 자료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 6. 각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 등 기재
23	〃	〃	2016. 6. 2016년 6월 월례 회의자료(헌법재판연구원)	2016. 6. 헌법재판연구원 월례회의자료로 각 팀별 전월 실적 및 현월 추진계획 등 기재
24	2016. 7. 2.	이규진	헌재 내부 정보	김정원 선임부장으로부터 들은 차기 헌재소장에 관한 정보, 헌법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시 잔여 임기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관련 헌재 내부 등향
25	2016. 7. 11.	○○○ ○○○	2016. 7. 5.자, 7월 실국장 회의 자료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 7. 각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 등 기재
26	〃	〃	2016. 7. 2016년 7월 월례 회의자료(헌법재판연구원)	2016. 7. 헌법재판연구원 월례회의자료로 각 팀별 전월 실적 및 현월 추진계획 등 기재
27	〃	〃	2016. 7. 6.자, 2016년 7월 백송 포럼 자료	2016. 7. 헌재 주요행사 및 업무현황, 전월회의 조치결과, 토의안건 등 기재
28	2016. 7. 15.	○○○	국회 개헌안과 헌법재판소 개선의견 비교	국회개헌안(2014. 5.)과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개선의견(2009. 1.) 비교 문건
29	〃	〃	2005. 11. 30. 발행,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헌법재판소에서 서울대 법과대학 김문현 교수 등 4명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
30	〃	〃	2009. 1.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개선의견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개선의견' 보고서(국회 송부용)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31	2016. 7. 15.	○○○	재판관의 자격 및 구성 관련 의견 제출 현황(처장보고)	재판관의 자격 및 구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현황, 연구용역보고서 현황, 국회 보고서 현황’ 등이 기재된 보고서
32	〃	〃	재판관 관련 국회제출 자료	‘재판관 정수,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재판관 임 기’ 등에 대한 국회 질의 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 현황 및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
33	〃	〃	파일명 : 재판관정수(증원) 관련 예상질의(○○○ ○○○ 수정)	○○○ ○○○이 수정한 재판관 정수(증원) 관련 국회 예상질의 및 답변자료
34	〃	〃	파일명 : 발제문종합(기본권 최종)	기본권 관련 발제문
35	〃	〃	쟁점별 제출시기 결정 - 기본권편	개헌 관련 쟁점별 국회 자료 제출 시기를 검토한 보고서(기본권편)
36	〃	〃	기본권 TF 활동 내역 보고	2008. 9. 18.~11. 20. 기간 동안의 기본권 TF 활동 내역 보고서
37	〃	〃	2008. 12. 헌법재판제도 개헌 검토 보고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헌법재판의 본질과 헌법재판소의 지위, 입법자와 헌법재판소 의 관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등에 대한 개헌 검토 보고서
38	〃	〃	쟁점별 제출시기 결정	개헌 관련 쟁점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시기를 검토한 보고서
39	〃	〃	의견표명 여부 및 그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고려사항	개헌 관련 대 국회 상대 의견 표명 여부 및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검토 보고서
40	〃	〃	조항별 현행규정 및 쟁점 사항 검토	개헌 관련 조항별 현행규정 및 쟁점사항 검토 보고서
41	〃	〃	헌법재판의 본질과 헌법 재판소의 지위	헌법재판의 본질과 헌법재판소의 지위에 대해 ○○○ ○○○보가 작성한 검토 보고서
42	〃	〃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의 개헌논의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의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김진한 ○○○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
43	〃	〃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에 대해 ○○○ ○○○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
44	〃	〃	입법자와 헌법재판소의 관계	입법자와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대해 이황희 ○○ ○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
45	〃	〃	2008. 7. 14.자, 헌법개정에 대비한 우리 재판소의 대응 전략	헌법 개정과 관련한 현재의 대응 전략에 대해 제도기획과에서 검토한 보고서로 세부실천계획, TF팀 상세 운영계획 등 기재
46	〃	〃	2011. 3. 대법원의 흡수통합론에 대한 대응 방안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 제도기획과에서 작성한 대법원의 흡수통합론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서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47	2016. 7. 15.	○○○	헌법 개정 대응전략 및 추진계획	대법원 통합론에 대한 각계의 동향, 통합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대응전략, 상반기 세부 추진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보고서
48	〃	〃	2011. 2. 현재 흡수통합론에 대한 대응 기본계획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통합론 제기, 통합론에 대한 재판소의 대응전략, 상반기 세부 추진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보고서
49	〃	〃	‘붙임 1. 관련 언론기사 요약’ 등	헌법개정 대응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서에 첨부 되는 개헌 관련 언론기사를 요약한 내부 문건 등
50	〃	〃	2008. 7. 15.자, 개헌 관련 책자 요약 -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헌법재판소 제도기획과에서 작성한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라는 개헌 관련 책자를 요약한 내부 문건
51	〃	〃	2008. 6. 헌법개정에 대비한 우리 재판소의 대응전략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 제도기획과에서 작성한 헌법개정에 대비한 헌법재판소의 대응 전략이 기재된 보고서
52	〃	〃	2010. 2. 19.자, 헌법학 교과서의 헌법재판에 대한 경향 분석	헌법재판소 제도기획과에서 작성한 헌법학 교과서의 헌법재판에 대한 경향 분석 보고서
53	〃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통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통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서 (헌법재판소 설립 배경, 헌법재판소-대법원 권한 갈등에 대한 의견 등 기재)
54	〃	〃	2013.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제출용으로 작성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관련 개정의견 등 기재 문건
55	〃	〃	2015. 12. 개헌 대비 기초자료집	헌법재판소에서 작성한 개헌 대비 기초자료집
56	〃	〃	2015. 7. 헌법재판제도 개선 자료 조사집(2010 ~ 2014)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헌법재판제도 개선 자료 조사집(2010 ~ 2014)
57	〃	〃	2015. 12. 2015년도 헌법 개정관련 자료집	헌법재판소에서 작성한 헌법 개정관련 자료집
58	〃	〃	개헌대비 기초자료집 발간 계획	개헌대비 기초자료집 발간 계획의 목적, 수록 내용, 소요 예산안(100천원내외) 등의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
59	〃	〃	2015. 9. 11.자, 2015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헌법재판소에서 작성한 2015년도 국정감사 업무 현황 자료
60	〃	〃	2015. 9. 11.자, 2015년도 국정감사 예상질의·답변자료(심판사무)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2015년도 국정감사 심판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예상질의·답변자료
61	〃	〃	2015. 9. 11.자, 국정감사 대비 예상질의·답변자료 (일반운영)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2015년도 국정감사 대비 일반운영 분야 예상질의·답변자료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62	2016. 7. 15.	○○○	2016. 임시국회 대비 예상 질의·답변자료(일반운영)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년도 임시국회 대비 일반운영 분야 예상질의·답변자료
63	〃	〃	2016. 임시국회 대비 예상 질의·답변자료(일반운영) 법제연구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년도 임시국회 대비 일반운영 분야 예상질의·답변자료
64	〃	〃	파일명 : 16년도 임시국회 업무현황(주요성과, 추진 계획) 법제연구과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65	〃	〃	파일명 : 임시국회 업무현황 (주요성과, 추진계획), 연구 파트 추가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66	〃	〃	예상질의·답변자료(심판사무)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심판사무에 대한 예상질의·답변자료
67	〃	〃	2016. 6. 29.자, 임시국회 대비 예상질의·답변자료 (일반운영)	임시국회 대비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일반운영 분야 예상질의·답변자료
68	〃	〃	제343회 국회(임시회) 업무 현황보고 인사말씀	제343회 임시국회 업무현황보고 관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인사말씀
69	〃	〃	2016. 6. 29.자, 임시국회 대비 주요결정사건(2016. 6. 29. 현재)	임시국회에 대비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 성한 주요 결정 사건 보고서(사건명, 선고, 주심, 제청요지, 결정요지 등 기재)
70	〃	〃	2016. 6. 29.자, 임시국회 대비 주요쟁점사항(2016. 6. 29. 현재)	임시국회에 대비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 성한 현재 계속 사건, 결정사건 등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보고서
71	〃	〃	파일명 : 답변서 김진태 (개헌 관련 연구용역 6.21.)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개헌 관련 연구 용역 수행 내역에 대한 답변서
72	〃	〃	파일명 : 답변서 백혜련 (연구용역 6.20.)	법제연구과 ○○○ 사무관이 작성한 연구과제 및 세 미나 내역에 대한 답변서
73	〃	〃	파일명 : 답변 주광덕(연구 용역 6.21.)	법제연구과 ○○○ 사무관이 작성한 최근 3년간 (2013 ~ 2016년 최근까지) 연구용역 현황(리스트) 관련 답변서
74	〃	〃	파일명 : 답변서 _ 주승용 (권위적인 법령용어 정비 계 획)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권위적인 법령 용어 정비 계획에 대한 답변서
75	〃	〃	파일명 : 답변서 _ 홍일표 (제19대 국회 제출 법안 처리 현황 및 20대 국회 법안제출 계획)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제19대 국회 제출 법안 처리 현황 및 제20대 국회 법안제출 계획에 대한 답변서
76	〃	〃	파일명 : 답변서 - 금태섭 (대법원과의 통합)	대법원과의 통합에 대한 금태섭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77	2016. 7. 15.	○○○	파일명 : 답변서 - 김진태 위원(상시청문회법등)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상시 청문 회법, 위헌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입장, 누리과정 시행령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에 대한 답변서
78	〃	〃	파일명 : 답변서 - 김진태 (연구용역 6.21.)	법제연구과 ○○○ 사무관이 작성한 최근 3년 연구용역 리스트에 대한 문건
79	〃	〃	파일명 : 답변서 - 정성호 (재판소법개정건의 등)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건 관련 답변서
80	〃	〃	파일명 : 답변서 - 주광덕 의원(6.22.)	재정기획과 ○○○ 사무관이 작성한 최근 3년간 (2013-2016년 최근까지) 주요사업비 현황에 대한 답변서
81	〃	〃	파일명 : 답변 김진태(누리 과정)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시행령도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법령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서
82	〃	〃	파일명 : 답변 박범계(재판부 보수화 등)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헌법재판소의 재판부 인적 구성이 보수화 되어 보수적 결정이 많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서
83	〃	〃	파일명 : 답변 오신환(재판관 임기 연장)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필요성 검토에 대한 현재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서
84	〃	〃	파일명 : 답변 이용주(헌법 재판소법 개정)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헌법재판 소장 임기 관련’ 질문 등에 대한 답변서
85	〃	〃	파일명 : 답변 정갑윤(개헌 관련 견해)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헌법개정과 관련한 현재의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서
86	〃	〃	파일명 : 답변 정성호(변형 결정, 재판소원)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변형결정 의 합법성/정당성이 논란이 되어 왔는데, 변형 결정은 불가피한가’라는 질문 등에 대한 답변서
87	〃	〃	파일명 : 답변 정성호(헌법 재판소법개정건의 입안 경과)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헌법재판 소법 개정의견 등 입안 경과’ 등에 대한 답변서
88	〃	〃	파일명 : 답변서 - 이춘석 (상시청문회법)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국회법(상시 청문회법) 관련 현재의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서
89	〃	〃	2016. 7. 결산규칙(헌법 개정건의 입안 경과)	2016. 7. 결산규칙(헌법 개정건의 입안 경과) 등에 대한 답변서
90	〃	〃	파일명 : 헌법개정규정검토	제6장 헌법재판소 관련, 헌법해석 관련 부분에 대한 현행 규정, 개정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보고서
91	〃	〃	현행 헌법상 개정필요 규정 검토	현행 헌법상 개정 필요 규정인 제6장 헌법재판소 관련, 헌법해석 관련 부분에 대한 현행 규정, 개정 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보고서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92	2016. 7. 15.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흡수 통합 관련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흡수통합 관련, 언론기사, 헌법재판소 대응 논리 등 기재 보고서
93	〃	〃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관련 보고	2013. 9. 6.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관련 보고서
94	〃	〃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 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13. 9. 6.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결과 보고서로 예산집행 내역, 주요보고 사항 등의 내용 기재
95	〃	〃	2013. 9. 6.자,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회의록	2013. 9. 6.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 위원회 회의록
96	〃	〃	2013. 9. 6.자,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2013. 9. 6.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 위원회 회의 녹취록
97	〃	〃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관련 진행상황 보고	2013. 11. 21.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관련 진행상황 보고서
98	〃	〃	2013. 11. 21.자,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2013. 11. 21.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 위원회 회의 녹취록
99	〃	〃	2013. 11. 21.자,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회의록	2013. 11. 21.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 위원회 회의록
100	〃	〃	헌법 전문가 총강의 구성 및 체계적 정합성 고찰	건국대학교 ○○○ 교수가 작성한 ‘헌법 전문가 총강의 구성 및 체계적 정합성 고찰’이라는 주제의 보고서
101	〃	〃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 위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가 작성한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보고서
102	〃	〃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가 작성한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보고서 재수정본
103	〃	〃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요약)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가 작성한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보고서 요약본
104	〃	〃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 기관의 ○○화와 헌법 제107조 제2항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초안)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가 작성한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기관의 ○○화와 헌법 제107조 제2항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초안)
105	〃	〃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 기관의 ○○화와 헌법 제 107조 제2항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초안)요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가 작성한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기관의 ○○화와 헌법 제107조 제2항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초안)요지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06	2016. 7. 15.	○○○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기관의 ○○화와 헌법 제107조 제2항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가 작성한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기관의 ○○화와 헌법 제107조 제2항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107	〃	〃	선거소송의 본질과 관할에 관한 소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가 작성한 '선거소송의 본질과 관할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의 보고서
108	〃	〃	선거소송의 본질과 관할에 관한 소고[요약]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가 작성한 '선거소송의 본질과 관할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의 보고서 요약본
109	〃	〃	선거소송의 본질과 관할	선거소송의 본질과 관할(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에 대한 연구보고서
110	〃	〃	2013. 12. 11.자,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회의록	2013. 12. 11.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회의록
111	〃	〃	2013. 12. 11.자,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제2소위원회	2013. 12. 11.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제2소위원회 회의의 녹취록
112	〃	〃	2013. 12. 2013년도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결과보고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의 개요, 운영 경과, 활동 결과 등이 기재된 조사연구 결과보고서
113	2016. 7. 20.	○○○	집회 및 시위에서의 복면착용금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집회 및 시위에서의 복면착용금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캐나다 및 미국을 중심으로) 최종보고서
114	2016. 8. 8.	○○○ ○○○	2016. 7. 29.자, 실국장 회의 자료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 8. 실국장 회의자료
115	〃	〃	2016. 8. 월례회의자료(헌법 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2016. 8. 월례회의자료 각 팀별 전월 추진실적, 당월 추진계획 등 기재
116	2016. 8. 22.	〃	헌재 내부 정보	신임 헌재 연구위원 내정자 명단, 재판소장과 비서실장이 참석 예정인 변호사 대회에 참석할 계획이라는 헌재 내부 동향
117	2016. 9. 2.	〃	헌재 내부 정보	헌재소장이 부장, 팀장을 소집하여 주재한 회의의 내용 등 헌재 동향
118	〃	〃	2016. 8. 제2회 열린 헌법 재판소 국민초청행사 세부 시행 계획(안)	헌법재판소 총무과에서 작성한 2016. 8. 31.-9. 2., 9. 4. 개최된 헌법재판소 국민초청행사 세부 시행 계획안
119	〃	〃	홈커밍데이 행사 참석자 현황(전직 구성원)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석할 참석자 111명의 성명, 재임기간 등이 기재된 보고서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20	2016. 9. 5	○○○ ○○○	2016. 9. 1.자, 실국장 회의자료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 9. 실국장 회의자료
121	〃	〃	2016. 9. 월례회의자료(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2016. 9. 월례회의자료 각 팀별 전월 추진실적, 당월 추진계획 등 기재
122	2016. 9. 19.	○○○	복면집회금지에 관한 헌법적 검토	2016. 9. 30. 발표 예정인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권 연구팀 ○○○ 책임○○○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 (캐나다 및 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123	2016. 10. 4.	○○○ ○○○	2016. 9. 30.자, 실국장 회의 자료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 10. 실국장 회의 자료
124	2016. 10. 10.	이규진	헌재 내부 정보	김정원 선임부장으로부터 들은 헌재법 개정 준비 관련 내용, 헌법재판소장과 김용현 처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서기석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이 차기 소장을 노리고 뛰고 있다는 내용 등 헌재 내부 동향 정보
125	2016. 10. 11.	〃	헌재 내부 정보	헌재 차기 소장 관련 헌재 내부 동향 정보
126	2016. 10. 14.	○○○ ○○○	헌재 내부 정보	권한쟁의 심판 사건 관련 대법원 의견서 제출에 부정적이라는 내용 등 헌재 내부 동향 정보
127	2016. 11. 1.	○○○	2016. 10. 31.자, 실국장 회의 자료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 11. 실국장 회의 자료
128	2016. 11. 10.	〃	2016. 11. 2.자, 2016. 11. 백송 포럼 자료	각 부서별 주요 행사 및 업무현황, 전월 회의 조치결과, 토의안건 내용 등이 기재된 백송 포럼 자료
129	2017. 3. 16.	〃	2017. 3. 20.자, 인사발령 (헌법○○○) 통보 공문	헌법재판소 인사관리과 시행 2017. 3. 20.자 헌법 ○○○ 인사발령 통보 공문

##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2. 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